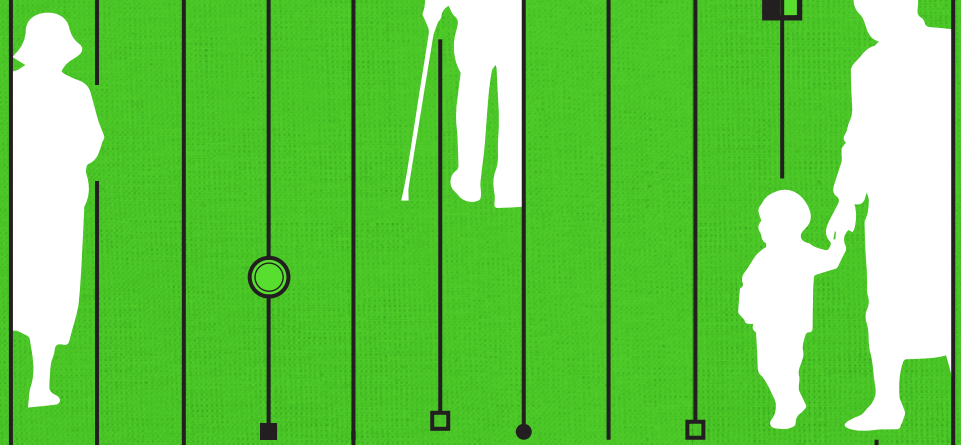
한국민속사회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ociety



Family and Kinship 2 ㅇ-ㅎ

가족과 친족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ociety
Family and Kinship

한국 민속 사회 사전

가족과 친족
2

ㅇ ㅈ ㅊ
ㅌ ㅍ ㅎ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한국민속사회사전

가족과 친족 ❷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ociety

Family and Kinship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 3704. 3225

발행인
김종대

총괄
권태효

기획
백민영

편수원
강중휘, 백지연, 신다혜, 장윤정, 정채린, 천재은

윤문·교열
엄민용, 김병동, 김용준, 장성은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서성규, 김은정, 나아현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450-01

ISBN
978-89-289-0394-8: 비매품
978-89-289-0392-4(세트)

94380
9 788928 903948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ociety
Family and Kinship

한국 민속 사회 사전

가족과 친족
2

ㅇ ㅈ ㅊ
ㅌ ㅍ ㅎ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 민속문화의 집대성과 지식체계 구축 그리고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여덟 번째 주제인 『한국민속사회사전』의 '가족과 친족' 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사회의 출발점으로 확대된 형태가 친족입니다. 현재 가족과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연 및 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울타리를 넘어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개념 및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민속사회사전』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과 친족'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전통사회부터 현대사회까지 '가족과 친족'의 개념과 유형, 혼인체계, 의례, 상속, 제도, 규범, 설화 등의 자료를 집대성하여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살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속현장 사진 및 풍속화, 포스터, 삽화, 도표 등의 시각 자료도 제공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세시풍속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민속문학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한국생업기술사전〉을 발간하여 한국민속을 집대성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앞으로도 민속문화 연구를 지속하고 축적하여 다양한 주제의 사전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사전이 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집필자, 자문, 감수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협조해주신 관계 기관의 배려와 사전이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준 민속연구과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립민속박물관장 **김종대**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민속을 주제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주제인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5권을 2004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하였다. 2009년부터 제2주제인 〈한국민속신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에 '무속신앙 편', 2010년에 '마을신앙 편', 2011년에 '가정신앙 편'을 발간하였다. 2012년에 제3주제인 〈한국민속문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에 '설화 편', 2013년에 '민요 편'과 '판소리 편'을 발간하였다. 2014년에는 제4주제인 〈한국일생의례사전〉을 발간하였다. 2015년에는 제5주제인 〈한국민속예술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에 '민속극 편'과 '민속놀이 편', 2016년에는 '음악·농악·무용·민화 편'을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제6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에 '의생활 편', 2018년에 '식생활 편', 2019년에는 '주생활 편'을 발간하였다. 2020년에는 제7주제인 〈한국생업기술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농업 편'을 발간하였고, 2021년에 '어업 편', 2022년에는 '상공업 편'을 발간하였다. 올해는 제8주제인 〈한국민속사회사전〉의 '가족과 친족 편'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한『한국민속사회사전』'가족과 친족 편'은 표제어 488항목, 원고 5,000여 매, 사진 400여 장으로 구성하였다.

이 사전의 표제어는 사전편찬팀에서 정리한 표제어를 기초로 관내외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편찬 방향 및 표제어, 집필자 적합성을 통해 선정하였다. 선정된 표제어의 원고는 75명의 해당 분야 연구자가 집필하였다. 집필진은 민속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국문학, 법학 등 인접 학문 필자들이 참여해 이해의 폭을 넓혔다.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적합성 검수와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쳐 각 분야 전문 연구자의 감수를 받았으며, 감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수정·보완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전은 가족과 친족의 개념 및 유형, 혼인체계, 관습 및 규범, 상속제도, 호적, 가족법률 및 정책, 가정신앙, 일생의례, 설화, 가족 구성원, 용어, 자료로 나누어 정리·해설하였다.

사전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제어 배열은 한글 자모순 목차로 하였으며 필자별 목차, 색인 등을 추가하여 사전 본연의 찾기 기능을 유지하되, 이용자가 다각적으로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러두기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민속사회사전: 가족과 친족〉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민속사회사전: 가족과 친족〉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2. 표제어는 가족, 친족, 혼인체계, 관습 및 규범, 상속, 호적, 가족법 및 정책, 가정신앙, 일생의례, 설화, 구성원, 자료, 용어의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3. 표제어는 관내외 자문회의를 통해 그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여 선정하였다.
4. 이 사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가표제어

1.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이칭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여 목차에 같이 제시하였다. 가표제어와 관련된 주표제어 쪽수를 제시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2. 앞서 발간한 사전에 수록된 표제어 중 관련한 표제어는 해당 사전의 쪽수를 제시하였다.

표기 방법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2008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자료 출처

사진, 도표, 삽화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 등을 밝혔다. 현지조사자료는 제보자가 익명을 요청한 경우 '○○○' 등으로 표기하였다.

호칭 및 관계도

호칭 및 관계도를 수록해 친족원의 관계와 친족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도판

1. 평생도, 문자도 등 도판을 구성해 가족의 일상 및 무병장수, 부귀다남, 입신양명, 효제 등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가족과 친족 간 주고받은 한글 손편지를 수록해 가족애와 집안 풍속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 번호를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제공

간송미술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국가기록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농촌진흥청, 대전시립박물관,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아카이브, 수원화성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대학교 박물관, 제주문화원, 제주학연구센터,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학봉기념관, 화성시역사박물관,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1. 자문위원은 김미영(한국국학진흥원),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김창민(전주대학교), 박성용(전 영남대학교), 손병규(성균관대학교), 오세길(동아대학교), 이대화(한국학중앙연구원), 이창식(전 세명대학교), 이해준(전 공주대학교), 함인희(이화여자대학교), 함한희(무형문화연구원), 허남춘(전 제주대학교)이 맡았다.
2. 감수위원은 김명자(전 안동대학교), 이창기(전 영남대학교), 이해준(전 공주대학교), 함한희(무형문화연구원)가 맡았다.

가나다순

차례

한국민속사회사전
가족과 친족

기역 ㄱ

1인가구 020
가가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22)
가계 021
가계도 022
가계부 025
가구 026
가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24)
가문 028
가문잔치 029
가부장제 030
가사노동 032
가신신앙 가정신앙 045
가업 035
가장 037
가정 039
가정교육 041
가정법원 044
가정신앙 045
가정위탁제도 048
가정의례준칙 049
가정주부 050
가족 051
가족계획사업 054
가족관계등록법 058
가족법 059
가족법개정운동 061
가족사진 062
가족주의 064
가첩 065

가통 067

가풍 068

가훈 070

감실 한국일생의례사전: (p.35)

강복 한국일생의례사전: (p.38)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39)

개가해서 유복자 키운 열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40)

건강가정기본법 072

건넌방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7)

건전가정의례준칙 073

결손가정 074

결혼기념일 한국일생의례사전: (p.44)

겹사돈 075

계녀서 076

계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46)

계모담 077

계자 079

계후등록 080

계후입안 082

계후자 계자 079

고모 083

고부 084

고사당 한국일생의례사전: (p.52)

과객 제사 차려준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0)

과부 087

관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63)

관향 본관 194

교환혼 088

국불천위 089

국제결혼 091

국조오례의 093

권당 권당 093

궨당 093

귀신종이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72)

규방가사 095

균분상속 097

그릇 깬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87)

근친 100

근친혼 101

글 잘 하는 황정승 딸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95)

금시발복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01)

기일비망기 102

기자의례 102

기제사 105

기휘 109

김수로왕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16)

김알지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18)

꼬댁 각시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106)

꾀로 얻은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32)

니은 ㄴ

남귀여가혼 110

남녀칠세부동석 112

남매 114

남매혼설화 115

남아선호사상 116

남원진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46)

남편 118

남편 대신 옥살이 한 열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49)

남편 따라 죽은 열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50)

남편 병 고친 열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51)

남평문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52)
납골당 120
내룡 122
내방가사 규방가사 095
내외 123
내외담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118)
노인의 날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116)
누나 124
누명쓰고 자결한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148)

디귿

다문화가족 126
달래강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70)
달성배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71)
당내 127
당내친 128
당호 129
대 130
대동보 132
대문중 133
대종가 134
대주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131)
덕 쌓아 얻은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79)
데릴사위제 136
도둑맞은 유골과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89)
도미의 처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192)
독거 137
독신 138
동거 139
동생 140
동서 141
동성동본 143
동성동본불혼 144
동성촌 146
동자삼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04)
둥지양자 149
딩크족 150
딸 150

미음

막내 153
만성보 154
맏이 155
말자상속 157
망부석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25)
맞벌이 158
며느리 160
며느리고개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34)
며느리밥풀꽃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35)
명당 빼앗아간 딸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36)
명당 한국일생의례사전: (p.153)
명당설화 162
모계 165
모성애 166
모자보건법 168
묘제 169
무복친 172
문둥이 남편과 이부열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49)
문벌 173
문장 174

문중 175
문중계 족계 518
문회 177
물레혼 178
미추왕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54)
민며느리제 179
민적법 180

비읍 ㅂ

박혁거세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76)
반보기 181
방계가족 183
방귀 뀐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235)
백골양자 184
백년손님 185
벌초 186
벙어리 행세한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254)
벙어리로 삼 년 지내려 한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89)
별급문기 187
보쌈 189
보종 190
복인 191
복합가족 193
본관 194
본적 196
봉사대수 한국일생의례사전: (p.197)
봉사혼 197
봉안 한국일생의례사전: (p.201)
봉제사접빈객 197
부거제 부처제 206
부계 199
부루단지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221)
부모 200
부부 202
부부의 날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59)
부성애 204
부처제 206
분가 207
분거가족 208
분재기 210
불천위 212
불천위제사 214
비혼 217
빈둥지가족 218
뻐꾸기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310)

시옷 ㅅ

사당 219
사대봉사 221
사돈 223
사랑방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19)
사랑채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21)
사례편람 224
사불천위 225
사실혼 226
사위 227
사진신부 229
사촌 231
사후양자 234
산함일구강토이주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326)

살림살이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30)
살림집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33)
삼 형제 죽고 삼 정승 날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327)
삼강행실효자도 235
삼년상 236
삼불거 238
삼신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254)
삼우제 한국일생의례사전: (p.271)
삼종지도 239
삼촌 240
삼춘 242
상객 244
상달고사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71)
상례 245
상속 248
상식 한국일생의례사전: (p.288)
상장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298)
상주 252
상피제 254
새벽문안 한국일생의례사전: (p.303)
생신제 한국일생의례사전: (p.304)
서양자 255
서얼 256
서옥제 258
석탈해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361)
선계 259
선산 260
선영 선산 260
선원보첩 262
성년식 262
성년의 날 한국일생의례사전: (p.316)
성묘 265
성씨 266
성주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307)
세 대 130
세대 대 130
세배 269
세습 270
소목 272
소문중 274
손 없는 색시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392)
손자녀 손주 275
손주 275
수양자 277
수연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333)
수정가족 279
승중 280
시묘살이 281
시아버지 283
시어머니 285
시제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75)
시조신화 286
시집 288
시집살이 289
시집살이 노래 291
시집살이담 292
식게 295
식구 296
신랑다루기 한국일생의례사전: (p.356)
신방엿보기 한국일생의례사전: (p.358)
신부대 한국일생의례사전: (p.360)
신줏단지 한국일생의례사전: (p.364)

신혼여행 한국일생의례사전: (p.368)
쌍둥이 298
씨받이 299
씨족 300

ㅇ

아가씨 396
아내 398
아들 400
아들의 간 먹는 계모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495)
아랫목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78)
아명 402
아버지 403
아빠 아버지 403
아이고 답답 감장사야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333)
아저씨 405
아주머니 406
악형선제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02)
안거리·밖거리 408
안방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95)
안방물림 410
안채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499)
안택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500)
약혼 한국일생의례사전: (p.439)
양계 411
양아록 412
양육비 413
양자 414
양자문기 416
어린이날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63)
어머니 417
어머니 병 고친 효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10)
어머니 애인 찾아나선 효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10)
어버이날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64)
언니 418
엄마 어머니 417
엄부자모 420
업둥이 421
여름에 흥시 구한 효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16)
여우혈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21)
연애혼 422
연이와 버들도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26)
연좌제 423
열녀담 424
영혼결혼식 427
예기 428
오복제도 429
오빠 431
온조비류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48)
올벼심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504)
외가 432
외동 434
외손봉사 435
우물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64)
우애담 436
우연히 잡은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66)
움딸 438
위자료 438
위토 440
위패 한국일생의례사전: (p.476)
윗목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p.545)

유복친 441
유언 442
유월장 한국일생의례사전: (p.483)
유훈 443
윤회봉사 445
의례 447
의례경전통해 447
의례준칙 448
의좋은 동서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94)
의좋은 형제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95)
의혼 한국일생의례사전: (p.497)
이름 448
이모 451
이산가족 453
이혼 457
인척 459
일부다처제 461
일부일처제 462
일생의례 463
입양 467
입향시조 471

지읒 ㅈ

자 472
자녀 473
자매 475
자손 476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635)
작명 한국일생의례사전: (p.517)
장례 477
장모 481
장인 482
장자봉사 483
재산상속 485
재행 487
재혼 489
적장자우대상속 490
전실 자식 눈 뺀 계모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656)
절충혼 492
접동새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661)
정략결혼 493
정려 494
정상가족 496
정침 한국일생의례사전: (p.548)
제례 497
제사분할 500
제사상속 501
제사설화 502
조매 한국일생의례사전: (p.570)
조상 504
조상단지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592)
조상모시기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594)
조상숭배 507
조상신 509
조선호적령 511
조손가족 512
조카 514
조혼 517
족계 518
족내혼 519
족보 520

족외혼 523
종가 524
종계 족계 518
종법 527
종부 529
종손 531
종안 534
종택 535
종회 538
주독 한국일생의례사전: (p.587)
주몽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673)
주민등록법 540
준호구 542
중매혼 543
중시조 544
중이 된 며느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35)
중자봉사 546
증여 547
지렁이 삶아 봉양한 효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686)
직계가족 548
진주 낭군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43)
집성촌 동성촌 146
집안 가문 028

치읓 大

차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615)
참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618)
창녕조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07)
창씨개명 549
처가 552
처가살이 553
천도복숭아 따온 효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14)
천신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650)
천인천자문 554
천자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17)
첩 555
첩자봉사 556
초국적가족 558
초분 한국일생의례사전: (p.639)
촌수 559
추도식 561
출가외인 563
출계 564
출생의례 566
충주어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34)
친가 569
친권 571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39)
친영 572
친정 574
친정 모친 죽은 소식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66)
친족 575
친척 친족 575
칠거지악 579
칠출 칠거지악 579
콩쥐팥쥐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44)

티읕 E

태교신기 580
태명 581

택호 582
통과의례 582
통혼권 587

피읖 ㅍ

파보 대동보 132
파시조 589
파양 590
파종가 592
파평윤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59)
팔고조도 594
평강채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62)
피휘 기휘 109

히흫 ㅎ

하음봉씨시조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70)
한부모가족 595
할머니 597
할아버지 598
합장 한국일생의례사전: (p.711)
항렬 600
해동속소학 601
해외입양 603
핵가족 605
행실도 607
허여문기 610
허황옥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91)
현구고례 611
현모양처 615
혈연 616
혈족 618
혈통 619
형 620
형님 622
형님 형님 사촌 형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500)
형망제급 624
형사취수제 625
형제 626
형제투금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795)
호 627
호구단자 629
호구조사규칙 631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00)
호적 632
호적법 636
호적부 637
호적표 639
호주상속 641
호주제 642
혼례 644
혼례식 한국일생의례사전: (p.739)
혼반 649
혼사계 한국일생의례사전: (p.746)
혼외자 651
혼인 652
혼인신고 656
혼주 658
흘어미산성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08)
흥수설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08)
화수회 종회 538

화회문기 659
확대가족 660
회갑 662
회갑상 한국일생의례사전: (p.766)
회혼례 한국일생의례사전: (p.771)
효 한국일생의례사전: (p.775)
효녀 664
효녀 지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16)
효부 665
효부와 호랑이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16)
효불효다리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17)
효자 666
효자도 668
효자동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818)
효제 671
효행담 673
희생효설화 675

아가씨

정의 손아래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친족용어.

내용 '시누이'는 남편의 동기간同氣間 중 여자 형제, 즉 자매姉妹를 가리킨다. 반대로 시누이에게 남자 형제의 아내는 '올케'가 된다. 시누이와 올케를 아울러 '시누이올케 또는 시누올케'라고 한다. 시누이올케는 남편과의 혼인 혹은 남형제의 혼인을 통해 맺어진 인척姻戚 관계이다.

시누이는 남편과의 연령 관계에 따라 손위 시누이와 손아래 시누이로 구분된다. 올케 입장에서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손위 시누이에게는 '형님', 나이가 적은 손아래 시누이에게는 '아가씨'라고 한다. 손아래 시누이는 오라버니의 아내를 '오라버니댁' 또는 '새언니'라 하고, 손위 시누이는 남동생의 아내를 '동생댁' 또는 '올케'라고 부른다. 이에 대응하여 남편의 형인 시숙媤叔/시아주버니에게는 '아주버님', 남동생인 시동생媤同生에게는 '도련님'이라고 한다. 시동생은 형의 아내를 '형수(님/씨)'라 하고, 시아주버니는 동생의 아내를 '제수(씨)'라 부른다.

손위 시누이와 시아주버니의 직접 호칭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반면에 손아래 시누이와 시동생의 직접 호칭은 결혼 전후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아래 시누이는 결혼 전에는 '아가씨/애기씨'로 불리다가 결혼 후에는 '아가씨'로 계속 호칭되기도 하지만 '남편 성+서방댁' 등으로 호칭이 바뀌기도 한다. 시동생은 결혼 전에는 '도련님'으로 불리다가 결혼 후에는 '서방님' 등으로 호칭이 바뀐다.

한국의 남성 중심 부계가족 아래 며느리의 시집살이에서 시어머니 다음으로 어려운 사람이 시누이이다. 손위 시누이는 며느리가 시집오기 이전에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손아래 시누이였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은 시누이와 올케 사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표현이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①시누이와 그 배우자 ②남형제와 그 배우자에 대한 친척용어를 연령에 따라 친척지칭과 친척호칭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경기 양평	① 시누이와 배우자	손위	시누님	성님	
			시누님남편	아재	'고모부님/아재'로 변화가 일어남
		손아래	시누이	애기씨	'고모/애기씨'로 변화가 일어남 혼인 전에도 '애기씨'로 부름
			시누이남편	아재	'고모부/아재'로 변화가 일어남
	② 남형제와 배우자	손위	오라버니	오라버님/오라버니	혼인 전에는 '오빠'로 부름
			(손위)올케	언니	
		손아래	(남)동생	동생	혼인 전에는 이름을 부름
			(손아래)올케	올케	
인천 강화	① 시누이와 배우자	손위	시누님	성님	
			시누님남편	아주버니	
		손아래	시누이	누이/아이이름+고모	혼인 전의 호칭은 '아가씨' 또는 '작은애기씨'가 사용됨
			시누이남편	아주버이	
	② 남형제와 배우자	손위	오라버니	오라버니/오빠	연령이 비슷하면 호칭으로는 '오빠'가 주로 사용됨
			오라번댁	오라번댁	
		손아래	동생	오라범	혼인 전의 호칭으로는 이름이 사용됨
			오라범댁	오라범댁	
강원 삼척	① 시누이와 배우자	손위	시누님	형님	
			시누양반	아저씨/고모부	
		손아래	시누	시누/아기씨	혼인 전에도 동일한 호칭을 사용함
			시누양반	아재/고모부	

	②	남형제와 배우자	손위	오라버님	오라버님	어려서는 '오빠'를 쓰고, 화자가 처녀가 되면 주로 '오라버이'를 쓰다가 혼인하면 '오라버님'으로 바꿈
				오라부댁/올게	형님	
			손아래	남동상	동상	혼인 전에는 이름을 부름
				동상아댁/올게	동상아댁	
충북 청주(청원)	①	시누이와 배우자	손위	큰시누님	형님	
				(큰)시누남편	아자씨/고무부	
			손아래	시누	출가지명+네	혼인 전 어려서는 '애기씨', 크면 '작은아씨'로 호칭
				시누남편	아자씨/고무부	'성+서방'(호칭)은 안 씀
	②	남형제와 배우자	손위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려서는 '오빠'를 쓰고 상대방이 나이가 들면 '오라버니'로 바꿈
				올케언니	언니/성	'언니'가 '성'보다 더 대접하는 말임
			손아래	(남)동생	이름	
				올케	올케	
전북 고창	①	시누이와 배우자	손위	큰시누우	성님	
				큰시누우남편	성+서방+양반	
			손아래	작은시누우	남편 성+서방+덕	혼인 전에는 '애기씨'
				작은시누우 남편	성+서방	
	②	남형제와 배우자	손위	오빠	오빠	
				오라부덕	성님	
			손아래	(남)동상	이름/동상	
				동상아덕	동상아덕	
경북 영덕 영해	①	시누이와 배우자	손위	시누우	형님	
				시매부	새아지뱀	
			손아래	시누우	남편 성+서방댁	
				시매부	성+서방	
	②	남형제와 배우자	손위	백남	오라배	
				동생으댁	새형님	
			손아래	제남	이름	
				동생으댁	새댁	
경남 함양	①	시누이와 배우자	손위	(큰)시누우/시매	형님	
				시누우 남편	서방님	
			손아래	(작은)시누우	남편 성+서방댁	
				시누우 남편	성+서방(님)	
	②	남형제와 배우자	손위	백남	오빠	
				오라버니댁	형님	
			손아래	(남)동생	이름	
				동생의 댁	새댁	
부산 동래	①	시누이와 배우자	손위	큰시누부	성님	
				(큰)시누부 남편	아주부이	
			손아래	작은시누부	남편 성+서방+땍이	혼인 전의 호칭은 '애싸'
				(작은)시누부 남편	아재/성+서방	
	②	남형제와 배우자	손위	오빠	오라부이/오빠	어려서는 호칭으로 주로 '오빠'를 씀
				올끼(셍이)	(올끼)셍이	
			손아래	(남)동생	이름/동성	
				올끼	올끼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특징 및 의의 근래에는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일부 친족용어의 성차별적 사용에 대한 비판이 있다. 혼입混入한 여성이 부계친夫係親에게 사용하는 아가씨, 도련님 등이 남성 중심의 부계사회에서 만들어진 차별적 표현이어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가족에서는 세대나 연령에 따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존칭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시가媤家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며느리에게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매개로 한 친족호칭어의 사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올케가 손아래 시누이를 '아가씨'가 아니라 '고모'로 호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칭 변화는 친족용어의 성차별적 사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관련된 측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참고문헌 한국어 호칭어 체계(박정운,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1997),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의 언어 민속지-강원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서편(왕한석, 교문사,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충청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아내

정의 혼인한 부부 중 여성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

내용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결혼한 여성을 말하거나 부부 중 여성인 배우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본가는 처가妻家가 되며, 아내의 부계 친족을 처족妻族 또는 처당妻黨이라 한다.

아내를 가리키는 용어는 시기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아내와 관련된 호칭 사용에는 아내의 지위가 남편이나 시가媤家 식구에 비해 낮았던 점,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일컫는 것을 무례하다 보고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기를 꺼렸던 한국인의 관습, 부부 이외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처를 안댁·마누라·계집·안해·안사람·색시·처·여편네 등과 같이 명료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쳤다.

현재는 부부간에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과거로 갈수록 부부 둘만 있을 때도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를 이름으로 호칭하지 않았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부를 때 이름을 넣는 경우는 아내의 이름이 아니라 자녀의 이름을 붙여 '아무개 엄마'라고 하였다. 남편이 부모 앞에서 아내를 언급할 때도 주로 자녀의 이름을 붙이되 낮춰서 '아무개 어멈'이라고 하거나 줄여서 '어멈'이라고 하였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사망한 경우 남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망처亡妻' '망실亡室'이라 하여 '망亡' 자를 붙이고, 아내 제사를 지낼 때는 '고실故室'이라 썼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일 때는 살아 있으면 '영부인令夫人'이라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고영부인故令夫人' '고현각故賢閣'이라 호칭하였다.

한편 혼인한 여성을 가리킬 때 남편의 성씨를 붙여서 부르는 방식도 존재하였다. 즉 김씨金氏와 혼인하여 그의 아내가 된 여성을 '김실金室'이라 부르고, 이씨李氏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를 '이과부李寡婦'라 부르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호칭이 사용되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내의 본래 성씨가 혼인 이후 남편의 성씨로 바뀌는 일은 없었다.

아내는 남편과 혼인함으로써 생긴 지위이므로 이혼하면 아내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현재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혼인과 이혼이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양반층에서는 사실상 이혼이 불가능하였다. 혼인이 자유의지에 따른 개인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 결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남편이 작은 부인, 즉 첩妾을 둘 수는 있었으나 함부로 아내를 내칠 수는 없었다. 한 가정에 정식부인, 즉 적처嫡妻는 한 사람이었고 정식부인에게서 얻은 아들만이 차별받지 않고 양반으로서의 권한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의 안주인이자 가계 계승자의 어머니였던 아내는 가정적·사회적으로 확고한 지위에 있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혼인한 아내는 처음에는 가장 낮은 지위에서 시가 생활을 시작하였다. 아내가 '시집가서는 개나 소에게까지 말을 높여야 한다.'거나 '눈멀어 삼 년 귀먹어 삼 년 벙어리 삼 년'으로 살아야 한다

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강점기까지도 한국에서 혼인이란 남편과 아내가 독립된 가정을 새로 꾸리는 일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부계가족, 즉 시가媤家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동일한 항렬行列 또는 그보다 윗세대의 시가 사람들에게는 시아버지·시어머니·시숙·시동생 등과 같이 '시媤'자를 붙여서 구별하였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해도 시가 식구들을 높여서 대우하였다. 이를테면 남편의 동생은 자신보다 연하자이지만 남동생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 여동생은 '아가씨' 등으로 예우해야 하였다. 그러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비혈연자인 동서들끼리는 상황이 달랐다. 윗동서 즉 남편 형의 아내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다 하더라도 윗사람으로 대해야 하고, 아랫동서 즉 남편 동생의 아내가 자신보다 연장자여도 아랫사람으로 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시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시가 식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적 질서가 확산되면서 유교 문화는 가족·친족 체계를 포함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층만이 아니라 하층 노비 신분에까지 유교적 가부장제 관념이 수용되어 나갔다. 이러한 영향은 조선시대로 끝나지 않았고, 부계혈통 중심의 관념은 현재까지도 한국인의 행동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가족 질서가 확립되면서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가정 내에서 권한이 더 많은 존재로 대우받았다. 삼종지도三從之道나 여필종부女必從夫 등으로 표현되듯이 아내가 가계계승자인 남편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것을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영향은 주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분과 경제력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부부라 하더라도 남녀가 주거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아내는 안채에, 남편은 사랑채에 머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안채는 대청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안방은 그 집 주인의 아내, 즉 할아버지가 가장이면 할머니, 아버지가 가장이면 어머니가 사용하였다. 건넌방은 딸이나 며느리가 생활하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아내는 가족들의 음식과 의복 마련, 청소 등의 주거 관리 등 가계를 운영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한다. 이때 아내는 남편에 대한 배우자 역할보다는 며느리로서 시부모나 시조부모에 대한 역할, 즉 시어른을 봉양하고 제사를 받드는 일을 더 중시해야 하였다. 아울러 18세기 이후에는 자식, 그중에서도 아들을 낳는 일은 아내의 절대적 의무가 되었다. 아내의 '칠거지악七去之惡' 중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허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는 집안의 대를 끊기게 하고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없게 하는 불효자이자 죄인으로 취급되었다.

조선 중기까지는 조상의 제사를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위나 외손이 지내는 일이 드물지 않아서 반드시 아들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계의 적장자嫡長子로 제사가 계승되는 방식이 정착하면서 윤회봉사와 외손봉사는 점차 자취를 감췄다. 이에 따라 아내로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가족·친족 내 압박은 점점 커졌다.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 반드시 아내에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임은 대개 남편이 아닌 아내의 탓이 되었다. 이에 아들이 없는 부인은 치성을 드리고 약이나 음식을 섭취하는 등 득남得男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였다.

예식장 등에서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에 혼례는 신붓집에서 거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조선 중기까지도 예식을 마친 아내는 자신의 본가에서 바로 시가로 옮겨가지 않았다. 대개 아내는 친정에 머무르고 남편이 자신의 집을 오가거나 아내와 함께 처가에서 살았다. 비록 아내가 친정에 머무르는 기간은 점차 짧아졌지만 이러한 관습은 19세까지도 지속되었고, '해묵이'라 하여 혼례를 치른 후 아내가 친정에서 1~2년 지내는 일도 있었다.

한편 신분에 따라 다르지만 조선시대 양반의 경우 남편은 아내가 사망하고 3년이 지나면 재혼이 가능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재혼을 원한다거나 마흔이 넘었지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 재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하였다 해도 재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일부종사一夫從事 또는 불경이부不更二夫라 하여 아내는 처음 혼인한 한 사람의 남편을 평생 섬기고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권

장되는 부덕婦德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어 혼자가 된 청상과부는 물론 심한 경우 남편 될 사람의 얼굴도 본 적 없고 혼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정혼자定婚者가 사망한 여성도 남은 생을 수절하며 혼자 살아야 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여성이 혼인하면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하여 '살아도 그 집 귀신,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딸들을 교육했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한 후 새로 남편을 맞는 일은 아내 자신은 물론 아내의 친정과 시가 모두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다. 특히 시가의 경우에는 자손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 따르면 재가再嫁하거나 실행失行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서얼자손은 문과·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즉 재혼한 여성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나라에서 금한 것이다.

이러한 조처는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기를 원하는 집안에는 타격이 컸다. 아울러 조선시대 내내 국가적·사회적으로 '열녀烈女'가 칭송되고, 열녀를 배출한 가문에는 붉은색의 정려문旌閭門을 세우고 요역徭役을 면제하는 혜택을 베풀었음을 고려하면 양반층의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하였다 해도 아내의 재혼은 국가적·사회적으로 금지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근대 이후에는 여성이 재혼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여성운동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내의 법적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였다.

특징 및 의의 대가족제도에서의 아내는 시댁 식구를 봉양하는 의무가 강조되었던 반면 근대화 과정을 통해 소가족제도로 이행한 후에는 가사를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는 '현모양처' 역할이 기대되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시된 현재에는 역할과 의무를 남편과 평등하게 분담하여 새로운 아내 관념이 형성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어 부부호칭의 사회언어학적 고찰(이옥련, 아시아여성연구26,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87), 조선 양반의 일생(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글항아리, 2009), 조선시대 생활사2(한국고문서학회, 역사비평사, 2000),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한국인의 친족호칭과 친족조직(최재석, 아세아연구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필자 이대화(李大和)

아들

정의 부부가 낳거나 입양한 자녀 가운데 남자를 가리키는 말.

내용 아들은 부부가 낳거나 입양한 자녀 가운데 남자를 부모에 상대하여 이르는 순우리말로, 딸과 대비되는 개념어이다. 부모가 아들을 지칭하거나 호칭하는 친족용어는 아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 명의 아들과 부모 사이에서 부모는 아들을 이름이나 '아들' '아들내미' '내 새끼' 등으로 부른다. 아들이 두 명 이상인 경우 부모는 이름이나 태어난 순서에 따라 '첫째 아들, 장남長男, 큰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 차남次男, 작은아들' '셋째 아들' '막내아들' 등으로 부른다. 부모가 아들을 직접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아들이라고 지칭한다. 또한 부모는 아들을 입양 여부에 따라 친아들과 양아들로 구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길렀다는 의미로 수양아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종법宗法에 기초한 유교적 가족 질서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었다. 이에 가家의 계승자인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여성들의 의무와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 때문에 20세기 후반까지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가족 내에서 부인으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지위가 불안하였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아들을 낳은 여성의 지위는 딸만 낳은 여성의 지위보다 높았으며,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여성의 지위는 더욱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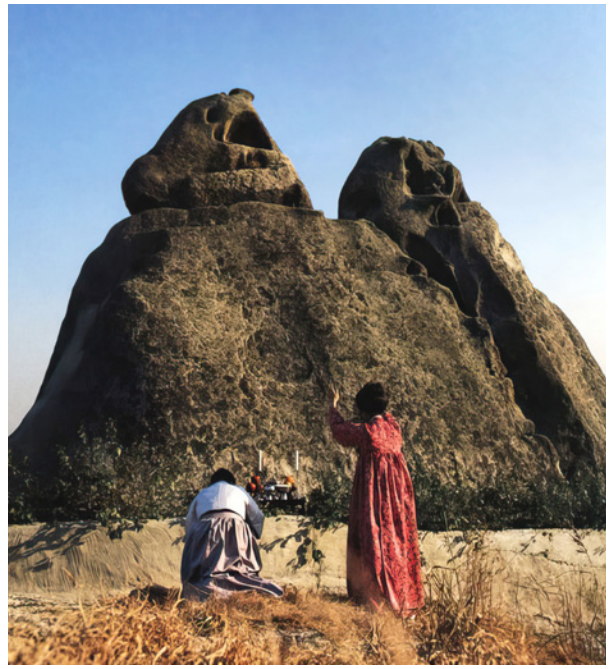
19세기 이규경李圭景(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

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아들을 많이 둔 데 대한 변증설'에서 "대개 아들이 많으면 복력福力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한다."라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아들이 4~5명이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7~8명이면 기이하다고 여기고, 10여 명이면 세상에 드문 예라 하여 큰 복[弘福]이라고 칭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아들이 많을수록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힘이 강해지고, 다복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이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는 남아선호男兒選好 관념이 강해졌다. 유교 영향으로 부모는 가家의 계승과 노후보장을 위해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여성들은 부처[佛]·칠성七星·제석帝釋 신들에게 아들 하나를 꼭 점지해 주길 빌었다. 아들 낳기를 바라는 기자祈子 행위가 간절해지면서 기자 장소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였고, 기자 대상 또한 다양해졌다. 서울 인왕산 기슭의 선바위와 남산의 국사당은 기자 장소로 유명해졌다. 이곳에는 아들을 낳고 싶은 소원을 빌러 오는 여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선바위는 높이가 7~8*m*, 앞 뒤 폭이 3*m* 내외로 두 개의 큰 바위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모습이 남근 형상을 하고 있어 기자암祈子岩으로 유명하다.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여성이 영험한 선바위에 작은 돌을 붙이면 효험이 더욱 크다 하여 작은 돌을 문질러서 붙인 자국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유교적 종법 질서를 사회 구성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아들이 집안 계승자라는 의식은 점점 강해졌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부계父系 계승 의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부계 직계가족이 가장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았다. 조선시대에는 여성 배우자의 지위를 처妻와 첩妾으로 구분한 다음 처가 낳은 적자嫡子와 첩이 낳은 서자庶子를 차별하였다. 처가 낳은 아들 가운데에서도 태어난 순서를 중시하였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맏아들 또는 장자長子라 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지차자之次子로 구분하였다.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는 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장자에게 계승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가족 내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의식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 주는 방식도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에서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는 장자우대불균등상속長子優待不均等相續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족보의 기재 방식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족보에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적지 않고 아들을 먼저 적고 딸을 그다음 순서로 적는 선남후녀先男後女 기재 방식으로 변하였다.



선바위 | 서울 종로구 | 문화재청

장자인 첫째 아들은 혼인 후에도 부모와 함께 계속 살았고, 둘째 아들 이하는 혼인 후 부모와 잠시 살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부모를 떠나 따로 살림을 차려 생활하였다. 혼인 후 거주방식에 따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하는 큰집과 작은집이라는 친족관계를 형성하였다.

맏아들인 장자로만 대代를 이어 나간 집을 종가宗家 또는 종갓집이라고 한다. 종가의 사당에는 사대 조상이 모셔졌고, 사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대봉사四代奉祀가 확산되면서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 이내의 아들들은 조상제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친족관계를 맺고 교류하였다. 그리고 사대 이상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부계친족집단인 문중門中이 발달하였다. 원칙적으로 문중의 구성원 자격은 아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나 2005년 용인이씨龍仁李氏 사맹공파의 출가한 딸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종중원 자격을 인정받으면서 아

들에게만 주어지던 특권적 지위가 사라지게 되었다.

부모에 대한 아들의 태도는 효孝를 통해 드러난다. 조선시대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 펴낸 대표적인 유교 윤리 교과서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효자孝子는 부모가 중병에 걸렸을 때 손가락을 잘라 나오는 피를 부모의 입에 넣어 마시게 하거나 볼기의 살을 베어 약으로 써서 부모를 살렸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국가에서는 효행孝行이 뛰어난 효자를 선정하여 효자가 사는 집 입구에 붉은 칠을 한 정문旌門을 세워 주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의 묘墓 옆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삼년상三年喪을 마치는 시묘侍墓살이는 사회적으로 효자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효행이었다.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뜻의 '엄부자모嚴父慈母'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부모와 아들 사이 관계로는 부자 관계와 모자 관계가 있다. 그 가운데 부자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발을 뻗고 앉지 못하며, 눕지 못하였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엄하게 알고 존경한다는 표시였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의 행동이 더 편안해지고, 형 앞에서는 조금 더 쉬워진다. 한국 속담에 '아버지는 아들이 잘났다고 하면 기뻐하고 형은 아우가 더 낫다고 하면 노한다.'가 있다. 이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형제 사이의 우애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딸보다 아들을 중시하자 여성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 출산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1962년 국가에서는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산아제한産兒制限 정책을 실시하였고, 아들 선호로 인한 자녀 수 증가와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1970년대 가족계획 표어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정부의 한 자녀 정책과 근대 의학 기술 발달로 여성의 임신 중에 태아의 성별을 미리 감별하여 딸만을 선택적으로 인공유산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여아 낙태 증가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1987년 11월 28일 〈의료법〉 제19조 2의 제2항으로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한국인의 강한 아들 선호는 가족 내의 성차별과 성비 불균형을 가져왔다.

특징 및 의의 유교적 종법 의식과 가족 질서 영향으로 자녀 가운데 딸보다 아들이 더 중시되었다. 그리고 아들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맏아들인 장자의 지위가 높았다. 아들 선호와 장남 우대는 혼인 후 거주방식과 재산상속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족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부자 관계가 최우선시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급격한 사회변화와 국가 정책으로 부부가 낳은 자녀의 수가 점점 줄면서 자녀 가운데 태어난 순서나 성별에 따른 차별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딸보다 기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딸을 선호하고 아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참고문헌 가족과 친족(이광규, 일조각, 1992), 서울 사람들의 생로병사(김지영 외, 서울역사편찬원, 2020), 서울의 문화재4(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1), 오주연문장전산고(이규경, 이재수 역, 불교문화재 한국고전번역원, 1982), 한국 가족계획의 역사(강준만, 인물과 사상124, 인물과사상사, 2008),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양의 여성 공간(최주희 외,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2021),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배은경, 시간여행, 2012).

필자 김지영(金志榮)

아명
兒名

정의 집안 혹은 이웃의 아이를 부르는 애칭.

내용 본명本名 외에도 이름은 자字와 호號, 별명別名, 시호諡號, 아명兒名, 예명藝名, 태명胎名 등 종류가 많다. 그 중 아명은 어린아이일 때 사용하는 애칭이다. 어린아이를 성장 단계에 따라 유명乳名—초명初名—소명小名 등으로 달리 부르고 동명童名, 소자小字, 해명咳名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명을 가장 널리 활용하였다.

일부에서는 관례 혹은 혼례로 나누어 그 이전 이름을 아명으로, 그 이후 이름을 성인명인 관명冠名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도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서당이나 학교에 가면 본명을 사용하였으므로 아명과 관명의 구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신라시대 실성왕實聖王의 왕비 명이 아류부인阿留夫人으로 아명과 비슷한 것을 보면 그 때까지 아명은 본명에서 분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백제 무왕武王의 서동薯童·서여薯蕷와 원효元曉의 서당誓幢이 소명小名으로 기록된 『삼국유사』에 의하면 아명은 삼국시대 말부터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층이 본명을 사용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일반화되고 조선 초기에 확립되었지만 하층인 노비는 조선 후기까지도 똥개同介 같은 비속어까지 존재하는 아명만으로 평생을 살았다. 더구나 여성은 혼인하면 타인에게 불리는 것을 꺼려서 가졌던 아명도 버리고 이름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09년 〈민적법〉 시행으로 모든 국민에게 본명 신고가 법제화되고 개명도 어려워지면서 일제강점기부터 아명 사용은 줄어든다. 근년 들어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져 귀한 아이를 비속어나 천명賤名 등으로 지칭할 이유도 없어지고, 특히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된 태명이 역할을 대신하면서 아명은 거의 사라졌다.

과거 경명사상敬名思想으로 피휘避諱가 존재하였으며, 관직이나 족보 등에만 본명을 사용하였다. 본명이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개운론開運論도 주장되면서 성명학姓名學이라는 작명 학문까지 존재한다. 하지만 이름이 천할수록 역신疫神의 시기猜忌 없이 오래 산다는 천명장수賤名長壽 사상 외에 아명은 성명학적 인식과 거리가 있었다. 아명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모나 집안 어른이 우리말로 가볍게 지어 집안이나 이웃 등 가까운 사이에서만 주로 사용하였을 뿐 사회생활에서 널리 활용된 인명은 아니었다.

상류층은 아명도 본명과 같이 태몽 등에 근거해 한자로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아의 아명은 높은 사망률과 천명장수 사상에 의해 개똥이·똘똘이·망아지 등의 천한 이름과 남성상을 강조한 바우·돌쇠 등 순우리말 아명을 많이 지었다. 고종高宗이 개똥이, 황희黃喜가 도야지일 정도로 천명장수 사상에 따른 아명 사용은 신분에 상관없이 널리 퍼져 있었다. 여아의 아명은 남아선호에 따른 분이·놈이·꼭지 등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징 및 의의 아명은 삼국시대 말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애칭이다. 1909년 〈민적법〉 시행 이전 여성과 하류층은 대부분 아명만 가졌으므로 그때까지 가장 일반화된 인명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명은 그 이후 본명 신고가 법제화되고 개명도 어려워지면서 줄어들고, 근년에는 아이가 더욱 귀해지고 태명이 활성화되면서 거의 사라졌다. 아명은 부모나 집안 어른이 순우리말로 지어서 사회생활이 아닌 집안 등 가까운 사이에서만 사용하였으며, 장수 사상에 의하여 상류층까지 천명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참고문헌 다명사회에서 일명사회로(오창현·류상윤, 한국문화인류학42-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9), 인명의 종류 고찰(권익기, 한국학연구82,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22), 한자차용고유인명 표기체계연구(최범훈,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필자 권익기(權益棋)

아버지

정의 자녀를 둔 남성의 호칭.

내용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남편이자 아버지는 가장家長 지위를 갖고 있었다. 인류학자 이광규는 가장에게 부여된 이른바 '가부장권家父長權'이 사회적으로 시인된 것이므로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하였다. 또한 자녀는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회적 안정을 구하는 관계로 보았다. 이를 근거로 부부관계보다 부자관계가 중요하며 부자관계가 대인관계의 중심이 된다고 보고 한국의 전통가족을 '부자중심적 가족'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의 부계친족父系親族 관념에서는 가계家系 계승을 특히 중시하기 때문에 결혼은 아들을 출산하여 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구조는 어머니를 매개로 하는 정서구조와 조화를 이루어 가족이 유지된다고 하였다. 즉 전근대의 아버지는 대외적으로 가족을 대표하는 동시에 가족들에게는 엄

한 존재로 여겨졌다. 부계친족 관념에 의한 가부장권은 근대를 겪으며 더욱 공고해졌으며, 현재까지도 기본 특성이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를 지칭하는 호칭 역시 매우 다양하다. 자녀가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호칭은 '아빠' '아버지' '아버님'의 세 가지이다. 반면 간접적으로 아버지를 지칭하는 호칭은 매우 다양한데 최재석의 연구에 따르면 39개나 된다. 대략 분류하면 ①생존하는 자신의 아버지 ②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 ③생존하는 남의 아버지 ④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로 나눌 수 있다. ①의 사례로는 엄친嚴親, 가친家親, 가엄家嚴, 부친父親 등이 있다. ②에는 선고先考, 선친先親 등이 있다. ③은 춘부장椿府丈, 춘당椿堂, 영존令尊 등이 있다. ④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선대인先大人, 선고장先考丈, 선장先丈, 선부군先父君 등이 있다. 이외에도 화자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경우 '아범'이나 '애비' 등의 표현도 사용된다.

효 관념이 중시되고 유교적 예의범절이 강조되던 시기에는 네 가지 범주의 호칭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이자 상식으로 여겼다. 이 또한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효를 매우 중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근대 이후에는 일본 민법에 의한 가독권家督權, 즉 호주권戶主權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래 조선시대 재산상속은 부부별산제에 가까워서 아버지와 어머니 재산을 각자의 결정에 따라 상속하였다. 그런데 민법에서 재산 관리를 남편이 하는 '관리공통제'를 취하고, 귀속불분명 재산에 대해 아버지(남편)의 소유로 추정하는 등 불평등한 측면이 있었다. 그 기원이 일제강점기의 가家 관념에 입각한 법률해석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광복 이후 민법 제·개정 과정에서 부부별산제를 도입하고 귀속불분명 재산 역시 부부공동소유로 추정하는 등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녀, 특히 아들에 대한 교육 또한 아버지의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였다. 부자관계, 특히 장남의 경우라면 가장과 가계 상속자라는 관계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의무가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자상함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딸보다는 아들에게, 그 가운데에서도 장남에게 교육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 대신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은 산업화와 이농이 본격화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가족 구성의 중심축이 가부장적인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부자관계보다는 부부관계가 가족의 중추적 관계가 되었다. 따라서 가계와 지위 계승에 중점을 두었던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이전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로 진전되면서 역할도 달라졌다.

아버지인 남성은 노동을 통해 가정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책임지고, 어머니인 여성은 전업주부로서 경제적으로 아버지의 피부양자인 동시에 가계 운용과 교육을 떠맡았다. 전통적 가족의 가부장적 관념과 아버지의 경제적 책임이 맞물리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상승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계운영과 자녀교육에 아버지가 간여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면서 정서적 관계는 서서히 약화되고, 엄하고 권위적인 측면이 굳어졌다.

20세기 말이 되면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며 사회 진출도 크게 늘어나고,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가계운영과 자녀양육에 무관심했던 산업화 초기의 아버지 역할은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는 전통적 관념과 근대적 가족이 형성한 아버지 역할에서 탈피하여 평등한 부부관계 및 자녀교육, 정서적 유대관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모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아버지는 한 가족의 중심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가족을 대표하는 동시에 가계 계승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녀를 교육하는 책임도 부여되었다. 따라서 부자관계는 전통적 가족관계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아버지의 가족 내 역할이 변화하였다. 전통적 가부장제 관념이 서서히 약화되는 가운데 가계소득을 책임지는 경제적 역할은 강화된 반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약해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가족관계가 부부관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아버지의 역할과 비중에 대해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한국가족연구(최재석, 민중서관, 1966),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인의 친족호칭과 친족조직(최재석, 아세아연구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대화(李大和)

아저씨

정의 부모와 같은 항렬에서 아버지의 친형제를 제외한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친족용어.

내용 '아저씨'는 '아주머니'와 함께 친척 중에서 가장 많은 친족원이 포함되는 넓은 범주의 친족용어이다. 숙항叔行에서 아버지의 친형제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남자를 두루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아재' 또는 '아재비'라고도 한다. '아저씨'가 사용되는 사례를 세 가지 구체적인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5촌 종숙從叔/당숙堂叔, 외숙外叔/외삼촌外三寸 등 부모와 같은 항렬行列에 있는 혈연관계의 남자를 '아저씨'라고 호칭 및 지칭할 수 있다. 5촌 이상의 부계父系친족뿐만 아니라 모계母系친족으로 연결된 모든 남자 친척을 '아저씨'로 부를 수 있다.

②아버지의 친형제 중 미혼의 숙부叔父를 '아저씨'라고 호칭 및 지칭할 수 있다. 아버지의 친형제는 같은 항렬에 있는 남자들과 달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로 일컬어지며 '아저씨'로 불리는 친척 범주에서 보통 제외되지만 아버지의 남동생은 예외적으로 결혼 전에는 '아저씨/아재'로 불리기도 한다.

③고모부姑母夫, 이모부姨母夫 등 부모와 같은 항렬에 있는 인척 관계의 남자를 '아저씨'라고 호칭 및 지칭할 수 있다. 고유어 친족용어 '아저씨'는 숙항叔行의 남자 친척에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한자어 친족용어로 아재비 숙叔 자에 대응한다. 고모부와 이모부의 이칭이 각각 고숙姑叔과 이숙姨叔으로, '아저씨'로 불리는 친척 범주에 포함된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①5촌의 종숙, 3촌의 외숙 ②미혼의 숙부叔父 ③고모부, 이모부에 대한 친척용어를 친척지칭과 친척호칭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경기 양평	①	5촌 종숙	당숙	아저씨	혼인 전에는 '아재'로 부름
		3촌 외숙	외숙부	오삼춘	혼인 전에도 '오삼춘'으로 부름
	②	미혼의 숙부	숙부	작은아버지/삼춘	혼인 전에는 '아재'로 부름
	③	고모부	고모부	아저씨	
		이모부	이모부	이모부	
강원 삼척	①	5촌 종숙	당숙	아저씨/아재	'아재'는 연하의 당숙에 대한 호칭인데 연상의 당숙도 혼인 전에는 '아재'로 부름
		3촌 외숙	외삼촌	외삼촌	
	②	미혼의 숙부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은 '삼촌'-
	③	고모부	고모부	고모부	
		이모부	이모부	이모부	
충북 청주(청원)	①	5촌 종숙	오촌아자씨/당숙	당숙/아자씨	
		3촌 외숙	외삼촌/오삼촌	외삼촌/오삼촌	혼인 전의 호칭 및 지칭도 동일함
	②	미혼의 숙부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은 '삼촌'
	③	고모부	고무부/고무아자씨	고무부/고무아자씨	
		이모부	이모부/이모아자씨	이모부/이모아자씨	
전북 고창	①	5촌 종숙	(당숙)	아재	'당숙'으로 변화가 일어남 ( ) 안의 지칭은 그리 널리 쓰이지 않는 형태를 가리킴
		3촌 외숙	외아재	외아재	'외삼춘'으로 변화가 일어남
	②	미혼의 숙부	작은아부지	작은아부지	혼인 전 지칭 및 호칭은 '아재'임
	③	고모부	고모보	고모보	
		이모부	이모보	이모보	
전남 진도 조도	①	5촌 종숙	오촌삼춘	삼춘	집안이 넓지 않은 집은 아버지와의 연령관계에 따라 '큰아배' '작은아배'로 부르기도 함

		3촌 외숙	외삼춘	삼춘	혼인 전도 동일함
	②	미혼의 숙부	작은아배	작은아배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도 동일함
	③	고모부	작숙	작숙	
		이모부	이숙	삼춘	
경북 영덕 영해	①	5촌 종숙	종숙	아재	
		3촌 외숙	외숙	외아재	
	②	미혼의 숙부	숙부	작은아배	
	③	고모부	고모부	새아재	
		이모부	이모부	새아재	
경남 함양	①	5촌 종숙	당숙	아저씨	
		3촌 외숙	외숙	외아저씨	
	②	미혼의 숙부	숙부	작은아버지	
	③	고모부	고모부	아저씨	
		이모부	이모부	아저씨	
경남 통영 사량도	①	5촌 종숙	오촌아재비	아재비	연하에게는 '아재'를 쓰기도 함
		3촌 외숙	외삼춘	외삼춘	
	②	미혼의 숙부	작은아부지/삼춘	작은아부지/삼춘	혼인 전에는 '삼춘'
	③	고모부	작숙	작숙	'고무부'로 변화가 일어남
		이모부	이숙	이숙	'이모부'로 변화가 일어남
부산 동래	①	5촌 종숙	오촌아재씨	큰아부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종숙
			오촌아재씨	아재씨	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은 종숙 이전 시기에 호칭 및 지칭으로 '아재'를 썼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3촌 외숙	외삼촌	외삼촌	
	②	미혼의 숙부	작은아부지/숙부	작은아부지	혼인 전의 호칭 및 지칭은 '삼촌'
	③	고모부	고무부	고무부	아이들은 호칭 및 지칭으로 '고무아부지'라고도 부름
		이모부	이모부	이모부	아이들은 호칭 및 지칭으로 '이모아부지'라고도 부름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특징 및 의의 동일한 친족원에 대한 '아저씨'와 '아재'의 두 변이형이 존대의 정도나 연령 차이, 결혼 유무 등과의 관계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고유어 친척 용어 '아저씨' 대신 당숙, 외삼촌 등 한자어 친척 지칭의 사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저씨'는 비친척관계에서 성인 남자를 예사롭게 이르거나 부르는 의사친척용어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언어 민속지-강원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서편(왕한석, 교문사,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충청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호칭과 지칭 예절(류재봉,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아주머니

정의 부모와 같은 항렬에서 아버지 친형제의 배우자를 제외한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친족용어.

내용 '아주머니'는 '아저씨'와 함께 친척 중에서 가장 많은 친족원이 포함되는 넓은 범주의 친족용어이다. 숙항叔行에서 아버지 친형제의 배우자인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여자를 두루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머니'는 남자 화자가 동항同行에서 형이나 손위 처남의 아내를 부르는 말로도 사용되어 두 개의 항렬行列에 걸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친족용어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 '아짐' 또는 '아지매'라고 한다. '아주머니'가 사용되는 사례를 세 가지 구체적인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고모姑母, 이모姨母, 외숙모外叔母, 5촌 종숙모從叔母/당숙모堂叔母 등 부모와 같은 항렬에 있는 혈연 및 인척관계의 여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 및 지칭할 수 있다. 부계父系와 모계친족뿐만 아니라 부계친夫系親, 처계친妻系親으로 연결된 모든 여자 친척을 '아주머니'로 부를 수 있다.

②남자가 사촌형四寸兄, 고종사촌형姑從四寸兄, 외사촌형外四寸兄, 이종사촌형姨從四寸兄 등 동항의 형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兄嫂]를 '아주머니'로 호칭 및 지칭할 수 있다.

③남자가 친형親兄의 아내[兄嫂] 그리고 아내의 남자 형제, 즉 손위 처남妻男의 아내[妻男宅]를 '아주머니'로 호칭 및 지칭할 수 있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①고모, 이모, 외숙모, 종숙모 ②종형수, 고종형수, 외종형수, 이종형수 ③형수, 처남댁에 대한 친척용어를 친척지칭과 친척호칭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경기 양평	①	고모	고모	아주머니	혼인 전에는 '아줌마'로 부름
		이모	이모	이모	혼인 전에도 '이모'로 부름
		외숙모	외숙모	외숙모	외숙모
		종숙모	당숙모	아주머니	
	②	종형수	사촌형수	아주머니/형수님	
		고종형수	고종사촌형수	아주머니/형수님	
		외종형수	외사촌형수	아주머니/형수님	
		이종형수	이종사촌형수	아주머니/형수님	
	③	형수	형수	아주머니/형수님	
		처남댁	처남에댁	처남에댁/ 아주머니	손아래 처남의 처도 동일하게 부름
강원 삼척	①	고모	고모	고모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도 '고모'
		이모	이모	이모	
		외숙모	외숙모	외숙모	
		종숙모	당숙모	아주머니	
	②	종형수	종형수/사촌형수	형수님	
		고종형수	고종사촌형수	형수님	
		외종형수	외사촌형수	형수님	
		이종형수	이종사촌형수	형수님	
	③	형수	형수	형수님	
		처남댁	(큰)처남으댁	처남으댁	
충북 청주(청원)	①	고모	고무	고무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도 '고무'
		이모	이모	이모	혼인 전의 지칭 및 호칭도 '이모'
		외숙모	외숙모	외숙모	
		종숙모	오춘아주머니/ 당숙모	당숙모/아주머니	
	②	종형수	사촌형수	아주머니/형수님	
		고종형수	고종사촌형수	아주머니/형수님	
		외종형수	외사촌형수	아주머니/형수님	
		이종형수	이종사촌형수	아주머니/형수님	
	③	형수	형수	아주머니/형수님	
		처남댁	큰처남으댁	아주머니	
			처남으댁	아주머니/ 처남으댁	
전북 고창	①	고모	고모	고모	혼인 전 지칭 및 호칭도 동일함
		이모	이모	이모	혼인 전도 동일함
		외숙모	외아짐	외아짐	'외숙모'로 변화가 일어남
		종숙모	(당숙모)	아짐	'당숙모'로 변화가 일어남 *( ) 안의 지칭은 그리 널리 쓰이지 않는 형태를 가리킴
	②	종형수	종형수	아짐	
		고종형수	내종형수	아짐	
		외종형수	외종형수	아짐	
		이종형수	이종형수	아짐	
	③	형수	형수	아짐	
		처남댁	처남으덕	처남으덕	
전남 진도 조도	①	고모	고무	고무	혼인 전도 동일함
		이모	이모	이모	혼인 전도 동일함
		외숙모	외아짐	아짐	
		종숙모	오춘아짐	아짐	집안이 넓지 않은 집은 아버지와 종숙의 연령관계에 따라 '큰엄매' '작은엄매'로 부르기도 함
	②	종형수	사촌아짐씨	아짐씨	
		고종형수	고종사촌아짐씨	아짐씨	
		외종형수	외사촌아짐씨	아짐씨	'형수님'/ '형수씨'로 변화가 일어남
		이종형수	이종사촌아짐씨	아짐씨	
	③	형수	아짐씨	아짐씨	'형수님'/ '형수씨'로 변화가 일어남
		처남댁	처아짐씨	아짐씨	손아래 처남의 처도 동일하게 부름
경북 영덕 영해	①	고모	고모	아지매	

		이모	이모	아지매	
		외숙모	외숙모	외아지매	
		종숙모	종숙모	아지매	
	②	종형수	종형수	새아지매	
		고종형수	고종(형)수	새아지매	
		외종형수	외종(형)수	새아지매	
		이종형수	이종(형)수	새아지매	
	③	형수	형수	새아지매	
		처남댁	처남의 댁	처남으댁	
경남 함양	①	고모	고모	아주머니	
		이모	이모	아주머니	
		외숙모	외숙모	외아주머니	
		종숙모	당숙모	아주머니	
	②	종형수	종수	아주머니/종수씨	
		고종형수	고종수	아주머니/종수씨	
		외종형수	외종수	아주머니/종수씨	
		이종형수	이종수	아주머니/종수씨	
	③	형수	형수	아주머니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경남 통영 사량도	①	고모	고무	고무	
		이모	이모	이모	
		외숙모	외숙모	외숙모	
		종숙모	오춘아지미	아지미	
	②	종형수	사춘헹수	헹수	
		고종형수	고종사춘헹수	헹수	
		외종형수	외사춘헹수	헹수	
		이종형수	이종사춘헹수	헹수	
	③	형수	헹수	헹수	
		처남댁	처남의처	(처)아지미/(처)아지매/(큰)아지마씨	'처수(妻嫂)'로 호칭 변화가 일어남 손아래 처남의 처도 동일하게 부름
부산 동래	①	고모	고무	고무	아이들은 호칭 및 지칭으로 '고무엄마' 라고도 부름
		이모	이모	이모	아이들은 호칭 및 지칭으로 '이모엄마' 라고도 부름
		외숙모	외숙모	외숙모	
		종숙모	오촌아지매	아지매	
	②	종형수	사촌형수	아지매/형수(씨)	
		고종형수	고종사촌형수	아지매/형수(씨)	
		외종형수	외종사촌형수	아지매/형수(씨)	
		이종형수	이종사촌형수	아지매/형수(씨)	
	③	형수	형수	아지매/형수(씨)	
		처남댁	처남으땍	처남으땍/처수씨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특징 및 의의 '아주머니'는 숙항과 동항의 두 개 항렬에 걸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고유어 친척용어이다. 숙항에서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동항에서 '아주머니'는 형제의 아내를 의미한다. 한편 '아주머니'는 비친척관계에서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거나 부르는 의사친척용어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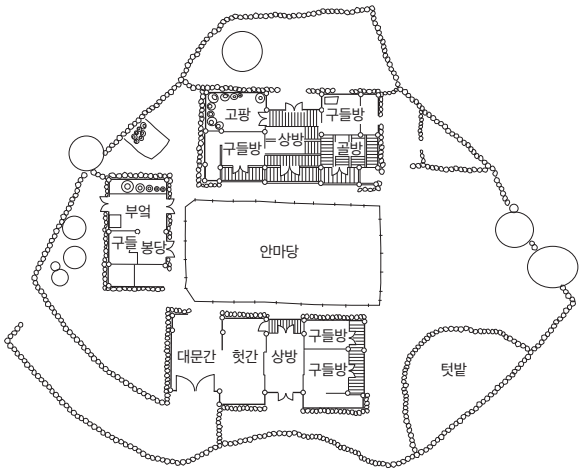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의 언어 민속지-강원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서편(왕한석, 교문사,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충청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호칭과 지칭 예절(류재봉,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안거리·밖거리

정의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함께 살 경우 안채와 바깥채로 나누어 공간을 배치하는 제주도 지역의 주거 형태.

개관 살림이 어렵거나 식구가 단출한 경우는 안거리 한곳에 살았으며, 살림에 여유가 있거나 여러 세대가 모여 살면 안거리 맞은편에 밖거리를 두어 마주 보며 살았다. 제주도 말로 '거리'란 채를 이르며 안거리는 안채, 밖거리는 바깥채, 모서리에 두었다는 뜻의 모커리 또는 묵거리는 별채를 일컫는다. 제주도에서 안채와 바깥채는 세대별로 사용 건물이 달랐다. 대개 안거리는 부모가, 밖거리는 자식 세대가 사용하였다. 부모 중



제주도 민가 배치평면도 ㅡ자형 살림채 튼 ㄷ자집 | 강영환

한쪽이 사망하거나 고령이 되면 자식 세대가 안거리로 옮기고 부모 세대는 밖거리로 옮겼다. 생애주기의 일정한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주인이 바뀐 것이다.

내용 제주도 가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안채), 밖거리(바깥채), 모커리(별채)로 공간이 구성되고 'ㅁ'자 형을 이룬다. 안거리, 밖거리라고 이름을 달리 불렀지만 규모나 재료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안거리와 밖거리에는 각각 상방(마루), 구들(방), 정지(부엌), 고팡(곳간)이 있다. 그 분리된 공간에서 부모와 자식 세대의 독립적인 생활이 이루어진다. 안거리와 밖거리는 저마다 공간이 있지만 조상제사를 지내는 일(상방), 제사를 준비하는 일(정지), 제주용 제수를 보관하는 일(고팡) 등은 안거리에서만 할 수 있다. 가정의례가 통합되었다는 증거이다.

제주도에서는 안채와 바깥채를 따로 사용하는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 안채와 바깥채가 독립적으로 살림할 수 있는 부엌과 장독대를 따로 갖추었고, 먹고 자는 것은 물론 딸린 밭도 달랐기 때문이다. 즉 경제의 분리와 독립이 이루어져 있었다. 취사와 생활을 달리 하지만 필요에 따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 집안사람의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였고, 그 외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밥을 해 먹었다. 한 가족이지만 두 가족이고 두 가족이지만 한 가족 소속으로 공동의 의례를 치렀다. 과거 공동체문화가 강한 현실 속에서도 젊은 세대의 독자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제주도 문화가 지향하는 세대 간 배려를 읽을 수 있다. 근대문명이 '개인의 발견'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위적 질서를 극복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데 반해 공감과 공생과 공존의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제주의 안거리 밖거리 문화는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아우르는 '따로 또 같이'의 정신이다. 따로 살면서도 함께하고 함께하면서도 독립 생활을 누리는, 대등하고 평화로운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겠다.

특징 및 의의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 대신 가로로 걸쳐 놓은 길고 굵직한 나무를 '정낭'이라 한다. 제주만의 독특한 대문 형식이다. 나무를 걸쳐 놓는 대문 형식은 동남아와 스리랑카 지역에 두루 퍼져 있는 남방식 문화이다. 그러나 제주에 정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거리집은 대개 정낭을 해 놓고 네거리집은 대문을 달아 놓았다. 세거리나 네거리는 대개 안거리와 밖거리로 나누어진다. 안과 밖에 정지(부엌)를 두어 부엌을 분리한 것으로, 취사만의 분리가 아니라 생활단위의 분리이다. 할아버지·아버지·손자 3대가 함께 살던 전통적 가족 형태 속에서 늘 부딪치는 문제가 고부간 갈등이다. 제주의 안거리와 밖거리의 분리는 함께 살면서도 고부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대별 독립생활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안거리 밖거리 주거형태'는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미학과 공생의 과학과 공존의 철학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면 노인만 사는 집이 지금의 두세 배로 늘어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집은 1%로 줄어든다고 한다. 자신을 낳고 길러 준 부모를 함께 모시고 살면서도 세대별로 독립생활이 유지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우려와 폐단은 상당히 없어질 것이다. 21세기는 제주의 안거리·밖거리 문화를 배워 풍요로운 가족 형태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는 과거 전통을 잘 지키고 보전해 온 곳이다. 이러한 과거 전통 속에 미래가 담겨 있다. '오래된 미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 성읍 마을(김영돈, 대원사, 1989),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허

남춘, 보고사, 2011), 제주도지7(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 2006),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디지털제주문화대전(jeju.grandculture.net).

필자 허남춘(許南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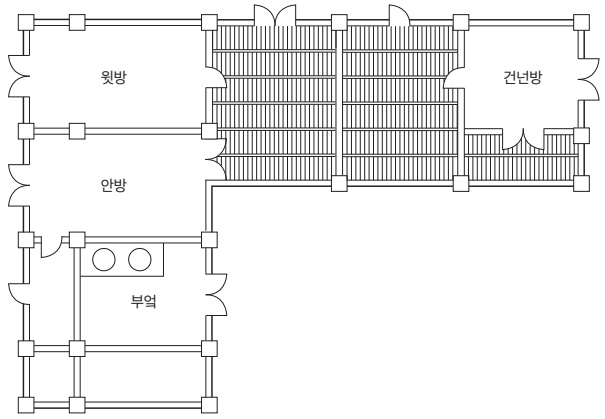
안방물림

정의 시어머니가 일정 나이가 되면 며느리에게 살림을 물려주는 습속.

내용 경상북도 전역과 경상남도·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어머니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며느리에게 안살림권과 안방을 물려주는 습속이 있는데 이를 안방물림 혹은 주부권이양主婦權移讓이라고 한다. 안방을 물려준 시어머니는 안방 맞은편에 위치한 건넌방으로 옮겨 간다.

국어사전에서는 주부主婦를 '한 집안 주인의 아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집안의 주인'은 가장家長이고, 그의 아내가 바로 주부인 것이다. 가장과 주부는 역할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이 바깥일을 행한다면 주부는 집안일을 담당한다. 경제생활에서 가장은 수입과 관리를 담당하고 주부는 지출과 소비를 관장한다. 종교 생활에서 가장은 유교식 조상제사를 주관하고 주부는 성주와 삼신三神을 비롯한 가신家神을 모시면서 이를 관할한다. 주부의 역할 중 가족들의 식생활과 식량 관리는 고유권한이기도 한데, 이는 곳간 관리권으로 상징된다. 즉 가족의 식량을 저장해 둔 곳간은 주부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가장은 수확한 식량을 곳간에 넣으면 사용 출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편이다.

집안 살림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주부는 공간 사용에서도 예우를 받는데, 주부에게는 안채의 핵심 공간인 안방에 대한 사용 권한이 주어진다. 안방은 집안 식구들이 태어나 생명을 얻게 되는 곳이면서 숨을 거두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곳도 안방이다. 사당祠堂이나 제청祭廳이 없는 경우 조상제사를 지내는 곳도 안방(혹은 안대청)이다. 이처럼 안방은 가족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으로, 안생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부의 지위를 상징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살림권을 건네주면서 동시에 안방을 물려주는 것이다.



민가 배치도 | 한국의 민가 | 조성기·한울아카데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안살림을 물려주는 시기는 대개 환갑을 맞거나 며느리가 아들을 출산하였을 때이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 것은 집안의 후손을 잇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 며느리는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완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아들을 낳지 못해 늦도록 안방을 물려받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었다.

안방물림에서는 곳간 열쇠도 함께 건네준다. 곳간은 가족들의 식량이 보관된 장소로, 이에 대한 관리권은 주부에게 있었다. 즉 곳간 열쇠를 가진 주부만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저장된 곡식을 집안 친족들에게 분배하거나 이듬해 수확 때까지 보관하는 일을 맡아 왔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안방을 물려줄 때 곳간 열쇠를 함께 건네줌으로써 주부권이양이 비로소 완결되었다.

한편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곳간 열쇠는 물려주더라도 시어머니가 안방에 그대로 기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실제적인 살림권은 며느리에게 이양하지만, 집안의 안어른으로서의 권위는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 내앞마을에 위치한 의성김씨義城金氏 청계종가의 며느리 A씨는 26세에 아들을 출산하고 그 이듬해 안방물림을 행하였는데, 당시 시어머니

는 58세였다. A씨가 17세에 시집왔을 때 안방은 시어머니가 사용하고 있었고, 여타 다른 방에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각각 기거하고 있었다. 안방물림을 할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와 사당 열쇠를 건네주고는 다른 방으로 옮겨 갔다. 곳간 열쇠는 실질적인 살림권을 의미하고, 사당 열쇠는 며느리가 후계자(아들)를 출산함으로써 혈통이 유지되었음을 인정하는 상징적 계승권이라 할 수 있으며, 안방은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대표권이자 관리권을 의미한다.

곳간 열쇠와 안방을 물려받은 A씨는 "안방물림을 하고 나서 변한 게 있다면, 안방을 차지하게 된 것과 열쇠를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주 등과 같은 집안의 신을 모시게 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 그 외는 항상 그래왔듯이 시어머니께 여쭤 가면서 살림을 꾸려 나갔고, 또 시어머니가 스스로 판단해서 시키기도 했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열쇠 건네주기'와 '안방물림'은 주부권이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형식적 절차일 뿐 실제적인 살림권 이행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외형적으로는 며느리가 안방을 차지하더라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동안 반복해 온 생활방식을 일시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참견을 하게 되고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에게 의존하면서 집안일을 거들어 왔기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을 듯하다.

특징 및 의의 안방물림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고받는 권력 이양 습속이다. 따라서 안방물림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물려받을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직계가족을 형성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전통적 직계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안방을 물려받을 대상(며느리)이 없다.

또 오늘날의 서구형 가옥구조도 안방물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수의 건물로 구성된 전통가옥에서는 성별이나 세대에 따른 공간 분리가 비교적 수월하였지만 통합형 구조로 이루어진 아파트나 양옥에서는 공간 구분이 모호하다. 즉 전통가옥에서는 남성 영역인 사랑채와 여성 영역인 안채가 분리되어 있어 성별 공간 배분이 가능하였지만 오늘날의 통합형 가옥구조에서는 공간 구분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며, 방의 배분 역시 성별이 아닌 부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부부가 같은 방에 기거함으로써 남녀의 역할·서열·지위의 차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장권과 주부권의 영역도 모호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족과 친족의 민속학(김미영, 민속원, 2008),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최인학 외, 민속원, 2001),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김미영(金美榮)

양계
兩系

정의 어머니 쪽 혈연관계와 아버지 쪽 혈연관계를 모두 혈통으로 인정하는 출계율.

개관 양계兩系는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모두로 혈통을 따지는 출계율出系律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다. 혈통집단을 구성하는 원리인 출계율은 크게 단계單系와 양계로 나뉘지만 실제로는 단계출계율만 존재한다.

내용 양계는 혈통을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모두를 인정한다. 한 사회에서 혈통이 중요한 이유는 혈통을 따라 혈통집단(출계집단)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혈통집단은 단순히 친족 관계가 아니다. 친족 관계는 개인을 기준으로 친족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범주이지만 혈통집단은 하나의 조직으로, 영속집단이다. 영속집단으로서 명확한 성원권이 있고, 공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의 변화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사회조직이다. 대부분의 혈통집단은 단계로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혈통을 양계로 따지는 사회는 없다. 양계로 혈통집단을 구성하면 그 사회의 모든 사람이 혈통집단에 속할 수 있으므로 혈통집단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 쪽 친족과 어머니 쪽 친족을 대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양변兩邊 개념으로, 이는 출계율로서의 양계와는 다르다. 친족 관계와 혈족은 양변 성격을 띤다. 아버지 쪽과 관계된 사람도 친족이며 어머니 쪽과 관계된 사람도 친족이다. 또한 혈족도 양변으로 구성되어 아버지의 아버지(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아버지(외할아버지)도 혈족이다. 친족 관계와 혈족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대등하게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혈통집단을 구성하는 출계율은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한쪽에만 속하게 되고 다른 쪽에는 속하지 않게 된다.

출계율은 친족집단을 구성하는 원리이며, 양계는 출계율의 한 종류로 단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출계율은 크게 단계와 양계로 나뉜다. 단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쪽 중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것이며, 양계는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모두에 속하는 것이다. 양계로 친족집단을 구성하면 부모 세대에는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 두 곳에 속하게 되지만 조부 세대로 가면 네 개의 혈통집단에, 증조부 세대로 거슬러 가면 여덟 개의 친족집단에, 고조부 세대로 거슬러 가면 열여섯 개의 친족집단에 속하게 된다. 더 윗세대로 가면 한 개인은 그 사회의 모든 친족집단에 속하게 되어 친족집단의 구분 자체가 의미 없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아버지와 어머니 쪽 어느 하나의 친족집단에만 성원권을 가지는 단계출계율을 따른다. 양계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출계율이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는 단계출계율의 일종인 부계출계율이 있다. 부계출계율은 성姓으로도 표시된다. 자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자기 성으로 사용한다. 양계혈통은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면 자녀는 성이 두 개이지만 손자녀는 네 개의 성을 사용하게 되고 증손자녀는 여덟 개의 성을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 이는 양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출계율임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모의 성은 결국 할아버지의 성과 외할아버지의 성일 뿐 할머니의 성과 외할머니의 성은 배제되었다.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부계출계율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듯 양계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출계율이다.

참고문헌 문화인류학개론(한상복·이문웅·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조선시대 출계율 논쟁(김주희, 한국문화인류학38-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5), 현대문화인류학(Roger Martin Keesing, 전경수 역, 현음사, 1985).

필자 김창민(金昌民)

양아록
養兒錄

정의 아이를 양육하며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일종의 육아일기.

내용 '양아록養兒錄'은 자손을 양육한 체험을 기록한 자료를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문건李文楗(1494~1567)이 손자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남긴 것이 대표적이다. 이 『양아록』은 그의 후손들에 의해 전해져 왔으며, 2015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저자인 이문건은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를 지낸 이윤탁李允濯과 고령신씨高靈申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성주, 출생지는 서울, 자는 자발子發, 호는 묵재默齋·휴수休叟이다.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사마시를 거쳐 문과에 급제한 뒤 승정원 주서를 시작으로 승문원 박사와 이조 좌랑에 이르렀다. 승정원 좌부승지로 재직할 당시 조카 이휘李煇가 을사사화乙巳士禍에 연루되어 처형됨에 따라 경상북도 성주로 유배되었으며,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리고 유배 중이던 때 손자 이수봉李守封(1551~1594)이 출생하였고, 외아들 이온李熅이 사망하면서 손자 양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양아록』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문건이 『양아록』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서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배지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성인으로 성장한 손자가 조부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 것으로

이해된다. 즉 성인이 된 손자가 이 기록을 읽고 조부가 베풀었던 자애심에 감화받아 사대부다운 인물로 성장하여 가문을 승계하려는 의지를 공고하게 다지기를 바란 것이다.

이 책은 이문건이 친필로 쓴 필사본이며, 유일본이다. 전체 60면의 분량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문 41수와 산문 4편으로 구성되었다. 시문의 앞부분에는 대체로 이를 저술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저작 의도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시문 형식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구수句數와 압운押韻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장편의 고시古詩를 채택하였다.

이 책에는 손자 이수봉이 태어난 1551년부터 성인으로 성장한 1566년까지 총 16년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손자가 출생한 뒤 신체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과 성장 과정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특정 질병을 앓았던 내용, 손자를 교육하였던 방식과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손자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과 기대를 표현한 것을 시작으로 손자의 울음이 크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내용, 앉고 일어서거나 두 발로 걷기 위해 연습하는 내용, 치아가 돋아나는 모습의 묘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는 밖에서 뛰어놀기 좋아하여 더위 먹은 손자에 대한 걱정, 천연두·학질·이질·홍역 등 각종 질병을 앓을 때마다 나타난 구체적 증상과 치료 방식에 관한 내용, 손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초조하고 불안한 심경이 묘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내용도 실려 있다. 셋째는 손자가 조급하게 화내는 것을 훈계하는 내용, 글자 읽고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 문장의 독법을 가르치는 내용, 말을 듣지 않을 때 회초리로 다스리는 내용, 인륜을 지키고 성인군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내용, 학문을 이루어 가문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징 및 의의 이문건의 『양아록』은 조부가 손자를 양육하며 기록한 육아일기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더욱이 이 책은 사족士族 가문에서 행해진 육아 방식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육아와 관련된 생활 풍속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사와 사회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양아록 | 조선 | 문화재청

참고문헌 목재 양아록의 교육학적 이해(장정호, 국학연구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양아록(이문건, 이상주 역, 태학사, 1997), 유배육아일기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의미(문혜경·양진건, 인문연구8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이문건의 아동교육관과 그 의의(강수연, 역사와교육20, 역사와교육학회, 2015), 조선중기 양아록을 통해 본 아동 인식(백혜리, 아동학회지22-2, 한국아동학회, 2001).

필자 고민정(高旻廷)

양육비
養育費

정의 친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급여.

내용 1990년대 이후 양육비養育費 부담은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며,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도 자녀 양육 비용을 분담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빈곤을 초래하고 학업과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2007년 개정 〈민법〉(제8720호)의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서 협의이혼 시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009년에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개정 〈가사소송법〉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명령, 재산명시명령 및 재산조회, 30일 이내 감치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216호, 이하 양육비이행법)을 제정하였고, 2015년 3월에는 양육비 정책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 〈양육비이행법〉을 일부 개정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나 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녀 양육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 부모 중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긴급지원의 기준에 속하는 자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와 면접 교섭 상담, 양육비 소송 진행, 집행 권한 확보 등의 법률지원을 한다. 하지만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정보수집, 양육비 이행확보 및 강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가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이행확보 등을 실행할 때는 모두 법원의 절차와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아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그 인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양육비는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수급권, 행복추구권,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공익적 성격의 권리이다. 그리고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정부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상의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역할 제고,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김나래, 법학연구66,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법적 과제(윤지영, 사회보장법연구10-1,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경근, 법학논총30-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한국 양육비정책(정이윤, 현대사회와 행정30-2,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필자 성정현(成晶鉉)

양자
養子

정의 입양하여 아들로 삼은 자.

개관 조선시대에는 수양자收養子·시양자侍養子·계후자繼後子를 모두 양자養子라고 지칭하였다. 양자는 입양하여 삼은 아들을 지칭하기도 했지만 입양한 자식을 범칭하기도 했다. 수양자, 시양자는 입양 시의 나이. 즉 수양자는 3세 이하의 아이, 시양자는 3세가 넘은 자를 입양한 경우라는 법적 기준 외에 입양 대상에 제한이 없었으며 입양 목적도 매우 다양했다. 반면에 계후자는 남편의 동성 친족 중 아들 항렬行列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에서 장자가 아닌 지자支子 중에 택하여 가계를 잇도록 한 자로, 예조禮曹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수양 자녀와 시양 자녀에 대해 '양자녀'라고 하였지만 계후자는 '양자'라고 하지 않고 '계후자'라고 지칭하였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계후자도 양자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 양반들은 아들이 없으면 대부분 계후자를 세워 대를 잇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점차 '양자'라고 하면 '계후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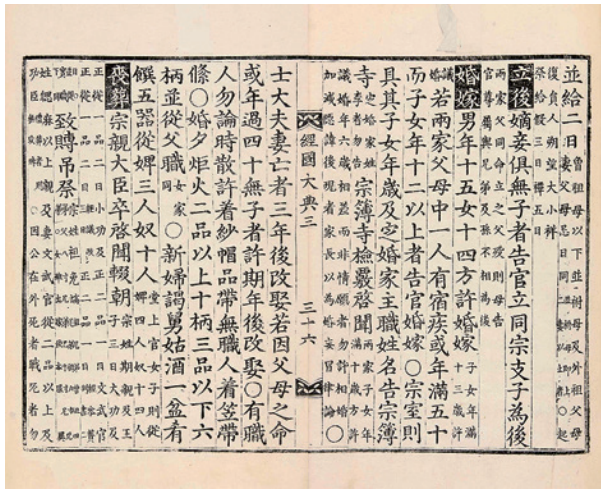
내용 양부모와 수양·시양 자녀 관계는 매우 다양한 목

적을 가지고 성립되었다. 자식 없는 사람이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노후 봉양과 사후 제사를 맡기기도 했지만 친자식이 있더라도 양부모, 양자녀 양측의 필요에 따라 수양과 시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아들, 딸이 모두 부모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딸이 있으면 봉사자를 세울 필요가 없었다. 이는 양녀가 양부모 제사를 받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유교적 제사 형태 정착으로 적장자 봉사奉祀 원칙이 자리 잡음에 따라 봉사를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의 입양 형태도 변화하게 되었다.

노후 봉양이나 사후 봉사를 맡기기 위해 수양 자녀, 시양 자녀를 들일 때는 주로 친족을 입양하였다. 이 경우 본래 남편과 처가 부계·모계 등 계통을 가리지 않고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수양 자녀, 시양 자녀로 삼아 노후 봉양이나 사후 봉사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자신에게 재산을 준 부모 혹은 조상의 핏줄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런데 16세기에는 남편의 동성 친족 중 아들 항렬의 사람을 부부의 수양자나 시양자로 삼아 봉사를 맡기고 부부의 재산을 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남편의 친족인 수양자, 시양자를 처의 친족과 혼인시켜 자신에게 재산을 준 조상의 핏줄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관습을 지키려 하기도 하였다.

1437년(세종 19)에 입후법立後法이 제정된 후 아들이 없는 양반가에서는 계후자를 세우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계후자는 예조에서 허가받아 관에서 인증한 양자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적장자嫡長子 지위를 보장받았다. 복상服喪 규정에도 양부모와 양가養家 친족에게 친부모 및 친가 친족에 해당하는 상복을 입고, 친가 부모와 친족에게는 한 등급을 강복降服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후자는 양부모로부터 적장자에 해당하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양부모 측에서 입후를 파하고자 할 때도 예조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고, 한번 이루어진 입후는 정당한 명분 없이는 파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안정적인 봉사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계후자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입후조 | 경국대전 | 가로23 세로35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에 따라 『경국대전』 입후조立後條에 부합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상언上言, 격쟁擊錚 등을 통해 왕의 특은特恩으로 입후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러 대의 봉사를 담당할 대종大宗의 계후자를 세우는 일은 종자宗子를 세우는 일로 양부모만의 일이 아닌 문중門中의 일이 되어 갔다. 조선 후기 문중에서는 계후자 선정에 관여하기도 하고 예조의 허가, 즉 계후 입안을 발급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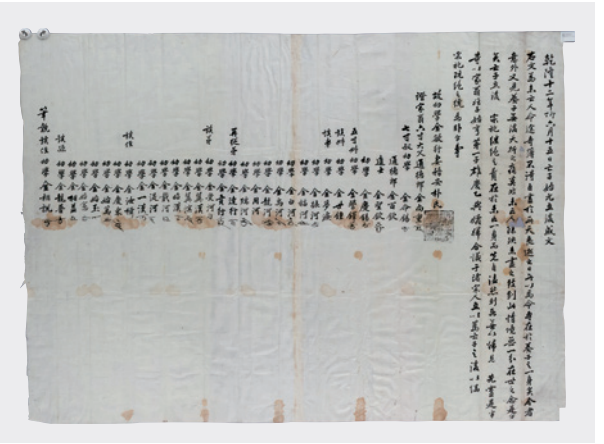
근대 이후에도 대를 잇기 위해 부계 동성 친족을 양자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계 중심적인 친족 질서와 가계 계승 의식이 약화되면서 사라져 가고 있다. 한편 입양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양측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던 수양딸, 수양아들이라고 불리는 양자녀 형태도 존속해 왔지만 핏줄을 중시하는 관념과 지역 공동체의 약화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현대 법에서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기를 수 없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권익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이 법에서의 '양자'는 양자와 양녀를 모두 지칭한다.

특징 및 의의 일반적인 의미의 양자는 입양된 아들이나 자식을 의미하지만 조선시대 '양자'는 대를 잇기 위해 세운 아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자'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종법宗法이 정착되고 문중이 형성되어 발달해 갔던 조선시대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현대법에서의 '양자'는 양자와 양녀를 모두 포괄한다.

참고문헌 이성계후의 실증적 연구(박병호, 서울대학교법학14-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3),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박경, 혜안, 2011), 조선시대의 양자제와 친족조직 상(최재석, 역사학보86, 역사학회, 1980), 조선시대의 양자제와 친족조직 하(최재석, 역사학보87, 역사학회, 1980), 파계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박경, 장서각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필자 박경(朴景)

양자문기
養子文記



무안박씨 입후성문 | 가로126 세로90 | 조선 | 학봉기념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정의 양부모와 친부모가 입후에 서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문서.

내용 전근대사회에서 입후立後란 본래 후사를 세우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입후는 아들이 없는 자가 제사 봉행을 목적으로 양자를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이후 성리학적 종법宗法 질서가 일상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치면서 유행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양자를 들이는 행위는 혈연에 기초하여 자연적으로 정해지는 부자 관계를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입후의 요건·대상·절차 등이 규정되었고, 국왕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특히 입후가 성립되기 위한 절차 가운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입후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바로 양자문기養子文記이다.

양자문기는 국가로부터 입후를 허가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문서私文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특별한 형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그 명칭도 매우 다양해서 양자문서養子文書, 입후성문立後成文, 입후명문立後明文, 계후성문繼後成文, 솔양명문率養明文, 입후표문立後標文, 입사여수문立嗣與受文, 허여문許與文 등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양자문기를 토대로 구성 형식을 살펴보면 문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친부모가 양부모에게 친아들을 양자로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다. 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문서를 작성한 연월일을 기록하고, 둘째 양부의 직역과 성명을 기록하고 수결手決하였는데 만약 양부가 사망하였으면 양모의 본관과 성씨를 기록한 뒤 수결하였다. 셋째 입후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넷째 생부의 직역과 성명을 기록한 다음 수결하였는데 만약 생부가 사망하였으면 이 역시 생모의 본관과 성씨를 기록하고 수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보증하는 증인과 이 문서를 작성한 필집筆執의 직역과 성명을 기록한 뒤 수결하였다.

두 번째 형식은 문중을 대표하는 문장門長이 친족 간의 의논을 거쳐 입후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다. 문서 내용은 문서를 작성하는 연월일을 기록하고, 입후하게 된 구체적 사유와 논의한 내용을 차례대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생부의 직역과 성명을 기록하고 수결한 다음 양부의 직역과 성명을 기록하고 수결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친부와 양부가 사망하였을 때는 친모와 양모가 이를 대신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비롯한 친족들이 이를 보증하는 증인으로서 직역과 성명을 쓴 뒤 수결하였다.

그러나 친족 간의 합의를 통해 양자문기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입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문서가 또 있었다. 친부모와 양부모 각자가 입후를 요청한다는 문서가 있어야 하고, 증인들이 입후를 보증한다는 문서도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를 예조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가 필요하였다. 따라

서 국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받을 필요 없이 간단히 입양문기만 작성하고 입후를 마무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징 및 의의 양자문기는 국가로부터 입후 허가를 받기 위해 친부모와 양부모가 이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입후 절차가 준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조선시대 입후제의 운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후를 추진하였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친족제를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계후입안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입후 양상에 관한 연구(고민정, 태동고전연구38,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7),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박경, 혜안, 2011), 조선 후기 입후 절차에 관한 연구(고민정, 사학연구117, 한국사학회, 2015), 한국가족제도사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필자 고민정(高旻廷)

어머니

정의 자녀를 둔 여성의 호칭.

내용 '어머니'는 자녀를 둔 여성의 범칭汎稱으로 널리 사용된다. 전통적 가족제도에서도 어머니의 지위는 아버지와 동등하다. '부모'라는 칭호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부부간의 상호관계에서는 아버지의 가장권家長權에 비해 집안 살림을 관장하는 어머니의 주부권主婦權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 구조에서 차지하는 어머니의 위상은 절대 가볍지 않았다. 다산多産과 자녀 양육은 어머니에게 부여된 임무였다. 정확히 말하면 임신을 확인한 직후부터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이 시작되었다.

태교胎敎를 통해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동시에 바른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를 실천하여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우수한 자질을 태중에서부터 함양한 자손이 태어난다고 믿었다. 출산을 통해 자손을 번성시키고, 유년기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어머니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여훈서女訓書에서도 자녀를 가르치는 역할과 도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생 초기의 자녀 양육이 어머니의 역할이었으므로 정서적인 유대관계는 어머니가 훨씬 강하였다. 이광규는 이에 대해 가장권을 중심으로 하는 아버지의 권력 구조와 대비해 가족 내의 정서 구조는 주부이자 어머니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는 호칭에서도 드러난다. 아버지의 지칭에 '엄嚴'이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어머니의 지칭에는 '자慈'가 많이 사용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자신의 생존한 어머니를 지칭할 때는 '모친母親' '자친慈親' '자위慈闈' 등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생존한 어머니에게는 '자당慈堂' '훤당萱堂' '대부인大夫人' 등의 호칭을 썼다.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선비先妣', 돌아가신 타인의 어머니는 '선대부인先大夫人' 등의 호칭으로 불렀다.

부계父系 중심인 전통적 가족에서는 어머니와 자식 관계가 아버지와는 다른 측면이 하나 있었다. 바로 계모繼母의 존재였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전근대에는 출산 도중이나 출산 직후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주부이자 어머니의 자리를 비워 둘 수 없기 때문에 계모가 들어오곤 하였다. 당연히 전처 소생들과 계모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공고鞏固하기는 쉽지 않았다.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처 자녀들은 아버지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모에게 효성을 다하도록 하였다. 또한 처첩妻妾 사이 위계도 엄격하였기 때문에 서자녀庶子女 역



어머니 | 너비6 길이11 | 국립민속박물관



어머니 | 너비5 길이11 | 국립민속박물관

시 적모嫡母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아버지 사후 계모에게 불효를 저지를 경우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부계가족제도 아래에서도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는 공고하게 보장되었다. 그것은 당시 사회가 효孝를 기반으로 한 가족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기초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에는 부계 계승을 전제로 한 가족질서가 서서히 약화되고 부부관계가 가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갔다. 그럼에도 전통적 가족제도는 관습으로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계친족뿐만 아니라 모계친족이 가족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부계와 모계 모두 중시되는 '양계화兩系化'로 한국의 가족관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아직은 '양계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가계소득을 담당하는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고,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데서 기인한다. 아버지와 자녀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줄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밀접해진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모계친족도 자녀 양육을 보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주희는 부계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례가 형식적으로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한편으로 모계친족을 중심으로 한 친족연계망이 발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모계친족과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이전보다 강화되는 것이 현재 한국의 가족관습 변화의 특징인데 이것은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어머니는 전통적 가족관계에서는 정서적 관계에 국한되는 특징이 있었으나 근대 이후 남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면서 정서적 관계로부터 자녀의 훈육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산업화·도시화와 맞물려 모계친족과의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변화를 추동하였다.

참고문헌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한국 가족과 친족의 인류학(정향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한국가족연구(최재석, 민중서관, 1966),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대화(李大和)

언니

정의 같은 부모를 둔 여성 동기 사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이르거나 부를 때 사용하는 어휘.

내용 언니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여성 동기同氣 사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사용하는 한국어 친족어 중 하나이다. 또한 '사촌·이종사촌·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친족이나 부모의 재혼으로 형성된 대상뿐만 아니라 비친족 여성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어휘소로, 지시 대상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나 대상을 가리켜 이를 때 사용하는 지칭어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정에서 언니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여러 명 있으면 지시 대상이 되는 여성의 연령 기준으로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나 '큰언니, 작은언니' 혹은 '이름+언니'와 같은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사촌 언니,

이종사촌 언니, 고종사촌 언니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촌수가 먼 친척에게는 촌수 구분 없이 '친척 언니'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혈연관계로 맺어졌다는 뜻을 가진 접두사 '친親'과 결합한 '친언니'는 동기 관계임을 나타내는 어휘소로,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구분할 때 사용한다.

이처럼 실제 언어생활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장된 어휘소는 대부분 지시 대상과의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지칭어 기능만을 담당한다. 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를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이 제한되며, 모든 대상에게 형식 확장이 없는 '언니'만을 호칭어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다. 또한 언니는 혼인한 오빠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혈연관계가 아닌 친족 여성에게 '언니'가 확장된 양상이며, 나이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어휘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 오빠와의 혼인만이 어휘소 사용에 필요한 요소가 되고 '새언니'나 '올케언니'와 같은 어휘소는 다른 대상과의 구분을 위한 지칭어로 사용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 전통사회에서 친족어 '언니'는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한국의 언어문화가 반영되어 쌍둥이의 경우에도 분 단위까지 고려하여 언니와 동생을 구별하였다. 또한 형·누나·오빠·언니와 같은 어휘소는 이를 선택할 때 지시 대상의 성별뿐만 아니라 어휘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의 성별을 모두 고려하는 용법을 가지는데 이는 한국어 고유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권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저출산 사회로 불리는 현대에 와서 '언니'가 친족어로 사용되는 빈도나 기초 어휘소로의 중요도가 예전과 비교하여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한 가정 내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 동기가 없어 일생 동안 언니를 친족어로 사용하지 않는 모국어 화자가 존재하기 시작하였고, 전통사회처럼 친족 간 교류가 활발하지도 않기에 실제 언어생활에서 '언니'를 친족어로 사용할 기회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현대에 와서 친족어인 언니를 비친족 여성에게 사용하는 의사친족어疑似親族語 기능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형·누나·오빠처럼 친밀을 공유한 여성에게 사용하는 용법뿐만 아니라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불특정한 젊은 여성에게 일회적인 지칭어나 호칭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때 특이한 점은 언어 사용자보다 나이가 어려도 젊음이 인지될 경우 '언니'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형·누나·오빠의 경우 높임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 중심으로 확장된 어휘소 '형님' '누님' '오라버님'이 각각 존재하는 것과 달리 언니의 경우 높임을 전달하기 위해 별도로 형식 확장된 어휘소가 없다는 특징도 있다. 이에 특정 여성에게 높임의 속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님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현대에 와서 젊은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사용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언니는 어머니 부재 시 어머니가 집안에서 담당하는 가사노동이나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존재이다. 또한 오빠가 없는 첫째의 경우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부양扶養을 위한 경제적인 행위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가부장적 특징을 지닌 전통 한국사회에서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가장家長 역할은 여성에게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의무와 역할은 부여하였으나 권력을 부여받지 못한 존재로서 집안에서의 여성 역할이 언니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언니가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은 혼인 후 가족이 아닌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분류되었던 전통사회의 인식을 바탕으로 남편의 가족에게 이동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여동생의 자녀에게는 이모姨母, 남동생의 자녀에게는 고모姑母로 불리며 양육의 의미를 가진 '어머니'가 확장된 별도의 친족어로 불리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남편의 형 자녀에게서는 작은어머니, 남편의 남동생 자녀에게서는 큰어머니로 불리게 되는 친족어 용법은 혼인 전 여성이 집안에서 잠재적으로 담당하던 역할과 의무가 혼인 후 남편 중심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친족어의 호칭어로서 확장·사용 양상(김광순, 한국어 의미학48, 한국어의미학회, 2015), 한국어 친족어의 의미(김광순, 박문사, 2017).

필자 김광순(金光淳)

엄부자모
嚴父慈母

정의 동양 유교 문화권에서 제시한 엄한 아버지상과 자애로운 어머니상의 자녀 교육관.

내용 동양의 유교서에 '엄부자모嚴父慈母'라는 사자성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엄한 아버지상의 엄부, 자애로운 어머니상의 자모라는 문구의 유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엄부의 용례가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것은 책이 집필된 시기로 따졌을 때 『효경孝經』「성치장聖治章」의 "하늘과 땅이 낳은 것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하고, 사람의 행실은 효보다 큰 것이 없으며, 효는 어버이를 존엄하게 모시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어버이를 존엄하게 모시는 것은 하늘과 짝 지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天地之性 人爲貴 人之行 莫大於孝 孝莫大於嚴父 嚴父 莫大於配天."에서 확인된다. 이때의 엄부는 '어버이를 존엄하게 모시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엄한 아버지상을 뜻하는 엄부의 용례로는 주희朱熹가 집대성한 『소학小學』「선행善行」의 실명륜實明倫 중에 "사마온 공이 그의 형 백강과 더불어 우애하기를 더욱 돈독히 하여 형을 엄한 아버지처럼 공경하고, 어린아이처럼 보호하였다司馬溫公 與其兄伯康 友愛尤篤 …… 公奉之如嚴父 保之如嬰兒."가 있다. 이처럼 엄부는 '어버이를 존엄하게 모시다'와 '엄한 아버지'의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었는데, 자모와 함께라면 대체로 '엄한 아버지'의 의미로 이해하였다.

한편 자모, 즉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애로움을 갖추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자모의 용례는 『한비자韓非子』「해로解老」의 "자애로운 어머니는 어린 자식이 행복해지도록 힘쓰니, 행복해지도록 힘쓰면 …… 성인은 어떤 일을 하든 자애로운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위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하므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도道를 본다慈母之於弱子也 務致其福 務致其福 …… 聖人之於萬事也 盡如慈母之爲弱子慮也 故見必行之道."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에게는 인자함, 부드러움, 사랑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예기禮記』「내칙內則」에 따르면 "아들을 낳으면 여러 어머니나 그 밖에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반드시 너그럽고 인자하고 온화하고 공경하며 신중하고 말이 적은 사람을 가려서 아이의 스승이 되게 한다內則曰 凡生子 擇於諸母與可者 必求其寬裕慈惠溫良恭敬愼而寡言者 使爲子師."라고 하였다. 또한 여성만이 가능한 출산 능력과 그 경험으로 인하여 자식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여성이 새 생명을 낳은 후 어머니가 되어 양육을 도맡아 하였던 성 역할로 인하여 아버지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가질 것이라는 신념이 자모의 이미지 형성에 크게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엄부자모는 동양 유교 문화권에서 부모 패러다임이 부계친 중심의 종법질서로 한국사회에 확립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성별에 따라 아버지는 한 집안의 대표, 즉 가장家長이고 어머니는 한 집안의 어머니, 즉 가모家母라는 위상이 정립되었다. 또한 유교에서 확립한 남녀유별 관념의 음양론陰陽論과 내외內外 구별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천성, 성 역할, 사회적 위치 등을 부여하였다. 남성은 부림[使]의 덕성을 기르는 존재로서 관대함[寬]·위엄[威儀]·베풂[施惠]·지식[知]을 갖추도록 교육받은 데 반하여 여성은 섬기는 자[事人]로서 유약柔弱·순종順從·화유和誘의 덕성을 기르도록 교육받았다. 이에 아버지는 엄해야 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한다는 신념이 발전하여 이미지로 정립된 것이다. 이러한 엄부자모의 패러다임은 근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성 역할과 교묘하게 결합하게 된다. 특히 근대사회의 모성애母性愛 용어는 자모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모 개념은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어머니들의 모임 명칭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자모회慈母會'라는 용어를 양산하였다.

참고문헌 小學, 禮記, 韓非子, 孝經, 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이숙인, 한국학29-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조선시대 의학서로 본 여성 몸 담론(하여주, 역사와 경계109, 부산경남사학회, 2018), 명신여교학자모회개최대구(동아일보, 1921.7.8.).

필자 하여주(河如株)

업둥이

정의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애를 거두어 기른 아이.

개관 업둥이는 남의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말한다. 주로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嬰兒이며, 아이를 기를 여건이 열악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출산을 하였을 때 아이를 대신 양육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의 집 문 앞에 두게 된다. 아이를 놓아두는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평소 인품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집안이며, 자손이 귀해 대를 잇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

아이를 발견한 집에서는 대부분 아이를 내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업둥이를 내치면 집안의 재운財運이 모두 나가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신앙의 하나인 업業 신앙에서 기인한 것이다. 업신業神은 가정에 재물을 불러오는 신으로, 주로 구렁이·두꺼비·족제비 등 동물로 형상화된다. 사람도 업신이 될 수 있다. 이를 인업人業이라 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업둥이이다.

내용 업둥이를 발견한 집에서는 이를 내치지 않으며, 정성을 다해 친자식처럼 기른다. 자신의 성씨姓氏를 부여하여 가계家系를 잇게 하고, 여자인 경우 좋은 집안으로 시집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아이를 단순한 유기遺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집안의 재운을 관장管掌하는 인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둥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 신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신앙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들은 한 집안에서 고유한 직능職能을 담당한다. 이 중 업신은 집안의 재물복을 불러오는 신격神格이다. 이러한 업신은 인간에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나 민간에서는 주로 구렁이, 두꺼비, 족제비, 돼지, 쥐, 거북 등으로 형상화된다.

업신에 대한 설화는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다. 이들의 내용은 ①업신은 집안을 옮겨 다니는 존재이다 ②업신이 떠난 집안은 재물복을 잃는다 ③업신을 잘 모시면 집안에 큰 재운이 든다 ④업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에게 해악을 끼치면 그 집안은 패가망신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러한 업신 이야기는 단순히 설화 차원을 넘어 실화實話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 등에 기록된 구술에서 많은 구술자는 이야기 도중에 "이건 실환데…" 등의 말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실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업신에 대한 강한 믿음은 인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업이란 사람에게 붙어 다니면서 그 사람을 통해 가정에 복을 가져다주는 업신의 하나이다. 인업이 집으로 들어오면 귀하게 대접하고 잘 모셔야 하며, 인업이 나가면 집안의 재운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믿는다. 동물업에 비해 인업 이야기의 전승은 미미한 편이다.

충청남도 청양 운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어떤 사람들이 큰 정자나무를 베었는데 하얀 옷차림의 노인네가 와서 "나 집 읎어서 나좀 어따 좀 감춰 달라. 나 좀 어디 안 뵈는 데다 좀 놔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쌀 단지에다 모셔서 광의 쌀 바구니 옆에 갖다 놓았는데 그 후로 가난하던 그 집이 부자가 되었다.

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노인은 인업으로, 그에게는 업신의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난다. 먼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한 점에서 업신이 가지는 비의성祕儀性을 보여 준다. 또 그의 거처가 광의 쌀 바구니 옆이라는 것은 재물을 관장하는 업신의 직능과 연관된다. 이러한 인업에 대한 민간의 강한 믿음은 충청남도 공주 유구면의 설화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박정승과 김정승이 이웃으로 살고 있었다. 부자인 박정승이 가난한 김정승을 도와주지 않자 김정승의 일곱 살 먹은 아들이 박정승의 다락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엿단지에 들어간 뒤 나와서 밀가루를 뒤집어써 전신을 하얗게 만들었다. 이어 김정승의 아들은 다락문을 열고 자신을 삼십 년 동안 집안을 보호해 온 인업이라 칭하며 이웃의 김정승에게 쌀과 전답을 나누어 주라고 호통을 쳤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을 결딴내겠다고 엄포를 놓자 박정승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인업 노릇을 한 아들 덕에 김정승 집안도 잘 살게 되었다.

김정승의 아들은 실제 인업은 아니지만 인업을 가장해 가정을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러한 아들

의 행동은 당시 업신이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박정승이 아무런 저항 없이 김정승의 아들이 시킨 대로 행한 것도 당시 업신이 가정의 흥망성쇠를 관장하는 재물신財物神으로서의 강력한 위상을 지녔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업신은 가정의 재운을 책임지는 신격으로서 민간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귀신』에서도 확인된다.

> "사蛇업 또는 인업이라고도 하며 매달 15일에 진수성찬을 창고나 헛간에 차려 재신을 대접한다. 이것은 뱀이 먹는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은 주인이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자는 망해 가난한 자가 되고 만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업둥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여기에 따르면 집 앞에 버려진 아이는 결코 내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재물복을 가져다 줄 재물신의 하나이기에 각 가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친자식처럼 기르고 지켜야 할 귀한 존재가 바로 업둥이이다.

특징 및 의의 인간은 굶주림이나 질병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모두가 궁핍한 시기에 태어난 새로운 생명은 기근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어린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업 신앙과 결부되어 업둥이라는 관행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영아를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기능해 왔다. 현재도 흔히 '복덩이'라 하여 한 집안에서 특정한 자식이 태어난 후 관운官運이 트이거나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거나, 며느리를 새로 들인 이후 가세가 흥하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업둥이와 같은 인업 신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의 친연성(김명자, 한국민속학7, 한국민속학회, 1996), 한국구비문학대계(gubi.aks.ac.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오세길(吳世吉)

연애혼
戀愛婚

정의 혼인당사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혼인.

내용 한국의 전통적인 혼인방식으로는 흔히 중매혼을 떠올린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의 문헌이나 설화 등에 자유로운 연애나 혼인에 관한 이야기가 다수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 이전 시대에는 연애혼도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서는 고구려의 풍속을 "백성들이 노래와 춤을 즐기며 나라 안의 마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밤이 늦도록 함께 모여 노래하고 논다." "고구려의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 등장하는 김춘추金春秋와 문희文姬, 김서현金舒玄과 만명부인萬明夫人, 서동薯童과 선화공주善花公主, 바보 온달溫達과 평강공주平岡公主, 대장간 집 딸과 혼인한 강수強首의 이야기 등은 사랑을 기반으로 연애혼이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도덕률의 강화로 결혼 당사자보다는 부모와 가문의 의사를 중요히 여기는 중매혼이 일반화됨에 따라 남녀 간의 자유연애와 연애혼이 금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개화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신소설이나 신여성 등을 통해 자유연애·자유결혼·평등사상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고, 신교육을 받은 소수 여성들에 의해 연애혼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점차 연애혼이 확산되는데,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핵가족이 늘어나고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면서 친족이나 부모의 권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의 의미가 집안과 집안의 결합에서 개인과 개인의 결합으로 변화하고 여성의 교육수준 및 사회참여 향상도 연애혼의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연애혼이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혼인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진 남녀가 일정 시간 교제 후 가정을 이루는 혼인의 한 유형으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혼인방식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개화기·일제시기 결혼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이배용, 한국근현대사연구10,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근대의 가족근대의 결혼(김경일, 푸른역사, 2012),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박동철,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박동철(朴東喆)

연좌제
連坐制·緣坐制

정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와 일정한 관계 혹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제도.

역사 엄밀한 의미로 연좌連坐와 연좌緣坐는 다르다. 전자는 혈연적 관계가 아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의미이며, 후자는 혈연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근대 시기의 연좌는 후자의 의미에 더 가깝지만 두 용어는 혼용돼 사용되었다. 연좌제連坐制·緣坐制는 동서양과 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연좌제는 그 연원을 살피면 중국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중국 진한시대에는 삼족三族에게 연좌형을 행한 기록이 있다. 삼족은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를 뜻하였다. 당나라에서는 주로 모반謀反과 역모逆謀 등 국가 중대사에 연좌를 시행하였으나 점차 연좌 범위가 규정화되었다. 명나라에서는 『대명률大明律』을 반포하며 연좌 규정을 세밀히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일찍부터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부여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가족을 노비로 만들기도 하였으며, 고구려에서는 무거운 죄를 범하여 사형에 처하였거나 모반을 저지른 사람의 처자식을 노비로 만들었다. 백제 역시 반역자의 처자식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일찍부터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히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면 그 처자식까지 처벌하는 연좌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連座制度를廢止
共和黨·政府에建議方針
【서울三日發東洋】政府
移讓을爲한 지난번大統
領選擧때 公約으로내걸
었던 連座制가 形式的
으로만 廢止되었을뿐實
質的으로는 아직남아있
다는데서 共和黨은 곧
그徹底한 是正을政府에
要求할方針이다
家族 親戚中에서 過
去또는 現在不穩思想을
가진자있다고해서 公務
員國營企業体職員으로의
就職또는 海外旅行에不
當한 差別을받는일이아
이 세워져야할것이라고
開發銀行準備會議對策을
協議하기위해 四日歸國
직도있음을 是認한 吉
司直當局에 備置되
日下午 그是正方案을黨
에서 마련政府에 建議
하겠다고 말했다
吉總長은 그의選擧
이錦山에만도 六·二
五動亂때 不可抗力에못
이겨 消極的으로 附逆
行爲를한者나 그런者의
家族數가相當히 많은것
으로알고있다고 말하고
連座制에 依한基本權侵
害가없도록 時急한對策
이 調整되다
連座制適用의 可能性
記者質問에 그는記錄은
事件發生時에 必要
함으로 없애서는 안될
것이며 公務員採用時는
外務部가 旅券發注時는
總務處가 審査에있어서
連座制를 適用치않도록
徹底히 規制하는 方法
이 좋을것같다고 答辯했
다
身元調査記錄을
없느냐는 記者의생각은
막기爲한 直接的으로
해 司直當局에
있는 身元調査記錄을
고 備置되
고있는 共和黨事務總長은二
日下午 그是正方案을黨
에서 마련政府에 建議
하겠다고 말했다
吉總長은 그의選擧
이錦山에만도 六·二
五動亂때 不可抗力에못
이겨 消極的으로 附逆
行爲를한者나 그런者의
家族數가相當히 많은것
으로알고있다고 말하고
連座制에 依한基本權侵
害가없도록 時急한對策
이 調整되다
連座制適用의 可能性
記者質問에 그는記錄은
事件發生時에 必要
함으로 없애서는 안될
것이며 公務員採用時는
外務部가 旅券發注時는
總務處가 審査에있어서
連座制를 適用치않도록
徹底히 規制하는 方法
이 좋을것같다고 答辯했
다
開發銀行準備會議對策을
協議하기위해 四日歸國
할豫定이다

연좌제도를 금지 | 1966. 05. 04 | 마산일보 | 국립중앙도서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이구족夷九族과 이일족夷一族 등의 표현이 확인되는데, 연좌될 친족의 범위에 대해 보다 세밀히 지정하였다. 예컨대 반역자의 구족을 멸하였다는 기록이나 반역자의 종족과 당여黨與 230여 명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다. 특히 이 시기 모반의 경우 일족을 죽이는 등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였음이 확인된다.

고려시대에는 모반과 모대역謀大逆 등의 경우 연좌형을 부과하였다. 군대를 동원하여 모반하면 부모와 처, 자매, 조손과 백숙부를 연좌형으로 처벌하였다. 국왕을 살해하려고 도모한 때에도 그 아들을 효수하고 처첩은 노비로 만들었다는 기록을 통해 연좌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조선이 건국된 이후 법률적으로 연좌제가 적용되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중국 명나라 형법서인 『대명률』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반대역謀反大逆 죄인은 능지처사陵遲處死하고 부친과 16세 이상의 자식은 교수형絞首刑, 16세 이하의 자식과 모친·처첩·할아버지·손자·형제자매 그리고 아들의 처첩은 모두 노비로 삼고 재산은 몰수하였다. 백부와 숙부, 조카 또한 유배형

에 처하였다고 한다. 다만 남자로 80세 이상이거나 중병에 걸린 경우, 여자로 60세 이상이거나 중병에 걸린 경우, 양자로 출계出系한 경우에는 연좌를 면해 주었다. 모반대역죄는 국가전복 행위와 쿠데타 등을 의미하므로 그 처벌 정도도 가장 무거웠다.

또한 모반한 죄인의 경우 참수형斬首刑에 처하고 그 처첩과 자녀는 노비로 삼았으며, 전 재산을 몰수하였다. 부모와 할아버지와 손자, 형제는 모두 유배형에 처하게 하였다. 모반은 몰래 다른 나라를 좇을 것을 모의한 죄를 말하는데 직접적인 반란인 모반대역보다는 처벌이 가벼웠다. 그러나 모반대역과 모반 모두 국가를 배신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처벌이 상당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4촌 상당의 친족까지 연좌 범위로 묶었기 때문에 수백 명이 연루되어 처벌받기도 하였다.

한편 부도不道한 경우에도 연좌제를 적용하였다. 부도죄는 아주 흉악한 살인을 저지르거나 대규모 살인, 패륜적 행위 등 죄질이 상당히 악랄한 범법자에게 적용한 죄목이었다. 이들 범죄자의 부모와 조부, 손자, 형제 등은 유배형에 처하게 하거나 처자식 또는 동거하는 가족에게 유배형을 처하게 하는 등 대역죄보다 처벌 범위나 수위는 낮지만 본인의 죄과로 가족들까지 처벌하였다. 이처럼 조선은 『대명률』에 따라 연좌제를 시행하였으나 조선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처벌을 할 때도 있었다. 이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되어 있다.

가족을 노비로 삼는 경우와 가족을 모두 변방으로 내쫓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을 노비로 삼는 경우는 국가의 인장印章을 위조하거나 국가 정책으로 이주한 사민徙民이 도망간 경우, 강도强盜의 경우 등이 해당하였다. 또한 가족을 변방으로 내쫓는 경우는 노비를 과실로 죽게 한 아전, 도적의 우두머리 등이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처자식을 노비로 삼는 연좌제 적용 대상 범죄가 세밀하게 규정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이처럼 혈연적 관계에 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연좌제만 작동한 것이 아니었다.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출신 지역 전체를 처벌하는 연좌도 있었다. 예컨대 왕실을 능멸한 자의 거주 군郡·현縣을 행정적으로 강등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관리가 특정한 죄를 지으면 동료 관리들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연좌제의 일종이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 존재하였던 연좌제는 국가의 반역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점차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연좌 대상이 되는 죄목이 증가하였다. 반면 연좌 적용 대상이 되었던 친족의 범주는 종족 전체 혹은 구족까지 포함하였던 이전과 달리 점차 축소되어서 아주 가까운 친족 혹은 3촌 이내로 한정되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실시에 따라 근대 사법체계로 전환되면서 폐지되고 죄는 모두 각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형사처벌로서의 연좌는 사라졌지만 근대 이후에도 중대한 범법자의 가족들은 행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연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전통시대에 연좌제를 시행했던 이유 중 하나는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여겼기 때문이다. 국가의 범죄통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법기구에서 수행하지만 전통시대에 공권력이 각 지방과 가정에까지 미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역 향촌사회 자체의 규약을 통해 상호감시를 하거나 연좌제의 굴레에 얽혀 있는 가족 내에서 상호 감시하는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明律, 신라시대의 연좌제(주보돈, 대구사학25-1, 대구사학회, 1984), 연좌제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의미망(김영범, 사회와 역사24, 한국사회사학회, 1990), 조선시대 연좌제의 실상(심재우, 한국문화5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조선왕조의 연좌제(진상원, 역사와 경계113, 경남사학회, 20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나영훈(羅榮勳)

열녀담
烈女談

정의 여자가 한 남자를 위해 곧은 절개를 지키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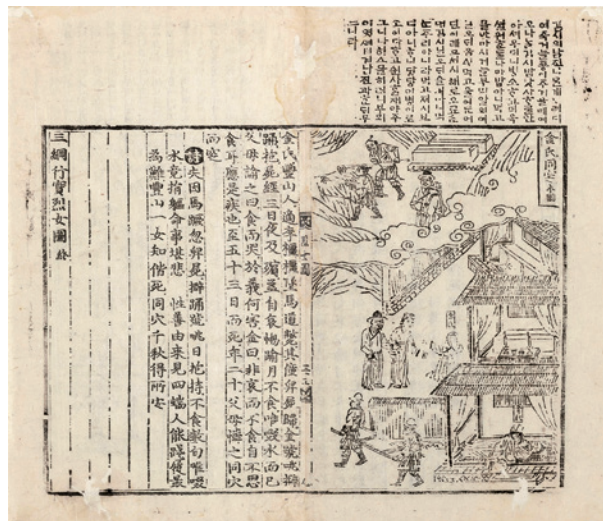
역사 열행烈行은 유학儒學이 사회적 규범이 되기 이전부터 칭송받아 이른 시기부터 문헌에 올랐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도미都彌의 처〉와 〈설씨녀薛氏女〉 설화가 실려 있는데, 〈도미의 처〉는 처의 이름조차 알 수 없지

만 관탈민녀형官奪民女形 설화의 전범으로, 부부는 믿음과 신의로 난관을 뚫고 나간다. 〈설씨녀〉는 '혼인 약속 굳게 지키기'의 표본으로, 두 이야기는 상하층을 두루 배경으로 하여 행복한 결말을 보여 준다. 즉 교조화敎條化된 열녀담烈女談이기 이전에 순수한 애정담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김제상의 처'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오직 남편만을 그리워하고 애통해하다 죽어서 신모神母가 되었다. '도화녀桃花女'는 사통私通을 요구하는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였으나 남편 사후에 찾아온 죽은 왕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다. 관탈민녀형 설화이고 유교적인 예도로는 열녀라 하기 어려우나 남편과의 신의는 지킨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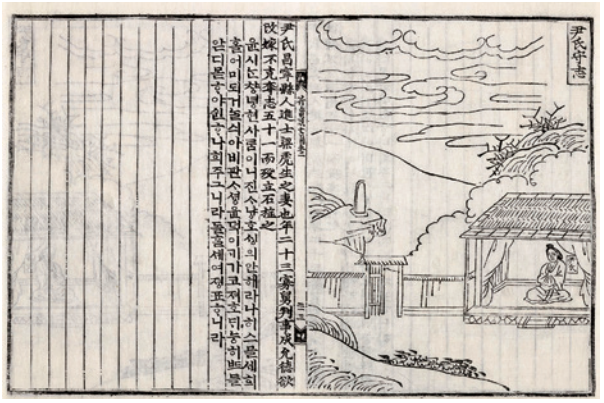
『고려사高麗史』「열전列傳」에는 열네 사람이 '열녀전烈女傳'이라는 구체적인 제목 아래 올라 있는데, 이들은 주자학朱子學적 이념으로 무장한 열녀의 행적을 여실히 보여 준다. 호병과 왜적의 추격을 받은 여인들은 정절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물속으로 뛰어들고 벼랑 아래로 투신한다. 자식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열녀전'의 이념은 지극히 맹목적이고 독선적이다. 고려조의 여성들은 외적의 침입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 일어난 변란變亂과 정쟁政爭 한가운데에서도 남편을 구하고 정절을 지켰다. 화재와 호환虎患 등 장애 요소를 극복한 일화에서는 민담이 역사서에 오른 과정을 역력히 볼 수 있다. 안천검의 처, 권금의 처의 예화例話는 민간에서 형성된 열녀담이 이야기가 가지는 진실성이라는 힘에 의해 상층으로 밀고 올라가서 전승되고 기록에 남게 된 흔적이다. 「열전」의 열녀담은 다양성이나 사실성보다는 강력한 명분론名分論으로 재단裁斷되었다는 것이 그 총체적인 성격이 되는데, 이는 편찬자가 주자학적 이념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이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선초鮮初의 유학자들이 민간에 성리학적 규범을 확산시키기 위해 만든 교훈서로, 중국과 한국의 기록을 싣고 있다. 한국의 예화는 모두 15편으로, 〈도미의 처〉가 그 첫머리에 보인다. 『삼국유사』 쪽 기록은 없으며, 『고려사』「열전」 기록도 매우 온건하게 꾸미고 있다. 예를 들면 「열전」에서 현문혁의 처와 김언경의 처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욕보이려는 상대에게 욕을 퍼부었다고 하나 『삼강행실도』에서는 꾸짖었다고 묘사되고 있다. 열녀들은 외적外賊에게 양팔이 잘려도 끝내 굴하지 않고, 호환에도 씩씩하게 저항하여 남편의 목숨을 구한다. 규범을 넘어서는 자연애에서 발로한 열녀담은 〈김씨동폄金氏同窆〉이다. 이강에게 출가한 김씨는 이강이 말에서 떨어져 죽자 한 달이 넘도록 애통해하며 오직 물만 먹는다. 부모가 "먹고 곡하는 것이 의리에 무엇이 해로우냐?" 하니 김씨가 말하기를 "슬퍼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먹고 싶지 않으니 아마도 병인가 봅니다." 하였는데, 53일이 지나서 죽으니 부모가 한 구덩이에 묻었다. 이때 나이 20세였다. 『삼강행실도』는 남편이 죽은 직후에 곧 따라 죽어 남편과 한데 묻히는 김씨녀를 귀감龜鑑으로 삼고, 교훈서의 성격답게 온건한 표현과 필체로 민간의 백성에게 바람직한 열녀상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 후기 문헌설화집에는 주인공의 계층, 장애 요인, 수절 방식 등이 무척 다양하게 펼쳐진다. '문헌설화'는 일화 형식을 띠고 있어서 열녀담도 실재實在 이야기처럼 사실적이다. 문헌설화에는 호환과 손가락을 자르는 병구완은 많지 않은데, 이는 설화를 기록한 유식자 계층이 실재 이야기를 애호하였기 때문이다. 사대부가士大夫家와 향족鄕族의 부녀자들이 규범과 예도에 따라 정절녀貞節女의 길을 걸어갔다면 일반 백성·비자婢子·기생들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 나갔다. 대표적인 여성이 길씨녀吉氏女, 우하형禹夏亨의 수급비水汲婢, 곡산의 기생 매화이다. 이들은 정절에 구속되지도 않았고 절개를 요구받은 바도 없으나 자신의 선택으로 자기 의지의 가치를 높인다. 문헌설화의 편자



김씨동폄 | 삼강행실도 중 부분 | 가로23 세로38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윤씨수지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중 부분 | 가로25 세로38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열녀상은 충무공의 후예인 이절부인데, 그녀의 행적은 당대 사회의 윤리와 관습의 냉혹함을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노씨 집안의 박열부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칼로 자결하였으며, 그 시신은 4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았다고 한다.

내용 민간에 구전되는 열녀설화는 외연外延이 넓고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은 진실성을 담고 있다. 여인에게 정절貞節은 혼인하기 전이나 후, 남편이 살아 있을 때나 죽은 후에도 변함없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절을 지키기 어려운 장애 요소로 외적의 침입, 호환, 자연재해, 관의 폐해, 남편의 병, 외간 남자의 강압과 유혹, 송사訟事 그리고 친정 부모의 개가改嫁 권유 등이 발생한다. 열녀의 신분은 양반·평민·기생·거지·종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상층 이데올로기였던 정절이 민간으로 파급된 현실의 반영이다.

구비설화口碑說話의 열녀담에서는 남편 사후 바로 따라 죽지 않고 홀로 된 시부媤父를 극진히 모시며, 양자를 데려다 대를 잇고 시부 사후 삼년상을 치른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인을 이상적인 열녀로 추앙한다. 여기에 소년 과부가 된 딸이 안쓰러운 친정 부모가 거짓 호상好喪을 꾸며 딸을 오게 하고, 사태를 알아차린 딸이 식구들이 잠든 밤길을 나서자 호랑이가 시가로 데려다준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주인공이 구해 주고 그 호랑이가 물어다 준 양자와 잘 살았다는 행복한 결말은 윤리적인 열녀담에 이야기로서의 문학성까지 보태고 있다. 정절을 지키며 일생을 혼자 사는 것이 어렵고 불행한 일임은 〈과부 개가시키기〉에서 상부喪夫한 어린 딸을 죽었다고 꾸미고 머슴을 딸려 먼 곳으로 가살게 하는 재상가宰相家 부친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나아가 열불열烈不烈 설화에 이르면 다수의 사람이 열烈이라는 규범에 관해 깊이 사색하고 고민한 흔적을 보게 된다.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남자를 맞은 여인이 과연 열녀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보면 '정절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고뇌를 알 수 있다. 윤리와 현실의 치열한 갈등을 가장 의미심장하게 드러내는 것은 '열녀시험형' 설화이다. 선비·판서·고을원 등 상층 계급의 한 남자로 시작되는 이야기에는 아내와 주막을 하는 누이, 두 여인이 등장한다. 그리고 열녀시험에는 반드시 상급이 걸린다. 결말에는 처음 예상과는 달리 규중의 아내가 아닌, 제약을 벗어난 삶을 사는 누이가 열녀시험을 통과하고 주인공은 상급을 받는다. 순수한 정절과 굴레로서의 수절, 수절의 엄정함과 가혹한 시련 등에서 허구적 형상화에 담긴 삶의 진실성을 보여 준다. 주인공 남성은 아내의 부정보다 상급에 더 관심이 크다. 조선시대 정표의 포상이 가문의 명예 이상으로 관건이었음을 이야기가 방증傍證해 주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열녀담은 여성보다 남성 구연자口演者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전승하고 있다, 정절은 남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요구하는 규범이다. 동일한 유형 내부에서도 남성 구술자가 여성 구술자보다 주인공에게 더욱더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열녀담을 열행담烈行談이라고도 하는데, 열녀담에는 남성도 주인공인 '혼인 약속 굳게 지키기'(『삼국사기』 강수强首) 유형이 있으나 유형과 예화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압도적이므로 열녀담이 정확한 명칭이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이 중국에 갔을 때 조선의 자랑거리로 여인들의 행실을 들었다. 정절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도 자연애에 발로發露한, 여성이 한 남성을 섬긴 애정담이 열녀담으로 인식되어 왔다.

참고문헌 구비 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김대숙, 고전문학연구9, 한국고전문학회, 1994), 문헌설화 소재 열과 애정의 주체로서의 여성(김대숙,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조선시대의 정표정책(박주, 일조각, 199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성 제보자 구연설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김대숙, 한국고전연구9, 한국고전

연구학회, 20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대숙(金大琡)

영혼결혼식
靈魂結婚式

정의 결혼을 못 하고 죽은 이를 위해 사후에 올려주는 결혼식.

내용 다양한 이칭으로 불리는 영혼결혼식靈魂結婚式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혼결혼식은 무속에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교와 불교에서도 행해지며 통일교에서도 행해졌다는 조사보고도 있다. 영혼결혼식은 의례 진행방식, 의례 당사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의례 진행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표적인 영혼결혼식의 유형으로 무속형, 유교형, 불교형을 들 수 있다.

무속형은 무속의 굿 형식으로 영혼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오기굿, 오구굿, 씻김굿 등 각 지역 무속에서 망자의 저승 천도를 위해 행해지는 죽음 관련 굿에 망자 혼례식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망자의 혼례식을 치른 다음 망자의 저승 천도를 위한 절차가 행해진다. 무속형 영혼결혼식의 경우 혼례식 이후 신랑 신부에게 신방을 차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의 하나로 포함된다. 영혼결혼식은 이른바 유교 형식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즉 무당을 부르지 않고 유교혼례처럼 신부 집에서 양가 친척이 모여 남녀의 사진을 제단 위에 놓고 축문을 읽는 것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묘지에서 행하는 경우도 있다. 신부의 묘에 가서 이장축移葬祝을 고하고 신부의 시신을 신랑의 묘로 옮겨 묻어 쌍분을 만드는 것으로 사후결혼을 치르기도 한다. 그리고 사후 결혼을 한 망자에게 제사를 지낼 후손이 없으면 양자를 입양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도 한다. 불교형은 불교 사찰에서 승려의 주관하에 진행되는 영혼결혼식을 말한다. 불교형 영혼결혼식은 어느 한 종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불교 종단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불교형 영혼결혼식은 일반적으로 두 망자의 혼례식을 올린 후 극락왕생을 비는 천도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는 사찰에 따라 다르다. 또한 무속형의 영혼결혼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랑·신부 신방 차려주기가 사찰에 따라 행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 가족과 친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영혼결혼식은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 간혹 남녀 중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 즉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혼결혼식이 이뤄지기도 한다. 남녀가 함께 애까지 낳고 살았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지내다가 남편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아내와 죽은 남편 사이에 이뤄지는 굿 형식의 영혼결혼식이 그 예이다. 또한, 반드시 미혼의 남녀끼리 영혼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며 기혼남과 미혼녀, 미혼남과 기혼녀, 기혼남과 기혼녀 사이에 영혼결혼식이 이뤄지기도 한다. 기혼자의 경우 생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생전이나 사후에 홀로 된 사람이 영혼결혼식의 대상이 된다.

영혼결혼식에서 이전에는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로 신랑·신부를 상징하였다. 그러나 인형이 일반화되면서 허수아비 대신 인형으로 신랑·신부를 나타내게 되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혼결혼식이 이뤄지는 경우,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인형을 대상으로 영혼결혼식을 치르게 된다.

영혼결혼식의 상대를 정하는 역할은 주로 영혼결혼식을 주관하는 무당이나 승려가 맡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족이나 이웃이 상대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영혼결혼식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범위는 어떤 형식으로 영혼결혼식을 치르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무속의 굿 형식에 의한 영혼결혼식은 동네에서 할 경우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참관한다. 그래서 참여자의 범위가 양가 가족이나 친지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유교식이나 불교식으로 영혼결혼식을 치르는 경우 대체로 참여자가 양가의 가족과 친지들로 한정되기 마련이다. 무속형의 경우에도 굿당에서 행해

지는 영혼결혼식에는 가족과 친지로 참여자의 범위가 한정된다.

특징 및 의의 영혼결혼식의 일차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결혼식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생의례가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해당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영혼결혼식에는 죽음 이후의 삶과 생전의 삶의 연속성에 대한 관념이 기저에 깔려 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생전의 삶과 다르다면,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생의례를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생의례 및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환갑을 치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행하는 망자환갑굿이나 사갑제死甲祭 등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영혼결혼식은 일생의례가 인간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잘 보여준다. 영혼결혼식은 미혼으로 죽은 사람은 정상적인 조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상이 되도록 행하는 일생의례이다. 이는 일생의례가 산 사람은 물론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보여준다. 영혼결혼식은 망자가 가족의 꿈에 현몽해서 결혼식을 요구하거나, 삶에 문제가 발생해서 미혼으로 죽은 가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될 때 행한다. 아니면 보통은 가족들이 미혼으로 죽은 가족을 위해 행한다. 어느 경우든 결혼식 같은 일생의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관념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혼결혼식은 인간 삶에서 일생의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참고문헌 사후결혼의 구조연구(노성환, 비교민속학16, 비교민속학회, 1999), 사후결혼의 의미(최길성, 비교민속학1, 비교민속학회, 1985), 제주도의 사후혼(최재석, 한국학보13, 일지사, 1978), 한국 전통 죽음의례의 변화(이용범, 종교문화비평16,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9).

필자 이용범(李龍範)

예기
禮記

정의 중국 고대의 예禮에 관한 기록과 그 해설을 담고



예기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있는 책으로 유교 경전인 오경五經의 하나이며 『주례周禮』『의례儀禮』와 함께 '고례古禮' 또는 '삼례三禮'로 지칭되는 예서.

내용 공자孔子는 하夏·은殷·주周 3대 이래의 문물제도와 의례儀禮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삼았다. 이후 예禮에 대한 기록이 쌓여 한漢나라에 이르러서는 200여 편이나 되었다. 중국 역사에서 예학禮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선도적 학자는 대덕戴德과 대성戴聖이다. 이들은 흩어진 예설을 수집하여 편찬하였다. 이들은 숙부와 조카 사이로 대덕이 대성의 숙부이다. 한漢나라의 정현鄭玄은 그의 『육예론六藝論』에서 "지금 세상에서 행하는 예는 대덕과 대성의 학學이다. 대덕은 「기記」 85편을 전하였으니 곧 『대대례大戴禮』이고, 대성은 「예」 49편(『소대례小戴禮』)을 전하였으니 곧 이 『예기禮記』다."라고 하였다. 후에 『대대례』는 대개 흩어지고, 정현이 『주례』『의례』와 함께 『소대례기小戴禮記』에 주석을 붙여 이 세 책을 '삼례'라 칭하면서, 『소대례기』가 『예기』로 정착되었다. 『예기』에 대한 주석서로는 당나라 공영달孔穎達의 『예기정의禮記正義』가 대표적이다. 『예기』의 판본은 경문經文만을 수록한 것, 경문과 주석을 합록한 것(20본), 정의만 수록한 것(70권본), 경문과 주소를 모두 합록한 것(63권본)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나라의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30권이 널리 읽히고 판각되었다.

『예기』의 내용은 ①통론通論 ②제도制度 ③명당음양

기明堂陰陽記 ④상복喪服 ⑤세자법世子法 ⑥제사祭祀 ⑦길례吉禮 ⑧길사吉事 ⑨악기樂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실린 "서적으로는 오경五經이 있다." 등의 기록에 의하면, 삼국 초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된 듯하다. 통일신라 이후로 『예기』는 관리 등용 시험에 필수 과목이 되고는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에 의한 『예기』 주석은 고려 말 권근權近의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26권 11책)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예기』를 『의례』의 주석서로 인정하여 중시하였으므로, 주석서가 많이 출간되었다. 특히 『가례』의 변례를 고례에 근거하여 해석할 때에도 많이 활용되었다.

필자 한기범(韓基範)

오복제도
五服制度

정의 전통 상례에서 친소관계에 따라 5등급으로 경중을 나누어 정한 상복 제도.

역사 상복은 고인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슬퍼하는 기간을 정한 제도이기에 그 역사가 길다. 『예기禮記』의 열다섯 번째에 상복소기喪服小記, 『의례儀禮』의 열 번째에 상복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 고인과의 친소관계를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보여준다. 신라에서는 504년(지증왕 5)에 상복제를 정하고, 고려에서는 985년(성종 4)에 오복제도五服制度를 정하여, 유교식 상례가 의례의 규범으로 정착하기 시작한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식 상례가 문화적 전통이 되면서 『가례家禮』에 따른 오복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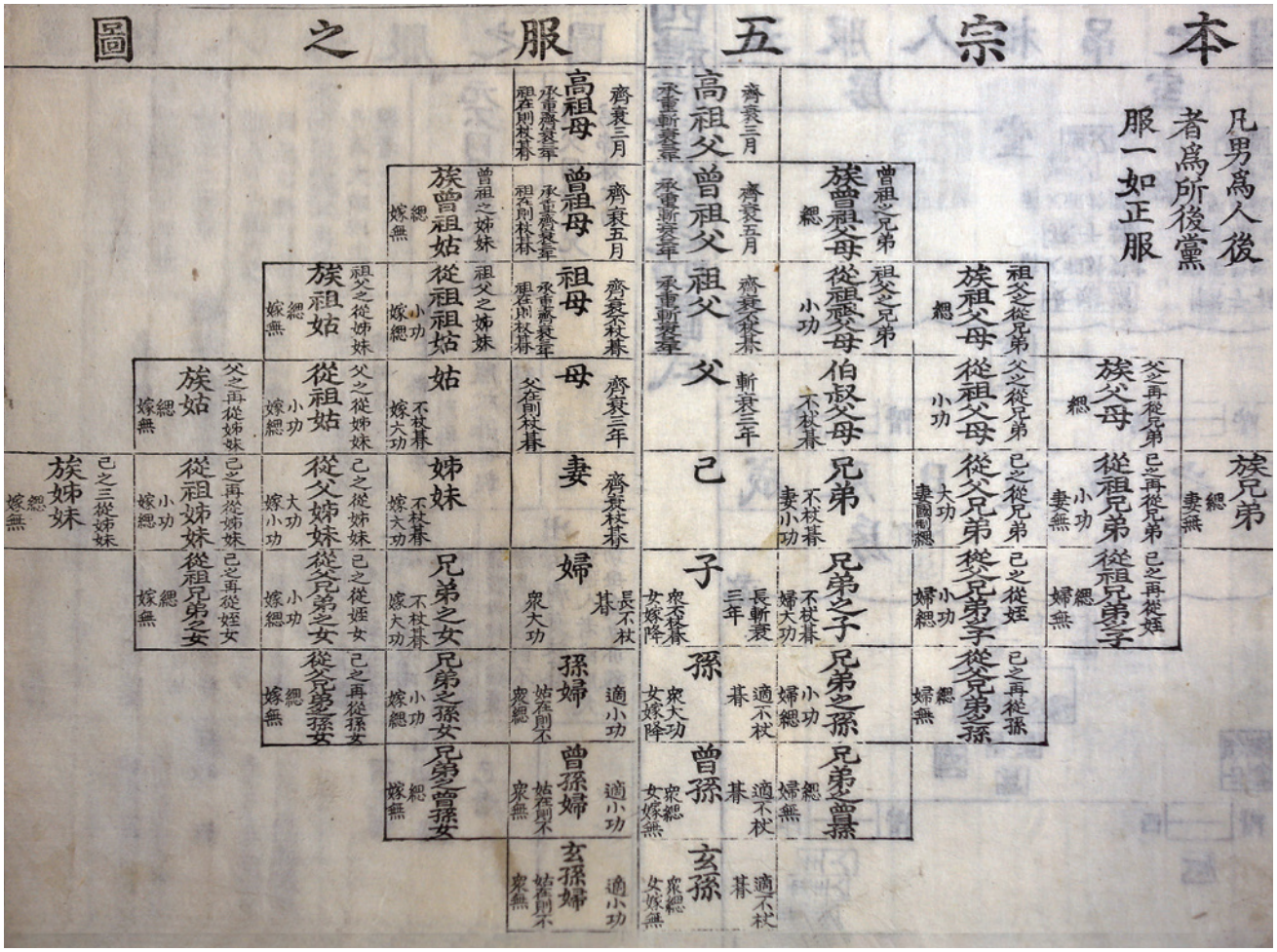
내용 상복의 등급을 다섯 종류로 정한 것은 고인과의 친소親疏, 존비尊卑, 장유長幼, 남녀유별男女有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이 차이나 차등은 도덕상 극히 중대한 질서로서 친족과 친하고[親親], 존족尊族을 존경하고[尊尊], 연장자를 공경하고[長長], 남녀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것[男女有別]으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윤리를 기반으로 한다. 오복의 '복服'은 소속되어 따른다는 복종服從의 의미이다.

오복에는 참최斬衰, 재최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가 있는데, 대공 이상은 가까운 친親, 소공 아래는 관계가 먼 소疏이다. 여기에 존비와 친소의 원근에 따라 등급의 차이를 표시하는 네 가지 복이 있다. 정복正服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정식으로 입는 본복本服을 말한다. 의복義服이란 혼인, 입양 관계 등으로 명분이 생겨 의리상 입는 복이다. 가복加服은 원래의 상복에 더하여 무겁게 입는 복이다. 예를 들면, 조부가 돌아가셨을 때 손자는 기년복朞年服이지만 승중承重한 적손嫡孫은 참최복을 입어야 한다. 강복降服은 시집간 딸, 입양 간 아들이 친부모에게 입는 복, 계모에게 입는 복처럼 본복보다 가벼운 복이다. 이 네 가지 상복은 오복의 종류에서 세부 항목으로 구별된다.

첫째, 참최복은 아들과 미혼의 딸이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입는 상복으로 기간은 3년이며, 지팡이는 저장苴杖을 짚는다. 재질은 가공하지 않은 성긴 생포를 사용하며, 옆과 아랫단을 여미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특징이다. 형태는 가슴에 눈물받이인 최衰, 양어깨에 적適, 등에 부판負版을 붙인다. 가복은 승중한 손자가 조부를 위하여 입는 복 등이다. 의복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양자가 양부를 위해 입는 복 등이다.

둘째, 재최복은 아들과 미혼의 딸이 어머니, 서자가 그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입는 상복으로 기간은 3년이며, 지팡이는 삭장削杖을 짚는다. 재질은 약간 가공한 생포를 사용하며, 옆과 아랫단을 꿰맨다. 형태는 식루(최), 부판, 적이 있다.

재최복은 다시 3년, 1년장기一年杖朞, 1년부장기一年不杖朞, 5월(부장기), 3월(부장기) 등으로 기간이 세분되어 가장 복잡하다. 재최 삼년복의 가복은 승중한 적손이 조모·증조모·고조모를 위하여 입는 복 등이다. 의복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 등이다. 지팡이를 짚는 재최 1년장기의 정복은 적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증조모와 고조모를 위해 입는 복이다. 강복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이다. 의복은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살



본종오복지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아계실 때 시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이다.

지팡이를 짚지 않는 재최 1년부장기의 정복은 조부모를 위하여 입는 복 등이다. 가복은 증손이나 현손玄孫의 후예가 적손을 위해 입는 복이다. 강복은 시집가거나 나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입는 복이다. 의복은 계모가 전남편의 아들, 백숙모를 위해 입는 복 등이다. 재최 5월복의 정복은 증조부모를 위해 입는 복이다. 재최 3월복의 정복은 고조부모를 위해 입는 복이다. 의복은 계고조모繼高祖母를 위해 입는 복이다.

셋째, 대공복은 종형제자매(사촌)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으로 기간은 9개월이며 부장기이다. 재질은 조금 거칠게 누인 베를 쓰고, 단을 꿰맨다. 형태는 재최와 같으나 최, 적, 부판이 없다. 정복은 4촌을 위해 입는 복 등이다. 의복은 둘째 이하의 며느리, 질부를 위해 입는 복 등이다.

넷째, 소공은 증조부모,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으로 기간은 5개월이며 부장기이다. 재질은 조금 곱게 누인 베를 쓰고 단을 꿰맨다. 형태는 최, 적, 부판이 없다. 정복은 족증조부族曾祖父(증조부의 형제로 종증조부), 외삼촌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 등이다. 의복은 족증조모族曾祖母(증조부 형제의 아내로 종증조모)의 상을 당해 입는 복 등이다.

다섯째, 시마는 형제의 증손, 증조부의 형제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으로 기간은 3개월이며 부장기이다. 아주 곱게 누인 베를 쓰고, 단을 꿰맨다. 최, 적, 부판이 없다. 정복은 형제의 증손, 족증조부(증조부의 형제) 등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이다. 강복은 서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사람이 그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이다. 의복은 족증조모나 족조모, 외손부 등의 상을 당

하여 입는 복이다.

이에 덧붙여 일찍 죽은 이에게 한 등급을 낮춰서 입는 상복殤服이 있다. 그리고 스승이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상을 당하면, 상복을 입지 않고 3년 동안 마음으로 슬픔을 표하는 심상삼년心喪三年이 있다. 또한, 부인으로서 강복하여 복이 없는 사람이나 스승, 선비, 친구, 종의 상을 당했을 때 흰옷을 입고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더하는 조복가마弔服加麻가 있다.

지역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복이 다르기도 하다. 그 예로 기호지역에서는 여성의 상관喪冠을 중시하지만 영남지역에서는 개두蓋頭를 중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상복 제도는 고인과 산 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혈연관계, 가족제도, 지위에 따른 상하 유대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사회 질서의 기초이다. 이를 기반으로 상복은 매우 세분화되고, 그 구분은 엄격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을 비난할 때 '실컷 울다가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묻는다.'라는 속담을 만들어낼 정도였다. 이 속담은 상주의 상복을 보면 부친상인지 모친상인지 구별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빗댄 말이다. 일상생활에 스며든 상복 제도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징 및 의의 1391년(공양왕 3)에 복제를 개정하면서 『대명률大明律』을 따랐으나, 예외적으로 외조부모의 복은 중하게 여겨 처와 조부모와 같은 재최 기년복으로 하였다. 이는 고려의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으로 처가살이가 많아 아이가 외조부모의 양육을 받았던 사회적 여건을 참작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1430년(세종 12)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복이 소공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 달을 더 입도록 건의하였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인 혼례에서 친영親迎하지 않는 까닭에 사위가 처가살이하고, 아이가 외가에서 자랐기에 처부모(아이의 외조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왕이 정한 예의 근본을 어겨서는 안 된다면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다. 이유는 종법에 따른 부계혈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오복제도는 고조부모까지의 상을 당했을 때 입어야 할 상복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오복제는 사대봉사의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四禮便覽, 禮記, 五禮儀, 儀禮, 朝鮮王朝實錄,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오복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전혜숙·권이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2, 한국의류산업학회, 2004), 삼년상-소운 김시인(김시덕, 국립민속박물관, 2011), 삼년상-화재 이우섭(김시덕, 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필자 김시덕(金時德)

오빠

정의 같은 부모를 둔 남녀 동기 사이에서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을 이르거나 부를 때 사용하는 어휘.

내용 오빠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남녀 동기同氣 사이에서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사용하는 한국어 친족어 중 하나이다. 또한 '사촌·이종사촌·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친족 남성이나 부모의 재혼으로 형성된 관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현대 언어생활에서는 친족이 아닌 비친족 남성에게도 사용되고 있다. 이때 '오빠'는 지시 대상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와 가리켜 이를 때 사용하는 지칭어 기능을 가진다. 한 가정 내에서 오빠를 사용해야 할 남성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남성 연령 기준으로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나 '큰오빠, 작은오빠'와 같은 어휘 또는 '이름+오빠'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지시 대상을 구분한다. 또한 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사촌 오빠, 이종사촌 오빠, 고종사촌 오빠 등을 사용하고 촌수가 먼 친척의 경우에는 촌수 구분 없이 '친척 오빠'를 사용하여 그 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친족어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까닭에 동기 관계임을 알려야 할 때는 접두사 '친親'을 붙여 '친오빠'라는 지칭어를 사용한다.

이처럼 실제 언어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사용되는 오빠의 확장 어휘소는 대부분 지시 대상과의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지칭어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호칭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또한 현대에 와서 '오빠'는 혼인한 여성이 남편에게 호칭어로 사용하는 친족어 용법이 추가되었다. 이는 혼인 전 비친족 관계에서 사용하던 습관이 혼인 이후에도 유지된 것이다. 반면 비친족 여성에게 사용하는 '누나'를 아내에게 사용하는 것은 오빠 사용과 비교하여 자연스럽지는 않다.

특징 및 의의 한국 전통사회에서 친족어 '오빠'는 태어난 날이 같은 쌍둥이일지라도 태어난 시각의 분分 단위까지 고려하여 관계를 구분하였다. 이는 가정 내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 전통적인 한국 언어문화의 특징이다. 또한 형·누나·오빠·언니와 같은 어휘소는 이를 선택할 때 지시 대상의 성별뿐만 아니라 어휘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의 성별을 모두 고려하는데 이는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나타나지 않는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저출산 사회로 불리는 현대에 와서 '오빠'가 친족어로 사용되는 빈도나 기초 어휘소로서의 중요도가 예전과 비교하였을 때 높다고 볼 수 없다. 가령 한 가정 내에 오빠가 없는 모국어 화자가 존재하기 시작하였고, 예전에 비해 친족 간 교류가 줄어들어 실제 언어생활에서 '오빠'를 친족어로 사용할 기회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현대에 와서 친족어 '오빠'가 비친족 남성에게 사용되는 의사친족어疑似親族語 기능은 높아지고 있다. 언어 사용자와 친밀을 공유한 연상의 남성이라면 '오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친족 남성에게 사용하는 데 매우 자연스러운 '형'과 달리 '오빠'는 비친족어 사용에 제한이 존재한다. 언어 사용자가 지시 대상에게 생각하는 친밀 정도나 그 밖의 요소 혹은 언어 사용자의 의지가 어휘소 '오빠'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에서는 지시 대상이 되는 남성이 여성에게 '오빠' 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다소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오빠'는 높임을 전달하기 위해 확장된 '오라버니'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언어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어휘소는 아니며, 현대에 와서 '높임'의 의미를 전달하는 양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본래 기능을 상실한 사어死語에 가까운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오빠'는 아버지 부재 시 동생 부양을 위한 경제적 행위와 관련된 역할과 한 집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가장家長 역할을 잠재적으로 담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지속된 전통사회에서 가장 역할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 부재 시 맏이가 되는 여성이 존재하더라도 남성에게 부여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런 이유로 남성은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잠재적으로 담당해야 할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오빠 역할은 현대사회에서도 지속되는 듯하다. 가령 아버지가 없는 여성이 혼인 때 오빠의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하는 사례 등에서 지금도 오빠가 아버지 부재 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혼인 이후 중단된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혼인한 여성을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인식하여 남과 같은 대상으로 여겨 왔기 때문이다. 이는 형이 남동생의 자녀에게서 큰아버지로 불리는 것과 달리 오빠는 여동생의 자녀에게서 외삼촌 혹은 삼촌으로만 불릴 뿐 부양 의무를 가진 '아버지'가 확장된 특별한 어휘소가 친족어로 존재하지 않는 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친족어의 호칭어로서 확장·사용 양상(김광순, 한국어 의미학48, 한국어의미학회, 2015), 한국어 친족어의 의미(김광순, 박문사, 2017).

필자 김광순(金光淳)

외가
外家

정의 어머니 쪽 집안을 일컫는 말.

개관 어머니 쪽, 즉 모계母系친족을 외가外家라 한다. 특히 어머니의 부계父系친족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친

가親家·처가妻家와 함께 개인의 친인척 관계를 구분하는 주요 개념이다.

내용 일반적으로 외가는 어머니 쪽을 가리키는 용어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변형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어머니의 어머니, 즉 외조모의 가족은 외외가外外家, 아버지의 어머니, 즉 조모의 가족은 진외가陳外家로 부르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한반도에서는 오랫동안 서류부가壻留婦家 또는 남귀여가男歸女家, 즉 남녀가 혼인하면 신랑이 신붓집에서 거주하는 처가살이의 관습이 일반적이었다. 고구려 풍습으로 알려진 서옥제婿屋制 역시 이러한 관습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흔했던 처가살이의 흔적은 혼인 관련 용어에도 남아 있다. '장가들다(장가가다)'라는 표현은 신랑이 장가丈家, 즉 장인 집에 결혼하러 가는 관습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처가살이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유지되었다. 이러한 관습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재산상속 방식 때문이기도 하였다. 당시 양반 가족들의 재산 분배 문서인 분재기分財記를 보면 재산은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 순위와 크게 관계없이 골고루 분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부부는 혼인 후 남편 쪽이 아니더라도 아내의 재산을 기반으로 처가 인근에 거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처가 인근에 정착한 양반 가족의 배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외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외조부모外祖父母는 물론 외숙, 외사촌, 이종사촌 등과 정서적·학문적으로 교류하였다. 영조英祖 대 어사御史로 잘 알려진 박문수朴文秀 역시 외가가 있던 진위振威(현재 경기도 평택시)에서 태어나 외숙인 이태좌李台佐로부터 학문과 소론少論의 정치적 성향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균분상속이 일반적이었던 조선 중기까지는 재산에 따른 제사 의무도 아들과 딸의 가족이 골고루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부계 자손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제사를 외손이 맡아 이어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의 경우 아들이 없던 권덕황權德凰의 딸과 혼인한 뒤 친가가 있던 경상북도 안동 천전리를 떠나 금계리에 자리를 잡았고, 김성일 후손들은 김성일뿐만 아니라 그 장인인 권덕황의 제사도 함께 지내고 있다.



안동권씨성화보 | 가로29 세로43 | 조선 전기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근대 가족 문화에서 보이는 외가와의 친밀한 관계는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족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계선조로부터 내려온 부계후손들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 가운데 하나인 안동권씨족보[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1476)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안동권씨가 아닌 안동권씨의 외손과 그 후손이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부계를 중심으로 족보 편찬 방식이 변화하였으나 조선 후기까지도 외손을 자세히 기록하거나 외가를 포함한 비부계 선조들의 기록을 충실히 담은 족보들이 꾸준히 편찬되었다.

전통시대 한국 사회에서 모계와 외가의 위상이 중요하였음을 알려주는 사례로 호적을 들 수 있다. 조선 조정은 3년마다 전국에 걸쳐 거주자를 파악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호적의 호戶는 함께 거주하는 다양한 성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주호主戶와 배우자, 그 선조들[일명 사조四祖: 부父, 조祖, 증조曾祖, 외조外祖]의 성명, 신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호의 신분을 결정하는 데 남편은 물론 그 처의 가족, 즉 처가의 신분도 중요한 요소였다. 더구나 사조에 부계 선조뿐만 아니라 외조가 들어간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전통사회에서 보이는 외가의 중요성은 부친과 부계의 신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던 당대 중국사회와 크게 대비된다.

특징 및 의의 '친가'라는 용어가 실생활에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외가라는 용어는 다양한 고문서에서 쉽게 발견된다. 전통시대 한국 사회와 가족 문화에서 외가와 모변母邊친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오래된 처가살이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후기 이후 부계친족집단이 점차 발달하고 부계친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이 늘었지만 외가의 중요성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사회구조와 가족 문화의 변화로 외가와의 관계가 다시 강화되는 추세이다. 더구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모친의 성姓을 따르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참고문헌 18세기 경상도 사족의 거주 방식과 가족 관계(김정운, 역사교육논집69, 역사교육학회, 2018), 조선후기 양반층의 친족 네트워크(한상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한국 고·중세의 혼인제와 유녀의 인식(이현주, 여성과 역사36, 한국여성사학회, 2022),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필자 한상우(韓相祐)

외동

정의 부모가 다른 자식 없이 단 하나뿐인 자식을 이르는 말.

내용 외동은 부모가 다른 자식 없이 단 하나뿐인 자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同氣 없는 아이를 외동아이라고도 한다. 외둥이는 외아들이나 외딸을 귀엽게 이르는 말이다. 하나뿐인 자식의 성별에 따라 아들이면 외동아들이라 하고 딸이면 외동딸이라고 한다. 줄임말은 외아들, 외딸이다. 외아들과 외딸은 다른 남자 동기나 다른 여자 동기 없이 단 하나뿐인 아들과 딸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비슷한 말로 다른 여자 동기 없이 하나뿐인 딸인 독녀獨女가 있다. 무남독녀無男獨女는 아들 없는 집안에 하나뿐인 외동딸이다. 반면 아들 많은 집에 하나뿐인 외동딸은 고명딸이라고 지칭한다. 무남독녀나 고명딸 모두 귀하게 태어나서 자란 딸을 의미한다. 다른 남자 동기 없이 하나뿐인 아들은 독자獨子라고 한다.

조선시대는 제사 계승과 종족 결합을 위해 친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인 종법宗法을 중심으로 가족 질서가 재편되었다. 이에 아들이 가家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식이 발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오직 한 명의 아들만 태어나서 대代가 끊기지 않고 겨우 대를 이어 내려온 집에서 태어난 아들에게는 독자 앞에 특별히 대의 숫자를 추가하여 지칭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2대 독자, 3대 독자, 4대 독자, 5대 독자라고 지칭하였다. 독자로 태어난 하나뿐인 아들은 대의 숫자가 커질수록 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1962년부터 산아제한産兒制限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6년 대한가족계획협회는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에 이전에 단산하자.'는 뜻의 3·3·35라는 표어를 채택하고 캠페인을 펼쳤다. 1970년대에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산아를 제한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하였다. 국가의 적극적인 가족계획 정책의 영향으로 한 자녀만 낳고 출산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였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농離農 현상이 증가하면서 1983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은 농어촌 중심에서 도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1984년 서울 용산구의 한 유치원 원생 120명 가운데 14%인 17명이 다른 형제가 없는 외동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으로 한 자녀 가정이 늘자 외동아이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그래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외동으로 태어난 아이들끼리 형제자매처럼 어울려 지내도록 하자는 의미로 '우리는 형제'라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포스터 문구에 외동으로 자란 아이의 특성을 "내가 고집장이 응석받이라고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외동딸, 외아들을 보면 흔히들 말합니다. '귀엽게만 자라서 나약하고 자기만 아는구나'라고요."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산아제한정책으로 자녀수가 점점 감소하였다. 2004년에는 가족계획 표어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졌고, 한 자녀만 낳는 3인 가족이 늘면서 외동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2022년 현재는 0.78명으로 떨어졌

다. 외동은 대부분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어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삶을 형성한다. 외동은 경쟁자의 압력을 덜 느끼는 반면에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누거나 협동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수 있다. 외동은 나이에 비해 상당히 성숙하고, 부모의 통제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특징 및 의의 전통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복이 있다는 다산多産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한국 사회는 1960년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6.0명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한국 정부가 시행한 산아제한정책으로 가족 내 자녀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부부가 한 자녀만 낳은 가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외동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자녀수 감소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참고문헌 가족과 친족(이광규, 일조각, 1992), 결혼초기 여성의 친족관계(김주희, 가족과 문화21-4, 한국가족학회, 2009), 한국 가족계획의 역사(강준만, 인물과 사상124, 인물과사상사, 2008),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배은경, 시간여행, 2012).

필자 김지영(金志榮)

외손봉사
外孫奉祀

정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외손外孫이 대신 제사를 지내는 것.

역사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한 집안의 제사는 적장자嫡長子를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되었지만,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제사를 담당하는 봉사자奉祀者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해졌다.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아 지내는 윤회봉사輪回奉祀, 딸의 자손이 지내는 외손봉사外孫奉祀, 죽은 장자의 부인이 지내는 총부봉사冢婦奉祀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존재했던 봉사방식은 17세기 이후 적장자에 의한 가계 계승을 강조하는 종법적宗法的 가족질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점차 적장자봉사로 바뀌게 되었다.

내용 15~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부계 우위이긴 하지만 양계적兩系的인 친족관념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친손과 외손의 구별이 그리 엄격하지 않았고 단계적單系的 혈통관념과 가계 계승에 관한 인식도 비교적 희박했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외손봉사의 관행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활발했던 외손봉사의 모습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길안면 묵계리에 터를 잡은 안동김씨安東金氏 입향조 김계행金系行(1431~1517)은 김삼근金三近의 차남이다. 그는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뜨자 이듬해인 1454년 묵계마을 남상치南尙致의 딸인 의령남씨宜寧南氏와 재혼하였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원래 묵계마을은 의령남씨의 세거지인데, 아들이 없던 남상치가 사위인 김계행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외손봉사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 뒤 김계행의 후손들이 남상치 내외의 제사를 지내오다가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의령남씨 후손들이 남상치 부부의 묘를 이장해감으로써 그들이 맡게 되었다.

서후면 금계리에 터를 잡은 의성김씨義城金氏 입향조 김성일金誠一(1538~1693)은 김진金璡의 4남이다. 그는 18세에 안동권씨安東權氏 부인을 맞이하여 1582년 7월, 45세 되던 해에 처가의 터전인 금계마을에 정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금계마을로 들어온 김성일은 처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장인인 권덕황權德凰이 세상을 뜨자 홀로 된 장모를 모셨다. 현재 금계리의 의성김씨 문중에서는 매년 10월 10일 권덕황의 내외의 묘사를 지내고 있다.

한편 풍천면 하회마을에서는 외손봉사뿐만 아니라 외외손봉사外外孫奉祀까지 확인된다. 류종혜柳從惠는 풍산 상리에서 거주하다 배상공裵尙恭과 함께 하회마을로 들어왔다. 이후 권옹權雍이 후사後嗣가 없는 배상공의 아들 배소裵素의 사위가 되어 하회마을로 들어온 뒤에 처가인 흥해배씨의 제사를 맡아 지냈다. 그런데 권옹 역시 후사가 없어 사위인 류소柳沼(류종혜의 둘째 손자)가 재산을 물려받아 권옹뿐만 아니라 흥해배씨興海裵氏의 제사까지 지내게 되었다. 그 뒤 류소의 차남인 류자온柳子溫의 후손이 제사를 이어받아 매년 묘사를 지내고

있다.

이처럼 한 문중에서 외손봉사를 하는 것과 달리, 여러 문중이 외조를 함께 모시는 경우도 눈에 띈다. 변계손卞系孫은 1393년(태조2)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 벼슬까지 올랐는데, 아들 청원淸源이 영양김씨英陽金氏 김지로金智老의 사위가 되어 안동의 녹전면 사신동으로 이주해 선주민인 의성김씨義城金氏, 함양박씨咸陽朴氏, 김해허씨金海許氏 등과 혼반을 형성했다. 그 뒤 변계손의 증손 변효검卞孝儉 대에 이르러 아들이 없자 여러 집안에 속한 외손들이 제사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외손봉사는 종법적인 가족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 윤회봉사와 함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런 현상은 부계 우위이긴 하지만 부계와 모계를 크게 구별하지 않는 양계적인 친족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친족관념에 바탕을 둔 사회적 관행의 지속과 변화는 마을의 성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종법의 실천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에는 처가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위가 처가의 터전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여러 성씨가 함께 살아가는 이성잡거異姓雜居의 형태를 띠는 마을들이 많았다. 그러나 17~18세기를 거치면서 적장자에 의한 가계 계승과 적장자 우위의 상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점차 특정 성씨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성마을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참고문헌 동성마을 정착과정에 나타난 친족이념의 변천양상(김미영, 실천민속학 연구11, 실천민속학회, 2008), 안동지방의 외손봉사에 대한 고찰(김호태, 안동문화연구8, 안동문화연구회, 1994), 주자가례와 조선전기의 제례문화(이숙인, 한국학 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필자 한양명(韓陽明)

우애담
友愛譚

정의 형제 사이의 정을 다룬 이야기.

내용 우애담友愛譚은 형제우애설화兄弟友愛說話라고도 하며, 주로 형제兄弟간의 우애와 협력 등 관계를 다룬 이야기이다. 형제는 형과 아우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이이며 서로에게 특별한 관계이다. 같은 부모의 자식이라는 혈연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자라면서 공통의 경험을 통해 친애감親愛感을 쌓아 간다. 그렇게 형제는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 권리나 지위, 재산 등과 같은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종종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우애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간의 우애를 지킨 이야기, 처음에는 우애가 깊지 않았지만 어떤 연유로 사이가 좋아지게 된 이야기, 형제간에 우애가 깨진 이야기 등이 전해진다.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간의 우애를 지킨 대표적인 이야기로 〈형제투금兄弟投金〉이 있다. 이 이야기는 형제가 길에서 주운 황금을 버림으로써 우애를 지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사高麗史』 권121 「열전列傳」 34 정유조鄭愈條에 실려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형제가 길을 가다가 아우가 황금 두 덩이를 주워 그중 하나를 형에게 나누어 주었다. 양천강陽川江에 이르러 같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아우가 갑자기 황금을 물속에 던졌다. 형이 이상하게 생각해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평소에 저는 형님을 대단히 사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을 나누어 가지고는 형님을 꺼리는 마음이 갑자기 싹트니 이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금을 강에 던지고 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형도 "네 말이 옳다."라며 역시 황금을 물속에 던졌다.

〈형제투금〉 이야기와 비슷한 것으로 〈지성至誠이와 감천感天이〉를 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지성'이와 '감천'이 형제의 우애에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주었다는 것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년 부부가 느지막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다리를 쓰지 못하였다. 이 아이의 이름은 지심(지성)이었다. 자신들이 죽은 후 혼자 살아갈 지심이가 걱정된 부부는 아이를 하나 더 낳았는데, 그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감청(감천)이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거지 노릇을 하던 지심이와 감청이는

서로의 다리와 눈이 되어 밥을 얻어먹고 살았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들 가운데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먹다가 커다란 금개구리를 발견하였다. 두 사람은 그것을 꺼낼 수가 없어 지나가던 소금 장수에게 금개구리를 꺼내 가지라고 말하였다. 소금 장수가 꺼낸 금개구리는 구렁이로 변하고, 이에 놀란 소금 장수는 달아나 버렸다. 구렁이는 다시 금덩어리로 변하였다. 형제는 금덩어리를 들고 절을 찾아가 시주하였다. 그때 절에서 쥐가 나타나 지심이의 다리를 물어 버렸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는데, 지심이의 다리가 펴졌다. 다리가 펴졌다는 소리를 들은 감청이도 놀라 눈을 떴는데, 사물이 보였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걷고 보게 되었고, 우애 있게 잘 살았다.

이처럼 〈형제투금〉과 〈지성이와 감천이〉 이야기는 자신의 욕심보다는 형제간의 우애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형제간의 도리를 강조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처음에는 우애가 깊지 않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지게 된 이야기이다. 형제 중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착하지 않아 서로 우애 있게 살지 못하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우애를 되찾아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꿈에 나타난 아버지로 인해 부자인 동생이 가난한 형을 도와주며 형제간의 우애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아버지 꿈꾸고 형을 도운 동생〉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형과 부유한 동생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 제삿날에 매번 동생이 제물을 장만해 형 집으로 가지고 와 제사를 모셨다. 불편함을 느낀 동생이 제사를 자기 집에서 모시겠다며 형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형은 제사를 동생 집에서 모시는 것이 부끄러워 가기를 주저하다가 시래기죽을 저녁으로 먹다 남긴 채 상을 그대로 놓아 두고 동생 집으로 갔다. 동생은 형을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별식을 잘 먹고 간다고 말하였다. 제사를 지낸 후 동생은 아버지가 드신 별식이 형이 먹은 시래기죽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동생은 깨달은 바가 있어 형에게 논을 나눠 주게 된다. 이 이야기는 평소에 서로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나타난 꿈을 계기로 형에 대한 애정이 동생에게 생겨났음을 보여 준다.

형제간에 서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게 된 〈사리사욕을 이겨낸 우애 좋은 형제〉 이야기도 전해진다. 내용을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형제가 소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대방을 죽이고 돈을 가질 생각을 서로 품게 되었다. 이에 형이 동생과 의논하여 소를 판 돈을 땅에 묻어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땅에 묻어 놓은 돈을 파 보았더니 피가 묻어 있었다. 피 묻은 돈 때문에 서로 죽일 궁리를 하였다고 여긴 형제는 이 돈을 다른 돈으로 바꾸고 반씩 나눠 가진 뒤 우애 있게 지냈다.

이 이야기는 욕심으로 인해 서로를 죽이려 하였던 형제가 피 묻은 돈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음으로써 우애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쁜 일을 예측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졌음을 보여 준다.

형제간의 우애를 회복해 주는 존재로 형수兄嫂나 제수弟嫂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되찾은 형제간의 우애〉 이야기이다. 부자인 형과 가난한 동생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형이 잡기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동안 동생은 착실히 재산을 불리었다. 그러는 동안 형은 동생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다녔다. 제수가 머리를 굴려 형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동생 생일에 술과 음식을 사 오라고 부탁한다. 형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부끄러웠지만, 생일날 제수의 말대로 술과 음식을 사서 동생 집으로 갔다. 동생도 형이 반가워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이때를 노려 제수는 논문서를 형에게 주는데 동생이 술에 취한 김에 준 것처럼 꾸민다. 술에서 깬 동생은 논문서를 찾다가 형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다행으로 여긴다. 동생에게 논문서를 받은 형은 지금까지의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우애 있게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집안의 화목은 시집온 여성에 의해 좌우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반면에 시집온 여자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는 이야기도 있다. 〈떡 두 개의 설움으로 부자 된 동생〉 이야기가 그것이다. 형의 회갑 잔치에 가난한 동생이 아들 셋을 데리고 갔는데, 형수는 떡을 두 개만 주었다. 떡 두 개를 받아든 동생은 자식들에게 먹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죽을 각오로 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금덩어리를 얻어 부자가 되었다. 그 후 동생 회갑 잔치에 망해 버린 형과 형수가 찾아오자 동생은 옛날에 형수가 준 떡 두 개를 내밀며 과거 이야기를 한다. 이는 시집온 여성의 잘못된 행동으로 형제간의 우애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되찾은 형제간의 우애〉나 〈떡 두 개의 설움으로 부자 된 동생〉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가족의 화목을 이루어 내고 지키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우애담은 가족관계를 다루는 옛이야기 중에서 효행담과 함께 많이 전해진다. 형제간의 우애와 협력, 경쟁과 갈등관계 등을 드러내 보여 준다. 우애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간의 우애가 지켜지는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애가 좋지 않은 형제도 있고, 처음에는 우애가 좋았던 형제도 갈등으로 인해 우애가 깨지기도 한다. 다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려는 형이나 동생 또는 형수나 제수로 인해 나쁜 마음을 고쳐 우애가 유지되는 관계를 만든다. 반면 형제간의 우애가 깨진 경우에는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욕심을 경계하고, 협력관계를 통해 가문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바람을 우애담에 담아 전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여성의 시각에서 본 형제 우애 설화에 나타난 가족(정충권, 문학치료연구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옛이야기 형제담의 양상과 의미(권혁래, 동화와 번역19,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형제 우애담 연구(갈은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박종오(朴宗吾)

움딸

정의 혼인한 딸이 사망한 후 사위와 재혼시키기 위하여 얻은 양녀.

내용 조선 후기 부계父系중심적 질서가 정착되기 전에는 혼인 후 처가가 혼인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장인·장모와 사위 관계도 부모—자식에 비견될 정도로 가까웠다. 그런데 딸이 사망하면 처부모와 사위, 처부모와 외손들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더구나 사위가 다시 결혼하면 그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핏줄인 외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인·장모가 사위의 후취後娶를 물색하여 양녀養女로 삼아 재혼시켰는데 이 양녀를 움딸이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양반층에서는 점차 부계 중심적 질서가 정착되어 갔지만 하층민 사회에는 이전 관습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움딸을 구하는 일은 주로 하층민 사회에서 이루어졌다.

특징 및 의의 서로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양부모—양자녀 관계가 형성되던 수양收養, 시양侍養은 입양 목적과 대상에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처부모와 사위, 처부모와 외손 관계가 가까웠던 사회상 속에서 처부모는 사위·외손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딸을 들여 사위와 재혼시키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상호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맺었던 수양·시양 관습과 처가 친족과 사위 관계가 돈독하였던 사회상이 결합하여 출현한 습속習俗이다.

참고문헌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박경, 혜안, 2011), 조선민족문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8),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필자 박경(朴景)

위자료
慰藉料

정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지급하는 금전.

내용 위자료慰藉料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는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장래에 입게 될 정신적

고통까지도 참작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위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 신체, 자유 등에 대한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통상 위자료라고 한다. 정신적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괴로움·불안감·충격·불쾌감·절망감·우울감 등을 망라한다. 예컨대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설명의무불이행이라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고, 이는 선택기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자기결정권침해 그 자체로 위자료 배상이 인정된다.

둘째, 이혼위자료청구권이 있다. 〈민법〉 제843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同條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 즉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제3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갑과 을이 부부인데 을이 집을 나가 오랜 기간 병과 동거하게 되고, 결국 갑이 을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을과 병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갑의 정신적 고통은 이혼 사유가 되는 을과 병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미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속 존재하게 된다.

이혼위자료에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 성립에 따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준별설', 이혼 사유가 되는 개별 유책 행위의 발생부터 최종적으로 이혼까지 '일련의 경과'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이혼위자료에 개별 불법행위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보는 '일체설'이 있다. 대법원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는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청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일체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셋째, 〈민법〉 제752조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이하 근친자)에 관해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근친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논의 중 하나는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이 근친자의 고유한 배상청구권인지 피해자로부터 근친자에게 상속되는 권리인지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피해자가 중상 몇 시간 후 사망하면 피해자가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사망함으로써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즉사하면 피해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가 될 수 없고, 피해자 자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존재할 여지가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긍정설은 중상으로 얼마간 생존하였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상해보다 더 중한 즉사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것이므로 즉사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근친자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속부정설은 생명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생명침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이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목적이므로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위자료를 상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속부정설 입장에서는 〈민법〉 제752조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권리주체가 아니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보호의 공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근친자에게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법원은 1966년 처음으로 위자료청구권이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상속될 수 없다는 논지를 채용 불가하다고 설시說示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한(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이후 상속긍정설에 따른 근친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피침해 법익法益이 인격권이 아닌 재산권인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학설이나 하급심과 대법원의 견해에서 상이한 점이 나타난다. 다수의 법학자는 예컨대 골동품처럼 채권자가 애착을 가진 경우 그 물건의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정신적 손해가 회복될 수 없는 때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다.

몇몇 하급심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결혼식 장면의 녹화를 의뢰받은 사진관의 녹화 기사가 결혼식 장면을 제대로 녹화하지 못해서 영상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은 결혼식 장면을 제대로 녹화하지 못한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녹화가 잘 되지 아니하여 입게 된 경험칙상 명백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짐에 따른 소유권 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이라며 재산적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문헌 민법 제752조의 위자료청구권과 그 상속성(김용호, 법학논총40-2,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재경, 의료법학21-2, 대한의료법학회, 2020), 제3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소멸시효(박설아, 가족법연구37-2, 한국가족법학회, 2023), 채무불이행과 위자료(이덕환, 법학논총26-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신옥주(申玉珠)

위토
位土

정의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

역사 조선 초기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수용으로 조상제사에 대한 법제가 정비됨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적장자 등에게 상속분으로 5분의 1을 더 주는 봉사조奉祀條의 규정에 따라 위토가 마련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유교적 가족제도가 확산하고 사대봉사四代奉祀가 널리 보급되면서 봉사조가 중시되었다.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입향조入鄕祖가 중시되면서 조상제사는 가문의 위상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고, 묘제墓祭를 강조하는 조선 특유의 제사관행이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조상제사가 지속되기 위한 물적 장치로 위토를 설정하여 적장자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사상속을 조선 상속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이후 호주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제사상속은 호주상속에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위토는 당연히 제사를 상속하는 호주상속인이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라는 관습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농지개혁법〉(1949. 6. 제정, 1996. 1. 폐지)으로 이어졌으며, 1960년부터 시행된 제정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인의 특권으로 위토 등을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하였다(제996조). 그러나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인이 아닌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였다(제1008조의3).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에서는 제사주재자를 후손들(공동상속인)이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

칙적으로 장남이,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하는 것으로 하였다.

내용 위토는 조상제사를 지속해서 거행하기 위해 마련한 재산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제전祭田, 祭位田과 묘전墓田, 墓位田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위토를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제1008조의3).

그러나 위토를 종손 등 개인이 아니라 후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경우에는 종손 등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후손들의 공동소유로 보았으며, 이러한 사정이 종중宗中을 형성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종중은 동일 조상의 후손들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단체이며, 그 소유형태는 합유合有로 본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에서는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여, 남녀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위토는 유교에 바탕을 둔 조상숭배와 제사 및 그 승계에 근거하여 조선 후기에 형성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강화되어 제정 〈민법〉에서는 호주의 특권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남녀평등의식의 강화에 따라 호주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현재 제사를 바탕으로 하는 위토는 도시화의 진척과 친족집단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사라질 운명에 있다.

참고문헌 제사용 재산의 귀속주체(정긍식, 민사판례연구22, 민사판례연구회, 2000),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연구(김상훈,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조선초기 제사승계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정긍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종법적 제사승계와 가족의 변화(정긍식, 한국사회사연구, 나남, 2003), 한국법제사(박병호, 민속원, 2012).

필자 정긍식(鄭肯植)

유복친
有服親

정의 상례 때 복제에 따라 상복 착용의 의무가 있는 친족.



상복 입은 상주 | 경북 안동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상喪을 당하면 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착용한다. 상복에는 참최斬衰·재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 등 5종류가 있는데 친족관계에 따라 종류와 착용 기간이 달라진다. 참최는 전혀 가공하지 않은 거친 삼베로, 재최는 4~6승升의 다소 거친 삼베로, 대공은 7~9승의 보통 재질의 삼베로, 소공은 10~12승의 약간 고운 삼베로, 시마는 15승의 아주 고운 삼베로 상복을 만든다. 상례 때 상복 착용 의무가 있는 친족을 유복친有服親이라고 하며, 같은 고조부를 둔 8촌의 친족관계로 구성된 부계친족집단이다.

참최복은 아버지에 대한 상복이지만 아버지가 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상을 당하였을 때도 해당된다. 참최는 오복 중에서 가장 무거운 중복重服이다. 전혀 가공하지 않은 삼베를 사용해 상의와 하의를 만들고, 옷 단을 꿰매지 않으며, 솔기를 뒤집지 않고, 시접이 밖으로 나오게 한다. 착용 기간은 3년이다.

재최 기간은 3년, 1년, 5개월, 3개월이다. 단을 꿰매고, 솔기도 뒤집으며, 4~6승의 삼베로 만든다. 3년복은 아들이 어머니 상을 당하였을 때 착용한다. 재최 1년은 지팡이를 짚는 장기杖朞와 짚지 않는 부장기不杖朞로 나뉜다. 재최장기 1년은 아내 상을 당한 남편이 착용한다. 재최부장기 1년은 조부모, 백숙부모, 고모, 형제자매, 장남 이외의 아들, 딸, 맏며느리, 조카, 장손長孫 등 상을 당할 때 입는다. 재최 5개월은 망자를 중심으로 증손까지의 직계 혈연이 해당되고, 재최 3개월은 현손玄孫이 고조부모 상에서 착용한다.

대공은 9개월이며, 7~9승의 삼베로 제작한 상복을 입는다. 종형제자매, 조카며느리, 맏며느리 아닌 며느리 등 상을 당했을 때 착용한다.

소공 기간은 5개월이며, 10~12승의 삼베로 만든 상복을 착용한다. 종조부모, 종조고모, 종숙부모, 종고모, 형제의 처, 재종형제자매, 종질녀 등을 위한 상복이다.

시마는 오복 중에서 재질이 가장 고운 15승의 삼베를 사용하며, 착용 기간은 3개월이다. 종증조부모, 종증조고모, 재종증조부모, 재종증조고모, 재종숙부모, 재종고모, 삼종형제자매, 재종질, 재종질녀 등 상을 당하였을 때 입는다.

특징 및 의의 상복제도는 친족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상복의 착용 의무를 지닌 사람을 유복친이라고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같은 고조를 둔 8촌 범위의 부계친족집단이 유복친에 해당하였다. 이는 4대 봉사 대상인 당내친堂內親의 범위와 일치한다. 그러나 전통적 가치관과 친족관념이 약화된 오늘날에는 유복친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심지어 4촌 범위를 넘으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전통상복이 현대식 복장으로 바뀌면서 상복을 통해 친족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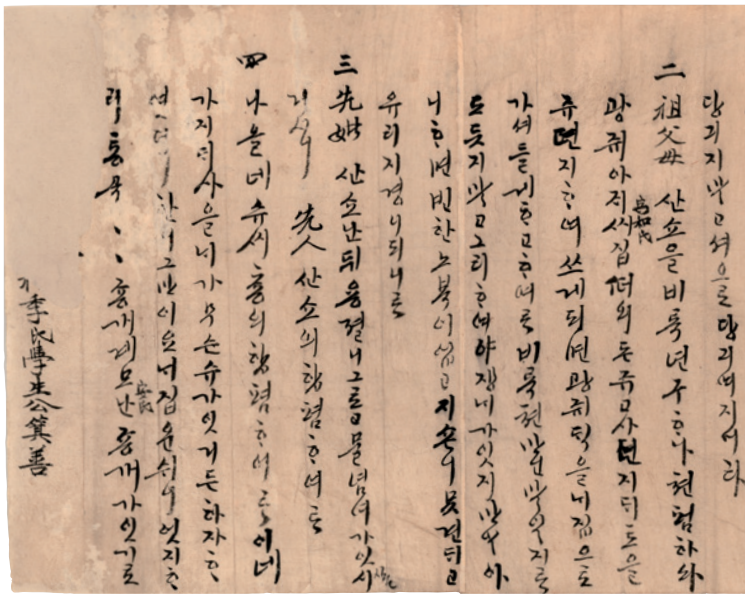
참고문헌 조선시대의 유복친(최재석, 사학연구36, 한국사학회, 1983),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최인학 외, 민속원, 2001),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김미영(金美榮)

유언
遺言

정의 자신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른 단독의 의사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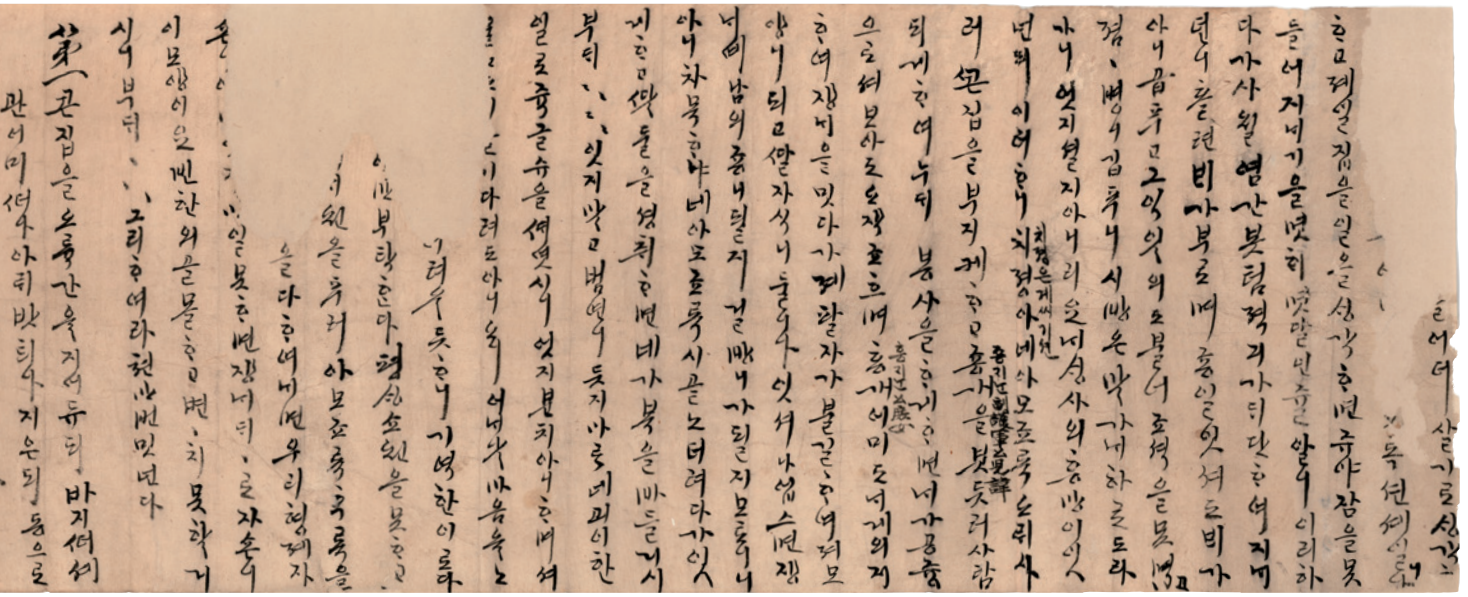
내용 유언遺言은 생전의 최종의사에 법적 효과를 인정해서 그 실현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유재산제도 및 상속제도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해 왔다. 로마법에서는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게르만법에서는 혈족주의에 입각한 법정상속주의에 따라 유언의 자유를 부인하였다. 현대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제도와 함께 유언을 인정하면서 유류분遺留分제도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에서 제1060조부터 제1111조에 걸쳐 요건과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여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제5편 제3장).



유언장 | 가로91 세로25 | 화성시역사박물관

『경국대전經國大典』(1485)의 「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 첫머리에 "아직 나누어 갖지 않은 노비는 자녀의 생존 여부를 막론하고 분급한다."라고 하여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였으며, 이어서 "조부모 이하의 유서는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언의 주체를 제한하였는데, 『대전속록大典續錄』(1492)에서 "외조부나 외조모의 유서는 모두 효력을 인정한다."로 확대되어 『속대전續大典』(1746)에도 수록되었다. 즉 조부모·부모·외조부모만이 제사·가계의 유지 목적 범위 안에서 또 법정균분상속분을 심히 침해하지 않는 한 유서遺書 형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었으며, 유언은 반드시 유서에 의한 요식행위로 해야 하였다.

유언은 단독행위, 요식행위, 일신 전속專屬행위, 종



의終意처분, 사후처분이다. 유언은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법〉에서는 대상과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만 17세 이상자는 유언을 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후에야 할 수 있다. 유언사항은 "①친생부인親生否認 ②인지認知 ③미성년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지정 ④유증遺贈 ⑤재단법인의 설립 ⑥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및 분할 금지 ⑦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으로 법정되어 있다.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그 방식은 ①자필증서 ②녹음 ③공정증서公正證書 ④비밀증서 ⑤구수증서口授證書만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060조 이하).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임의철회), 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또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앞부분의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법정철회). 사기·강박·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①방식이 흠결 된 유언 ②17세 미만자나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③공서양속公序良俗에 위반된 유언 ④수증결격자受贈缺格者에 대한 유언 ⑤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에 의한 유언 ⑥유언 사항이 법률에 위반된 유언, ⑦생전행위로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 전에 실현된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 등은 무효이다. 유언 취소와 무효의 소는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 유언집행자 및 수유자受遺者(유언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것이 지정된 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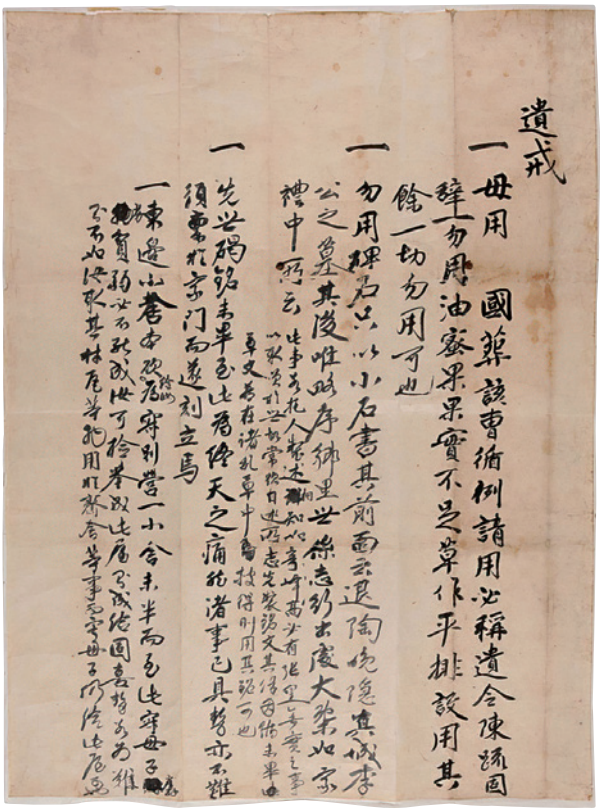
특징 및 의의 유언은 균분상속 및 혈연상속 관념과 충돌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유언은 법정강제상속제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현대에 들어서도 이 관념은 강하게 작용하여 유언이 많지 않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경제 상황 변화와 남녀평등의식 강화로 유언과 관련된 분쟁과 재판이 늘어났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續大典, 가족끼리 왜 이래(박민제, 동아시아, 2018), 경국대전과 유언의 자유(최병조·이상훈, 서울대학교 법학59-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조선초기 상속법제에서 유언 자유의 의미(김민정, 법사학연구37, 한국법사학회, 2008), 친족상속법 강의(윤진수, 박영사, 202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정긍식(鄭肯植)

유훈
遺訓

정의 임종에 이른 이가 자손이나 후학 또는 남아 있는



퇴계 이황 유계 | 조선 전기 | 한국국학진흥원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지켜야 할 규율·지침·교훈으로 삼도록 남긴 말이나 글.

내용 유훈遺訓이란 임금·스승·부모 등이 신하·제자·자손에게 전하는 국가의 역사나 바람, 학문적·정치적 의지, 예법, 재산 등에 대한 교훈적인 말이나 글 또는 가르침을 뜻한다. 왕가나 사대부가에서는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선훈先訓, 또는 노년을 보내는 집에서 병석에 누웠을 때나 유배지와 전장 등에서 임종 직전에 당사자가 가르침이 되는 말이나 글을 남긴다. 이것은 독립된 문서 혹은 유사遺事나 분재기分財記의 서문에 기록하여 후대가 준행해야 할 삶의 규범으로 전해진다. 유훈은 유서遺書, 유언遺言, 유교遺敎, 유명遺命, 유령遺令, 유계遺戒, 가계家戒, 가훈家訓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왕가나 사대부가에는 이러한 유훈이 왕조실록이나 문집 등에 기록되어 전한다. 왕가의 유훈에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훈칙이나 성현의 말씀, 선대부터 내려오는 왕가의 규범, 왕업의 승계 방법, 의례 수행과 관련된 예법(관혼상제), 처신하는 방법, 인재 등용 방법 등에 관한 것이 많다. 사대부가의 유훈에는 조상이 남긴 뜻,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규율, 삶에서 부닥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터득한 원리, 조상제사, 적선積善과 절검節儉, 구습과 폐단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예컨대 "현요한 벼슬을 멀리하라."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라." 등과 같은 선훈先訓과 더불어 특히 말에 대한 경계로 언계言戒라 하여 "말을 충실하게 하라." "적서 간의 구별을 엄격히 하여 적손 간의 침학侵虐을 경계하라." 등과 같은 유훈이 있다. 이와 같은 유훈은 가훈으로 남기도 한다.

유훈을 전하는 이와 이를 받아들이는 이의 관계는 군신君臣, 사제師弟, 선조와 후손, 부자父子, 부부夫婦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의 관계는 정치적·도학적 지향에서 뜻을 같이하거나 혈연적·정서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대부가의 대표적인 유훈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유계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유언을 꼽을 수 있다. 이황은 임종하기 나흘 전 아들에게 "조정의 예장禮葬을 사양하고, 비석을 세우지 말고, 조그만 돌에다 내가 미리 지어 둔 명문銘文을 찾아 사용하고, 과장하여 서술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몇몇 제자들이 만나기를 청하자 영결永訣하며 말하길 "평소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제군들과 더불어 종일토록 강론하였으니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송시열은 문인들에게 "선비가 주자학을 신봉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스승의 경사상敬思想을 좇아야 하고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근본이 직直이니 모두가 이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 선조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훈 중에는 '가정생활을 하는 데 마땅히 삼가 예의범절을 지켜야 한다.' '가난한 친척을 도와주도록 하라.'라는 가계 외에 구계口戒로 "남의 잘하고 잘못한 점을 헐뜯거나 칭찬하는 말을 삼가고 입 밖에 내지 말라."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유훈 내용으로는 성현의 말씀, 선대로부터 전승된 규범, 가업 승계 방법, 예법(관혼상제), 처신하는 방법, 인재 등용 방법, 삶의 지혜, 사회적 실천 윤리 등이 있다. 이러한 유훈을 전하는 이와 이를 받는 이들은 정치적·도학적 지향에서 뜻을 같이하거나 혈연적·정서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이다. 유훈은 자손에게

주는 가르침으로써 삶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우암 선생의 유훈과 그 의미(이수봉, 우암사상연구논총, 태학사, 1992), 조선시대 가훈의 성립과정 연구(정무곤, 장서각1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훈(박현순, 문화로 보는 한국사, 태학사, 2009).

필자 박성용(朴晟慵)

윤회봉사
輪回奉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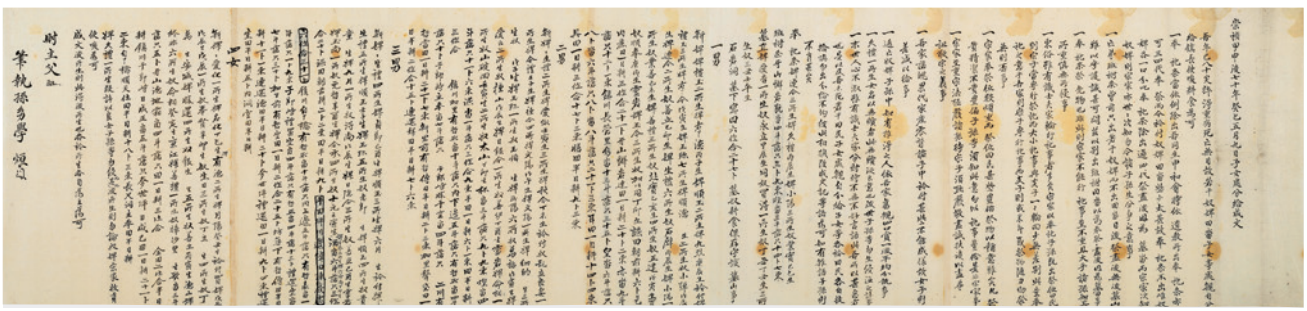
정의 조상제사를 한 자녀가 전담하지 않고 여러 자녀가 나누어 맡거나 해마다 돌아가면서 봉행하는 제사 관행.

역사 윤회봉사는 부계혈연의식이 강하지 않고 부계혈연집단이 조직화하지 않았던 시기에 널리 행해졌던 제사 양식이다. 고려시대에는 남자가 혼인 후 처가에서 생활하는 서류부가壻留婦家의 기간이 매우 길었고, 재산상속에서도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을 차별하지 않고 균분해서 상속했던 것으로 보아, 조상의 제사도 여러 자녀가 나누어 맡는 윤회봉사가 널리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에 성리학과 함께 종법사상이 도입되었지만, 조선 초기까지도 종법사상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아서, 17세기 중엽까지는 장남봉사와 더불어 여러 자녀가 조상제사를 분담하는 윤회봉사가 양반 사대부 가정에서 널리 행해졌다. 그러나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종법사상이 널리 보급된 17세기 중엽부터 윤회봉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윤회봉사가 거의 사라지고 장남봉사가 보편적인 제사 방식으로 뿌리를 내렸다.

종법은 부자계승, 장자계승, 적자계승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적장자계승원칙은 조상숭배 의식을 강화하였고, 조상의 제사를 정중하고 안정적으로 봉행하는 일을 자손의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윤회봉사를 버리고 장남이 조상제사를 안정적으로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윤회봉사는 제사의 주체가 분산되어 조상제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사를 분담해야 하는 딸들이 마을을 떠나 멀리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들들 또한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의 혼속 때문에 혼인 후 처가 쪽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제사를 담당할 자녀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제사 때마다 먼 거리를 이동하며 제사에 참례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사당이나 전래 가옥에서 조상제사를 모실 때에도 원지에 있는 자녀들이 때맞춰 제수를 준비하여 수송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해마다 봉사자를 바꾸어 교대로 봉사하는 경우, 수년 만에 돌아오는 제삿날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을 우려도 없지 않았다. "사대부 집안에서는 조상제사를 돌아가며 지내는 것이 원칙이라고들 하나 우리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원지에 있어 때맞춰 제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제사를 빠뜨리는 비례非禮를 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는 조상제사를 장남이 전담하기로 한다."라고 한 분재기分財記의 기록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해준다. 이처럼 윤회봉사는 종법사상과 조상숭배 의식이 강화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조상제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남봉사가 하나의 사회적 기풍으로 정착되었다.

분재기에 나타난 제사 운행 양식의 변화를 시기별



분재기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파평윤씨 윤침이 3남1녀에게 재산을 균분하게 상속한 문서로, 자녀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윤회봉사 방식에서 종가 중심으로 봉사조를 상속한다는 내용.

로 살펴보면 대체로 17세기 중엽까지는 장남봉사와 윤회봉사가 공존하였다. 이 시기의 윤회봉사는 모든 아들과 딸이 조상제사를 고르게 나누어 맡는 전형적인 윤회봉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17세기 중엽부터는 윤회봉사의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윤회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만 윤회하는 부분 윤회의 방법이 나타난다. 딸을 제외하고 아들끼리 윤회하는 경우도 있고, 기제사는 장남이 전담하고 묘제만 윤회하기도 한다. 윗대 조상의 제사는 윤회하고 부모 제사는 장남이 전담하거나 반대로 윗대 조상의 제사는 장남이 전담하고 부모 제사만 윤회하기도 한다. 윤회봉사방식의 이와 같은 다양화는 윤회봉사가 점차 소멸되고 장남봉사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윤회봉사는 거의 사라지고 모든 제사를 장남이 전담하는 관행이 일반화된다.

조선 중기에 조상제사의 봉행양식이 윤회봉사에서 장남봉사로 바뀌는 것은 재산상속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을 살펴보면 17세기 중엽까지는 봉사조奉祀條 재산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일반 상속재산은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을 구별하지 않고 꼭 같이 나누어주는 균분상속均分相續에 철저하였다. 딸들도 아들과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혼인한 남자는 처가 쪽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균분상속은 종법사상이 보급되고 조상숭배 의식이 강화된 17세기 중엽부터 점차 약화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장남우대, 여자 제외의 차등상속差等相續으로 굳어진다. 즉 제사가 장남에게 고정되면서 재산상속도 장남우대 상속으로 이행되어 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산의 균분상속은 조상제사의 윤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균분상속의 전제가 되는 윤회봉사가 소멸하고 장남이 조상제사를 전담하면서 재산상속의 형태도 점차 장남을 우대하는 형태로 바뀌어 갔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자녀들이 조상제사를 윤회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조상별로 자녀들이 제사를 나누어 맡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돌아가신 부친, 모친, 조부, 조모 등의 제사를 아들과 딸들이 적절하게 나누어 봉행하는 것이다. 여러 남매가 부모 양위의 제사를 나누는 경우처럼 조상별로 제사를 나누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제사를 담당할 수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교대로 제사를 모시는 것을 '돌림제사'라 부른다. 학자에 따라서는 조상별로 기제사忌祭祀를 나누거나 절기별로 차례茶禮를 나누는 것을 제사분할, 해마다 돌아가며 윤번제로 봉행하는 것을 윤회봉사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조상제사의 부담을 자손들이 고르게 나누어 맡는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윤회봉사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이 윤회하는 조상제사는 주로 기제사이다. 그러나 기제사 이외에 묘제나 주요 절기(설, 한식, 단오, 유두, 추석, 동지 등)에 봉행하는 차례도 윤회의 대상이 된다. 제사의 장소는 제사를 담당하는 봉사자의 집인 경우도 있고,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나 조상이 생전에 기거하던 가옥이 될 수도 있다.

지역사례 윤회봉사는 18세기 중엽 이후에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장남봉사가 보편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흔적은 현대사회에도 여러 지역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윤회봉사와 비슷한 제사 관행이 남아있다고 보고된 지역은 전라남도 진도와 경상남도 통영 산양읍 등의 남해안 도서지역, 경상북도 영일(현재 포항)에서 영덕, 울진, 삼척에 이르는 동해안 어촌마을, 화전민 마을인 강원도 삼척 도계읍 신리, 그리고 제주도 등이다. 이 지역들은 유교문화의 보급이 지체되었거나 외부 사회와 교류가 적었던 해안도서 지역과 산간지역들이다. 이 지역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오랜 세월 동안 윤회봉사를 수용하고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여러 자녀가 조상제사를 나누어 봉행하는 이런 제사 관행을 학자들은 '제사분할祭祀分割'이란 용어로 보고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윤회봉사와 장남봉사는 조선시대 친족제도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윤회봉사를 하다가 장남이 조상제사를 전담하게 되었다는 것은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제사를 중시하는 의식의 강화를 의미하며, 자손들의 신성한 과업인 조상제

사를 정중하고 안정적으로 봉행하고자 하는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중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적장자계승의 원칙을 강조하는 종법사상이 보급되고 종족 마을과 문중조직이 형성되어 부계친족집단이 조직화하는 과정을 반영한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조선초기 제사계승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정긍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필자 이창기(李昌基)

의례
儀禮

정의 중국 고대 통치계층의 관혼상제冠婚喪祭 등과 같은 각종 의식절차를 기록해 놓은 책.

내용 『주례周禮』『예기禮記』와 함께 '삼례三禮'라고 일컬어지며, 유가의 대표적 경전인 구경九經·십삼경十三經의 하나이다.

한대漢代에는 '예禮' '예경禮經' '사례士禮' 등으로 불렸으며,『의례』라는 명칭은 서진대西晉代에 시작되어 동진대東晉代에 확정되었다. 전통적으로 주공周公의 저작으로 보며, 공자孔子가 수정했다고 전하지만, 실제로는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에 걸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책은 주대周代의 종교적·정치적 의례를 비롯하여 관혼상제 등 사회적 의례까지를 수록하여, 당시의 생활양식과 풍속 등의 연구와 의례의 원칙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의례 | 가로27 세로17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이 책은「사관례士冠禮」「사혼례士昏禮」「사상견례士相見禮」「향음주례鄕飮酒禮」「향사례鄕射禮」「연례燕禮」「대사의大射儀」「빙례聘禮」「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근례覲禮」「상복喪服」「사상례士喪禮」「기석旣夕」「사우례士虞禮」「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유사철有司徹」의 1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례는 사례士禮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는 책으로,「상복」편을 제외하면 주로 의식의 진행을 규정한 내용이어서 시작에서 끝마침까지의 세부 조목을 모두 들고 있으며, 복장·기구器具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의례』의 주석은 후한後漢의 마융馬融이「상복」편을 주해注解한 것이 처음이고, 정현鄭玄이 비로소 17편 전체를 주석하였다. 이 정현의 주석이 오늘날까지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당唐나라 가공언賈公彦의 소疏도 중시되고 있다.

필자 도민재(都民宰)

의례경전통해
儀禮經傳通解

정의 송대 성리학자 주희朱熹가『의례儀禮』를 경經으로 삼고, 기타 예에 대한 고전을 전傳으로 삼아 편집한 예서禮書.

내용 이 책은 '의례=경經' '예기=전傳'이라는 예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주희가 만년에 편찬한 예서禮書이다.

『의례경전통해』는「가례家禮」「향례鄕禮」「학례學禮」「방국례邦國禮」「왕조례王朝禮」「장례葬禮」「제례祭禮」의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37권이다. 이 중에서 주희가 완성한 내용은「가례」「향례」「학례」「방국례」의 4편이고,「왕조례」는 미완성으로 남아있으며,「장례」와「제례」는 주희 사후에 제자인 황간黃幹과 양복楊復이 보충하여 완성하였다. 이와 같은 체재는 한대漢代의 유향劉向과 정현鄭玄이 정한『의례』의 편차를 기본으로 당나라 때 가공언賈公彦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었다. 이 중

에서 「학례」는 주희에 의해 창안된 부분으로 주희 예학의 의리적義理的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의리론의 기초 아래에서 고례古禮와 시례時禮를 절충한 점, 사례士禮를 왕례王禮의 기초로 보면서도 그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는 입장에서 사례와 왕례를 종합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희는 이 책에서 사事로서의 예와 이理로서의 예를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주희의 초기 예학을 대표하는 저작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주희의 후기 예학을 대표하는 책으로 주희의 예학을 고찰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필자 도민재(都民宰)

의례준칙
儀禮準則

정의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반포한 의례儀禮 간소화 규칙.

내용 1934년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사회과社會課에서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번잡한 의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반포한 관혼상제冠婚喪祭 등 의례에 대한 시행규칙이다.

〈의례준칙〉에서는 혼례婚禮와 상례喪禮, 제례祭禮의 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의 적극적 보급을 위하여 의례 해설까지 덧붙였다. 내용상 주요 특징으로는, 혼례의 연령을 남자는 20세, 여자는 17세로 규정한 점, 제례에서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만을 제시하고 제사에 사용되는 공물供物(제수祭需)의 종류까지도 규정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상례에서도 종래의 삼년상三年喪 기간을 상기喪期와 복기服期로 구분하여 간소화하였다.

〈의례준칙〉은 실제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말살하여 정신적인 면까지도 철저히 일본의 지배 밑에 두고자 하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일제는 특히 상제례喪祭禮의 정신을 약화시킴으로써, 상제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민족적 공동체의식의 강화를 막고자 하였다. 이에 가족묘를 없애고 공동묘지를 만들었으며, 전통의례의 내용이나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것은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던 방법의 하나였다.

필자 도민재(都民宰)

이름

정의 우리 각자를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

역사 이름은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도 하지만 우리를 구별하는 호칭이었으므로 인류의 출발과 함께 존재하였다. 기록이 없는 시대까지 알 수는 없고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이름의 역사가 시작된다.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불구내弗矩內를 한자로 바꾼 혁거세赫居世와 아이를 일컫는 알지閼智 등 삼국시대까지 대부분의 이름은 우리말로 출생 상황이나 능력 등의 의미를 담아 지어졌다. 신라 자비왕慈悲王때의 백결百結이나 백제 무왕武王의 소명인 서동薯童·서여薯蕷 등을 보면 그 전후 이름이 여러 종류로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유학생 중심으로 중국 문화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관명·지명과 함께 본명도 중국식 한자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 상류층에서 본명이 한자로 일반화되었고, 불운 회피 등을 위한 개명도 널리 행해졌다. 조선 초기 문물제도가 중국식으로 정착하면서 본명도 중국식 두 글자의 한자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1687), 『노비보奴婢譜』(1745) 등의 기록에도 여성과 하층의 이름은 우리말 아명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남성 노비의 이름은 똥개[同介], 개부랄[介佛]과 같은 비속어까지 존재하였으며, 여성은 혼인하면 타인에게 불리는 것을 꺼려서 아명도 버리고 이름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909년 〈민적법〉 시행으로 성별과 신분에 상관없

이 성씨와 본명 신고가 법제화되면서 우리 모두 현재와 같은 한글과 한자 병용의 두 글자 본명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듬해 민적부 작성 시에도 성씨가 없는 사람의 수가 있는 사람의 1.3배였다는 것을 보면 이름에 한자를 사용한 상류층과 달리 하층민과 여성 등 많은 사람이 우리말로 이름을 지어서 한글 혹은 한자를 빌려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글과 한자 병용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말 본명의 사용은 점차 줄어든다. 일제는 초기 아명이나 우리말 본명의 사용에 부정적이다가 1923년부터 한글로 기록된 본명의 등록을 거부하였다.

1940년에는 창씨개명創氏改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본명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창씨개명은 일본어투로 『표준국어대사전』과 국정교과서에서는 창씨개명을 '일본식 성명 강요'로 쓰고 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우리 본명을 되찾았고, 1980년대 본격화된 우리말 작명은 1990년대부터 유행하였다. 세계화에 맞추어 본명에 외래어가 늘어나고 성별 기대 역할이 약해지면서 중성적인 본명도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TV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선호되는 등 그 시대 가치관과 문화가 반영된 본명의 유행과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대법원에 의하면 남녀의 대표 본명은 1950년대 영수·영숙, 1960년대 영수·미숙, 1970년대 정훈·은주, 1980년대 지훈·지혜, 1990년대 지훈·유진, 2000년대 민준·유진, 2010년대 민준·서연이다. 국권 회복 이후 2015년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본명은 남성의 경우 지훈—동현—현우—성민—정훈, 여성의 경우는 영숙—정숙—정희—순자—영자 순이다.

내용 이름은 광의로 사물이나 단체·현상 등에 붙인 보통명사로, 인명·지명·법인명·제품명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지칭하는 인명人名이다. 인명도 넓게는 가계家系 명칭인 성씨姓氏와 개인 명칭인 이름[名]을 합한 성명姓名을 말하지만 좁게는 성씨를 제외한 이름을 의미한다. 이름이라면 본명本名을 떠올리지만, 그 종류는 전통적인 자字와 호號·별명別名·당호堂號·택호宅號·시호諡號·아명兒名·법명法名·보명譜名 등과 근년에 생긴 필명筆名·예명藝名·태명胎名 등 상당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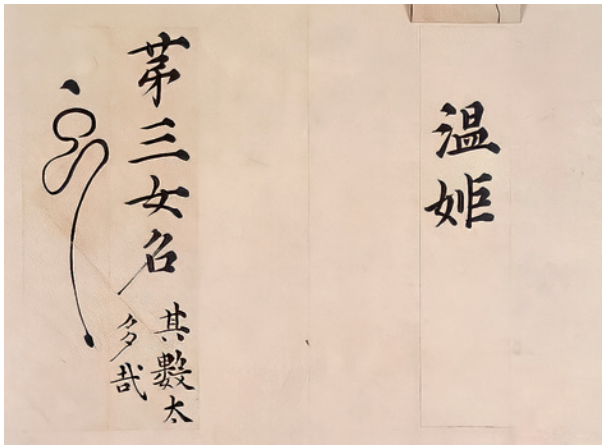


정기세 호패 | 길이11 너비3 두께2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대문 명패 | 가로7 세로1 높이18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19세기 말에 처음 보이는 이름은 '일홈' '일홈' '일흠' 등 옛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5세기의 이름을 뜻하는 옛말인 '일홈'은 가리키는 것[稱]을 뜻하는 '일ᄏᆞᆯ다'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일ᄏᆞᆯ다'는 '잃다[名]+ᄀᆞᆯ다[曰]'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名(명)은 자신의 이름으로 夕(저녁 석)과 口(입 구)를 합친 글자이다. 夕이란 어둠을 뜻하고 어두워지면 서로 볼 수 없기에 입으로 스스로 이름을 불러 알린다."고 해석한 바와 같이 名은 저녁에 이름을 불러 확인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름은 모든 인명을 포괄하는 용어이지만 인명의 대표적인 종류로 우리 모두 갖는 본명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 공식적 인명인 본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여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한글 이름 혹은 한글과 2023년 기준 8,319자의 대법원 인명용 한자 이름으로 신고해야 등록할 수 있다. 부모나 조부모 혹은 작명가가 주로 짓는 본명은 다섯 글자 이내로 제한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개명이 가능하다.



명안공주 작명단자 | 조선 | 문화재청
헌종이 명안공주의 이름을 지은 것을 기록한 문서.

본명은 관명官名과 관명冠名의 동의어로 알려져 있다. 관官이 벼슬과 관청·기관·마을을 뜻하므로 관명官名은 관의 공식적 이름이거나 마을 공동체 이름이기에 본명의 동의어임은 인정된다. 이와 달리 관冠이 갓과 관례·성인·성년을 의미하므로 관명冠名은 성인의 이름이기에 본명의 일부분일 뿐 동의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과거에도 서당에서는 본명을 사용하였지 아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층민이나 여성은 성인명도 없이 아명만 존재하였다. 근년에는 아명 없이 본명을 바로 사용하므로 아명과 성인명은 구분할 수도 없다.

『의례儀禮』에는 태어나 석 달이 지나면 인지 반응을 보이므로 본명을 지었다는 등 작명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작명단자作名單子를 보면 조선시대 왕자는 아명을 사용하다가 책례冊禮를 앞두고 6세 정도에 본명을 지었다. 숙종肅宗이 생후 2개월 만에 경종景宗의 본명을 정하고 세자로 책봉하려 하였으나 늦둥이를 낳아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사대부가 반대한 것을 보면 상층은 아명을 사용하다가 비교적 늦게 본명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명은 대부분 두 음절 단어이지만 타인과 구분하는 표지이고 당사자의 인격과 삶을 대표하기에 다른 모든 인명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 경명사상敬名思想으로 국왕이나 성인, 선조의 본명을 생략하거나 대치하는 피휘避諱가 존재하였다. 또한 관직이나 족보 등 제한된 경우만 본명을 사용하여 자나 호 등 다른 인명을 갖게 한 원인도 제공하였다. 본명에 담긴 뜻과 소리로 선천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개운開運을 믿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서 작명 학문인 성명학까지 존재한다.

작명은 여명기부터 우리의 관심 대상이었지만 부르기 쉽고, 듣기 편하며, 세련되고, 오래 기억되면서 좋은 뜻으로 짓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다. 본명에 의한 개운은 1940년대 창씨개명 당시 일본 수리數理성명학을 학습한 작명가들의 과대광고 등으로 생겨났을 뿐 그 이전에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전통적인 작명의 핵심은 뜻이었고, 수리 및 사주와 오행을 따지는 일이나 개운 관념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불운을 피하기 위해 개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의 원인인 주초위왕走肖爲王의 파자破字는 측자파자測字破字성명학, 16세기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항렬자 유형 정착은 자원오행字源五行성명학의 존재를 알려준다. 또 김병권金秉權의 17~19세기 조선 후기 소설 연구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1914년 『작명비요作名秘要』, 1933년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 등을 보면 역상易象성명학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살피면 본명이 당사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과 성명학은 민속적 바탕의 문화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다.

본명은 항렬자를 따라 짓기와 항렬자를 따르지 않고 짓기로 나뉘기도 하지만 작명가마다 독창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작명법은 세분하면 할수록 많아진다. 그중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작명법은 창씨개명 당시 일본에서 유입된 81수리성명학과 수리오행數理五行성명학, 그리고 발음오행發音五行성명학과 자원오행성명학, 소리성명학, 명리命理성명학이다. 과거 본명에서 한글은 한자를 읽기 위한 수단으로 폄하기도 하였으나 한글 교육 세대가 중심이 되면서 한글로 먼저 짓고 한자를 부가하는 작명으로 자리 잡았다.

특징 및 의의 모든 인명을 포괄하는 이름은 우리 모두 갖는 본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두 음절에 불과하지만 당사자를 특정하면서 정체성을 나타내기에 다른 인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 중요도가 크고, 당사자가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언어이자 문자이다.

우리 본명의 한자 체계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전

후에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상류층 남성에게 해당되는 것일 뿐이고 1909년 〈민적법〉 시행으로 모든 국민의 본명 신고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여성과 하층민은 아명만 가졌다. 우리 모두가 갖는 본명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되지 않았다.

본명은 작명 학문인 성명학도 존재한다. 본명이 당사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견해이며, 작명가마다 자신의 성명학을 최고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자신의 수입을 위한 그릇된 견해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작명법인 81수리성명학과 수리오행성명학은 1940년대 전후 일본에서 유입된 작명법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가 반영되는 본명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유행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참고문헌 고려시대 사람들의 개명(박진훈, 동방학지14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인명의 종류 고찰(권익기, 한국학연구82,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22), 조선 왕실의 작명 연구(장유승, 동방한문학86, 동방한문학회, 2021),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이름 정책과 이름의 변화 양상들(이정선, 역사민속학4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한국인 이름의 사회언어학(강희숙·양명희·박근, 역락, 2016), 한국인의 성명정착 과정연구(김종택, 국어교육연구23, 국어교육학회, 1991), 한자차용고유인명 표기체계연구(최범훈,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현대 한국사회의 이름 짓기 방법과 특성에 관한 고찰(김만태, 종교연구65, 한국종교학회, 2011).

필자 권익기(權益棋)

이모
姨母

정의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친족용어.

내용 이모姨母는 어머니의 동기간同氣間 중에 여자 형제, 즉 어머니의 자매姉妹를 통칭하는 친족용어이다. 이에 대응하여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外三寸이라고 칭한다. 이모는 외삼촌과 함께 계촌법計寸法에 따라 나와의 촌수가 3촌三寸인 사이로 매우 가까운 모계친족이다. 이모에게 나는 성별에 따라 이질姨姪/조카 또는 이질녀姨姪女/조카딸이 된다. 그냥 조카姪라고도 한다. 한편 아버지의 여자 형제, 즉 아버지의 누이에게는 고모姑母라는 구별된 친족용어가 사용된다.

이모의 남편은 이모부姨母夫라 하며, 이숙姨叔이라고도 한다. 이모의 아들딸은 나와의 촌수가 4촌四寸인 형제자매이며, 이종사촌姨從四寸이라고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친족제도가 부계계승父系繼承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모의 자녀는 이모부의 부계친족집단에 귀속된다.

부계사회인 한국의 친족용어체계에서는 외삼촌과 마찬가지로 이모에 대해 어머니와의 연령 관계에 따른 구분된 친족 지칭이나 친족 호칭이 발달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이모에게는 '큰이모', 나이가 적은 이모에게는 '작은이모' '둘째 이모' '막내 이모' 등과 같이 구분하여 호칭할 수 있다. 외삼촌도 마찬가지로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둘째 외삼촌' '막내 외삼촌' 등으로 구분하여 호칭할 수 있다.

반면 고모의 경우 『고려사高麗史』의 상피조相避條에 아버지의 손위 누이[姉]를 백모伯母, 손아래 누이[妹]를 숙모叔母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와의 연령 관계에 따라 친삼촌親三寸을 백부伯父와 숙부叔父로 구분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고모에 대한 친족지칭을 구분했음을 보여준다. 조선 중기 이후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친족구조가 남성 중심의 부계적 성격을 강화함에 따라 친삼촌과는 달리 고모에 대해서는 연령 관계를 고려하는 친족용어가 사라진다. 그럼에도 모계친족인 이모나 외삼촌보다 부계친족인 고모와 친삼촌에 대한 친족용어가 발달했음은 한국의 친족제도가 남성 중심의 부계사회와 관련됨을 반영한다.

한편 서양의 영어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자매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로만 구분하고 아버지 쪽 사람인지 어머니 쪽으로 연결된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데 반하여 한국의 친족호칭 체계에서는 부계친족과 모계친족을 분명히 구분 짓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서양의 영어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웃한 일본의 경우에도 고모와 이모는 호칭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아버지 쪽 친척과 어머니 쪽 친척을 분명히 구분하고, 이들이 각기 다른 범주에 속하는 친척으로 간주하는 등 한국의 부계친족제도의 구조적인 틀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부계사회의 특성으로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부거제父居制 관습에 따라 여자는 혼인하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친가親家를 떠나 남편이 사는 시가媤家로 옮겨 살게 된다. 나의 어머니와 이모는 모두 친정을 떠나 각자 남편의 부계친족집단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지가 비슷하다. 이러한 부계친족제도에서의 비슷한 처지와 동성의 동기간으로서 자매간 우애가 깊은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한국의 전형적인 부모상은 엄부자모嚴父慈母가 특징적이어서 권위적인 아버지보다는 애정에 바탕을 둔 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자주 접촉하게 되는 이모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계친족에서 이모와 친족 거리가 같고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고모이다. 이모와 달리 고모는 나와 같은 부계친족집단의 성원으로서 제사, 혼인 등 집안 대소사에 참여하면서 나와 가까운 친족관계망을 형성한다. 하지만 한국의 부계친족구조 속에서 아버지의 누이인 고모와는 좀 더 권위에 바탕을 둔 관계를 맺게 된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이모와 이모부에 대한 친척용어를 친척지칭과 친척호칭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경기 양평	이모	이모	혼인 전에도 '이모'로 부름
	이모부	이모부	
인천 강화	이모	이모/아주머이	
	이모부	이모부/아저씨	
강원 삼척	이모	이모	
	이모부	이모부	
충북 청주(청원)	이모	이모	혼인 전 호칭 및 지칭도 '이모'
	이모부/이모아저씨	이모부/이모아저씨	
충남 홍성	이모	이모	
	이모부	이모부	
전북 고창	이모	이모	혼인 전도 동일함
	이모보(이모부)	이모보	
전남 진도 조도	이모	이모	혼인 전도 동일함
	이숙	삼춘	
경북 구미 선산	이모	아지매	
	이모부	아재	
경북 영덕 영해	이모	아지매	
	이모부	새아재	
경남 함양	이모	아주머니	
	이모부	아저씨	
경남 통영 사량도	이모	이모	
	이숙	이숙	'이모부'로 변화가 일어남
부산 동래	이모	이모	아이들은 호칭 및 지칭으로 '이모엄마'라고도 부름
	이모부	이모부	아이들은 호칭 및 지칭으로 '이모아부지'라고도 부름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특징 및 의의 압축적 근대화로 표현되는 현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급속한 변화와 함께 친족관계도 급속히 변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반적으로 친족 범위가 축소되고 친족 간의 접촉 빈도가 줄어드는 등 친족의 중요성이 약해지는 한편 친족 활동의 내용 및 친족관계의 성격 또한 변화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 부계친족집단의 소속감을 강조하는 경향이 훨씬 약화되고, 아버지 쪽 친척들과 접촉하는 빈도 못지않게 외가 쪽 친척들과 접촉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사실 전통적인 모계친족에 대한 관념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핵가족화로 가정생활과 친족 교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어머니/아내의 역할이 커진 현대 가족에서는 외가 쪽 친척들과의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접촉이 빈번하고 경제적 지원도 증가하였다. 반면 아버지 쪽 친족과는 명절이나 제사, 집안의 대소사 등 의례적이고 기능적인 유대가 중심이 되면서 어머니의 친형제자매 역할과 중요성이 과거보다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가족의 협력 관계망에서 경제적 및 정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데 어머니/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여자 형제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이모는 고모 못지않게 나의 친족관계망에서 역할이 중요해진 모계친족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한경혜·윤성은, 한국인구학 27-2, 한국인구학회, 2004), 한국의 언어 민속지-강원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서편(왕한석, 교문사,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

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충청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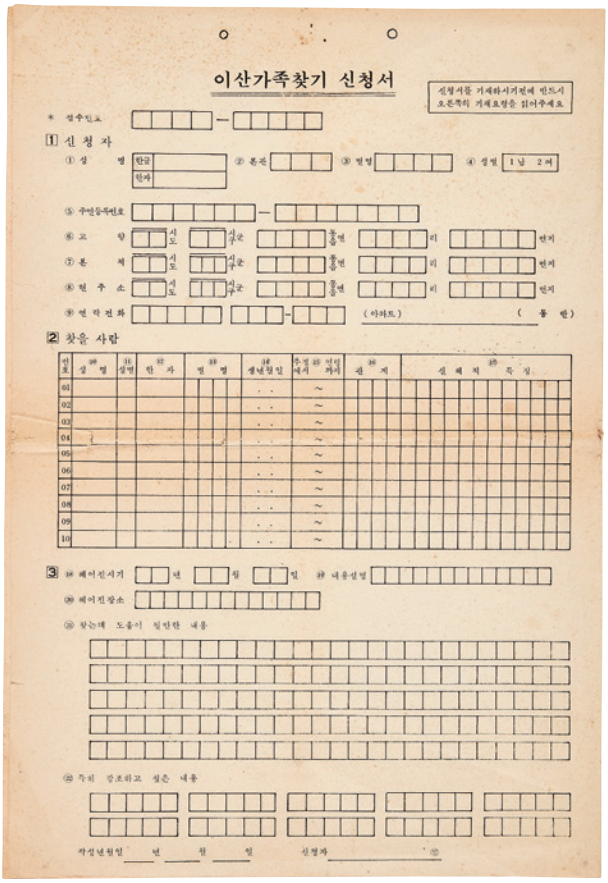
이산가족
離散家族

정의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나 해외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와 그 가족.

개관 20세기 전반 한반도는 식민주의와 분단, 전쟁 등을 겪으면서 수백만여 명의 경제 유민, 분단과 전쟁 난민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면서 곧 불어닥친 동서냉전이 한반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1948년 이념적으로 상호 적대적인 두 개의 정부가 남과 북에서 수립되고, 1950~1953년 6·25전쟁을 겪은 이래로 한반도 역내 이산자들과 한반도 역외 이산자들은 자신의 이산가족이나 친·인척들과 다시 만나거나 교류하기는커녕 생사 확인조차 어렵게 되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래로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행사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국내외 이산가족들이 대면 및 화상상봉을 하거나 서신교환, 생사확인 등을 할 수 있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므로 남북정부 당국차원의 해법으로부터 독립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내용 16세기 자본주의적 지리상의 발견 이래로 대규모의 디아스포라Diaspora(민족이산), 또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이산가족이 계속 발생해왔다. 전쟁의 세기였던 20세기에 이어 신자유주의시대인 21세기에도 세계적 수준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세기 중엽까지는 전형적인 난민으로서 수많은 노예이주자, 전쟁난민과 전쟁포로 등이 이산가족 원인의 주류를 이루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전쟁난민을 포함하여 경제난민이나 환경난민, 개발난민, 기후난민 등도 발생하고 있다. 식민과 전쟁에 의해 형성된 이산가족을 구 이산가족이라고 한다면 경제나 환경 등과 같은 비전쟁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이산가족을 신 이산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 이산가족은 식민과 전쟁에 의해 주로 발생한 구 이산가족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구 이산가족의 경우 대표적인 이산가족이 유태인이다. 유태인의 민족이산을 디아스포라로 부르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과 독일 점령지에서 추방당했거나 나치의 강제수용소들로 끌려갔던 수많은 유태인들은 홀로코스트Holocaust에 희생당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이산이 되는 트라우마적 불운을 겪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이산가족들은 상봉하거나 재결합하였으나 수십 년이 흘러도 상봉하지 못했던 가족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일부 유태인 이산가족들은 상봉하였다. 그러나 구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으로 이산된 가족들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 | 가로25 세로36 | 광복 이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기념 특집 앨범 | 가로31 세로31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1990년대초 세계적 탈냉전이 되어서야 상봉하기도 하였다.

20세기 한국의 이산가족은 크게 보아 해외 이산가족과 남북 이산가족으로 나뉜다. 해외 이산가족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발생하였다. 경제적 유민流民과 일제강점기 초기 토지를 박탈당한 민중의 경제적 난민, 강제 이주자에 이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징병 또는 징용을 당했던 수백 만 명의 이산자들이 발생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 이주자는 230만여 명, 중국과 만주 지역 이주자는 50여만 명에 달했다. 1949년 외무부 집계에 따르면 광복 이후부터 귀환repatriate한 해외동포는 약 200여만 명이었으며 일본, 중국, 구 소련 등에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는 약 732만 명(외국국적 동포 481만여 명, 재외국민 251만여명)인데 반해 1971년 재외동포는 70만 2,92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70만여 명 중 대다수는 일제강점기에 이산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광복 후 한반도의 분단과 동서냉전에 의해 대다수가 본국의 가족과 연결이 끊어진 채, 수십 년을 살아야 했다. 그들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식민주의에 의해 1차적 이산을 당하였고, 광복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에 그어진 분단과 냉전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제2의 이산을 겪게 되었다.

남북 이산가족은 1945년 8월 15일 군사분계선으로 그어진 38선에 의한 분단, 이어진 6·25전쟁과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른 휴전선에 의한 분단의 고착화에 의해 발생하였다. 광복 이후부터 전쟁 전까지 38선 이북에서 이남으로의 월남 이산의 주요 원인은 정치·사상적 이유, 토지개혁 및 재산 몰수, 종교탄압, 구직求職, 향학向學, 귀향 등의 이유가 작용했다. 월북의 이유도 비슷하여, 정치·사상적 이유, 구직, 향학, 귀향 등의 이유가 작용하였다. 정치·사상적 이유와 관련해서 남한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수용과 기득권 인정의 분위기와 반공주의 분위기가 팽창해지면서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들이 월북을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와 동시에 북한에서는 친일파 청산 운동이 북한의 토지개혁을 포함한 소위 '민주개혁' 등의 추진 분위기와 얽히면서 친일의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월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산의 원인에는 이러한 정치·사상적 이유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근로보국대나 강제징용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귀향하는 사례, 구직이나 향학의 이유로 이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 시기 이산가족의 규모는 정확하지 않다. 월남 이산가족 규모로 외무부(현 외교부)는 64만여 명, 사회부는 45만여 명으로 등록자를 밝혔고, 1949년 총인구조사에서는 48만여 명으로 발표한 반면, 이북5도청은 350만여 명으로 추정하였다. 이 규모에는 월북 이산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이산가족을 대표하는 것이 6·25전쟁기 월남 이산가족이다. 월남 이산자들의 이산 원인으로는 정치·사상적 이유와 징용이나 징병적 이유, 전황에 따른 이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나 사회주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전쟁 과정에 월남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1950년 12월 4일 유엔군의 총후퇴령에 따라 후퇴하는 유엔군과 국군에 징용이나 징병을 당해 군부대와 함께 철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산가족의 상당수는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미국 대통령 등에 의해 주장된 '원자탄 투하' 고려에 의해 월남을 택하게 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 인터뷰 석상에서 '원자탄 사용 고려' 중이라고 발언했고, 압도적 제공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 전투기에 의한 북한 지역 초토화 작전에 의해 생명 보존을 위해 수많은 피난민들이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여

피난을 하였다. 대표적인 철수가 흥남철수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흥남철수 때 미군 군용선LST에 승선한 사람은 약 9만 1,000~9만 8,000명에 달했다. 전쟁기 북한에서는 월북 이산자를 대략 30여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 1957년 국제적십자대회에서 전시 납치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남한 측에서는 납북자拉北者 가족이 중심이 되어 '피납자송환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일형)'가 결성되었다. 1956년 대한적십자사는 '납북자안부탐지신고서'를 받아 분류한 결과 이산에 의해 신고된 납북자 7,034명(남 6,884명, 여 150명)에 대한 생사여부 정보나 남한으로의 송환 등을 북측에 요구하였다. 북한의 조선적십자사는 6·25전쟁 중 유엔군이나 국군 등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한 200만 명 중 1만 4,112명의 납남자拉南者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남북분단과 냉전체제가 남긴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이산가족 문제이다.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개인적 관점에서는 당사자들의 숙원이었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분단과 전쟁이 남긴 반인도적 과제의 해결책이다.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결합권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2023년 최근까지 남북 당국간 대화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 것이 남북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였다.

이산가족 교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결과이다. 2000년 8월 15일, 제1차 이산가족 상봉식이 거행된 이래로 노무현 정부까지 이산가족 상봉 16회, 화상상봉 7회가 이루어졌다. 당국 차원의 대면상봉 16회에서 1만 6,215명이 만났고, 남측의 1,683가족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2만 6,206명 가운데 1.3%에 불과하였다. 그 후 이명박 정부 2회, 박근혜 정부 2회, 문재인 정부 1회 상봉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산가족 교류는 정부당국차원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민간차원 교류밖에 없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민간차원의 교류는 당국차원 교류가 활발해질 때 진행되었다.

한편 이산가족 문제는 남한 내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1983년 한국방송공사는 6·25특집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열화와 같은 반응을 얻





KBS이산가족찾기 공개홀과 주변 모습 | 1983 | 국가기록원

어, 그해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38일간 약 10만 952건의 상봉신청을 받았고, 그 중 1만 189가족이 상봉했다. 그 행사가 남긴 2만 522건의 기록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1988년 정부가 이산가족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내외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사람은 13만 3,680명이다. 신청자 중 9만 2,534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4만 1,146명이고, 신청자의 연령을 보면 이산 2세대가 15%로 파악된다. 남북관계가 급랭된 상황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는 이산가족 희망자에 한해 이산가족 찾기 영상편지를 제작하거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적으로 전환되더라도 이산 1세대의 경우 노령화 및 사망으로 인해 신청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이산 2세대의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므로 남북정부 당국차원의 정

연도별 당국과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현황 단위: 건(명)

구분	당국차원								민간차원						
교류유형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	상봉	
연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건	건	건	명
1985년	65	157			30	81	35	76							
1990년											35	44		6	
1991년											127	193		11	
1992년											132	462		19	
1993년											221	948		12	
1994년											135	584		11	
1995년											104	571		17	
1996년											96	473		18	
1997년											164	772		61	
1998년											377	469		109	2
1999년											481	637		200	18
2000년	792	5,276	39	39	201	1,720	202	674			447	984		152	392
2001년	744	4,937	623	623	100	899	100	343			208	579		170	493
2002년	261	1,635	9	9			398	1,724			198	935		208	616
2003년	963	7,091	8	8			598	2,691			388	961		283	677
2004년	681	5,007					400	1,926			209	776		188	470
2005년	962	6,957					397	1,811	199	1,323	276	843		95	261
2006년	1,069	8,314					594	2,683	80	553	69	449		54	105
2007년	1,196	9,121					388	1,741	278	1,872	74	413		55	167
2008년											50	228		36	97
2009년	302	2,399					195	888			35	61		23	51
2010년	302	2,176					191	886			16	15		7	18
2011년											3	21		4	14
2012년											6	16		3	6
2013년	316	2,342									9	22		3	5
2014년							170	813			6	11		5	10
2015년	317	2155					186	972			4	26		1	4
2016년											6	43		3	8
2017년											10	46	1	1	2
2018년	292	1996					170	833			7	36	1	1	1
2019년											2	16		1	1
2020~23년5월											1	12			
합계	8,262	59,563	679	679	331	2,700	4,024	18,061	557	3,748	3,896	11,646	2	1,757	3,418

* 기타: 성묘방북 ** 자료: 통일부, 2023년 5월 말 통계

치적 접근으로부터 독립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특징 및 의의 이산가족은 해외 이산가족과 남북 이산가족으로 분류된다. 이산가족은 대별하면 월남자와 월북자와 이산된 가족들로 형성된다. 광복 당시 이산의 이유로는 정치·사상적 이유, 토지개혁 및 재산 몰수, 종교 탄압, 구직, 향학, 귀향 등의 이유가 작용하였다. 6·25 전쟁 시기 이산의 이유에는 정치·사상적 이유 외에 전쟁 자체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피난이나 징용·징병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 차원에서는 1957년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일회적으로 있었고, 그 외 민간차원과 남북정부당국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산가족 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는 식민과 분단, 전쟁, 냉전이 남긴 과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광복 이후 통일독립 국가 수립의 지연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수많은 고통과 회한, 트라우마를 남겼다.

참고문헌 2021재외동포현황(외교부, 2021), 분단이 낳은 이산가족 문제의 이해와 해결 방안(김귀옥, 학교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양서원, 2021),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김귀옥,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이산(한성훈, 여문책, 2020),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김귀옥, 역사비평사, 2004), 원자탄사용고려(조선일보, 1950.12.2.), 해외귀환동포등이백만(조선일보, 1949.3.27.),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김귀옥(金貴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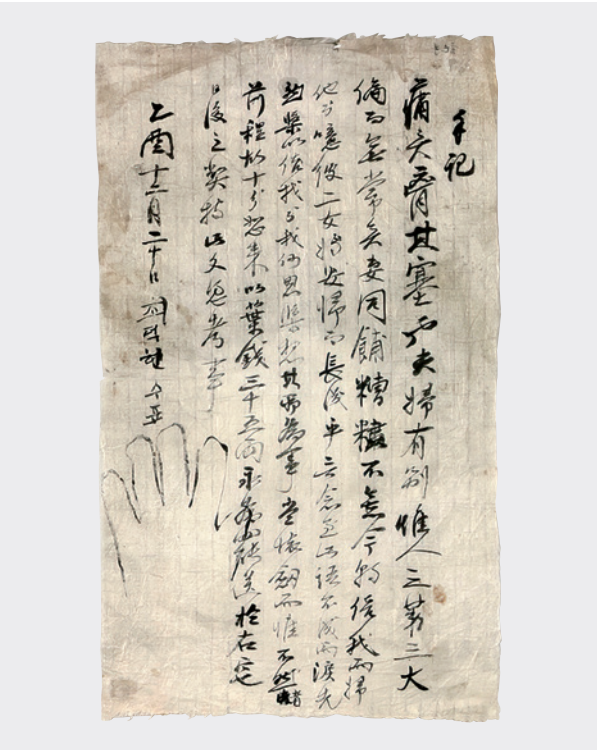
이혼
離婚

정의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 관계를 해소하는 일.

내용 전근대 시대 우리 법은 중국 법의 영향을 받았다. 고려시대까지는 『당률唐律』이 영향을 미쳤고, 조선시대에는 『대명률大明律』을 형률로 사용하였다. 두 법을 관통하는 원칙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유지이다. 『당률』과 『대명률』에서는 이혼離婚 유형으로 화리和離, 의절義絶, 기처棄妻 등 세 가지를 제시한다. 화리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합하지 못해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다. 의절이란 부부는 의로 맺어진 관계인데 의가 끊어졌으니 혼인 관계도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편이 처의 조부모·부모를 때렸다거나 장모와 간통한 경우, 처가 남편의 조부모·부모를 욕하고 때렸다거나 남편을 해하려 한 경우 등이 해당하였다. 의절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혼해야 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되었다.

화리와 의절이 남편과 아내 모두를 대상으로 한 반면 기처는 아내에게만 해당하였다. 즉 아내에게 소위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는 일곱 가지 악행이 있을 때 아내를 내칠 수 있었다. 그 사유를 보면 처가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다거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거나, 음란하여 낳은 자식에 대한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때 행해졌다. 또한 질투가 심하여 처첩제를 행하기 어렵게 한다거나, 나쁜 병이 있어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거나, 말이 많아 대가족제도가 잘 운영될 수 없게 한다거나,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칠거지악에 들었다. 그런데 이 '칠거七去'는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에 최소한이나마 여성을 보호하려고 둔 것이 '삼불거三不去'이다. 삼불거란 처가 쫓겨나면 돌아갈 곳이 없다, 부모의 삼년상을 같이 치렀다, 가난할 때 시집와 뒤에 부유하게 되었다 등 세 가지에 해당하면 쫓아낼 수 없다는 뜻이다. 칠거 사유가 있어도 삼불거에 해당하면 처를 내쫓을 수 없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칠거 사안 중 음란과 시부모에 대한 불효 외에는 실제 이혼 사유로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이 재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최대한 이혼을 억제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종 때는 칠거 중 아들을 두지 못하는 것과 질투가 제외되었고, 삼불거 외에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할 수 없게 하였다.

이처럼 이혼이 어려워지자 남성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아내가 간통하였다고 무고해 이혼을 관철하려 한다든지 아내를 소박疏薄하여 형식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래도 남성들은 첩을 두거나 기생집에 가는 등의 방법으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들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이 의절을 범하거나, 남편이 집을 떠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될 때 외에는 이혼할 방법이 없었다. 다만 남편에게 매를 맞아 뼈가 부러



최덕현 이혼문서 | 조선 | 전북대학교 박물관
조선시대 최덕현이 이혼할 때 작성한 이혼 합의서.

지거나 그 이상의 심한 중상을 당한 경우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 이때 만일 남편이 동의해 주면 이혼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경우는 지극히 일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혼한다 해도 재혼할 길도 없고 당장 생계 문제가 막연해질 수 있어 이혼을 결심할 수가 없었다.

반면 서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혼이 쉬웠다. 양반 여성은 재혼하면 자손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어 재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지만 서민 여성은 별로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정파의事情罷議 또는 할급휴서割給休書라는 것이 있었다. 사정파의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결별 의사를 밝혀서 서로 응낙한 뒤에 이혼하는 것이다. 할급휴서는 이혼문건 같은 것으로, 칼로 윗옷의 자락을 베어 그 조각을 상대방에게 주어 이혼의 표지로 삼는 것이었다.

1912년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가족에 관한 사항은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점차 일본의 민법 조항을 도입해 일본식 가족제도를 조선사회에 이식하여 나갔다. 1922년 이혼법이 개정되어 조선시대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여성의 이혼 청구권이 법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여성 재혼에 대한 관념적 금기가 여전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어렵던 당시 여성의 이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편 신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받은 신여성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애정에 입각한 결혼을 추구하였고, 신교육을 받은 남성들 역시 부모가 정해 줘 결혼한 구여성과는 이혼하고 신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반대 등 현실적으로 이혼은 쉽지 않아 구여성들은 허울뿐인 본처로서 가슴앓이를 해야만 하였고, 신여성들은 본의 아니게 첩이 되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은 소규모화되고 부부의 애정이 중요해졌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교육과 취업이 증가하고, 여성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혼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1971년 1만 1,361건이던 이혼 건수는 1981년 2만 4,278건, 1991년 4만 9,205건, 2001년 13만 4,608건으로 30년 동안 무려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4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47.3%), 경제 문제(12.8%), 배우자 부정(7.6%), 가족 간 불화(6.5%), 정신적·육체적 학대(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혼 건수는 완만히 줄어들어 2021년에는 10만 1,673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부부 간 갈등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결혼하던 상황에서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보여 주는 조혼인율粗婚姻率은 1971년 7.3건에서 2021년 3.8건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1990년대 이후에는 황혼이혼黃昏離婚이나 졸혼卒婚 등 달라진 이혼 풍속이 등장한다. 황혼이혼은 주로 50대 후반 이상에서 자녀가 성인으로 독립한 후 이루어진다. 오랫동안 가부장적 권위와 강압, 남편의 외도 등에도 참고 살던 여성들이 자녀의 성장을 계기로 이혼을 결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황혼이혼 문제가 사회적으로 처음 부각된 것은 1998년 70대 할머니가 90대 남편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에서였다. 이는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2005년 대법원에서 할머니

가 승소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생활을 30년 이상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0.8%에서 2001년 2.3%, 2011년 7%, 2021년 17.6%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이들의 이혼 비중이 혼인 기간 0~4년 차 부부의 이혼(18.8%)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혼이혼의 증가에는 1990년 분할연금제도 실행으로 이혼한 처가 남편의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점,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 시행으로 가정폭력도 일반적인 폭력 범죄와 같다는 의식이 확대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황혼이혼과 함께 졸혼도 보인다. 졸혼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혹은 별거 상태로 지내는 것을 말한다. 졸혼은 일본의 수필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杉山由美子가 그의 저서 『졸혼을 권함卒婚のススメ』(2004)에서 만든 말이다. 2013년 일본의 유명 연예인이 '졸혼 선언'을 한 이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16년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일본 중년 부부의 소개 기사에서 졸혼이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특징 및 의의 우리 사회에서 이혼의 시대적 추이를 보면 여성 지위의 변천과 특히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근대 시대에 이혼은 여성들에게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도구'이기를 강요하였다. 반면 현대에 이혼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혼인 생활에 똑같이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오늘날 민법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여기서 '배우자'란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부부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황혼이혼이나 졸혼 증가는 평균수명이 올라가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것, 가족보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일인가구 증가와 함께 일인가구 맞춤형 물품과 서비스가 많아진 점, 취미나 종교·봉사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그룹이 많아진 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에도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매개체들이 많아졌다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다. 이혼 변천사는 결국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족 집단' 우선에서 '개인의 행복' 우선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강요된 자유이혼 식민지 시기 이혼문제와 구여성(소현숙, 사학연구 104, 한국사학회, 2011),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권순형, 혜안, 2006), 조선 전기 혼인제와 성차별(장병인, 일지사, 1997), 졸혼에 대한 사회학적 단상(김정석·김미선, 한국인구학43-4, 한국인구학회, 2020),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 1970~1995(박경애, 한국인구학23-1, 한국인구학회, 2000), 황혼이혼 여성노인에 대한 사례연구(이현심, 노인복지연구68,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 통계청(kostat.go.kr).

필자 권순형(權純馨)

인척
姻戚

정의 '나'와 혼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

개관 친족親族은 혈통으로 맺어진 혈족血族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姻戚으로 구성된다. 인척은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혼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다. 통상 인척은 나의 혈족과 혼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 및 나와 혼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의 혈족을 의미하지만 인척 범위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인척은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촌수를 적용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 동일한 촌수로 인식된다. 숙모는 인척이지만 숙부와 같은 3촌으로, 4촌 형제의 배우자는 4촌으로 인식된다. 인척도 혈족과 마찬가지로 촌수 개념에 의해 사회적 거리가 가깝게 또는 멀게 인식되는 것이다. 인척 관계는 이혼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관계가 중단된 이후에도 계속 인척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내용 친족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혈연으로 관계된 혈족이며, 다른 하나는 혼인으로 관계된 인척이다. 〈민법〉 제769조에서는 인척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혈족의 배우자는 숙모·형수·며느리·사위 등이 해당하며, 배우자의 혈족은 장인·장모·처형·처남·처삼촌 등이 해당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동서, 처남의 아내, 처숙모 등이 해당한다.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예를 들면 동생의 아내의 동생은 인척이 아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사돈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인척 범위는 더 넓다. 우리나라에는 근친혼近親婚과 관련하여 동성동본同姓同本과 함께 월삼성越三姓 규정이 있다. 동성동본은 혈족에 따른 금혼 규정이며, 월삼성은 혼인에 따른 금혼 규정이다. 월삼성 규정은 성姓을 세 번 넘어서야 비로소 결혼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외사촌은 월일성 관계이다.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아버지가 성이 다른 어머니와 결혼하였고(월일성), 외사촌은 어머니와 성이 같기 때문이다. 반면 이종사촌은 월이성이다. 나와 월일성 관계인 이모가 다시 성이 다른 이모부와 결혼해서(월이성) 낳은 자녀가 이종사촌이기 때문이다. 외사촌의 이종사촌이 비로소 월삼성 관계이다. 월삼성을 하여야 결혼할 수 있다는 혼인 규정은 월이성까지는 모두 인척으로 인식함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는 근친혼의 범위가 비단 동성동본을 넘어 인척까지 포함하여 매우 넓다.

혈족 사이의 관계는 촌수로 계산된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는 1촌, 형제는 2촌, 조부모도 2촌, 숙부는 3촌, 숙부의 자녀는 4촌이다. 촌수가 낮을수록 더 가까운 관계로 인식되며, 촌수가 높을수록 더 먼 관계로 인식된다. 인척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 촌수는 혈족 사이에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인척은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간주한다. 나를 기준으로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1촌, 형수 또는 제수는 형제와 같은 2촌, 손주며느리는 2촌, 숙모는 3촌, 이모부도 3촌 등으로 간주한다.

인척은 개인 간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인척 관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나의 외가, 즉 어머니의 혈족은 나에게도 혈족이지만 나의 아버지에게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다. 나의 처가는 나에게 인척 관계이지만 내 동생에게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 관계가 아니라 사돈 관계이다. 친족집단은 집단이므로 친족집단 구성원은 모두 동일한 친족집단을 가지게 되지만 인척을 포함한 친족은 관계로서 개인 간 서로 다른 친족을 가지게 된다.

인척 관계는 법률적으로는 이혼과 함께 소멸된다(〈민법〉 제775조). 고모와 고모부가 이혼하면 고모는 혈족이므로 혈족 관계가 소멸되지 않지만 고모부는 인척 관계이므로 이혼과 함께 인척 관계도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혈족은 생물학적 관계이지만 인척은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다. 혈족은 사망과 함께 그 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나 인척은 사망으로는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모가 사망하여도 이모부와의 인척 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이모부가 재혼하면 민법상 인척 관계는 종료된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한번 맺어진 인척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즉 재혼한 이모부를 여전히 이모부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혼으로 인척 관계가 종료된 사람 역시 계속 인척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형과 형수가 이혼하면 형수였던 사람과 인척 관계는 해소되지만 형수였던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기피된다. 법률적으로도 4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은 금지되어 있다(〈민법〉 제809조). 법률적으로 인척은 이혼과 재혼으로 종료되지만 관습상으로는 한 번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셈이다.

인척은 혈족과 함께 친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부모, 며느리, 숙모, 형수 등은 인척이지만 중요한 친족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습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여자에게 5촌인 시당숙모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친족이라고 본다. 인척을 포함한 친족 관계는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법률적 규정과는 다르게 작동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으로, 혈연으

로 맺어진 사람인 혈족과 구별된다. 통상 혈족과 인척을 포함하여 친족 또는 친척이라고 한다. 혈족은 인척보다 더 중요한 관계로 인식되어 우리나라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구성된다. 혈족은 인척보다 더 넓은 범위까지 친족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인척의 중요성은 다르게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는 혈족과 인척을 모두 '궨당'이라 하여 둘 사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인척은 장례식에서 복친服親이 되기도 한다. 출계율에 따라 친족집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척은 혈족에 비해 그 중요성이 약하게 인식되었지만 친족집단의 구성이 약하고 친족 관계가 중요한 사회 구성 원리가 되면 인척은 혈족과 유사한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인척은 사회 관계에서 혼인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문화인류학개론(한상복·이문웅·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민법상 인척의 지위에 관한 검토(김은아, 법학연구30, 한국법학회, 2008),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김창민(金昌民)

일부다처제
一夫多妻制

정의 한 명의 남자가 동시에 여러 명의 여자를 배우자로 두는 혼인제도.

개관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는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동시에 부부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전쟁 등의 이유로 남자의 수가 적어진 사회나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렵채집 사회에서 잘 나타난다.

내용 일부다처제는 일처다부제一妻多夫制와 함께 복혼複婚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지 머독George Peter Murdock에 의하면 그가 조사한 표본 중 약 70%의 사회에서 일부다처제가 인정되고 있었다.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 사회라 하더라도 인구 구조상 모든 남자가 할 수는 없고 권력자나 부유한 자만 복수의 아내를 둘 수 있다.

일부다처제는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수렵채집 사회의 경우 대부분의 음식은 채집활동을 통해 구하였으며, 이 경우 여성의 수가 많을수록 남자는 경제적 자립을 빨리하거나 경제적 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부대新婦代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아내가 많을수록 딸을 많이 둘 수 있고 더 많은 신부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의 수가 적어지거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부다처제가 나타난다. 능력이 있는 남자는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둠으로써 더 많은 여성의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하게 된다.

호주 북서쪽의 멜빌섬과 바더스트섬에 거주하는 티위Tiwi 부족에는 일부다처제 풍습이 있다. 이 부족은 '여성은 출생과 동시에 남편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출생하자마자 20세 정도의 장래가 촉망되는 남성과 결혼을 약속한다. 또 20세 정도의 남자는 30세 이상의 과부와 결혼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딸의 결혼에 관여함으로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남자는 빈번하게 과부와 결혼하고 신생 여아와 혼인을 약속함으로서 많은 수의 아내를 두게 된다. 티위 부족에서는 아내의 수가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결정적 수단이 된다. 이렇듯 일부다처제에서 아내의 수는 남자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첩妾을 두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를 일부다처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부다처제가 부인들 사이에 신분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인데 반해 첩은 처妻와는 신분이 다른 존재였기 때문이다. 즉, 첩은 처가 아니었으며 첩을 두고 있는 경우라도 합법적 부인인 처는 한 명이었다.

일부다처제는 아내들 사이의 질투와 갈등이라는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매연혼姉妹緣婚, sororate이 사용되기도 한다. 자매연혼은 자매가 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아내들의 관계가 자매이기 때문에 남편과 주거를 공유하더라도 갈등이 적고 협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아내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각 아내가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함께 따로 생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편은 각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애정을

고르게 배분하여야 한다.

일부다처제 사회라 하더라도 일부다처제를 원칙으로 하지는 않으며, 다만 일부다처제를 허용할 뿐이다. 이슬람이 일부다처제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슬람의 경우에도 기본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이며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전쟁에서 많은 남자가 죽어 과부와 고아가 발생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허용된 측면이 강하다.

특징 및 의의 일부다처제는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다. 한 명의 남자를 여러 명의 아내가 공유하게 되면 가족 내에서 남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들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일부다처혼을 하는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지위가 낮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참고문헌 문화인류학개론(한상복·이문웅·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사회현상에 대한 제사회과학의 설명력 비교연구(유홍준, 사회과학33-2,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혼인·가족제도에 관한 인류학적 접근(이전, 사회과학연구28,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필자 김창민(金昌民)

일부일처제
一夫一妻制

정의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혼인제도.

개관 남편은 동시에 복수의 배우자를 두지 않고 아내도 동시에 복수의 배우자를 두지 않는 혼인 형태로, 남녀 성비에 가장 잘 부합하는 혼인 형태이다.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불안 요인이 적다.

내용 혼인은 크게 단혼單婚, monogamy과 복혼複婚, polygamy으로 나뉜다. 단혼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복혼은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와 일처다부제一妻多夫制를 포함하여 복수의 배우자를 동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단혼은 일생 한 명의 배우자를 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동시에 복수의 배우자를 두지 않는 순차적 일부일처제도 단혼으로 본다.

단혼은 의무 규정인 반면 복혼은 허용적 규정이다. 즉 일부일처제는 문화적 또는 법률적으로 강제 규정된다. 일부일처제를 문화적 규범으로 하는 사회는 복혼을 금한다. 우리나라도 민법상 복혼과 중혼은 금지되어 있다(〈민법〉 제810조). 반면에 복혼은 의무 규정이 아니다. 복혼이 문화적 규범인 사회일지라도 복혼을 의무화하지는 않으며, 단혼을 금하지도 않는다. 이런 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회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고 복혼을 허용하는지 금지하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복혼을 문화적 규범으로 하고 있는 사회라 하더라도 단혼 사례는 무수히 많다.

문화진화론자들은 일부일처제를 문명사회의 결혼제도로 인식하고 복혼에 비해 더 진화된 결혼 형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민족지民族誌 연구에 의하면 현대의 수렵채집 사회에서도 일부일처제를 하고 있어서 일부일처제가 더 진화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단혼과 복혼은 가치중립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복혼이 허용된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복수의 배우자를 둠으로써 혼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일처제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혼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녀 성비가 1:1에 수렴하기 때문에 일부일처제는 인구 구조에 가장 적합한 결혼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복혼을 하면서도 일부일처제 원칙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복혼을 하면서도 일부일처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처와 첩을 구분하였다. 즉 처는 합법적인 배우자이지만 첩은 그렇지 못하였다. 처와 첩을 둔 남자는 실질적으로 복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합법적 배우자인 처의 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 배우자는 첩이라고 함으로써 일부일처제 원칙을 지키는 형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일부일처제는 일생에 걸쳐 한 명의 배우자를 두는 것이지만 시간적 차이를 두고 서로 다른 배우자를 두는 것도 순차적 일부일처제라고 하여 허용된다. 즉 재혼을 통하여 복수의 배우자를 가지는 것은 일부일처제를 지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부일처제에서는 이혼과 재혼이 빈번해진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다른 이성에게 관심이 가게 되면 일부일처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하고 재혼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특징 및 의의 문화권에 따라 다르지만 역사적으로 인간의 혼인 형태는 대체로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다. 다만 지배계층에 속한 남성들에게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다. 군주가 아내 외에 후궁을 두거나 양반, 귀족이 첩을 두는 것은 기득권층의 특권이었다. 그러나 평민 이하 계층은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일부일처제는 결혼제도로서 성행위와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일부일처제라 하여 평생 단 한 사람과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간음이나 성매매가 일부일처제의 규범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부일처제는 남녀 모두 혼인 대상자가 한 명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참고문헌 문화인류학개론(한상복·이문웅·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92), 혼인·가족제도에 관한 인류학적 접근(이전, 사회과학연구28,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필자 김창민(金昌民)

일생의례
一生儀禮

정의 한 인간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과정에서 출생, 성장, 혼인, 회갑, 사망 등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전환되는 인생의 각 시기 또는 계기마다 행하는 각종 의례.

내용 **관혼상제와 통과의례 그리고 일생의례**

일생의례一生儀禮와 비견되는 개념으로 관혼상제冠婚喪祭와 통과의례通過儀禮가 있다. 한국의 왕실과 사대부에서는 일생의례를 예禮의 한 갈래인 가례家禮 차원에서, 사례四禮인 관혼상제冠婚喪祭로 인식하고 행하여 왔다. 이는 본질적으로 제가齊家를 위한 예법으로, 고려 말 성리학과 함께 전래된 『주자가례朱子家禮』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내용은 주로 관례冠禮의 관冠·계笄, 혼례婚禮의 의혼議昏·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현구고見舅姑·현처부모見妻父母, 상례喪禮의 초종初終·습襲·영좌靈座·소렴小斂·성복成服·조석곡朝夕哭·조부弔賻·분상奔喪, 장례葬禮의 치장治葬·천구遷柩·견전遣奠·발인發靷·성분成墳·반곡反哭·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祔祭, 제례祭禮의 사시제四時祭·기제忌祭·묘제墓祭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고대 및 중세의 가례를 송宋의 주희朱熹가 집대성한 『주자가례』는 조선의 전통문화 및 현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계兪棨의 『가례원류家禮源流』와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 등과 같은 수많은 가례주석서家禮註釋書가 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1844년(헌종 10)에 간행된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은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례 지침서였다. 그는 예학에 대한 깊은 조예를 토대로 하여 『주자가례』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보완하였다. 이 책은 그 이후 모든 가례의 표준이 되었다.

가례는 조선 초기에 주자학이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이 됨에 따라 왕실과 사대부 중심으로 준행遵行되었지만 후기에는 점차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행해진 일생의례는 비록 예서禮書의 절차와 내용을 하나의 규범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실천한 것은 아니었다. 당연히 시대나 계층,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사대부 양반 계층에서도 그러하였지만 특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서에 없는 그들 나름의 전통적 일생의례 관행들이 여전히 행해졌다. 곧 가례의 규범과 전통적 일생의례의 관행이 각각 별도로 실천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그 양자兩者가 혼합되고 절충된 새로운 의례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통과의례는 20세기 초엽 프랑스의 인류학자 반 게넵Arnold van Gennep이 주장한 개념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인간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단

계 또는 고비마다 각종 의례가 거행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들 의례를 거쳐야만 한 인간이 하나의 인생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해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이들 의례를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새로 태어난 아기는 출산의례를 거쳐 새로운 가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 태어나며, 총각과 처녀는 혼례를 거쳐서 엄연한 부부가 되고, 죽은 자는 장례로 모셔져서 내세에 안착하고, 산 자는 다시 현세로 귀환할 수 있게 된다고 파악하였다.

그는 이들 의례가 ①분리分離, separation ②전이轉移, transition ③재통합再統合, incorporation의 3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3단계는 각 문화에 따라 그 내용과 비중을 달리한다. 예컨대 분리의례는 장례, 통합의례는 혼례, 전이의례는 임신이나 성년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통과의례나 관혼상제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한국의 일생의례를 지칭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통과의례는 사례를 비롯하여 그 밖의 모든 입사식入社式, initiation도 포괄하는 범인류적 보편성 차원의 개념이기도 하기에 역시 한국 일생의례의 실상을 담아내는 낱말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관혼상제에는 출산의례가 배제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왕실과 사대부를 전제하는 것이기에 한국 일생의례의 전모를 뜻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일생을 거치면서 삶의 단계마다 치르는 의례'를 뜻하는 개념어로서 일생의례가 상대적으로 온당하다고 할 수 있다.



돌잔치 | 평생도 중 부분 | 가로37 세로5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출산의례·혼례·상례·제례

일생의례에는 출산의례, 혼례, 상례, 제례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성년의례와 회갑례가 포함되기도 한다.

출산의례는 기자祈子—산전産前—출산出産—산후産後—축하 잔치의 5단계로 구성된다. 출산의례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는 생명을 잉태하여 태아가 자궁 안에서 열 달 동안 무사히 자라고, 순산을 통하여 무사히 세상의 빛을 보게 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최소한 첫 번째 생일인 돌이 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육아가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출산의례가 통과의례로서 충분한 의미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놀드 반 게넵의 분리—전이—재통합이라는 3단계는 한국의 출산의례에도 적용된다. 임신부는 한 육신 안에 몸이 둘인 비정상적 인물로 간주되어 일상 세계로부터 분리되며, 임신 열 달 동안의 전이단계를 거쳐 마침내 출산하게 되면 삼칠일·백일·돌 등을 치른 뒤 점차 일상으로 재통합하게 된다. 곧 산부産婦는 주부로 되돌아가고, 신생아는 한 집안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혼례 절차에 대해 유교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혼의昏議」에서는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의 육례六禮로 소개하고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 널리 채택된 『주자가례』에는 의혼—납채—납폐—친영의 사례四禮를 혼례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 후기 이재의 『사례편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혼은 혼사를 의논하는 일이다. 중매를 통하여 혼담이 오간 뒤 혼인에 합의를 보고 허혼許婚까지의 과정

이다. 납채는 채택하는 예를 받아들이는 절차이다. 남자 집에서 혼인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여자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일을 말한다. 이 절차는 나중에 점차 생략되었다. 청혼할 때 남자 집의 혼주婚主는 서식을 갖추고 사주四柱를 써서 여자 집에 보낸다. 납폐는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보내는 예물이다. 친영은 신랑이 될 남자가 신부가 될 여자를 친히 맞이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서의 혼례 절차는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중국의 혼례 규범이 우리나라에 정착되기는 쉽지 않았다. 민간의 혼례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였다. 특히 한국의 처가살이혼[서류부가壻留婦家 또는 남귀여가男歸女家] 전통은 중국의 친영과 갈등을 일으켰다. 친영은 예서에 적시된 이상형理想型이었지만 처가살이혼은 실제형實際型이었다. 이들 두 혼인 방식은 조선 중·후기를 거치면서 점차 반친영半親迎 등으로 절충되어 갔다. 일부 지방에서는 해묵이·달묵이 등의 풍습으로도 조정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혼례의 겉모습은 친영제를 중심으로 한 예서의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 전통혼례에는 처가살이혼을 비롯하여 각 지역과 문중 그리고 가정마다의 혼인 관행들이 채워져 있다.

민속상의 혼인 관행은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는 통과의례상의 경계 지역liminal zone에 있는 새 신랑과 새신부의 위험을 없애고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를 액살厄煞이나 범접犯接할지 모르는 잡귀를 차단하고, 부귀다남富貴多男 등의 행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신랑과 신부를 각각 자신의 집으로부터 분리하여 혼례 전체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전이 단계를 지나 엄연한 남편과 아내로서 자리를 잡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총각과 처녀'에서 '신랑과 신부'로, 더 나아가 '남편와 아내'로 점차 변화·정착되어 간다.

상례는 망자亡者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족 및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일생의례이다. 그 목적은 일정한 상례 절차를 거쳐 망자의 시신을 정중히 음택陰宅에 모시고, 육신을 떠난 혼백을 위로하며, 마침내 저승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사람의 죽음이란 생물학적 죽음만으로도 완전한 죽음이 아니며, 사회학적 죽음만으로도 완전한 죽음이



혼례 | 시집가셔잔붓는모양(복제) | 김준근 | 가로13 세로17 | 국립민속박물관

아니다. 이들 두 차원의 죽음이 모두 이루어져야 온전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상례를 치르지 않으면 완전한 죽음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망자는 저승으로도 가지 못한 채 이승을 떠돌게 된다. 망자는 잡귀雜鬼 수준의 객귀客鬼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며, 올바른 조상이 되지 못한다. 유가족들도 망자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하며 영원한 이별을 준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기도 어렵다.

상례도 분리—전이—재통합이라는 통과의례의 3단계를 거친다. 수시收屍를 하여 칠성판에 모시고, 온몸을 홑이불로 덮고 병풍으로 가리는 것이 첫 번째 분리의례이다. 이는 망자를 이승으로부터 또한 산 자로부터 격리하는 의미를 지닌다. 유가족도 초상집 또는 복인服人이란 이름으로 일단 망자와 일상생활로부터 분리된다. 상가喪家의 상장喪章도 분리의 상징적 표식이다. 소렴小殮과 대렴大斂도 또 하나의 분명한 분리이며, 하관 후 달구질을 거쳐 성분成墳이 되면 망자는 산 자와 완전히 차단된다.

치장을 마친 후 길제吉祭까지의 흉제凶祭는 일종의 전이 단계이다. 반혼返魂으로부터 우제虞祭를 거쳐 졸곡제卒哭祭를 모시고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등을 치르고 탈상脫喪할 때까지 죽은 자와 산 자는 아직 상중喪中이라는 교집합交集合의 상황에 놓여 있다. 곧 발상發喪에서 상중



상례 | 행상하는 모양 | 김준근 | 가로39 세로34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을 거쳐 바야흐로 탈상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탈상을 하면 망자는 저승으로 가고 유가족은 이승의 일상생활로 돌아온다. 이러한 상황은 재통합이라 할 수 있다.

상례와 거의 동일한 뜻으로 쓰는 장례라는 낱말이 있다. 상례와 장례를 굳이 구별하자면 상례는 임종을 준비하는 천거정침遷居正寢으로부터 별세 후 두 돌 만에 지내는 대상大祥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과정을 뜻한다. 이에 반하여 장례는 시신을 거두는 수시收屍로부터 무덤을 조성한 후에 지내는 평토제平土祭까지를 이른다. 그래서 이들 두 낱말을 합하여 상장례喪葬禮라고 하기도 한다.

망자는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상례로 잘 모셔야 조상이 될 수 있고, 그분이 남기신 자손은 후손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다. 이들 관계가 항상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상과 후손은 공식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 만남이 바로 제례이다.

제례의 주체는 후손이고 그 대상은 조상이다. 후손은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조상을 모신다. 자손이 집안의 '살아 계신 어른'에게 효孝를 실천하듯 그 연장선에서 '돌아가신 어른'에게도 효를 행하는 것이다.

제사 종류에 대하여 예서에는 일반적으로 사당제祠堂祭, 사시제, 이제禰祭, 기일제忌日祭, 묘제 등이 소개되어 있다.

사당제는 집안의 사당에 모신 신주神主를 대상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사시제는 일 년에 네 차례, 곧 2월·5월·8월·11월에 지내는 계절제이다. 이제는 계추季秋, 곧 9월에 올리는 부모제사이다. 제사 절차는 사시제와 동일하다. 기일제(기제)는 4대조까지 기일忌日에 모시는 제사이다. 제사 절차는 사시제와 같지만 수조受胙와 음복이 없고, 지역과 문중에 따라 순서와 내용이 다소 다르다. 묘제는 3월 중에 택일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제사 절차는 사시제와 유사하지만 사신辭神을 하면 묘

의 왼쪽에서 후토제后土祭를 별도로 지낸다. 후토는 묘역의 지신地神 또는 산신을 일컫는다.

이 외에도 대종大宗에서 동지에 시조에게 지내는 시조제始祖祭, 제사를 받드는 대수代數가 다 된 선조에게 지내는 선조제先祖祭,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삭망제朔望祭, 청명淸明·한식寒食·중오重五·중양重陽 등에 모시는 속절제俗節祭 등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서의 내용은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의 규범으로서 중요한 영향은 끼쳤지만 중국 전통의 제례가 한국의 조상제사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가 따랐다. 중국적 제례는 한국 역사 안에서 절충·변형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 조상제사도 중국 제례의 강한 영향 아래 그 나름의 독자성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널리 행해진 제사는 기제사忌祭祀, 차례, 시제사時祭祀 정도였다. 이들 제사의 속성을 보면 기제사는 기일제, 차례는 속절제, 시제사는 묘제에서 각각 유래된 것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일생의례가 지닌 사회적 의미와 기능은 매우 지대하고 분명하다. 태어난 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라나지만 이러한 생물학적 출생과 성장만으로 아기가 온전한 의미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삼칠일·백일·돌 등의 각종 의례를 치르면서 점진적으로 아기는 한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간다. 아기의 생물학적 출생과 성장을 사회학적으로 공인하는 것이다.

한 쌍의 남녀는 혼인하지 않아도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사실상의 부부 관계, 이른바 사실혼이다. 그러나 이들 남녀는 사회가 인정하는 정식의 남편과 아내 구실을 할 수 없다. 그들의 자녀도 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혼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 쌍의 남녀는 정식 부부가 되고, 자녀도 사회적 공인을 받을 수 있다. 1923년 법률혼주의가 공표된 이후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그 이전 시대는 물론 그 이후에도 혼인이 지닌 사회적 기능은 매우 중시되었다.

회갑은 60갑자를 산 사람을 사회학적 노인으로 공인하는 의례이다. 사실상 몇 살부터 노인인가를 개인이나 사회 차원에서 규정하는 일은 모호하다. 그러나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61회의 생일을 회갑이라 하여 크게 기리는 전통이 확산되어 갔다. 이는 장수를 축하한다는 의미를 넘어 회갑주回甲主가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식의 노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제 회갑주는 살아 있는 후손과 죽은 조상 사이의 과도적 존재로서 향후 올바른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상례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한 육신의 죽음은 온전한 죽음이 아니다. 죽음의 사회적 공인 절차인 상례를 치러야만 비로소 죽음이 완성된다. 상례를 치르지 않은 망자의 혼백은 뜬귀[객귀]가 된다. 저승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승에도 머물지 못하는 불쌍한 귀신이다. 상례로 모신 혼백만이 저승으로 가서 잡귀가 아닌 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승으로 천도된 조상이라도 후손의 제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조상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후손도 그래야만 조상의 음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후손이 제사를 통하여 조상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는 격식이 제례이다.

또한 이들 의례에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종교적·상징적·심리적 부분도 포괄하고 있다.

참고문헌 사람의 한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한국인의 일생(이광규, 형설출판사, 1985).

필자 이필영(李弼泳)

입양
入養

정의 친자식이 아닌 자를 자식으로 삼는 행위.

개관 '입양入養'은 현재 양부모—양자녀 관계 형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근대에 형성된 단어이다. 조선시대까지

는 양자녀 유형에 따라 각각의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며, 입양을 대치할 수 있는 단어는 없었다. 한문 문장에서는 '양養'이 양자녀를 들이는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하였지만 현대 문장에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기른다' '봉양한다'는 의미도 있어 '입양'을 대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전근대에 양자녀를 들이는 행위를 포괄해 부를 때도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입양'은 '들여서 기르다' '입적하여 기르다'라는 의미로 양부모—양자녀 관계 형성의 주체를 양부모로 설정한 단어이다. 이에 따라 앞의 '정의'에 양부모를 주체로 하여 '친자식이 아닌 자를 자식으로 삼는 행위'라고 기술하였다. '입양'은 '하다' '되다' 등의 종결 어미와 결합하여 '입양하다' '입양되다'와 같은 서술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능동형인 '입양하다'의 주체는 양부모이고 피동형인 '입양되다'의 주체는 양자녀이다.

버려지거나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자식 없는 사람이 애정을 쏟을 대상이 필요하거나 노후 봉양이나 사후 제사를 맡기기 위해 양자나 양녀를 들이는 일은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는 인위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일이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이 관계를 규정짓는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해당 법에는 입양 성립의 요건 및 절차,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 양부모—양자녀 관계의 해소 등 내용이 규정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나 재판을 통해 입양이 성립될 수도 있고 당사자 간 협의로 성립되기도 한다. 전자는 친부모와의 부모—자녀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후자는 친권 외에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된다. 다만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 양육 환경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오늘날의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보호할 수 없는 아이에게 양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부모와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한편 핏줄을 중시하여 입양을 꺼림에 따라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이를 해외에서 입양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전근대의 양부모—양자녀 관계는 사적으로 맺어지기도 하였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마무리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적으로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맺었다. 『고려사高麗史』「형법지刑法志」에는 『당률唐律』을 수용하여 이성 양자를 규제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처의 동성·이성 친족이 모두 양자녀가 되었으며, 혈연관계가 없는 자를 양자녀로 삼기도 하였다.



수양시양등록 | 가로26 세로42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시대 예조에서 수양, 시양 사실을 인증해주고 기록한 장부.

조선 건국 이후에는 3세 전에 입양한 경우는 '수양收養', 그 외에는 '시양侍養'이라 하여 입양할 당시 나이 기준으로 입양 형태를 구분하였다. 또 1437년(세종 19)에는 아들 없는 집안에서 종법에 따라 가계家系를 계승할 수 있도록 입후立後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입후법立後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입양 형태는 수양·시양·입후의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되었다. 수양·시양은 입양 대상과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양부모와 양자녀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되었으며, 관에 신고하거나 허락받을 필요가 없었다. 양부모에게는 각각 수양부·수양모, 시양부·시양모라고 지칭하였다. 수양 부모와 시양 부모 모두에게는 양부·양모라고도 하였다. 양자녀에게는 각각 수양자·수양녀, 시양자·시양녀라고 지칭하고 양자·양녀라고도 하였다. 입후는 입후법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여 예조禮曹에서 허가를 받으면 성립되었다. 양부

모는 소후부所後父·소후모所後母, 양부·양모 등으로 지칭되었다. 양자는 법제상 계후자繼後子라고 지칭되었지만 흔히 양자라고도 하였다.

내용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입양 형태인 수양·시양은 입양 목적과 대상이 자유로웠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자신을 봉양하거나 제사를 맡아 줄 자식을 얻기 위해, 자식 없는 사람이 재산상속자를 지정하기 위해, 양측 사이에 친밀감이 생기거나 정략적 필요가 있을 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맺었다.

조선 전기에는 남편과 처가 각자 자신의 친족을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로 삼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에는 부계와 모계 등의 계통에 구애받지 않고 혈연관계라는 점 자체가 중요하였던 고려시대의 인식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편과 처의 계통에서 이들 부부보다 한 항렬行列 아래에 있는 모든 친족이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가 되었다.

15세기 예안현 오천(현재 경상북도 안동 와룡면 오천리) 지역에 거주하던 김효지金孝之·황씨黃氏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계후자 김효로金孝盧, 수양녀 명주明珠, 시양녀 김씨金氏를 두었다. 수양녀 명주는 남편 김효지의 동성 4촌 손녀였고, 시양녀 김씨는 처 황씨의 이성 3촌 질녀였다. 이들 부부는 입후법에 따라 계후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각자 자신의 친족을 계통에 구애받지 않고 양녀로 삼았다.

부부 양측의 친족을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수양·시양의 입양 대상이 되었다. 15세기에는 왕자나 왕녀가 태어나면 사대부가에 맡겨 기르면서 왕자녀를 기른 사대부와 왕자녀 사이에 수양 부모—수양 자녀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왕자녀의 수양부는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수양 자녀인 왕자녀는 양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한편 왕자녀들이 사대부들이나 심지어 상인과 시양부—시양자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다. 세종世宗의 아들 한남군漢南君은 상인인 건직乾直과 시양부—시양자 관계를 맺었다. 상인인 건직은 한남군을 시양자로 삼음으로써 상업 활동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한남군은 건직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국경 지역에서는 조선에 귀화한 향화인向化人이나 외국인과도 수양·시양 관계를 맺기도 하였으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관들도 흔히 여러 명의 수양·시양 자녀를 두었다.

종법 질서가 정착되면서 16세기쯤에는 남편의 동성 친족을 수양자나 시양자로 삼아 가계를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예조에서 입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들 수양자나 시양자에게 봉사奉祀를 맡기고 가계를 잇도록 하기도 하였다.

1437년(세종 19) 입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입후가 출현하였다. 이는 약간의 개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입후법의 핵심은 입후 대상에 관한 규정이었다. 이에 따르면 입후 대상은 남편의 동성 친족 중 소목昭穆에 합당한 자여야 하였고, 장자가 아닌 지자支子여야 하였다. 또 적처嫡妻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자만이 입후 청원을 할 수 있었고,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세우도록 하였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면 어머니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후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갖추고 이 법에 규정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한 후 예조에 청원해서 허가받아야 입후가 성립되었다. 예조에서는 조사 결과 입후법에 부합하는 입후라면 왕에게 계문啓聞하여 윤허允許를 받아 허가하였다. 이때 입후를 허가한다는 증표로 예조에서 발급한 입안이 계후입안繼後立案이다. 사적으로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맺었던 수양·시양은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재산 증여·상속 문서, 주위 사람의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하였지만 관의 승인을 받은 입후는 계후입안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예조의 허가를 받아 계후자의 지위를 획득하였던 만큼 입후를 파하고자 할 때도 예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입후법 제정 후 계후자는 적장자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소후부모所後父母와 후사가 된 집안의 친족들에 대한 상복喪服을 친자와 동일하게 입도록 하였다. 반면에 소생부모所生父母와 친가 친족의 상복은 한 등급 강복降服하였다. 다만 소생부모의 상복은 강복하여 3년이 아닌 기년복期年服을 입더라도 심상心喪 3년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후자는 소후부모의 재산을 적

자嫡子나 승중자承重子와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었다. 이는 1530년(중종 25) 적녀, 계후자, 양자녀가 모두 있을 때의 상속분을 규정한 수교受敎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수교는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적실에 딸이 있고, 또 계후자가 있고, 또 양자녀가 있으면 적녀嫡女와 계후자는 평분平分하고 계후자에게 봉사조奉祀條를 더 주며, 양자녀는 대전大典의 분수分數에 의해 분급分給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양자녀는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를 의미한다. 계후자는 소후부모의 친자식인 적녀와 같은 양의 상속분을 받도록 하였고, 여기에 봉사조를 더 지급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양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수양 자녀는 양부모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양부모의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친자식이 있을 때는 전체 재산의 1/7만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을 통해 다른 양자녀와 차별화되는 계후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입후한 후 아들을 낳게 되면 입후를 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친자가 태어나면 부부의 핏줄이 아닌 계후자와의 관계를 끊고자 한 것이다. 이에 1553년(명종 8) 친자를 낳으면 그 친자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고 계후자를 중자衆子로 논하도록 하는 법이 반포되었다. 그러나 이후 계후자를 중자로 논하는 것이 정리情理와 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의들이 이어졌고, 1669년(현종 10)에는 "이미 계후자가 있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은 예제禮制에 크게 어그러짐이 있으니 다시 제도를 제정하여 바로잡는다."라는 수교가 내려졌다. 이로써 입후한 후 친자를 낳더라도 계후자가 적장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입후 청원을 하더라도 입후법 규정에 충족되지 않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입후는 허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 입후법에 어긋나더라도 아들 없이 사망한 사람의 후사를 이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왕의 특은特恩으로 입후를 허가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조에서 허가해 주지 않아 입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언上言·격쟁擊錚·격고擊鼓를 통해 왕에게 호소하면 왕명으로 들어주기도 하였다.



입안 | 가로67 세로51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1634년 5월 조무의 둘째 아들 조여근을 조빈의 양자로 삼는 것을 공인하는 문서.

이러한 사례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법조문에는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입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첩자가 있는 데도 입후를 허락해 주는 사례가 많았다. 둘째, 양가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계후자를 세우도록 하였고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입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후를 허락해 주기도 하였다. 여기에 영조英祖 대에 정리情理가 가련한 사람은 한쪽 부모나 문장門長이 상언上言하면 예조에서 회계하여 입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수록되었다. 또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한쪽 혹은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해도 예조에서 논리論理하여 초기草記하도록 하였다. 즉 한쪽 혹은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지만 정리상 참작해 줄 요소가 있을 때 담당 관서인 예조에서 판단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지자를 계후자로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대종大宗의 입후는 지자가 아닌 장자나 독자의 입후를 허가해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이 상언·격쟁·격고를 통해 입후를 허락받고자 하였다. 문중門中이 성장하면서 문중에서 계후자 선정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종의 계후자 선정에 합의한 문중 완의完議가 전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문중에서 계후자를 선정한 후에도 예조에서 계후입안을 발급받아야 계후자로서의 온전한 법적 권리

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징 및 의의 현대에는 혈연을 중시하여 입양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수양·시양은 양자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양부모—양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입양보다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자유롭게 양부모—양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다. 반면에 양부모—양자녀 관계 성립과 유지·파양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고 해소되었으며, 이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도 취약하였다.

1437년(세종 19) 입후법이 제정됨에 따라 등장한 입후는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예조의 허가를 받아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양부모 및 양부모 집안의 봉사와 가계 계승이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성립되어 조선시대 유교적 제사 형태 정착과 문중 성장에 기여하였다.

수양·시양과 입후 이 두 유형의 입양 형태는 양부모—양자녀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입양의 성립과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었다.

참고문헌 의자의 양자 지정 사례를 통해 본 16세기 수양 시양 관행(박경, 고문서연구53, 한국고문서학회, 2018), 이성계후의 실증적 연구(박병호, 서울대학교 법학14-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3), 조선 전기 입양과 가족제도(박경, 혜안, 2011), 조선시대의 양자제와 친족조직 상(최재석, 역사학보86, 역사학회, 1980), 조선시대의 양자제와 친족조직 하(최재석, 역사학보87, 역사학회, 1980),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고민정,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필자 박경(朴景)

입향시조
入鄕始祖

정의 특정 군·현 단위부터 동·리 단위 지역에 제일 먼저 터를 잡고 정착한 조상.

개관 한 지역에 처음 정착한 입향시조는 후손들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입향시조入鄕始祖의 생몰연대 등을 통해 특정 성씨가 지역에 정착한 역사를 알 수 있다. 대개 조선시대 지연地緣을 기반으로 하는 친족조직인 문중은 입향시조의 입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선조先祖가 처음 정착하고 있는 지역인 '향鄕'의 지역적 단위는 크게는 군郡·현縣 단위에서 작게는 동洞·리里나 자연촌락 단위까지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향시조는 16세기 이후 종법宗法이 강화되면서 특정 지역 부계친족집단인 문중의 상징적인 조상으로 모셔지는 경우가 많다.

내용 일반적으로 입향조入鄕祖로도 불리는데,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종족촌락에서 가장 먼저 정착한 조상을 일컫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여말선초 전환기에는 사족士族들이 중앙정부의 통제가 철저하지 않은 지역을 확보하여 새로운 정착지로 삼았고, 그 후손이 누대累代에 걸쳐 거주함으로써 처음에 정착한 조상을 입향시조로 언급한다. 조선시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특정 성씨의 지역 입향은 군·현 단위에서 사회사적인 의미가 두드러지며, 동·리 단위의 입향은 인근 지역에서 분가分家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한 지역에 정착한 입향시조는 그 지역 후손들의 구심점으로, 지역 친족집단인 문중의 상징적인 조상으로 모셔진다. 입향시조의 사회적 위상은 그 조상의 신분 또는 사회적 지위, 입향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징 및 의의 한 성씨 집단에서 시조始祖는 최초의 조상으로 모셔지는 선조로, 족보에서 맨 앞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도시조都始祖는 한 성씨의 시조가 정해지고 나서 시조의 윗대 계통이 문헌 등과 같은 자료로 확인되었을 때 명명하는 시조이다. 입향시조는 족보상의 의미보다 전통적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입향시조가 특정 지역으로 정착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문헌과 구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입향 배경의 유형은 대개 다음과 같다.

①왕조의 변동, 전쟁 등과 같은 사회적 큰 변동을 계기로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②지방관을 지낸 조상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그대

로 정착한 경우

③혼인을 통하여 처가에 정착하거나 친족관계를 통해 외가에 정착하는 경우

④세력이 있는 자가 지방에 별도의 분묘를 마련하고 그 후손들이 정착한 경우

⑤관직이 있는 자가 공신이 되어 관으로부터 사패지賜牌地 등을 받아 정착한 경우

⑥죄를 지어 유배되거나 정치적 상황에 불만을 품고 은둔하여 정착한 경우

⑦지방의 세력가가 부근에 적지適地를 마련하여 전거轉居하거나 그 자손이 인근에 분가하여 정착한 경우

⑧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 인구가 희박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개간·개척을 통해 정착한 경우

입향시조의 입향 배경은 시대적 편차가 있으며, 입향시조의 당대 신분과 위세 등에 따라 특정 지역사회에서 입향시조와 그 후손들의 위상에도 편차가 있다.

전통사회에서 입향시조는 지연을 기반으로 하는 문중의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다. 또한 종법의 사회적 실천이 강화되면서 지역의 뿌리 조상에 해당하는 입향시조에 대한 친족이념이 강화되어 왔다. 입향시조는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조상에서 구하고 친족집단의 번영을 개인의 영속으로 생각하는 친족이념의 상징으로 모셔지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씨족부락의 구조연구(김택규, 일조각, 1979), 조선시기 촌락사회사(이해준, 민족문화사, 1996), 조선후기 지역사회구조 연구(정승모, 민속원, 2010), 한국가족제도 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친족의 사회인류학(이광규, 집문당, 1997), 朝鮮の聚落(善生永助, 朝鮮總督府, 1935).

필자 이상균(李相均)

자
字

정의 본명이 아닌 부명으로, 주로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본 이름 외로 부르는 호칭.

개관 자字는 20세에 성년이 되어 관례를 치르면서 받는 또 하나의 이름이다. 보통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 또는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분이 낮은 아랫사람에게 '자'를 사용하였지만 스승과 부모 등 윗사람에게는 자신의 본명을 말하였다. 옛 문헌에는 본명이 아닌 자로 사람을 지칭한 경우도 많다. 특히 시문과 서간문에서 지칭되는 것은 실명이나 호號보다 자인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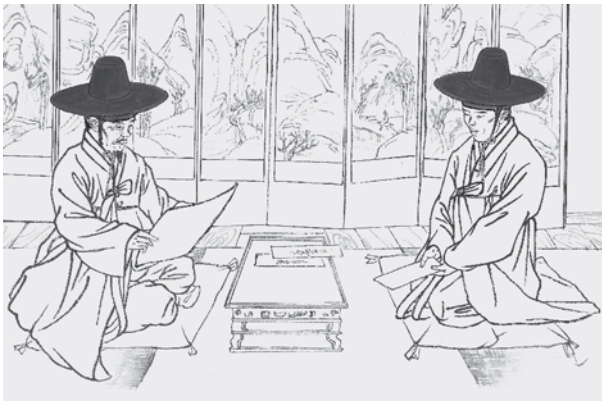
내용 실제 이름[本名]이 아닌 부명副名으로, 주로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여받는 이름이다. 예로부터 글을 잘하는 문인이나 관직을 가진 사람이면 이름과 별도로 자와 호를 가졌다. 옛날에는 본명보다 자를 많이 부르고 사용하였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호나 벼슬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다.

『예기禮記』에서 "남자는 20세에 성년이 되어 관례冠禮를 마치고 성인이 되면 자가 붙는다."고 하였듯이 남자는 관례 때 자를 지어 평생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15~20세에 관례를 행하였는데, 관례는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로 모자인 관冠과 성인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자를 지어 주는 의식이었다. 자를 짓는 사람은 아버지, 친척 어른 또는 스승이었다.

어버이 또는 스승이 그 아들이나 제자를 부를 때와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실명을 사용하고, 윗사람에게는 자신의 실명을 말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비슷한 또래이거나 아랫사람에게는 자를 썼다. 타인을 부를 때도 서로의 관계가 친숙할 때는 자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옛 문헌에는 이름이 아닌 자로 사람을 지칭한 경우도 많다. 특히 시문과 서간문에서 지칭되는 것은 실명이나 호보다 자인 경우가 많다.

자가 언제부터, 어떤 배경에서, 왜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삼국시대 설총薛聰의 자가 총지聰智였던 기록도 보인다. 그러나 원효元曉의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면 이때까지만 하여도 자가 호만큼 보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 반면 고려시대에는 유명인물의 경우 자가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에는 매우 일반화되어 대부분의 식자識者나 인물들이 자를 썼다.

실명보다도 자를 많이 사용한 것이 옛 습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지만 일반적으로 자보다 벼슬 이름이나



자관자례

호로 부르는 경우도 많았다. 예로 세종과 이순신을 들 수 있다. 세종은 왕호요, 그 이름은 도이다. 자는 원정元正, 봉호는 충녕대군忠寧大君, 시호는 장헌莊憲, 능호는 영릉英陵이다. 이순신李舜臣의 자는 여해汝諧,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종의 자나 이순신의 자를 말하거나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징 및 의의 자는 지배층 또는 지식층이 본 이름이나 호와 다르게 사용하던 호칭이었다. 자를 짓는 사람은 아버지, 친척 어른 또는 스승이었다. 옛 문헌에는 본명이 아닌 자로 사람을 지칭한 경우도 많다. 특히 시문과 서간문에서 지칭되는 것은 실명이나 호보다 자인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盎葉記,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이해준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한국인명자호사전(이두희 외, 계명문화사, 1988), 한국인의 자와 호(강헌규·신용호, 계명문화사, 1993).

필자 이해준(李海濬)

자녀
子女

정의 부부가 낳거나 입양한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내용 자녀子女는 부부가 낳거나 입양入養한 아들과 딸을 부모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자녀는 순우리말 아들에 해당하는 한자 '자子'와 순우리말 딸에 해당하는 한자 '녀女'로 구성된 한자어이다. 자녀 대신 자식子息을 쓰기도 한다.

가족은 성인 남녀와 그들에게서 출생하였거나 양자養子로 된 자녀로 이루어진다. 가족은 부父·모母·자녀로 구성되며, 이를 영원의 삼각형이라고 한다. 부부는 자녀를 낳거나 입양을 통하여 부모가 된다. 부부가 낳은 아이는 친자녀親子女라 하고 입양한 아이는 양자녀養子女라고 한다. 부모는 자녀를 입양 여부와 성별에 따라 친딸·친아들, 양딸·양아들로 구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모가 자녀를 지칭하거나 호칭하는 친족용어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한 명의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부모는 자녀를 이를 때 이름이나 '아들' '딸' '아들내미' '딸내미' '내 새끼'라고 한다. 두 명 이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부모는 자녀를 태어난 순서와 성별을 고려하여 친족용어를 사용한다. 부모가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만을 고려하면 '맏이, 큰아이, 첫째 아이' '작은 아이, 둘째 아이' '막내, 막내 아이, 막둥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녀를 태어난 순서와 성별을 모두 고려하여 호칭하거나 지칭할 경우 '첫째 아들, 장남長男, 장자長子, 큰아들, 맏아들' '첫째 딸, 장녀長女, 큰딸, 맏딸' '둘째 아들, 차남次男, 작은아들' '둘째 딸, 차녀次女, 작은딸' '막내 아들' '막내 딸'이라고 한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지칭하거나 호칭할 때 부모의 성별을 고려한 친족용어를 사용한다. 남성에 대해서는 아버지·아빠·아버님·부친父親이라 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어머니·엄마·어머님·모친母親이라고 한다.

한국은 조선시대 유교적 종법 질서를 사회 구성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가家의 계승 의식이 점점 발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부계父系 혈통 의식이 강화되었다. 가족의 형태는 부계 직계가족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다. 이에 따라 자녀의 혼인 후 거주방식도 성별과 출생순서에 따라 달라졌다. 아들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맏아들은 혼인 후에도 부모와 함께 계속해서 살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혼인 후 부모를 떠나 따로 살림집을 마련하여 살도록 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 주는 방식도 변화하



정월 초하루 나들이 | 엘리자베스 키스 | 가로28 세로40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였다. 자녀에게 고르게 나눠 주는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에서 장자長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는 장자우대불균등상속長子優待不均等相續으로 바뀌었다. 이에 장자는 다른 자녀보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편안하게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를 지낼 책임과 의무를 졌다.

또한 자녀 가운데 딸보다 아들을 중시하게 되면서 혼인한 딸은 점점 출가외인出嫁外人이 되었다. 자녀를 족보에 기재하는 방식도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적었던 방식에서 아들을 먼저 적고 딸을 그다음에 적는 방식으로 변해 갔다. 한국 가족 내 자녀의 성별과 태어난 순서에 따른 차이 및 차별은 시기별, 지역별, 가족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한국의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를 엄부자모嚴父慈母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였다. 그 뜻을 풀면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이다. 아버지는 자녀를 엄하게 다루고, 어머니는 자녀를 깊은 사랑으로 감싸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는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모녀 관계를 형성한다. 그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 관계인 부자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였다. 아버지는 자녀 가운데 딸보다도 아들에 대해 엄한 양육 태도를 보였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녀는 자기들을 낳고 길러 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효孝이다. 자녀의 효행은 부모의 몸을 편안하게 돌보아 주는 것이다. 자녀가 어려서 누워 있고 기어 다니며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가 젖을 먹이고 감싸고 돌보아 주었듯이 부모가 노쇠하고 병들었을 때 건강하게 보살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병시중을 드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 펴낸 대표적인 유교 윤리 교과서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효자孝子는 부모가 중병에 걸렸을 때 손가락을 잘라 나오는 피를 부모의 입에 넣어 마시게 하거나 볼기의 살을 베어 내고 이 살을 약으로 써서 부모를 살린 인물로 그려진다.

한국인들은 자녀 수와 관련하여 '자녀가 많다' 또는 '자녀가 적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르다. 전통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복이 있다는 다산多産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19세기 조선사회에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라는 혼례용 병풍이 유행하였다. 이 병풍은 당 현종玄宗 때 실존 인물인 분양왕汾陽王 곽자의郭子儀(697~781)의 영화롭고 다복한 생애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곽분양행락도〉를 그린 병풍은 〈백자도百子圖〉 〈요지연도瑤池宴圖〉 〈모란도牧丹圖〉 병풍과 함께 한양 사는 양반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혼례 병풍으로 등장한다. 곽자의는 85세로 장수하였고, 부인 왕씨와의 사이에서 8남 7녀의 자녀를 두었다. 이에 '곽분양 팔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다복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다. 그러나 21세기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부부가 낳거나 입양한 자녀의 수가 둘 이상이면 많다는 뜻의 한자 '다多'를 붙여서 다자녀多子女라고 한다.

한국 사회는 1960년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6.0명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에 단산斷産하자는 뜻의 '3·3·35 운동'을 벌였다. 1970년대에는 표어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다. 자

녀 가운데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 관념이 뿌리 깊어 아들을 낳기 위해 출산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았다. 부부가 두 자녀를 낳아 기르자는 정부의 두 자녀 정책으로 '4인 가족'이라는 표준 모델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바뀌었고, 1983년 출산율은 2.1명 이하로 떨어졌다.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출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시대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와 같이 자녀를 더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로 바뀌었다.

2022년 한국사회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자녀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의미하는 딩크족DINK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 돈을 쓰기보다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부부를 위해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자녀는 가족의 핵심적인 구성원이다. 전통시대를 살았던 한국인에게 생애 단계에서 혼인한 후 자녀를 낳아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많이 태어나면 부부 금실[琴瑟]이 좋고 복이 많다고 하였다. 유교적 종법 의식과 가족질서의 영향으로 자녀 가운데 딸보다 아들이 더 중시되었고, 아들 가운데 가문 계승자인 맏아들의 지위가 높아졌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족관계에서도 부자관계가 우선시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급격한 사회변화와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부부가 낳은 자녀 수가 점점 줄면서 자녀 가운데 태어난 순서나 성별에 따른 차별도 점점 사라져 갔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족관계도 변화하면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대 한국 사회는 평생 혼인하지 않는 비혼非婚 세대의 등장과 함께 1인가구가 증가하였고, 혼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여부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참고문헌 가족과 친족(이광규, 일조각, 1992), 곽분양행락도(김윤정, 한국민속예술사전-민화, 국립민속박물관, 2016), 시대별 표어로 살펴본 우리나라 출산정책(홍승아, click 경제교육136, KDI 경제정보센터, 2014), 한국 가족계획의 역사(강준만, 인물과 사상124, 인물과사상사, 2008), 한국어 친족어의 의미(김광순, 박문사, 2017),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한양의 여성 공간(최주희 외,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2021),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배은경, 시간여행, 2012).

필자 김지영(金志榮)

자매
姉妹

정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여자 동기 중에서 언니와 동생 관계를 이를 때 사용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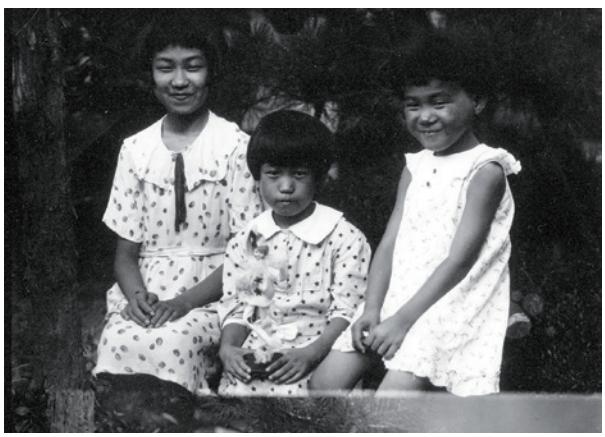
내용 자매姉妹는 현대 언어생활에서 같은 부모 사이에 태어난 여자 동기同氣간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어휘로서 윗사람을 뜻하는 '자姉'가 선행하고 아랫사람을 뜻하는 '매妹'가 후행하여 결합한 한자어이며, 동기간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실제 언어생활에서 세 명 이상의 동기로 구성되어 그 수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순우리말 세, 네, 다섯, 여섯 등의 수사와 '자매'가 결합하여 세 자매, 네 자매, 다섯 자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처럼 친족어로 사용되는 용법 외에 '자매 대학姉妹大學' '자매 학교姉妹學校' 따위처럼 '같은 계통에 속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서로 친선 관계에 있음을 이르는 말'로 자매의 확장 의미를 설정하였다. 이는 친족어가 비친족 대상에게 사용될 때 친밀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핵심 의미를 공유한 양상이다. 즉 '자매 대학' '자매 학교' 같은 수식을 위한 '자매' 용법뿐만 아니라 "그 학교와 자매 같은 관계를 맺었다."와 같은 서술적인 표현에서도 친밀함이 공유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돕는 어휘가 바로 '자매'이다.

특징 및 의의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매를 사용하는 빈도는 호칭어나 지칭어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친족어 '형' '언니' '오빠' '누나' 등의 어휘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 아니다. 형제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지시 대상이 되는 언니나 여동생이 대화에 참여하여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그 관계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

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그 외 대부분의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용될 빈도는 매우 낮다. 또한 출산율이 감소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는 다른 형제가 없는 외동인 아이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동기가 있는 경우에도 여성 관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매를 친족어로 사용할 필요성 또한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물론 셋 이상의 동기로 구성된 다자녀 가구가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이때 수사와 결합한 '세 자매' '네 자매' '다섯 자매' 등의 용법이 사용되는데 이는 형제兄弟나 남매男妹가 한자어 '삼, 사, 오, 육' 등과 결합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자매 용법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자어 수사는 한자어와 결합하는 보편적인 특성과 달리 자매姉妹는 한자어임에도 순우리말 수사와 결합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자매姉妹'가 결합하는 '자매결연姉妹結緣' '자매회사姉妹會社' '자매도시姉妹都市' '자매기관姉妹機關' '자매단체姉妹團體' 등과 같은 용법은 동기간의 구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다른 어휘인 '형제'나 '남매'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용법이란 점에서도 또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매'와 결합한 이들 어휘에서 인지할 수 있는 '친밀' '교류' '친선' 등과 관련된 속성은 여성 동기의 사이가 가장 밀접하다고 인식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혹은 '자매'라는 어휘소에 오랫동안 함축되어 있던 한국인의 고유한 인지구조가 반영된 확장 양상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매 | 일제강점 | 국립중앙박물관

또한 자녀를 출산한 동기 사이에서 서로의 자녀가 호칭어로 사용할 수 있는 '삼촌'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과 같은 어휘들 중에서 자매 관계에서 사용하는 이모姨母가 현대 언어생활에서 비친족 여성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자매를 친밀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이모'와 달리 삼촌三寸이나 고모姑母 등은 비친족 관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친족어의 호칭어로서 확장·사용 양상(김광순, 한국어 의미학48, 한국어의미학회, 2015), 한국어 친족어의 의미(김광순, 박문사, 2017).

필자 김광순(金光淳)

자손
子孫

정의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자식과 손자 등 후손을 일컫는 말.

개관 자손子孫은 조상祖上으로부터 이어진 후손後孫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과 같은 문헌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역사서에서 자손에 대한 언급은 조상을 전제로 서술된다. 즉 한 인물을 설명할 때 특정 조상의 자손이라는 것을 함께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통사회에서 조상과 자손을 연관 지어 자손은 조상의 업적에 따라 신분과 지위가 결정될 수 있었으며, 조상이 사망하였음에도 자손들의 노력으로 사회적 평판을 높일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한 문중門中에서 돌아가신 조상의 시호諡號를 조정에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이 경우 조상의 평판이 올라가는 만큼 자손들의 자부심과 사회적 평판도 함께 올라간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적인 자손 개념은 늘 조상과 연결되어 있다.

내용 자손은 조상의 후손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고려하였을 때 인류학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조상숭배祖上崇拜, ancestor worship는 자손들이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는 다양한 의례로,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난다. 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손들의 조상숭배는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이해된다. 유럽 기독교 사회에서 자손은 대대로 가문과 집안의 전통을 전수하는 후손을 의미하며, 자손의 번창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큰 복으로 해석된다.

한국 역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삼국사기』를 살펴보았을 때 자손이 조상의 음덕을 이어받아 번창한다는 기사가 있고, 『고려사』에도 자손은 조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렇듯 조상과 자손에 대한 상관성은 고대사부터 나타난다. 여말선초에 성리학이 확산되고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일상생활의 실천으로 확산되면서 효孝 사상과 연계해 조상에 대한 자손들의 유교식제례가 정착되었다.

조선시대 조상과 자손 관계는 점차 부계혈족을 우선시하면서 후손들의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는데, 현달顯達한 조상의 적장자 계통으로 이어지는 종손宗孫을 비롯하여 그 조상의 방계 후손이나 조상의 서출庶出 등이 대표적이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자손 개념은 아버지 계통뿐만 아니라 어머니 계통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성리학 수용과 함께 조선 후기에는 혼인 후 남자 집에 거주하면서 신랑 가문의 대代를 잇고 조상제사를 영속적으로 지내는 등 자손의 역할이 규정되면서 부계친족 관념이 강화되었다. 자손 중에서도 종손은 현조顯祖의 정통성을 이어 가는 핵심 자손이다. 또한 직계와 방계 후손들이 그들의 현조를 모시기 위해 전체 자손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문중은 17세기 이후 조선 향촌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자손에 대한 관념은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관념이다.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 성리학 수용과 함께 종법宗法적인 가족질서가 정착되면서 자손 관념은 현조 중심으로 가문의 계통을 이어 가는 부계적장자 자손의 중요성이 문화적으로 강화되었다.



전주류씨 시사 | 경북 안동 | 국립민속박물관

종법적인 가족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 윤회봉사 등처럼 부변父邊, patrilateral과 모변母邊, matrilateral 양쪽 남성과 여성 자손들의 역할이 공존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종법 질서에 따라 종손과 문중처럼 부계남성 자손들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적장자에 의한 가계 계승과 적장자 우위 상속도 함께 자리 잡았다.

고려시대의 자손 개념과 비교했을 때 조선시대의 자손 개념은 부계혈통 중심적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시대에 성리학 이념이 수용되면서 자손 개념이 문화적으로 새롭게 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고려·조선의 친족 용어와 혈연의식(이종서, 신구문화사, 2009), 서울 근교 종중과 종중재산의 변용(이상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조선후기 지역사회구조 연구(정승모, 민속원, 2010),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The Universality of Ancestor Worship(Lyle B. Steadman·Craig T. Palmer·Christopher F. Tilley, Ethnology35, University of Pittsburgh, 1996).

필자 이상균(李相均)

장례
葬禮

정의 상례喪禮의 한 절차로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

역사 삼국시대 및 삼국 이전의 장례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인된 장법이나 극히 제한된 문헌자료에 의



장례 가마 | 경북 안동 | 국립민속박물관

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상장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과 『후한서後漢書』에 보인다.

부여夫餘에서는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넣어 장사지내고, 장사 때 사람을 죽여서 매장하는 순장제를 실시하였다. 또 장사를 후하게 지내는데, 곽槨은 사용하나 시신을 넣는 관棺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가능한 한 장례기간을 길게 하는 것을 예禮로 알아 5개월 동안 장례를 행하였다. 동옥저東沃沮의 장례는 부여와는 달리 뼈만 추려 묻는 이중장二重葬을 행하였다. 이는 일차장이라고 생각되는 빈의 과정을 거쳐 육탈肉脫하면 뼈만 취하여 커다란 목곽 속에 일가의 뼈를 넣는 이중장법이다. 동옥저 사람들은 장사를 지낼 때 큰 덧널[大木槨]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 끝, 즉 머리 쪽을 열어서 문으로 삼았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시체를 임시로 매장하여 가죽과 살이 모두 썩게 한 다음, 뼈만 추려 곽 속에 안치하되, 한 가족의 유골을 하나의 곽에 넣어 보관했다. 변한弁韓과 진한辰韓에서는 장사를 지낼 때 관 밖의 덧널에 큰 새의 깃털을 꽂았다. 삼한은 장사 때 소와 말을 잡아 사용하였다. 장사 때 곽에 새의 깃털을 꽂는 것은, 새가 영혼을 현세와 천상 세계로 운반하는 매개자의 기능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새는 천상의 인도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말은 죽은 자의 영혼을 지하에서 명계冥界, 즉 천상세계로 운반하는 매개 동물로 생각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가매장하였다가 삼년이 지나면 길일을 택해 장사지내고, 부모와 지아비는 3년, 형제는 3개월 동안 상복을 입었다. 운명하면 슬피 울지만 장사지낼 때는 북치고 춤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장송葬送하였다. 또한, 장례는 성대하게 지내는데, 금은의 재물을 모두 장사에 소비하며,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잣나무를 그 주위에 벌려 심었다. 백제에서는 부모와 남편이 죽으면 고구려와 같이 삼년복을 입었으나, 나머지 친족은 장례를 마치면 바로 복을 벗었다. 이처럼 부모와 남편의 상복이 3년인 점으로 보아, 백제의 장례 풍속은 고구려의 유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는 관을 사용하여 염하고 장사를 지냈는데, 분릉分陵을 설치하거나, 혹은 불교의 예에 따라 화장하여 장골藏骨을 하기도 하고,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기도 하였다. 불교가 들어와 공인된 23대 법흥왕 이전까지는 토장土葬을 실시한 반면, 그 이후로는 화장과 토장을 병행하였다. 신라의 화장법은 30대 문무왕 때 시작되어 34대 효성왕 때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불교식 화장법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크게 성행을 하다가 고려 말 주자학이 도입되면서 배척받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융성으로 화장과 같은 장법이 계승되었다. 고려의 불교식 화장법은 사망—불사佛寺 부근에서의 화장—습골拾骨—권안權安(권빈權殯이라고도 하며, 일정 기간 절에 유골을 안치하는 것)—매장埋骨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부모의 해골을 임시로 절에 두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매장하지 않으면 해당 관리가 이런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되, 집이 가난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관가에서 장례비용을 대주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토장묘과 함께 화장묘와 석실묘가 성행하였다. 통일신라 때는 주로 골호骨壺를 사용하였으나, 고려에서는 골호 대신 1*m* 내외의 소형 석관을 사용하였다. 석관은 조립식이며 뚜껑이나 관의 네 면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같은 사신도四神圖 혹은 성운도星雲圖를 양각하거나 석관에 명문을 새기기도 하였다. 장례 기간도 고려는 조선과 달리 일반적으로 백 일이었다. 심지어는 삼일장을 하기도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공후公侯 이하는 3일 만에 장사한다."라고 하였으며, 태조 4년 6월 헌사憲司에서 올린 내용에서도 "모든 전·현직 관원은 삼년상을 지내고, 삼일장과 화장을 금지하며 신분에 따라 삼

월장과 유월장踰月葬을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한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장례 기간이 매우 짧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 왕실은 한漢나라 이후 일반적으로 왕실에서 사용되던 역월제易月制, 즉 하루를 한 달로 바꾸어 행하는 단상제短喪制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역월단상제는 고려 4대 광종 때부터 시작되어 5대 경종, 11대 문종비 인예태후, 12대 순종, 15대 숙종, 16대 예종, 17대 인종, 24대 원종 등이 역월제를 행하였다. 한漢의 문제文帝의 유조에 의해 비롯된 역월제를 기초로 한 단상제는 사실상 고려왕조 전 기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14세기 말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는 단순한 성씨의 교체가 아니었다.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왕조 교체기는 고려의 불교를 대신하여 주자학적 유학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아 사회 여러 부분이 크게 변화한 시기였다.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사대부에서부터 일반 서인까지 『주자가례朱子家禮』가 관혼상제의 규범서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의 장례 및 상례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예서는 성종조에 『주자가례』를 본으로 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있고, 중엽에 예학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상례비요喪禮備要』와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재의 『사례편람』은 『주자가례』와 『상례비요』를 기본으로 하여 실제로 예를 실천하는 데 편리하도록 서술하여 대부분의 가정에서 구비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시대에도 화장을 금지하고 『주자가례』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식 상장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 초기에는 초상이 나면 상여를 맬 향도를 불러 모아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며 상주를 위로하였다. 당시는 초상을 성대하게 치렀으며, 장사 치르기 전날 밤에는 손님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주악을 베풀어 빈객을 즐겁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고 돈이 없어 빈객을 대접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사를 연장하기까지 하였다. 심지어는 수년이 지나도록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또한, 10명 중 6~7명은 매장이 아닌 불교식 화장을 하였다. 비록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하였다가도 뒤에 묘를 파 유골을 화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화장을 금지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예조와 사헌부가 화장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철저히 감독하여 죄를 물도록 했다. 이와 같은 화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주자가례』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성종 집권 후반기에는 화장이 감소하고 대신 유교식 장법인 토장이 점차 일반화하였다. 한편, 고려에서 행했던 역월단상제는 조선에서도 이어졌다. 문무백관의 상복 기한은 송宋나라의 역월제를 써서, 즉 하루를 한 달로 바꾸어 13일에 소상小祥하고, 25일에 대상大祥, 27일에 담제禫祭를 지내도록 하여 형식상으로는 삼년상을 마쳤다. 태조 이성계의 국상을 맞아 시행된 역월단상제는 세종이 태종의 국상을 주관하면서 폐지되었으나 연산군대에 부활했다가 성종대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처럼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치르는 역월제는 국상 기간의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왕권의 안정을 꾀하고, 지방관에게 현지에서 왕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하여 왕권 교체기에 있을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고려시대 및 조선 세조 이전까지는 석실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조는 자신의 능실에 석실대신 회격灰隔을 쓰도록 하여 세조의 광릉부터 조선의 능묘는 모두 석실분에서 회격묘로 바뀌었다.

유교식 상장례는 일제강점기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일제는 1912년 6월 총독부령으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으로 오랫동안 지속해온 매장 풍습은 화장장과 공동묘지라는 새로운 문화를 등장시켰다. 또 조선총독부는 1934년 11월 10일 〈의례준칙〉을 제정·공포하여 조선의 관혼상제례를 인위적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특히 일제의 〈의례준칙〉은 조선시대 상장례 규범서의 하나인 『사례



발인제 | 경북 안동 | 국립민속박물관



행상 | 충남 태안 | 1961 | 국립민속박물관

편람』의 상례절차 및 내용을 대폭 축소·간소화하였다.

광복 이후 미군정까지는 일제의 장묘법제가 시행되었고, 건국 이후에는 1961년 12월 2일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묘지 설치 장소, 묘지 면적, 묘지 시설물, 분묘의 형태 등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였다. 1968년에는 이 규정을 개정하여 매장·화장의 기준과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 금지지역을 명문화했다.

내용 장례는 '장의葬儀' 또는 '양의襄儀'로 불리기도 한다. 시신의 처리 방법은 땅에 매장하는 토장, 불에 태우는 화장, 땅 위 혹은 나무에 놓는 풍장風葬, 물속에 넣는 수장水葬, 시신을 토막 내 독수리 먹이로 주는 조장鳥葬, 나무 위에 시신을 매달아 두는 수상장樹上葬 혹은 현장懸葬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장과 화장을 주로 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장례는 '장사葬事 지낸다'고 한다. 장葬자는 '감춘다藏'는 뜻이다. '장藏'자를 풀면 '艸+死+艸'가 된다. 시신을 묻지 않고 들에 그대로 방치한 모양의 무덤이 바로 '장葬'자의 모습이다.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에서는 "옛날에는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들에다 두고 풀이나 나뭇가지로 덮고 나무나 봉분도 하지 않았다. 상복을 입는 기간도 결정되지 않았다. 후세에 성인이 이를 고쳐서 관곽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시신을 묻지 않고 그냥 들에 두다 보니 부모의 시신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활을 가지고 지키기까지 했다. 조弔자의 형상이 바로 시체를 풀로 덮어 장사 지내고 활을 들고 짐승을 쫓는 모양이다. 점차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하고 효 관념이 생기면서 방치했던 시신을 구덩이를 파고 묻기 시작하였다. 봉분은 물론이고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은 무덤의 형태가 '묘墓'자로, 시신을 땅속에 매장하고 봉분 없이 평지처럼 한 것을 이른다.

『맹자孟子』에 의하면 "상고에 부모가 죽어도 장사 지내지 않는 시대가 있었는데, 부모가 죽자 시체를 들어다가 구덩이에 버렸다. 뒷날 그곳을 지나다 여우와 살쾡이가 시체를 뜯어 먹고, 파리와 모기가 엉겨서 빨아 먹는 모습을 보자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눈길을 돌리고 바로 보지 못했다. 곧 집으로 돌아와서 들것과 가래를 가지고 돌아와 흙으로 시체를 덮었다."라고 했다. 이처럼 상고시대에는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고, 인지가 발달하면서 매장법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은대殷代에도 매장지가 없었으며, 주周나라 문왕과 무왕의 무덤도 분구가 없는 평지묘였다. 『한서漢書』「유향전劉向傳」에도 옛날 무덤은 봉분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평평한 형태의 묘는 시신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무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덤인 분墳으로 바뀌었다. '분'자를 풀면 '土+十+十+十+貝'로서 흙과 조개껍질 30짐을 쌓아 봉분을 갖춘 무덤임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조개껍질 속에 시신을 묻거나 흙과 섞어 봉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자에 조개 '패貝'를 쓴 것이다. 흙과 조개껍질이 30짐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많다는 뜻으로 이 정도면 봉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늘날과 같은 봉분 형태의 분구식墳丘式 무덤은 춘추시대 말기에 처음 만들어져 전국시대에 보편화하였다. 공자도 옛날에는 묘를 수리하지도 않고 봉분도 하지 않아, 후에 묘를 찾기가 힘들어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봉분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처럼 무덤은 들에 시신을 버리는 것과 같은 장葬의 형태에서 봉분이 없는 평지묘平地墓로, 평지묘에서 봉분을 한 분墳으로 발전하였다. 즉, 무덤은 장葬—묘墓—분墳의 형태로 변천한 것이다.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관곽과 상복을 마련하고 장지를 선정하는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를 '장기葬期'라 한다. 오늘날에는 삼일장이 가장 보편적이다.

3일은 되어야 최소한의 예를 갖춰 장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각기 신분과 지위에 따라 장기를 달리했다. 『예기禮記』에 "천자는 7일 만에 빈하고 7개월 만에 장사 지내고, 임금과 같은 제후는 5일 만에 빈殯하고 5개월 만에 장사 지내며, 대부·사·서인은 3일 만에 빈하고 3개월 만에 장사 지낸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왕은 5개월, 대부는 3개월, 선비는 1개월(유월장踰月葬)을 치렀다.

출상 행렬은 맨 앞에 방상이 서고 이어 명기와 복완—명정銘旌—혼백—만장輓章—공포功布—상여喪轝—삽—주상—상주—복인—존장—무복친—조문객의 순으로 나간다. 상여가 묘역에 도착하면 방상이 먼저 광중에 들어가 네 모퉁이를 창으로 치고 잡귀를 몰아내고, 하관 시간에 맞춰 머리가 북쪽으로 가게 안장을 한다. 하관을 마치면 명기와 지석을 묻고, 석회·황토·모래를 섞은 삼물三物로 회격을 만들고 흙으로 광중을 메운다. 요즈음은 흙에 석회만을 섞어 광중을 메운다. 흙을 한 켜 넣고 다지고, 다시 적게는 3켜, 많게는 5켜까지 흙을 넣으면서 외광을 완전히 다진다. 이렇게 다지는 것을 '달구질' 또는 '회다지'라 한다. 봉분이 완성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평토제平土祭(성분제 또는 제주제)를 올린 후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를 '반혼返魂'이라 한다. 이로써 장송의례가 끝나게 된다.

특징 및 의의 1990년대에는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 위주의 장례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시적인 매장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60년까지만 묘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장례 장소가 집이 아닌 장례식장인 경우가 증가했다. 특히 전문장례식장과 병원장례식장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또한, 상여나 우마차로 시신을 운구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자동차로도 장지까지 운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신을 운반하는 이른바 영구차는 당시로서는 대표적인 신문화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망자의 유언에 의해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 후 납골 혹은 산골散骨하는 식으로 장묘 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三峯集, 世宗實錄, 禮記, 周易, 增補文獻備考, 조선초기 상장의례연구(정종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중국고대능침제도연구(양관, 상해고적출판사, 1985), 儀禮準則(朝鮮總督府, 1934).

필자 정종수(鄭鍾秀)

장모
丈母

정의 아내의 어머니를 일컫는 호칭.

내용 장모丈母는 가족관계에서 아내의 어머니를 지칭한다. 사위가 장모를 부를 때는 '장모님'으로 높여 부르고,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장모를 지칭할 적에도 '장모' '장모님'을 주로 사용한다. 빙모聘母라는 지칭은 최근 들어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고 있다. 악모岳母는 주로 편지글에서 사용되었으나 편지를 통해 안부를 주고받는 풍습이 사라지면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가족과 친족 가운데 장인과 장모는 가장 먼 가족에 해당하였다. 친소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을 기간을 결정하는 오복제五服制에서 장인과 장모는 가장 짧은 시마緦麻로, 3개월간 재최복齊衰服을 입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종증조부모(7촌), 재종숙(5촌), 삼종형제(6촌), 서모庶母, 유모의 상과 동격이었다.

그러나 실제 가족 간 관계에서는 상당히 밀접하였다.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 주류였던 조선 전기에는 사위가 처가에 오래 거주하였으므로 장모와 사위는 자주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시댁으로 들어갈 자신의 딸을 걱정해서라도 장모는 사위를 잘 대접하여야 하고, 사위는 한 집에 거주하는 장모를 공경하였다. 남녀균분상속이 관습이었던 조선 전기에는 장모 역시 딸과 사위에게 각각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부거제夫居制가 강화되는 조선 후기에도 1개월에서 1년까지 처가에 머물렀다가 우귀于歸하는 풍습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사위와 장모의 유대관계는 상당히 돈독하였다. 이는 장모와 사위 사이에 주고받은 한글 편지에 남아 있다. 17세기 후반 송준길宋浚吉과 그의 손자

송병하宋炳夏가 장모와 주고받은 편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장모는 사위를 벼슬로 호칭하면서 건강을 염려하며, 사위는 답장에서 처가 식구들의 안부를 아명兒名을 써서 물으며 부탁한 물건을 보냈다. 또한 17세기 초 대구 지역에 거주한 유학자 손처눌孫處訥이 기록한 『모당일기慕堂日記』를 보면 장모의 기제사를 지냈음이 확인된다. 즉 사위와 처가 식구들의 유대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혼인관계는 가문 간 결합이었다. 양가의 사회적 결속을 통해 지위의 상승이나 유지를 도모하였으며, 『주자가례朱子家禮』와 달리 처가와의 정서적 관계도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근대 이후 부계父系 중심의 민법체계와 호적제도가 확립되면서 장모와 사위 간 정서적 유대는 약화되었다. 혼례는 처가에서 치르지만 처가에 머무르는 기간은 며칠 정도로 짧았다. 아니면 혼례식 후 곧바로 시댁으로 들어왔다. 자연스럽게 장모와 사위는 의례적인 관계로 변화하였다. 시집간 딸이 아들을 낳았는가, 시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냐 등의 가족생활적 요인에 따라 장모와 사위 관계는 예의를 차리면서도 미묘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사회진출이 확산되면서 장모와 사위 관계 역시 재차 변곡점을 맞았다. 아내가 직장생활을 이어 가기 위해 친정어머니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사례가 늘었다. 정서적으로 시어머니보다 부탁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육아 때문에 사위와 장모가 접촉하는 빈도는 증가하게 되고, 사위 역시 육아를 도와주는 장모에게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한국인의 주거형태와 관습이 장모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형태로까지 변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녀 수가 줄고 남녀평등 관념이 확산되면서 시댁과 처가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부부가 늘어 가는 것은 명백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의 가족관습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고부갈등'에 빗대어 장모와 사위 사이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장서갈등'으로 표현하는 미디어가 늘고 있다. 실제 이혼사례나 인류학적 연구에서도 장인—장모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종종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특징 및 의의 장모는 딸을 시집보낸 입장에서 사위와 딸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장모와 사위 관계는 상호 간에 예의를 차리는 관계라 할 수 있다. 혼인관습 때문에 정서적인 유대도 가볍지 않았으나 근대 이후 부거제가 확립되면서 사위와의 정서적 유대는 약화되었다. 반면 현대에 들어와 남녀간 사회적 역할이 동등해지면서 장모의 가족 내 지위가 다시 변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17세기 유학자의 일상과 의례생활(김미영, 남도민속연구41, 남도민속학회, 2020), 동춘당 송준길가 300년 소장 한글편지의 현황과 삶의 모습(문희순, 어문연구91, 어문연구학회, 2017), 한국 가족과 친족의 인류학(정향진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한국가족연구(최재석, 민중서관, 1966), 한국인의 친족호칭과 친족조직(최재석, 아세아연구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필자 이대화(李大和)

장인
丈人

정의 아내의 아버지를 일컫는 호칭.

내용 장인丈人은 가족관계에서 아내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사위가 장인을 부르는 직접적인 호칭은 '장인어른'이다. 제3자가 누군가의 장인을 지칭할 때나 자신의 장인을 남에게 일컬을 때는 '빙부'나 '빙장어른'을 사용했으나 오늘날에는 '장인' '장인어른'으로 통일되는 추세이다.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친소관계의 이념적 모델을 보여 주는 오복제五服制에서 장인과 장모는 가장 짧은 시마緦麻로, 3개월간 재최복齊衰服을 입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종증조부모(7촌), 재종숙(5촌), 삼종형제(6촌), 서모庶母, 유모의 상과 동격이었다. 즉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처부모를 가장 먼 친척관계로 여겼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가족관계에서 장인과 사위는 이념적 모델보다 훨씬 밀접한 관계였다. 우선 조선시대 말기까지 혼례관습이 친영親迎을 수용하지 않고 서

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 대세였으므로 장인과 사위가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길었다. 조선 전기에는 1년 이상 수년까지도 머물렀으며, 아예 처가에서 세거하면서 족적 기반을 마련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오늘날 동성촌락의 유래를 조사해 보면 처향으로 입향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경주 손씨慶州孫氏와 여주이씨驪州李氏가 수백 년간 세거해 온 경주 양동마을이 그러하다. 조선 말기에도 1개월에서 1년 이상 사위가 처가에 머물렀다. 그리고 혼인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였다. 장인은 자신이 사윗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인물의 됨됨이를 지켜보고, 어느 정도 훈육할 기회도 갖는 셈이었다. 사위 역시 장인을 아버지만큼 공경하는 태도를 함양하면서 장인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기회였다.

이에 덧붙여 장자우대상속으로 변화한 조선 후기에도 처가의 재산이 사위에게 상속되곤 하였다. 그 지분이 조금 줄었을 뿐이다. 사위나 외손이 정치·사회적으로 현달顯達하면 처가의 가격家格도 높아지는 것이므로 장인과 사위는 사회적 연대관계가 깊었다.

근대 이후에도 장인과 사위는 권력 구조가 급격히 약화되지는 않았다. 장인 역시 처가의 가부장으로서 나름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배年輩 상으로도 사위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매혼에서 연애혼으로 결혼 풍속이 변화하였지만 결혼을 위해서는 여성 가족의 가부장인 장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관습도 장인과 사위의 권력 구조를 유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한두 명의 자녀만 두고, 남녀 간 평등의식이 진전되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 역시 남성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처가 비중이 시댁과 동등해야 한다는 의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리하여 장인과 사위의 권력 구조도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처가에서 육아를 보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서적 유대관계도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부갈등과 흡사하게 장모와 사위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 혹은 갈등의 당사자로서 장인의 존재가 주목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장인은 아내의 아버지로서 전통적 가족 구조에서는 사위와 사회적 연대관계를 형성하는 존재였다. 근대 이후에도 결혼의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최근에는 처가와 시댁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장인과 사위 관계가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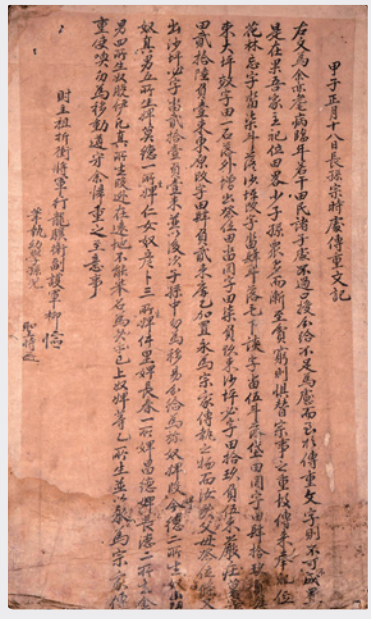
참고문헌 17세기 유학자의 일상과 의례생활(김미영, 남도민속연구41, 남도민속학회, 2020), 한국 가족과 친족의 인류학(정향진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한국가족연구(최재석, 민중서관, 1966).

필자 이대화(李大和)

장자봉사
長子奉祀

정의 조상의 제사를 모두 장남이 맡아서 봉행하는 관습.

역사 장남이 조상의 제사를 전담하는 방식은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의식구조에 바탕을 두고



유숙 전중문기(안동 수곡 전주류씨 무실 종가 기탁) | 가로45 세로79 | 조선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류씨가문 재산 및 제사상속에 관해 유훈으로 남긴 문서로 봉사 승계의 중요성을 강조.



박유 처 손씨 별급문기(영덕 도곡 무안박씨 무의공 박의장 종가 기탁) | 가로60 세로80 | 조선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박유의 처 손씨가 남편의 3년상을 마치면서 종가의 경제 부담이 큰 것을 염려하여 장남 문기에게 노비 6구를 별급한 문서.

있다.

종법宗法과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널리 보급되기 이전인 여말선초에는 부계가족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계 계승 의식이나 조상숭배 의식이 강하지 않고 남계男系와 여계女系를 차별하는 의식도 약하여 조상제사는 아들과 딸들이 나누어 맡아서 봉행하였다. 이러한 제사 운행 방식을 윤회봉사輪回奉祀라 한다. 적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하는 종법과 『주자가례』가 고려 말기에 도입되었지만 도입 초기에는 소수의 지식인과 일부 지배층에서 수용될 뿐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조선이 건국되고 성리학을 국가 경영의 기본 철학으로 채택한 후에도 왕위 계승에서부터 민가의 가계 계승에 이르기까지 종법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조선 초기를 지나 사림파가 정치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널리 보급되고 종법과 『주자가례』가 가족생활의 여러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종법과 『주자가례』의 보급은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의식을 강화하였다. 제사를 중시하는 의식은 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조선 초기에는 대체로 부모와 조부모 양대만 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6품 이상의 관직자는 3대를, 7품 이하는 양대를, 서인은 부모만 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이르면 사대봉사四代奉祀가 보편화된다. 초기의 분재기에는 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조상제사'라고만 기록하다가 점차 '증조부모 제사' '고조부모 제사' 등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의식의 변화가 윤회봉사를 폐하고 장남이 안정적으로 제사를 모시게 하는 장남봉사의 전통을 만들어 갔다.

조선 초기에 윤회봉사가 지배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장자봉사長子奉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성리학을 일찍이 수용한 일부의 지식층에서 장자봉사를 시행하였지만 그 수는 극히 적었다. 그러나 17세기 중엽부터 윤회봉사가 점차 줄어들고 장자봉사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대부분 가정에서 장자가 제사를 전담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약 1세기에 걸친 이 시기가 윤회봉사에서 장자봉사로 이행하는 변화의 시기이다. 장남이 조상제사를 전담함으로써 재산상속도 적장자가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이 받는 적장자우대상속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내용 윤회봉사에서 장자봉사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윤회봉사를 폐하고 바로 장남이 제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집안도 있었지만 윤회봉사와 장자봉사가 혼재하는 과도적 과정을 거치는 집안도 많았다. 딸을 제외하고 아들끼리만 윤회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제사忌祭祀는 장남이 전담하고 명절 차례만 윤회하기도 하였다. 윗대 조상의 제사는 윤회하고 부모 제사는 장남이 전담하거나 반대로 윗대 조상의 제사는 장남이 전담하고 부모 제사만 윤회하기도 하였다. 윤회봉사 방식이 이처럼 다양해지는 것은 윤회봉사가 장남봉사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윤회봉사는 거의 사라지고 모든 제사를 장남이 전담하는 장자봉사 관행이 일반화된다.

제사 운행 방식의 변화는 재산상속의 변화를 수반

한다. 딸에게 윤회봉사의 책임을 면제하면서 재산도 분급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분급하였다. 친정 조상의 제사 의무를 면제받은 딸들이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반납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들들 사이에서도 장자가 제사를 전담하면서 재산을 더 많이 분급받고 봉사조奉祀條 재산도 장자에게 집중되어 적장자우대상속이 확립되었다.

윤회봉사를 장자봉사로 변경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이다. 분재기에 "사대부 집안에서는 조상제사를 윤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장남이 제사를 전담하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있다. 조상제사를 이집 저집으로 옮겨 가며 모시는 것은 조상에 대한 결례이므로 가묘를 건립해서 위패를 봉안하고 가묘가 있는 종가에서 안정적으로 제사를 봉행하는 것이 예에 맞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처가에서 오래 생활하는 서류부가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제사에 참여하거나 제수를 수송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해마다 돌아가며 제사를 모실 때는 제사 날짜를 잊고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기도 한다. 여자는 출가하면 시댁의 의례에 충실해야 하므로 친정 제사에 정성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딸의 윤회를 폐하는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제사를 장자에게 전담시키는 현실적 사유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조상제사를 중시하고 제사를 안정적으로 봉행하기 위한 것이 핵심적 동기이다.

특징 및 의의 장자가 조상의 제사를 전담하는 제사 양식의 변화는 재산상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상제사를 자녀들이 나누어 맡는 윤회봉사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균분상속의 바탕이 된 것처럼 장자가 조상제사를 전담함으로써 장자가 더 많은 재산을 분급받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다 봉사조 재산이 장자에게 고정되어 장자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적장자우대상속은 장자봉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자봉사는 장자가 조상제사를 전담하는 역할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집안에서 차지하는 장자의 위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장자는 조상의 가계를 이어받고 조상이 남긴 문화적 전통을 계승한 종자宗子로서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어 여타의 형제자매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장자봉사와 적장자우대상속으로 윤리적 정통성과 우월한 경제력을 확보한 장자는 가장권을 강화하여 조선 중기 이후 가부장 가족제도가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였고, 이는 곧 종가 중심으로 문중 제도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확립하는 데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조선전기상속법제(신영호, 세창출판사, 2002),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李朝の財産相續法(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창기(李昌基)

재산상속
財産相續

정의 특정인의 자식이나 일정한 족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

역사 재산상속財産相續은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면서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대사회에서 재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되었는지는 자료가 빈약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고려시대에도 상속 관행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매우 희소하지만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의 사서에 기록된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대체로 자녀들 사이에 균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속 관행은 대체로 조선 개국 이후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가 많이 남아 있어 이를 통해 비교적 자세하게 조선시대 상속제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 관습을 이어받아 아들과



숙신옹주 가대사급성문 | 가로56 세로57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태조가 딸인 숙신옹주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 소유권을 확증지어 주기 위해 만든 문서.

딸, 장남과 차남을 차별하지 않고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균분상속에 매우 충실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엽부터 균분상속이 점차 줄어들고 적장자우대상속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장자에게 많이 주고 딸은 제외하는 적장자우대상속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민법을 원용하여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였지만 재산상속에 관해서는 조선의 관습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대체로 적장자우대 관행이 지속되었다.

광복 후 1958년에 제정된 〈민법〉에서도 장자, 중자, 미혼 딸, 기혼 딸 비율을 1.5/1.0/0.5/0.25로 하여 장남을 우대하고 딸을 차별하는 과거의 관습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차별 조항은 1978년에 개정된 〈민법〉에서 1.5/1.0/1.0/0.5 비율로 개선되었고, 1990년 개정에서는 자녀들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부모 유언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제의 상속에서는 차등 상속이 많이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상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분금分衿, 분급分給, 금급衿給, 분집分執, 허여許與, 허급許給, 금득衿得 등 10여 가지 용어를 사용하였다. 재주財主인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부모 중심 용어이다. 상속이란 용어는 일본 전통사회의 일자단독상속一子單獨相續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한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전부 이어받는다는 의미를 강조한 상속자(아들) 중심 용어이다. 이 용어를 일제가 〈조선민사령〉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누가 재산을 얼마나 상속하는가 하는 상속의 유형은 다양하다. 여러 자녀가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자녀균분상속, 적장자에게 많이 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적게 주는 적장자우대상속, 마지막까지 동거하였던 막내아들에게 모두 물려주는 말자상속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상속 대상은 재산 가치를 지닌 모든 재화가 포함된다. 그중 노비와 전답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으며, 특히 노비를 더 중요시하였다. 상속 대상에는 노비와 전답 외에도 분가 후 새로운 살림을 꾸려 가는 데 필요한 가옥, 농기구, 가재도구 등 생활용품 일습이 모두 포함된다.

상속재산은 형성 과정에 따라 남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변전래재산父邊傳來財産, 아내가 친정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시집올 때 지참한 모변전래재산母邊傳來財産, 혼인 후 부부가 함께 일군 부부매득재산夫婦買得財産으로 구분된다. 부부 사이에도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여 혼인 때 각자가 지참한 재산과 혼인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재산을 상속할 때는 상속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한 문서를 작성해서 상속자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다. 흔히 분재기라 부르는 이 문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한다. 분재기는 재산을 분급하는 사유를 간단히 기술한 서문, 자녀별로 분급하는 재산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본문, 입회인들의 수결手決 부분으로 구성된다. 입회인으로는 재주와 집필자 및 부변친족대표와 모변친족대표가 참여한다. 모변친족대표가 입회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모가 친정 부모로부터 분급받아 시집올 때 지참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재기는 부 또는 모의 생존 시에 작성할 수도 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 형제자매가 협의하여 작성

하기도 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 형제자매가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을 화회분재和會分財라 한다.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중이나 관이 중재에 나서기도 한다.

분재기를 작성하고 일괄 상속하는 것과는 별도로 혼인, 득남, 과거급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별급別給도 상속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재산은 가족생활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산상속의 관행은 가족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조상제사의 운행 방식은 재산상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상제사에 대한 책임을 형제자매가 똑같이 나누어 맡는 윤회봉사輪回奉祀를 행하던 시기에는 재산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균분상속제를 취하다가 적장자가 제사를 전담하는 시기에는 재산도 적장자에게 더 많이 물려주는 적장자우대 차등상속으로 변화하였다.

재산상속은 신분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처嫡妻와 첩妾의 신분 차별이 심하지 않은 고려시대에는 첩의 자녀도 큰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적서嫡庶의 차별이 심해지면서 첩자妾子는 상속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적자嫡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분급받게 되었다.

이처럼 재산상속은 가족제도나 신분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농지의 영세화나 상공업 발달과 노비 노동력 격감 등 더 넓은 범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영향을 크게 받았다.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균분상속이 적장자우대상속으로 변화한 것은 이러한 당시의 사회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조선전기 상속법제(신영호, 세창출판사, 2002),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李朝の財産相續法(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창기(李昌基)

재행
再行

정의 혼례 후 신랑이 처가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절차.

역사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전통이 고대부터 있었으므로 재행再行의 역사도 그만큼 소급될 수 있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도 이 혼속은 처가에 머무르는 기간이나 양태가 달라졌을 뿐,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조선왕조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준하여 친영례親迎禮를 도입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으며, 결국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반친영半親迎의 절충안이 여러 가지 변통과 조정을 거쳐서 삼일우귀(신행)로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 초기까지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갖춘 집안에서는 남귀여가 전통에서 비롯된 '달묵이' 또는 '해묵이' 신행을 행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신랑이 처가를 방문하는 재행의 습속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재행은 근대 이후 예식장에서 혼례를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는 신식 혼례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 신혼여행 후에 신부의 집을 먼저 들리는 것을 재행 습속의 잔영으로도 볼 수 있다.

내용 재행은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본가로 돌아간 신랑이 처음으로 처가를 방문하는 절차이다. 혼례 행차인 초행初行 다음으로 하는 처가 방문이라는 의미에서 재행이라고 하며, 신부의 신행 이전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행은 처가 중심의 혼속인 남귀여가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의 '고구려' 기사에서 그 오래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저물녘에 사위가 와서 딸과 동숙할 것을 간청하면 여자의 부모는 그를 미리 마련해 둔 서옥壻屋으로 안내하여 딸과 동숙하게 하였으며, 사위는 처가에서 머무르다 자녀가 장성하면 처자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사위가 처가에서 머무르는 혼속이라고 하여 이것을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라고도 한다. 이때 사위의 체류는 처가와 본가를 왕래하는 형태로, 묵신행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위의 재행 걸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처가에서 생활하다가 본가로 옮겨간 것이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말하면 모처부처제母處父處制 거주에 해당한다. 이 전통은 회재晦齋나 율곡栗谷처럼 외가에서 생장한 조선조의 여러 인물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초기까지도 반가나 농촌의 부유한 집안에서는 묵신행의 습속과 더불어 재행이 이루어졌다. 묵신행은 신부가 달포나 해를 묵혀서 신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달을 묵히면 달묵이 신행, 해를 묵히면 해묵이 신행이라고 불렀다. 묵신행에는 혼례 후 혼자서 본가로 돌아간 신랑이 다시 신부를 만나러 처가를 방문하는 절차가 있기 마련인데, 이것이 재행이다. 묵신행 기간에 따라 신랑의 재행 걸음은 몇 번이고 거듭될 수 있다.

예서의 친영은 신랑 집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혼례를 한 후에 부부가 그대로 머물러 산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처가 체류가 전제된 남귀여가혼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조선의 여러 왕들이 친영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사대부들부터 이 새로운 제도를 선뜻 수용하지 않았다. 가족의 거주 형태를 완전히 반대로 되돌리는 일이기도 했고, 조혼을 하던 당시로서는 어린 딸을 혼자 시가로 보내는 일이 심정적으로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빨라진 신행에 맞추어 혼수나 상속 재산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다. 결국 조선 중기에 이르러, 처가에서 혼례식을 하는 전통은 그대로 따르되 다음날 바로 신랑 집으로 가서 현구고례見舅姑禮를 행하는 반친영의 절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것 역시도 당장은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양가의 거리가 멀 경우 이동이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었고, 또 양가의 거리가 가깝다 해도 시가로 가서 현구고례를 올린 신부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생활하는 방식이라면 남귀여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례는 신부 집에서 올리되, 신부의 신행(우귀)이 점차 빨라지는 쪽으로 변화의 가닥이 잡혀가게 된다. 신부의 신행 시기는 시대와 지역 또는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신행을 늦출수록 신부 측에서는 혼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가난한 서민층에서는 자연 삼일우귀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삼일우귀는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올리고 초야를 지낸 후에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가는 형태이다. 삼일우귀를 할 경우, 더욱이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면 신랑이 재행을 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신랑이 자기 집까지 가지 않고 처가 근처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가 다시 처가를 방문하는 인재행引再行의 습속도 생겨났다. 처가와 본가가 가까울 경우에는 신부 집에서 초야를 보내고 신랑 혼자 본가로 갔다가 재행하여 신부를 데려가기도 하였다.

당일우귀나 삼일우귀가 자리 잡게 되면서 신부의 신행 후에 재행을 행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진다. 신행 후 3일 또는 1주일 안에 재행을 가는데, 이때도 신부 집에서 사람이 데리러 오면 신랑 혼자서 가거나 부부가 함께 간다. 이것은 신행이 당겨지는 통에 생겨난 변화이지만, 신부가 시부모와 사당을 먼저 알현한 후에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뵙는 것이므로 음이 양을 따르는 유교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가례』 권3의 친영親迎조를 보면, 신랑 집에서 혼례를 올린 다음날 시부모를 뵙는 '부현구고婦見舅姑'와 사당을 알현하는 '묘현廟見'의 예를 행하고, 그 다음 날에는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뵈러 가는 '서현부지부모壻見婦之父母'의 예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으로 삼일우귀를 한 경우라도 초야 다음날은 통상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인사 드리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아예 달포를 넘겨 신부의 근친과 함께 재행을 행하기도 하였다.

재행은 친영례의 '서현부지부모'에 해당하는 절차인 만큼 폐백이 따르기 마련이다. 혼례 후 곧장 재행을 갈 때는 술 한 병과 닭 한 마리 정도의 선물로 충분하지만, 근친과 함께 행할 경우에는 떡, 술, 고기 등의 이바지음식을 마련해서 간다. 신부 집에서도 그것에 상응하는 이바지로 답례한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런 선물의 교환을 '정성'이라고도 일컫는다. 재행 때 동상례東床禮를 행하는 곳도 있다. 동상례는 신부 집이 있는 마을의 청년들이나 가까운 친척 가운데 동년배들이 모여서 하는 '신랑 다루기'로,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지혜를 시험한답시고 여러 가지 난처한 질문을 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벌로 신랑의 발바닥을 몽둥이로 치거나 신랑으로 하여금 술과 음식을 대접하게 하는 일종의 놀이이다. 또 재행 시에는 신부의 부모가 신랑을 신부의 친족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며, 신부의 친족이 신랑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재행은 신랑이 처가 부모와 친척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 절차이다. 이때 동상례를 행하거나 친척 및 동리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사위가 처가의 가족과 집안,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장치로 볼 수 있다. 혼속의 변화에 따라 재행을 신부의 신행 이전 또는 신행 이후에 행하는 변이가 나타난다. 신행 이전의 재행은 주로 묵신행에서 처가에 거주하는 신부와 만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행 이후의 재행은 친영례의 영향으로 신행이 앞당겨지면서 나타난 형태로, 처가妻家 중심의 혼속에서 시가媤家 중심의 혼속으로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신랑이 달포를 넘겨 재행을 가거나 신부의 근친과 함께 재행을 행하거나 하는 변화도 혼인에서 여자 집보다 남자 집을 더 중시하게 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사람의 한 평생(정종수, 학고재, 2008),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필자 천혜숙(千惠淑)

재혼
再婚

정의 불법적인 혼인으로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 다시 혼인하는 일.

내용 고대에 혼인제도가 성립한 이래 재혼은 별 규제 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1389년(공양왕 1) 최초로 여성의 재혼 규제가 보인다. 도당都堂에서 "산기散騎 이상 관리의 처로서 봉작封爵을 받은 자는 재가하지 못하게 하며, 판사判事 이하 6품 관원의 처는 남편이 죽은 후 3년 이내에는 재가를 하지 못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절개를 잃은 것으로 논죄하자."라는 건의를 올렸다. 이는 말 그대로 '건의'였고 고려가 곧 망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대에는 여성의 재혼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재가금지 문제는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406년(태종 6) 6월 대사헌 허응許應 등이 "부부는 인륜의 근본으로 부인에게는 삼종지의三從之義는 있어도 재혼할 수 없다. 대소 양반의 정처正妻 중 세 번 혼인하는 자는 고려의 법에 따라 자녀안恣女案에 올려 부도婦道를 바르게 하자."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혼이 아니라 삼혼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재혼 금지문제는 다시 성종 때 재론된다. 1477년(성종 8) 7월 조정 회의에서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등 대부분의 관료들은 "어려서 과부가 되어 수절守節하고 싶어도 추위와 배고픔에 못 이겨 부득이 수절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세 번 혼인하는 것 외에는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성종은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를 강조하며, 무려 46인의 대신 중 42인이 반대한 재가금지를 왕의 전지傳旨로 입법화한다.

이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재가 실행 부녀의 자손 및 서얼庶孼 자손은 문과 생원生員·진사과進士科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실리게 된다. 이 법조문의 특징은 재혼한 부녀자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문과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양반의 거의 유일한 관직 진출로인 과거를 응시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양반으로 사는 삶의 기반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여성 자신에 대한 처벌보다 몇 배나 가혹한 처사로서, 이후 양반층에서 여성이 수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 그리고는 갈수록 재가 자체를 악덕시하여 재가를 주선한 자까지 처벌이 확대 적용된다. 1528년(중종 23)에는 양재良才 찰방察訪 정유鄭裕가 청상靑孀이 된 딸을 개가시켰다가 조정에서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삭탈관직削奪官職된 사례까지 나타난다.

이처럼 여성의 재혼은 금지되었지만 남성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심지어 상처한 남성은 과부랑 재혼할 수 없다 보니, 어린 미혼의 여성과 재혼할 수밖에 없었다. 영조가 66세에 정성왕후 서씨와 사별한 후 15세의 정순왕후 김씨랑 혼인했다거나, 문신 김종직이 55세 때 18세의 남평문씨南平文氏와 재혼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아들의 과거 응시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은

양반 여성들에게나 의미가 있었지 상민 이하의 여성들은 별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하층민들은 별 규제 없이 재혼을 해왔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성리학 이데올로기가 점점 서민 이하 계층까지 전파되면서 이들 여성도 수절을 하게 된다. 이에 '양반은 다첩多妾하고, 과부는 수절'하여 가난한 남성들은 처를 얻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게 된다.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에 '청춘과부의 재혼을 허락하라'는 문구가 있음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재혼이 합법화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이다. "과녀의 재가는 귀천을 물론하고 자유에 맡긴다."라는 조항으로 여성을 억압하던 오랜 족쇄가 풀리게 된다.

특징 및 의의 재혼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어졌지만, 여성의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재혼을 망설인 데는 관념적인 것보다 '자녀'라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재혼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남편과 재혼한 남편의 성이 다를 경우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이 아버지로 표기된다. 재혼한 남편을 아이 아버지로 표기하려면, 재혼한 남편이 아내의 전남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했다. 이는 아이의 아버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하여 여성이 이혼 후 6개월간은 재혼을 못 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이 역시 불필요하고, '남녀평등'에 위배 되므로 폐지되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여성의 재혼에 대한 법적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즉 조선시대에 여성의 재혼을 금지한 것은 순수한 부계혈통의 가족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법이 바뀌었다. 아이의 귀속처는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를 길러주는 '지금의 부모'이다. 그리고 아이의 성씨도, 아버지도 친양자제도를 통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재혼의 변천사는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인간 존중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이조여성사(박용옥, 한국일보사, 1976), 조선시대 과부 재가금지에 따른 부부 연차의 불균형(김연수, 민속학연구50, 국립민속박물관, 2022),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대한 연구1(이은영, 고시계50-5, 고시계사, 2005),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대한 연구2(이은영, 고시계50-6, 고시계사, 2005).

필자 권순형(權純馨)

적장자우대상속
嫡長子優待相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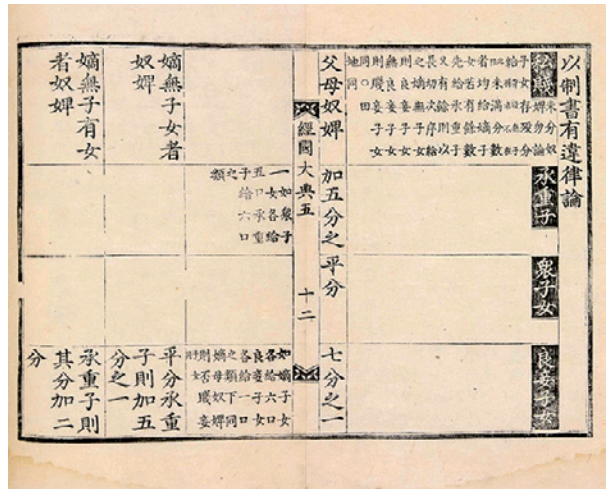
정의 부모의 재산을 적장자에게 특별히 많이 물려주는 상속 관행.

역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재산상속은 조상제사의 운행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들과 딸, 장자와 중자가 조상의 제사를 윤회하던 여말선초에는 재산도 자녀들이 똑같이 나누어 분급받는 균분상속이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조상의 제사에 대한 책임을 자녀들이 똑같이 나눔으로써 재산도 똑같이 나누어 물려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를 지나 종법宗法과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널리 보급되면서 조상숭배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 강화되었다. 중요한 가정의례로 자리잡은 조상의 제사를 정중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나누어 모시는 것보다는 한 자녀가 제사를 전담하는 것이 안정적이라 판단되었다. 그래서 조상제사는 점차 장자가 전담하게 되었다. 제사를 전담하게 된 장자는 재산상속에서도 우대되어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급받게 되었다. 제사 운행방식의 변화가 균분상속의 전통을 서서히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어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딸이 상속에서 제외되고 적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급받는 적장자우대상속嫡長子優待相續이 일반적인 상속 유형으로 정착된다.

균분상속에서 적장자우대상속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윤회봉사가 장자봉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균분상속과 차등상속이 혼재하는 과도적



사천조 | 경국대전 | 가로23 세로35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과정이 나타난다. 먼저 아들들 사이에서는 균분상속을 하면서 윤회봉사의 책임에서 벗어난 딸에게는 재산을 적게 분급하거나 아예 재산을 분급하지 않는 딸 차등 현상이 나타난다. 이미 재산을 상속받은 딸이 재산을 친정에 반납하는 사례도 이 시기에 나타난다. 이어서 제사를 윤회하고 재산을 균분해 상속받던 아들들 사이에서도 제사가 장자에게 고정되면서 재산도 장자에게 더 많이 분급하는 장자와 중자 사이의 차등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집중해서 진행되었고,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적장자우대상속이 보편화되었다.

내용 제사가 중시되면서 제사를 봉행하기 위한 봉사조奉祀條 재산을 별도로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윤회봉사가 일반적이던 시절에는 봉사조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똑같이 분급받은 재산으로 제사 경비에 충당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봉사조 재산을 별도로 설정하였으며, 그 비율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적자녀 간에 재산을 균분하고 승중자承重子에게 중자녀 1인분의 1/5을 가급하도록 하였으나 17세기 이후에는 봉사조 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장자가 제사를 전담하면서 이러한 봉사조 재산도 장자에게 공정되었다. 일반 상속에서 장자가 더 많이 분급받은 데다 봉사조 재산까지 장자에게 고정되어 장자는 훨씬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봉사조 재산이 설정되던 초기에는 일반 상속재산과 봉사조 재산이 구분되어 인식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구분이 모호해져서 18세기 이후에는 봉사조 재산이 상속재산에 통합되어 적장자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일반화되었고, 봉사조 재산을 별도로 마련하는 사례도 급감하게 되었다.

적장자가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적장자가 상속재산의 비율 내에서 중자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봉사조 재산이 적장자에게 고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가지 재산이 복합되면 적장자가 물려받는 재산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적장자우대상속은 장남봉사와 첩자녀에 대한 차별의식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려시대에는 첩과 첩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첩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제사를 물려주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조선 초기에도 첩자녀에게 제사를 물려주고 재산을 상속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초기를 지나면서 첩자녀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고 양자제도가 확대되면서 첩자녀에게 제사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는 부모가 생전에 나누어 주지 않은 노비를 양첩자녀에게는 적자녀의 1/7을, 천첩자녀에게는 1/10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그대로 지켜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상속에서 첩자녀를 차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재기에 나타난 상속 사례를 보면 『경국대전』의 규정보다 더 많이 분급한 사례도 있고 적게 분급한 사례도 있지만 중자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양이 분급된 사례도 있었다.

특징 및 의의 적장자우대상속은 부자계승 원칙, 장자계승 원칙, 적자계승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법이 조선사회에 정착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 원칙이 제사 계승에서 장자봉사 원칙으로 확립되었고, 재산상속에서

적장자우대상속으로 확립된 것이다. 적장자우대상속은 조선사회가 인구 증가로 경작지가 점차 영세해지고 노비 노동력이 급감하는 과정에서도 적장자를 통해 가계를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경제적 바탕이 되었다.

한편 딸들이 재산상속에서 제외됨으로써 처가 쪽에 경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아들들은 혼인 후 친가 주변에서 분가하여 종족촌락(집성촌)을 형성하였다. 사위가 처가 쪽에서 오래 거주하던 서류부가壻留婦家 기간도 3년 이내의 의례적 기간으로 단축되었다. 적장자우대상속과 장자봉사를 통해 경제적 기반과 윤리적 권위를 확보한 적장자는 가장권을 강화하여 여러 형제자매를 적장자의 권위에 예속시키는 가부장 가족을 정착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계혈연집단을 조직화하는 조선 특유의 문중 제도를 발전시켰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조선전기상속법제(신영호, 세창출판사, 2002),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李朝の財産相續法(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창기(李昌基)

절충혼
折衷婚

정의 개인의 자유의사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후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중매로 배우자를 소개받은 뒤 일정 기간 이성 교제를 거쳐 혼인을 결정하는 형태.

내용 절충혼折衷婚은 연애혼과 중매혼의 중간 형태로, 배우자 선택 시 개인의 선택과 부모나 가문의 허락을 모두 거쳐 혼인에 이르는 방법이다. 조선시대로 대표되는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가문과 가문 간 결합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중매혼이 중심이었고, 개인 간의 자유로운 만남이나 혼인은 금기시되었다. 그러다 개화기에 접어들어 신소설 등이 자유연애·자유결혼·평등사상을 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에 관한 관심이 생겨났다. 1920년대 초부터는 이른바 '신여성'이라고 불리는 여성 지식인 계층에 의해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이 증가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이 대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에서는 출신 지역을 넘어 부모나 가문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통과 관습 영향으로 결혼은 여전히 가족이나 가문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부모의 허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30년대에 이르면 도시 중심으로 연애와 중매를 절충하는 방식의 혼인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절충혼이라 한다. 절충혼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이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후 부모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여 혼인을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매를 통해 부모가 선택한 배우자감을 소개받아 이성 교제의 과정을 거쳐 서로를 알게 한 다음 혼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혼 문제에서 부모가 배제되는 연애혼과 개인이 배제되는 중매혼을 절충하여 개인의 선택과 부모의 허락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절충혼이 등장한 초기에는 혼인을 결정할 때 부모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였다. 서로 사랑하더라도 부모의 반대가 있으면 혼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였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부모의 의사보다는 혼인 당사자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변화하여 갔다.

오늘날의 혼인은 배우자 선택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연애혼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연애혼일지라도 여전히 부모에게 배우자감을 소개하고 허락을 구하는 '인사' 과정이나 결혼 당사자의 부모들 간에 인사하는 '상견례相見禮' 등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현대의 혼례 방식은 내용상으로는 연애혼이지만 절차상으로는 절충혼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절충혼은 부모와 가문 중심으로 진행된 전통적 혼인 형태인 중매혼과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현대의 혼인 형태인 연애혼을 절충하는 혼인

형태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문화의 변화와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각각의 이점을 취하여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혼인 형태로 발전·변화한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개화기·일제시기 결혼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이배용, 한국근현대사연구10, 한국근대사연구회, 1999),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김경일, 푸른역사, 2012), 서울생활사박물관 상설전시도록(서울생활사박물관, 2021),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박동철,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박동철(朴東喆)

정략결혼
政略結婚

정의 혼인의 본래적 의미나 혼인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치러지는 혼인.

내용 정략결혼政略結婚은 개인 대 개인 또는 집안 대 집안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혼사와 달리 두 집단이 다른 필요에 의해 전략적으로 행하는 혼인이다. 그 목적은 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인 부의 확보,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중세 이전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진 국가 간 정략결혼은 두 나라가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치러지는 일종의 외교적 의례로, 두 나라의 전쟁 또는 평화에 대한 추구와 연동되어 있다. 이는 문물 교류도 수반되는 국가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혼인정책' 또는 '혼인동맹'으로도 불린다.

정략결혼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동서양을 불문하고 세계 전역에 걸쳐 나타난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이 보여준 여성 편력도 사실은 권력 확장과 통치권역 확보를 위해 혼인 전략을 이용한 정략혼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략결혼 사례는 『시경詩經』 한혁편韓奕篇에 기록된, 서주西周 분왕汾王의 생질녀와 고조선 한후韓侯의 혼인이다. 한후를 조선후朝鮮侯로 보는 한국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서남북의 사이四夷에 둘러싸인 상황에 있었던 서주가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상 | 가로56 세로74 | 조선 | 경기도박물관

가까이 있는 삼이三夷를 공략하기 위해 원거리의 동이東夷, 곧 고조선과 정략결혼을 통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는 것이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각축하던 시대에도 나라 간 정략결혼이 이루어졌다. 고구려가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침범하는 일이 잦았던 때문인지 나제羅濟 간, 가야와 신라 간 혼인동맹 사례가 확인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 「신라본기新羅本紀」 제3 493년(소지왕 15)에는 '백제의 동성왕이 혼인을 청하여 이벌찬伊伐飡 비지의 딸을 보냈다.'는 기록, 그리고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522년(법흥왕 9)에는 '가야국왕이 혼인을 청해 와서 이찬伊飡 비조부의 누이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533년(진흥왕 14) 10월에는 '왕이 백제왕의 딸을 취娶하여 소비小妃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사는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百濟本紀」 제4 533년(성왕 31) 10월의 '왕녀가 신라로 시집갔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일본서기日本書紀』 권19 554년(흠명기 15)에서는 이 정략결혼이 사실은 백제 성왕이 일본과 함께 신라를 정벌할 준비를 하

면서 만든 함정이었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성왕이 이듬해 신라 관산성을 기습하였다가 신라 복병에게 죽었다는 기사가 『삼국사기』「백제본기」 성왕 32년 조에 있으므로, 함정 운운은 사실로 볼 수 있다. 혼인동맹이 사실은 침공을 위한 위장 전략이었던 것이다.

고려 건국조인 왕건의 혼인은 왕실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략결혼의 전형을 보여준다. 왕건은 후삼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역 호족의 딸들과 무려 스물일곱 번의 정략결혼을 하였다. 지역 호족들의 향배가 후삼국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나말려초기羅末麗初期에 왕건은 이러한 정략결혼을 통해 호족 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고려 건국에 성공하고 왕권 안정도 도모하였던 것이다.

타국과의 정략결혼으로는 고려 말기 공민왕과 원나라 노국대장공주의 혼인, 구한말 영친왕 이은과 일본 왕족의 딸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와의 혼인, 일제강점기 덕혜옹주와 일본 쓰시마 도주의 후예인 소 다케유키宗武志의 혼인을 들 수 있다. 이들 세 사례 모두 적대적인 강국이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묶어 두기 위한 정략혼 성격이 강하다. 특히 한국과 일본 왕실 간에 이루어진 두 건의 정략결혼은 식민통치의 명분인, 이른바 '일선융화日鮮融化'의 본보기를 위해 거의 반강제로 단행된 것이었다.

현대에 와서도 재벌가와 정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략결혼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 흔히 볼 수 있다. 오늘날은 학벌과 재능과 스펙이 뛰어난 엘리트 계층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후광도 없는 엘리트가 단신의 백마 탄 왕자가 되어 정략결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정략혼으로 형성된 혼맥은 점차 더 큰 인맥으로 확장되면서 여기에 속한 개인들은 젊은 나이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게 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근대 이후로는 연애혼이 일반화되면서 정략결혼을 해오던 가문에서도 개인에 따라 연애혼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징 및 의의 정략결혼은 조선조 사회의 혼반婚班과는 다르다. 둘 다 혼인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안이나 집단의 장長이 결정하고, 그 결과 두 집단의 위세 승격과 사회적 결속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혼반은 상대의 가격家格과 가풍家風을 혼인 결정의 준거로 삼는 데다 적어도 3대 이상 혼인을 서로 지속하는 조건이 전제된 점에서 정략결혼과 갈라진다. 그리고 흔히 정략결혼은 당사자의 의사나 애정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결혼이라는 점에서 불행한 결혼으로 보기도 하지만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 사례에서 보듯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과거의 정략결혼은 정치적인 혼인동맹이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재벌가가 주도하는 경제적인 혼인동맹이 우세한 편이다. 정략결혼은 인류가 오랫동안 매우 유용하게 사용해온 삶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혼인의 역사는 물론 사회사 및 정치 문화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시경 한혁편을 통해 본 정략결혼과 문물교류 연구(엄광용, 문명교류연구1, 한국문명교류연구소, 2009), 이은 영친왕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문제와 왕족의 양면성(新城道彦, 역사비평75, 역사비평사, 2006).

필자 천혜숙(千惠淑)

정려
旌閭

정의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그 마을 앞에 세우도록 한 붉은색 문.

내용 효자, 충신, 열녀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이 살던 마을 입구에 세우는 정려旌閭에 관한 내용은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여지도서輿地圖書』, 읍지邑誌, 사찬읍지私撰邑誌 등에 다수 나와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의 효녀 지은知恩에 대한 포상으로 조 500석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복호復戶하며 그 마을을 정표旌表하여 '효양방孝養坊'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성종 때부터 통치자가 효치주의孝治主義를 표방하였으며, 989년(성종 8) 9월 효자나 절부에 대한 정표가 시작되어 고려 말기 공양왕 때

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왕조는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을 근거로 한 유교적 풍속교화를 위하여 충忠, 효孝, 열烈의 행적이 있는 자에게 사회적 신분의 고하, 귀천, 남녀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표하였다. 조선 초기의 정표정책旌表政策은 고려시대의 충신, 효자, 순손順孫, 의부義夫, 절부節婦에 대한 정표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왕조의 정표정책은 1392년(태조 1) 7월에 그 방침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되어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조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역대 왕들은 즉위하면 반드시 전국의 관찰사들로 하여금 효자·순손·의부·절부들을 수록·보고하게 하고, 예조가 정기적으로 기록한 후 왕에게 아뢰어 이들에게 정문旌門과 정려를 세우게 해 주거나 상직賞職 또는 상물賞物을 내렸으며, 경제적으로는 복호復戶 등으로 무거운 호역을 면하는 혜택을 주었다. 공사천公私賤의 경우는 면천免賤하여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실제 생활에 이익을 주어 권장하였다.

정문과 정려는 예조와 의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행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표창으로, 사족士族의 경우 가문의 명예였다. 다른 명칭으로는 홍문紅門, 홍살문紅箭門, 작설綽楔, 도설棹楔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신라 때부터 발생하여 고려에 들어와서 적지 않게 건립되었으며,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왕조에서는 전국적으로 상당수 세워졌다. 다음 단계의 표창으로는 복호가 있다. 복호란 국가가 요역의 부담을 면제해 주거나 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상물은 상으로 내려주는 의복이나 쌀, 음식 등을 말한다. 천인의 경우 면천을 받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방법을 통하여 이들의 행적을 사방에 알리는 한편 후손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였다.

문벌이 중시되는 17세기 사회에서 선조 중에 고관명신高官名臣이나 명유대덕名儒大德, 충절忠節, 효열자孝烈者 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자기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문을 빛낸 현조顯祖를 밝히고자 후손들은 정표를 청하는 상언上言을 하였다. 광해군 초기에는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효자, 충신, 열녀들의 실적을 모아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정표자 사례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교화하는



엄흥도 정려각 | 강원 영월 | 1995 | 국립민속박물관

데 일익을 담당하여 유교적 인간상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포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도 있어 정표자 진위眞僞문제가 자주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후대에는 점점 형식화되고 사회적인 폐단이 되었음을 식자들의 비판을 통해 알 수 있다. 요컨대 정표정책은 조선사회의 유교 윤리 풍속교화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정표란 선행을 칭찬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뜻한다. 정旌이란 원래 깃발로 먼 곳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처로, 처음에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민간인들이 쉽게 판별하고, 금지구역을 범하거나 금제된 일에서 멀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후대에는 임금이나 대신大臣 등이 행차하거나 주둔할 때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잡인의 출입을 금하고 신분과 생명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정이란 것은 나라의 위엄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특별한 표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려는 충신·효자·열녀가 난 마을 입구에 세우는 정문을 말하고, 정문은 충신·효자·열녀가 난 집 대문이나 대문 앞의 홍살문을 일컫는다. 정려와 정문은 뚜렷한 구별 없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표 절차를 살펴보면 국가는 정기적으로 혹은 특정 시기에 효자와 열녀들을 찾아내어 포상하였다. 하지만 후손이나 지역민의 필요에 의해 효자와 열녀의 행적이 청원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매우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백성이 수령에게 청원하면 관찰사 혹은 암행어사의 천

거에 의해 예조에서 국왕에게 아뢰어 국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정려가 되는 경우는 후손들이 분주하게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정려문旌閭門의 형태를 보면, 고려시대에는 주로 비석으로 정려를 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작은 목조 정려를 마을 입구에 세웠다. 그 형태로는 정려 안에 나무 현판을 걸어 두는 형태, 비석을 세우는 형태, 대문에 표시하는 형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나무 현판을 걸어 두는 형태가 가장 많다.

목조로 된 정려는 비각처럼 전통 양식의 작은 목조 건물을 세우고 기와를 얹은 모습인데, 그 안에 정려기를 나무 현판에 음각하거나 비석을 세워 음각한 것 등이 있다. 19세기에 와서는 관리와 보존상의 이유로 석조 정려가 나타났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정문·정려의 유적이 고가古家의 대문이나 마을 입구 등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날로 퇴락하여 가는 것들도 있고, 근래에 들어와서 후손들의 노력으로 고치거나 다시 세워진 것도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慶尙道邑誌,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私撰邑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五倫行實圖, 朝鮮王朝實錄,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16),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08), 조선시대의 정표정책(박주, 일조각, 1990),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박주, 국학자료원, 2000).

필자 박주(朴珠)

정상가족
正常家族

정의 결혼한 성인 남자·여자와 그들의 생물학적 자녀가 정서·도구·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핵가족.

내용 시민혁명과 산업화를 계기로 하여 시작된 근대사회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를 가져왔다. 가정 밖에서의 공식적 노동은 남성에게만 허용되었으므로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을 남성이 전담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양육과 부양을 전담하는 식의 성별 역할 분담이 생겨났다. 물론 그 시대에도 하층 계급 여성들은 하숙을 치는 등 가내 부업을 통해 가정 경제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비공식적 경제활동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남성이 가족 부양을 전담하는 가족을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도 교육과 직업의 문호가 개방되고 실제로 많은 여성이 공적 세계에서 활동하게 된 이후에도, 근대에 이상화되었던 부부간 성 역할 분리는 정상가족正常家族이라는 이미지로 고착되었다.

정상가족 이념이란 이성애에 기초하여 성인 남자·여자와 그들의 생물학적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안에서 남편이 경제적 부양을 수행하고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관념이다. 이처럼 개별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내 위치에 따라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할 때 가족은 사회의 건강한 존속을 위해 기여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가족에게 사회 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양육, 부양과 간병을 맡길 수 있을 때 국가와 사회는 공적인 복지 시설 및 예산 확충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가족이 키워 낸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6·25전쟁과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를 겪는 동안 우리의 가족은 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양육 및 부양을 오롯이 감당하였으므로 한국은 사회적 복지 공백에도 큰 혼란 없이 경제성장을 일궈 낼 수 있었다.

한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동성애가족, 비혈연공동체가족 등은 전술한 역할들을 가족 안에서 충족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역기능적이므로 비정상가족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또한 맞벌이로 인해 양육과 부양의 공백을 경험하는 가족,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복잡해진 혼합가족 등도 역기능적이라고 평가되었다.

1인 부양자 핵가족은 근대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근대와 많이 다르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경제적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으며,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증가하였다. 게다가 더 이상 평생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이므로 외벌이 가족의 경제생활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개인·사회·가족적 욕구 변화로 인해 맞벌이 부부 증가를 피할 수 없고, 맞벌이 가족에서는 가족 내 돌봄을 전담

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양육 및 부양 역할을 대신할 인력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가족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가족들은 역할 과중과 정상가족 이념으로 인한 규범적 압박, 사회적 지원 및 분담 부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성애에 기초한 정상가족 안에서의 성별 분업이란 남성은 도구적 역할에 적합하고 여성은 표현적 역할에 적합하다는 단순화된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다.

그런데 다양한 선택지를 지닌 오늘날의 여성들이 성 역할 고정관념에 입각한 부부간 성 역할 분리를 불만이나 갈등 없이 자발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가정 경제의 안정을 위해 남자도 여자도 맞벌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가사와 양육 역시 부부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추세이다. 핵가족 내 각자의 위치에 따라 역할을 고정하고 대체할 존재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정상가족 이념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이 가족으로 묶이는 구성은 다양해지고 이성애 부부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비율은 급격히 줄고 있다. 1인가구 비율이 획기적으로 늘고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동성애가족, 재혼가족, 공동체가족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구성과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들이 절반을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가족들 중 일부에 불과한 핵가족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가족이라고 여기고 기준점으로 잡는 협소한 시각과 정책으로는 현실의 가족들을 포괄할 수 없다.

특징 및 의의 정상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획일적인 가족 구성 및 가족 기능을 고집하는 주장의 대척점에 '다양한 가족' 개념이 자리한다. '다양한 가족'이란 혈연과 결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공동체뿐만 아니라 구성 요건과 상관없이 장기간에 걸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이성애 부부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로 구성되어 남편이 경제적 부양을 전담하고 아내가 양육과 부양을 전담하는 가족은 다양한 가족들 중 단지 하나의 형태이고, 삶의 방식일 뿐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어떤 구성과 내용으로 살아가는 가족이든 상관없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가족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려는 방안이다

참고문헌 21세기 한국가족과 문화(이여봉, 박영사, 2022), 가족 안의 사회 사회 안의 가족(이여봉, 양서원, 2017), 모성애의 발명(Elisabeth Beck Gernsheim, 이재원 역, 알마, 2014).

필자 이여봉(李麗峰)

제례
祭禮

정의 후손이 조상과 소통하는 조상숭배 의례.

역사 제례祭禮는 초월적 존재를 숭배하거나 돌아가신 분을 추모할 때 행하는 제사祭祀 의절이다. 제사의 기원은 인간이 죽더라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영혼불멸 사상과 조상에 대한 애정과 공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인류는 조상뿐만 아니라 자연을 숭배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례가 등장하고 발전하였다. 중국의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인 부여夫餘의 영고迎鼓, 동예東濊의 무천舞天, 마한의 소도蘇塗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고려사高麗史』 등에는 자연신의 숭배제례, 유교식제례가 함께 등장한다. 고려시대부터는 유교식 제도와 유교식 의례가 국가 제사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고려



청헌공 심택현 묘제 | 충남 공주 | 1985 | 국립민속박물관



시제 | 전남 장흥 | 2011 | 국립민속박물관

말기 『가례家禮』가 유입되면서 일반 가정의 제례에 유교식 의례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조선이 예치국가禮治國家로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으면서 유교식이 한국 의례의 문화적 전통으로 정립되었다.

유교 이념에 따른 의례는 『가례』를 근거로 한다. 『가례』에서 제시한 제례는 크게 사시제四時祭, 초조제初祖祭, 선조제先祖祭, 네제禰祭, 기일제忌日祭, 묘제墓祭 등 6종류가 있었다. 여기에 간이 제사라 할 수 있는, 사당祠堂에 모신 조상에게 하는 예절 형태의 제사와 명절에 올리는 절사節祀 혹은 차례茶禮가 포함되어 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전통적인 제례는 간소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어 6·25 전쟁과 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전통문화는 축소와 소멸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제례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하였다. 1969년 〈가정의례준칙〉 제정으로 기제忌祭는 2대조까지 지내고 차례는 설과 추석에, 묘제墓祭는 한식寒食·추석秋夕·중구重九에 지내거나 별도로 날을 잡아 지내도록 규정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80년대 경제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나 제례는 상례喪禮와 함께 간소화의 길을 걷고 있다. 오늘날에는 기제사, 설·추석의 차례가 조상제례로 인식되고 있다. 기제사는 2대조까지 지내거나 부모 제사만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한 날을 잡아 조상을 한꺼번에 제사하는 합사合祀도 늘었다. 차례는 기제나 묘제를 겸하기도 하고,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인식이 커져 성대한 제사로 변화하였다. 또한 묘제는 성묘로 바뀌었다.

제사 시간 역시 기일 저녁으로 옮기는 추세이다. 또한 명절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고, 제물을 대신 준비해 주는 제사 대행업체도 성행하고 있다.

내용 한국의 가족제도라는 범주에서 제례는 조상을 모시는 의례로, 조상숭배를 실현하는 의례적 행위이자 후손과 조상이 소통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제례에는 효孝라는 윤리 개념으로 조상에 대한 숭배, 흠모, 그리움 등의 마음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유교식제례가 제례의 문화적 전통으로 정립되었다. 유교에서 제례는 하늘의 천신天神, 땅의 지기地祇, 사람의 인귀人鬼라는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국가에서는 하늘, 땅,

사람에게 제사를 지냈다. 국가와 백성이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가 바로 조상신에게 행하는 제례이다.

『가례』에서 규정한 6가지 제사 중 사시제는 사당에 모신 4대친을 모두 모시고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이 바뀔 때 지낸다. 초조제는 동지에 지내고 선조제는 입춘에 지내며 네제는 가을에 지낸다. 사시제·초조제·선조제는 조상을 모시는 제례이지만 계절의 변화에 맞춰 지내도록 규정하였다.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것은 곧 농업과 관련되므로 이때 조상신은 농업 신 성격이 강하다.

특히 사시제의 수조受胙 절차에서 읽는 하사嘏辭의 내용이 "고조께서 공축에게 명하여 많은 복을 너의 효손에게 이르게 하였으니, 너희는 하늘에서 녹을 받고, 밭에서 농사가 잘될 것이며, 눈썹이 세도록 오래 살아 길이 (제사를) 폐하지 말라祖考命工祝 承致多福於汝孝孫 使汝受祿於天 宜稼於田 眉壽永年 勿替引之."라고 하였다. 조상이 하늘과 농경까지도 관장하는 신처럼 묘사한 것도 조상신이 곧 농경신의 능력을 갖췄음을 말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사시제, 네제, 기일제, 묘제를 제례 종류로 제시하였다. 이는 곧 조선에서는 『가례』 규정과 달리 초조제와 선조제를 지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의 의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일부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에서는 설과 추석은 물론 춘분과 동지에도 차례를 지냈기에 초조제와 선조제는 춘분과 동지의 차례에 흡수되고, 사시제는 설·한식·단오·추석에 지냈던 차례와 융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의 조상신은 자연신 기능을 하였지만 조선의 조상신은 가족 범주로 한정되었기에 제례 성격 역시 차이가 있었다.

기일제는 4대조까지 추모하고 기억하는 제례로,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므로 가족 개념에 가장 가까운 제사이다. 묘제는 기제사의 범위를 벗어난 5대조 이상의 산소에서 3월에 지내는 제사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조상의 산소에서 10월에 지내는 시사時祀로 바뀌었다.

가정의 제례는 조상제사가 핵심이므로 사당을 지어 조상을 모셨다. 사당에 모신 조상의 신체는 조상 이름을 쓰고 봉사자를 표시한 신주神主였고, 모시는 대상은 4대조까지였다. 국가나 지역, 집안 혹은 지역사회에서 큰 공덕이 있는 조상은 불천위不遷位라 하여 만대가 지나도 봉사를 폐하지 않기도 하였다.

후손들은 사당에 모신 조상을 생전의 가족처럼 여기며 예를 다하였다.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여쭙고, 외출할 때는 우러러보고 인사를 하거나 오랜 기간 외출할 때는 분향하고 재배하면서 그 사유를 고하였다.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아뢰고, 매달 초하루 및 보름과 설·추석 등 명절에도 차례를 지냈는데, 이를 참례 혹은 절사라고 하였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당에 올리는 천신薦新을 하였다. 이처럼 사당에 모신 조상을 살아 있을 때 부모를 모시는 효의 예절과 다름없이 모신 것을 보면 조상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같았다.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제사의 성격을 말해 주는 지표가 된다. 제사는 상중에 지내는 흉제凶祭인 상제祥祭와 길례吉禮의 제관이 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 상례喪禮에서 반곡反哭 후 첫 번째 제사인 우제虞祭 이전까지 제사 형식의 전奠은 축관이 제사의 주인이 된다. 우제부터는 맏상주가 제사의 주인으로서 초헌관이 되고 맏며느리가 아헌관, 존장이나 손님이 종헌관이 된다.

길례에서는 상제와 마찬가지로 맏아들이 초헌관, 맏며느리가 아헌관, 귀한 손님이나 사위가 종헌관이 된다. 제사를 지내고자 신주를 모실 때 남성인 고위考位의 신주는 남자들이, 여성인 비위妣位의 신주는 여성이 각각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생전 가족생활에서의 역할 분담과 다르지 않다. 이는 조상을 살아 있는 가족처럼 대하기 때문이다.

제례 역시 의식 형식이므로 그 절차와 과정이 있다.



기제사 상차림 | 경북 영덕 | 2009 | 국립민속박물관

유교식 제사의 절차는 준비하는 과정, 제물을 차리는 과정, 잔을 올리는 헌작 과정, 조상신을 보내는 과정, 음복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조상단지, 제석, 조상당세기 등 민속신앙의 조상 관련 제례는 유교식제례의 가족형이 아니라 신앙 성격이 강한 특징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제례는 조상과 소통하는 의례적 장치이다. 제례는 첫째, 『예기禮記』「제의祭義」에 보이듯이 자신의 근원에 보답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신을 존재하게 한 조상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기능이다. 둘째, 제례는 부모를 비롯한 살아 있는 어른을 공경하는 효와 그 예법을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 셋째, 과거 제례는 『예기』「제통祭統」에서 말하듯이 신을 섬기고 군신과 부자父子의 인륜, 귀천의 등급, 친소親疏의 차이, 작록爵祿과 보상報償의 베풂, 부부의 분별, 정사政事의 균형, 장유長幼의 질서, 상하의 구분 질서를 알게 하는 열 가지 가르침의 근본이었다. 넷째, 제례를 통해 집안의 내력을 알고 전승한다. 다섯째, 제사를 통해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고 가계의 계승을 정상화하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三國志, 三國史記, 三國遺事, 常變通攷, 유교 제례의 구조와 조상관념의 의미 재현(심일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민속원, 2023), 한국 전통 사회의 관혼 상제(장철수, 고려원, 1984),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Religion in Primitive Culture1(Edward Burnett Tylor, Harper&Brothers, 1958),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김시덕(金時德)

제사분할
祭祀分割

정의 자손들이 조상제사를 나누어 지내는 방식.

역사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전인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상속과 제사계승은 남녀 및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이루어졌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적자嫡子의 자격을 갖춘 모든 자녀는 동일한 분량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 두었다. 이처럼 자녀균등상속 관행이 실시되는 가운데 조상제사 역시 자녀들이 공평하게 지내는 관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자녀윤회봉사子女輪回奉祀라고 한다. 『중종실록中宗實錄』에 "적자가 있으면 지손支孫이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 예禮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풍속에서는 자기 어버이의 기일을 맞아 신주는 내버려두고 지방紙榜을 만들어 각 집에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했듯이, 당시에는 자녀들이 순서를 정해 조상제사를 지내는 습속이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었다. 또 최재석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상속내역을 명시해둔 분재기分財記에 "제수祭需는 장자, 부모 기제忌祭는 중자仲子, 외조부모 명일제明日祭와 4중삭제仲朔祭는 말자末子" "본종봉사本宗奉祀는 장자, 처변봉사妻邊奉祀는 종자終子, 부모봉사는 차자次子" 등의 기록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를 볼 때 제사분할은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전승되던 습속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현재까지 제사분할 관행의 전승이 확인된 곳은 주로 제주도, 경상남도 통영, 경상북도 영덕·울진·포항·대구 달성, 전라남도 진도, 강원도 인제·삼척 같은 해안지역과 산간지역이다. 당시 이들 전승지역에서 수집된 명칭은 '제사분할' '분할제사' '제사분담' '분담제사' '제사분짓' '제사모셔가기' 등이다.

제사분할의 일반적 형태는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 대개 아버지제사는 장남이 모시고 어머니제사는 차남이 지내는 방식이다. 그리고 명절차례는 장남이 맡는다. 제사를 분할한 뒤 한 세대를 내려가면 장남의 아들(장남)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제사를 모시고, 아우가 어머니제사를 물려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제사를 가져간 차남의 집에서는 그의 장남이 할머니제사와 자신의 아버지제사를 지내고, 아우가 어머니제사를 물려받는 것이다. 대체로 이들 지역에서는 조부모까지의 양대봉사兩代奉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장남은 두 분의 기제사를 모시고, 차남은 한 분의 기제사를 지내게 된다. 제사분할의 시기는 탈상을 하고 첫 기제사를 지낸 후인데, 여기까지의 모든 의례는 장남이 담당한다. 또 어머니제사를 모셔갈 기회는 차남에게 먼저 부여된다. 즉, 차남을 제치고 3남이나 4남이 앞서 요청할 수 없으며, 만약 차

남이 포기하면 3남과 4남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제사분할의 대상은 부모의 기제사만이며, 그 윗대의 기제사는 일단 분할이 이루어지면 이동하지 않고 그 자손에게 계승된다. 그리고 제사를 물려줄 때는 반드시 윗대에서 아랫대로 이어지는 수직적 이동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형제끼리 지내던 제사를 서로 물려주는 수평적 이동은 금기시하고 있다.

제사분할 관행의 생성 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제사분할 관행은 주로 해안지역과 산간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상속재산의 중심을 이루는 토지의 면적이 대체로 넓지 않은 편이다.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줄 마땅한 상속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결과 자연히 제사분할이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해안지역과 산간지역의 경우,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탓에 농촌과 달리 풍부한 토지를 조성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장남이 유일하게 특권을 누리는 것은 가옥의 상속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노후부양을 책임지기 때문에 얻게 되는 반대급부이다. 따라서 봉제사를 위한 별도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상제사를 부담 지우기란 여러모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유교적 가족이념 아래서 행해지는 장남의 조상제사 단독계승은, 재산상속에서 '봉사위奉祀位'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재산이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관행이다.

반면, 재산상속에서 특별히 우대를 받은 자녀가 없으면 조상제사 역시 한 자녀에게 독점적으로 계승되지 않고 모든 자녀가 공평하게 나누어 지내게 되는 것이다. 둘째, 제사분할 관행이 발견되는 이들 지역은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유교이념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요인 역시 제사분할 관행의 전승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짐작한다. 사실 유교이념에서 볼 때 조상제사의 분열은 곧 집안의 분열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들(적장자)에게 제사를 무사히 물려줌으로써 집안의 단절을 막았으며, 또 제사를 나누지 않고 독점적으로 지내게 함으로써 집안의 분열을 피했다.

그런데 제사분할 관행으로 널리 알려진 제주도, 전남 진도, 기타 해촌과 산촌은 부계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부계친족의 응집체인 문중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가족생활과 친족생활 등에서도 양계적兩系的 속성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궨당眷黨'이라는 친족범주에는 혈통(부계친, 모계친, 진외가친)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 포함되며, 일상생활의 교류 및 협력 관행도 '궨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제사분할은 유교의 종법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전에 전승되던 것으로 자녀균등상속에 의해 성립된 관행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제사분할은 자손들이 조상제사를 나누어 지내는 것으로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전승되었던 습속이다. 현재 제사분할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주로 해안지역이나 산간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유교이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부계적 친족관념이 미약한 곳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中宗實錄, 가족과 친족의 민속학(김미영, 민속원, 2008), 동해안 어촌 마을의 제사분할(이창기, 사회와역사62, 한국사회사학회, 2002), 제주도의 친족조직(최재석, 일지사, 1979),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필자 김미영(金美榮)

제사상속
祭祀相續

정의 자손들이 조상제사를 물려받아 지내는 일.

내용 제사상속祭祀相續은 시대와 지역, 곧 당대의 이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유교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집[家系]에 대한 관념이 미약하였던 관계로 조상제사를 계승적 차원에서 인식하지 않았다.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조상의 위패를 사찰에 안치해 두고 재齋를 올렸는데 그 비용을 형제자매들이 교대로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당시에는 계보 관념이 부재하였던 까닭에 조상제사와 혈통을



불천위제 제사 상차림 | 경북 상주 | 2010 | 국립민속박물관



제사 상차림 | 경북 봉화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연계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형제자매들이 순번을 정해서 조상공양을 담당하는 '자녀윤회봉사子女輪回奉祀'가 실행되었던 것이다.

자녀윤회봉사는 재산상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1671년에 작성된, 안동 천전(내앞)에 자리한 의성김씨義城金氏 청계종가의 분재기分財記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5남매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고 부모 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내기로 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처럼 특정 자녀가 조상제사를 독점적으로 계승하지 않기에 재산상속 역시 아들딸 차등 없이 공평하게 물려받는 자녀균등상속 관행이 이루어졌다.

조선 중기 이후 유교의 종법宗法 이념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제사계승과 재산상속은 큰 변화를 겪는다. 종법의 핵심 내용은 장남 혈통의 종宗을 수립해 영구히 계승하는 것이다. 즉 시조의 혈통을 장남이 계승하고 그의 장남이 다시 이어받기를 거듭하면서 종(문중)이 형성된다. 이때 혈통의 계승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조상제사였다. 이런 이유로 시조의 혈통을 계승한 장남이 조상제사를 단독으로 물려받으면서 재산상속에서도 '봉사위奉祀位' '승중위承重位'라는 명분으로 우대를 받게 되었다.

또 17~18세기 이후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영향에 의해 사대부가의 가묘家廟 설립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것 역시 조상제사를 계승하는 장남에게 부여된 중요한 의무였다. 그리하여 소종小宗의 시조가 모셔진 가묘에는 8촌 범위의 친족이 모이고, 불천위 조상의 신주가 봉안된 대종大宗의 가묘에는 모든 후손이 집결한다. 이로써 소종과 대종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혈통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면서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에는 18세기에 이르러 재산상속이나 제사계승에서 장남우대와 남녀차별상속이 정착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변화 요인으로는 조상제사 및 동족 관념의 강화가 지적되고 있다. 조상제사의 강화는 제사 봉사자의 지위와 재산을 안정시킬 필요성을 낳았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제사 봉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자녀윤회봉사에 비해 안정적인 장남단독상속이 채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동족 관념의 강화 또한 조선사회가 부계父系 중심의 장남계승 방식으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부계혈통의 남성으로 구성되는 동족집단을 영구히 지속시키기 위해 조상제사의 장남독점상속이 선호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안동양반의 생활문화(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안동시, 2000), 유교공동체와 의례문화(김미영, 민속원, 2018),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김미영(金美榮)

제사설화
祭祀說話

정의 유교의 조상숭배 의식인 제사를 주요 소재로 서사가 전개되는 설화 유형.

개관 제사설화祭祀說話는 유교적 의례인 제사를 길흉화

복吉凶禍福과 관련된 기복신앙祈福信仰과 결합하여 이야기로 전승하는 설화 유형이다. 그래서 제사설화에서는 실제 제사의례에서 금지된 재사再祀, 즉 제사를 두 번 지내는 장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유교적 제사에 서사적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 자체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설화 향유층 시각에서 재구성된 제사에 대한 인식을 표출한다.

제사설화는 제사를 매개로 조상과 후손 사이의 제의적 소통과 유대감을 유지하는 모습을 그리며, 오늘날 제사를 보는 시각이 변화하면서 제사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변모하는 과정도 함께 보여 준다.

내용 제사설화에는 크게 세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조상신이 찾아온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사를 통해 죽은 부모나 조상과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두 번째 유형은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세 번째 유형은 제사를 잘못 지내 화를 입는 이야기이다. 정성을 기울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는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

제사설화는 세 가지 하위 유형을 통해 제사를 매개로 조상과 후손 사이의 상호작용과 유대감이 유지되는 모습을 그려낸다. 특히 두 번째 유형은 제사를 통해 후손이 복을 받는 장면을, 세 번째 유형은 부정한 제사로 인해 후손이 화를 입는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 줌으로써 제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사설화의 하위 유형 중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사 초반부에 소금장수와 같은 제3자가 등장한다. 소금장수는 우연히 제삿밥을 먹으러 집에 가려는 혼령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제사를 준비하던 집의 며느리는 부정한 음식으로 제사상을 차리거나 정성을 다하지 않고 제사를 모시게 되는데 제사에 찾아온 조상 혼령은 화를 내며 손자를 불 속에 집어넣어 다치게 만든다. 소금장수는 제사를 지낸 집에 찾아가서 조상 혼령의 대화 내용을 알려준다. 며느리는 잘못을 뉘우치고 정성스럽게 제수를 마련하여 다시 제사를 지낸다. 조상 혼령은 손자의 화상을 치유해 준다. 이후 며느리는 매해 제삿날이 올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냈고, 소금장수에게 크게 사례하게 된다.

세 번째 유형 안에서도 편마다 부정한 제사에 대한 조상 혼령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손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신벌형神罰型, 조상 혼령이 제수를 가져가는 제수형祭需型, 조상 혼령이 꿈에 나타나 원정을 하는 원정형冤情型이 그것이다. 이 중 신벌형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사설화라고 하면 주로 3개의 유형 중 신벌형을 가리킨다.

제사설화를 통해 조상은 죽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손과 교류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제사에서는 조상의 마음을 위무慰撫함으로써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응감應感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사설화에서 제사상을 차리는 정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조상이 제사음식을 먹는 흠향歆饗을 통해 응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흠향을 통한 응감이라는 제사의 구조와 지향이 서사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 제사설화임을 알 수 있다.

제사설화에서 나타나는 조상과 후손 관계는 유교적 의례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신神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의적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사설화는 유교적 의례인 제사를 기복신앙과 연결하며 서사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다. 신벌형 제사설화에서 조상 혼령이 화상을 입히는 '손자'라는 존재는 그런 신앙적 성격을 강화한다.

제사설화에서 화상을 입는 손자는 제사를 지낼 때 등장하는 시동尸童 형상을 하고 있다. 『예기禮記』에 따르면 시동은 제사 대상의 손자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동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나 조카에 해당하지만 의례의 틀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을 표상한다. 동일한 상징물로 신주神主가 있지만 이는 사당에 조상을 모신다는 의미에서만 사용되고 제사에서는 시동이 등장한다. 그래서 시동은 살아 있는 존재이지만 죽은 존재를 매개하고, 제사를 지내는 후손이지만 제사를 받는 조상을 매개한다. 시동은 제사 안에서 중간자적 존재이자 경계의 존재이며, 양립할 수 없는 두 영역을 제사의 공간 안에 집약하여 함께 마련하는 매개자이다. 시동이라는 상징물

을 통해 제사는 일상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성스러운 세계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제사설화에서는 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손자를 등장시키면서 손자가 희생되는 장면을 추가한다. 제사에서 시동이라는 상징물은 상징 그 자체의 훼손 없이도 성스러운 세계를 지시하지만 제사설화에서는 손자를 불에 집어넣는다는 희생행위를 통해 조상 혼령의 존재를 드러낸다. 특히 그 희생행위는 후손들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조상 혼령이 직접 유도한 결과라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본래 희생제의는 희생물의 파괴를 통해 인간이 신과의 소통을 도모하는 의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적 존재인 조상 혼령이 희생행위를 먼저 일으킨다는 점에서 제사설화는 설화 향유층의 제사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즉 제사라는 형식적 의례는 반복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조상 혼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고자 하는 후손들의 마음은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사설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오히려 제사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지, 제사가 오늘날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인식이 제사설화가 적극적으로 향유된 계기적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오늘날 새롭게 채록된 제사설화 각편에서는 제사를 준비하는 여성이 제사의 불필요함을 남편에게 토로하는 장면이 강조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고부 사이 갈등이 제사를 둘러싼 쟁점의 중심이 되다가 점차 부부 간 갈등으로, 세대 간 갈등으로 관점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예전에는 제사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후손에게 손자의 희생을 매개로 조상 혼령의 위력을 보여 주고 조상과 후손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혈통 관계를 회복하는 데 서사적 목적이 있었다. 반면 오늘날에는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에게 복을 받고 잘살 수 있다는 식의 현실적인 관점이 강조된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제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면서 제사설화의 서사적 면모도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부정한 제사음식 설화의 변이와 그 의미(정재민, 구비문학연구10, 한국구비문학회, 2000), 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임재해, 민속연구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설화전승자의 의식 변화와 제사설화의 미래(이인경, 어문론총5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제사설화의 전승의식과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의미(류명옥, 영남학8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제사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욱, 유교사상연구16, 한국유교학회, 2002).

필자 신호림(申虎林)

조상
祖上

정의 직계존속 가운데 돌아가신 가족 구성원으로서 조상숭배의 대상.

역사 우리나라에서 조상祖上을 숭배하는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주서周書』와 『북사北史』에 등장하는 신묘神廟의 하백녀河伯女와 주몽朱蒙,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동옥저東沃沮편의 뼈를 모은 목곽木槨 기록 등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조상을 숭배하는 전통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미 이때부터 가족의 죽음을 상례喪禮라는 의례로 처리하고, 죽은 조상의 영혼을 모셨다. 신라의 김알지金閼智 신화에 나오는 황금궤 역시 조상숭배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전통은 민속신앙으로 이어져 무속, 마을신앙, 가정신앙 등에서도 조상은 숭배 대상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위호衛護라 하여 조상의 신위를 무당에게 맡겨 숭배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지전紙錢을 태우는 폐백幣帛 형태로 섬기거나 무당에게 위탁하여 조령祖靈을 섬기는 등 신격神格과 신명神明은 고려시대와 같았다.

그러나 신앙에서의 조상은 조선시대 유교의 조상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조선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여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상은 신앙대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가족으로 여겨졌다. 이에 혈통이라는 직계존속의 종법宗法에 따른 윗대만을 조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조상은 유교식 조상과 융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내용 조상은 직계혈통으로, 앞선 세대의 가족을 형성하였던 구성원으로서 돌아가신 선조이자 조상숭배 대상이다. 조상은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셔야 생성되는데

죽음을 처리하는 상례 과정에서 가족이 조상신祖上神으로 승화된다. 전통사회의 생활양식에서 '죽은' 조상은 보이지 않지만 가족의 '살아 있는' 일부이다.

상례는 크게 시신을 처리하는 장사葬事와 고인故人을 조상 혹은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 상제祥祭로 구성되어 있다. 장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상제는 3년이라는 기간을 요구한다. 이 기간에 고인의 영혼은 조상(신)이라는 존재로 사당祠堂에 모셔진다.

조상으로 모셔지는 과정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불러오는 고복皐復에서 시작된다. 고복을 마치면 고인의 영혼이 의지하도록 시사전始死奠을 차리고, 염습斂襲하는 과정에서 혼백魂帛을 만들어 영혼의 상징으로 삼는다. 장지에서 시신을 매장하면 신주神主에 글씨를 쓰는 제주題主를 한다. 새로 조성한 신주를 앞에 놓고 혼백을 뒤에 모시고 집으로 오는 반곡反哭을 하는데 이는 혼백에 깃들었던 고인의 영혼이 신주로 옮겨가도록 하는 상징적 행위이다.

체백體魄에서 분리된 영혼이 안정을 되찾도록 집에 도착하면 바로 삼우제三虞祭를 지낸다. 졸곡卒哭을 지내면서 고인에 대한 슬픔을 줄이고, 이때부터 고인이 아닌 조상신으로 모시기 시작한다.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거치면서 고인과의 완전한 이별을 고하고, 고인의 영혼인 조상을 조상신으로 모시게 된다. 길제吉祭를 지내면서 고인의 신주를 사당에 모신다. 5대조의 신주는 4세손에게 신주를 물려주는 체천遞遷을 하거나 신주를 산소에 묻는 매주埋主를 한다. 상기喪期가 끝난 고인은 정식으로 사당에 들어가 사대봉사四代奉祀의 조상이 되고, 5대조는 묘제墓祭 대상이 되는 좀 더 먼 조상이 된다.

후손들은 조상을 신주라는 형태로 사당에 모시고, 조상신으로서 숭배 대상이기보다는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처럼 대한다. 가장은 아침마다 사당 중문 앞에서 분향하고 재배하여 문안 인사를 올리는 신알례晨謁禮를 한다. 설과 동지 등 명절과 초하루 보름에는 사당에서 참례參禮를 올리며, 요즘에는 이를 차례라고 한다.

가장이 외출하거나 돌아올 때는 반드시 사당에 인사하는 출입고出入告를 한다. 출입고는 외출 기간에 따라 예가 달라진다. 당일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면 사당



고조 신주 | 대구 동구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을 우러러보면서 인사하는데 이를 첨례瞻禮라 한다.

하루 이상 숙박하는 외출이면 사당의 양쪽 계단 사이에서 향을 피우고 재배한다. 열흘 이상 외출하면 향을 피우고 외출 연유를 고하고 재배한다. 한 달 이상 외출할 때면 중문을 열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우고 꿇어앉아 외출 연유를 고하고 재배한다.

또한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고하는 유사즉고有事則告 혹은 유고由告라는 예절도 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태어나거나 장남의 혼인, 후손의 과거 급제, 묘의 유실 등 집안일이 있을 때면 이를 반드시 고하는 것도 조상을 가족처럼 대하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유교 이념에서 조상은 보이지 않는 가족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어 종교적 성격도 강하다. 유교 이념에서는 조상숭배를 제사라고 한다. 조상신에 대한 제사는 시조에게 지내는 시조제始祖祭, 윗대 조상에게 지내는 선조제先祖祭,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당에 모신 조상을 동시에 모시고 지내는 사시제四時祭,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忌祭祀, 조상의 산소에서 지내는 묘제가 있다. 사시제는 명절에 지내는 참례에 흡수되었고, 묘제는 4대 이하의 조상에게도 지내는 제사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특히 신주를 모시지 않는 현대사회에서는 묘제 비중이 매우 커졌다.

유교의 조상제사는 일상생활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처럼 사후의 조상에게 행하는 효孝의 실천 방법이었다. 제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 행위이면서 종법질서를 세우는 수단이었다. 또한 제사는 조상과 후손

이 마주하는 만남의 장이면서 유교적 예의 실천 덕목이었다.

유교식 예의 기본이었던 『가례嘉禮』와 조선의 법제를 규정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조상 관념은 서로 차이가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문무관 6품 이상은 부모·조부모·증조부모의 3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는 2대를, 서인은 단지 죽은 부모만 제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오묘제五廟制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맏이의 품계가 낮더라도 둘째 이하의 품계가 높으면 그에 따라 제사 대수를 정하는 예외 조항을 두어 봉사 대수는 유동적이었다. 반면 『가례』에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4대를 모시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사전祀典체계와 예법상의 사전체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조선 후기가 되면 국가의 사전체계보다는 『가례』 체계로 정착되어 갔다.

민속신앙에서 조상은 대물림이거나 현몽現夢, 점쟁이나 무당의 권유에 따라 봉안하는 사례가 많다. 간혹 둘째 아들 이하가 분가할 때 무당이 조상을 모실 것을 권하면서 모시기도 한다. 이는 조상이 집안의 수호신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먼저 신체神體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제사를 올린다. 이처럼 조상은 지역에 따라 성주보다 더 높은 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민속신앙에서 조상신을 모시는 방법은 무속의 굿과 달리 조상단지 등에 쌀과 종이를 갈아 넣는 고사를 지내는 형태로, 여기에는 제석굿·안택굿 등 불교적 성격이 융화되기도 한다.

민속신앙에서 가신家神으로 모시는 조상은 무속이나 유교 이념의 조상과 차이가 있다. 굿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사령死靈을 조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민속신앙에서 조상은 유교 이념에 따라 직계존속의 종법이 규정한 조상에 가깝지만 초월적 존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독 안의 신주 | 경북 안동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신앙의 조상은 유교의 조상 범위와 거의 같다. 그래서 가정신앙의 조상 역시 유교의 사대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례』에서 신분의 차이를 불문하고 사대봉사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사대봉사는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조상을 직접 모셔야 하는 당사자 역시 장남 또는 종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유교에서 장남만이 조상의 신체를 모실 수 있게 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宗을 이루지 못하면 조상을 모실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단지 조선시대 또는 최근까지도 존재하였던 윤회봉사와 제사 분할상속에 따르면 차남 이하도 직접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

지역사례 유교 이념에서 조상을 상징하는 신체는 신주·지방·묘소 형태로 나타난다. 민속신앙에서는 지역에 따라 형태의 차이가 있다. 영남지방에서는 세존단지 또는 조상당세기, 호남지방에서는 제석오가리, 경기도 지역에서는 제석주머니, 제주도 지역에서는 마을의 본향당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울진군의 구신당세기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발견된다. 이들은 대부분이 항아리나 단지, 상자나 주머니 형태이다. 경상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귀신단지, 귀신동이, 귀신종이, 조상이라는 다양한 명칭이 나타난다.

특징 및 의의 사당에 모신 4대까지의 조상들은 현재의 가족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유교의 조상은 보이지 않는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조상과 후손은 제사를 매개로 만나고 소통하는 혈통의 연속선에 있는 존재이다. 조상제사는 후손이 조상을 신으로 모신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조상숭배라는 종교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민속신앙의 조상은 유교의 조상과 융화되기도 하였지만 선조 이상의 종교적 기능이 강하였다. 이러한 조상은 무속의 억울하게 죽은 사령과는 관련이 없다. 민속신앙의 조상은 가족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

하는 신, 출산을 관장하는 삼신이기도 하다. 민속신앙의 조상은 무속이나 유교의 조상신과 구별되며, 영적 존재로 믿어지는 종교적 성격이 강하다.

참고문헌 家禮, 四禮便覽, 禮記,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이욱 외, 민속원, 2023), 한국 민간신앙의 조상숭배(장주근, 한국문화인류학15,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한국 전통 사회의 관혼 상제(장철수, 고려원, 1984), 한국의 가정신앙(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상례문화(김시덕, 민속원, 2012),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김시덕(金時德)

조상숭배
祖上崇拜

정의 가족, 씨족, 민족 등의 공동체가 죽은 사람을 조상으로 삼고 숭배하는 것.

역사 '조상숭배'의 관념은 아마 정의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명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거의 정의되지 않은 채 연구되었다. '조상'이란 죽은 사람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일정한 범위와 자격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고, '숭배'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나 경배가 아니라 죽은 영혼 등에 대한 '신앙'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길성은 조상숭배를 협의로 정의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타당하므로, 조상숭배를 광의의 사자의례와 구별할 것을 주장하였다. 장철수도 같은 의견, 즉 협의로 조상숭배를 정의하였다.

반면, 장주근張籌根은 조상숭배의 개념을 광의로 보았다. 그는 조상숭배가 농경민족에서 널리 보이는 시조, 조상신, 죽은 자, 사령 등 조상의 영이나 사자의 영에 대한 종교적 숭배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조상숭배는 가장 보편적인 종교형태의 하나로, 언제나 정령신앙精靈信仰, animism을 포함하며, 때로는 토테미즘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조상숭배가 유교적 영향을 받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조상을 숭배하던 본래의 모습이라고 광의로 정의하였다.

조상숭배 연구는 주로 영혼사적·종교학적 연구·인류학적 연구이다. 제사의 역사적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조상숭배가 기독교(천주교와 개신교)와 갈등했다는 사실이다. 양자의 갈등은 종교적 대립이었고, 문화적 충돌이었다. 유교에서는 죽은 자를 욕구를 가진 존재로 여겨, 사람이 거처하는 가까운 곳(사당이나 정침)에 신주로 모셔 제일祭日이나 명절名節 등에 제사를 지냈으며,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여겼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제사가 종교적인 의식儀式으로서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수용하기 어려웠다. 즉 기독교에서 죽은 영혼은 신주나 어떠한 물체에 빙의하는 일 없이 하늘이나 땅 밑으로 멀리 가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는 부정되었다. 결국, 조선왕조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제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기독교 신자인 윤지충尹持忠, 권상연權尙然 등이 순교하였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제사 문제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역사가 있다. 그러다가 1939년 12월 18일 로마교황 비오 12세가 유교의 조상숭배는 하나의 시민적 의식일 뿐 종교적 의식은 아니라는 내용의 교서를 공표하여 조상숭배를 허용하였다. 이것은 기독교가 토착화를 위해서 전통적 신앙이나 사상을 수용한다는 뜻이었다.

내용 조상숭배는 제사, 즉 상속과 관련된 가족제도의 맥락에서 문헌적·역사적으로 연구되었다. 변태섭邊太燮은 가족공동체 안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자손의 의례로서, 유교 이전에 이미 유교적 제사와 비슷한 조상숭배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고, 혈통주의 가족공동체를 제사집단으로 보았다. 김두헌金斗憲은 농경민족이 대가족제도를 형성한 곳에는 반드시 조상숭배가 있으며, 고대의 그리스, 로마나 중국, 일본은 물론 한국의 조상숭배도 이러한 농경민족의 가정의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유교의 보급에 따라 민족의 생활에 뿌리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규李光奎는 이러한 가족주의적 조상 관념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현지조사를 통해서 유교적 제사의 지역성을 밝혔다. 그는 조상숭배가 가족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봉사자奉祀者와 향제자享祭者를 구분하여 상호관계로서 행해지는 의례, 즉 자손과 조상의 관계를 더욱 분석적으로 밝혔다. 임돈희는 유교제사를 모델로 하여, 시대적·사회적 변화라는 시각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조상숭배의 미래상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조상숭배는



사당 내부 | 한훤당 김굉필 종가 | 대구 | 국립민속박물관

제사의 지방적 형태로, 또는 양반에 대한 상민, 즉 중앙문화에 대한 하나의 변형 내지는 주변적인 문화로 처리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지방 중심으로 유교제례가 어떻게 수용되어 갔는가에 관한 연구가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다. 여중철, 전경수, 유명기, 다케다, 이토, 후쿠도메, 최길성 등의 연구에서는 유교 모델과는 거리가 먼 '임자 없는 제사' 같은 제사상속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즉 제사의 분할상속 같은 유교적 모델에서 벗어난 형태가 실행된 예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조상숭배는 종법이라는 종교사회적 측면과 제사라는 의례적인 측면을 가진다. 제사상속에 관한 연구에서, 조상은 생존 시 일정한 계보로 맺어진 자손이 있기 때문에 자손은 조상에 대해 일련의 종교적 신념과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손이나 문중이란 기반 위에 일정한 인간관계가 연속되고, 일정한 의례에 의해 존중될 때 조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조상숭배는 부모와 자손의 관계, 즉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상은 조상숭배라는 의식으로 모셔져야 한다. 5대조 이상은 시제를 지내고, 제사의 책임은 아버지로부터 장남에게 전달된다. 그렇지만 장남은 최대 4대조까지만 제사 지낸다. 조상숭배의 조상은 부父와 부父의 부父로 연결된다는 계보 의식 아래에서, 신위에 오른 다음에는 후손을 걱정하고 보살펴 주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5대조 이상의 조상은 문중 차원의 조상일 뿐, 가족원으로서의 성격이 없는 존재로서, 다만 불천위만이 가제家祭의 대상이 될 뿐이다.

조상숭배는 할아버지를 바탕으로 한다. 할아버지는 손孫과 대칭점에 존재한다. 부자父子관계가 직접 연결되었다면, 조손祖孫관계는 한 세대 떨어져 있다. 혈연관계에서 볼 때 부자父子보다 멀다. 그러나 조祖는 자子나 손孫의 혈연적인 원천, 즉 원조라는 의식에서 우월하며, 자子와 손孫은 세대의 차이는 있어도 조祖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같다. 다만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자보다 조손이 애정적인 면에서 더 친밀하다. 흔히 부모 앞에서 자기의 자식(祖의 孫)을 귀여워한다든지 하는 애정의 표현은 금기이다. 부자관계는 양육과 훈육이 중심이라면, 조손관계는 애정이 강조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손관계를 바탕으로 조상숭배가 계승된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는 할아버지로부터 옛날이야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의 귀여움과 사랑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는 예의범절과 노동을 배운다. 이 두 가지 사랑은 어린이의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상에 대한 관념은 이러한 한국인의 사회구조나 가족구조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아버지는 추상화된 것, 즉 '조성祖性'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신인 동시에 지역의 신인 경우가 있다. 할망당·할르방당(제주도), 할아버지당산·할머니당산(전라도), 골매기할배·골매기할매(경상도) 등이 그렇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이란 신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확대되어 마을의 신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특징 및 의의 무속의 조상숭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교제례와 대조적이다. 유교제사에 의하면 향제자와 봉사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유교에서는 조상숭배가 주축을 이룬다. 그렇지만 무속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상숭배보다는 사자의례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무속에서 조상신은 많은 신 가운데 하나이고, 사령제는 사자의례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유교와 무속의 조상숭배를 비교하면, 향제자와 봉사자는 유교에 밀착되어 있으나 무속은 그렇지 않다. 또, 유교의 조상은 비교적 분명한 카테고리이지만 무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유교제례는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효'와 신앙적인 숭배가 복합되어 있으나, 무속의 사령제는 주로 신

앙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유교는 강한 부계원리에 의한 것이지만, 무속에서는 부계원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제례는 산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이 기본이다. 개성적인 조상관은 무속신앙에서 더욱 뚜렷하다. 또 유교제례가 남성중심 부계사회를 강조하는 데 반하여, 무속은 유교와 부계사회에 의해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보완한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조상제사와 효(최길성, 민속원, 2010), 친족집단과 조상숭배(이광규, 한국문화인류학9, 한국문화인류학회, 1977), 한국민간신앙의 조상숭배(장주근, 한국문화인류학15,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필자 최길성(崔吉城)

조상신
祖上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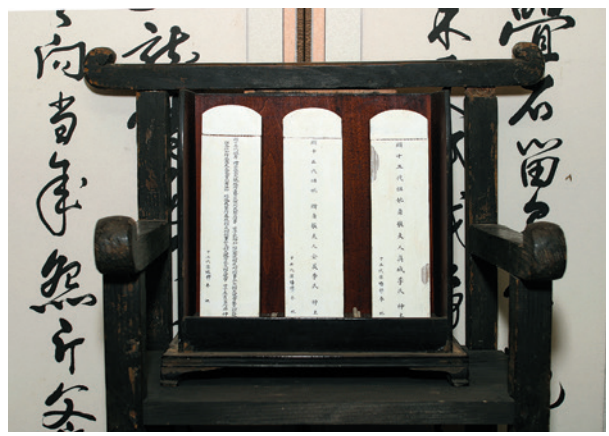
정의 조상은 자기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를 말하지만 주로 죽은 선조를 뜻하며, 조상신은 죽은 선조가 신격화된 존재.

역사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에는 "시월에 하늘에 제사하고 국중대회를 하니 이름하여 '동맹東盟'이라 한다. 그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수혈'이라 한다. 국중대회에서 수신隧神을 맞아서 나라 동쪽 위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목수木隧는 나무로 새긴 굴의 신상을 뜻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주서周書』와 『북사北史』에는 "신묘 두 곳이 있으니 하나는 부여신이라 하며 나무로 깎은 부인상을 만들었다. 하나는 등고신이라 하니, 이는 시조인 부여신의 아들이라 한다. 같이 관사를 두고 사람을 보내서 수호하는데, 아마도 하백녀河伯女와 주몽朱蒙을 말하는 것이리라."라는 기록이 있다. 동명은 동맹과 같은 의미로, 고구려의 시조신인 주몽이며, 하백녀는 주몽의 어머니이다. 시조신과 그의 어머니가 시조신으로 모셔지는 것이다. 신라의 김알지金閼智 신화에 나오는 황금궤 역시 시조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상숭배 형태로 보고 있다. 이처럼 조상을 신격화하여 모시기 시작한 것은 오랜 역사성을 지니는데, 시조신에 대한 숭배는 자연스럽게 조상숭배로 이어졌다.

우리 민족의 조상에 대한 봉사개념은 유교식제례형식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자에 대한 두려움과 외경은 시작되었으며, 특히 가족과 같이 가까이 있는 자가 죽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과 외경이 종교적 심성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죽은 자가 신년의 절기와 같은 특별한 날에 그들의 가족에게 되돌아온다는 신앙은 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인데, 이는 곧 사자가 신으로 현현顯現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례는 신과 인간의 세계를 매개시켜 주던 종교행위로서, 반드시 사제자에 의하여 주재되어 왔다. 그러나 조상숭배 사상이 보편화함에 따라 죽은 조상이 신으로 추앙되면서 제례 역시 널리 일반에게까지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제자의 역할을 종손이 제사 때에만 임시로 맡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례는 삶과 죽음의 세계를 매개시켜 주는 상징적인 종교행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교의 종교성을 말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내용 조상신은 공덕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의 연속성에 따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제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조상신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죽어 조상신이 되는 것은 마치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조상이 되는 데에 죽음은 필수조건이지만, 생물학적 현상이 선조를 조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일생의 례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전이가 의례를 통하여 이루



신주 | 우복 정경세 종가 | 경북 상주 | 국립민속박물관

어진다는 점이다. 시신을 안장하고 그 죽음을 애통하며 혼을 위로하는 상례를 수행할 때 비로소 죽은 자와 산 자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해마다 제삿날에 지방에 현고조고, 현증조고, 현조고, 고 등의 호칭을 불러줄 때 조상은 등장한다. 즉, 조상은 제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사회적인 지위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생의례에서 제사는 초월적인 대상을 숭배하는 의례라기보다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죽음의 세계 이후에도 유지시키는 의식이다.

죽어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영혼은 조상이 아니라 여귀厲鬼이다. 중국이나 조선 사람들은 제사를 받지 못하는 혼백이 나무나 바위에 의탁하여 여귀로 출몰하여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후사가 없는 사람은 양자를 들여서라도 제사를 받으려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나라에서 이들을 제사 지내 주었다. 조선시대 각 군현에 설치된 여단은 바로 이러한 여귀를 위로하는 곳이었다.

여귀의 해악은 그의 본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제사는 자신의 근원을 찾아 만나는 의례일 뿐 아니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방황할 조상의 혼령을 안착시키고 조상신으로 받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상은 후손의 제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조상신으로 자리를 잡는다. 조상신은 유교제례를 받는 조상신, 가신으로 모시는 조상신 그리고 무속의 조상신이 있다. 이들은 조상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양상은 좀 다르다.

우선 유교제례를 받는 조상신은 혈연 중심으로 1대 조상, 2대 조상, 또는 사대봉사 등과 같이 서열이 명확하다. 가령 종가의 장손은 집에서 사대봉사를 하고 5대조 이상의 조상신에게는 묘소에서 음력 10월 시제時祭로 모신다.

가신으로서 조상신은 직계존속이라는 측면에서 유교의 종법宗法에 따른 조상신이지만 혈연보다 초월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서열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사대봉사라는 개념은 없고 윗대 조상부터 최근에 세상을 떠난 조상까지 다양하다. 주로 한恨이 많거나 색다르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조상신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제석帝釋, 세존단지 등 불교적인 명칭으로 일컫기도 한다.

무속의 굿, 조상거리에는 제 명을 살지 못해 죽은 불행한 사령死靈이 조상신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당대 조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 대수를 알 수 없는 막연한 조상이 신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유교제례의 조상신과 가신으로서 조상신의 한계가 모호할 수도 있다. 유교제례를 받는 조상신의 신체는 사당에 신주로 모셔지기도 하는데, 가신처럼 어떠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신으로서 조상신은 후손을 보살펴 주는 신으로, 그 자리는 대체로 안방의 윗목 벽 밑으로 상정된다. 신체神體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집안에 따라서는 고리짝 또는 조상단지 등을 신체로 한다. 조상신에게는 차례 때 성주와 더불어 조상상을 놓는다. 또는 햇곡이 날 때 천신상薦新床을 올린다.

차례 때 대접받는 조상신은 대체로 유교제례의 대상이 되는 신이다. 천신薦新 등 집안고사 때 모시는 조상신은 유교제례를 받는 조상신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가신으로서 조상이다. 유교제례의 조상과 가신으로서 조상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별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서는 조상당세기를 귀신당세기라고도 하는데, 김길자씨 댁의 귀신당세기는 윗대 조상을 모신 것이라 한다. 이 댁의 경우 먼 윗대 조상들은 윗동서가 다 가지고 있어서 김씨는 시아버님의 귀신당세기만을 모신다. 귀신당세기 신체는 버드나무 고리이며 그 안에는 한지와 천 원짜리 돈을 넣어두었다. 동지나 정월 대보름에 음식을 올리고, 설날과 추석 양 명절 때와 조상제사를 드릴 때 같이 모신다. 이때 귀신당세기에 먼저 제를 올리고, 차례나 조상제사를 지낸다.

강선오(남, 69세)씨에 따르면 귀신당세기는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원종가에는 틀림없이 있고, 그다음에 차남이나 삼남이 살림을 나서 이를테면 새로운 가계 구성이 되었을 경우 후손들이 모시게 된다는 것이다. 강선오씨는 귀신당세기를 5대까지 모시고 5대가 지나면 내보내고 새로운 조상을 모시게 된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면 조상신을 상징하는 귀신당세기는



조상단지와 조상당세기 | 경북 울진 | 국립민속박물관

가신일 뿐 아니라 유교제례의 조상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유교식 제례에서는 신위나 지방 등 신주를 신체로 제상 앞에 놓는데, 귀신당세기도 유교제례의 조상신 기능을 하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조상신은 유교제례, 가신제, 무속의 굿거리에도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 유교제례에서 조상신은 가신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혈연을 중심으로 후손과 조상이라는 연속성에 의한 존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가신으로서 조상신 역시 유교제례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교제례에서 조상신은 후손의 제례를 받는 신격으로, 후손은 제례를 통해 조상과 관계를 결속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가신신앙과 외래종교의 만남(김명자, 민속문화가 외래문화를 만나다, 집문당, 2002), 우주와 역사(Eliade Mircea, 정진홍 역, 현대사상사, 1976), 조상(김시덕, 가정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1), 조상제사 왜 지내는가(이욱, 여성문제연구13,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4), 조선전(이민수 역, 탐구당, 1974), 창포마을의 가정신앙(김명자, 농사짓다 고기잡는 창포마을의 민속, 민속원, 2008),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장주근, 집문당, 1995),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필자 김명자(金明子)

조선호적령
朝鮮戶籍令

정의 1923년 7월부터 1959년 말까지 시행된 호주 중심 직계가족 모델인 '가家'를 단위로 그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하나의 영구문서에 등록·공시하게 한 법령.

역사 근대 일본의 호적제도는 1909년 '민적民籍' 제도로 처음 한국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항이 8개뿐인 임시적 〈민적법〉에는 '가'가 무엇이고, 호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며, 혼인·입양은 어떻게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1912년 4월 시행된 〈조선민사령〉도 조선인의 능력·친족·상속에 관해서는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고만 규정하였다(제11조). 일본 〈민법〉이 혼인과 입양은 신고로 성립한다고 규정한 반면 조선에서 혼인은 관습대로 납폐納幣나 예식 거행으로 성립하고 혼인 신고란 사후에 그 사실을 민적부에 기재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인이나 입양은 처리할 수 없었다. 게다가 헌병경찰이 민적제도를 운용한 1910년대 전반에는 개인의 신분관계 등록보다 전체 인구 파악이 더 중시되었다. 일부일처제에 위배되는 첩妾도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해 주고, 예전의 노비호奴婢戶나 잔호殘戶처럼 혈연과 무관하게 형편상 남의 호적에 얹혀 있는 '부적附籍'도 일단 인정하였던 것이다.

〈민적법〉으로는 가족관계와 상속을 둘러싼 온갖 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당시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소와 법무국, 중추원에서 '조선의 관습을 고려'하여 내린 유권해석을 예규例規라 하여 이후의 지침으로 삼았지만 근본적으로 조선인의 친족·상속에 관한 상세한 성문법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초 관련 법령의 정비를 꾀하였으나 일본 정부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기서 조선총독부는 130여 개 조항의 〈조선호적령〉을 제령制令이 아닌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포하고, 개정된 〈조선민사령〉과 함께 19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편법을 취하였다. 이로써 민적제도는 호적제도로 대체되었다.

일본식 호적제도의 '가'가 조선의 관습이나 현실과 달랐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가 서양자壻養子와 일제가 조선인에게도 일본식의 성명을 강요한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이다. 일본인의 성에 해당하는 '씨氏'는 가의 호칭이며, 가의 구성원은 같은 씨를 쓴다. 대개 여성이 결혼하면서 남편의 씨로 바꾸지만 결혼하면서 사위가 처가의 씨를 따르고 가업과 가산을 물려받는 서

양자 제도도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부계혈통의 호칭인 성姓은 결코 바꿀 수 없었고 서양자 같은 것도 불가능하였다. 〈조선호적령〉도 이러한 차이를 인정·유지하였지만 주지하듯이 식민지 말기에 일제는 전시총동원을 위해 '황국신민화'와 조선인 징병제 실시를 추진하면서 서양자 제도를 도입하고 '창씨개명'을 강제하였다.

창씨개명은 1946년 10월 〈조선성명복구령〉으로 원천무효가 되었다. 서양자 제도가 폐지된 것은 1990년이지만 애초 그런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몇 가지 점을 제외하면 광복 이후에도 〈조선호적령〉은 '조선'이라는 말만 뗀 채 그대로 시행되었다. 1960년부터 대한민국 〈호적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그 내용이나 호적부 양식은 식민지기 호적제도와 거의 같았다.

내용 제정 당시 〈조선호적령〉은 총칙, 호적부, 호적의 기재수속, 신고, 호적의 정정 등 5개 장과 부칙까지 133개 조로 이루어졌다. 제4장 '신고[届出]'는 출생, (사생자)인지認知, 입양[養子縁組], 파양[養子離縁], 혼인, 이혼, 친권 및 후견, 사망 및 실종, 호주상속, 친족입적, 분가 및 절가絶家, 개명改名·족칭族稱의 득상得喪·습작襲爵, 전적과 취적 등에 대한 것이다. 용어는 낯설지만 대개는 광복 후 대한민국의 〈민법〉과 〈호적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내용들이다. 다만 '족칭'과 '습작' 등은 식민지기 일본에서는 화족華族, 조선에서는 친일파를 중심으로 한 '조선귀족'이라 하여 공작·백작·후작 등의 작위를 준 것과 관련된다.

〈조선호적령〉 시행과 함께 〈조선민사령〉 제11조 일부 개정으로 혼인연령, 재판상 이혼, 친권, (사생자)인지 등에 대해 일본 〈민법〉을 적용하고 혼인, 협의상 이혼, 입양 등은 신고에 의해 성립하게 되었다. 호적은 사람의 법률적 신분관계를 등기하는 문서였으므로 부·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호적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호적부는 2부를 작성해서 부·면에 정본, 지방법원에서 부본을 보관하며, 취적就籍이나 호적정정 등 신분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안은 반드시 법원의 허락을 통해 처리하게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서구 근대의 민법체계는 맨 먼저 법률적 행위의 주체인 '사람'의 민사신분civil status, 즉 개인의 존재와 자격이 법률에 의해 증명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법률적 행위에 필요한 당사자의 이름·나이·주소·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등록해서 본인임을 증명해 줄 원본 문서가 있어야 하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 서구 국가들은 개인의 출생·결혼·사망을 사건별로 관청에 등기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서구의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은 사건별·개인별 등록이 아니라 남성 호주의 직계가족인 '가'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모두 하나의 영구문서에 모아서 등기하게 하였다. 이것이 호별 등록, 즉 '호적こせき(고세키)'이다.

개인의 신분관계 등록 장치라는 점에서 보면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록도 뿔뿔이 존재하는 서구 국가들의 제도에 비해 호적은 꽤 효율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호주 중심의 가(호)가 가족의 유일한 합법적 모델처럼 여겨지는 것은 문제였다. 친족·상속에 관한 조선의 관습은 일본과 많이 달랐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가' 모델의 경직성, 호주와 다른 가 구성원의 차별, 남성중심주의 등은 가족과 사회의 변화하는 현실과 점점 멀어졌다. 결국 2005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에 따라 이 같은 호적제도는 2007년 말로 폐지되고 2008년부터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법제정책(이승일, 역사비평사, 2008), 창씨개명(水野直樹, 정선태 역, 산처럼, 2008), 한국 근대 호적제도의 변천(이정선, 한국사론 5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9).

필자 서호철(徐浩哲)

조손가족
祖孫家族

정의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장기간 부재한 상태에서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있는 조부모가 미성년인 손자녀와 동거하면서 의식주 및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는 가족.

내용 부모가 사망이나 질병, 사고, 이혼, 파산, 수감 등 이유로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기능을 상실함으로 인해 노령의 조부모가 미성년인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모 부재 상태에서 조부모와 미성년인 손자녀가 6개월 이상 동거하며 조부모가 손자녀의 의식주 및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조손가족祖孫家族이라고 한다. 혈연이 우선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조손가족은 부모의 직접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손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에서 부모세대가 부재한 상태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가구는 2018년 기준으로 11만 3,297가구인데 이들 중 손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는 5만 2,921가구로 집계되었다. 조손가족을 형성하는 이유로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질병, 가출이 지목된다. 이처럼 조손가족으로서의 삶은 부모세대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이어서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심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채 상황에 떠밀려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돌봄 대상이 되어야 할 연령대의 조부모에게 주어지는 돌봄 주체로서의 삶은 신체적·심리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 여성가족부 조사(2010)에 따르면 조손가족 조부모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미만이 80%이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손가구의 2/3 이상이 절대빈곤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들 빈곤층 조부모의 93%가 신체적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60% 이상이 심각한 수준의 우울 상태를 보인다. 물론 필요에 따라 공공부조급여나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 같은 공적 지지망에 의지하긴 하지만 이들에게 조손가족으로서의 삶에서 생겨나는 고민에 대한 의논 상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부모가 평균적으로 학력과 경제력 및 건강상태 면에서 중첩적으로 부족하다고 나타난 통계치는 조부모에게 성장기의 손자녀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대로 제공할 능력이 부재함을 방증傍證한다. 또한 빠른 사회변화로 인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세대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조손간 대화가 단절되는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조손가족을 바라보는 주변의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손자녀가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교우관계에서 부적응 상태에 처한다. 이러한 분노와 좌절을 가족 안에서 폭발시켜서 조손간 상호관계가 위태롭게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하여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이 우울·불안·위축이나 따돌림과 무시, 놀림과 협박 등 부정적 경험을 하는 비율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높다.

하지만 조손가족에서의 삶이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모에 의한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들 중에서 조손가정의 아동이 비혈연 공동위탁가정 아동들에 비해 학업 성취 면에서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조부모로부터 애정을 받고 생활이 평화로울 경우 부모와의 이전 삶에서 편치 않았던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조부모에게 긍정적 감정을 갖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느낌을 갖는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미성년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손가족이 아동을 위해 긍정적 대안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조부모 역시 손자녀와 강한 결속력을 보이고 삶의 의미와 성취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들로 미루어 볼 때 조손가족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변의 부정적 편견과 낙인을 지우려는 범사회적 노력이 이어진다면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손자녀는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처로 기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조부모와 손자녀의 심신에 대한 건강관리 모니터링 서비스, 손자녀의 학습관리와 멘토링 서비스, 조부모와 손자녀 간 세대 차이로 인한 간극間隙을 메워 줄 수 있는 전문적 상담 서비스 등이 제안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외에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이 파편적으로 존재한다. 이들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손가족의 조부모가 고연령이고 저학력자 비

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 적절한 서비스나 정책이 있다고 해도 스스로 찾아내 신청하여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조손가족들 각각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세심히 파악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조부모의 질병으로 인해 어린 손자녀가 조부모를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 등 양육과 부양이 중첩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와 같은 조손가족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후견이 가족 밖의 지역사회에 의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지지될 경우 어린 세대와 늙은 세대 간 혈연 및 애정으로 빚어내는 조합은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2010년 전국 조손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여성가족부, 2010),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통계청, 2020),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최해경, 한국노년학22-3, 한국노년학회, 2002), 조손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예성, 청소년문화포럼37,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14), 한부모 가정 유아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조모와 손자녀의 삶을 통해 본 가족의 의미(염지숙·염지혜, 유아교육학논집19-3,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5).

필자 이여봉(李麗峰)

조카

정의 형제자매의 아들딸을 이르는 친족용어.

내용 조카는 동기간同氣間의 자녀를 통칭하는 친족용어이다. 조카는 계촌법計寸法에 따라 나와의 촌수는 한 항렬行列 아래로 3촌三寸이며, 나의 자녀와는 동항同行으로 4촌四寸 관계인 매우 가까운 친족이다. 조카에게 나는 부계친족이면 성별에 따라 삼촌三寸 또는 고모姑母가 되고, 모계친족이면 외삼촌外三寸 또는 이모姨母가 된다.

조카에 대한 친족용어는 남형제의 자녀인지 여형제의 자녀인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고,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먼저 남성 화자 입장에서 남형제의 아들은 조카/질姪, 딸은 조카딸/질녀姪女라 하고 여형제의 아들은 생질甥姪, 딸은 생질녀甥姪女라고 한다. 여성 화자 입장에서 남형제의 아들은 (친정)조카/질, 딸은 (친정)질녀라 하고 여형제의 아들은 이질姨姪, 딸은 이질녀姨姪女라고 한다.

이러한 친족 지칭의 구분은 형제자매의 아들과 딸을 모두 '조카'로 통칭하거나 개인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주로 남형제의 아들인 친조카親姪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됨을 보여 준다. 게다가 남형제의 자녀와 달리 여형제의 아들은 생질과 이질, 딸은 생질녀와 이질녀로 구별된다. 한국의 전통적인 부계친족제도 아래에서 여형제의 자녀는 여형제 남편의 부계친족집단에 귀속되기 때문에 친조카와 구분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조카 중에서도 맏형의 맏아들은 '장長'조카 또는 '큰조카'로 구분하여 일컬으며 대우하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계친족제도 맥락에서 장자長子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다. 장조카는 장손으로서 부모를 봉양하고 대를 이으며 조상제사를 받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장조카와 그 처에게는 언어생활에서도 예우해서 반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조카와 조카며느리, 조카딸과 조카사위에 대한 친척용어를 친척지칭과 친척호칭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1)남성 화자이냐 (2)여성 화자이냐에 따라, ①남형제의 자녀이냐 ②여형제의 자녀이냐에 따라 친척용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숫자로 구분 및 배합하여 기술한다.

경기 양평

친족원	(1) 남성 화자		(2) 여성 화자	
	친척지칭	친척호칭	친척지칭	친척호칭
① 남형제의 자녀	조카	아이 이름+아범	(좌동)	(좌동)
	조카며누리/질부	아이 이름+어멈/질부	(좌동)	(좌동)
	조카딸	아이 이름+에미 (또는 어멈)	(좌동)	(좌동)
	조카사우	성+서방	(좌동)	(좌동)
② 여형제의 자녀	생질/조카	이름/아이 이름+아범	이질/조카	이름/아이 이름+아범

	생질부/조카며누리	아이 이름+어멈/질부	이질부/조카며누리	아이 이름+어멈/질부
	생질녀/조카딸	이름/아이 이름+에미 (또는 어멈)	이질녀/조카딸	이름/아이 이름+에미 (또는 어멈)
	생질사우/조카사우	성+서방	이질사우/조카사우	성+서방

강원 삼척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① 남형제의 자녀	조캐	이름	
	조캐며누리	조캐며누리	
	조캐딸	(이름)	
	조캐사우	조캐사우	
② 여형제의 자녀	조캐	이름	'조카' 범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질' '이질'과 같은 지칭을 사용하기도 함
	조캐며누리	조캐며누리	
	조캐딸	(이름)	
	조캐사우	조캐사우	

충북 청주(청원)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① 남형제의 자녀	조카	이름/조카	
	조카며누리	조카며누리/질부	
	조카딸	출가지명+네/아이 이름+이미	
	조카사위	조카사위	조카사위에게 '성+서방'(호칭)은 안 씀
② 여형제의 자녀	조카	이름/조카	'조카' 범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질' '이질'과 같은 지칭을 사용하기도 함
	조카며누리	조카며누리/질부	
	조카딸	출가지명+네/아이 이름+이미	
	조카사위	조카사위	조카사위에게 '성+서방'(호칭)은 안 씀

충남 홍성

친족원	(1) 남성 화자		(2) 여성 화자	
	친척지칭	친척호칭	친척지칭	친척호칭
① 남형제의 자녀	조카	이름	(좌동)	(좌동)
	질부/조카며누리	질부	(좌동)	(좌동)
	질녀/조카딸	이름	(좌동)	(좌동)
	질서/조카사위	성+서방	(좌동)	(좌동)
② 여형제의 자녀	생질	이름	이질	이름
	생질부	질부	이질부	질부
	생질녀	이름	이질녀	이름
	생질서	성+서방	이질서	성+서방

전북 고창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① 남형제의 자녀	조카	이름/조카
	질부	질부
	질녀	남편 성+실+아
	조카사우/질녀서	성+서방
② 여형제의 자녀	생질	이름/조카
	생질부	질부
	생질녀	남편 성+실+아
	생질사우/생질녀서	성+서방

전남 진도 조도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① 남형제의 자녀	조캐	이름/아이 이름+납씨야	'납씨'는 '네+압씨'의 축약형
	조캐네	아이 이름+넘아	'넘'은 '네+엄매'의 축약형
	조캐	아이 이름+넘아	혼전에는 이름을 부름
	조캐사오	사오/아이 이름+납씨야	
② 여형제의 자녀	조캐	이름/아이 이름+납씨야	
	조캐네	아이 이름+넘아	
	조캐	아이 이름+넘아	혼전에는 이름을 부름
	조캐사오	사오/아이 이름+납씨야	

경북 구미 선산

친족원	(1) 남성 화자		(2) 여성 화자	
	친척지칭	친척호칭	친척지칭	친척호칭
① 남형제의 자녀	조카	이름	(좌동)	(좌동)
	질부	질부	(좌동)	(좌동)
	질녀	남편 성+실	(좌동)	(좌동)
	질서	성+서방	(좌동)	(좌동)
② 여형제의 자녀	생질	이름	이질	이름
	생질부	(생)질부	이질부	(이)질부
	생질녀	남편 성+실	이질녀	남편성+실
	생질서	성+서방	이질서	성+서방

경북 영덕 영해

친족원	(1) 남성 화자		(2) 여성 화자	
	친척지칭	친척호칭	친척지칭	친척호칭
① 남형제의 자녀	조카	이름/아이 이름+애비	(친가)질	이름
	질부	새사람/아이 이름+에미	(친가)질부	새사람
	질녀	남편성+실	(친가)질녀	남편성+실
	질서	성+서방	(친가)질서	성+서방
② 여형제의 자녀	생질	이름	이질	이름
	생질부	생질부	이질부	새사람
	생질녀	남편 성+실	이질녀	남편성+실
	생질서	성+서방	이질서	성+서방

경남 함양

친족원	(1) 남성 화자		(2) 여성 화자	
	친척지칭	친척호칭	친척지칭	친척호칭
① 남형제의 자녀	조카	이름	(친정)조카	이름
	질부	(아이 이름)+에미/ 질부	(친정)질부	질부
	질녀	남편 성+집	(친정)질녀	남편성+집
	질서	성+서방	(친정)질서	성+서방
② 여형제의 자녀	생질	이름	이질	이름
	생질부	질부	이질부	질부
	생질녀	남편 성+집	이질녀	남편성+집
	생질서	성+서방	이질서	성+서방

경남 통영 사량도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① 남형제의 자녀	조캐	이름/아이 이름+네	
	조캐메늘	아이 이름+네	
	조캐딸	이름/큰아이 이름/ 아이 이름+네	
	조캐사오	성+서방	
② 여형제의 자녀	조캐/생질	이름/아이 이름+네	'생질'은 상대적으로 저발달한 형태임
	조캐메늘	아이 이름+네	
	조캐딸	이름/큰아이 이름/ 아이 이름+네	
	조캐사오	성+서방	

부산 동래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① 남형제의 자녀	조캐	(아이 이름+아바이)	( ) 안의 호칭은 이름 대신 사용되는, 정형화되지 않은 호칭 형태들임
	조캐메늘	(아이 이름+어마이)	
	조캐딸	(아이 이름+어마이)	
	조캐사우	성+서방	
② 여형제의 자녀	조캐	(아이 이름+아바이)	
	조캐메늘	(아이 이름+어마이)	
	조캐딸	(아이 이름+어마이	
	조캐사우	성+서방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특징 및 의의 '조카'는 친형제자매의 자녀 외에도 5촌 조카인 당질堂姪 또는 종질從姪, 7촌 조카인 재종질再從姪 등 한 항렬 아래 자녀 세대의 친척 범주를 아우르는 통칭으로도 폭넓게 사용되며, 친족 지칭뿐만 아니라 친족 호칭으로도 사용된다. 조카 범주 중에서 부계로 재종질까지는 당내친堂內親 성원이기 때문에 상복을 입는 유복친有服親으로서 친족 성원 역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은 양자 제도에서 숙항叔行 친족의 입양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언어 민속지-강원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서편(왕한석, 교문사,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충청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호

칭과 지칭 예절(류재봉,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조혼
早婚

정의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한 혼인 연령보다 더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풍속.

내용 고대나 고려 전기까지의 사서史書에서 조혼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 간섭기가 되면서 공녀貢女 징발 문제로 조혼이 행해지고, 예서제預壻制가 성행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성리학이 국시國是가 되었는데, 성리학에서는 가계 계승을 중시해 조혼 가능성이 높아졌다. 1440년(세종 22) 조정에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준해 남자 16세, 여자 14세 이상으로 혼인 연령을 정하였다.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남자 15세, 여자 14세 이상으로 성문화되었고, 예외적으로 양가 부모 중 한 사람이 병이 있거나 나이가 50세가 되었는데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상이면 관에 고하고 혼인할 수 있게 하였다.

갑오개혁甲午改革에서는 남자 20세, 여자 16세로 혼인 연령을 규정하였는데, 전근대 시대에 비해 남성의 혼인 연령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남자가 생계를 책임질 나이가 되어야 혼인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던 당시 지식인들의 관념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1896년의 『독립신문』 사설에서도 부부간의 화합이나 태어날 자녀의 건강 등과 함께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남자의 혼인 연령이 조선시대에 비해 갑자기 크게 높아져 현실성이 없자, 1907년 8월 14일의 소칙 20호 조혼 금지에 관한 건에서 남자 17세, 여자 15세로 연령을 변경하였다. 이는 일본 민법에서 따온 것으로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혼은 지역이나 성별,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전시 체제로 재편되고 징병과 징용, 정신대 징발 등 사회가 불안했던 1930년대에 조혼은 더 심해진다. 유산 계급은 남자의 조혼이 많은데, 1928년의 통계를 보면, 5~9세에 혼인을 하거나 심지어 2~3세에 혼인한 경우도 보인다. 이렇게 조혼을 한 경우, 남성은 여성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특히 남성이 신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부부간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무산계급 여자가 유산계급 남자와 혼인한 경우는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 입 하나 줄이려, 혹은 대가를 받고 딸을 판 것이었다. 어린 나이의 딸을 민며느리로 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신랑의 나이가 많아 14세 여자가 60세 넘은 남자와 혼인하거나, 14세 미만 여자가 30~40대의 장년 남자와 결혼하여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컸다. 부부간에 연령이 맞지 않는 조혼은 범죄로 이어졌다. 가출이나 방랑, 자살과 더불어 남편 살해나 방화 같은 여성 범죄가 일제강점기 내내 줄을 이었다. 아내와 형식상의 부부관계만 유지하고 신여성과 따로 살림을 차리는 경우도 역시 조혼의 폐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혼인 연령은 시대를 반영한다. 전근대 시대에는 가계 계승을 위해, 일제강점기에는 사회불안과 경제적 궁핍으로 조혼이 행해졌다. 2007년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으며, 성년인 만 19세 이상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육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혼인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초혼 연령은 2001년 남자 29.6세 여자 26.8세, 2011년 남자 31.9세 여자 29.1세, 2021년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만혼이 대세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개화 지식인들의 조혼에 대한 인식(박경, 여성과 역사16, 한국여성사학회, 2012), 일제하 조혼 문제에 대한 연구(김경일, 동아시아문화연구4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7), 조선 전기 혼인제와 성차별(장병인, 일지사, 1997),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통계청(kostat.go.kr).

필자 권순형(權純馨)

족계
族契

정의 한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사는 가까운 친척들이 상호부조, 위선 사업, 친목 도모 등을 위해 만든 자발적 결사체.

내용 족계族契는 종계宗契, 문중계門中契, 문계門契, 성계姓契, 문회門會 등으로 불리는 일종의 계회契會이다. 이는 가까운 친인척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 마을 혹은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촌수나 항렬行列이 가까운 동성친同姓親 또는 이성친異姓親 등으로 구성되었다. 족계는 기존의 행정 촌락 단위에서 구성된 공식적 조직이라기보다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들이 모여 선조에 대한 봉사와 분묘 수호 등 위선爲先 사업, 종족 간 상호부조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는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구휼, 혼·상례와 같은 길흉사, 수화도적水火盜賊 같은 환란을 당하였을 때 수시로 곡물 등을 추렴하여 서로를 돕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 계의 경우 계원 간에는 동일한 양의 곡식이나 물품을 거두어서 필요한 때마다 돌아가며 지원한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균형교환이 이루어지면서도 경제적 이해만을 추구하기 위한 식리계殖利契와 달리 혼사婚事·상사喪事가 있는 당사자들에게 상부상조하는 마음이라는 사회심리적 안전장치 기능을 한다. 이 조직은 영구적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이는 마을 내·외의 친소관계망과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여 만들어지며, 종족촌 구성원 간 갈등을 중재하고 통제하는 장치로서 친족 간 결합과 적서嫡庶 간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전통사회의 족계로는 1583년(선조 16)에 이황李滉(1501~1570)의 후손들이 만든 온계동중친계溫溪洞中親契를 꼽을 수 있다. 이 족계는 구성원의 특성과 규약 및 기능을 잘 나타낸다. 이 계의 구성원은 증조曾祖나 고조高祖를 같이하는 내·외손 중 형제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진성이씨眞城李氏 혈족과 외손, 사위까지 포함되어 있다. 모임은 봄과 가을에 개최되며, 유사有司 2인을 두고 혼사·상사에 부조해야 할 내용으로 혼인 때는 닭이나 꿩 한 마리와 벼 2섬을 보내고 상사 때는 회문을 돌리는 한편 장노壯奴 2명을 상가에 보내는데 상구喪具를 두 벌 지원하고 국수·떡·술·과일 등을 보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처벌 규정에는 춘추 모임에 불참하거나 거두어 보내주는 물건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유사가 소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원이 어른과 아이의 예절을 모르고 힐난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벌을 가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매상買上의 곡식은 항상 80석을 유지하도록 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자료와 더불어 구성원의 사회적 속성을 잘 알 수 있는 족계는 1633년(인조 11) 무렵 충주박씨忠州朴氏 감찰공監察公 박진朴秦(1366~1422)의 7~11세 후손들이 공주목公州牧, 公山 유성현儒城縣 도동道洞에 있는 감찰공의 묘소에 모여 결성한 도산족계道山族稧의 좌목座目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1694년 무렵까지 누가적累加的으로 추록追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이다. 여기에 기록된 구성원을 보면 처음에는 동종 친척 30인을 비롯하여 외손과 서자 및 서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가 17세기 전·후반 사이에 외손들은 점차 배제되었다. 그 범위는 소문중보다 좁다.

언급한 족계들에는 묘전墓田, 묘위답墓位畓, 제전祭田, 계전契錢 등과 같은 일부 공동 재산이 있다. 이러한 족계의 재산은 대체로 조상제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위선사업과 종가의 지원 등에 국한하여 사용되었지만 문제가 발생한 종족의 길흉사 부조에 사용되고, 수시로 각출醵出하였다. 돈목敦睦을 위해 조직된 족계는 구성원 간의 사회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특징 및 의의 족계는 혈연적·지연적 친소관계망을 토대로 한 친인척들이 동일한 가치의 곡식이나 물품을 교환하면서 호혜성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한 자발적 결사체이다. 마을이나 지역에서 양반 동성친과 이성친들은 선조에 대한 제의 수행과 묘소 관리 등 위선 사업, 혼·상례 때의 상호부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구휼救恤과 같은 공동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족계를 만들었다. 부계출계의 친족체계가 공고해진 17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계에 참여하였던 이성친은 배제되고 가까운

혈족 중심의 계 조직으로 변화되었다.

계칙契則에는 입의立議, 좌목座目, 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명과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계의 명칭, 위토와 같은 공동 재산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계의 운영을 책임지는 유사와 계회의 개최 시기, 구성원의 의무와 역할, 도덕적 규범, 제재 규칙 등이 명기되어 있다. 이는 당시 지역화된 친족 관계와 가까운 친인척들의 범위와 활동, 결사체의 구성방식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고문헌 조선후기 동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정진영, 한국사론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한국 족계의 연원과 성격(정구복, 고문서연구16, 한국고문서학회,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성용(朴晟慵)

족내혼
族內婚

정의 자기가 속한 사회집단 또는 친족집단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혼인제도.

개관 족내혼族內婚, endogamy은 자기가 속한 친족집단 내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혼인제도로, 친족집단의 순수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왕족들 사이에 족내혼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외척에 의한 권력 분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족내혼은 엄밀하게는 친족집단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지만 사회계층·신분·민족을 기준으로 내혼內婚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혼반婚班, 인도의 카스트 내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용 엄밀하게 말하면 족내혼은 자기가 속한 친족집단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혼인제도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친족집단뿐만 아니라 사회집단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혼인제도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친족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족외혼이 일반적이어서 족내혼은 특별한 사례만 있기 때문이다.

족내혼의 전형적인 사례는 유대인들이 이민족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다. 그들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인식으로 타민족과의 결혼은 혈통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족내혼 전통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족집단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사례는 주로 왕실에서 일어났다. 왕가의 특수한 권력이 일반인에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왕족들 사이에만 혼인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신라시대의 골품제도骨品制度하에서 성골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성골이어야 하였기 때문에 성골인 왕족들 사이의 혼인만 허용되었다. 고려를 세운 왕건王建 역시 호족들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왕비를 두었고, 왕자와 공주들이 일반인과 혼인할 경우 외척外戚의 영향력 강화로 왕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왕자와 공주들이 서로 결혼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왕건의 아들인 광종光宗은 이복누이들과 결혼하였다.

혼반은 내혼의 한 사례이다. 전통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양반은 유사한 신분의 양반과 혼인하는 계급 내혼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혼반은 양반들이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상호 혼인하는 연줄혼의 결과물이었다. 혼반은 단지 사회적 지위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학통學統과 사색四色도 고려하였다. 진성이씨眞城李氏가 광산김씨光山金氏나 의성김씨義城金氏와 혼반을 구성한 것은 학통을 고려한 것이며, 하동정씨河東鄭氏가 은진송씨恩津宋氏나 연안이씨延安李氏와 혼반을 구성한 것은 같은 노론이었기 때문이다.

신분 내혼 사례는 인도 카스트의 내혼이 대표적이다. 카스트라는 강력한 신분제도에서 인도인들은 같은 카스트 사이에서만 결혼하였고, 다른 카스트 사이에 결혼하면 그 자녀는 불가촉untouchable이라는 천민 계층에 속하게 되었다. 지역도 내혼 기준이 된다. 지역 간 대립이나 갈등이 심한 경우 지역 내혼이 권장되고 지역 간 결혼은 기피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족내혼은 일반적인 혼인 규정은 아니었다. 혼인은 혈통집단 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였으므로 족외혼이 일반적인 혼인 규정이었다. 그러나 왕실의 경우 권력의 분산을 막기 위해 족내혼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도 전략적인 목적으로 행한 일

시적인 수단이었을 뿐 문화적인 규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라시대의 성골 간 결혼이나 카스트의 내혼 등은 문화적 규정이었지만 그것을 엄격한 의미에서 족내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기가 속한 사회집단 안에서 배우자를 구한다는 의미의 내혼이라는 관점으로는 볼 수 있다.

족내혼이나 내혼은 특정한 집단이 가진 혈통의 순수성이나 권력의 독점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 측면이 강하다. 족외혼이 집단 외부와의 관계 강화라는 성격이 강하다면 족내혼은 권력과 문화 자본의 배타적 소유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문화인류학개론(한상복·이문웅·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현대문화인류학(Roger Martin Keesing, 전경수 역, 현음사, 1985).

필자 김창민(金昌民)

족보
族譜

정의 친척 관계를 계통적으로 증빙하는 명부.

내용 족보族譜는 친인척 관계를 계통적으로 증빙하는 명부를 말한다. 한국의 족보는 중국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족보 편찬의 주체나 목적, 계보 형태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고대국가는 지배층에 대한 집권적 통치의 필요성에 따라 족보를 작성토록 하였다. 그런데 송대宋代에 귀족의 특권이 부정됨에 따라 민간에서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족보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편찬을 주관하는 족보를 '관찬 족보', 이에 대해 민간에서 스스로 편찬한 족보를 '민간 족보'로 나누어 이해하기도 한다. 한국의 족보는 주로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각각 계보의 형태를 달리한다.

중국 고대 국가에서는 백관百官의 출신을 확인하기 위한 계보系譜를 '도보국圖譜局'에 제출케 하고, 여러 성씨姓氏를 통합하여 족보를 편찬하였다. 한대漢代에 편찬된 '관보官譜' '씨족편氏族篇' '만성보萬姓譜' 등이 그 초기의 것이다. 고려 초기에 지역마다 '성관姓貫'을 분정分定하는 정책이 시도되었다. 한식漢式 성씨가 지배 계층에 일반화되면서 정부는 부계 선조의 출신지에 따라 본관本貫을 붙여 유력 성씨를 구분하고, 지역사회의 지배권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일본 오키나와현沖繩県에 있던 유구국流求國의 족보는 정부가 편찬을 주도한 족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준다. 유구국은 1689년에 '계도좌系圖座'를 설치하여 상층 신분인 '사족士族'에 한해서 족보를 작성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재 내용을 확인하였다. 출생자마다 관인을 찍어 사족 신분의 가족원임을 증명해 주는 유구국의 족보는 귀족적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대장이었던 셈이다.

한국에서 계보를 기록한 호적戶籍은 일찍이 고려왕조에서부터 발견된다. 현존하는 고려왕조의 호적에는 호戶의 대표자 부부에게 각각 부, 조, 증조, 외조를 포함하는 '사조四祖'를 족보에 대신해서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적은 신분적 연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대장이었다. 더구나 고려 사대부士大夫의 호적에는 소위 '팔조호구八祖戶口'가 다수 발견된다. 호의 대표자 부부에게 각각 사조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조모, 증조부모, 외조부모의 사조 등을 번잡하게 기록하게 하는 호적이다. 지배층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밝히는 계통적 확인은 관료를 임명하는 증빙으로 요구되었다. 사조들의 사조까지 기록하는 호적은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발견된다. 이런 호적의 계보 기록은 고려 말기 귀족적 신분제가 동요함과 더불어 조선 초기에 신분제가 소멸함을 나타낸다.

한편 한국에서는 15세기에 비로소 민간 차원에서 족보가 편찬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1476년에 편찬된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이다. 1565년에 중간된 『문화류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에는 1423년에 간행되었다는 『문화류씨영락보文化柳氏永樂譜』의 서문이 실려 있으나 당시의 계보는 현존하지 않는다. 이들 초기의 족보는 중국의 족보처럼 부자 관계로 연결되는 계보가 아니라 부계여성과 그 자손, 즉 사위와 외손의 자녀로도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자녀보子女譜' 혹은 '내외자손보內外子孫譜'의 계보 형태를 띤다. 따라서 족보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은 여러 다른 성씨를



안동권씨성화보 | 가로29 세로43 | 조선 전기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가졌으며, 그 가운데 계보 기준을 제시한 안동권씨安東權氏나 문화류씨文化柳氏 인물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족보 편찬에 참여한 자들은 주로 중앙관료를 지냈거나 그 가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각자의 선조들이 맺은 혼인관계를 근거로 계층적 연대를 꾀한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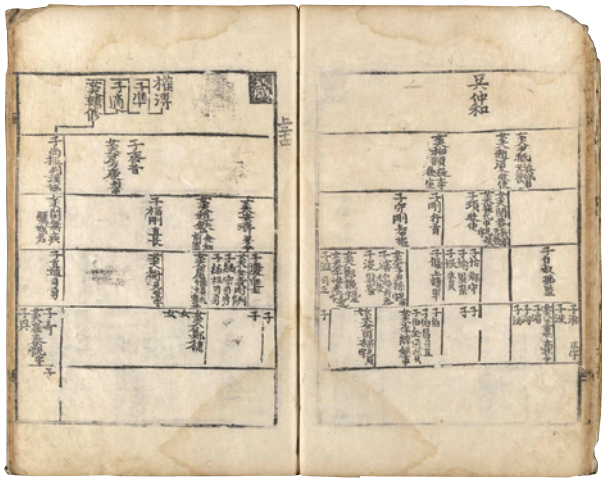
이들 족보의 계보 정보는 우선 호적의 사조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단지 호적의 사조는 본인으로부터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인 반면에 족보는 동일 선조로부터 후손으로 내려오는 계보이다. 조선 전기의 족보에 보이는 '자녀보'는 각자의 호적에서 부—조—증조로 올라가는 직계존속이나 외조 가운데 동일인물을 찾아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족보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 양측의 선조들에 대한 혼인 정보 가운데 다른 사람이 제시한 계보의 동일인물에 선택적으로 연결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안동권씨나 문화류씨의 부계자녀에 닿도록 함으로써 그 시조로부터 자녀의 자녀 후손들로 내려가는 여러 성씨의 가족을 하나의 족보에 담게 되었다.

『안동권씨성화보』에는 조선 후기 안동권씨 족보에 등재된 10여 계파 가운데 두 계파의 부계남성만이 기재되었다. 1476년 『안동권씨성화보』가 3권으로 편찬된 이래 1606년 『안동권씨을사보安東權氏乙巳譜』가 동일한 자녀보 형태로 16권이 편찬되었으나 간행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여기에는 『안동권씨성화보』에 나타나지 않던 안동권씨 부계남성의 계파가 새롭게 기재되었다. 그런데 1654년에 간행된 『안동권씨갑오보安東權氏甲午譜』는 부계남성의 계보만을 추려서 단권으로 작성되었다. 여러 성씨의 인물들을 등재하기 위해 내외 선조들을 두루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부계친족에 한해 여러 방계의 계보가 수합된 것이다. 나아가 1701년에 편찬된 『안동권씨신사보安東權氏辛巳譜』는 안동권씨 부계남성 중심의 계보 기록으로 13권에 이르는데 여기에도 세 계파가 새롭게 등재되었다.

족보가 편찬된 이후 수십 년이 지나 부계친족 중심으로 족보가 중간重刊될 때는 이후 출생한 부계후손들을 포함하여 이전 족보에 나타나지 않았던 방계친족이 새롭게 등재되었다. 조선 후기 족보에는 증가한 부계친족을 여러 방계 계보로 나누어 등재하는 한편 몇 대나 이어 가던 외손 계보는 1~2대로 축소하여 등재하였다. 그러나 부계여성의 계보가 축소되는 대신 부계남성의 처부妻父 기재로 여러 성씨의 인물들이 재등장하였다.

조선 후기 족보의 대부분은 조선 전기의 '자녀보'와 달리 부계남성 중심의 계보 형태를 보여 준다. 계보 형태의 변화 요인은 우선 등재 인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있다. 동일 계층에 한정된 통혼권通婚圈 이내의 혼인이라 하더라도 후대로 가면서 혼인관계를 맺은 많은 성씨의 후손들을 하나의 족보에 망라하기는 어려워졌다. 부계남성 자손만 보더라도 새롭게 등장하는 계파의 인물들을 포함하면 그 수가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성씨별로 족보 편찬을 분담하되 부계남성 계보를 주축으로 그 배우자 정보를 병기하여 혼인관계를 확인하였다. 각 가문의 족보는 부계남성의 신분과 혼인관계의 정통성을 밝히고, 그것을 다른 가문의 족보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의 신분적 위상을 고려하여 혼사婚事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족보에 등재되는 인물들과 그 자녀들의 인신 정보를 훤히 꿰뚫고 있는 '보학譜學'의 발달이 요구되었다. 조선 전기 족보처럼 동일 계층 사이의 혼인관계로 맺어진 인물들의 신분적 결합이라는 성격은 조선 후기 족보에도 일관된다.

조선시대의 족보는 중국 송대 구양수歐陽修의 『구양씨보도歐陽氏譜圖』와 소순蘇洵의 『소씨보도蘇氏譜圖』에서 그 전형을 구하고 있다. 구양수가 작성한 보도는 구양경달歐陽景達로부터 구양수에 이르는 여러 세대의 세



안동권씨성화보 | 가로29 세로43 | 조선 전기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계世系를 기록하고 있으나 직계선조의 중간 누대에 걸친 계보가 단절되기도 한다. 『소씨보도』는 소순의 고조로부터 시작하여 형제의 자식에 이르는 계보만을 제시한다. 소순은 황제의 자손과 처음으로 관직에 오른 자의 자손만이 대종大宗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계보에 고조를 넘지 않는 소종小宗의 법을 중시하였다. 구양수도 계보는 알 수 있는 세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민간에서도 고조를 넘는 대종의 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의 족보에도 이러한 종법宗法이 적용됨으로써 불천위不遷位를 제외한 고조까지의 4대 봉사奉祀만 허용하는 등의 제사 원칙이 제시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족보에서 이전과 달라진 기재 사항으로 부계남성의 처부妻父를 기록하는 점 이외에도 부계남성 부부의 생몰연도와 각자의 묘지가 기록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사망 월일과 묘지 위치 정보는 제삿날인 기일忌日을 공시하고 선영先塋에서의 묘제墓祭를 함께 하기 위한 기록이다. 조선 전기에 자녀 모두가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윤회봉사輪迴奉祀'나 적자가 없는 경우 외손이 제사를 지내는 '외손봉사外孫奉祀'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부계남성이 선조의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조들의 혼인관계가 여러 성씨의 가족들을 신분적으로 결속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던 조선 전기의 족보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의 족보도 여전히 혼인관계 결성이 신분적 정당성을 증빙하는 자료였다. 족보에는 부계친족이라 하더라도 적자녀嫡子女에 한해 등재되었으며, 향리층과 상민常民도 배제되었다. 첩의 자식인 서얼庶孼은 신분을 밝히고 등재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인물과의 혼인관계도 좀처럼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다. 족보를 중간할 당시 '양반'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몰락한 후손들도 그 선조의 계보와 더불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물 등재의 신분적 배타성은 어머니의 신분을 판별 기준으로 삼고 아버지의 신분은 부차적이었던 데에서 기인한다. 족보에는 부계자손 가운데 신분적으로 선택된 자만이 등재되었던 것이다.

한편 혼인하는 남녀의 신분적 격차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신분 간 이동이 가능한 유동성이 신분제의 또 다른 특징이다. 족보 등재에서 배제되었던 향리와 서자의 후손들이 족보에 등재되어 '양반화兩班化'를 실현하는 경우가 19세기 이후에 늘어나고, 20세기 전반의 족보에 이들의 편입이 급증하게 된다. 신분 격차를 전제하지 않는 부계친족의 결집은 이로부터 거론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족보는 거주지를 달리하는 여러 성씨의 인물들이 중앙관직자를 경임更任한 가족 중심으로 신분적 결집을 시도하여 편찬되었다. 조선 후기 대동보의 편찬은 부계선조로부터 대대로 거주해 온 세거지世居地에서 타지로 이주하는 친족들로부터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종의 종손宗孫이 대를 이을 적자가 끊어져 계자系子를 들이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지역에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며 여러 대에 걸쳐 세거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세거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신분적 위상을 분명히 할 수 있었지만 그로부터 이주한 가족들은 신분적 위상이 타지에서 바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족보에 등재되어 출신 성분이 증명될 필요가 있었으며, 이것은 혼인관계를 맺는 데도 중요한 문제였다. 동일 성관의 부계남성이 모여 사는 '집성촌集姓村' 내부에서 가족 간의 부계친족 관계는 후대로 갈수록 점차 멀어지기 마련이다. 반면에 족보 편찬에 참여한 후손들 사이의 유대 강화나 집단적 결집은 주거지역을 넘어서서 요구되었다.

한국의 족보에는 하나의 성씨를 기준으로 계보를 작성하는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민간 족보와 계보 형태나 편찬 목적을 달리하면서 여러 성씨의 계보를 망라

하는 족보들이 있다. 우선 과시科試에 합격한 자들의 계보를 성관별로 기록한 족보로 문보文譜, 무보武譜, 역과보譯科譜, 의과보醫科譜, 의역주팔세보醫譯籌八世譜 등이 있다. 또한 음직蔭職으로 관료에 진출한 자들의 음보蔭譜와 진신보縉紳譜 등이 있다. 『남보南譜』와 『북보北譜』는 당파黨派의 주요 가계를 성씨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외에 내시의 계자系子 계보를 기재한 『양계세보養系世譜』는 부계 계보로 계승되는 형식을 취한다.

유명 부계 계보를 여러 성씨에 걸쳐 망라한 족보를 '만성보萬姓譜'라 한다. 어명으로 편찬된 1466년의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은 조선 초기에 유력 성씨의 가족들을 집권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관찬 족보라 할 수 있다. 민간에서도 『씨족원류氏族源流』 『제성보諸姓譜』 『성원총록姓苑叢錄』 등이 편찬되었다. 『잠영보簪纓譜』 『동국세보東國世譜』와 같은 족보는 당시 주요 인물들의 성관별 부계남성 계보를 밝히면서 특히 관직의 경임 관계에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동향안세계원류河東鄕案世系源流』는 『하동향안河東鄕案』에 등재되었던 인물들로부터 후대로 내려오는 부계 계보를 모은 것이다. 이 외에 20세기에 편찬된 만성보로는 『백씨통보百氏通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청구씨보靑丘氏譜』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족보는 친척親戚 관계를 계통적으로 증빙하는 명부를 말한다. 족보는 동아시아 고대 왕조 국가가 지배층에 대한 집권적 통치의 필요성에 따라 작성토록 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중국 송대에 과거제科擧制를 통한 관료로의 진출이 모든 양인에게 열리고 귀족의 특권이 부정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민간에서 족보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전기의 족보는 편찬에 참여한 여러 성씨의 가족들이 선조들의 혼인관계에 근거하여 신분적 결합을 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 후기 족보는 부계남성 중심의 계보로 전환되었는데 여러 성씨의 부계친족이 부계남성의 신분적 정통성과 통혼권 내의 혼인관계를 증빙하였다.

참고문헌 13~16세기 호적과 족보의 계보형태와 그 특성(손병규, 대동문화연구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15~17세기 족보 간행과 참여계층 연구(권기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동아시아세계 속의 한국 족보(宮嶋博史, 대동문화연구7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조선왕조 1600년경 편찬 족보의 계보형태와 특성(손병규, 대동문화연구7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한국의 성씨와 족보(이수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족보(정승모,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系圖が語る世界史8(歷史學硏究會, 靑木書店, 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손병규(孫炳圭)

족외혼
族外婚

정의 자기가 속한 친족집단의 밖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혼인제도.

개관 혼인婚姻은 집단 간 동맹을 위하여 여성을 교환한다는 성격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자기가 속한 친족집단의 외부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관행이 생겼고, 이를 족외혼族外婚, exogamy이라고 한다. 족외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규범이 근친상간 금기incest taboo이다. 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 제도는 근친상간 금지 규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용 족외혼은 자기가 속한 친족집단의 밖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혼인제도를 말한다. 족외혼의 단위가 되는 친족집단은 사회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주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동본불혼의 관행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 〈민법〉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과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민법〉 제809조).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 Strauss는 초기 인류는 군단을 이루고 살면서 군단 안에서 짝을 찾아 자녀를 낳고 기르는 방식(족내혼)으로 생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군단이 더 큰 사회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서 남자들이 자기 군단의 여자를 포기하고 다른 군단에서 배우자를 찾음으로써 군단을 넘어 보다 큰 사회로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지만 족외혼을 통해 군단 간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레비스트로스는 집단 간 여자 교환을 통한 사회적 결합 강화를 사회조직의 핵심으로 이해하였다.

우리나라의 동성동본불혼 제도는 족외혼의 대표적

인 사례이다. 성姓과 본本이 같은 동성동본은 동일 시조始祖에서 유래된 씨족이기 때문에 씨족 내에서 혼인하는 것은 누이와 결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어 혼인이 금지되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는 동성동본 간에도 혼인이 허용되었으나 유교를 국가통치의 기본으로 삼은 조선시대에는 동성동본불혼 규정이 보편화되었다.

동성동본불혼 규정은 김해김씨金海金氏와 김해허씨金海許氏 사이에, 그리고 제주도의 고씨高氏·양씨梁氏·부씨夫氏 사이에도 적용되어 이성동본異姓同本 사이의 혼인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시조가 같은 씨족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동성동본불혼 규정이 완화되어 8촌 이내의 혈족만 금혼 범위로 정하고 있다.

족외혼이 문화적 규범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자기 집단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조건은 근친상간 금기로 나타났다. 근친상간 금기는 근친, 즉 자기가 속한 친족집단의 이성과는 결혼뿐만 아니라 성관계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다. 모든 사회가 근친상간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범위는 서로 다르다. 각 사회가 근친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친상간 금지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제도적이며 문화적인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이 근친과 성관계를 하거나 혼인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문화·제도적으로 허용된 것인가의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4촌 간에도 혼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문화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근친상간 금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징 및 의의 족외혼은 외혼제의 한 가지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외혼제는 자기가 속한 사회집단의 외부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며, 족외혼은 자기가 속한 친족집단의 외부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혼제는 자기가 속한 사회계층이나 지역집단·종교집단의 밖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족외혼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다.

족외혼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배우자를 구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들도 있다. 예를 들면 두 집단이 서로 여자를 주고받는 한정 교환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배우자를 구하는 데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사회적 연대 확장에는 제한적이다. 반면 기존에 여자를 준 집단으로부터 배우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집단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일반교환 방식도 있다. 이 방법은 사회통합 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문화인류학개론(한상복·이문웅·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현대문화인류학(Roger Martin Keesing, 전경수 역, 현음사, 1985).

필자 김창민(金昌民)

종가
宗家

정의 특정한 혈연집단에서 대대로 적장자嫡長子를 중심으로 한 부계혈통의 정통성이 계승되어 온 집.

역사 종가는 특정 가문의 중시조中始祖로부터 적장자로 계승되어 온 집을 말한다. 종가는 종법제도宗法制度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종법은 동질성이 있는 하나의 혈연집단을 피라미드 체계 속에서 안정되게 운영하는 논리이자, 그 집단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이다. 종법에 따르면, 전체 부계친족집단을 가리키는 대종大宗과 고조부 이하의 각 조상을 중심으로 하는 친족집단을 가리키는 소종小宗이 있다. 대종의 종가를 대종가, 소종의 종가를 소종가라 한다. 이론상으로 시조로부터 적장자로만 이어진 대종가도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종가는 거의 없다. 종법이 조선 중기에 도입되어 점진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종법에 없는 파종派宗의 개념에 기초한 파종가派宗家가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종가이다. 파종가는 조선시대에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공적을 쌓았거나 덕망이 높아서 불천위不遷位로 추대된 현조顯祖로부터 성립된 종가이다. 그러므로 적장자로 이어지는 집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집만이 자타가 인정하는 종가로 인식된다.

불천위는 국가를 위한 공헌과 학문적 업적에 따라



충재 권벌 종가 | 경북 봉화 | 국립민속박물관

임금이 시호를 내리면서 신주를 사당에서 옮기지 않고 자손 대대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불천위로 추대된 인물은 사회적으로 업적과 덕망을 공인받은 사람이다. 초기에 불천위로 추대된 인물은 대개 주자학(성리학)에 몰두한 사림파였으며, 차츰 후대로 올수록 높은 관직에 올랐거나 붕당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거 불천위로 추대되었다. 분명한 것은 문중별로 불천위 조상처럼 가문을 빛낸 두드러진 조상을 중심으로 종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종가는 영조英祖 이전 국불천위國不遷位를 받은 중시조 또는 파시조를 제사 지내는 집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천위는 국불천위, 유림불천위, 문중불천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은 의미에서 서원에 배향되어 있거나 현조가 있는 문중의 큰집까지 포함하여 말하기도 한다. 16세기 즈음 종가는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역과 가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7~18세기에 문화적 전형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내용 종가는 종법제도에 따라 적장자 중심으로 부계혈통이 계승되는 집을 말한다. 몇 가지 요건을 더 거론하면, "현조顯祖를 중시조 혹은 파시조로 하여 오랜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가?" "불천위 조상이 있는가?" "사당·고택·위토位土 등을 갖추고 있는가?" "문중이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공인을 받았는가?" 등의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어느 정도 구비되었을 때, 오늘날 종가로서 정통성을 인정받는다. 다만,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전통과 가문의 사정에 따라 종가로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종가의 종손宗孫과 종부宗婦의 삶에는 몇 가지 책무와 실천이 수반된다. 종손의 가장 큰 의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계를 계승하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종가의 가계 계승을 위해 각 문중의 종친회나 화수회花樹會 등에서 족보族譜를 간행한다. 족보 간행은 혈통을 계승하고 가문을 잇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가의 조상제사로는 불천위제사·묘제·기제사 등이 있다. 안동권씨安東權氏 시조인 권행權幸의 묘제에는 전국에 있는 후손들이 묘제 하루 전날 묘가 있는 경상북도 안동 서후면 성곡리의 능동재사陵洞齋舍에 모여 숙박을 하며 다음날 묘제에 참석한다. 묘제에 참석하

는 사람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인임에도 조상을 존숭하고 조상제사에 참여하여 혈족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종가에서는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조상제사뿐만 아니라 종가를 방문하는 수많은 지손들과 손님들을 정성껏 접대하는 것 또한 종가의 실천과 의무인 것이다. 특히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을 마련하는 종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종가를 대표하는 종손과 종부는 문중 성원들의 관심 속에서 보호와 우대를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종가는 긴 역사적 시간 속에서 문중 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종손과 종부의 노력으로 가문마다 종가문화를 형성해 왔다. 종손과 종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지손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며 베풀어야 할 책무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먼저 나아가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춘궁기에는 곳간을 열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등 문중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솔선하는 것,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주체가 종가이며, 종손과 종부였다. 아울러 종손과 종부는 종가의 가풍과 조상의 유훈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진다. 이들은 차종손次宗孫과 차종부次宗婦의 교육에도 적극적이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종가의 체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썼다. 비슷한 지체의 가문과 혼인을 통한 혈통의 계승, 학문 활동을 통한 학통의 계승,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가 재산의 관리 등이 바로 그러한 노력이었다.



충재 권벌 종가 사당 | 경북 봉화 |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유산의 측면에서 보면, 종가는 종택, 내림 음식, 가정교육, 의례, 고문서, 고문헌 같은 수많은 물질적·정신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이중 문화재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손, 종부, 문중 성원, 나아가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결속하여 종가문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종가는 오늘날 실생활에서 한국의 유교문화와 전통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 의무를 지키는 종가의 사례는 많다. 대표적으로 경상북도 경주 최부잣집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훈이 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 것, 재산을 모으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 것, 손님을 후하게 대접할 것, 흉년에 다른 사람의 전답을 매입하지 말 것, 집안 며느리는 시집온 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을 것,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등이다. 여기에서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봉제사접빈객'에 의거한 나눔과 사회적 배려의 정신이다.

경북 영양 석계종가의 석계 이시명의 부인 장계향張桂香(1598~1680)은 이사를 하는 곳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아이[孤], 늙어서 자녀가 없는 사람[獨]과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鰥],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寡]과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등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근심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었다. 그리고 산에 도토리나무를 심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웃을 도와주는 구황식救荒食으로 썼다.

특징 및 의의 종가는 한 혈연집단에서 누대에 걸쳐 적장자로 이어온 집을 가리킨다. 개별 종가의 출발이 되는 조상은 대부분 중시조에 해당하며, 그런 점에서 한국의 종가는 일반적으로 파종가이다. 종가는 종손이 사는 집으로서, 두드러진 종가는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부터 출발한 집이다. 그러므로 종가는 500여 년 이상 한국의 유교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한 역사·문화의 총체적 산물이다.

참고문헌 가족사회학(조정문 외, 아카넷, 2000), 경상북도 종가문화연구(경

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경상북도, 2010), 전통의 맥을 잇는 종가문화(한국국학진흥원, 2008), 종가문화의 특징과 의의(이종성, 인문학연구8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종가의 사당을 통해본 조상관(배영동, 한국민속학39, 한국민속학회, 2004), 한국의 명문 종가(이순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배영동(裵永東)

종법
宗法

정의 친족조직 및 제사의 계승과 종족宗族의 결합을 위한 친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

역사 종법은 중국 주대周代에 성립한 종족宗族의 조직규정으로 적장자상속제 확립을 위하여 생긴 제도이다. 중국의 종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고려 말기로, 주자학 수용과정에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시행이 주장되었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종법이 더욱 주목된 것은 조선 전기이나, 당시의 예제는 사가私家보다는 왕가王家의 예禮가, 『주자가례』보다는 『예기禮記』가 주목받았으며, 조선왕실의 전례를 집대성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도 바로 이러한 영향 속에서 편찬되었다. 특히 조선 전기는 성리학의 보급으로 고려시대의 불교의례와 비종법적인 친족체제가 점차 성리학적 예제禮制로 개혁되는 과도기였다.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혼인에서의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었다. 게다가 친족의 인식범위나 제사 및 재산의 상속 같은 제반 사회관습에서도 과도기적 성격은 부부, 자녀, 친손과 외손을 동일시하여 양계친족兩系親族, 즉 비부계친족체계非父系親族體系를 존속하게 하였다. 이처럼 남과 여, 부계와 모계를 동등하게 대하는 친족체계의 관행 덕분에 자녀균분상속, 자녀윤회봉사가 일반화하였고, 족보도 자계子系와 여계女系가 동일한 체계와 비중으로 나이순서에 따라 기재되었다.

그러나 16~17세기에 사림의 정치·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지배층으로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교화를 강조함에 따라 『주자가례』는 과거의 왕실 전례와는 다른 계통의 가례, 즉 4례로서 사족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조오례의』보다 『주자가례』나 고례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 후 17세기에 종법질서나 친족의식이 변화하였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조선시대의 가족제도나 상속제도가 대체로 부계친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종법제도와 같은 형태라고 보았다. 그들은 남녀차별, 동성불혼, 장자봉사, 대가족제 같은 부계친족 중심의 가족제도나 상속제도가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일반적이었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1970년대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사회사 연구에 힘입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적장자 중심의 부계친족체계로 친족결합이 강화된 것은 1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사족들의 성리학 이해가 심화하고 『주자가례』가 적극적으로 보급되면서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제 역시 기왕의 부부, 부모, 자녀라는 수평관계에서 아버지, 남편,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수직관계로 재편됨으로써, 부부夫婦·부자父子·군신君臣·적서嫡庶·주노主奴·장유長幼의 철저한 상하 주종관계가 수립되었다. 17세기 중엽 이후 적장자 중심의 친족체계 아래에서 제사상속 및 분재에서의 장자우대 경향, 족보의 친족 수록범위 축소, 입양제도의 변화, 그리고 동족 마을의 형성 등으로 예제 차원에서의 관계 재편이 예증되었다. 부연하면 1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부계친족 중심의 문중 결속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가족결합 또는 친족결합의 새로운 양상이 정착되었던 것이다.

내용 종법은 우리나라 부계 친족조직의 근본을 이루는 법이며, 특히 집에서 행하는 기제와 밖에서 행하는 시제를 구분해 준다. 무엇보다 당내친의 범위를 정하고, 문중의 조직과 활동에 기본이 되는 법이 종법이다. 중국 주대의 종법제도는 동일혈족의 제사조직으로, '종宗'의 내부는 다수의 '족族'으로 구성되었고, 혈통에 따라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되었다. 일반적으로 대종大宗은 적장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조상을 모시는, '백세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종[百世不遷宗]'을 말하며, 같은 시조를 둔 종족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이다. 이에 비하여 소종小宗은 별자로서 고조·증·조부·부·자의 5대를 일족으로 하여 '5세五世마다 바뀌는 종[五世而遷]'이다.

소종은 '고조종高祖宗' 또는 '당내'라고도 하는데, 흔

히 일상용어로 '집안'이라 할 때 이 당내의 범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고조의 제사를 거행하기 위한 집단으로 삼종형제까지 포함된다. 대종의 범위는 성씨에 따라 다르며, 과거에 번창하였던 성씨들은 대종 내에 수백, 수만 명을 포함한다. 따라서 의미상으로 체계는 단일하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조직하기는 어렵다. 특히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일괄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친족제도상의 '파'이며 친족조직상으로는 '문중'이다.

조선 후기 이후로 일반화된 대종은 같은 시조를 둔 친족조직 전체를 집단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들 '파派'가 대종의 역할을 한다. '파'란 고관대작이나 유명한 학자로서 이름을 널리 알린 조상, 즉 파조派祖를 기점으로 형성한 하위집단을 말한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유명하여 한 파의 파시조가 되면, 다른 형제들은 다른 파의 시조들이 되는 것이다. 파시조는 문중의 중심인물이고, 파시조의 시호·호·관직·후손집거지 등을 상징화한 것이 파명派名이었다. '문정공파' '송암파' '승지공파' '청양파' 등이 그 예이다.

이들 문중을 형성한 명문가들은 향촌사회의 변화 속에서 지배력을 보장받는 방편으로, 혹은 자체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중, 종중 조직을 강화하였다. 대부분의 명문가는 17세기 초반~중반에 족계, 혹은 종계로 불리는 친족 조직을 창설, 자신들의 현조顯祖를 내세워 가문의 위세를 강조하고, 종가·선영·재실·서당 등 여러 족적 기구들과 상징적 기반들을 만들며, 종토宗土, 位土 등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갖추었다. 나아가 종중의 조직력과 위세를 배경으로 종중에서 배출한 인물의 추숭, 서원과 사우의 건립, 파보·족보·문집의 간행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종법에 의하여 이룩된 친족집단인 종중의 대표는 종손이다. 종손은 적장자손으로 종법에 따라 직계조상의 제사를 거행한다. 종손은 이처럼 문중의 대표자로서 제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계조상제사의 초헌관은 반드시 종손이 맡는다. 종손의 부인은 종부로, 집안에 따라서는 대종중의 종부에게 큰 권한을 주는 집도 있다.

문중 조직의 기본은 재산이다. 문중의 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필요할 경우 종손宗孫이나 문중의 재력가가 기부하거나 족인들이 갹출한다. 이와 함께 제사를 위한 위토와 묘소가 있는 선산, 묘소의 각종 석물石物, 그리고 제실 등이 이에 포함된다. 문중은 이러한 공동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계宗契를 구성하는데, 종계는 족계·종약·화수계花樹契로도 불렸다. 이들 자료에는 임원의 선출이나 의무, 구성원의 자격, 공동재산의 관리나 운영, 범칙자에 대한 처벌 등이 기록되었고 이와 함께 좌목, 규약이나 치부책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징 및 의의 종족사회란 종법을 근간으로 한 혈연집단이 촌락 또는 향촌사회를 주도해 가는 사회체제로 동양사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으로부터 종법을 수용함에 따라 전개된 한국의 종법질서는 중국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 내용은 아주 다르다. 중국의 종법은 부계혈통의 적장자가 가계를 계승하기는 하지만, 종족 내부 또는 타 종족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강한 수직적 구조와 상하 위계질서를 중시하여 종족 내부에서 적서의 차별이 엄격하였고, 장자와 차자 나아가서는 종손과 지손의 지위나 경제적 기회도 평등하지 않았다. 적손嫡孫들의 서손庶孫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어, 서손들의 가계계승권 보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부모의 재산상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장자의 절반 또는 그 이하의 재산을 받아야만 했다. 또한, 적장자로 계승되는 종손宗孫의 존재는 절대적이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종손의 절대적 지위는 단절되지 않았으며, 조상에 대한 제사권과 종산 및 종가 건물의 상속권은 종손의 고유 권한이었다.

참고문헌 16~17세기 하회 풍산류씨가의 종법 수용 과정(김명자, 대구사학96, 대구사학회, 2009), 조선중기 예학사상사(고영진, 한길사, 1995), 조선에 있어서 주자 종법 사상의 계승과 변용(이승연, 국학연구19, 한국국학진흥원, 2011), 조선전기의 종법제도 이해과정(지두환, 태동고전연구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84), 조선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이해준, 역사와 현실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배경(이해준, 동양학2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3), 종법제의 역사적 고찰과 그 사회적 역할(이홍순, 유학연구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5),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필자 이해준(李海濬)

종부
宗婦

정의 종가의 종손 부인으로, 한 가계의 적장자인 종손의 적처嫡妻.

역사 종부宗婦가 유교 여성의 종법적宗法的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17세기 조선사회에서 종법이 정착된 시기와 연관이 있다. 물론 유교 사회의 종법은 남계중심男系中心으로 형성된 친족조직 원리였으므로 여성의 종법적 지위가 남성과 대등하고 독자적 위상을 보장받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던 총부冢婦의 주제권主祭權이나 입후권立後權 및 딸 봉사나 외손 봉사 관행 등은 여성의 종법적 지위를 가늠케 하는 주요한 단서로, 여전히 권리가 행사되고 있었다.

특히 총부는 오늘날 종부라 불리는 종가宗家의 맏며느리를 상징하는 유교 여성의 모체라 할 수 있으며, 즉 종손宗孫의 부인인 종부를 일컫는다. 비록 그 연원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명종조明宗朝(1545~1567)에 사헌부司憲府가 "우리나라의 풍속風俗은 장자長子의 아내를 총부로 삼아 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라든가 "장자가 아들이 없이 아내와 함께 죽었을 경우에는 차자次子의 아내가 장자의 아내를 대신해서 총부가 되어 선조先祖의 제사를 받드는 것입니다."라고 한 기록을 보면 총부는 조선사회 성립 이전에 풍속으로 존재해 오던 고려사회의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사회의 종법주의 정착 과정 중에 자리매김된positioned 총부의 지위는 조선사회의 유교화 과정의 사회 정치적 논쟁 가운데 맥락적으로 형성된 유교 여성의 위치를 반영한다. 그리고 『예기禮記』에 나타난 총부의 역할은 제사를 받들고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일이다. 특히 총부는 여타의 며느리들[介婦]에 대해 독점적 지휘권을 가진다. 그런데 조선사회에서 총부는 양반 가문에 혼입混入한 장남의 부인을 일컫는 명칭이자 양반 가문 적장자嫡長子의 부인인 맏며느리에게 부여된 지위이자 친족집단의 종법상 맏며느리에게 부여된 여성의 구조적 지위인 것이다.

내용 대체로 종가는 한 가문의 불천지위不遷之位 중시조中始祖를 기점으로 하여 직계로 이어져 온 맏집을 의미하고, 그 집 적장자의 부인을 종부라 한다. 그런데 종부는 단순히 종손 부인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종부는 종가라는 한국 사회의 유가 전통을 계승한 친족집단의 특별한 여성으로, 종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아헌례 | 경북 상주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대개 종부들은 유가 가문에서 성장하여 유가적 전통을 계승하는 종가 집단의 구성원으로 혼입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유교 전통에서 종부의 위치가 일반 가정의 아내 지위와는 차별화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남편의 친족공동체 삶 한가운데로 혼입한 종부는 전통적 여성의 덕목인 부덕婦德을 실천함으로써 유교적 도덕성을 내면화한다. 이는 종부들이 혼입 전 친가에서 학습받은 전통 교육에 힘입은 것으로, 종부들에게 유교 도덕성은 근대적 학교 교육보다 철저한 가정교육에서 경험한 실기 위주 교육이 여성적 도덕성으로 젠더화된 것이다.

종부들은 대부분 양반 가문의 후예로, 혼반婚班에 의해 종부가 되는 전통적 혼인 관행을 지속한다. 현대 종가에서 이들은 길제吉祭라는 종부 승계를 알리는 전통의 통과의례를 중요한 의례로 실행함으로써 친족집단으로부터 종부 지위를 구조적으로 승인받는다. 그러나 종손(혹은 차종손)과 혼인함으로써 곧장 종부로 승인받는 것은 아니다. 종부의 남편이 종손 위치에 설 때 비로소 종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종가의 통과의례인 길제 혹은 길사吉事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종손이 다음 세대의 수장으로서 종가의 모든 제사와 문중門中을 대표하는 종손·종부 승계식을 의미한다. 문중으로부터 정식으로



학봉 김성일 종가 종부 | 경북 안동 | 2010 | 강혜경

인정받는 이 절차는 종부 입장에서 시부媤父가 돌아가시면 3년 정도 애도의 기간을 거친 후 비로소 시행된다. 따라서 종부는 반드시 길사의례를 통과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지위이며, 이것은 종법적 구조에 근거한다.

길제는 통과의례 제사이지만 종가에 혼입한 여성이 '정식 종부'로 승인받는 절차이자 대를 잇는 승계식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세밀하게 이 길제의 의미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종부들에게 길제는 '흰 도포 자락과 검은 갓을 쓰고 둘러싼 제관들' 앞에서 종부 역할을 다짐하는 생애사적 전환점이 된다. 즉 문중과 친족 및 마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펼쳐질 종부로서의 삶에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는 포부를 품게 하는 생애사적 경험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종부들의 종법적 지위에서 파생된 종부 권위는 현대사회의 종부들에게는 미약하게 행사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종부로서 종부 스스로 역할 수행을 통해 만들어 낸 실질적 권위의 행사였다. 종부들은 길제 의례의 구조적 지위 승인 효과를 봉제사奉祭祀·접빈객接賓客 등 일상에서 종부 역할의 성실한 수행을 통해 보장받았는데 이 점은 종부로서의 철저한 역할 수행이 종부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핵심적 요인이었다.

지역사례 한국의 총부(현대적 의미에서 종부)는 두 가지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중국의 종법과는 다른, 종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제사권과 입후권에 대한 권한 행사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양자 파양에 대한 권리는 종부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다. 종부는 다만 양자 승중承重을 위한 '적당한' 양자를 지명할 권리를 가질 뿐이다. 더구나 종부가 지명한 양자가 아닐 경우 종부는 양자에 대한 파양 권리가 없으며, 문중에서 파양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파양 선고된 종손 남편을 복권復權한 종부가 있었다.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종가의 경우 양자 승중이 유달리 많은 가문이다. 현 종손뿐만 아니라 바로 윗대도 양자로 왔다고 한다. 이 종가의 윗대 종손 부인인 진성이씨眞城李氏 종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강단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양자로 종손이 된 진성이씨 종부의 남편은 가문에 대한 책임과 식민지적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그의 파락호破落戶 같은 생활이 결국은 독립운동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지금에야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그의 문중 재산 탕진과 난봉꾼 노릇은 여러 번에 걸쳐 문중이 종손 파양을 결정하게끔 하였다. 파양 결정을 하고도 막상 종손이 돌아오면 문중에서는 흐지부지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최종적으로 파양결정을 내렸다. 이에 문중에서는 집에 없는 종손 대신 종부에게 종손 파양을 통고通告하려 하였다. 100명이 넘는 문중 사람들이 종부에게 종손 파양을 통보하자, 종부는 "종손이 종손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 마땅히 파양함이 옳지만 내가 종부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해 왔으니 나는 새로운 종손을 보필하여 종부의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의외의 답을 하였다. 그러자 문중 사람들이 크게 놀라 파양 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한다.

남성 문중인들만 빼곡히 모여 앉은 사랑에 불려 나와 종손 남편의 파양 결정을 통보받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종부 권한 행사를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종부의 자부심을 잘 보여 준다.

한편 길제의 경우 종손·종부 승계식이기도 하지만 종부에게는 특별한 의의가 있는 제례이다. 광산김씨光山金氏 군자리君子里 종가의 경우 노종부老宗婦는 시부모를 모시며 차종부次宗婦로 살 때 남편인 차종손次宗孫이 먼저 작고하였다. 종부는 시부가 돌아가신 후 종부로서 길제의례를 행하지 못하고 아들인 차종손 내외가 길제의례를 치르게 되었다. 노종부는 "나는 종부 아닌 종부

노릇만 평생 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정식 종부가 된 맏며느리는 노종부에 대해 그 점을 항상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시모 봉양을 종부의 중요한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종부로 승인받는 일이 길제의례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특징 및 의의 전통시대 종부들의 삶을 유추할 때 근현대 한국의 종부들은 봉제사·접빈객의 삶을 전형화한 삶의 특징을 보인다. 이 두 역할은 종부의 책임임과 동시에 종부들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문중과 마을 공동체 전체를 고려하여 사고하며 베푸는 유교적 삶의 기제로 작동하였다. 즉, 종부들의 유교 실천의 삶은 그들의 내면화된 부덕에 의해 개별 모성motherhood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포괄적인 '유교적 모성confucian motherhood'의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 이 점은 유교의 가부장적 대가족 구조가 갖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나, 종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만 한정되는 모성을 살지 않았다는 점은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실제로 종부들은 대가족 환경에서 친족 자녀들을 공동 양육하는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종부들의 기억 속에 종부 어머니들의 교육관은 '내 자식이고 남의 자식이고 똑같이'를 철칙으로 해서 대하였다고 한다. 즉 종가에 제삿날 음복 떡을 나눠 줄 때 종부는 "떡이라도 내 자식이라 해서 한 쪼가리 더 남겼다가 주는 법이 없었다."고 기억하였다.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과 동갑내기 시동생, 동네 가난한 아이들까지 '분배를 똑같이' 하여 나눠 주었다는 점은 종부의 '분배를 똑같이'라는 모성적 행위가 정의롭게justice 실현되었음을 보여 준다.

전근대 종부의 고된 노동과 봉제사·접빈객의 책임성은 사실 종부들이 단명한 이유로도 전해진다. 종가를 위시한 양반가의 혼인은 삼혼三婚까지 허용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시어머니 노종부와 종부 며느리가 동시에 아이를 출산하는 풍경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종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보다 젊은 또래의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 즉 어린 시동생에게 젖을 물리는 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문중과 가난하던 시절에 마을 공동체 자녀들의 생존과 필요에도 섬세하게 대응해야 하였던, 포괄적 의미의 모성을 실천하는 존재가 바로 종부들이었다.

특히 종부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봉제사와 더불어 몸에 밴 접빈객 정신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살핌(돌봄)을 실천하는 것으로써 종가를 찾아오는 돌봄이 필요한 타인들에게까지 모성 활동의 반경을 넓혀 주는 것이었다. 종부들이 행한 접빈은 누구라도 종가에 찾아오는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고 돌보는 공평한 베풂이었으며, 이는 유가 집단의 본래적 접빈객의 취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종부들은 접빈 의무를 타자에 대한 의무와 동일시하였으며, 유가의 도덕성 원리에 천착穿鑿하여 돌봄을 친족과 마을 공동체 범위에서 실천한 주인공이었다.

참고문헌 明宗實錄, 中宗實錄, 17세기 여성의 종법적 지위(한기범, 충남사학 9, 충남대학교 사학회, 1997), 근현대 한국사회 종부 연구(강혜경,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조선중기 총부권과 입후의 강화(이순구, 한국고문서연구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한국 사회 종부의 유가 젠더 도덕성과 종부 정신(강혜경, 한국 여성 종교인의 현실과 젠더 문제, 동연, 2014).

필자 강혜경(姜惠卿)

종손
宗孫

정의 종가의 맏아들로만 이어져 온 종가의 적장자.

역사 16세기경 조선은 사림士林과 훈구勳舊 세력 간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네 차례의 사화士禍를 겪었다. 역설적으로 여러 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사림은 유학정신을 실제 상황에서 구현할 수 있었고, 사림이 대거 등용되면서 사림 내분으로 붕당朋黨이 생겨났다. 붕당 정치의 연합과 환국換局을 반복하면서 조선 중기 이후 유교 이념 투쟁은 종묘사직의 대를 잇는 승계개념과 관련하여 종법宗法이 중시되었다. 조선에서는 왕자의 난 이후 종자宗子로 승계하는 원칙을 세우고 세종世宗 때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한 종법제宗法制가 논의되었다. 조선의 종법제는 혈연에 의한 승계가 아니라 지위에 의한 승계를 의미한다.

종법제는 적처嫡妻와 적자嫡子의 지위를 보장하였

으며, 적계嫡系 중심의 정통론을 세웠다. 종가宗家는 사화 및 붕당 환국 시점에 사화로 인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반가班家는 국가 종묘의 문묘배향 후에 종가가 되었으므로 종가는 반가와 기본적으로 공통점을 지닌다. 종가가 반가와 다른 점은 종가는 독립적이며 반가보다 격상된 지위에 의한 대표권을 소유하고 불천위不遷位 조상祖上을 가진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종가의 종손宗孫은 문중의 대표가 되어 다른 문중과 접촉하며 타 문중의 의례에 참석하고, 문중 간 의사결정 시 문중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반가와 달리 종가에서는 불천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이때 종손과 종부宗婦는 제사에서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불천위제사에서는 종손이 초헌初獻, 종부가 아헌亞獻, 문중을 대표하는 이가 종헌의 예를 각각 갖추는 것이 보편적이나 현대에는 각 종가의 예법에 따라 제례에 참석한 고위직 관료나 지역 대표들이 돌아가며 헌작獻爵하는 경우도 있다. 종손은 종가의 구심점이자 사회적 지위의 상징에 부합하여 특별한 지위와 임무와 권리 및 권위를 부여받는다. 만약 종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종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 축출될 수 있으며, 다른 후손으로 종통宗統이 바뀌게 되는 일도 가능하였다.

내용 근현대 한국사회 격변기에 종가는 전쟁과 분단, 그로 인한 이념 갈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였다. 종손들의 유교적 도덕성은 군자의 도와 선비정신으로 독립 투쟁에 헌신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광복 이후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종손이 혼인 초 월북하거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종가는 '종손의 부재'로 평생을 종손 없이 종부에 의해 유지되기도 하였다.



종손의 제문 낭독 | 경북 안동 | 2009 | 국립민속박물관

한편 대부분의 종가 종손은 사회적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종손 중에는 서울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 종손들도 많았지만 끝까지 직장에 들어가서 근로 활동을 한 이는 드물었다. 대개는 직장 대신 향촌向村하여 종가 종손으로 평생을 산 이들이 많다. 혹은 퇴임 후 비어 있는 종가로 귀향하면서 종가에 안착하는 등 종가는 종손이 언젠가는 돌아가야만 하는 예정된 공간이었다. 종손으로서의 책임감은 남다른 것이어서 전통적 종가적 삶의 방식은 자발적이자 운명적인 선택이었다.

광복 이후 좌우익 이념 갈등에 휩싸인 종가도 많았다. 퇴계종가의 경우 지손支孫 중에 좌익활동을 하다 우익 경찰의 수배를 받던 중 불천위 제삿날 우익 쪽 청년단이 제사 현장에 들이닥쳐 아수라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갈암종가葛菴宗家의 경우 현 종손 이원흥李元興(1945~)의 선친先親 역시 월북한 종손이었다. 종손이 들려준 바에 의하면 6·25전쟁이 끝난 뒤 북한에서 종가로 어렵게 돌아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체포되어 15년을 옥살이하였다고 한다. 종손 옥바라지와 연좌제의 검열제도로 인해 현 종손은 경찰의 감시망 속에서 직장생활조차 온전히 할 수 없었던 고통을 겪는 등 공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였다. 연좌제가 폐지될 때까지 종가 가족 모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폐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천생 선비'였던 유약한 종손들은 종가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전통적 생활을 고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종가의 경제는 기울 수밖에 없었다. 문중 차원에서 종가는 구심점이었지만 경제력 없는 종손들로 인해 궁핍한 종가들이 많았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종가 종손들은 대부분 사회적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문중의 지원을 받아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종손들 중에서도 종손이라는 책임감과 전통적인 종가적 삶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종가의 살림살이가 풍족하지 못하였던 것은 종가 보전과 전통을 계승하는 처지에서 종손들의 경제적 성공보다는 종가의 위신과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문중의 경우 문중 어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어 종손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문중을 일으킨 경우도 많았다. 그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종손들도 많다. 그러나 문중의 지원은 종손으로서 감당해야 할 운명적 위치를 자각해서 종가 일에 전념하도록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종손 될 종자宗子는 종가의 귀한 '중남重男'이므로 누구에게나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언제 어디서나 남들로부터 '위함'을 받으며 성장한다. 따라서 종손은 상대방으로부터 배려받는 존재이므로 스스로도 중요한 존재라는 점과 남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며 성장한다. 이 때문에 종가에서 조부의 사랑은 손자가 독차지하였다. 특히 장손자長孫子는 조부의 직계이며 모든 지위와 역할을 대물림받을 중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 종손의 장남이 차종손次宗孫으로서 종손이 갖추어야 할 규범적 내용들을 학습받아 이미 성장하였고, 이제 차종손의 장남인 적손嫡孫이 예정된 종손이기 때문이다.

유교 가족관계 특성상 직계주의는 장남 이외의 차남들에게 가문의 기대나 역할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차남들은 종가에서 장손보다 역할이나 존재감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 문중의 핵심인 종가의 종자가 신분적으로 '양반'이자 다음 세대의 종손이 될 귀한 존재이며, 종법상 직계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문중의 철저한 보호와 관심 속에 어린 시절부터 조부로부터 받은 종손 교육과 반상의 체험은 스스로 양반의 전통을 잇고 문중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질 존재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성장한다. 종손의 이러한 보호적 성장은 종손 지위의 독보성獨步性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약한 성향의 존재가 되기도 한다. 종손 사후 차종손은 길제吉祭를 통해 새로운 종가의 주인으로 승계된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종손들은 대부분 유교문화와 제례 전통을 실현하는 존재로서의 소명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흔히 이러한 전통 의례들을 실현하며 사는 것을 종손의 운명이라고들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유교 전통의 덕목들을 실현하는 종가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존경을 이들 종손의 삶에 투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대 종가 전통은 부계혈통 계승이 현대의 민주적·성평등 차원에서 혈연적 연고주의, 집단이기주의, 젠더 불평등의 표징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기도 하다. 현재 종가 전통은 문화적 지속성과 현대적 변화라는 두 가지 모순에 직면한 아이러니한 실재reality이다. 한국사회에서 종가는 '현재 속에 존재하는 과거'라 할 수 있으며, 종손(종부)은 과거와 현재의 삶을 전통 계승 차원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유교적 존재라 할 수 있다.



퇴계 종가 노종손과 종손 | 경북 안동 | 2006 | 강혜경

문중조직은 종손과 더불어 반드시 종부를 존재적으로 필요로 한다. 유교적 가부장적 관념의 '전통' 계승 차원에서 비록 종부가 종가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얼마든지 다른 여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어 있는 종부 자리를 다시 채우는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상처喪妻한 종손들은 대부분 다시 장가들기가 어렵거나 종부 없이 종손 홀로 종가를 지키는 일이 흔한 일로 되고 있다. 특히 종가의 종부는 반드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혼입混入하는 것을 종법적 관례로 하고 있으므로 현대 종가에서 가부장적 혼인 관행 지속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참고문헌 근현대 한국사회 종부 연구(강혜경,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의 명문종가(이순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강혜경(姜惠卿)

종안
宗案

정의 부계친족집단 단위인 종중·문중에서 작성한 문서군.

내용 종안宗案의 개념과 범위는 매우 모호하다. 조선시대에 각 문중(종중)에서 작성한 문서를 통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종중문부宗中文簿, 문중문부門中文簿라고도 하는데 이 또한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종중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를 일괄해서 칭하는 일반명사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종중의 운영과 성격, 시대적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서인 종계안宗契案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종계宗契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조직이다. 부계친족집단인 종중(문중)에서 종중원 간의 상호 부조와 단결, 5대조 이상의 조상제사와 묘소 수호를 위해 결성되었다. 그 명칭은 종안, 종계안, 종계첩宗契帖, 종회록宗會錄, 종계좌목宗契座目 등 매우 다양하다. 내용은 설립 목적과 의의를 밝힌 서문, 종계에 참여한 종중원의 명단, 종계 운영 규약이 핵심이다. 종계가 확립되려면 먼저 종중(문중)이 결성되어야 하는데 조선시대에 종중이 결성되는 시기는 마을에 입향조入鄕祖가 세거世居한 지 4대를 경과하여 5대째가 되어야 한다. 4대까지는 기제사忌祭祀를 지내면서 후손이 모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종중조직을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종중조직은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결성되었다.

종안을 작성하는 목적, 다시 말해 종계를 조직하는 목적은 5대 이상의 조상에 대한 묘제墓祭를 봉행하고 선산先山을 관리하는 동시에 후손들의 사회적 결집을 도모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 해도 무방하다. 종안 작성 초기에는 공동의 조상 한 사람을 모시는 종계로 시작하되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손이 계속 분파하면서 종계 역시 소종중별로 분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자손들이 일찌감치 전국 여러 고을로 흩어져 세거하다가 조선 후기에 대종중을 결성하고 동성동본인 후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고 종중과 시조를 제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새롭게 종계宗契를 결성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또한 종계를 결성하고 종중재산을 마련한 뒤 이를 재원으로 식리사업을 벌이기 위한 규정과 종중원 간의 상호부조를 위한 조항을 비롯하여 종중재산의 출납을 기록하는 것도 종안의 주요한 내용이었다.



종안 | 가로22 세로27 | 조선 후기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후기 안동권씨 종중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한 종계 문서.

이러한 종계는 조선 후기 부계친족집단의 사회조직적 측면을 연구하는 데도 의미가 중요하다. 특정한 종중원의 계보적 관계만을 기록하는 족보族譜는 혈연관계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의 친소관계나 종중에서의 적극적 참여 여부, 문중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읽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종계안에는 선조에 대한 현양사업顯揚事業을 비롯한 종중의 대소사를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으므로 실제 종중의 운영 양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종계에는 참여하지 않는 가계가 드러나거나 동성촌락에서 분파한 지 오래되고 멀리 떨어져 살지만 종계와 묘사墓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후손도 파악할 수 있다.

18세기 말 경기도 광주에 세거하던 광주안씨廣州安氏 종중에서는 중시조인 안성安省(?~1421)의 묘사를 지내기 위한 종계를 결성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광주안씨 후손과 연락하면서 계를 조직하였는데 20세기 이후까지 종계를 작성하면서 활동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상의 묘역 주변에 대한 금양권禁養權이 인정된 조선 후기에는 묘역 주변의 산에 대한 금양을 규정한 금송계禁松契를 정하여 종계의 하위조직으로 삼는

사례도 생겨났다. 즉 종계안이 단순히 부계친족집단만의 규약이 아니라 향촌사회조직으로서의 측면도 포함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종안은 종중원의 규약을 정리한 문서로, 종법에 기초한 종중이 한국인의 생활문화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전통적 결사체인 계契와 결합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종안(종계안)은 조선 중기 이래의 가족·친족제도, 부계친족집단의 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성호학파의 친족의식과 의례생활(박종천, 한국실학연구26, 한국실학학회, 2013), 조선 말~20세기 초 근기지역 종중재산 소유 양상에 관한 사례연구(이대화, 장서각48,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조선 후기 우봉김씨 가문의 문중형성과 종계(백옥경, 역사민속학4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조선시대 종계안 연구(김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조선후기 문중통문의 유형과 성격(김경숙, 고문서연구19, 한국고문서학회, 2001), 조선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이해준, 역사와 현실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대화(李大和)

종택
宗宅

정의 혈연집단에서 대대로 적장자가 살아온 종가의 주택에 주안점을 둔 말.

내용 종택宗宅은 종가의 다른 표현으로도 쓰여서 종택과 종가는 의미상 많이 중복된다. 민간에서는 종가나 종택을 엄격히 구분하여 쓰지 않고 혼용한다. 다만 학술적으로 종가는 대대로 이어 온 적장자嫡長子가 사는 집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시하는 말로, 종택은 종가의 건축적 측면을 중시하는 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종택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공간구성과 건축형식에 차이가 있다. 종택은 그곳에 사는 종가 사람들이 유교의 오륜五倫과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을 실천하며 생활하기 적합하게 축조된 집이다. 오륜과 봉제사접빈객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문화가 민간에 도입되기 전에는 사랑채가 없었다.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맹씨행단孟氏杏壇은 고려 말 최영崔瑩 장군의 집이었는데 훗날 그의 사위 고불古佛 맹사성孟思誠이 여기서 살았다. 고려시대 민가 건축물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 현존하는 상태로 볼 때 평면 형상은 '工'자로 되어 있는 하나의 살림채와 독립된 건물의 사당祠堂이 전부이다. 사랑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주택에서 사랑채는 안채에 있던 사랑방 또는 그에 해당하는 남성의 방이 16세기부터 분리되어 확장된 것이다. 사랑채 독립 분화의 배경은 유교의 남녀유별 내외법 도입과 그 위에 16세기 이후 사림士林 회합 공간의 필요성 증대라고 볼 수 있다.

종택이 밀집된 경상북도 지역 종택은 여성 공간인 폐쇄형의 '□'자형 안채에다 남성 공간인 개방형의 '一'자형 사랑채를 덧붙인 형태이다. 그런데 조선 전기 종택의 배치 형태는 경주 양동의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 창건한 향단香壇과 같이 누운 '日'자형이다. 경북 지역에는 16세기 중반까지 '日'자형 배치의 향단형 종택이 지어졌다. 봉화의 충재冲齋 권벌權橃 종택, 안동의 임연



흥해배씨 임연재 종택 | 경북 안동 | 2023 | 배영동



안동권씨 충재 종택 | 경북 봉화 | 2005 | 배영동

재臨淵齋 배삼익裵三益 종택, 안동의 청계靑溪 김진金璡 종택, 예천의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종택이 그러하다.

종택에서 조상을 모신 사당은 무척 중요한 건물로 인식되었다. 사당은 누대에 걸쳐 적장자로 이어지는 종통宗統 승계의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당에는 불천위 조상을 비롯하여 부모부터 고조부까지의 봉사위奉祀位 신주가 모셔져 있다. 물론 경북 상주의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종택[당호 산수정山水亭], 안동의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종택[당호 양진당養眞堂], 봉화의 계서溪西 성이성成以性 종택[당호 계서당溪西堂]처럼 한 종가에 불천위가 두 분인 경우 사당은 둘이다.

사당은 살림채의 방위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남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당의 방위는 종택에 따라 살림채와 일치시키기도 하고 죽은 조상의 신주를 모신다 하여 살림채와 의도적으로 다르게 하기도 한다. 살림채와 사당의 방위를 일치시키는 것은 산 사람이나 죽은 조상이나 형상과 성격이 같다는 데 기초하고, 방위를 다르게 하는 것은 산 사람과 망자는 다르다는 생사구별의식에 기초한다.

종택의 공간은 예사 집보다 더 넓고, 구성이 다양하다. 종택에서 사당 다음으로 중요한 건물은 안채와 사랑채다. 안채는 아녀자들의 공간으로, 살림살이 공간이자 육아 공간이다. 사랑채는 남성의 공간으로, 접빈공간이고 제의공간이며 학습공간이다. 그 다음으로 경북 북부지역 종택 건축물에서는 안채에 연결된 날개채[翼廊]가 있고, 외부로 배치된 행랑채[行廊]가 있다. 경북 북부지역 종택의 공간구성과 이용방식을 보면 대개 다음의 표와 같다.

경북 북부지역 종택의 공간구성과 이용방식

생/사 구분	건물명	공간명	공간의 용도	남/여 구분
생자(生者)의 공간	안채 정침	안방(큰안방, 작은안방)	종부의 방, 어린아이 방	여성공간 (아녀자 공간)
		안대청	제사(불천위제사), 소반 보관	
		상방	며느리(미혼 딸)의 방	
		부엌	취사, 난방	
	익랑1	방	미혼 딸(며느리)의 방	
		방	(여성손님 방)	
		창고	곡식 저장	
	익랑2	방	미혼 자녀의 방	아녀자 / 남성
		서고(책방)	책, 제기류 보관	
	사랑채	큰사랑방	종손의 방 (남성손님 방)	남성공간
		작은사랑방	장자의 방 (남성손님 방)	
		사랑대청	손님맞이, 문중회의, (불천위제사)	
	행랑채	행랑방	집안일 돕는 사람의 방	
		광/창고	생활 연장, 농기구 등 보관	
		마구간	말 사육	
	부속공간	안변소	여성들의 변소	
		바깥변소	남성들의 변소	
		방앗간	도정, 제분	
망자(亡者)의 공간	일반 사당		불천위, 4~1대조 신주 모심, 사당의례	
	불천위사당(부조묘,별묘)		늦게 인정된 불천위 신주 모심, 사당의례	

이를 보면 종택의 공간구성은 남녀유별·장유유서의 덕목에 기초한 일상생활, 종법에 기초한 조상숭배, 사회적 교류를 위한 접빈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생자의 공간'과 '망자의 공간' 및 '남성공간'과 '여성공간'은 각각 채[棟]를 달리한다. 여기서 망자의 공간은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종택의 공간 이용에서 제례공간의 위치가 주목된다. 모든 종택에서 일반 기제사忌祭祀는 안대청에서 지내지만 불천위제사는 사랑대청에서 지내는 유형과 안대청에 지내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랑채가 안채에서 분화된 건물이므로 불천위제사를 안대청에서 지내는 유형이 사랑대청에서 지내는 유형보다 더 오래된 형식이다. 일반 기제사에는 외부 남성들이 참석하지 않는데 불천위제사에는 불천위의 제자 가문 후손을 비롯하여 평소 불천위를 흠모하는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천위제사를 기제사처럼 안대청에서 지내면 남녀유별의 덕목을 지키기가 어려워져 남성들이 기거하는 사랑채의 대청으로 옮긴 것이다.

오늘날 종택의 공간구성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개조를 한 결과이다. 종택이 역사적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개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행히 경북 안동의 임연재臨淵齋 배삼익裵三益 종택[당호 금역당琴易堂]을 통하여 개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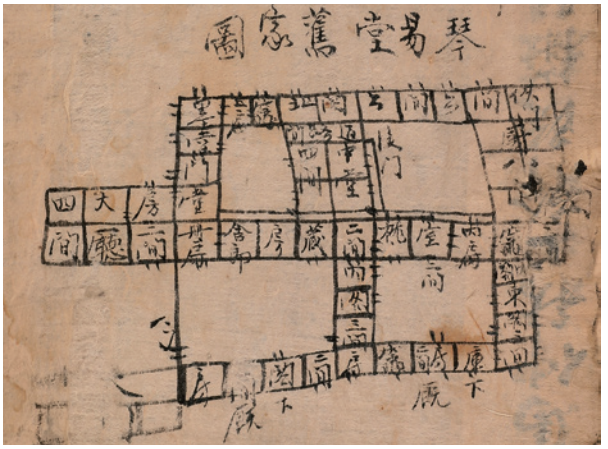
을 알 수 있다. 이 종택은 1558년 현재의 안동시 예안면 도목리에 처음 지어졌으나 18세기에 수해로 인해 대폭 개조되었다. 그 후 안동댐 건설로 수몰지역에 들어가자 1973년 안동시 송천동으로 이건되었다. 〈금역당구가도琴易堂舊家圖〉라는 제목의 '임연재 종택의 옛 평면도'는 1558년에 지은 종택의 평면도이다.

이 평면도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미 '임연재 종택의 공간 변화도'와 같이 하단의 적색 선 안의 건물로 개조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애초의 건물에는 내부를 구획하지 않고 마루를 깐 중당中堂처럼 마루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을 축소하여 온돌방 비율을 높이는 개조를 하였다. 18세기에 난 홍수 피해를 계기로 전체 규모를 축소하되 마루 면적을 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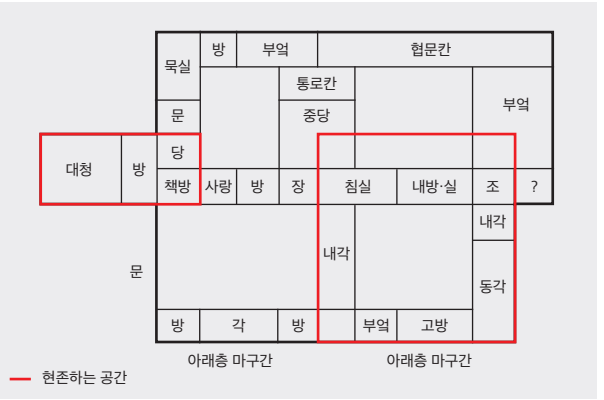
〈금역당구가도〉의 평면은 현재의 금역당은 물론 다른 주택들과도 크게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중심건물의 위치와 방향이다. 경북 지역의 보편적인 '□'자 집은 상단에 동서축으로 몸체를 배치하고, 하단의 남북축의 좌·우 익랑과 이들 익랑의 양단을 잇는 동서축의 행랑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금역당구가도〉의 상단은 중심건물을 남북축으로 놓고 중심건물의 남단과 북단에 낭무廊廡(익랑이나 행랑을 포괄하는 중심건물에 딸린 부속채 개념)를 연결하여 공간을 확장해 나갔다. 그 결과 상단의 평면은 중심건물 좌우에 각기 내정內庭을 갖춘, 옆으로 누운 '日'자형이 되었다. 현존 주택 중에서는 경주시 향단의 평면이 이와 유사하다.

임연재 종택의 옛 평면도는 안동 지역의 종택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 평면도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축물은 '임연재 종택의 공간 변화도'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불과하다. 애초의 건축물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규모로 축소된 상태이다. 유교문화와 사회상의 변화, 난방법과 같은 생활상의 변화, 홍수 피해 등으로 인하여 종택의 공간은 크게 달라졌다.

종택은 학문활동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예부터 장서지가藏書之家로 널리 알려진 임연재 배삼익 종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목록인 『책치부冊置簿』(1586)를 보존하여 왔다. 후대에 증보된 『외암비장畏巖秘藏』(1727)도 보관하여 왔다. 목록의 기재 형식은 서명 아래에 종수, 책수, 판종, 전질 여부, 분실 여부, 빌려 간 기록 순이다. 〈금역당구가도〉에 보이는 '책방'은 장서(2,882책)를 보유하고 도서관 기능을 하였다. 종가는 학문이나 글을 이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금역당구가도〉에는 글씨를 쓰고 저술하던 '묵실墨室'도 있다.



금역당구가도 | 흥해배씨 임연재 종택



임연재 종택의 공간 변화도 | 흥해배씨 임연재 종택

특징 및 의의 종택은 한 혈연집단에서 누대에 걸쳐 적장자로 이어 온 가옥이다. 종택은 유교의 오륜과 봉제사 접빈객 실천의 도장이었다. 종택은 일반 가옥에 비해 규모가 크고, 조상을 모신 사당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개 16세기 전반까지의 종택에는 사랑채가 없었다. 그 이후 유교의 남녀유별, 접빈객을 중시하면서 안채에 있던 사랑방이 사랑채로 확장 분화되었다. 종택의 여러 공간은 동고조同高祖 8촌 이내의 확대가족擴大家族, extended family 구성원들이 일정 기간 함께 살면서 서열적 가족생활과 남녀유별적·조상숭배적·접빈윤리적 삶을 살도록 한 것이다. 종택은 오륜과 봉제사접빈객과 같

은 유교적 덕목 실천, 학문 탐구, 장서 보존, 선비들이나 부계혈연집단의 회합, 역대 조상의 유품 보존 등의 기능을 담당한 문화유산이다.

참고문헌 고택문화유산 안동(배영동·유영모·류수현, 한국유네스코 안동협회, 2020), 안동 임연재종가의 책치부와 외암비장(배현숙, 한국학논집7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0), 유교민속의 연구시각(임재해 외, 한국국학진흥원, 2006), 조선전기 향단형 주택의 건축과 공간 구획의 특징(이종서, 대한건축학회논문집32-7, 대한건축학회, 2016), 종가의 사당을 통해 본 조상관(배영동, 한국민속학39, 한국민속학회, 2004), 흥해배씨 종가 금역당의 건축과 조선후기의 구조 변화(이종서, 건축역사연구25-4, 한국건축역사학회, 2016).

필자 배영동(裵永東)

종회
宗會

정의 부계혈연집단이 작게는 지역 단위, 크게는 전국 단위로 하는 모임.

내용 동성동본의 부계혈연집단 모임 이름은 여러 가지이다. 조선 중기에 유교의 종법宗法이 향촌사회에 도입되면서 지역 단위 혹은 그 이상 규모의 부계혈연집단 모임이 결성되었다. 족계族契, 족회族會, 화수회花樹會, 종계宗契, 종회宗會, 대종회大宗會, 종친회宗親會 등이 그런 모임이다. 모임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규약이 있기 마련이고, 하나의 혈연집단에 이런 명칭의 모임이 다 있다기보다 시대나 혈연집단에 따라 몇 가지 명칭이 선택적으로 사용된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5~16세기 사족士族들은 내외친족이 망라되는 부계혈연조직인 족계族契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하였다. 16세기 중반부터 족회라는 이름의 부계혈연조직이 등장하였다.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1495~1554)이 지은 용재容齋 이행李荇(1478~1534)의 행장, 백담栢潭 구봉령具鳳齡(1526~1586)의 시,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1533~1592)의 시에 족회가 나온다.

16세기부터 화수회라는 이름의 부계혈연집단 모임도 생겼다. 풍산류씨豊山柳氏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1539~1601) 연보에 '화수지회花樹之會'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가 지은 횡성조씨橫城趙氏 조린趙遴(1542~1627)의 묘갈명에 "왕왕 집안에 화수회를 여니 한 집안의 은의恩義가 돈독하였다."라고 하니 이 시기에 화수회라는 명칭이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광주이씨廣州李氏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1561~1613)의 『한음문집漢陰文集』에는 10년 전에 열려던 '종계'를 1614년에 설립하였다고 한다. 종계는 종회의 또 다른 이름으로 생각된다. 진주하씨晉州河氏 송정松亭 하수일河受一(1553~1612)의 『송정문집松亭文集』에 '족회 통문'이 있는데 중국 위씨 집안의 화수회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동복오씨同福吳氏 만취晩翠 오억령吳億齡(1552~1618) 『만취문집晩翠文集』에 화수회란 명칭으로 집안 모임을 한 기록이 있다.

창랑滄浪 성문준成文濬(1559~1626)의 『창랑집滄浪集』에는 '창녕성씨昌寧成氏 종회법식宗會法式'이 나오는데, "위씨韋氏는 화수회가 있어서 합족合族이 되었고, 우리 성씨는 예부터 동종지회同宗之會를 하였다."고 적고 있다. '동종지회'가 '종회'와 같은 의미로 쓰인 셈이다.

화수회라는 말은 중국 당나라 위씨 집안의 고사에 근거하여 널리 쓰였다. 내용인즉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아들들이 서로 물려받지 않아서 묵힌 땅에 자형화紫荊花 나무가 무성해지자 그 꽃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모으고 즐겁게 지냈다는 고사이다. 이에 잠삼岑參이 위씨 집안을 경모하며 시로 화수가花樹歌를 지었다. 화수회는 뿌리가 있는 한 나무에서 가지가 벌고 꽃이 피는 형상을 혈연집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한 비유적 명칭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도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화수회는 부계혈연집단의 남성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른 성씨에 출가한 딸들, 다른 성씨이지만 혼인하여 부계혈연집단에 들어온 며느리들까지 모인다. 화수회가 부계혈연집단 모임이지만 하나의 혈연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을 가능한 한 넓은 범위로 확장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화수회는 출가 여성을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부계혈연집단 모임이다. 화수회라는 용어에는 출가외인이라는 의식이 없어 종법 도입 이전의 문화적 양태를 보인다.

종회는 문중보다 더 큰 지역 단위 부계혈연집단 모임으로, 유교의 종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조직이다. 따라서 종회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참여하는 모임이었

다. 종회에서는 지역의 입향조를 비롯하여 뛰어난 조상을 기리며, 묘소를 관리하고, 묘제를 지내고, 재실齋室·위토 등의 공유 재산을 관리하며, 구성원들의 결속을 도모한다. 또한 종회에서는 족보 편찬을 위한 수단 사업修單事業을 하고, 서당을 지어 운영하고, 불천위와 같은 유명한 조상을 단위로 하는 계契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였다.

충청남도 당진의 의령남씨宜寧南氏 남이흥南以興(1576~1627)을 파조派祖로 하는 충장공파忠壯公派의 경우 1720년경 『충장공유사忠壯公遺事』를 간행하고 '충장공종계'를 조직하였다. 이 종계는 세월이 흐르면서 종족집단 내부에 소종계小宗契가 성립됨에 따라 대종계大宗契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런 종계가 곧 종회나 마찬가지이며, 종회 또는 종회사무실을 종약소宗約所라고도 한다. 종친회 관련 연구 성과를 보면 안동김씨安東金氏는 1580년(선조 3)에 대종회와 같은 종약소를 만들었다고 한다.

종회가 부계혈연집단의 지역 단위 모임이라면 대종회는 전국 단위 모임이다. 대종회는 전통사회에서 동성동본 혈연집단의 전국적 족보 편찬으로 볼 때 대종회라고 볼 수 있는 조직이 있었겠으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이후 전국의 부계혈연집단이 하나의 조직으로 빈번하게 활동하면서 널리 쓰인 현대적인 용어이다.

종회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법률적 용어가 종중宗中이다. 종중은 공동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해 자연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공동 선조의 후손 가운데 성년이면 성별 구분 없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단체이다. 종중이란 용어는 일제강점기 이후 부계혈연집단의 재산을 등기제도화하면서 등장한 법률적 용어로 보인다. '종중재산'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소유권의 법률적 주체가 종중이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용어인 종회도 애초에는 부계사회에서 남성 본위의 구성원 모임이었으나 양성평등사회로 변화되면서 출가한 여성의 참여가 개방되는 추세에 있다.

종친회라는 용어는 종회 구성원들이 숭조崇祖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종친이라는 말은 왕실 전용 용어였다. 종친부宗親府라는 관청에서는 국왕을 지낸 이의 족보와 영정을 받들고, 국왕 친척인 왕가·종실·제군의 계급과 벼슬을 주는 인사 문제와 이들 간의 다툼 등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처리하였다. 왕실에 적용된 종법, 즉 왕위계승 원리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에서 종친이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왕실이 사라지면서 종친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 상황에서 종회의 구성원들이 친목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종친회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왕실에서 사용한 종친의 의미와 종친회라고 할 때 종친의 의미는 다르다. 지금과 같은 종친회라는 용어는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매우 광범하게 쓰이고 있다.



흥해배씨 백죽당파 종회 정기 총회 | 경북 안동 | 2014 | 배영동

특징 및 의의 종회는 16세기 향촌사회에 종법이 도입된 후 등장한 지역 단위 부계혈연집단 모임을 가리킨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종회보다 더 미리 널리 쓰인 용어는 족회, 화수회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종친회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종회가 문중보다 더 큰 부계혈연집단의 지역 단위 모임이라면 대종회는 전국 단위 모임이다. 종회의 역할은 지역의 입향조를 비롯한 불천위 조상제사를 지내고, 공동 재산을 관리하며, 부계혈연집단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종회는 부계혈연집단의 공동체적 유교문화를 전승하던 지역 모임이다.

참고문헌 근대 호적제도의 변화가 종중촌락의 관습에 미친 영향(이대화, 한국민속학66, 한국민속학회, 2017), 조선 말~20세기 초 근기지역 종중재산 소유 양상에 관한 사례연구(이대화, 장서각48,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조선

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이해준, 역사와 현실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의 문제점(송인권, 법조64-8, 법조협회, 2015), 종중의 본질과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분석(배성호, 인권과 정의428, 대한변호사협회, 2012), 한국 종족 집단의 형성과 변동(김필동, 농촌사회10,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배영동(裵永東)

주민등록법
住民登錄法

정의 주민등록제도, 주민증록번호제도, 지문날인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해서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 동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역사 주민등록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발효된 〈조선기류령〉에 근거한 '기류寄留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류란 호적상의 본적 외 장소에서 거주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1962년 1월 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조선기류령〉을 〈기류법〉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어 기류제도가 주민등록제도로 전환되었다.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8세 이상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68년 9월 16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을 한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 생년월일이 없는 12자리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도입되었다.

1975년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17세로 하향되었고, 현행 13자리 숫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되었다. 1975년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발급신청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민등록제도의 보안성 강화 목적의 전자주민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2016년 5월 29일 신설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졌다.

내용 〈주민등록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지닌다.

첫째, 주민등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 사항의 정정 및 말소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인 주민의 신고에 따른다. 신고 사항은 ①성명 ②성별 ③생년월일 ④세대주와의 관계 ⑤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⑥등록기준지 ⑦주소 ⑧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⑨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⑩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이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둔 ①거주자 ②〈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등록된 거주불명자 ③〈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재외국민을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되어 등록된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별 고유한 일종의 개인식별번호PIN로 고유성, 종신성, 전속성, 강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으로 국민 각자에게 강제로 부여되는데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없고, 일단 부여받은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되는 일이 없으며, 개인을 특정하는 데 사용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등).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면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 국가가 특별히 철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2014헌마449 병합)

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16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제7조 4가 신설되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하여졌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각 1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하나의 번호가 평생 변경 없이 유지된다고 하는 대원칙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셋째, 지문의 날인과 경찰청 지문 정보의 보관·전산화·이용의 지문날인제도 역시 주민등록제도의 일부를 구성한다. 17세 이상 등록주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 무지拇指(엄지) 지문이 수록된 것은 〈주민등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의 목적 외에 치안유지나 국가안보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결과이다. 〈주민등록법〉 제정 당시의 입법 과정 논의를 살펴보면 법에 명시된 입법목적 외에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쉽게 식별·색출하여 반공 태세를 강화한다는 점도 입법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증제도가 도입되면서 법령상 근거 없이 무지 지문을 날인하는 지문날인제도가 같이 도입되었다. 1975년 8월 26일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1997년 12월 17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2항에서 주민카드에 수록할 사항 중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주민등록법〉에 지문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2항에서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고 규정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열 손가락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서에서 수집된 열 손가락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 및 전산처리를 하고 범죄 수사에 활



주민등록증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문 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 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하게 하는 개인정보이지만 〈주민등록법〉과 법 시행령에서 이를 수집하고 경찰청에서 이를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합헌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지문 정보는 만인부동萬人不動·종생불멸終生不滅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다. 지문은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한 그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연결자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지문은 개인 신체의 일부분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은 지문을 남기게 되는데 개인의 지문 정보를 거의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를 비롯하여 기업 등은 지문 주체인 개인의 행위나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한 지문 추적이 일어나거나 추적 가능성이 알려지거나 당사자가 추적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지문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문 정보의 수집·보관·활용에 대하여 그 목적·대상·

범위·기한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특성과 개인식별 기능으로 인해 인구의 동태 파악과 간편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졌다. 주민등록정보의 컴퓨터를 통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정보처리의 자동화를 통해 정보교환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와 행정기관 등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신속성·공정성·투명성이 담보되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복지국가의 헌법 이념이 실현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과 수집된 열 손가락 지문 정보는 경찰청에 보관되어 전산화되고, 범죄 수사에 이용되면서 범죄예방과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주민등록제도는 치안유지와 국가안보에도 일정한 정도는 도움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주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비판하며 주민등록제도 해체를 요구하는 견해도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의 신분 및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단일식별자를 통해 그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에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보장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에 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인간성의 본질까지 하나의 체계로 통제할 수 있는 최첨단의 국가주의를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관점에서 매몰 비용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유지하되 오·남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임의의 번호를 의료·사회보장·교육 등 목적에 따라 부여하고, 10년 주기로 번호를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다.

참고문헌 일제말기 조선인 징병을 위한 기류제도의 시행 및 호적조사(이명종, 사회와 역사74, 한국사회사학회, 2007),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이희훈, 법학연구22-3,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주민등록과 전산화 그리고 프라이버시(강경근, 아태공법연구4,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1997), 주민등록법 제7조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정 법률에 관한 연구(손형섭, 헌법학연구22-2, 한국헌법학회, 2016),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상 고찰(김일환, 성균관법학22-3,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김주영, 헌법학연구22-2, 한국헌법학회,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신옥주(申玉株)


담 화 문

신규 18세자 주민등록증 일제 발급에 따른 안내

그간 정부가 막대한 국고와 주민등록 정리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의 성과를 얻도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금년 12월 31일에 세상에 18세(1953년생)가 되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발급사업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민등록증 일제발급기간 71.7.1-71.8.30 (60일간)
2. 자진 신고 기간 71.7.1-71.7.15 (15일간)
3. 이 발급기간중에는 금년에 18세가 되는사람 전원에 대하여 매일 동 읍 면 출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니 대상자분은 사진 3매를 가지고 동 읍 면 출장소에 나가 증명 발급 신청을 하시고,
4. 만약 19세이상 주민중에서도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신 분은 이기간중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증명 발급을 받으시기 바라며,
5. 또한 그동안 주민등록 작동신고를 게을리 못하신분은 이번 신고 기간중에 동 읍 면 출장소에 나가 정확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진신고 기간중에 신고하지 않은분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나 처벌을 받게됩니다.

도민 여러분 !
주민등록증이없으면 여행하실때나 인감증명및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신고를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생활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71년 7월 1일

충청남도지사 민 유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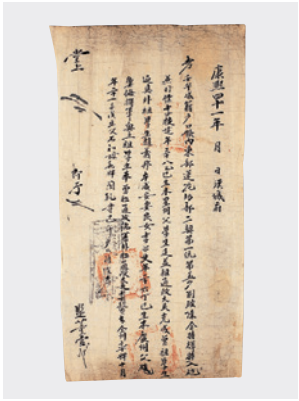
신규 18세자 주민등록증 일제 발급 담화문 | 가로53 세로78 | 광복 이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ㅈ 준호구

준호구
准戶口

정의 호적대장에서 등사하여 발급받는 호구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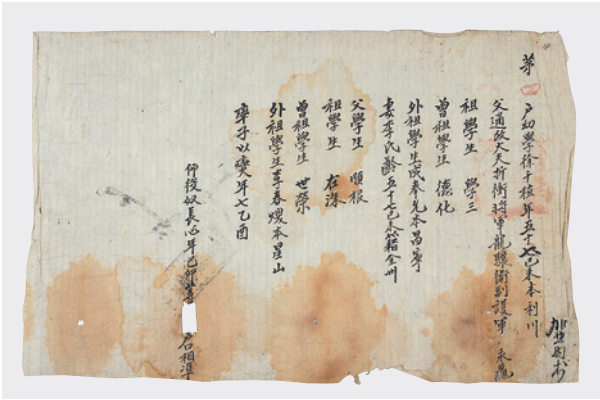
내용 '준호구准戶口'는 본래 군郡·현縣 단위의 호적대장이 작성된 이후 과거시험에서의 신분증명이나 노비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자신의 호구 기록을 호적대장에서 등사해 받는 것을 말한다. 호구단자와 다른 점은 발급받는 호적의 작성연도가 적힘과 동시에 이미 호적상의 주소와 통統·호戶 번호가 적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협 자개인周挾 字改印'이라는 목도장을 찍고 빈칸에 등사할 때 발생한 오류 자수를 기록한다. '주'는 잘못 써서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협'은 누락된 글자를 다시 끼워 넣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해당 지역 수령의 사인인 '수결手決'이 적힌다. 호적대장의 기록과 일치함을 관



한성부준호구 | 가로28 세로57 | 조선 | 서울역사박물관



준호구 | 가로21 세로36 | 대한제국 | 국립민속박물관



준호구 | 가로53 세로34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이 증명한다는 의미이다.

준호구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형식이 발견된다. 하나는 호 구성원 모두의 인적 사항을 등사해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 단독으로 기재되는 것이다. 전자는 현대사회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고, 후자는 '주민등록초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준호구는 대부분 전자 형태이다. 후자의 기재양식은 전자와 같이 호적 작성연도, 주소 및 통·호 번호, 호 대표자의 성명이 쓰인다. 다른 구성원은 기재하지 않고 준호구 발급을 요구하는 본인의 인적사항만 기재된다. 그 자의 주호와의 관계, 직역, 성명, 나이 및 출생연도, 본관이 모두 기재된다. 특히 그자를 기준으로 하는 사조, 즉 부·조·증조·외조의 직역 및 성명이 별도로 기록된다.

특징 및 의의 준호구는 지방관청에 소장된 호적대장에서 필요에 따라 자신의 호구 내용을 등사하여 관의 증명을 받는 문서이다. 개인적인 필요에서 발급받은 것이지만 호구조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조선후기 평민가문의 준호구를 통해서 본 신분변동 양태(임학성, 한국학연구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7),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권내현, 대동문화연구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호적(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손병규(孫炳圭)

중매혼
仲媒婚

정의 부모나 가문이 중매인의 도움을 받아 혼인 당사자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혼인.

내용 중매혼仲媒婚은 혼인 당사자가 직접 배우자를 선택하는 연애혼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조선시대 전까지는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이 종종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개인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는 중매혼이 일반적인 혼인 형태가 되었다. 고대국가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혼인의 주된 목적은 가계家系 계승에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이러한 목적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혼인이 가계를 계승하고 가문을 번성케 하며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개인 간 결합보다는 가족과 가족 간의, 가문과 가문 간의 결합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에 따라 중매혼에서는 혼인 당사자 간의 성격이나 인품이 잘 맞는지보다는 두 집안의 문벌이나 가풍이 맞는지, 경제적 사정이나 그 밖에 가정 사정이 비슷한지가 더 우선시되었다. 먼저 이런 것이 서로 맞고 이후 혼인 당사자 간의 궁합이 맞아야 비로소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혼인에서 집안의 이익이 혼인 당사자의 행복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는 당사자의 의지보다 부모와 가문의 의사가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결혼에 관한 이 같은 가치관이 조선사회 전반에 확산하면서 중매혼은 조선의 일반적인 혼례 형태이자 전통사회의 전형적인 혼인 유형으로 자리 잡았

다.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혼례를 치렀는데 그 첫 절차인 의혼議婚에서는 반드시 중매인을 세우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매인이 없는 혼인은 주변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고, 연애혼이 금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중매인은 혼인이 이루어지기까지 양가를 오가며 의견을 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매인은 지역에 따라 중매쟁이·중신아비·중파仲婆·매파媒婆 등으로 불렸으며, 주로 두 집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知人이 담당하였다. 집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활동을 기대할 수 없었던 시절에 중매인 없이 혼기婚期 찬 남녀가 혼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중매혼은 근대까지도 일반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30년대에 농촌에서 중매로 혼인한 경우 대부분 배우자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첫날밤을 치렀다. 중매인에 의해 혼담이 오가고 혼사가 거의 결정될 무렵 양가 부모가 상대편 마을에 가서 혼인 당사자의 얼굴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는 정도였다. 전통사회에서 중매에 대한 보답으로 물질적 대가는 크지 않아 대개 버선이나 옷 한 벌 정도였으며, 이러한 관행이 최근까지 이어져 현대에도 결혼이 성사되면 중매인에게 양복 한 벌 값 정도를 사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20년대 초 '신여성'이라고 불리는 지식인 계층에 의해 자유연애혼이 보급·확산되어 혼인이 집안 대 집안 결합이 아닌 두 남녀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바뀌어 가면서 배우자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혼인을 해야 했던 중매혼은 점차 연애혼에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도 중매혼이 여전히 지속되고는 있지만 연애혼에 비하여 양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중매인의 역할도 이전과는 달리 혼인 당사자를 서로 소개해 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오늘날 중매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결혼중개업자와 결혼정보회사의 등장일 것이다. 이들은 결혼을 희망하는 개인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 간에 원하는 조건의 상대자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회원가입비)를 받는 영리조직이다. 전통사회에서 개인이 인맥에 따라 가문과 가문의 혼사를 연결해 주던 중매인 역할이 오늘날에는 기업 형태로 일정 부분 이동한 것이다. 결혼정보회사에는 국내결혼정보회사와 국제결혼정보회사가 있으며, 한때 농어촌 지역 청년의 국제결혼이 장려되면서 국제결혼을 중매하는 국제결혼정보회사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혼인의 의미가 집안과 집안의 결합에서 개인과 개인의 결합으로 바뀌면서 중매혼의 의미나 중매인의 역할 또한 혼인 당사자에게로 맞춰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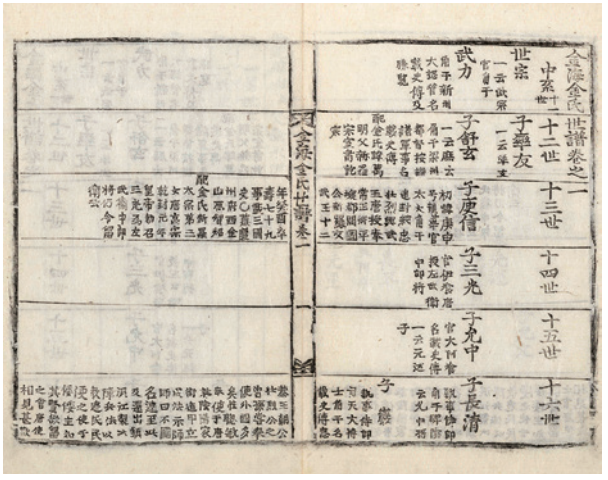
참고문헌 개화기·일제시기 결혼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이배용, 한국근현대사연구10,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9),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김경일, 푸른역사, 2012), 청운마을 혼례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박동철,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박동철(朴東喆)

중시조
中始祖

정의 한 성씨의 시조 이후 가문을 크게 중흥시킨 조상, 또는 시조 이후 실전된 계통이 분명하게 상고할 수 있는 가장 윗대의 조상.

개관 고려시대 문헌에서 족보 형태는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 주로 귀족이나 공신들이 그 가문의 신분을 문음門蔭으로 승계하기 위해 동고조同高祖의 오복五服 범위,



김해김씨세보 | 가로20 세로32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父·모母·처妻 삼족과 본인 중심으로 내외內外 양계 조상의 단선적 직계 세계世系 정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귀족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시조始祖가 누군지 등 4대조를 벗어나는 조상에 대한 정보는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 초기까지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1476) 서문을 쓴 서거정徐居正(1420~1488)은 그때까지만 해도 종법宗法에 의거한 족보 기록이 사대부 집안에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주요 성씨 가문에서 시조와 중시조中始祖 등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이후이다. 조선시대 성리학 수용을 통한 가례家禮 정착과 종법 질서에 따른 성씨별 부계父系 친족의식 성장과 문중조직 형성이 조선 후기에 본격화되면서 성씨별로 시조를 비롯하여 윗대 조상을 찾아 가문의 계통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족보 편찬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조선 후기 사회의 맥락 속에서 주요 성씨 가문에서는 시조 아랫대에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이나 시조 이후 계통이 실전되었다가 계통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윗대의 조상을 중시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내용 한국의 족보는 조상이 같은 자손을 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부계친족 중심의 족보 편찬이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족보에 기록된 중시조나 파시조派始祖와 같은 중심 조상은 족보를 만들 때 후손들이 동일한 시조로부터 시작된 계통의 갈래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족보상 기재되어 있는 시조는 그 성씨를 사용한 최초의 인물로 고려되지만 현실은 성씨 집단의 족보를 편찬하는 시기에 계보 상 소급이 가능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중시조와 파시조도 그들이 살아 있던 당시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와서 선계先系를 고증하고 같은 성씨 내에서도 현조顯祖 중심으로 파派를 구분하면서 나타난다. 대부분 집안에서 중시조는 세계상 윗대에 위치하고, 파시조는 아랫대의 관직자나 불천위 인물 등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진주강씨晉州姜氏는 고구려시대 강이식姜以式을 시조로 하고 이후 고려시대 강계용姜啓庸, 강위용姜渭庸, 강원용姜遠庸, 강민첨姜民瞻, 강궁진姜弓珍 등 5명의 중시조를 중심으로 분파해서 족보에 기술된다. 김해김씨金海金氏는 가락국 수로왕首露王을 시조로 하고, 신라시대 김유신金庾信을 중시조로 모신다. 경주이씨慶州李氏는 신라시대 알평謁平을 시조로, 신라시대 이거명李居明을 중시조로 모신다. 반남박씨潘南朴氏는 고려시대 박응주朴應珠를 시조로 모시고, 중시조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대개 중시조는 각 성씨 역사에서 시조 다음으로 윗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각 집안의 족보를 살펴보았을 때 중시조가 표기된 경우도 있지만 중시조를 표기하지 않고 파시조 중심으로 세계를 구분하는 경우 분파 시조를 중시조로 삼는 사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성씨 집단이 중시조를 추대하는 것은 아니다. 족보에서는 파시조 또는 파조派祖에 해당하는 명칭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경주이씨파보 | 가로22 세로35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특징 및 의의 중시조는 조선시대에 성리학 수용이 심화되면서 조상제례의 사회적 실천과 친족의식 강화에 따른 족보 체계화 및 선계 고증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시조, 중시조, 파시조는 각 성씨 집단이 후대에 고증을 통해서 계통을 서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조와 중시조의 경우 선계를 찾기 위해 한 성씨 후손들이 문헌 조사, 답사, 탐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증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선계를 확정한다. 파시조는 상대적으로 조선시대 현조를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고증의 노력이 요구되지는 않았다. 각 성씨 집단에서 중시조에 대한 고증은 후기 사회에서 조상의 계통을 찾고자 하는 성씨 집단의 당시 관심사와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성관 시조의 지방 토착적 기원과 기념활동의 양상(권기석, 조선시대사학보65, 조선시대사학회, 2013), 여말선초 상·제례 변동과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이상균, 한국민족문화4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한국의 성씨와 족보(이수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족보(정승모,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필자 이상균(李相均)

중자봉사

衆子奉祀

정의 차자 이하의 아들이 종통을 계승하여 봉사하던 일.

개관 중자봉사衆子奉祀를 둘러싼 논의는 조선시대 종법宗法에 따른 봉사자奉祀子 선정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종법에 따르면 적장자嫡長子가 봉사를 주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적장자가 자손 없이 사망하면 차자次子 이하의 아들, 즉 중자衆子가 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형이 사망하면 아우가 봉사하는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종법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점차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더라도 중자가 봉사하지 않고 적장자의 계후자繼後子를 세워 가계家系를 계승하고 봉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봉사조 | 경국대전 | 가로23 세로35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용 조선 전기에는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으면 입후立後하여 봉사하게 하지 않고 중자가 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봉사조奉祀條에도 "만약 적장자에게 후사가 없으면 중자가, 중자에게 후사가 없으면 첩자妾子가 봉사한다."라고 하여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으면 중자가 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중자봉사는 '형망제급'의 종법 논리로 뒷받침되었다. 중자가 부모 봉사를 담당하면 아들이 없는 적장자의 제사는 제사를 맡게 된 중자와 그 자손이 직계조상제사와 함께 치르거나 적장자의 처가 계후자를 세워 적장자와 자신의 제사를 따로 맡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16세기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는 적장자가 아들 없이 사망하였다 해도 장자長子의 처인 총부冢婦가 있으면 중자가 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총부가 제사를 주관하다 입후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만 중자가 봉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차자에게 봉사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헌부·사간원의 논의로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도 적장자의 후사後嗣를 세워 봉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현실에서는 중자봉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명종明宗 대에는 봉사권奉祀權을 둘러싼 중자와 총부 사이의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장자의 처가 총부로서 봉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법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1553년(명종 8)에는 장자가 사망한 후에 다시 후사를 세웠다면 장자의 처에게는 토지와 노비를 중자

의 예로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중자를 봉사자로 세운 후에는 적장자의 처가 봉사권을 두고 다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듬해인 1554년(명종 9)에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 봉사하다가 사망한 장자의 처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장자의 처는 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후 적장자 중심의 가계 계승 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입후가 증가하면서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더라도 중자가 봉사하지 않고 적장자의 처가 입후하여 아버지와 직계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만이 아니라 적자嫡子는 없지만 첩자가 있는 경우에도 중자 봉사를 선호하였다. 이는 모계 신분이 천한 첩자가 봉사하는 것을 꺼린 탓이었다. 따라서 적장자 중심의 가계 계승 체제가 정착되어 중자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뒤에는 첩자에게 봉사하게 하지 않고 적장자의 후사를 이을 계후자를 세워 봉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적자가 있는데도 차자 이하의 아들에게 봉사하게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적장자·적장손이 있는데도 아버지가 제사를 감당할 수 없다거나 불충·불효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중자에게 봉사하게 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경우 적장자나 적장손 측에서 봉사권을 주장하며 관에 청원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성종成宗 대에 이르러 이를 규제하기 위해 부모의 명을 칭탁稱託하여 적통嫡統을 빼앗는 자를 처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에 고하여 허가받도록 법제화하였다.

특징 및 의의 중자봉사는 적장자봉사가 정착되지 않았던 조선 전기에 주로 나타났다. 주로 중자봉사는 적장자가 후사 없이 사망하였을 때 행해졌지만 적장자에게 친자親子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장자 중심 봉사와 가계 계승 체제가 정착되면서 적장자에게 자식이 없더라도 적장자의 계후자를 세워 선대 제사까지 맡도록 함으로써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6세기 유교적 친족질서 정착 과정에서의 총부권 논의(박경, 조선시대사학보59, 조선시대사학회, 2011), 17~18세기 형망제급의 사례를 통해 본 가계계승의 실현과정(고민정, 사학연구140, 한국사학회, 2020), 조선전기 의례연구(지두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조선중기 제사승계와 형망제급의 변화(김윤정, 조선시대사학보20, 조선시대사학회, 2002).

필자 박경(朴景)

증여
贈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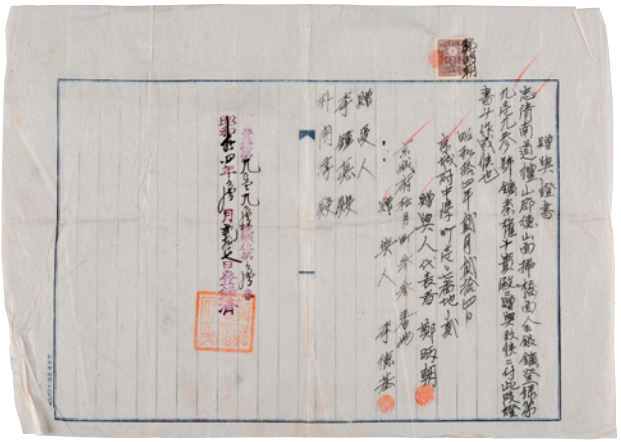
정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54조).

내용 증여贈與는 무상無償·낙성諾成·편무片務·불요식不要式 계약이다.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이다. 국가에서는 자기 재산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없어서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에 대해 제3편 채권 제554조에서 제562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허용하고, 직계조상과 후손 그리고 남편과 처첩 사이에는 증여자의 자필 유서遺書만으로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 이외의 자 사이에는 친족이거나 관원이 증인과 필집筆執으로 참여하고 관의 입안立案을 받아 진정성립眞正成立이 분명한 관서문기官署文記만 효력을 인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별급別給'이라고 하였다. 별급의 사유는 과거급제·혼인·득남得男·은의恩義에 대한 보답과 마마 같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등이다. 별급 대상이 되는 자는 주로 사위, 외손자, 손녀사위, 수양자녀, 시양자녀, 첩 등이며 처남, 종손부, 생질, 질녀, 사촌형, 오촌질녀서, 이성질異姓姪, 족손도 대상이 되었다. 대개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어지는 사이이다.

조선시대 상속재산은 조상 전래 '조업祖業'으로 후손에게만 상속시켜야 한다는 혈연상속과 남녀균분상속이 상속 원칙이었다. 부모 등은 별급으로 상속에서 특정 자녀를 우대하거나 피가 통하지 않는 타인에게 재



증여증서 | 가로38 세로27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산을 물려줄 수 있다. 이는 남녀균분상속 원칙과 '후손 외에는 주지 말라不得與他 勿給孫外'는 혈연상속의 원칙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현행 〈민법〉은 불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증여자는 무상계약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지만 부담부 증여는 부담의 범위 내에서 유상계약과 같이 담보책임을 진다. 또 증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증여자의 사망으로 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허용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유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37조 이하)이 준용된다(제562조).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에는 강력한 혈연상속과 남녀균분상속 의식으로 재산에 대한 가족적 구속력이 강하였다. 재주財主의 자기 자손에 대한 별급은 남녀균분 상속법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타인에 대한 별급은 혈연상속을 약화시켰다. 이는 재산에 대한 가족 구속력을 약화시켜 소유권의 재산권·개인권적 성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등가교환, 즉 유상계약인 매매가 기본적인 거래 형태로, 무상계약인 증여는 그 활용도가 낮아 사회적·경제적 작용이 매우 미흡하다. 다만 상위계층의 사회적 책임과 부의 사회환원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선·종교·교육·문화 또는 학술 등의 특수한 목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증여나 부의 사회환원을 위한 증여는 사회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균분상속의 원칙과 관념,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권과 충돌한다. 1977년 개정 〈민법〉에서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신설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현재는 증여가 증대함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증여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續大典, 16세기 별급관행(이문현, 고문서연구14-1, 한국고문서학회, 1998), 가족끼리 왜 이래(박민제, 동아시아, 2018),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채권각론(곽윤직, 박영사, 2012), 한국법제사(박병호, 민속원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정긍식(鄭肯植)

직계가족
直系家族

정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관 한국 가족은 기본적으로 직계가족直系家族의 특성을 가진다. 직계란 친족집단을 규정하는 법률적 용어이며,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바로 이어진 부모'라는 의미로서 나를 중심으로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등을 지칭한다.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바로 이어진 자식'이란 의미로,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서는 핵가족과 대비되는 직계가족의 범주로 직계존속을 중심으로 한 부부+양(편)친으로 구성된 가족과 직계 존비속이 한 가족을 구성하는 부부+양(편)친+자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부부+양(편)친 가족 비율은 1980년 0.6%에서 2000년 1.2%로 증가한 이후 2021년에는 0.9%로 감소하였다. 부부+양(편)친+자녀로 구성된 가족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1980년 10.4%에서 2000년 6.8%, 2021년 2.8%로 나타나고 있다. 직계가족 감소는 확대가족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 직계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가계도를 중시하는데, 직계는 재산 및 제사상속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 동시에 이와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받는다. 한국의 직계가족은 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양자는 적자의 권리를 그대로 계승한다. 최재석崔在錫 교수는 역사적 사료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중기 이후 상속제도, 양자제도, 혼인제도 등에서 부계혈연 중심 가족 원리가 그 이전 시대에 비해 더욱 강화되어 왔음을 주장하였다. 전통사회의 친족 및 동족집단은 한국 가족의 역사적 특수성 및 한국 사회를 조직하는 구성원리의 뿌리 규명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한국 가족은 형태상으로는 2세대 핵가족 범주에 속하며, 부부 중심의 핵가족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계가족 원리를 실천하는 하이브리드hybrid적 특성을 보인다. 1960년대 산업화 및 도시화와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부부 중심의 핵가족 이념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계 중심의 직계가족 범위에서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도시 중산층 여성의 가족 경험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성들이 핵가족 이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 직계가족의 가치를 강화하고 직계가족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 적극 협조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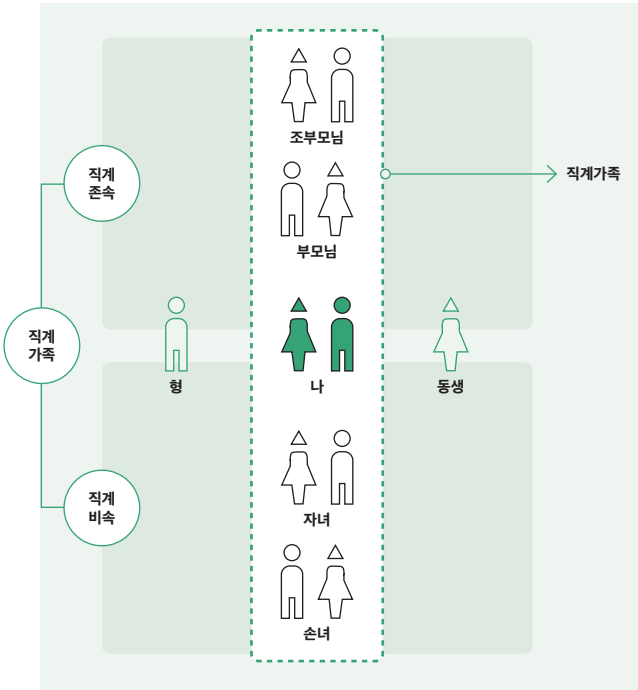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직계가족의 근간이던 가부장적 가치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사건 및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전통 가부장제의 이념적 근거인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저출산으로 초래된 부계가족의 재생산 위기가 심화하고 있으며, 한국적 맥락의 개인화 추세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및 부계혈연중심주의 질서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의례 중 혼례와 장례 규모가 축소되고, 한때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던 며느리의 명절증후군을 야기한 차례 및 제사 문화의 쇠퇴도 직계가족 쇠락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 사회의 가족은 전통적 부계혈연 중심의 가부장성에 저항하면서도 동시에 핵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직계 중심의 가족주의적 연대를 도모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핵가족의 이상과 직계가족의 현실이 병존하는 현상에 '신가족주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따라서 한국 가족의 변화 흐름은 전통의 퇴조나 근대성의 확산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지만 서구식 핵가족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참고문헌 조선조 사회와 가족(이이효재, 한울, 2003), 한국가족(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한국의 가족과 종족(이광규, 민음사, 1990).

필자 함인희(咸仁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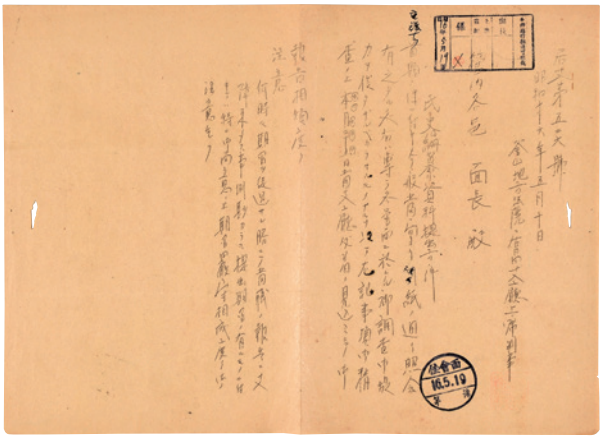


직계가족

창씨개명
創氏改名

정의 일제강점 말기인 1940년부터 일본식 성명을 쓰도록 의무화하여 한국인의 이름 및 가족제도를 일본식으로 개편한 정책의 통칭.

내용 창씨개명創氏改名은 '창씨'와 '개명'의 합성어로,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다. 1940년 당시 언론매체에서 사



창씨개명 관련 공문 | 가로33 세로24 | 일제강점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청 상석판사가 관내 읍면장에게 보낸 창씨(創氏) 관련 공문.

용하던 명칭이 정착된 사례이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씨氏를 만들고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 된다. 법적으로는 1939년 12월 조선총독부가 〈조선민사령중 개정의 건〉과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의 법령을 조선총독부 제령制令으로 발포하면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한국인은 시행일인 1940년 8월 11일부터 한국식 성명 체계 대신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일본식 씨를 창설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씨를 창설하는 김에 이름[名]까지 고치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 1940년 2월 11일부터 각 부府·읍邑·면面 호적계에 일본식 씨명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창씨개명의 권한은 호주戶主에게 부여되었으며, 씨를 창설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개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창씨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호주의 성을 따서 씨로 사용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역대 천황의 이름이나 시호, 황족과 왕공족의 칭호, 유명한 신궁·신사의 명칭, 유력 귀족가문의 씨나 역사적인 공신의 씨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한국인의 성姓을 가져다가 씨로 신고하거나 개명을 신청하면서 새 이름에 성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제한을 두었다. 가령 이수일이라는 인물이 김金을 씨로 신고한다거나 홍길동洪吉童이 다나카田中로 창씨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름도 '길동'에서 '홍길동'으로 바꾸어 '田中洪吉童'으로 쓰겠다는 개명신고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아울러 성을 갈아치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새로 만들 뿐이고, 호적에 본관과 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강변하며 일본식 창씨 신고를 독려하였다.

일본식 씨를 신고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식 가족제도는 1940년 8월 10일부터 모든 한국인에게 자동 적용되었다. 그때까지 한국인이 사용하던 성姓은 부계혈통의 표식으로,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아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반면 일본인의 씨氏는 가家의 표식으로, 같은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씨를 사용하였다. 즉 결혼과 이혼, 입양과 파양 등으로 인해 소속되는 가家가 변경되면 씨氏도 바뀌었다.

한국의 성姓 제도 아래에서는 심순애라는 여성이 이수일과 결혼하거나 이혼한 뒤 홍길동과 재혼하더라도 법률적인 성명은 심순애로 동일하다. 반면 일본식 씨 제도가 시행된 1940년 8월 10일 이후에는 결혼 전 심순애였던 여성이 이수일과 결혼하여 이수일의 호적에 입적되는 순간 법적 이름이 이순애로 변경된다. 이혼하여 친정의 호적으로 복귀하면 도로 심순애가 된다. 다시 홍길동과 재혼하여 홍길동의 호적에 부인으로 입적되면 홍순애가 되는 것이다.

즉 창씨개명은 한국인의 법률적 이름체계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가족제도까지 일본식으로 개편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부계혈통의 표식인 성姓은 법률적인 이름에 사용되던 지위에서 격하되어 호적에만 본관과 함께 기재되었다.

또한 씨제도 도입과 함께 이성양자異姓養子 및 서양자婿養子도 가능하도록 〈조선민사령〉이 개정되었다. 이성양자는 성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이고 서양자는 데릴사위, 즉 남편이 부인의 호적에 입적하여 장인의 양자가 되는 것이다. 만일 이수일이 심순애와 결혼하면서 심순애의 호적으로 입적하는 것이 예전에는 불가능하였으나 씨제도가 도입되면서 실현되었다. 그래서 서양자가 되는 혼인관계를 입부혼入夫婚(남편이 아내의 호적에 입적하는 결혼)으로도 불렀다.

이성양자는 법적으로 양자입양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려면 파양罷養 절차를 밟아야 하였다. 반면 서양자는 딸의 혼인신고에 의한 사위의 입적신고로 성립되는 양자관계였다. 만일 딸과 사위가 이혼하게 되면 별도의 파양절차 없이 이혼신고만으로 양자관계가 해소된다는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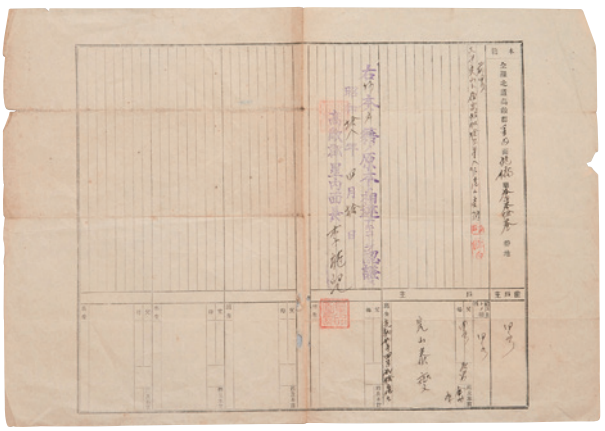
당시 한국인들은 조선총독부 당국의 홍보와 달리

오랫동안 사용해 온 성명을 버리고 일본식 씨명을 새롭게 써야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번거롭게 일본식 씨를 창설하는 신고를 하기보다는 6개월 후에는 성姓으로 사용하던 한자를 씨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조상이 물려준 성을 계속 법률적인 호칭으로 사용하려면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이때 신고에 의해 창설되는 씨를 '설정창씨設定創氏'라 하며, 6개월 후 자동적으로 창설되는 씨를 '법정창씨法定創氏'라 하였다.

반면 조선총독부 당국은 창씨 신고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신고 건수를 늘이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였다. 공립학교 교사와 총독부 관공리, 중추원 참의, 도회의원, 부협의회, 면협의회 의원 등에게 창씨 신고를 솔선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 외에도 애국반, 행정직원, 경찰조직, 각종 외곽단체 등으로 하여금 창씨 신고를 위한 선전 활동에 나서도록 독려하였다.

창씨 신고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창씨명을 기재한 문패를 내걸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참고자료로도 수록된 '창씨 미신고자는 학교에 입학을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은 실행 여부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풍문으로 나돌았던 것은 분명하다.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소문이 퍼진 것만으로도 당시 한국인들이 심한 압박을 느꼈다는 점은 명백히 드러난다. 결국 1940년 8월 11일 신고 마감 당시에는 전체 호적 400만 8,925호 가운데 80.3%인 322만 693호가 창씨 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학교나 직장 등 법률적인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공적 공간을 제외하고 실제 일상생활과 개개인의 의식에까지 창씨명과 일본식 가족제도가 이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갑작스럽게 강요에 의해 일본식 씨명을 강요당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큰 반감을 품었다. 고위직에 오르고 적극적인 친일행각을 드러낸 인물들 가운데 일본식으로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친일적인 인물들마저도 창씨개명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준다.



호적 | 가로40 세로28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일본식 창씨개명 이름으로 발급된 호적등본.

일제가 무리하게 창씨개명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전쟁 수행에 병력이나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수월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가족제도, 특히 부계혈통에 기초한 종족집단의 힘을 약화시키고 일본식 이에いえ,家 제도를 이식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일본의 국가 통치 이념은 황실을 본가이자 어버이로, 국민이 속한 가호를 분가이자 자식으로 간주하며 본가의 지도에 충실히 따르며 한 가족과 같이 단결해야 한다는 소위 '가족국가론'이자 '국체의 관념'이었다. 그러므로 부계혈통에 따른 한국인의 가족관습은 양립하지 못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창씨개명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씨명은 순식간에 실질적 효력을 잃었다. 일본명으로 되어 있던 문패를 뜯어내고, 9월에 개학한 학교에서는 창씨명으로 기재된 출석부를 원래의 한국식 이름으로 고치는 작업부터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호적에는 여전히 창씨명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청에 의해 〈조선성명복구령〉이 공포·시행되면서 공식적으로 창씨개명 정책은 폐지되었다.

특징 및 의의 창씨개명은 당시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한 정책으로, 소위 '내선일체'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비중을 갖는다. 그리고 한국의 가족관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일제시기 조선인의 일본국민화 연구(이승일, 한국학논집34,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과 족보(김필동, 사회과학연구21-4,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창씨개명(水野直樹, 정선태 역, 산처럼, 2008), 창씨개명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이대화, 숭실사학26, 숭실사학회, 2011), 창씨개명연구(정주수, 동문, 2003), 창씨개명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구광모, 국제정치논총45-4,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필자 이대화(李大和)

처가
妻家

정의 아내의 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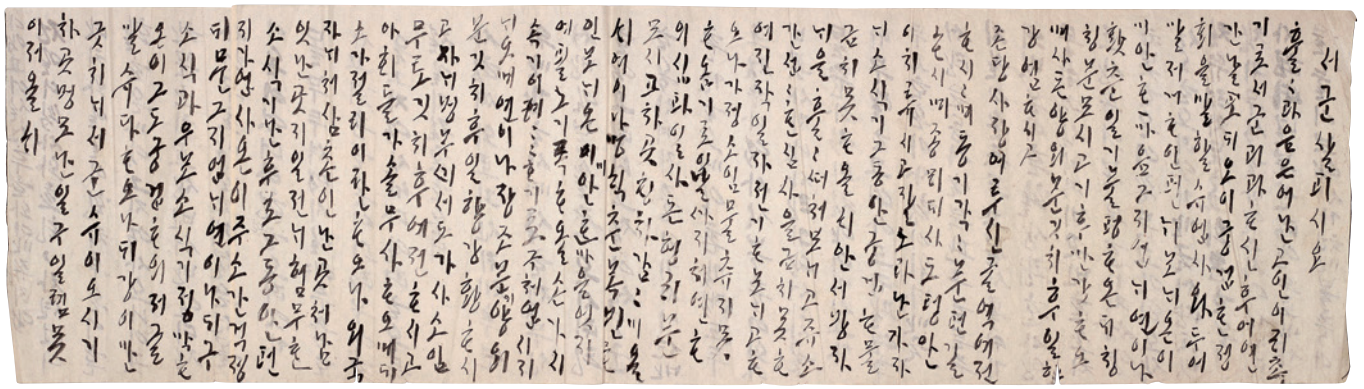
개관 처가妻家는 아내의 본가로, 유교적 종법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멀리할수록 좋다는 인식이 생겼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에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전통으로 처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처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인이나 처가 친족의 도움으로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하기도 하여 처가의 중요성이 작지 않았다.

내용 처가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살던 집을 말한다. 처가에는 장인과 장모 그리고 처남·처제 등이 살고 있다. 처가는 하나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마을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동족이 마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가에 가면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장인과 아내의 친족이었다. 이런 경우를 '처가 마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귀여가혼을 하였다. 즉 남자는 아내의 집(처가)에서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아내의 집에서 시작하였다. 일정 기간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후 남자의 본가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아예 처가에서 토지를 받아 정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관행으로 처가에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았고 처가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조선시대 유교에 기반을 둔 종법 질서가 세워지면서 양반과 지식인층 중심으로 남자의 집에서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친영親迎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부계父系친족이 모여 마을을 구성하는 동족마을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부계친족들이 모여 사는 동족 마을에서는 안정감과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지만 동족 마을을 떠나면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었다. 결국 종법 질서 도입과 동족 마을 형성 이후 처가는 사위에게 불편한 곳이 되고, 주인이 아니라 손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뒷간과 처가는 멀수록 좋다.'는 말이나 '사위는 백년손님'이란 표현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사위가 결혼 후 처가에서 생활하면 '데릴사위'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가능하면 데릴사위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어려운 남자가 재산은 있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집의 여자와 결혼하고 처가에 살면서 처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데릴사위제도였다. 데릴사위제는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까지로 그 연원을 거슬러 가는 오래된 관습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처가살이를 기피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사위와 처가 관계는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친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에도 친영이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귀여가혼의 전통이 남아



처가에서 사위와 사돈에게 보낸 한글 편지 | 가로66 세로18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다. 즉 반친영半親迎 등의 방법으로 여전히 결혼은 처가에서 하였으며, 신혼생활을 처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처가의 도움을 받았으며, 양반 가문에서는 사위의 입신양명을 위해 후원하기도 하였다. 유교적 종법 제도라는 이념적 규정에도 실제 생활에서는 처가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처가의 의미는 종법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종법 제도 도입으로 부계친족집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처가는 본가에 비해 그 중요성이 약하게 인식되었다. 본가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인식된 반면 처가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인식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종법 제도가 약화되어 처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처가와의 관계도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여성의 역사적 실재와 처가왕래(박미해, 사회와 이론44, 한국이론사회학회, 2023), 혼인풍속 서옥 기록과 삼국사기 초기사례를 통해 본 고구려의 혼인 및 처가방문생활(박혜인, 역사민속학18,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필자 김창민(金昌民)

처가살이

정의 혼인 후 남편이 아내의 본가에서 생활하는 것.

개관 처가살이는 결혼 후 처가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전통으로, 여자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일정 기간 여자의 집에서 생활한 뒤 남편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던 관행이 처가살이로 나타났다. 조선 중기 이후 유교적 종법宗法 체계 도입으로 처가살이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지만 현대사회가 되면서 다시 처가 근처에서 생활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용 부계혈통체계를 가진 동아시아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남편의 본가 또는 마을에서 생활하는 부거제父居制 전통이 있었다. 결혼한 부부가 생활하는 장소에 대한 규정을 거주율居住律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계혈통사회는 부거제를, 모계혈통사회는 모거제母居制를 선택하고 있다.

부계혈통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아내의 본가에서 생활하는 것을 처가살이라고 한다. 처가살이는 혈통체계와 거주율이 어긋나는 예이다. 즉 처가살이를 하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는 처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남편이 속한 친족집단의 구성원이다. 이런 면에서 처가살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겉보리 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 '뒷간과 처가는 멀수록 좋다.'는 속담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처가살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 절차와 관련이 있다.

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여자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결혼식을 하기 위하여 남자가 처가로 가는 것을 '초행醮行'이라고 하였다.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밤을 보내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신부는 계속 처가에 머물렀다. 처가에 머무르고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신랑이 처가에 가는 것을 '재행再行'이라고 하였으며, 신부는 자기 본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어느 정도 성장시킨 뒤 비로소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신행新行'이라고 하였다. 결국 결혼한 부부가 일정 기간 처가에서 생활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이를 '남귀여가혼'이라고 한다.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무수히 많다. 신사임당申師任堂은 결혼 후 친정인 강릉에서 머무르면서 율곡栗谷 이이李珥를 출산하였고, 이후 율곡은 외가에서 성장하였다.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李元秀는 상당 기간 처가살이를 한 것이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 형성된 종족 마을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 경주 양동마을의 경우 경주손씨慶州孫氏가 풍덕류씨豊德柳氏에게 장가들어 양동마을에 세거世居하였고, 이후 여주이씨驪州李氏가 경주손씨에게 장가들면서 양동마을에 세거하여 경주손씨와 여주이씨가 종족 마을을 형성하였다. 전라남도 영암 영보마을의 경우에도 거창신씨居昌愼氏 남자가 영보마을에 살고 있던 전주최씨全州崔氏 여자와 결혼한 뒤 영보마을에 세거하면서 영보마을은 전주최씨와 거창신씨가 세거하는 종족 마을이 되었다.

이처럼 처가살이는 사족士族 지배를 가능하게 한 종족 마을 형성의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유교 이념이 강화되면서 친영親迎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부거제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처가살이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가능하면 처가살이를 피하고자 하였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으로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원가족에 대한 애착으로 며느리보다는 딸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면서 딸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도와주려는 부모가 증가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 후 아내의 본가와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처가살이는 유교적 종법 질서가 확립되기 전인 조선 전기까지는 보편화된 관행이었다. 그러나 유교적 종법 질서 도입으로 부계혈통이 강조되면서 처가살이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시집살이와 처가살이는 혈통체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친족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처가와 친가 중 어느 쪽과 관계가 더 깊은가가 처가살이와 시집살이를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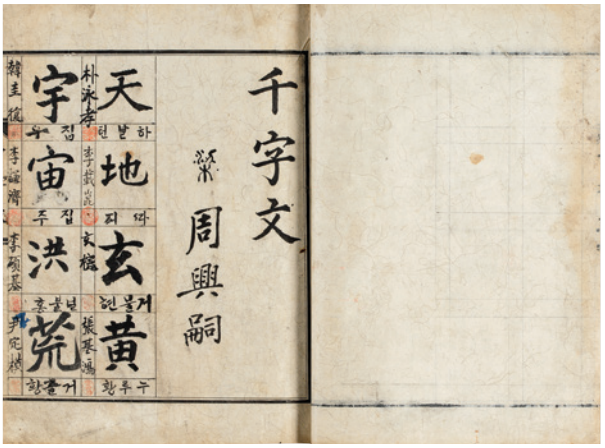
참고문헌 분재기에 나타난 조선시대 생활 풍속의 변화(전경목, 대동사학1, 대동사학회, 2002), 조선초 혼속변천에 따른 법적 영향에 대하여(문형진, 국제지역연구7-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7),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92).

필자 김창민(金昌民)

천인천자문
千人千字文

정의 새로 태어난 아들의 무병과 장수, 번성을 바라며 1천 명에게 천자문千字文 중 한 자씩을 쓰게 하여 만든 천자문 책.

내용 천인천자문千人千字文은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천 명의 지인들에게 일일이 찾아



천인천자문 | 가로27 세로34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다니며 부탁하여 한 글자씩을 받아 만든 책이다. 천인의 지혜가 아이에게 전해져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뜻을 지니며, 흔히 돌을 맞이하는 아이의 돌상에 놓는다. 예로부터 이렇게 하면 천인의 식견이 모두 아이에게 전해진다고 믿었다. 특히 과거 급제를 한 진사進士나 생원生員을 찾아다녔는데, 글을 빌려 만들었다 하여 '걸자乞字 천자문'이라고도 했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합심하여 썼기 때문에 만인문萬人文, 혹은 글을 익혀서 머리가 세도록 장수를 빈다는 의미로 백수문白首文이라고도 하였다.

천인천자문은 천 사람의 글씨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필체가 모두 다르다. 글자를 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글자의 맨 왼쪽에 써야 했으므로, 1인 한 글자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졌다. 천자문 중 한 자씩 글자와 훈訓을 직접 쓰고 이름과 서명(혹은 인장)을 찍었는데, 날인한 도장도 각양각색이다. 또한, 지인이라고는 하지만 천자문의 순서대로 한 글자씩을 받으면서 빈손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큰 결례였다. 그래서 조기나 북어 같은 어물魚物이나 술을 준비해 부탁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징 및 의의 천인천자문은 자식의 훌륭한 장래와 학문 성취,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천 명이나 되는 지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정성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풍속이다. 또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한 글자를 정성껏 써주는 애정이 돋보이는 민속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불과 민속(장장식, 방재와 보험120, 한국화재보험협회, 2007), 생활문화와 옛 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0).

필자 이해준(李海濬)

첩
妾

정의 정식 혼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부관계로 함께 사는 여자.

역사 『예기禮記』의 내칙內則에서는 '빙즉위처 분즉위첩聘則爲妻 奔則爲妾'이라 하여 처妻와 첩妾을 구분하였다. 즉 예를 갖추어 혼인하면 처가 되고 예를 갖추지 않고 달려가서 같이 살면 첩이 된다는 것이다. 본래는 여자가 혼인할 때 반드시 정식 혼인 절차를 거쳐 처의 위치를 확보하라는 권고 사항이었다. 조선이 유교사회를 표방하면서 이 규범의 영향력이 커졌다.

고려에서 여러 명의 처가 공존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조선에서는 '예무이적禮無二嫡'이라는 개념이 확립되면서, 더 이상 두 명의 적처嫡妻가 공존할 수 없게 되었다. 다처에서 일처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쟁적爭嫡 논란이 있었고, 그것은 유처취처有妻娶妻 금지로 정리되었다. 만약 2명의 처가 있다면 누가 먼저 혼인하였는지를 따져 처와 첩을 구분하고, 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처를 취할 수 없게 하였다. 이후 첩의 아들은 문과文科를 볼 수 없다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이 확립되면서 처와 첩의 신분적 차이는 뚜렷해졌다.

내용 조선 초기 처첩 구분이 명확해지는 데에는 태종의 역할이 컸다. 태종은 신덕왕후를 계모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덕왕후가 태종의 친모 신의왕후와 공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신의왕후는 정식 왕비이지만 신덕왕후는 정식 왕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왕자의 난'의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태종은 태조의 또 다른 후궁이었던 성비成妃는 오히려 계모로 인정하였다. 신의왕후 사망 후 비가 되었기 때문에 계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종의 이러한 논리는 당시 유처취처 금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처첩 논의가 있었지만 조선 초기에는 처와 첩의 신분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세조 때 서자인 유자광이 논란 속에서도 정랑正郎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처첩 구분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첩에 대한 법적 조항들이 명시되고, 적처와의 신분적 차별성이 선명해졌다. 첩은 여러 면에서 적처와는 등급이 달랐다. 유교사회에서 관계의 중요도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상복제喪服制에서 첩의 위치는 낮았다. 기본적으로 남편에 대한 상복과 남편의 부모·처·아들에 대한 상복 규정밖에 없다. 적처가 남편과 함께 거의 모든 가족관계에 대해 상복을 입는 것과 대조된다. 구체적으로 첩은 남편에 대해 참최 삼년복을 입지만 남편은 첩에 대해 상복이 없다. 적처에 대해 기년복期年服을 입는 것과 비교된다. 그리고 첩은 적처에 대해 기년복을 입는 데 반해 적처는 첩에 대해 상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신분적 차이가 있음에도 처와 첩은 같은 단위로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대명률大明律』 형률에는 대역죄에 연루되었을 때 처첩은 모두 공신 집에 노비로 주어진다는 규정이 있다. 처와 첩 사이에 구분이 있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첩도 처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로 인정된 것이다.

첩이 신분상 가장 크게 제약을 받은 것은 그 자손이 과거를 볼 수 없다는 『경국대전』의 조항이다. 즉 서자는 문과를 볼 수 없다.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첩과 그 아들이 온전한 양반의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첩과 적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현실 생활에서도 첩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였다. 조선시대 18세기 경상북도 문경 지역의 관직자 권상일은 세 번 상처喪妻한 후 소실小室을 들였다. 그런데 그는 일기에서 "풍산이씨 어른 집에 가서 소실을 취하였다."고 짧게 언급할 뿐이었다. 드러내놓고 알릴 일이 아니라는 분위기이다. 현재 이 지역에 전해지는 얘기로는 권상일이 소실과 혼례를 치를 때 사모관대에서 뿔을 하나 빼냈다고 한다. 소실에 대해 격을 낮춘 것이다. 그래서 이후 소실의 자식들은 지역에서 '뿔 뺀 자식'들로 불

렸다고 한다. 처와 첩의 신분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조선에서 첩과 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이유는 처가 신분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첩의 아들이 있어도 집안을 잇지 못하기 때문에 적처는 이들을 경쟁자로 느끼지 않았다. 적처에게 아들이 없어도 양자해서 집안을 이을 권리는 적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만큼 극한 대립은 없었고 오히려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거주하는 공간도 달랐다. 같은 가옥 내에 처와 첩이 공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첩을 두는 양반 남자라면 경제력이 있었고, 따라서 분리 거주로 갈등의 요소를 줄였다. 결과적으로 처와 첩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첩은 처가 없을 때 처를 대신해서 적처의 아이를 기르고, 집안 살림도 건사하였다. 아울러 남편 파견 근무지에 따라가서 부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집안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적처는 따라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첩은 처에 비해 신분상 많은 불이익을 받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안에서 부인으로 인정받고, 그에 해당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근대로 오면서 첩의 위치는 매우 불안정해졌다. 조선에서는 신분적 차이는 있더라도 제도권 내에 있었지만,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 철폐가 이루어지면서 그 위치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1915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첩의 입적이 금지된 후로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법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실제 1930년대 후반 『최병채일기崔炳彩日記』를 보면 여러 명의 첩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같이 산다는 수준이고 조선시대과 같은 개념의 첩은 아니었다. 1950년대에 이르면 축첩 즉 첩을 두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보다 확산되었고, 1960년에는 공무원 축첩 금지 등과 같이 정책적으로 억제되어 더욱 설자리가 없게 됐다. 이후 실질적으로 첩이 있더라도 정식 첩의 개념이 아닌 내연녀 혹은 상간녀 등과 같이 간통관계의 의미로 변화하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에서 처첩 구분이 유난히 심하였던 것은 적처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서옥제壻屋制 이래로 남자가 움직이는 혼인을 해 온 조선으로서는 여자 집안이 남자 집안과 비교적 대등한 관계였다. 따라서 적처 집안의 영향력이 강하고 적처의 지위도 높았다. 적처는 첩에 대해 배타적 우위를 점하고 적·서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에서는 서자가 적자가 없을 때 집안을 이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조선에서는 서자가 가계를 계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적처와 적처 집안의 영향력 때문이다. 이는 조선 가족사회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明律直解, 丙子日記, 淸臺日記, 太祖實錄, 太宗實錄, 조선시대 양반의 축첩현상과 경제적 부담(이성임, 고문서연구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정지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이순구, 너머북스, 2011), 조선후기의 첩과 가족질서(정지영, 사회와 역사65, 한국사회사학회, 2004).

필자 이순구(李舜九)

첩자봉사
妾子奉祀

정의 적자가 없어서 첩자가 봉사하던 일.

개관 종법宗法에 따르면 적처嫡妻에게 아들이 없으면 첩妾에게서 낳은 아들이 봉사자奉祀子가 되었다. 그런데 종법 질서는 부계 중심적인 질서가 발달한 중국에서 출현한 가계家系 계승 원칙이었다. 부계父系뿐만 아니라 모계母系의 신분도 중요했던 조선사회에서 사대부들은 모계의 신분이 천한 첩자妾子에게 봉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꺼렸다.

또한 적장자嫡長子에게 적자適者가 없어서 그의 첩자가 봉사奉祀하게 되면 모계 신분이 천한 첩자가 적장자만이 아니라 부모 등 조상의 봉사까지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 또 첩자가 봉사하면 가문의 격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적장자에게 첩자가 있는 경우에도 중자衆子에게 봉사하도록 하거나 계후자繼

後子를 세워 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 양반층에서 첩자봉사妾子奉祀는 드물게 이루어졌으며, 첩자가 봉사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적족嫡族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내용 첩자봉사는 적자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품계에 따라 3대·2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조선 후기 양반층에서는 4대 봉사를 하였다. 또한 공신功臣, 선현先賢 등의 불천위不遷位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첩자가 봉사하게 되면 제사를 승계한 적장자뿐만 아니라 그 조상의 제사까지 지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적장자의 적동생嫡同生이나 적계嫡系친족으로 적장자의 계후자가 된 자가 제사를 봉행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첩자봉사를 둘러싼 논쟁은 첩자와 적장자의 아우나 계후자 사이에 봉사권奉祀權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논의가 1473년(성종 4) 참판參判 조방림趙邦霖의 첩자 조복해趙福海와 적동생 조부림趙傅霖 사이의 분쟁에 대한 논의였다. 조방림은 첩자 조복해를 후사後嗣로 삼았는데, 아우 조부림이 자기가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복해의 봉사조奉祀條 재산을 빼앗았다. 조부림은 "적장자에게 후사가 없으면 중자가, 중자에게도 후사가 없으면 첩자가 봉사한다."는 『경국대전經國大典』 봉사조 규정을 거론하며 봉사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조복해가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院相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 참여한 원상 중 첩자봉사를 옹호한 대신들은 적장자에게 첩자만 있다 하더라도 후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조복해가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자가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신들은 『경국대전』 봉사조 규정은 적장자—중자—첩자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첩자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은 정리情理에 온당하지 않으며, 적족嫡族을 능멸하고 귀한 자를 능멸하고 연장자를 능멸하는 풍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천한 자가 조상제사를 받들고 일족의 종주宗主가 되게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이 논의는 중자가 봉사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종법에 첩자봉사가 인정되고 있었으며, 첩자 역시 그 아버지의 친자라는 관념 또한 존재하였다. 따라서 첩자봉사는 소수라 하더라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 위 『경국대전』 봉사조 규정의 세주細註에서도 양첩자良妾子와 천첩자賤妾子의 봉사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세주에서 "적장자에게 첩자만 있는데 아우의 아들로 후사를 삼기를 원하면 들어주고, 자신과 첩자가 따로 하나의 지파支派를 만들고자 하면 또한 들어준다."라고 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적장자에게 첩자만 있는 경우 적동생의 아들을 후사로 삼거나 첩자는 자신의 봉사만 담당하게 하고 조상제사는 적동생에게 맡기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적장자는 첩자에게 본인의 제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지만 선대 조상제사는 적동생이나 그 아들에게 넘기도록 규정하였다.

입후立後가 정착되어 가면서 적자가 없으면 적계 친족을 입후하여 봉사하게 하고 첩자에게는 봉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났다. 『경국대전』 입후조立後條에는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입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입후법立後法에 어긋나는 입후라 하더라도 왕의 특은特恩으로 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활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반층에서는 첩자봉사가 드물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징 및 의의 첩자봉사는 적자가 없을 때 행해지는 부차적인 봉사 형태였다. 그런데 적자가 없는 경우에도 신분 관념으로 인해 첩자봉사를 꺼려 적동생에게 봉사하게 하거나 적계자손을 입후하여 봉사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 문중이 발달하면서 첩자를 적장자의 봉사자로 삼아 종중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피해야 할 일이 되었다. 조선시대 첩자봉사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방안이었다.

참고문헌 서얼 관직 진출 관련 법과 논의에 반영된 조선의 친족 질서(박경, 국학연구40, 한국국학진흥원, 2019), 조선전기 의례연구(지두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조선초기 제사승계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정긍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의 서얼 허통과 신분지위의 변동(배재홍,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필자 박경(朴景)

초국적가족
超國的家族

정의 전 지구적 이주에 의해 여러 국가와 도시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 등 주요 가족원이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 형태.

개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개인이 국가 간 이주를 하게 되면 많은 경우 본국의 가족원들과의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해체되는 것을 막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부터 초국적 기업을 포함한 초국적 사회경제적 관계가 형성되고,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면서 초국적가족超國的家族이 형성되었다. 초국적가족은 이주국에서는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되고, 본국의 가족원과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하면서 초국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초국적가족은 본국 가족과의 금전적 지원과 함께 사회문화적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

내용 초국적가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 경계를 넘어 초국적 사회관계가 존재하고, 초국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1990년대 전 지구화와 정보화 흐름 속에서 초국적 노동이주가 형성되면서 초국적가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인류사에서 문화·문자·종교·제도와 생활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균 등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데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이주행위가 작용한다. 16세기 자본주의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른 지역과 문명을 점령하면서 원료와 제품만을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노예와 전쟁포로 등 형태로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그러한 이주 과정에서 출발지와 이주지 간에 가족원의 이산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귀환하지 못한 채 가족들과 이산을 당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중반까지 국가 간에 이주했던 대다수의 사람은 귀환하여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웠다. 일제강점기 전후의 한국민들은 하와이를 위시한 미국과 멕시코·중국·구소련·일본 등지로 노동이주나 강제징용·징병에 의해 이주되어 광복 후 일부만이 귀환할 수 있었고, 대다수는 본국의 가족들과 이산되어 단절된 채 살아야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적 냉전 상황도 이산자들과 본국 가족들의 교류가 차단되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오랫동안 인류에게 대륙 간 또는 국가 간 개인의 이산은 개인적 귀환의 희망과는 달리 대체로 가족 해체로 당연시되어 왔다. 1960~1970년대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가 간 이주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세계적 탈냉전과 함께 동서냉전이 허물어지면서 금융자본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국경 없는 전 지구화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 기업 활동이 초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그와 함께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국가 간 노동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울올림픽대회(1988) 이래로 한국사회에는 중국 조선족 동포를 비롯하여 주로 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이주자, 결혼이주자, 난민 등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2023년 5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은 125만 5,608명이고, 그 가운데 70% 정도가 아시아계이다. 2023년 5월 말 기준 결혼이민자는 17만 2,628명이며, 그중 여성 결혼이민자는 80.3%에 달한다. 또 외국인 이주자 대부분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저임금에도 '송금送金, remittance'과 국제전화나 페이스북·카카오톡 등을 통해 본국의 가족 구성원과 초국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주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후 2022년 중반부터 다시 국가 간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성격을 다문화사회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바뀌었다. 1960~1970년대까지는 대학원 유학생, 미군 배우자와 그 가족, 해외입양자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전후로 조기 유학생과 부모, 노동이주자, 결혼이주자, 관광객들이 대세를 이루며 소위 글로벌가족·기러기아빠·기러기가족 등이 등장하여 국내 가족들과 금전적·문화적 관계를 맺으면서 초국적가족 형태를 이루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도 초국적가족 발생 원인에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초국적가족 형태를 띠고 있다. 2023년 3월 말 기준 3만 3,916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80% 이상은 북한에 부모나 가족들이 잔류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분단에 의해 자유롭지는 않지만 브로커를 통해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교류 등을 하면서 초국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에 의한 초국적가족은 송금을 통한 금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본국의 가족원과 그 사회에 새로운 사회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며 일정한 영향을 끼쳐 왔다. 한편 그들은 이주국의 새로운 사회관계 또는 가족관계에서 계급적·인종적·민족적·성별적 차별을 당하며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주국이 다문화사회 또는 초국적사회로 전환되도록 촉진하고, 이주자에 대한 환대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초국적가족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노동이주 등의 이유로 가족원이 국가 간 이주를 함에도 가족관계의 단절이나 해체가 아닌 새로운 가족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초국적가족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초국적 이동과 초국적 사회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즉 초국적 노동이주자를 요구하는 산업구조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와 같은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초국적가족이 형성 및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주국과 본국의 가족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 인터넷 기반 통신수단이나 SNS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초국적가족들이 일상적으로 의사소통과 정보교류를 할 수 있고, 세계적 온라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송금을 할 수 있다. 넷째, 초국적가족의 증가는 세계적으로 다문화국가와 다민족국가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사회문화적 환대 인식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여전히 난민 문제와 같은 국민국가 속 갈등의 소지로도 남아 있다.

참고문헌 초국주의·초국화 그리고 21세기 초국적 가족(최대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15-1,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5월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한반도 세계시민 담론 연구(김귀옥 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The transnational family(Deborah Bryceson·Ulla Vuorela, Berg Publishers, 2003).

필자 김귀옥(金貴玉)

촌수
寸數

정의 부모와 자식 사이를 1촌으로 설정하여 친척 사이의 혈연적 친소관계를 설정하는 수치.

내용 부자지간을 1촌으로 하면 한 부모의 자식들인 나의 형제·자매는 나와 부모 사이의 1촌, 부모와 다른 자식 사이의 1촌 이 둘을 합하여 2촌 관계가 된다. '촌寸'은 '마디'를 의미한다. 부자 사이를 한 마디로 계산하는 관계 설정은 한국의 독특한 관례로, 친척관계의 특성을 보여 준다. '친척親戚'은 부계의 '친족'과 어머니 쪽의 '척족' 혹은 '외척外戚'으로 나누어 이해하기도 한다. 양측적兩側的인 혼인관계로 복잡하게 얽힌 친척에 대해 부계의 방계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여겨진다. 상례喪禮 및 제사祭祀와 상속의 서열과도 관련이 있다.

촌수寸數로 친족관계를 대용하는 사례로는 삼촌三寸, 사촌四寸, 오촌五寸, 육촌六寸, 팔촌八寸 등이 있다. 그중 '삼촌'은 아버지의 형제이다. 나와 아버지가 1촌이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할아버지)도 1촌이며, 할아버지와 다른 아들이 다시 1촌으로 이를 합해서 3촌에 걸치는 관계이다. '사촌'은 '삼촌'의 자식으로, 3촌에서 1촌을 더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나로부터 할아버지까지 2촌, 할아버지로부터 삼촌을 거쳐 그 자식까지 2촌을 합하면 4촌 관계가 되는 등 서로 할아버지를 공동으로 한다. '육촌'은 나로부터 증조부曾祖父까지 3촌과 증조부로부터 다른 증손자까지 3촌을 합하여 지칭한 것이며, 증조부를 공동으로 한다. 따라서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이라는 말은 고조를 공동의 선조로 하는 친족 범위를 말한다.

'삼촌'은 '숙부叔父'를 대용하여 부르는 말이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면 '큰아버지' 혹은 '백부伯父'라 부

르고, 그에 반해 큰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들은 '작은아버지'라 부른다. 삼촌의 처는 '숙모叔母'라 부른다. 아버지의 여자 형제도 3촌 관계이지만 '고모姑母'라고 부른다.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라 부른다. 나의 형제·자매의 자식도 3촌 관계이다. 남자의 경우 '조카=족하足下' 혹은 '질자姪子', 여자의 경우 '질녀姪女'라고 부른다. 누이의 자식들을 '생질甥姪' '생질녀', 자매의 자식들을 '이질姨姪'이라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숙부나 고모 입장에서 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사촌'은 '종형제從兄弟' '종자매'라고도 한다. 고모의 자식들도 4촌 관계인데, 친사촌과 구별하여 '고종사촌姑從四寸'이라 부른다. 사촌의 자식들과는 5촌 관계인데, '종질從姪' '종질녀'라 부른다.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도 나로부터 5촌 관계로, '종숙從叔' 혹은 '당숙堂叔'이라 부른다. 이들의 자식은 나로부터 6촌 관계가 되는데 '재종형제' '재종육촌'과 같이 '재종再從'이라는 말을 붙인다. 아버지의 6촌은 나로부터 7촌 관계로, '재종숙再從叔'이라 부른다. 이들의 자식은 나로부터 8촌 관계인데 '삼종형제'와 같이 '삼종三從'을 붙여 부른다. 아버지의 8촌 형제는 '삼종숙'이라 한다. 2촌·4촌·6촌·8촌과 같은 촌수의 짝수는 부계의 동일한 세대世代, 즉 같은 '항렬行列'의 형제·자매가 된다. 1촌·3촌·5촌·7촌과 같은 촌수의 홀수는 부계 존속尊屬이나 비속卑屬 관계를 나타낸다.

부부 사이는 '무촌無寸'이라 하여 촌수가 없지만 부모를 내외로 나누어 어머니의 친가, 즉 나로부터 '외가外家'는 '외삼촌' '외사촌'과 같이 '외'자를 붙여서 부른다. 어머니의 자매는 '이모姨母'라고 부르며, 그 자식들은 '이종사촌姨從四寸'이라 부른다. 처가의 촌수는 '처삼촌' '처사촌'과 같이 처를 기준으로 지칭한다. 처의 입장에서 남편의 집을 '시가媤家' 혹은 '시댁媤宅'이라고도 하는데 시가 이외의 사람들에게 '시부모' '시삼촌' '시조부'와 같이 '시'자를 붙여서 지칭한다. 그러나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은 촌수로 따질 수는 있으나 친척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아주 먼 사이'라는 뜻이다.

조선왕조의 제사는 상속의 관례와 연관되어 있다. 촌수로 나타내는 친척의 친소관계는 특히 상속할 자식이 없거나 계자系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친척 가운데 재산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 법제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의 상속 관례는 자식 모두에게 고르게 분재分財하고, 그에 따라 제사도 자녀가 돌아가면서 지내는 '윤회봉사輪回奉祀'였다. 제사를 주관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외손자가 외조부모의 제사를 이어받는 '외손봉사外孫奉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산이 분할되어 경제적 위상이 하락하면서 18세기에는 제사 지낼 재원財源을 별도로 마련하고 아들에게 균분하지만 딸에게는 아들의 절반밖에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갔다. 점차 상속분과 제사권이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에게 집중되어 가는 현상과 함께 계자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병행되었다. 1촌인 계자를 설정하여 아들이 없어서 상속할 재원이 친척들에게 나누어져 공중 분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계자 채택을 둘러싸고 친족 가운데 촌수의 친소관계가 고려되었다.

흔히 친족 가운데 고조를 동일한 조상으로 하는 '동고조팔촌'의 후손들을 '일가一家'라고 칭하기도 한다. 동성동본同姓同本의 모든 후손까지 포함하는 '종친宗親'을 '일가'라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지칭은 20세기에 들어 부계친족의 범위를 극대화한 관념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동고조팔촌'은 조선왕조의 의례로, 고조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대봉사四代奉祀'에서 유래한다. 고조를 넘어 5대조인 현조玄祖 이상의 제사는 나라에 공을 세운 인물에 대해 신위神位를 옮기지 말고 대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불천위不遷位'에 한해서 허락되었다. 동고조의 후손으로 한정된 '소종小宗'에 대해 천자나 제후 및 고관을 시조로 후손을 망라하는 '대종大宗'을 특화한 유교적인 '종법질서宗法秩序'에 의거한다.

그러나 '불천위'를 허락받은 '종가宗家'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증조부를 동일한 선조로 하는 6촌 이내의 후손들이 현실적인 친족으로 인식되었다. 동성동본의 부계친족을 '혈연관계'로 확대 해석하여 혼인을 금하는 관례는 19세기에나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동성동본 금혼禁婚' 관례는 근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근대법적으로 '친족'은 혈연관계에 근거하여 친가 8촌과 외가 4촌까지의 범위로 규정되고, 친족 내에서는 서로 혼인할 수 없다. 그러나 4촌 간의 혼인이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는 한국과 중국, 미국의 몇 개 주를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 지나지 않는다.

특징 및 의의 촌수는 부모의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친족과 외척의 혈연적 친소관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상하좌우로 연결된 친족 네트워크의 개별적 상호관계를 구별하여 종법질서로 정리해 두기 위해 고안되었다. '동고조팔촌'이라는 친족 범위는 제사 및 상속과 관련하여 친족집단 내에 이해를 같이하는 최소 단위로 설정된 것이다. 종법질서에서 소종의 범위이기도 하며 유교적으로 지향하는 친족 범위이기도 하다. 이것은 근대법제로의 친족을 규정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조선가족제도연구(김두헌, 을유문화사, 1949),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의 성씨와 족보(이수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손병규(孫炳圭)

추도식
追悼式

정의 죽은 이를 기리는 한국 기독교(개신교) 의식.

역사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조상제사는 유교의 제례가 갖는 정치적·사회적 기능과 더불어 인륜도리 실천의 지침으로서 효孝 사상을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조상제사의 바탕에는 '효'가 있으며, 효는 살아 있는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제사를 경건하게 지냄으로써 실천된다. 한편 제사는 제사를 받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내포한다. 제사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일반적으로 신神이라고 부르는데, 동양의 신 관념은 상제上帝로부터 조상신까지 다양한 층위를 포함하므로 서양의 유일신 관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조상제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구체화하여 오랜 기간 쟁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래되자, 제사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천주교는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했었던 유교적 세계관과 서로 대립하였는데, 그 정점에 조상제사 문제가 자리하였다. 1791년 전라도 진산珍山의 선비 윤지충은 모친이 별세했을 때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이 유교이념을 국시國是로 하는 조선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박해를 가하였다. 조상제사 문제가 박해를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조상제사 문제로 천주교와 전통사회의 갈등이 초래된 근본원인은 동양문화에 대한 교황청의 이해 부족이었다. 1636년부터 백여 년간 조상제사 같은 중국의례의 허용을 놓고 여러 수도회에서 논쟁을 벌였다. 그 결과,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174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중국의례를 금하였고, 이는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금령이 해제된 1939년(교황 비오 12세 재위기)부터 천주교에서는 동양의 문화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죽은 이의 시신이나 상像, 혹은 단순한 이름이 기록된 패 앞에서 행하는 제례의식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천주교에서는 반함飯含, 합문闔門, 고복皐復, 사잣밥 이외의 제사의식을 허용한다. 조상제사의 근본정신은 선조에게 보은의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의식을 각인하는 것이다. 또한, 선조의 유지에 따라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가족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달성하는 것이다. 전통제례의 아름다운 정신은 복음의 빛으로 재조명하여 계속 살려 나가되, 그 표현양식은 시대에 맞게 개선한다는 천주교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기독교에서는 조상제사 문제를 낡은 세계의 모든 체계를 유지하는 본질적인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계속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모펫Samuel Austin Moffet, 기퍼드Daniel Lyman Gifford,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게일James Scarth Gale 등 초대 외국 선교사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선교사들은 자국, 특히 미국에서 형성된 교파교회의 성격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공동체적인 면보다는 교파별 특성이 강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경건주의적, 복음주의적 성격이 짙게 형성되었다.

19세기 후반 한국에 파송된 기독교 선교사들은 헌신적인 사랑의 봉사와 복음전파 노력으로 큰 공헌을 이루었으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유산 일체를 서구 기독교 문화로 대치해야 할 '이

교문화' 또는 '우상종교문화'로 속단하는 큰 잘못을 범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 기독교 내에서는 기독교 전래 직후부터 제사 문제가 언급되었다. 1893년에 성립되어 교계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였던 조선예수교장로회는 1904년에 부모의 생존 시에는 효를 다하되 사망했을 때는 엄숙한 장례식만 하고, 조상숭배인 제사는 추도식追悼式으로 대치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오늘날까지 이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조상제사는 참다운 효가 빠진, 명분과 허식에 치우친 형식적인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입장은 신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실천적 관점에서 제사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된다.

1920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권○○가 사람이 예수교를 믿고 제사를 지내지 않자, 가책을 느낀 아내 박씨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실천적인 접근에서 벗어난 신학적 논쟁이 시작되었으나 획기적인 결론 없이 기존 입장이 오늘날까지 지속하고 있다. 다만 논쟁의 과정에서 십계명의 다섯 번째인 부모공경의 계명과 동양의 효사상을 결부시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였고, 제사를 대신하는 교단 나름의 대안적인 예식이 모색되었으나, 아직은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별로, 신도들에 따라 추도예배가 행해지는 상황이다.

내용 추도식은 인정 여부를 떠나 한국 기독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실제 의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부터 논란이 적지 않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도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추모追慕와 추도追悼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추모식·추모예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추도식은 교회나 특정한 단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소천召天했을 때, 교회나 단체가 주최할 수 있다. 그리고 교단에서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식을 지낸다. 보통 부모나 조상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장례 후 1년이 되는 날이나 그 이외의 날에 조상의 공덕을 기린다. 또한, 한식·추석·설날처럼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함께 기도를 올리며 망자를 추모한다. 이러한 추도식이나 추도예배는 하나님에게 올리는 것이므로, 자손들이 효도를 통해 하느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중요한 기회이며, 선교나 자식 교육의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다.

추도일이 다가오면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참석자를 정한 후에 교역자를 초청한다. 구체적인 순서나 절차는 교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역자의 묵상과 개회기도, 신앙고백(사도신경) 찬송·성경 말씀 봉독과 뜻 새김·대표기도·찬송·고인에 대한 추모 말씀·성령 안에서 고인과의 대화·주의 기도·마침기도 등으로 이어진다. 추모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참석자들의 우의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한국사회에서 추도식은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단 내에서 조상숭배가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기독교 신앙이 지역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조상제사의 기독교적 변용으로서, 추도식은 우리 문화와 깊이 있게 균형을 이루는 사례로 평가된다. 기독교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상제사는 현대에 서민화되었다. 오늘날의 조상제사는 조선시대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기보다는 복잡하게 변한 삶에 맞추어 간소하게 바뀌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은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교단에서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기독교 가정에서 추도예배를 드리는 사례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 의미를 잘 제시하여, 추도식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참고문헌 개신교 추도예배의 발전가능성 연구(최영석, 협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기독교와 조상숭배(배춘섭, 목양, 2010), 한국기독교사(민경배, 대한기독교서회, 1980), 한국전통제례와 추모식에 대한 연구(박병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김영수(金榮洙)

출가외인
出嫁外人

정의 결혼한 여성은 본인 집안 출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

내용 한국 사회에서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개념은 유교 사회 질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조선왕조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여성이 인식한 자아 정체감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였다. 즉 친부모의 딸이 아니라 남편의 부모인 시부모의 며느리로서 더욱 중시하게 되는 사회가 되면서 비로소 출가외인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중시한 '양측적兩側的 친속親屬' 사회였다. 이는 한국 전통의 혼인풍속 및 가족의 거주 원리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남성은 여성의 집에서 혼인하고 처가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처가살이가 보편적이었다. 여기에서 '혼인하다'를 다른 말로 '장가가다'라고 가리키게 되었다. 또한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는 사회였던 만큼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였으므로 혼인 역시 필수 요소가 아니었고, 기혼 여성이 남편과 함께 살지 않고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나 사후 친정 부모 곁에 묻히는 사례도 발견된다.

그러나 빠르게는 16세기부터 혼인풍속에 유교적인 요소가 접목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남성의 처가살이보다는 여성의 시집살이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혼인하다'의 다른 말은 '시집가다'를 가리키게 되었다. 17세기부터 시집살이가 확대되면서 여성들이 남성 가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시집 구성원으로서 인지하기를 요구받았다. 이는 여성 교훈서의 집필 전략에서도 드러난다. 며느리의 역할, 생활 태도, 자세 등에 의하여 시집의 흥망이 좌우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다.

이처럼 출가외인이라는 유교식 가부장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한 자아 정체감으로서 여성들은 혼인을 인생의 필수 요소로 삼고 딸보다는 며느리로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시기적으로는 17세기부터 여성은 딸보다 며느리로서 본인이 사회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고 여기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의 출가외인 이념의 내면화는 부계 질서가 심화될수록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 양반 네트워크의 구성과 유지는 남성과 여성 두 집안의 안정적인 결합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여성교훈서인 송시열宋時烈의 『계녀서戒女書』에서는 "시가에 가서 대소사에 네 허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시비가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큰 효도이니 이것을 마음 첫머리에 먹어 매사를 이대로 하면 네 비록 내 곁을 떠나나 내 슬하에 있어 내 말을 듣는 것 같으리라. 부디 명심하여 경계하라."는 말로 혼인한 딸에게 '며느리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자 양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출가외인 관념이 일반화되었다고 해서 혼인 이후 여성이 일방적으로 시집의 위계질서에 편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반가 여성들은 거주지를 시집으로 삼았으나 주기적으로 친정을 왕래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었다. 또한 이들은 친정 계보 교육을 받았다. 이들에게 출계出系가문의 높은 가격家格은 출가외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출가외인 이데올로기는 근대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시집살이 문화가 대중화되고 신분제 폐지로 사회적 신분 구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통적 가부장제가 심화되는 반동을 겪으면서 근대 한국사회 전체에 급속도로 퍼졌다. 이리하여 현대 한국사회에서 '딸은 출가외인이다.'라는 말을 일반 상식처럼 여기게 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한국에서 유교 사회로의 전환은 혼인풍속, 가족의 주거 형태, 친속 체계를 변화시켰다. 그 결과 부계 질서의 확립을 가져왔고, 여성은 생애주기에서 달라지는 정체감 중에서 딸보다는 며느리로 살아가도록 요구받았다. 여성이 가져야 할 '출가외인'의 자아 인식은 이러한 현상을 명확히 보여 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계녀서의 탄생과 조선식 유교 젠더 규범의 성립(하여주, 조선시대

사학보101, 조선시대사학회, 2022),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이순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조선후기 여성 교훈서로 본 시가 흥망 책임 담론의 형성과 발전(하여주, 문화와융합44-2,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혼례제도 친영의 정착과 변화(김연수, 서울민속학3, 서울민속학회, 2016).

필자 하여주(河如株)

출계
出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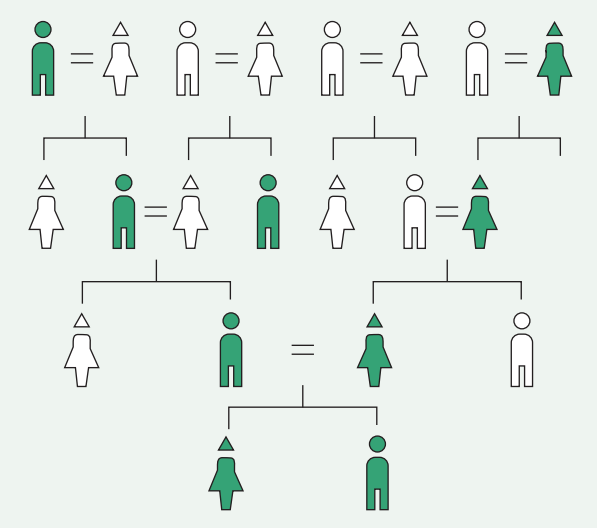
정의 부모와 자식 간 관계 또는 조상과 자손 간 관계를 추적하여 혈통을 따지고, 개인을 그 혈통에 따라 형성된 친족집단의 일원으로 귀속시키는 것.

개관 출계出系는 개인을 혈통에 따라 친족집단의 구성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며, 이 혈통을 따지는 원칙이 출계율出系律이다. 우리나라는 부계조상의 직계자손들로 친족집단을 구성하므로 부계출계이다. 출계는 이론적으로 양계兩系와 단계單系가 있을 수 있지만 민족지民族誌적으로 볼 때 양계출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출계는 항상 단계출계만 가능하다. 단계출계의 종류로는 부계, 모계, 선계選系, 이중출계가 있다.

내용 출계는 조상 또는 후손과의 관계에서 혈통을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조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2의 제곱으로 늘어난다. 부모 세대는 2명, 조부모 세대는 4명, 증조부모 세대는 8명의 조상이 있다. 무수히 많은 조상 중 자신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출계이다. 우리나라는 성姓과 본本에 기초하여 특정 조상만을 자신의 조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관계 측면에서 친족은 친족집단이 될 때 사회조직이 된다. 개인은 친족 관계를 통해 협력하기도 하지만 영속집단인 친족집단을 구성하여 관계를 구체화한다. 친족집단은 혈통에 따라 구성된다. 즉 혈통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친족집단은 서로 다르게 구성된다.

출계는 개인을 혈통에 따라 친족집단 구성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며 이 혈통을 따지는 원칙이 출계율이다. 우리나라는 부계조상의 직계자손들로 친족집단을 구성한다. 외조부와 외증조부도 나와 혈족이지만 외증조부의 후손들과 내가 같은 친족집단 구성원이 되지는 않는다. 나는 나의 증조부 또는 고조부의 직계후손들과 같은 친족집단에 속한다. 이렇게 부모 중 아버지 쪽을 따라 혈통을 따지고 친족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부계혈통이라고 한다.



이중출계

출계는 이론적으로 부계와 모계 모두를 포함하는 양계와 둘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민족지적으로 양계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출계는 항상 단계출계만 가능하다. 만약 양계를 선택한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친족집단을 구성할 수 없다. 내가 아버지 쪽 혈족과 친족집단을 구성하고 어머니 쪽 혈족과도 친족집단을 구성한다면 한 세대 위로 올라가면 할아버지의 혈족, 할머니의 혈족, 외할아버지의 혈족, 외할머니의 혈족과도 각각 친족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세대를 올리거나 내리면 한 개인은 그 사회의 모든 친족집단에 속하게 되어 친족집단이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또한 누구를 결혼 대상자로 선택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는 같은 친족집단에 속하게 되므로 족외혼을 할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출계는 남자와 여자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단계출계만 가능하다.

혈통을 따지는 것, 즉 출계는 부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계출계율을 가진 우리와 다르게 어머니 쪽 혈족과 친족집단을 구성하는 사회도 있다. 이를 모계출계라고 한다. 또한 아들과 아들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로 내려

가면서 친족집단 성원권을 부여하고, 딸과 딸의 딸 그리고 그 딸로 내려가면서 친족집단 성원권을 부여하는 이중출계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대에 따라 바뀌거나 본인이 친족집단을 선택할 수 있는 선계가 있다. 어떤 출계든 남자와 여자 어느 한쪽으로만 혈통을 따진다는 의미에서 이런 방식은 모두 단계출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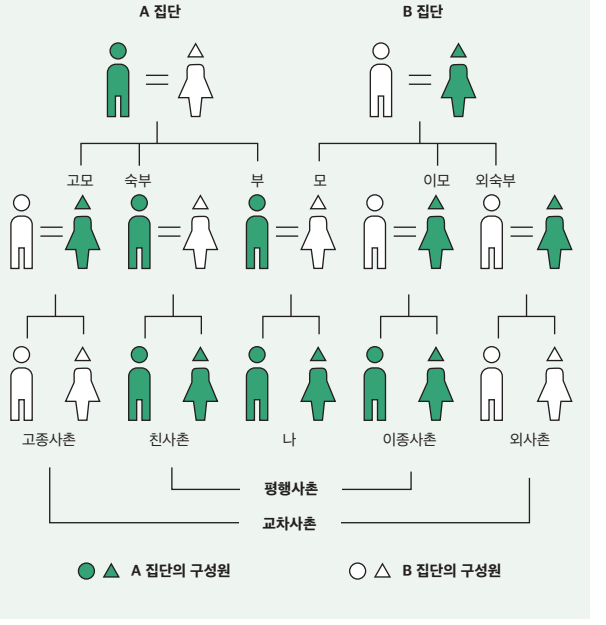
출계에 따라 구성된 친족집단을 출계집단 또는 혈통집단이라고 한다. 출계집단은 외혼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부계출계율을 가진 사회에서 아들들은 결혼한 뒤에도 집에 남고 딸들은 결혼한 뒤 집을 떠나게 된다. 아들들은 한 집 또는 한 마을에 거주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만 딸들은 각각 다른 집 또는 다른 마을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협력관계의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관계가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 남자들은 사촌·6촌·8촌들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집단을 구성하게 되지만 딸의 후손들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부계혈통집단이 형성된다. 외혼제가 아니라면 이런 친족집단 구성은 불가능하다. 즉 내혼을 하면 아들과 딸이 모두 결혼한 후에도 마을에 남게 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 쪽으로도 관계가 있고 어머니 쪽으로도 관계가 있게 되어 친족 계보를 따질 수 없게 되고,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는 관념도 생겨날 수 없다. 요약하면 혈통집단은 외혼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 사회에 A와 B 두 개의 혈통집단만 있는 사회를 반족半族, moiety 사회라고 한다. 이 사회에서도 외혼제 원칙이 지켜지므로 두 혈통집단은 상호 결혼하는 대상이 된다. 만약 아버지가 A집단 구성원이라면 어머니는 B집단 구성원이며, 부계로 혈통을 따질 경우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나는 A집단 구성원이 된다. 반면 어머니의 형제자매는 B집단 구성원이 된다. 아버지의 형제는 B집단 소속 여자와 결혼해야 하며, 그 자녀들(친사촌)은 부계 원리를 따라 A집단에 속하게 된다. 반면 아버지의 자매들도 B집단에 속한 남자들과 결혼해야 하지만 그 자녀들(고종사촌)은 부계출계를 따라 B집단 구성원이 된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B집단 소속이므로 A집단 여자와 결혼해야 하며, 그 자녀들(외사촌)은 부계출계를 따라 B집단 구성원이 된다. 반면 어머니의 자매들도 B집단 구성원으로서 A집단에 속한 남자와 결혼해야 하지만 그 자녀(이종사촌)들은 부계출계를 따라 A집단 구성원이 된다. A집단에 속한 남자는 B집단에 속한 여자와 혼인해야 하며, 따라서 B집단 소속인 외사촌 또는 고종사촌과는 혼인할 수 있지만 A집단 구성원인 친사촌 또는 이종사촌과는 결혼할 수 없다.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외사촌과 고종사촌을 교차사촌이라고 하며, 결혼할 수 없는 친사촌과 이종사촌을 평행사촌이라고 한다. 교차사촌은 남자인 아버지의 여자 형제 또는 여자인 어머니의 남자 형제(성이 다름)를 의미하며, 평행사촌은 남자인 아버지의 남자 형제 또는 여자인 어머니의 여자 형제(성이 같음)를 의미한다. 이 원리에 의해 반족 사회에서 교차사촌혼은 규정혼이 된다. 즉 반족 사회에서 평행사촌은 우리 집단 사람이며 교차사촌은 상대방 집단 사람으로, 외혼제 원칙에 따라 결혼 가능한 대상과 결혼 불가능한 대상으로 구분되게 된다.

특징 및 의의 출계는 친족집단을 구성하는 원리로, 혈통을 따른다. 한 개인은 부계와 모계 양쪽으로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출계는 이 중 어느 하나의 혈연관계만 혈통으로 인정한다.

부계혈통은 아버지 쪽 혈연관계만 혈통으로 인정하고 어머니 쪽 혈연관계는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으



평행사촌과 교차사촌

며, 모계혈통은 어머니 쪽 혈연관계만 혈통으로 인정하고 아버지 쪽 혈연관계는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즉 혈연관계는 생물학적 관계이지만 혈통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동일한 혈연관계 중 어느 것은 혈통으로 인정하고 다른 어느 것은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모두 혈연관계가 있으므로 양쪽을 모두 혈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양계이지만 양계혈통을 가진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양계로는 혈통집단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문화인류학개론(한상복·이문웅·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조선시대 출계율 논쟁(김주희, 한국문화인류학38-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5), 친족체계의 실천적 이해(한건수, 비교문화연구6-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0), 현대문화인류학(Roger Martin Keesing, 전경수 역, 현음사, 1985).

필자 김창민(金昌民)

출생의례
出生儀禮

정의 한 인간의 탄생을 전후하여, 새 생명의 잉태를 기원하거나 태어난 생명을 무탈하게 키워내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의례.

내용 일생의례一生儀禮는 한 인간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생의 단계마다 치르는 각종 의례이다. 여기서 인생의 단계란, 개인의 탄생·성장·노쇠·죽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전환되는 인생의 각 시기 또는 계기를 뜻한다. 이러한 일생의례의 첫 단계가 출생의례이다. 출생의례出生儀禮를 통하여 아기는 태아에서 신생아로 그리고 아기로 그 지위를 바꾸어가며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임신부에서 산모로 그리고 다시 어머니의 지위로 되돌아간다.

출생의례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된다. 하나는 생명을 잉태하여 그 태아가 자궁 안에서 열 달 동안 무사히 자라고, 순산을 통하여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첫 번째 생일인 돌이 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육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 다른 하나는 출산의례가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로서 충분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반 게넵Arnold van Gennep의 분리分離—전이轉移—재통합再統合이라는 세 단계는 한국의 출생의례에도 대체로 적용된다.

이러한 출생의례는 다음과 같이 기자—산전—출산—산후—삼칠일·백일·돌잔치의 5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①기자祈子: 새댁의 수태는 가정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조혼早婚, 영양실조, 생리 불순 등으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흔했다. 그렇다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신령이나 그 밖의 초월적 힘에 의지하지는 않았다. 먼저, 과학적으로 원인을 살피고 온갖 노력을 해야 했다. 과거에는 가정 형편이 부유하면 한의원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대개 민간요법으로 치유하고자 했다. 대체로 불임의 원인은 여성에게 있다고 여겨서, 체질이 허약하고 특히 자궁이 냉한 여성은 구절초·익모초·인진쑥 등을 달여 마시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치성을 드리거나 삼신을 받거나 각종 뱅이 등을 행한다. 치성은 신불神佛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지극정성으로 올리는 기도祈禱이다. 이들의 호의나 선처만을 일방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대개 불임不姙 여성은 시집이나 친정 부녀자들, 때로는 무당이나 법사와 함께 명산이나 인근의 산에 가서 쌀·떡·명태·실타래 등을 제물로 차리고 정성껏 기도를 드린다. 산 중에서도 반드시 샘이나 계곡 물이 있는 곳을 찾는다. 고여 있는 물은 당연히 피하고, 솟거나 흐르는 물로 간다. 어떤 이들은 절에 가서 불공佛供을 드린다. 마을 주변이나 다소 멀리 떨어진 인근 지역에는 기자에 영험靈驗을 보이는 장소가 있기 마련이다. 바위나 바위 그늘, 고목古木, 기자석祈子石, 남근석男根石, 굴窟, 바위 구멍(알구멍)이 있는 알터 등이 기도 장소이다. 삼신받기도 널리 행해진다. 간혹 삼신이 집안을 뜨면 수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삼신을 다시 받아서 집안에 모셔 들여야 한다. 또한, 여러 뱅이(방법)들도 행해진다. 다산多産한 여성의 속곳을 얻어 입기, 산부産婦의 서답(월경대) 훔치기, 산가産

家의 첫국밥을 얻어먹거나 금줄 훔쳐오기, 조그만 도끼 모조품을 착용하기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②산전産前: 태기가 있으면 임신부 본인은 물론 식구들 모두 일체의 부정不淨을 멀리하며 각종 금기禁忌를 지킨다. 특히 산달이 가까워질수록 금기는 강화된다. 금기는 대부분 '무엇을 하면 어떤 나쁜 상황이 생기므로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신부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주된 대상이다. 이는 임신부와 태아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발이 오리 발처럼 붙는다.'거나 '산달[産月]에 굴뚝이나 방의 구들을 고치면 언청이를 낳는다.'는 등의 금기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금기는 내용 자체의 축자적逐字的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뜻도 함께 지닌다. 즉, 임신부의 음식과 행위 등에 조심성을 강화하는 것이 본질이다.

임신하면 무엇보다 배 안의 태아胎兒가 사내아이인지 계집아이인지를 궁금해 한다. 다양한 태아의 성性 감별법鑑別法이 민간의 습속으로 전승된다. '임신부 뒤태가 고우면 딸, 배가 축 처지면 아들' '앞배가 불룩하면 딸, 배가 두리두리하거나 옆으로 부르면 아들' 등이 그러한 속신이다. 태몽胎夢은 본인이 직접 꿀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식구나 친인척도 꾼다. 태몽을 통해서 남녀성性은 물론 아이의 장래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임신해도 안타깝게 유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미가 보이면 오이 넝쿨, 호박 넝쿨, 우물의 두레박줄 등을 삶은 물을 마신다. 오이나 호박 넝쿨 줄기가 올라가듯, 우물의 두레박줄이 올라가듯 태아도 자궁으로 올라붙는다고 한다. 만약 유산하였다면 태아를 잿간(거름으로 쓸 재를 모아 두는 헛간)에 묻는다. 그래야만 곧바로 다음 아이를 가질 수 있다.

③출산出産: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임신부가 기거하던 방이나 안방에 산실産室을 꾸민다. 여름이라도 방에는 약간의 불을 때서 찬기를 없앤다. 수건, 가위, 대야, 배냇저고리, 걸레 등 각종 출산용품을 마련하고, 윗목에 삼신상도 놓는다. 산실은 되도록 어둑어둑하게 한다. 방 안 창호에 빛이 많이 들어 환하면, 검은 치마 등으로 가려서 어둡게 한다.

해산 준비에서 미역을 장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미역은 부정 타지 않도록 새벽 장에서 보아 온다. 미역을 구부리거나 접지 않아야 한다. 아이들의 손을 타게 해서도 안 된다.



삼신상 | 2009 | 국립민속박물관

만약 한 집안에 두 임신부가 있다면 매사에 근신해야 한다. 특히 다른 성씨를 잉태한 며느리와 시집간 딸이 한 집안에 있을 때는 꺼리는 것이 많다. 삼신은 하나의 성씨만 보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의 산달이 거의 겹치면, 임신부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집으로 내보낸다. 이는 한 임신부에게만 집중하여 산바라지를 하기 위한 현실적 고려에서 생겨난 습속이다.

산실에는 삼신짚이라 하여 깨끗한 볏짚을 깔아놓고, 여기에서 몸을 풀도록 한다. 해산 시에 쏟아진 피와 분비물을 볏짚에 편하게 받아낸다는 실제적 용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볏짚이 지닌 생명력 또는 생장력으로 순산을 유도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출산할 때에는 큰 비명을 내지 않도록 한다. 비명을 이웃이나 동네에서 들으면 아이가 더디 나와서, 난산難産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집을 짓고 3년 안에 출산하게 되면, 일종의 뱅이로서 반드시 부엌에서 해산하도록 한다.

난산은 오랜 임신 기간의 마지막 관문에서 맞닥뜨리는 위기이다. 난산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절망감과 무력감은 형언하기 어렵다. 이때에도 어쩔 수 없이 초자연적인 대상과 방법을 통하여 난산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아이가 더디 나와 점차 난산 때문에 고생이 심해지면,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여 산실에 남편이 들어가 산모를 구완한다. 아버지가 부재중이면, 아버지의 옷이나 양말을 임신부에게 접촉하여

순산을 유도한다. 후산後産이 잘 안 될 때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뱅이가 있다.

④산후産後: 아기를 키워낸 생명줄인 태는 매우 지극한 감사와 존숭의 대상이다. 태를 가르는 일부터 자른 태의 안치까지 당연히 일정한 격식에 맞추어 온갖 정성을 다한다. 태는 배꼽에서 한 뼘쯤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아기 쪽으로 세 번, 산모 쪽으로 세 번 피를 훑은 다음 무명실로 묶고 자른다. 이때 칼이나 가위 같은 금속성 도구는 피한다. 되도록 대나무 칼을 쓴다. 잘라 낸 태는 후산後産한 태반과 함께 짚으로 싸서 산모의 머리맡에 두었다가 대체로 3일 후에 태운다.

출산 전후로 미역, 쌀, 간장 등으로 삼신상을 차려 삼신에게 올린다. 그리고 몸을 풀면 이를 내려서 산모가 먹을 첫국밥을 마련한다. 첫국밥은 삼신이 내려 준, 복 있는 음식으로 여겨진다. 즉, 음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출산한 산모는 삼신의 가호를 받는다. 삼신을 정성껏 모시려면 출산 후 초사흘, 첫이레와 세이레, 그리고 백일과 돌에도 삼신상을 차린다.

산가産家의 대문에는 깨끗한 볏짚으로 금줄을 꼬아서 드리운다. 일체의 부정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아들을 낳았다면 금줄에 거멍(숯)과 고추를 끼우고, 딸이라면 거멍과 솔잎을 끼운다. 그러나 길지吉紙는 꽂지 않는다. 금줄은 대개 삼칠일에 거두어서 대문 옆에 둔다.

젖은 육아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젖이 부족하면 다양한 젖타기 뱅이를 한다. 주로 샘이나 우물 등의 용왕에게서 젖을 타 온다. 젖이 충분하여 남는다고 해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장광, 굴뚝, 낙숫물로 패인 흙 구멍, 우물, 냇물 등에 버려야 이후에도 젖이 마르지 않는다.

갓난아기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간단히 씻긴 후, 쌀깃[繈褓]으로 둘둘 싸 놓는다. 초이레가 지나면 배냇저고리를 입힌다. 새 생명의 첫 시간에, 새 몸에 처음으로 입히는 옷이다. 새 생명의 힘찬 기운이 가득 배어있는 옷이다. 그래서 배냇저고리는 나중에 각종 시험에서 합격하고 송사訟事에서 승소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지참하는 옷이었다.

바깥세상을 처음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점에서 아기의 첫나들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집안에서 집밖으로 나감으로써, 시간적·공간적인 최초의 이동移動을 이루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기를 외부의 해로운 초자연적 존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한다. 아이의 얼굴에 가마솥 밑의 검정을 여러 군데 발라준다. 귀신조차 고개를 돌릴 정도로 참으로 보기 싫고 괴이하게 만든다. 또한, 어머니 손으로는 부지깽이를 힘주어 꼭 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부지깽이다. 부지깽이는 칼이나 창 이상의 무서운 무기가 된다.

아이가 명이 짧고 좋지 않은 운세라고 하면, 아이에게 수양收養어머니를 삼아준다. 수양자식은 평생토록 수양어머니의 생일이나 각종 명절 등에 친자식처럼 찾아뵈며 효도를 다한다. 수양어머니가 별세하면 친부모와 마찬가지로 상복喪服도 입는다.

아이가 목에 탯줄을 걸고 태어나면, 중(스님)의 삼신이 점지한 아기라고 여긴다. 이런 경우에는 동전 몇 닢을 받고 아이를 절에 판다. 아이가 얼굴에 피를 묻히고 태어나도 뱅이를 한다. 대개 무당이 살풀이를 해 준다. 또 집안 부엌의 식칼을 푸줏간에 주는 풍습도 보편적이다.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는 갓난아이를 잠시 오쟁이에 넣었다가 꺼내거나, 갓난아이를 담은 오쟁이를 시렁 위에 잠시 올려놓았다가 내려놓는다. 귀한 자식을 이렇게 바리데기처럼 잠시 버리는 흉내를 내면, 아이가 평생 겪어야 할 재액을 모두 때우게 된다고 한다.

⑤삼칠일·백일·돌잔치: 출생에서 첫돌까지 몇 차례 의례 또는 잔치를 치른다. 아이가 태어난 지 초이레에는 쌀깃을 벗기고 배냇저고리를 입힌다. 동여맸던 팔 하나도 풀어준다. 이날에 삼신상을 차려서 삼신을 정성껏 위해준다. 두이레는 대체로 마음으로만 기억하고 지나가지만, 삼신에게 물이라도 떠 놓고 비손하기도 한다. 세이레에는 다시 삼신상을 차린다. 그리고 대문에 드리웠던 금줄을 치우며, 일가친척에게도 아기를 보여준다. 그동안 어둑어둑한 산실에서 지냈던 아기를 이때부터 조금씩 햇빛에 노출한다. 외가에서 누비포대기를 해 오는 것도 이날이다.

백일은 아기가 태어난 지 백 일째 되는 날이다. 백일잔치는 상징적으로 온전한 날수를 살았음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례이다. 시간상으로 첫 고비를 잘 넘긴 셈이다. 이날도 역시 삼신을 지극정성으로 위한다. 백색 흰무리떡으로 아기의 복을 빌고, 붉은색 수수팥단지로 아기의 액살厄煞을 소멸한다. 이날 배냇머리를 깎



돌잔치 | 강원 춘천 | 1938 | 국립민속박물관

아 주는데, 특별히 아기의 고모가 깎아 주면 좋다고 한다. 식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아기의 배냇머리를 조금씩 자르기도 한다. 배냇머리는 함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부엌 아궁이의 방고래 구멍에 넣어 태운다. 또 아기에게 처음으로 색깔 있는 옷을 입힌다.

돌은 아기가 태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즉 아기가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다. 당연히 백일보다 돌잔치를 크게 한다. 돌상을 크게 차리고 아기에게는 돌빔을 입힌다. 돌상에는 돌잡이를 위한 여러 가지 물건을 올린다. 남자아이의 돌상에는 붓·연필·활·책 등을, 여자아이의 돌상에는 가위·자·바늘 등을 추가로 차린다. 식구들과 친인척들이 모여 구경하는 가운데 '돌잡힌다'고 하여, 돌상의 물건을 아기가 임의로 집도록 한다. 이때 돈이나 곡식을 집으면 부자가 되고, 책·먹·붓을 집으면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며, 국수나 실을 집으면 장수하고, 활·화살 등을 집으면 군인이 된다고 여겼다. 여자아기가 가위 등을 집으면 살림을 잘하겠다고 말한다. 돌잡이는 축하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장 재미있고 정겨운 대목이다.

특징 및 의의 임신부는 홑몸이 아니기에 비정상적 인물로 간주하여, 일상으로부터 상징적이며 실제적 차원에서 분리된다. 열 달의 임신 기간을 거쳐 마침내 몸을 풀면,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삼칠일과 백일 그리고 돌을 지나면서 점차 산모는 일상의 주부主婦로 되돌아가고, 신생아는 갓난아기에서 한집안의 아기로서 그 존재감을 확고히 한다. 이렇게 아기의 생물학적 탄생을 사회학적 탄생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그리고 태아를 갓난아기에서 아기로, 임신부를 산모에서 어머니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데에 출생의례의 의의와 역할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인의 일생의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11).

필자 이필영(李弼泳)

친가
親家

정의 아버지 쪽 집안을 일컫는 말.

개관 아버지 쪽, 즉 일정 범위의 부계父系친족을 친가親家라 하며, 부계직계선조를 집합적으로 부르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실생활에서는 어머니 쪽 집안을 가리키는 외가外家와 대비되는 개념 또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내용 친가라는 개념은 부계친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변화하였다. 조선 전기의 친족을 가리키는 용어를 볼 때 당시 사람들은 친가 친족과 외가 친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高麗史』의 상피조相避條에서는 '본족本族' '외족外族' '처족妻族'을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본족'은 친가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적으로 '본족'은 부계친족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본족' 사용 용례를 보면 이 용어가 단순히 부계에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전기와 중기의 실상을 보여 주는 일기 자료에서도 실생활에서 친가와 외가 구성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외가 친족들에게 '외外—'를 붙이고, 처가 인척들에게 '처妻—'를 붙여 구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다만 친가 구성원들에 대한 호칭에는 '친親—'을 굳이 붙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친가'



한개마을 전경 | 경북 성주 | 국립민속박물관·최치현

는 일상적인 용어나 개념으로 사용되기보다 외가나 처가에 대비하는 개념으로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생활에서 친가의 중요성은 16~17세기 이후 증가하였다. 조선 전기에 친가라는 개념과 용어가 발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의 오랜 전통이었던 처가살이와 남녀균분상속 관행에 있다. 조선 중기까지 혼인한 남성들은 아예 처가에 정착하거나 자녀 출산 이후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 친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의 고향인 강릉 오죽헌烏竹軒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처가나 외가에서 생활하거나 아예 정착하는 부계 구성원들은 친가 구성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보다 처가나 외가 구성원들과 관계를 유지하기가 더 용이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부계친족집단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부계친족이 한 마을에 모여 거주하는 동성同姓마을 또는 종족宗族마을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부계친족이 모여 거주하면서 부계 구성원들은 이전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특히 당내堂內라 불리는, 고조부 이하 8촌 이내의 부계친족들은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주였다. 이는 조선이 양반들에게 고조부까지만 제사를 허용한 까닭에 그 후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제사를 지내며 관계를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가 범주는 기본적으로 부친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족 구성원이었으나 당내 구성원으로 확장되어 이해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친가는 한 개인의 가족 관계에서 가까운 부계친족 구성원의 범주를 칭하는 중요한 용어이자 개념이지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또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었으며, 오늘날에도 변화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부계친족이 중요해지고 친가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외가나 처가 구성원들은 접두어를 이용하여 구분하는 방식이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가족 문화와 구조 변화로 친가보다 외가가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접두

어를 이용하여 친족 방향을 구분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이종서, 신구문화사, 2009), 미야지마 히로시의 양반(宮嶋博史, 노영구 역, 너머북스, 2014), 한국가족제도사 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의 유교화 과정(Martina Deuchler, 이훈상 역, 너머북스, 2013).

필자 한상우(韓相祐)

친권
親權

정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지는 권리.

역사 친권親權은 기원전부터 자연발생적인 가족공동체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과거에는 가장家長이 가족공동체 내에서 규율과 권한을 맡은 책임자였고, 가장의 말이 가정 내 법과 명령이 되어 가족구성원이 그 의무이행을 부담하였다. 이를 사회적·법적으로 승인한 것이 가부장제도 혹은 호주제도, 친권제도이다.

1958년 제정 〈민법〉 제909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인 자가 그 가에 있는 부의 친권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자녀의 복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는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종을 요구하는 전근대적인 모습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후 친권은 양육권, 징계권, 거소지정권, 면접교섭권, 동의권, 대리권 등 여러 형태의 권한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대표적 친권 내용으로 이해되었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2021년 1월 〈민법〉에서 삭제되었다. 그 이유는 〈민법〉 제9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이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과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항변하는 사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내용 〈민법〉 제909조를 중심으로 친권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는 미성년자未成年者인 자子의 친권자가 된다. 입양한 경우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친권은 부모에게 있다. 둘째, 혼인외 출생자를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친모와 부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한다.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서울가정법원 1994. 5. 20. 선고 93느74635).

부모의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다. 이는 가족생활에서 남녀평등원칙의 실현을 도모하며, 부모의 일방적인 경솔한 친권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 자녀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별거 중인 경우에도 공동행사 원칙이 적용된다. 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미성년자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無權代理行爲가 되므로 적법한 추인이 없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선의 혹은 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126조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만일 친권행사에 있어 부모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와 〈가사소송규칙〉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한편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유추해 적용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가져오고, 친권자나 제삼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민법〉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이혼 시 친권자결정협의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이혼 의사 확인 절차 시 친권자 결정 협의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협의 사항을 협의이혼신고서에 기재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은 먼저 당사자들에게 미성년자친권지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하거

나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친권자를 협의로 결정한 경우에도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한편 친권은 상실될 수 있다.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위한 판단의 기초는 자녀의 복리 보호이다. 2014년 10월 15일 〈민법〉 개정을 통하여 친권상실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 2) 규정과 친권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이 신설되었다(제925조의 2).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부모의 친권 중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이하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자 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27. 자 2019스621 결정).

특징 및 의의 친권은 자연권 성격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 양육·교육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 친권이 부모의 권리 형식으로 〈민법〉에서 명문화되었지만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권리이자 의무 성격을 갖는 특징이 있다. 친권의 본질적인 효력은 아동 양육과 보호 의무에 있다.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권자의 학대나 폭력에 대하여 〈민법〉상 친권의 상실제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국가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참고문헌 대리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서종희, 외법논집43-3,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친권상실의 본질과 한계(이동수, 강원법학61,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친권의 변천과 현대적 이해(신권철, 서울법학30-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친권의 본질과 행사상의 문제(김은아, 법학논총26-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신옥주(申玉珠)

친영
親迎

정의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한 뒤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혼례를 치른 다음 신랑의 집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하는 혼인제도.

개관 친영親迎은 신랑이 친히 신붓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본래 친영은 중국의 전통 혼인제도인 육례에서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 다음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통칭하여 친영으로 부르게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유학자들이 친영을 이상적인 혼인제도로 보고 친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였으나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남귀여가男歸女家 혼인제도에 밀려 뿌리내리지 못하고 반친영半親迎과 같은 절충형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내용 친영은 유교 이념에 기초한 중국의 전통적인 혼인제도이다. 유교에서는 하늘과 땅, 임금과 신하 관계처럼 남편을 아내보다 더 우선시하여 혼례도 신랑의 집에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친영은 혼례를 할 때 신랑이 친히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온다는 의미이다.

성리학의 전래 이전, 즉 고려시대까지는 혼례를 신부의 집에서 치르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일반적이었다. 이 제도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성혼 첫날 신붓집에서 동침한 후 3일째 되는 날에야 신랑과 신부가 상견례를 하였다. 신혼생활은 신부의 집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남귀여가혼으로 모방거주母方居住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남귀여가혼은 자녀들이 외가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신혼생활이 신부의 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외가에서 출생하고 외조부모를 비롯하여 이모와 외삼촌 등 외가 친척의 돌봄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유교 이념을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남귀여가혼을 친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다. 남귀여가혼은 가부장적 종법宗法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 이념과 상치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방거주와 신혼부부가 상견례를 하기 전에 동침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친영례를 시행하여야 할 명분이 되었다. 따라서 유학자들과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친영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시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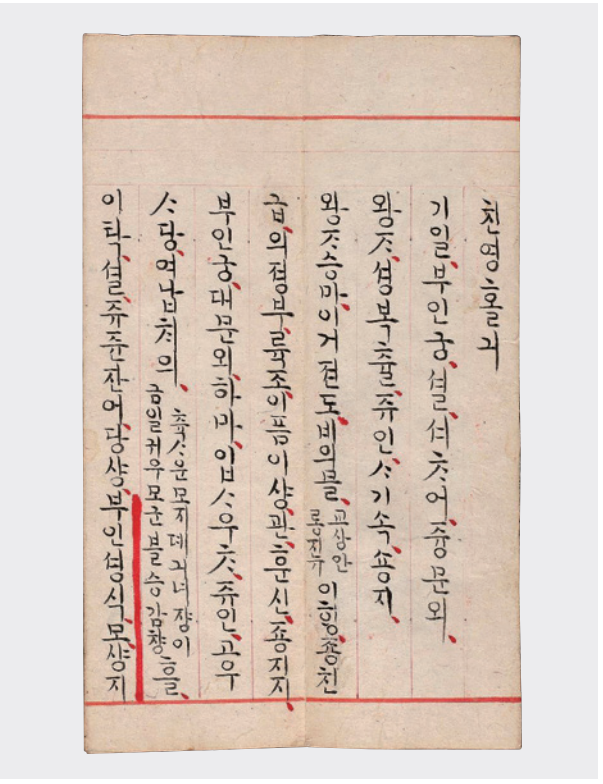
그러나 고려시대 이후 남녀균분상속제 등과 결부된 오랜 관습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 친영의 도입은 큰 저항에 직면하였다.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유교 이념에 부합하여 친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고래古來의 관습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백성에게 불편을 주므로 왕실을 비롯한 지배계층이 먼저 실시하여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립하기도 하였다.

친영제의 시행은 왕실이 모범을 보였음에도 쉽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특히 중종中宗은 친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여 친영 실시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명종明宗 대까지 남귀여가혼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조정은 소극적 친영 제도를 취하여 남귀여가혼 관습을 따르되 그 절차의 일부만이라도 친영 절차에 가깝게 바꾸려는 타협책이 모색되었다. 친영을 실시하려는 의지는 유교적 종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중국의 예법인 친영을 하는 것이 사대 외교의 한 방편으로서 중국을 의식한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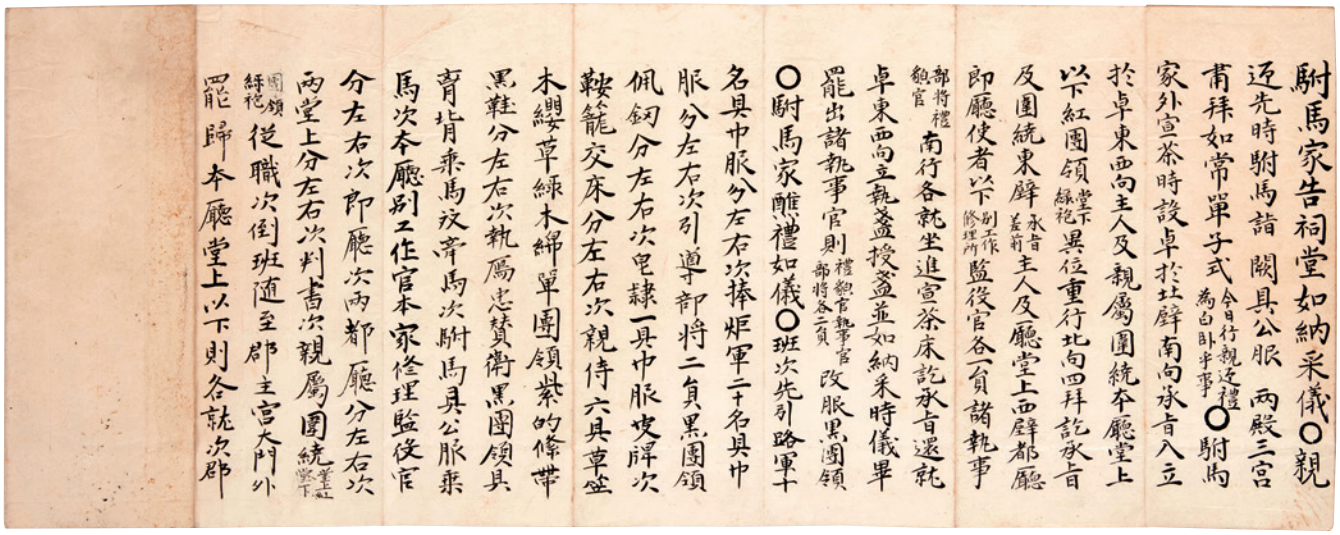
그 방안의 하나가 남귀여가혼 절차 중 삼일 상견례를 '당일 상견례'로 바꾸는 것이었다. 삼일 상견례는 정식으로 신랑과 신부가 상견례를 하기 전에 초야를 치른다는 점에서 외설스럽고 퇴폐적이라고 생각되어 당일 상견례를 한 후 초야를 치르도록 한 것이다. 이후 사대부의 혼례는 대부분 '당일 상견례'에 의한 남귀여가혼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이러한 방식이 새로운 관습이 되었다.

당일 상견례가 어느 정도 사족士族들에게 수용되자 다시 '반친영'이라는 새로운 방안이 등장하였다. 반친영은 혼례를 신붓집에서 행하되 '당일 상견례'를 시행한다는 점과 혼인 이튿날 시부모를 뵙는 의식인 '명일현구고례明日見舅姑禮'를 치른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반친영은 서울의 일부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졌을 뿐 널리 시행되지 못하였다. 명일현구고례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 당일 신부가 시댁을 가야 하였지만 신랑의 집과 신부의 집이 멀어 당일 왕복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사족士族의 경우 명문가와의 혼인으로 통혼권이 멀어 명일현구고례를 치르기가 쉽지 않았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정한 친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랑의 아버지는 사당에 고한 후 신부를 맞아올 것(친영)을 명한다. 신부의 집에서도 신부의 아버지가 사당에 고하고 시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한다. 신랑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신부의 집에 가서 기러기를 전하는 전안례奠雁禮를 행한 후 먼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나면 신부의 수레가 뒤따라온다. 신랑집에 도착하면 서로 맞절하고[교배交拜]—함께 음식을 먹고[동뢰同牢]—표주박잔으로 술을 마시는 합근合巹 의식을 행한다. 이 절차가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대면하



친영 홀긔 | 가로8 세로24 | 조선 | 국립고궁박물관



친영 홀기 | 조선 | 수원화성박물관

여 인사하는 상견례相見禮이며, 상견례 이후 초야를 치른다. 초야를 치른 신부는 다음 날 시부모를 뵙고 인사를 올리는 폐백 의식을 행한다. 폐백을 하고 나면 신랑의 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를 시집살이라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친영은 신랑집에서 혼례를 치른 뒤 신랑집에서 혼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도입된 방식이다. 그 이전까지는 신붓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붓집에서 생활하는 남귀여가혼을 하였다. 친영은 종법제 질서가 정착되었던 중국에서 행하던 관습으로, 가부장 질서가 강조된 방식이었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성리학자들은 친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남녀균분상속 등과 결부된 남귀여가혼의 전통으로 인해 쉽게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친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성리학자들의 끈질긴 노력은 반친영 등으로 남귀여가혼 전통을 약화시키는 데는 성공하였다.

혼례를 신붓집에서 치르는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결혼 후 신붓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단축되었으며, 시부모에게 첫인사를 드리는 폐백 절차도 혼례를 치르는 당일에 하는 등 남귀여가혼 전통은 친영 도입으로 많이 약화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친영제도의 전개과정(한복용, 중앙법학9-2, 중앙법학회, 2007), 조선전기 혼인의례와 혼인에 대한 규제(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92),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박혜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한국민속대백과사전-친영(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창민(金昌民)

친정
親庭

정의 기혼 여성의 친가.

내용 조선왕조 건국 이후 조선의 위정자爲政者들은 유교식으로 사회 질서를 바꾸고자 노력하였다. 유교에서 남녀의 결합이란 우주 형성의 첫출발이자 사회 구성의 시작으로 특히 중시되었다. 따라서 남녀의 결합인 혼례婚禮는 가장 중요시되는 절차였다. 하지만 조선 건국 이전에 내려오던 전통 혼인 방식은 양陽인 남성이 음陰인 여성을 따르는 방식, 즉 남귀여가男歸女家 절차를 따르고 있었다. 이는 음이 양을 따라야 한다는 유교식 우주 형성 원리에 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유학 지식인들은 예의 실천을 위하여 혼례 때 여귀남가女歸男家 원칙에 따르는 친영親迎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들은 남성이 장인의 집안에 들어가서 사는 처가살이 전통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

로 삼아 16세기부터 적당한 절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17세기부터 여성의 시집살이 확대와 남성의 처가살이 감소로 인하여 가족의 주요 생활권역이 남성 집안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여성은 자신의 출생지, 출신 집안을 벗어나 남성 집안으로 들어가서 일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혼인을 경험한 후부터 여성은 친정親庭에서 나와 살면서 친정과의 물리적 거리가 자연스레 멀어졌다.

이와 동시에 함께 일어난 현상이 집안제사 수행에서 딸이 배제되기 시작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딸에 대한 비중이 점차 줄어든 것이다. 성별 구별 없이 자녀끼리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윤회봉사輪回奉祀나 외손이 집안제사를 받드는 외손봉사外孫奉祀는 17세기 중반까지 더러 나타났으나 곧 사라지는 현상을 보인다. 여성이 혼인 이후 주로 거주하는 곳이 남성 집안 세거지世居地가 되면서부터는 친정제사를 받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처가살이가 사라지면서 외가가 가지는 친연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어머니 집안에 대한 자녀들의 봉사奉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성이 시집살이를 하면서 친정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정서적 혹은 심리적 거리가 친정과 멀어진 것은 아니었다. 딸과 며느리 경계에 있었던 여성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고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친가 일원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묘지명墓誌銘과 같은 자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였던 양반들은 그들의 생애 업적을 기리는 글을 써서 후대에 남기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에게서도 나타난다. 글은 대부분 남성이 썼는데, 글의 주인공인 여성은 가문의 효부孝婦로 살았던 유교의 이상적 여성상으로 칭송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친가와의 완전한 단절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유교 이데올로기로 윤색된 여성들의 일대기임에도 혼인 여성의 '친정과의 적극적 소통 경험'을 생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성은 친가에 가서 일정 기간을 살다가 오는 근친覲親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법과 명분으로 친가와 심리적·물질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7세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양반 여성이 친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8세기가 되면서는 친가와의 관계 유지 방법이 다소 소극적으로 바뀌어 갔다. 그렇지만 그들이 딸로 살아가는 모습에는 변함이 없었다. 남성은 여성의 이러한 경험들을 달리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효 이념을 등장시키게 된다. 양반 남성들은 여성들이 출가외인의 틀에서 조금은 비껴가려고 한 모습들을 유교 이데올로기의 최상위 가치인 '효'로 포장하였던 것이다.

이후 시집살이 문화는 20세기 초반 교통수단의 발달과 신분제 폐지로 보다 대중화되었다.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여성이 느끼는 시집과 친정 사이에 생긴 거리감은 보다 확장되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혼인풍속은 16세기를 기점으로 그 내용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즈음부터 기혼여성은 자신의 출신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친정에 대한 새로운 상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7세기에 남성의 처가살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형성되는 여성의 시집살이 문화와 더불어 여성 스스로 출가외인으로서, 며느리로서 중시하고자 하는 자아 인식은 친정을 달리 인식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18세기 여성의 친정, 시집과의 유대 또는 거리에 대하여(김경미, 한국고전연구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조선후기 들목 조씨 집안 여성들의 삶과 기록들(정해은, 들목 조씨 사백년의 역사, 화성시청, 2019), 조선후기 양반 여성의 친정살이와 새로운 생활환경의 모색(하여주, 여성과 역사37, 한국여성사학회, 2022), 조선후기 양반여성의 친정가문 일원의식 고찰(하여주, 조선시대사학보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필자 하여주(河如株)

친족
親族

정의 공동 조상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들의 연망 혹은 집단.

내용 친족親族은 그 구성원들이 출생의 근원인 공동조상에서 직계·방계로 이어지는 후손 그리고 이들과 혼

인하여 입가入家한 여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한 혈연관계를 말한다. 친족은 그 용어상 동성친同姓親과 이성친異姓親을 구별하지 않는 친척親戚과 사돈의 친척을 뜻하는 인당姻黨, 인척姻戚, 인친姻親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이 용어는 본종本宗, 일족一族, 일문一門, 일가一家, 종친宗親, 성족姓族, 동종同宗, 종중宗中, 문중門中, 씨족氏族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의 친족은 남자 개인 입장에서 부친과 관련된 친척인 부당父黨, 모친의 친척인 모당母黨, 처의 친척인 처당妻黨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당을 족族이라 하고 모당과 처당을 척戚으로 구분하여 이를 일족이당제一族二黨制라 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부계혈족집단이 친족관계의 중심을 이루고, 이성異姓의 친족은 2차적인 친족관계를 구성한 것이다.

한국 친족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계出系 원리를 통해 한 개인이 혈족 소속을 정당화하고 혈연의 원근 범위를 정하여 사회적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방식과 더불어 혼인을 통해 인척 범주를 보완하는 혼인연대(동맹) 원리가 실천되는 방식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범주·집단으로서의 집안·종족·친속親屬·씨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7세기 전반까지 친족체계는 미분화체계未分化體系인 공계체계共系體系였으나 이 시기 이후 부계체계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계출계에서 특정한 한 개인의 후손들은 한 종족이 아니라 여러 종족에 속하는 성원권이 있었다. 이름이나 재산상속·제사상속도 친가·외가·처가 등에서 상속·계승할 수 있었고, 거주규정도 선택적이었다. 이러한 공계출계의 정의와 속성에 비추어 보면 이 시기 이전만 하더라도 친족은 공계출계집단 성향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속과 제사상속도 부계와 외가·진외가로 계승되었으며, 이주도 대개 처향妻鄕·외향外鄕을 택하였다.

친족제도상 부계출계의 혈연 범위를 잘 나타내는 사료는 『사례편람四禮便覽』(1844)이다. 여기에 기록된 오복五服제도는 일가친척 범위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나타낸다. 상복은 참최斬衰·재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로 그 등급이 나뉜다. 이러한 등급은 친족의 촌수 및 상기喪期와 관련되어 있다. 참최복과 재최복은 아들과 미혼의 딸이 아버지상·어머니 상을 당하여 입는 상복으로, 입는 기간은 3년이다. 대공은 종형제자매(사촌) 상을 당하여 입는 복으로, 기간은 9개월이다. 소공은 증조부모,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 상을 당하였을 때 입는 복이다. 그 기간은 5개월이다. 시마는 형제의 증손이나 증조부의 형제 상을 당하였을 때 입는 복으로, 기간은 3개월이다. 상복제도는 고인과 생자의 혈연관계 친소親疎·원근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이러한 오복제도는 제도적 차원에서 규범화된 친족관계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는 '가까운 친척' 범위로, 흔히 말하는 '집안'이라는 사회적 범주를 말해 준다. 오늘날 민속 개념상 집안은 동고조同高祖 8촌, 동파지친同派之親, 당내친堂內親, 대소가大小家 등으로 달리 불린다. 이것은 사회조직이라기보다 현실에서 8촌에서 12촌까지 확대된 사회적 범주로, 집터·가옥·논밭 등과 같은 물질적 자산을 토대로 한 혈족들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가계 계승 원리와 혼인연대 원리를 실천하는 사회적 과정마다 이를 수직적으로 영속하려는 힘과 수평적으로 확대하려는 힘이 함께 작동한다. 부계혈통 계승 원리는 적장자우대불균등 상속을 통한 제사권·재산권·가독권家督權을 계승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당내친의 경우 족분제도族分制度상 장남을 혈통 계승의 중심으로 삼는 반면 중자衆子와 여성은 배제된다. 그들은 종손과 장자 중심으로 가계를 계승하고, 입가·출가하는 여성을 고리로 하여 사회적 관계망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중요한 점은 혈통 계승에서 여성은 배제되지만 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산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부당父黨의 범위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위로는 4대 고조, 아래로는 현손까지이고 자신과 동 세대에서는 삼종형제三從兄弟, 즉 8촌까지 확대된다. 이에 비해 모당의 범위는 훨씬 좁다. 위로는 4대 외고조, 아래로는 증손까지 2세대이고 동 세대에는 재내종再內從, 즉 6촌까지와 이종姨從은 4촌을 그 범위로 한다. 그리고 처당의 경우는 자신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로 2대, 그리고 처 4촌을 범위 내에 포함한다. 집안은 형제가 수평적 차원에서 분가하여 독자적인 집의 단위가 더 넓은 범위로

확산하며 큰집과 작은집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안은 한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분화된 큰집과 작은집 사이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경제적·상징적 유산을 전승·상속한다. 특히 상징적 유산을 전승하는 단위로서의 집안은 흔히 당내堂內를 지칭하는 말이며 상례나 제례와 같은 제의 수행단위와 직결되는 사회적 범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범위가 곧 그 친소관계를 반영한다.

오늘날 이와 같은 친족 범위는 법제상 상속제도와 관련되어 매우 축소되었다. 친족은 혈족과 인척으로 구성된다.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혈족은 8촌 이내만 인정된다. 실제로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를 자연혈족이라 하고,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법정혈족이라 한다. 이제는 인척관계로 취급된다. 1990년 법제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개정·축소되었다.

법제적 차원의 친족 범위는 친족원이 출계 원리와 혼인연대 원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집안 범주를 넘어 종족·친속·씨족 등 다양한 사회적 단위로 구체화된다. 먼저 종족의 경우이다. 집안은 입향조의 사회적 지위나 명망이 높고, 혈족들이 이를 중심으로 상호부조와 사회적 연대를 통한 결속력이 강하며, 부계집단의 재생산을 지향하는 여러 지파 조직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강도가 높을 경우 종족으로 영속된다. 집안이 종족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그 구성원이 혈통 계승 원리를 실천하면서 재실과 서원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결합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 가지의 전유, 문중산·위토·종중문서·선영의 보존 관리, 친족의식 공유, 제의 수행 등이 관련된다. 그리하여 집안이 강력한 사회적·경제적 관계망을 구축하지 못하거나 인구수가 부족할 경우 종족을 형성하지 못한다.

특히 한국의 양반 종족이 갖는 공통된 성질은 파류派流가 법인체적 조직(문중)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그 구성원들이 의례 수행이나 농업 노동교환 등과 같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집단적 정체감, 선조의 관작과 명망, 법인체적 자산, 문규 등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종중에서 종가는 조상 중심의 집단으로서 명조名祖나 현조顯祖를 둔 후손들이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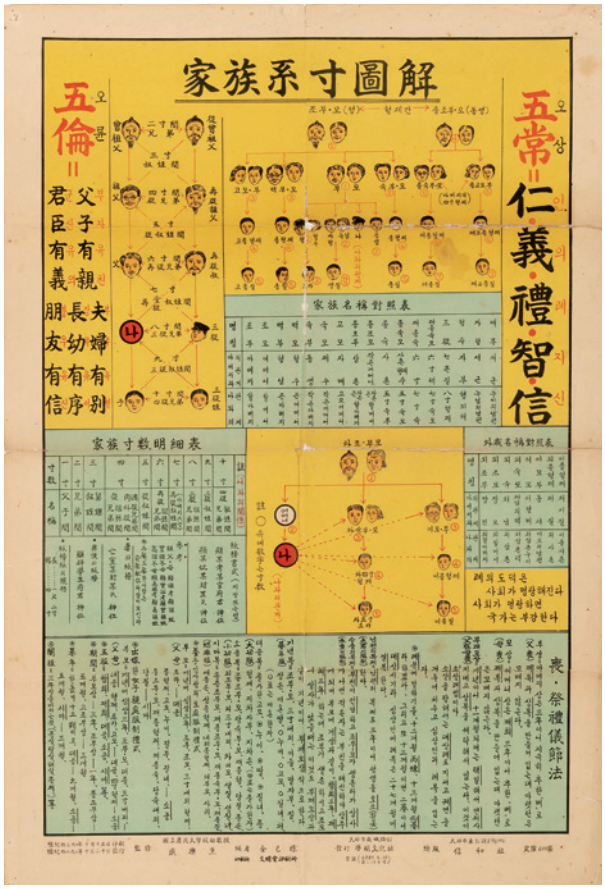
파평윤씨 묘제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인체 조직인 문중을 이루면서 공동 재산으로서 위토와 공동 기금, 서원·사당·재실과 같은 역사문화적 유산을 두고 적장자가 제의를 수행하고 가격家格에 맞는 혼맥을 형성할 때 위상을 확보한다. 종족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 사례는 대부분 동성동본불혼으로, 이미 이루어진 기존의 혼인관계망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혼인 관습은 여가女家의 공동 인척간에 한정된 혈연 유대를 창출하였고, 입가한 여성이 남성의 부계친에 속하는 사회체계임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섬이나 해안지역의 경우 종족 조직은 없고 친속이 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양반은 조상의 신분과 가격을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지만 사회적 신분의 높낮이, 선조의 벼슬이나 명망, 경제적 기반, 혼격婚格에 따른 친속이 존재한다. 울릉도의 경우에는 조상 중심 집단인 종족보다 개인 중심의 사회적 범주로서 친속이 존재한다.

종족과 친속은 준거점準據點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종족은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혈통이 계승되는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부계혈연집단이지만 친속은 개인 중심으로 범주화된 사회적 범주이다. 전자의 경우 윗세대가 제사권·재산권·가독권을 승계할 때 여러 형제 중 어느 하나에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혼인에서는 동성동본불혼 규정이 지켜진다. 이에 비해 친속은 그 귀속 규칙에서 모든 딸·아들에게 균등하게 나뉘며 일상생활이나 의례, 생업활동 등과 사회적 상황 및 특별한 목적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 범주이다.

친속의 중요한 특징은 개인 중심 시각에서의 의례나 경제활동 등에서 삼촌이나 육촌, 외삼촌이나 외육



가족계촌도해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촌 등과 같은 친인척들로 구성된 사회적 범주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중의 어느 한 성性이나 공동의 조상을 규준으로 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갖는 집단의 공계적 성질을 바탕으로 성원권이 세대를 거치면서 충원·중첩된다. 즉 성원권이 공동 조상으로부터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구성원의 관계 정도가 세대를 거치는 동안 충원되는 특징이 있다.

울릉도 지역민들은 동성동본불혼이라는 혼인규범을 인식하면서도 가까운 친인척 간에 혼인하였다. 시집온 여성의 외조카와 시가의 외사촌이 결혼한 뒤에 친가의 오빠와 시가의 재종질녀가 혼인한 경우, 입가한 여성의 질녀가 시집의 조카와 결혼한 경우, 친가의 6촌 여동생과 이질이 혼인한 경우, 시집온 여성의 시누이가 친가의 남동생과 결혼한 경우, 재종 친척 간에 혼인한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재종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진 사례는 육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관계의 상호작용 정도에 초점을 맞춘 체계로, 조상으로부터 혈통을 계승하는 원리가 중시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나 재산상속, 집의 가독권·성원권을 행사하는 데에서 부계의 구성원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섬이나 해안지역에서는 집안 범위가 육지의 반촌보다 제한되어 남계 6촌까지로 한정된다.

이와 더불어 친족에는 씨족이 포함된다. 씨족의 시조는 신화적 존재이며, 실질적 인물이 아니다. 씨족은 여러 종족을 포함하며, 외혼제 단위가 된다. 씨족은 같은 조상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규범상 동성동본 관계에 있는 이들은 서로 혼인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씨족에 따라서는 동성동본이라도 혼인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하게 분파된 동성동본의 친족 구성원들은 화수회·대종회·종친회 등을 결성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이러한 모임을 통합하여 연합체를 이루어 씨족 활동을 하면서 출세한 인물을 정점으로 후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예컨대 본本을 밀양·고령·함양·죽산·상산·무안·순천·월성·울산으로 하는 모든 박씨들의 종친회는 신라오릉보존회新羅五陵保存會에 통합되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친족은 17세기 중반 이후 공계출계에서 부계출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동성친과 이성친을 포함하는 사회적 단위로서 부당父黨, 모당母黨, 처당妻黨으로 이루어진 일족이당제一族二黨制라는 친족 범위로 구성되었다. 공동의 조상을 중심으로 한 단계체계의 혈통계승 관계로서 집안·종족·친속·씨족과 같은 범주와 조직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부계출계에서 친족제도에는 부모와 자식, 선조와 후손 간에 제사상속 및 재산상속과 가독권 등에 대한 정동적情動的·법적·정치적 관계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가족 및 친족생활(이광규, 한국생활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명망의 문화정치(박성용, 민속학연구52, 국립민속박물관, 2023), 조선전기의 사회변동과 상속제도(이수건, 역사학보129, 역사학회, 1991), 친족과 혼인(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2006),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9),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성용(朴晟慵)

칠거지악
七去之惡

정의 처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허물.

역사 칠거지악七去之惡은 시부모에게 불손不遜, 자식 없음, 음탕한 행실, 투기, 몹쓸 병, 말이 많음, 도둑질 등 일곱 가지 허물을 말한다. 출처出妻는 『공자가어孔子家語』인데, 여기에 칠출七出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不順父母出者 無子者 淫僻者 嫉妬者 惡疾者 多口舌者 竊盜者(불순부모출자 무자자 음벽자 질투자 악질자 다구설자 절도자)"가 원문이다. 이는 『소학小學』에도 실려 있다. 고려시대까지는 이혼과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워 이 조항의 의미가 크지 않았다. 조선에 들어와 유교사회가 표방되면서 하나의 윤리규범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칠거지악이 실제 행해진 경우는 흔치 않다. 조선이 부부 중심의 가족질서를 공고히 하고, 가능하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종成宗이 폐비 윤씨를 쫓아낼 때, 숙종肅宗이 인현왕후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을 때 칠거지악을 이유로 든 적이 있다. 성종은 후궁에 대한 투기를 문제 삼았고, 숙종도 인현왕후가 희빈 장씨가 아들 낳은 것을 질투하였다며 칠거지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 조선에서 칠거지악으로 출처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내용 칠거지악은 남편 쪽에서 부인을 내쫓을 수 있는 윤리 덕목이다. 흔히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윤리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칠출을 말하기 전에 여자가 혼인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유형의 남자도 언급하고 있다. 반역자 집안의 아들, 인륜을 어지럽힌 집안의 아들, 대대로 형벌을 받은 집안의 아들, 대대로 악질惡疾을 앓은 집안의 아들, 아비의 상喪을 치르고 있는 맏아들 등이다. 즉 칠거지악은 여성을 규제하는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혼인과 관련해서 여자가 유의해야 할 윤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크게 보면 혼인과 관련한 남녀의 윤리 규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칠출은 남자들의 윤리에 비해 혼인 후 내내 적용되는 규범으로, 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다.

칠거지악의 일곱 가지 조항에는 경중이 있다. 부모에게 불순하는 것, 자식이 없는 것, 절개를 잃은 것 등이 무거운 사유이고 투기와 악질과 말 많음 등은 둘째 문제였다. 성종이 폐비 윤씨를 폐출할 때 신하들은 투기가 문제이긴 하지만 아들, 즉 연산군燕山君이 있다며 조심스러워하였다. 이에 별궁에 두거나 강등해서 후궁으로 두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만큼 성종이 주장하는 투기 죄목은 치명적인 폐출 사유가 되지는 않았다. 성종의 강행으로 폐비 윤씨는 출궁되고 사약을 받았지만 그것이 정당하다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조선에서 실제로 칠거지악이 잘 쓰이지 않은 것은 조선이 가족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여자를 쫓아내는 것은 혼인 관계 해소인데 이는 곧 가족의 불안정을 뜻한다. 가족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조선으로서는 달갑지 않았다. 조선은 가능하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기조에서 남자 쪽에서 여자를 쫓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혼 사례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1638년 병자호란 후 속환贖還된 며느리를 이혼시키고 아들을 다시 혼인하게 해 달라는 장유張維의 요청은 조정에서 기각되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혼하고 다시 합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다. 조선에서 혼인의 공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한다. 아울러 칠거지악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칠거지악 중 두 번째 사유는 무자無子, 즉 아들이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해 조선에는 특별한 해결 방법이 있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 집안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 대부분 입후立後, 즉 양자하였다. 서자가 있어도 양자를 들였다. 이는 곧 무자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아들이 없는 양반 부인들은 이 방법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들이 없다고 해서 쫓겨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투기 문제도 처의 첩에 대한 절대 우위로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서자가 있어도 양자할 정도로 처는 첩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즉 첩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투기심도 약하였다. 물론 애정도에 대한 질투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권리의 우위가 이 문제를 약화시켰다. 17세기 『병자일기丙子日記』를 보면 남평조씨南平曺氏는 남편의 첩인 천남 어미와 그 아

들 천남이를 잘 대우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외에 악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곤혹스러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출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별거 또는 소박으로 적처의 위치는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 외에 말 많음, 구설수 등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확실한 제재 수단이 되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조선에서 칠거지악이 유명무실한 데는 여자 집안이 남자 집안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대사회적인 이익을 얻는 데 중요한 파트너인 여자 집안사람을 함부로 내칠 수 없었다. 가능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더구나 자식의 신분 결정에 어머니 신분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혼인 관계 해소는 쉽지 않았다. 혼인할 때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하기는 하였지만 한번 맺은 관계는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조선에서 이혼 또는 출처는 결코 쉽지 않았다.

참고문헌 孔子家語, 丙子日記, 成宗實錄, 肅宗實錄, 仁祖實錄, 계녀서의 탄생과 조선식 유교 젠더 규범의 성립(하여주, 조선시대사학보101, 조선시대사학회, 2022), 병자호란 직후 속환부녀의 이혼 문제(박주영, 서강인문논총5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옥환기봉에 나타난 칠거지악 논쟁과 부부 담론(박은정, 고전문학과 교육3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필자 이순구(李舜九)

태교신기
胎教新記

정의 사주당師朱堂 이씨李氏(1739~1821)가 1800년(정조 24)에 임신부의 태교를 위하여 한문으로 글을 짓고, 그 아들인 유희柳僖(1773~1837)가 음의音義와 언해諺解를 붙여 1801년(순조 원년)에 완성한 책.

내용 사주당 이씨의 본관은 전주이다. 어려서부터 『소학小學』『주자가례朱子家禮』『여사서女四書』 등을 비롯한 경서經書를 두루 읽고 익혔다. 신사임당申師任堂에 버금갈 만큼 학식과 부덕이 뛰어나, 동해모의東海母儀라는 칭송을 받았다. 목천현감木川縣監 유한규柳漢奎와 혼인하여



태교신기 | 조선 후기 | 한국국학진흥원

1남 3녀를 두었다. 『언문지諺文志』와 『물명유고物名類考』를 펴낸 서파西陂 유희가 아들이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임신·육아의 경험과 경서 및 의서醫書 등에 기초하여 『태교신기胎教新記』를 저술했다. 이 책은 수고본手稿本 1책으로, 원문 26장과 언해 43장을 합하여 모두 69장이다. 전체 내용은 2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지언교자只言教字: 사람의 성품은 하늘을 근본으로 삼아 이루어지며 기질은 부모로부터 받아 형성된다.
②지언태자只言胎字: 태는 인성의 근본이기에, 수태를 위해서 반드시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③비론태교備論胎教: 태아에게도 군자의 도를 가르쳐야 한다.
④태교지법胎教之法: 태교는 임신부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함께해야 한다.
⑤잡론태교雜論胎教: 군자가 되고 소인배가 되는 것은 오로지 태교에 달려 있다.
⑥극언불행태교지해極言不行胎教之害: 태교를 잘못하면 육신이 온전치 않고, 병약할 수도 있다.
⑦계인지이미신구기위유익어태戒人之以媚神拘忌爲有益於胎: 소경이나 무당을 부르는 따위의 사술邪術을 경계해야 한다.
⑧잡인이증태교지리신명제이장지의雜引以證胎教之里申明第二章之意: 태교의 이치는 오이가 오이 넝쿨에 달려 있는 것과 같다. 자식은 어미에게 달려 있다.
⑨인고인이행지사引古人已行之事: 중국 주周나라의 태교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⑩추언태교지본推言胎教之本: 태교는 본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아내와 딸이 반드시 알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신 전의 부성父性 태교도 강조한다. 곧 잉태

이전 아버지의 심신 상황이 어머니의 태중 열 달보다 더 중하다는 것이다.

필자 이필영(李弼泳)

태명
胎名

정의 부모나 가족이 태아를 부르는 애칭.

내용 공식적 이름인 본명本名 이외에도 이름의 종류는 자字와 호號, 별명別名, 시호諡號, 아명兒名, 예명藝名, 태명胎名 등 상당히 많다. 그중 배냇이름이라고도 하는 태명은 태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부모나 가족이 임신 초·중기에 태아를 부르는 애칭이다. 본명은 출생 이후 부모나 조부모 혹은 작명가가 성명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한글과 한자를 같이 사용해 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태명은 부모가 우리말의 뜻이나 소리에만 유념하여 가볍게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려시대 말『태중훈문胎中訓文』에 기록이 있을 정도로 태교胎教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태아의 호칭인 태명은 최근인 2000년대 이전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2000년대 이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2세의 태명이 전파력 강한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보편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2012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 지역 연구에서 7~8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43.5%, 1~3세 어린이집 유아의 76.9%가 태명이 있는 등 태명 사용이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해당 조사에서 태명은 복덩이, 튼튼이, 똘똘이, 건강, 행복, 이쁜이, 별 등 태아의 행복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부모의 염원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같은 해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목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7.9%가 태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건강을 비롯하여 착한 마음이나 귀여움과 좋은 성격 등을 태명에 담고 싶어 하였다. 태아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이러한 작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태명은 아명과 사용 시기만 다를 뿐 성명학적 인식 없이 대부분 부모가 우리말로 지어 집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명과 상당히 유사한 인명이다. 특히 근년에는 태명의 사용 기간이 본명 사용 이전까지 확대되면서 아명이 사라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태명 확산에는 태아 역시 인격을 갖춘 생명체이므로 자주 불러 주고 대화를 나누면 태명이 의미하는 대로 태아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다. 태명을 불러 주면 태아의 뇌 발달과 건강에 좋고, 존재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임신부의 불안감 해소와 행복감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한다. 이어령李御寧은 "태명이 중국과 일본이나 서양 문화권에 없고, 인터넷에서도 우리말 taemyeong(태명)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기에 이의 확산은 독특한 우리 문화의 세계화"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태아의 호칭인 태명은 2000년대 이후 시작되어 역사가 짧지만 가장 단기간에 일반화된 인명이다. 태명은 아명과 사용 시기만 다를 뿐 대부분 부모가 우리말로 지어서 가족들만 사용하는 애칭으로, 아명과 상당히 유사하다. 태명을 불러 주고 대화하면 태명이 의미하는 대로 태아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개입되어 있다. 태명 확산은 독특한 우리 문화의 세계화란 주장도 있다. 대부분 우리말로 지어지는 태명은 태아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으면서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중성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참고문헌 인명의 종류 고찰(권익기, 한국학연구82,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22), 인명의 특징과 그에 대한 언어 태도 연구(양명희, 한국어학55, 한국어학회, 2012), 태명 짓기의 실태 및 확산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강희숙, 사회언어학20-2, 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태명이 지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신상춘·정창근·도희정,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7-11,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한국인 이야기(이어령, 파람북, 2020).

필자 권익기(權益棋)

택호
宅號

정의 기혼 남녀의 이름 대신 처의 출신지명, 남편의 관직명 등을 붙여서 부르는 별칭.

개관 택호宅號는 기혼 남녀의 이름 대신 부르는 별칭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상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택호를 이용하여 칭하였다. 택호의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으나 이름을 직접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것을 금기·기피하는 기휘관념忌諱觀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반가班家의 기혼 여성은 자신의 출신지명으로 지어진 택호로 이름을 대신하였으며, 남편 역시 처의 택호로 호칭되었다.

내용 택호는 여성의 출신지명을 차용하여 지었다. 주로 시부모나 집안 어른이 정하여 준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출신지명+댁', 남성의 경우 '처의 출신지명+어른(양반)'으로 각각 부르는 것이 일반 형태이다. 이를테면 '하회' 마을에서 시집 온 여성이라면 '하회댁'이 되며, 그 남편은 '하회어른(혹은 하회양반)'이 되는 식이다. 그런데 마을이나 집안에 택호가 동일한 여성이 있으면 변별성을 띠기 위하여 출신지명의 다른 명칭이나 마을보다 큰 단위인 리里, 면面, 군郡 등의 이름을 차용한다. 택호를 이용하여 개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경우 '○○댁'으로 불리는 사람은 그 택호의 주인인 여성뿐이다. 남편을 비롯한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는 독립된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을 나타내는 지칭어와 함께 쓰인다. 즉 남편의 경우 '○○어른(양반)', 자녀의 경우 '○○댁 큰아들'처럼 택호 뒤에 개인을 나타내는 지칭용어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출신지명의 택호는 친족관계에서도 사용된다. 주로 '○○아지매' '○○할배' 등과 같이 '출신지명의 택호+친족용어' 등 형태를 취한다.

택호는 가장家長의 관직官職명을 차용하여 '관직명+댁', 곧 '참봉댁'이나 '대감댁' 등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관직명 택호는 독립된 형태로 개인을 칭하지 않는다. 즉 '참봉댁'이라는 택호는 집을 가리킬 때만 사용하며, 여성을 칭할 때는 '참봉댁 아지매' 또는 '참봉댁 할매' 등의 형태를 취한다. 그 외 가족에게는 '참봉어른' '참봉댁 큰아들' 등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마을에 '참봉댁'으로 불리는 집이 여럿 있을 경우 변별성을 띠기 위하여 '윗마을 참봉댁'과 같이 '마을이름+관직명+댁'의 형태를 취하거나 '권참봉댁'처럼 '시댁 성씨+관직명+댁'으로 부른다.

당호堂號를 택호로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당호는 집 이름을 일컫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지명이나 관직 등과 달리 중복될 우려가 거의 없어 변별성이 뛰어난 편이다. 다만 당호 자체가 집 이름에 해당하므로 '당호+댁'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호가 '충효당'이라면 '충효당댁'이라 하지 않고 '충효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관직명 택호와 마찬가지로 당호만으로 개인을 부르지 않고 '충효당 어른' '충효당 아지매' '충효당 큰아들'처럼 개인을 나타내는 지칭어와 결합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특징 및 의의 전통사회의 혼인 후 거주제居住制는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처가살이혼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옮겨 가는 시집살이혼이기 때문에 기혼 여성은 남성의 출신 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간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출신지명을 차용하여 택호를 짓는다면 변별성이 전혀 없다. 즉 '하회' 마을에서 각 집의 택호를 지을 때 남성의 출신지명을 따른다면 '하회'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이 '하회'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모든 집의 택호는 '하회댁'이 된다. 이런 이유로 '하회'로 시집온 여성들의 다양한 출신지명을 차용하여 택호를 짓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안동 동성마을의 택호 연구(김미영, 비교민속학22, 비교민속학회, 2002), 언간에 나타난 친족 내에서의 택호 사용에 대한 연구(박부자, 국어사연구19, 국어사학회, 2014), 택호와 종자명호칭(왕한석, 선청어문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김미영(金美榮)

통과의례
通過儀禮

정의 사회 구성원이 소속이나 상황이 바뀌어 다른 집단 또는 다른 상태로 이동할 때 치르는 의례, 행사 또는 행위.

역사 프랑스 인류학자 반 게넵Arnold van Gennep의 『The Rites of Passage』라는 저술이 나오면서 인간사회가 가진 다양한 통과의례通過儀禮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이후 많은 인류학자가 후속 연구를 하면서 사회와 문화마다 독특한 통과의례가 있음을 밝혔다. 원시사회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통과의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은 여전하며, 의례 형식이나 행사 내용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 사회적 기능과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용 원시사회로부터 사람들은 특정한 영역의 통과를 금기시하였다. 그것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기제이기도 하고 내부와 외부 구분을 통해 내부를 통제하고 통합하는 데 목적을 두기도 한다. 특히 정치체제가 발달하면서 나라 간 경계를 통과하는 데에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대에서도 그 관행은 여전하다. 국가마다 경계를 짓고, 그곳을 통과하기 위한 복잡한 의례가 강화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장소 이동에 필요한 통과 절차는 정치적·법률적·경제적 규율이 대부분이지만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규율도 여전히 남아 있다.

반 게넵이 통과의례의 사례로 제시하는 내용은 다양하다. 나라 간 경계 이동에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통과의례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일상적인 주거에서 문은 내부와 외부 세계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문지방을 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을 넘을 때 수행하는 행위가 바로 통과의례이다. 문을 통해서,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바로 통과의례이다. '문지방을 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물리적인 통과 행위가 보이는 기능과 의미를 확장해서 추상적인 단계와 상태에서 이동이 일어나는 통과의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위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이동과 그 이동에서 동반되는 통과의례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는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서 한 집단 또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생의례에 주목하고 흥미로운 통과의례 이론을 만들었다. 소속된 사회집단의 이동뿐만 아니라 특정한 단계에서 단계로 또는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에서도 통과의례가 나타난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즉 인간이 출생에서부터 성숙, 결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큰 변화를 기념할 때나 사회적인 인정이 필요할 때 통과의례가 실시된다는 점을 밝혔다.

반 게넵은 통과의례를 분리separation—전이transition—통합aggregation이라는 세 단계 과정으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 번째 분리 단계에서는 물리적·상징적인 분리가 일어난다. 이는 한 개인이 이전 지위나 사회집단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경우 또는 상태를 말한다. 때로는 물리적인 분리가 없어도 상징적으로 분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집을 떠나거나 머리를 자르고 특별한 옷을 입는 등의 분리 의식이 거행되는데 이는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한다는 물리적·상징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분리 단계는 이전의 사회적 정체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단계로 이동하기 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이轉移이다. 전이는 '리미널리티liminality'라고도 하는데, 통과의례 중 가장 중심이 되면서도 모호한 성격을 가진다. 이 기간 개인은 이전의 사회적 지위도 없고 새로운 지위도 부여받지 못한 채로 마치 사회적 진공 상태에 놓인다.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상태betwixt and between'라고도 부른다. 이 단계에서는 종종 특정 의식·시험·시련이 주어지며, 의례의 주인공들은 신체적·심리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이 단계는 자기 성찰, 학습, 변화가 일어나는 중대한 국면 전환기이기도 하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통합이다. 전이에서 이동한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가 부여되는 단계이다. 사회로의 복귀가 일어나기에 '통합'이라고 부른다. 개인은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이전과는 다른 사회 또는 상태로 들어간다.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되는 통합의례에서는 개인이 새로운 집단의 구성원이 된 점과 그에 상응하는 권리·책임·특권을 갖게 되었음이 선포된다.

이러한 세 단계 구분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틀로 이해하면 되고, 모든 통과의례에서 세 단계가 등가적인

것도 아니다. 어떤 의례에서는 분리가 우선시되며 또 다른 의례에서는 통합이 강조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장례식에서는 분리의례가 중시되지만 결혼식이나 입사식에서는 통합의례가 비중 있게 진행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순서가 중복되기도 한다. 약혼식으로의 통과의례를 위해서는 그 안에 분리·전환·결혼으로의 통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약혼식으로부터 결혼식으로의 통과에서는 다시 분리·전환·통합 등이 행해진다. 임신·분만·출산 의례에서도 이러한 중복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출산의례, 성인식, 혼인식 등에는 의례 주체의 지위 변화나 다른 집단으로의 이동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혼인예식에서 다복·다산을 비는 의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출산의례에는 아기의 보호·건강 및 미래의 복을 비는 의례가 결합하여 있다. 아기가 출생하면 조상에게 치성과 감사를 드리는 일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에서 의례를 지내면서 조상에게 아기가 태어나서 친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고하는 의식을 지낸다. 또한 산신령·용왕·조왕·삼신·조상신들에게 아기의 수명장수壽命長壽와 입신출세立身出世를 빈다. 천지신명의 은덕에 힘입어서 자손이 생겼으니 앞으로도 잘 지켜 주십사 하는 비손을 한다.

입사식에서는 조직 내 협업과 조화를 강조하는 상징의례가, 성직자 입회식에서는 신에게 귀의를 의미하는 상징성이 통과의례의 속성을 다채롭게 한다. 이러한 통과의례가 지니는 속성·기능·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 일생의례의 예를 들어본다.

출생의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생명의 지속적인 탄생으로 수백만 년의 인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 다시 말해 인류 사회의 영속성은 새로운 구성원이 끊임없이 영입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인류는 자기 집단 내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고, 정중하면서도 위엄이 가득한 출생의례를 지내게 되었다.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인류 사회가 가지는 현상이고, 사회 규모나 발전 단계



대문금줄(삼신줄) | 국립민속박물관

와는 상관없이 생명의 탄생을 기리는 의례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출생의례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진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의례가 다양하다는 사실 또한 인간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민족, 지역, 종교, 친족·가족 등의 하위집단에 따른 다양한 출생의례가 원시시대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출생의례 중 임신에서는 분리의례가 중요하다. 임부와 태아는 가족 집단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물리적·상징적으로 분리된다. 다시 말해 여성이 임신하면 사회·가족과 자신의 성性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한다. 임신기간이 지나고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와 산모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의례가 진행된다. 아기와 산모는 가족 및 친족집단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때 삼신상을 받고, 조상의 위패를 모신 곳에서 의식이 거행한다. 비로소 아기는 자식(아들 또는 딸)으로 인정받고, 산모는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통합 국면을 의미화하기 위해 출생의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출산에 집중하는 통과의례의 구조는 태아가 모태에서 분리되는 것, 아기와 엄마가 이후 격리 수용되며, 일정 기간이 끝나면 사회로 통합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한편 출산의례에서는 통과의례 이외의 성격을 가

진 의례가 공존한다. 임신을 전후하여 아들을 바라는 기자신앙祈子信仰이나 아기의 보호, 건강 및 미래의 복을 비는 의례가 결합하여 있기 마련이다. 아기가 출생하면 조상에게 치성과 감사를 드리는 일은 조상에게 아기가 태어나서 친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고하는 의식이면서 또 아기의 미래를 위해 비는 의식이기도 하다. 산신령·용왕·조왕·삼신·조상신에게 아기의 건강과 출세를 빈다. 이러한 출생의식의 다목적성을 이해하면서 통과의례의 의미를 새겨야 할 것이다.



계례(초례) | 경북 안동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성인식

성인식은 사춘기에 도달한 아이들을 상대로 베푸는 통과의례이다. 대부분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성인식은 여러 사회와 문화에서 중요한 의례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시대의 관례冠禮가 성인식에 해당한다. 남자아이는 15세가 넘으면 상투를 틀고 갓을 씌우는 의식으로 관례를 행하고, 성인으로 대우하였다.

성인식은 반 게넵이 주장한 두 번째 단계인 전이에 해당된다. 즉 어린아이 단계에서 성인 단계로의 성장을 강조한다. 어린아이가 속해 있던 어머니와 모계와 밀착된 환경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정화의례가 행해진다.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두막에서 고행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할례는 몸의 어떤 부분을 절제·절단·상해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한 개인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의식이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귓불에 구멍을 내거나 문신을 하는 등의 고행을 견디면서 아이는 유아 단계에서 성인 단계로 이동하여 새로운 의무와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 고행을 견딘 아이들에게는 비로소 사회로의 통합이 인정되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성인식의 육체적 고행이 인권 문제와 결부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소녀들의 할례는 육체적·심리적인 상처를 남겨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고통을 받는다고 여러 국제 인권 단체에 보고되고 있다.

혼인식

전근대 시기의 혼인은 어느 나라나 문화를 막론하고 젊은 남녀 두 사람의 결합이라기보다 남녀가 속한 두 집단의 사회적 결합이 우선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예에서도 혼인은 집안 어른들이 정하는 것이었다. 혼인을 통해서 양가의 인적·물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연계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러한 혼인예식은 젊은 남녀가 출생 가족으로부터 분리 내지는 혼인 전 단계와 구분시킨다는 의미가 크다. 물론 여기에서도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



관례(삼가) | 경북 안동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전통혼례 | 경기 용인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기 마련이다.

혼인식에는 신랑이나 신부가 지참금을 가지고 온다. 이 지참금을 놓고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체로 신랑이나 신부 집단에서 잃게 되는 한 사람의 노동력과 태어날 아기가 향후 기여하게 될 노동력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배상, 즉 대가에 대한 지급은 분리의례와 함께 이루어진다. 배상 자체가 이미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숙지할 수 있다.

부계제父系制·부거제父居制 아래에서는 신부가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떠나게 되며, 이때 행해지는 의례가 혼인식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에서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초행, 신붓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3일 후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신행 등이 있다. 분리의례가 마침내 통합의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혼인 의례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장례식

장례식에서는 분리의례가 중심이 되면서도 전이와 통합의례도 행해지고 있음을 먼저 숙지해야 한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 있는 사람과 망자를 분리하는 의식을 치르고, 망자는 이러한 사후세계로 가는 전이 단계를 거치면 마침내 사후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장례식은 이 과정 모두를 진지하면서도 성의 있게 치른다. 우리나라도 망자가 조상이 되기까지 일련의 의식이 질서정연하게 거행되고 있다.

상례에 참여하는 혈족을 정하고, 망자와의 혈연관계 친소親疏로 상복을 입는 것도 구별하였다. 오복제五服第에 따라 복식도 달랐고, 상복을 입는 기간도 달리 정하였다. 죽은 이의 물건과 옷 등을 태우는 의식도 분리의례의 일종이다. 그리고 망자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기도 한다. 이 시기에 망자를 어느 정도 머무르게 하는가는 문화마다 다르다. 즉 전이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달렸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망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전이 기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추장이나 왕이 죽으면 모든 사회생활이 몇 달 동안 정지되기도 하였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삼년상을 치르기도 하였는데 이 기간은 망자의 혼을 집안에 모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년 후 다시 대상大祥을 치른 후 비로소 망자는 조상들의 세계로 통합될 수 있었다.

일생의례 외에도 여러 통과의례를 찾아볼 수 있다. 추장이나 왕의 추대식, 오늘날에는 대통령 취임식도 여기에 해당된다. 졸업식이나 입사식도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통과의례이다. 사회가 변화하고 구성원들이 소속된 하위집단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통과의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사회구성원이 사회생활 속에서 중요한 국면 전환기에 마주하게 되는 의례를 통과의례로 규정한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위를 거치는 것이 마치 물리적인 '영역의 통과', 즉 어떤 마을이나 집으로 들어



상여행렬 | 충남 천안 | 1985 | 국립민속박물관



하관 | 전남 진도 | 2001 | 국립민속박물관

가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 것과도 같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 영역을 통과할 때 행하는 상징적인(때로는 매우 간단한 의례인 경우도 있다.) 의례와 사람들이 일생의 중요한 국면에서 이동할 때 치르는 의례인 출산의례, 성인식, 혼인식, 장례식 등을 모두 통과의례로 본다. 통과의례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범위는 매우 넓다.

참고문헌 통과의례(Arnold van Gennep, 전경수 역, 을유문화사, 1992).

필자 함한희(咸翰姬)

통혼권
通婚圈

정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

내용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배타적이고도 영속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정이다. 그러나 혼인은 당사자의 개인적 결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가문과 가문이 상호 인척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더욱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를 형성한다. 혼인은 자족적인 마을공동체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하던 농촌주민들이 마을을 넘어서서 사회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인 것이다. 그러나 혼인은 당사자의 일생과 그가 속한 가문의 신분적 지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양가를 연결해 주고 양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적관계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통혼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혈연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어느 사회나 특정한 범위 내의 친족 성원들과 혼인하는 것을 선호 내지는 금지하는 일정한 규칙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같은 씨족 내에서는 혼인할 수 없고 다른 씨족의 성원들과 혼인하도록 규범화된 '씨족외혼제氏族外婚制, clan exogamy'가 일반적이다. 조선시대에 관습적으로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철저하게 준수되어 온 '동성동본불혼율同姓同本不婚律'은 씨족외혼제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부계친족의 성원들이 한 마을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종족마을(집성촌)이 발달한 한국사회에서 동성동본끼리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마을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였다. 여러 성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각성마을에서는 선택의 폭이 다소 넓어질 수 있지만 혼전 이성교제를 금기시하는 남녀의 사회적 격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촌락내혼村落內婚을 바람직하지 못한 혼인양식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는 대체로 촌락내혼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남녀의 사회적 격리의식이 희박하거나 넓은 범위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고립된 지역에서는 촌락내혼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해안의 어촌마을이나 제주도에서 촌락내혼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녀의 사회적 접촉이 비교적 개방된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에서 촌락내혼율이 높은 것은 남녀 교제의 개방성과 함께 지역적 고립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혼의 지역적 범위는 신분적 배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귀속적歸屬的 지위를 중시하는 신분사회에서는 대체로 동일한 신분이나 계급 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규범화된 계급내혼제階級內婚制, class endogamy가 개인의 혼인을 규제한다. 한국사회에서도 제도로서의 신분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폐지되었으나 오랜 신분사회의 전통이 반상班常관념으로 강하게 남아 배우자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인이 신분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들보다 사회적 평가가 높은 집안과 통혼하여 자신들의 신분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고자 노력하는 반면, 신분적 지위를 격하시킬 수 있는 낮은 신분과의 통혼은 기피한다. 그래서 신분적 우월감이 강하고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저명한 양반 가문에서는 자신들과 어울리는 혼반婚班을 찾아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원혼遠婚을 즐겨하였다. 시집살이라는 고달픈 문화적 적응과정을 거쳐서 며느리가 시댁문화에 철저하게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부계중심의 친족 구성원리도 가능한 한 멀리서 혼

처를 구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라는 말은 이러한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고 교유交遊의 범위가 넓지 않은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먼 거리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혼인을 통해서 신분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경제적 조건들이 이들의 통혼 범위를 제약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일상적인 생활권 범위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근혼近婚의 경향을 보여준다. 전통사회에서는 대체로 오일장五日場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장권市場圈의 범위 안에서 70~80% 이상의 혼인이 이루어져 시장권과 통혼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반가에 예속되어 있거나 특정 촌락에 거주가 제한되어 있었던 천민들의 경우에는 같은 마을 안에서 비슷한 신분끼리 혼인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신분에 따른 계급내혼 의식은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이 상호 간의 통혼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끼리 혼인하고 어촌지역은 어촌지역끼리 혼인하여 농촌과 어촌 사이의 통혼은 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성장한 여성이 어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거나 어촌에서 성장한 여성이 농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생태학적 적응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농촌지역 사람들이 어촌지역 사람들과 혼인하기를 기피함으로써 어촌지역 사람들은 어촌끼리 혼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더욱 근본적인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촌과 어촌 간의 통혼 단절은 계급내혼제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적 통혼권은 혈연적 요인과 신분적 요인 외에도 사회관계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저명한 양반들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배우자를 물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림儒林을 통한 폭넓은 사회관계망의 형성이 현실적인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고 활동범위가 넓지 못한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폭넓은 사회관계망의 구축이 불가능했으므로 비교적 가까운 일상적인 생활권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였다. 같은 양반 가문의 성원 중에서도 활동의 범위가 좁은 보통 성원들은 일반 서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근혼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종족의식과 신분적 우월감이 강하고 사회적 활동범위가 넓은 주요 인사들이 원혼의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사회관계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회가 개방되고 제도교육이 폭넓게 보급되어 직업적·지역적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통혼권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는 이처럼 개인의 배우자 선택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과 함께 사회관계망의 확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통혼의 지역적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측정하는 방법, 공간적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요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같은 마을' '같은 면面' '같은 군郡' '같은 도道' '다른 도' 등 행정구역별로 범위를 나누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의 사회관계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행정구역의 경계선 가까이에 위치한 마을에서 인접 마을과 혼인하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다른 면' '다른 군' 또는 '다른 도'로 집계되어 실제로는 근혼이지만 분석에서는 원혼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마을을 벗어난 농촌주민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범위로는 오일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장권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행정구역[군현郡縣]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 시장권은 '우리 고을'이라는 귀속의식을 주민들이 공유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공동생활권이다. 현대의 행정구역으로는 몇 개의 면을 포괄하는 범위에 해당하며 하나의 군에는 대개 2~3개의 시장권이 존재한다. 일반 농촌주민들은 약 70~80% 이상이 이 시장권의 범위 안에서 혼인을 하고 있어서 시장권과 통혼권이 중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각 마을에 산재한 연비聯臂 친척들이 양가를 연결하는 중매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해서 상대 집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혼인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동일한 시장권 안에서는 같은 면面인가 다른 면인가 하는 문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같은 군'이라 하더라도 시장권이 다르면 통혼

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다른 군'이나 '다른 도'라 하더라도 시장권이 인접해 있으면 통혼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통혼권의 분석은 중요한 생활권의 하나인 시장권을 '일차적 통혼권'으로 설정하고, 일차적 통혼권과 인접한 시장권을 '이차적 통혼권', 이차적 통혼권을 벗어난 지역을 '삼차적 통혼권' 혹은 '원혼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이 농촌 주민들의 의미 있는 사회관계망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삼차적 통혼권은 통혼의 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이를 다시 세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촌락내혼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촌락이 아니라 사회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명확한 독자성을 갖는 자연촌락을 단위로 해서 분석하여야 한다. 자연촌락이 자족적 생활의 단위를 이루고 있고, 이 자연촌락을 '우리 마을'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촌락을 벗어나면 비록 같은 행정촌락[리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 마을은 '다른 마을'인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자연촌락을 포함하는 행정마을을 단위로 통혼권을 분석하면 '다른 마을'과 통혼한 사례가 촌락내혼으로 집계될 위험이 있다.

공간적 거리를 기준으로 통혼 범위의 넓음과 좁음을 구분하는 방법도 지형이나 교통로 등 마을의 입지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기준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농촌주민들의 사회관계망으로서의 통혼권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특징 및 의의 통혼권은 친족제도와 혼인관습, 신분제도와 반상관념, 남녀교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친인척 관계와 문중 간의 교류, 선비들의 학문적 교유, 시장 출입, 관공서 출입, 학교 교육, 마을의 입지와 교통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된 매우 복합적인 사회현상이다. 그러므로 통혼의 지역적 범위는 혼인 당사자의 가족이 속한 가문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며, 농촌주민들의 사회관계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통혼의 지역적 범위는 '같은 마을(자연촌락)' '시장권(일차적 통혼권)' '인접 시장권(이차적 통혼권)' '기타 원혼지역(삼차적 통혼권)'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농촌지역 통혼권의 구조와 변화과정(이한방, 지리학논총14,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987), 동해안 어촌마을의 지역적 통혼권(이창기, 민족문화논총2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영해지역 반촌·농촌·어촌의 통혼권 비교연구(이창기, 민족문화논총4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지역적 통혼권 연구의 비판적 검토(이창기, 민족문화논총40,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8), 통혼권과 지역사회체계 연구(정승모, 한국문화인류학15,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통혼권의 공간동학적 의미(박성용, 한국문화인류학28, 한국문화인류학회, 1995), 한국농촌의 지역적 통혼권(여중철, 신라가야문화9·10, 영남대학교 신라가야문화연구소, 1978).

필자 이창기(李昌基)

파시조
派始祖

정의 한 성씨 내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계파의 중심 조상.

개관 종법宗法은 종조승계宗祧承繼의 법 또는 가례家禮를 지낼 제사자祭祀者를 정하는 법으로, 중국 주나라 때 별자종법別子宗法으로 완성되었다. 이에 따르면 제후의 중자衆子, 즉 차남 이하는 다음 세대에서 장자에 한하여 대종大宗으로 이어 갈 수 있지만 그 이하는 소종小宗으로 4대 이상 이어 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 수용을 통한 가례 정착과 종법 질서에 따른 성씨姓氏별 부계父系친족의식과 문중조직의 발달은 성씨별로 시조를 비롯하여 윗대 조상을 찾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왕실 중심 종법의 취지와 달리 그들의 조상 중심으로 대종과 소종을 구분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소종의 대종화大宗化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한 성씨의 특출한 업적을 남긴 현조顯祖나 윗대 조상을 상고하면서 시조 아랫대에 대종과 계통을 달리하는 소종을 구분하기 위한 조상, 소종 중심 조상 등을 후손들이 파시조派始祖로 모시는 경우가 많다.

내용 파시조는 대개 족보상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조선시대 성리학 수용과 함께 조상에 대한 제례가 정착되고 부계친족집단인 문중이 형성되면서 나타났다. 초기 족보의 경우 직계조상 위주로 가계 대수代數가 얕고, 편찬 당시 족보를 편찬하는 유력 가문 위주로

인물을 수록하고 있어서 파시조가 잘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한 성씨 부계친족성원을 모두 기록한 대동보大同譜에서는 파시조가 한 성씨 내부에서도 서로를 구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그러한 파시조의 등장은 조선시대 종법제도에 대한 사대부들의 새로운 해석이 확대되고, 족보의 수보蒐補 범위가 확장된 전체 성씨 대동보가 편찬되면서 두드러진다. 사대부 집안에서 대종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는 공신으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불천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불천위 조상을 대상으로 적장자와 그 후손들이 영속적으로 제사를 모심으로써 형식상 대종을 이루게 된다. 이때 바로 공신이 된 인물이 대체로 파시조로 모셔진다.

불천위 대상이 초기 공신에서 이후 높은 작위를 부여받은 조상, 문묘배향 인물, 시호를 받은 조상 등으로 확대되면서 부계친족 내부에서는 그 조상을 파시조로 추대하여 한 성씨 집단 내부에서 불천위 조상을 파시조로 모시는 문중의 상대적인 우월함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었다.

특징 및 의의 파시조는 조선시대에 성리학 수용이 심화되면서 조상제례의 사회적 실천 강화, 부계친족의식의 강화로 인한 족보의 체계화에 의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불천위 조상을 파시조로 모시는 부계친족집단의 경우 향촌사회에서 문중 활동을 통해 파시조의 종가 중심으로 제례를 모시고, 족보를 편찬하고, 신도비·종택·사당과 같은 문화경관 조성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배경을 보여 줌과 동시에 사회적 신분을 증빙하고, 그들의 위세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한편 한 성씨 내에서도 우월한 조상을 파시조로 모시는 문중이 별도로 분파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같은 친족 내부의 사회적인 구별 짓기social distinction도 함께 나타났다.

참고문헌 15~17세기 족보 간행과 참여계층 연구(권기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여말선초 상·제례 변동과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이상균, 한국민족문화4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종가문화의 기원과 실체(정승모, 한국계보연구3, 한국계보연구회, 2012), 한국의 족보(정승모,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필자 이상균(李相均)

파양
罷養

정의 입양을 통해 맺은 부모와 자식의 친족 관계를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

내용 전근대사회에서의 입양이란 대체로 입후立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자녀의 양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수양收養·시양侍養과 달리 가문의 계승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자를 들이고 자신이 소유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조선이 건국 초부터 적극 도입한 성리학性理學이 17세기 이후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입양은 혈연에 기초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존의 부자 관계를 버리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새로운 부자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였다. 즉 인륜의 기초가 되는 부자 관계를 사회적 필요에 의해 변형시키는 것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기제機制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입양의 성립에 필요한 절차·조건·대상을 처음부터 법으로 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고, 최종적으로 천명天命을 대리하는 국왕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처럼 국가는 입양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며 부자 관계의 변형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입양으로 형성된 부자 관계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파양罷養 역시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양이 선조先祖의 제사를 봉행奉行하고 가계家系를 잇기 위한 대안으로 점차 널리 활용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파양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파계罷繼 또는 파계귀종罷繼歸宗으로도 불리는 파양의 유형은 대략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친아들을 다른 집의 양자로 보낸 뒤 친가親家의 후사가 끊긴 경우에는 파양을 요청할 수 있었다. 본래 친가에서 친아들을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낼 때는 그 집의 제사를 봉행할 맏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 중에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나머지 아들을 다른 집으로 보내고 나서 자기 집안

의 제사를 지내야 할 맏아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즉 친아들이 있는데도 제사가 끊어지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문제는 명종明宗 대에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뒤 다른 집안의 후사가 된 자라고 할지라도 친부모의 제사가 끊어지면 친가로 돌아가 친부모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고, 양가養家는 조건에 맞는 다른 대상을 찾아 다시 입양하도록 정해졌다. 이 같은 조처는 본래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친아들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부모 제사를 지내게 할 수 없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유로 친가에서 파양을 신청하면 국가에서는 어김없이 친가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여 주었다.

둘째, 항렬行列에 맞지 않은 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파양할 수 있었다. 15세기 후반『경국대전經國大典』체제가 완성된 뒤로 가계 계승을 목적으로 입양할 때는 양부의 부계친父系親 중에서도 조카 항렬을 데려오는 것만 허가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양자로 올려 입양하였으나, 그 뒤 족보를 편찬하며 항렬을 확인하던 중 착오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파양이 이루어졌다. 이는 입후가 널리 확대되면서 가까운 친족 가운데에서 입후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양부와 동일한 성씨 전체로 범위를 넓혀 그 대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항렬과 촌수를 명확히 알지 못해 벌어진 현상으로 이해된다. 즉 양부와 양자 간 항렬을 잘못 안 경우에는 입양할 때의 행정 절차가 미비하여 벌어진 일이었고, 법적으로도 금하는 행위였으므로 파양이 이루어졌다.

셋째, 입양이 이루어진 후 친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파양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입양은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한 후에야 양자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국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야 하였다. 그런데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들이 친부모와 증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마치 친부모가 찬성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허가받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뒤늦게 친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입후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던 경우에는 그 절차적 결함으로 파양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졌다.

넷째, 양자의 나이가 양부보다 많을 때 파양되었다. 원칙적으로 양자가 지자支子이고 양부의 아들 항렬에 해당한다는 조건에 맞으면 큰 문제 없이 입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입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입양이 성사되었다가도 다시 파양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양자의 나이가 양부모보다 많은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안이 처음 논의될 때는 양자의 나이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예학서에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주장이 우세하여 입양이 허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부모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례는 고금에 없고 사회적 정서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파양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양자가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파양할 수 있었다. 입양을 통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게 되면 양자는 부모에게 자식 도리를 다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즉 양자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정성껏 잘 봉양하여야 하며, 돌아가시면 그에 알맞은 상장례 및 제례를 정성껏 잘 치러야 한다. 그러나 양자가 양부모에게 불효하였을 때, 패륜적 행위를 일삼을 때, 제사를 받드는 행위를 소홀하였을 때, 집안 재산을 탈취하였을 때는 인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양되었다.

여섯째, 양부 또는 양자가 역모에 가담하여 처벌받게 되면 연좌를 회피하기 위해 파계를 이용하였다. 전근대사회에서는 국가의 기존 질서에 반하는 대역죄를 저지르면 죄인과 특정 친족 관계에 있는 이들까지 함께 처벌되는 연좌율緣坐律이 시행되었다. 만약 부친이 죄를 지으면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형絞刑에 처해지고 15세 이하의 아들은 노비가 되었으며, 이와 반대로 아들이 죄를 지으면 부친은 교형에 처해지고 모친은 노비가 되었다. 이에 따라 양부가 죄를 지으면 친가에서는 친자가 처벌되는 것을 막고자 파양을 요구하였고, 양자가 죄를 지으면 양가養家에서 연좌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양하였다.

이 외에도 입양한 뒤 친자가 태어났을 때 파양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 기간 논란이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뒤늦게 출생한 친자가 후사를 잇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파양하게 하였으나, 한번 정한 부자 관계를 가볍게 고칠 수 없다는 반대가 우세하면서 파양이 취소되었다. 그리고 친자가 제사를 봉행하고 양자는 중자衆子로 대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후대에는 이 역시 종법宗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친자가 태어나더라도 양자가 제사를 봉행하도록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파양은 입양으로 변화된 친족 관계를 다시 이전으로 환원하는 행위로, 인륜의 기초가 되는 부자 관계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아들 없는 사람이 후사를 잇기 위한 차선책으로 입양이 널리 활용되면서 부작용의 하나로 파양 허용 범위에 관한 논의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같은 파양 논의는 입양 성립이 곧 성공적인 가계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파양의 여러 사례를 통하여 친족 내부의 갈등 요소를 파악할 수 있고 시기별 파양의 허용 양상을 통해 친족 관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족제 전반의 운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파계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고민정, 사학연구130, 한국사학회, 2018), 조선후기 연좌제 운영을 통해 본 파계의 양상과 가계계승(고민정, 사학연구124, 한국사학회, 2016), 조선후기 입후 방식과 계후자의 항렬에 관한 연구(고민정, 태동고전연구3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5), 파계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박경, 장서각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필자 고민정(高旻廷)

파종가
派宗家

정의 혈연집단에서 종법상 대종가에서 분파되어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 부계혈통의 정통성이 계승되어 온 집.

내용 종가宗家는 종법제도宗法制度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종법은 공동 조상의 후손들로 구성된 혈연집단을 피라미드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논리이자 그 집단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이다. 종법이 조선 중기에 도입되었기에 고대의 시조로부터 계승되는 종가는 현실적으로 없다.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종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혈연집단의 파조派祖로부터 적장자嫡長子로 계승되어 온 집이다. 파조가 부계혈연집단에서 분파되어 나오는 계기는 그 파조 사후 4대 봉사가 끝나기 전에 그의 학문, 덕행, 관직 등이 우뚝하다 하여 그로부터 새로운 부계혈연집단을 독립시킨 것이다. 지역사회의 공론을 거쳐 불천위不遷位 조상으로 추대하는 것이 부계혈연집단을 분파시키는 가장 분명한 계기이다. 이로써 대종大宗에서 소종小宗이 분파되어 형성되고, 파종가派宗家가 성립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대종과 소종 개념만이 거론되는데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파종派宗이 일정 기간 소종으로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대종으로 변하기도 한다.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진성이씨眞城李氏 분파 사례를 살펴보면 원래 경북 청송군 진보현에서 살았던 진성이씨의 안동 입향조는 송안군松安君 이자수李子脩이다. 1330년 이자수의 명서업明書業 급제 홍패를 보면 아버지는 이석李碩으로 진보현의 향리였고 그의 조부는 이영찬李英贊, 증조부는 이송주李松柱로 확인된다. 하지만 진성이씨 문중에서는 이석을 진성이씨의 시조로 규정한다. 이자수는 고려 말 홍건적의 2차 침입 시 부장副將으로서 홍건적을 물리쳐서 안사공신安社功臣이 되었고, 현재의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로 이주하였다.

이자수는 진성이씨 후손들에 의해 안동 입향조로 각별하게 인식된다. 이자수의 동생 이자방李子芳은 청송 진보현에 살았기에 그 후손들은 후평파後坪派로 분파되었다. 이자수의 아들이 이운구李云具와 이운후李云侯 둘인데 이운구는 영주로 이주하여 참의공파參議公派를 이루었고, 이운후는 안동 와룡면 주촌周村으로 이주하였다. 이운후의 아들이 선산부사善山府使를 지낸 이정李禎이고, 그를 파조派祖로 하는 파를 주촌파라고 한다. 이정의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 이운후는 주촌파의 파조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정이 선산부사를 지냈고, 사회적으로 우뚝한 조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정의 셋째 아들이 안동 도산면 온혜리로 이주한



진성이씨 퇴계 종택 | 경북 안동 | 2021 | 배영동



진성이씨 동암 종택 | 경북 안동 | 2014 | 배영동



진성이씨 온계 종택 | 경북 안동 | 2015 | 배영동



진성이씨 노송정 종택 | 경북 안동 | 2015 | 배영동

노송정老松亭 이계양李繼陽이다. 그는 성균관 진사였으나 계유정난癸酉靖難이 발생하자 고향으로 내려와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였다. 이계양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조부이며, 그를 파조로 하는 부계혈연집단을 노송정파 또는 온혜파라 한다. 그를 계승한 종가가 바로 노송정파 종가이다. 이계양의 첫째 아들은 진사를 지낸 이식李埴이고, 둘째 아들은 문과에 급제하여 중종반정 공신이자 우승지를 지내고 어린 조카 이해李瀣와 이황에게 학문을 가르친 송재松齋 이우李堣이다. 이우를 파조로 하는 부계혈연집단을 송재파라고 하고 그 종가가 송재파종가이다. 이식의 아들이 여섯인데 다섯째 아들이 온계溫溪 이해李瀣이고, 여섯째 아들이 유명한 성리학자 퇴계 이황이다. 이해는 문과에 급제하여 3도 관찰사, 대사헌을 지냈으나 무고로 희생되었다. 그를 파조로 하는 부계혈연집단이 온계파이며, 그 종가가 온계종가이니 종법상 온계파종가이다.

그런데 이황을 계승하는 부계혈연집단인 퇴계파는 그 위상이 높아서 새로운 대종처럼 여겨지고 후손도 번창하여 손자대에 가서 3파로 갈라졌는데, 이주하여 혈연집단을 형성한 거주지명을 따서 파명을 정하였다. 첫째 손자 이안도李安道를 계승하는 파를 상계파上溪派, 둘째 손자 이순도李純道를 계승하는 파를 의인파宜仁派, 셋째 손자 이영도李詠道를 계승하는 파를 하계파下溪派라고 한다.

이 중 상계파종가는 이안도의 종가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퇴계종가이다. 의인파종가는 이순도의 6대손에 이르러 종통이 재형성되었고, 하계파종가는 이영도종가이다. 그리고 하계파의 경우 이영도의 둘째 증손자 이구李榘가 도산면 원촌마을로 이주하였기에 그 부계혈연집단이 원촌파이다. 그 밖에도 반초당反招堂 이명익李溟翼을 파조로 하는 반초당파, 나은懶隱 이동표李東標를 파조로 하는 나은파, 후산后山 이종수李宗洙를 파조로 하는 후산파가 모두 진성이씨 부계혈연집단의 분파이다.

이정, 이계양, 이우, 이해, 이황, 이영도, 이명익, 이동표, 이종수는 모두 불천위로 추대된 인물이다. 이런 조상을 파조로 하는 종가가 모두 파종가이다. 즉 진성이씨 부계혈연집단 구성원 가운데 국가적·사회적으로 뚜렷한 행적을 남긴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계혈연

집단이 분파되어 왔다. 또한 분파된 혈연집단의 구심점으로 종법상의 파종가가 성립되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형식과 규모 면에서 일반 주택과 구별되는 가옥을 유지하는 파종가가 없는 경우도 있다.

특징 및 의의 파종가는 부계혈연집단의 분파 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종가의 한 유형이다. 종법 논리로 보면 대종가도 아니고 소종가라고 하기도 어렵다. 파종가야말로 한국 종가의 가장 일반적인 종가 형태라고 이해된다. 부계혈연집단에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행적을 남긴 조상을 기점起點으로 하여 그 후손들이 분파를 만들었고, 그 조상의 삶과 자취를 계승하려는 종가가 파종가이다. 유교사회의 상류층 문화를 전승하는 종가가 대부분 파종가이다. 전통사회의 민간에서 유교문화적 실천의 주체가 부계혈연집단이었고, 파종가는 그 혈연집단의 구심점으로서 조상에 대한 봉제사와 방문객에 대한 접빈객을 실행하는 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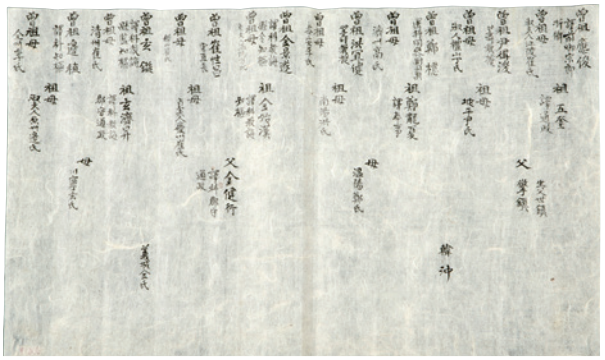
참고문헌 전통의 맥을 잇는 종가문화(한국국학진흥원, 2008), 종가의 사당을 통해본 조상관(배영동, 한국민속학39, 한국민속학회, 2004), 한국의 명문 종가(이순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의 종가 그 역사와 정신(김미영 외, 예문서원, 2016), 한국의 종가 그 현재와 가치(김광억 외, 예문서원, 2016),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

필자 배영동(裵永東)

팔고조도
八高祖圖

정의 조부의 조부·외조부, 조모의 조부·외조부, 외조부의 조부·외조부, 외조모의 조부·외조부라는 8명의 선조들과 나로부터 이들 선조에 이르는 계보.

내용 팔고조도八高祖圖는 귀족적 신분의 확인이 나로부터 아버지 측과 어머니 측의 여러 성씨 남성 선조 3대에까지 미쳐서 제시되는 계보도를 말한다. 나의 신분은 부모 양측의 신분에서 유래한다. 부모의 신분은 부모 각자의 부모, 즉 나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로부터 유래한다. 이들 조부모와 외조부모 각자의 아버지 4명을 '사증조四曾祖'라 한다. 여기에 4증조와 4증조모 각자의



팔고조도 | 가로32 세로2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아버지 8명을 '팔고조八高祖'라 한다. 이들은 조부의 조부와 외조부, 조모의 조부와 외조부, 외조부의 조부와 외조부, 외조모의 조부와 외조부에 해당한다. 이 8명 모두가 양반이어야 내가 양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팔고조와 사증조는 나로부터 단선으로 직계선조를 기재한 가첩家牒의 말미에 모, 조모, 외조모 각자의 사조四祖와 함께 등장한다. 이들의 사조와 팔고조 및 사증조의 정보는 선조로부터 자손으로 내려오는 족보의 계보가 아니라 호적戶籍의 사조 기록에서 얻을 수 있다. 호적에는 호의 대표자 부부에게 각자 '부·조·증조·외조'라는 네 명의 조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가 호적의 계보 기록을 통해 인민에 대한 신분을 파악하고 있던 것이다. 사조를 기록한 호적은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현존하는데 여말선초에 작성된 호적에는 부부의 사조만이 아니라 사조 각자의 사조와 모·조모·외조모 당사자의 사조가 기재된 사례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고려 말기 호적의 이러한 중첩된 사조 기록을 '팔조호구八祖戶口'라고 한다. 귀족적인 신분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밝히는 이러한 계통적 확인은 관료 임명과 승진에 증빙으로 요구되었다. 이런 호적의 계보 기록은 제한된 관직 수에 반해 귀족적 신분을 표명하는 자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하였다. 고려 말에 귀족적 신분제가 동요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왕조 건국 이후 고려왕조의 이러한 귀족적 신분제는 점차 소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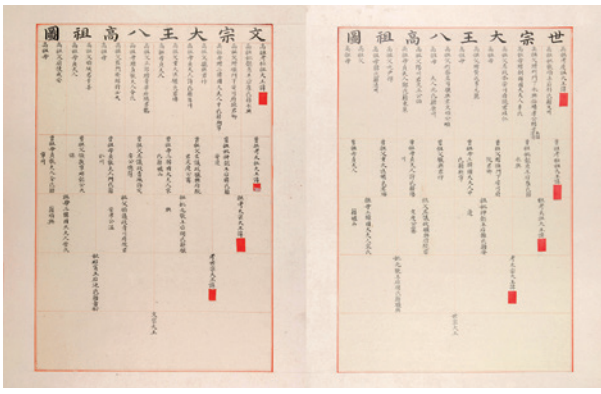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선조들의 번잡한 계보 정보는 부모의 호적, 조부모의 호적과 같이 대대로 누적된 호적에서 확보할 수 있다. 호적상 사조의 사조와 모·조모·외조모 각각의 사조 정보는 혼인과 더불어 제공되었다. 통혼권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져 신분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빙한 것이다. 이렇게 호적에 기재된 부모 양측의 신분 정보로부터 사증조와 팔고조의 도식을 얻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민간 족보는 호적상의 신분 기록이 유동적인 것에 대응하여 편찬되었다. 족보에는 부계父系적 연원을 근간에 두면서도 혼인관계를 통해 신분적 위상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족보는 사위 기록을 통한 부계여성의 혼인관계를 매개로, 조선 후기의 족보는 처부妻父 기록을 통한 부계남성의 혼인관계를 매개로 신분적 연대가 결성되었다.

족보 기재 방식이 자녀보子女譜에서 부계남성 중심의 계보로 전환되는 시기에 가첩의 말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팔고조의 기재 방식이 활용된 족보를 발견할 수 있다. 1606년에 편찬된 『진양하씨세보晉陽河氏世譜』는 편찬자의 부계자녀 계보를 근간으로 고조에 이르는 직계선조들의 외가外家 계보를 수합하여 편찬되었다. 부계 계보는 부계남성의 '자파子派'와 부계여성의 '여파女派'로 구분하고, 외가 가문은 '외보外譜'로 구분하였다. 고조의 외가, 증조의 외가, 조의 외가, 부의 외가는 바로 팔고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왕실 족보에도 사조, 사증조, 팔고조도가 그려졌다. 왕친과 왕후 친족 및 세자빈 친족을 기재한 『돈녕보첩敦寧譜牒』은 1649년부터 간행되었는데, 이 보첩에는 왕비의 부모를 기준으로 각각의 사조四祖를 기록하고 사조 각자의 부계 계보를 기재하였다. 또한 왕실 족보 중 하나인 『열성팔고조도列聖八高祖圖』는 왕과 왕비의 팔고조도를 기재한 것으로, 1683년에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왕의 부모와 부모 각각의 부모라는 식으로 고조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이다.



열성팔고조도 | 가로34 세로48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특징 및 의의 팔고조도는 직계선조의 단일 계보를 기록한 '가첩'의 말미에서 발견된다. 족보와 같이 선조에서 후손으로 내려가는 계보에서는 찾을 수 없고 부모가 있기까지 선조들의 혼인관계를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러한 정보의 연원은 호적의 사조 기록에 있다. 팔고조는 부계 친가를 중심으로 가까운 선조들의 역대 혼인관계로 맺어진 8개 가문이 연대함을 나타낸다. 고조를 기준으로 한 것은 소위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의 친족 범위를 현실적인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조선사회사연구(송준호, 일조각, 1987), 한국의 성씨와 족보(이수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족보(정승모,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손병규(孫炳圭)

한부모가족

정의 혼외 출산이나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해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 편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내용 성장기에 친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결혼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혼외의 성과 출산이 빈번하다 보니 핵가족의 구성과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 중 미성년 자녀와 홀어머니 혹은 홀아버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

한부모가족이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는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시기에 한 편 배우자가 죽어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자녀를 기르며 살아가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함으로써 양육친養育親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 비양육친非養育親은 따로 살지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다. 세 번째는 혼외 임신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출산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비혼모非婚母가족과 친모가 출생아를 친부에게 남겨두고 떠남으로 인해 친부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비혼부非婚父가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혼의 여성이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 및 출산과 양육을 단독으로 행하는 경우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아의 출생신고는 생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모母가 하되 출생증명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생물학적 부父가 출생아를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한 부와 관련된 정보는 기록되지 않는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생물학적 부가 자발적으로든 인지청구소송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든 자신이 출생아의 친부임을 인지할 경우 양친養親은 출생아의 양육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므로 출생아를 양육하지 않는 친부는 면접교섭권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다.

한편 남자는 직접 임신과 출산을 행할 수 없다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년 전까지만 해도 비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15년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새로이 신설된 제57조 2항은 '모의 이름과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알 수 없어서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나 증명서 혹은 장부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즉 비혼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비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모의 인적 사항을 알거나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모의 행방을 찾아서 출생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친모의 성명과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더불어 비혼부 자신과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역할은 양육친에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비혼의 임신과 출산이면서 생물학적 부—자녀 관계가 인지되지 못한 경우에는 모—자녀 관계만 존재하기 때문에 부성 역할이 부재한 것이지만 양육기의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비양육친의 경제적 부양의무 및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양육 의무가 양육친에게 과다하게 지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부와 모 중 어느 한 편이 혼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과 경제적 부양을 충분히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자녀 돌봄을 위해 외부 노동력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계층을 제외한 다수의 한부모가족에서 미성년 자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평등한 성장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부모가족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들 가족을 위한 사회적·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로 양친 가족이 받는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비정상가족으로 치부되는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지원방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더불어 한부모가족의 가족 구성원이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과 홍보를 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부와 모는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에 입각한다. 이에 따라 비양육친은 양육친과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인 양육친에게 지급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비양육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어 기준 중위소득이 125% 미만인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및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한부모가족은 '편偏부모가족'이라는 명칭이 지닌 '치우치고 부족하다'는 부정적 편견을 걷어내기 위해 도입된 명칭이다. 즉 한부모란 1명의 부모이고 양부모는 2명의 부모라는 식으로 중립적 개념인 숫자를 도입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 중 하나로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가족 안의 사회 사회 안의 가족(이여봉, 양서원, 2017),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이여봉(李麗峰)

할머니

정의 아버지의 어머니를 일컫는 호칭.

내용 가족관계에서 '할머니'는 아버지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된다. 보통 손자녀가 이 호칭을 사용하지만 할머니의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직접 부르거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지칭할 때 '할멈'이라는 약칭을 쓰기도 한다. 친척 가운데 손윗사람(시숙, 손윗시누이 등)이 친근감을 담아 손자녀 이름을 붙여 '아무개 할머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등 당사자의 손아랫사람은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타인의 할머니는 왕대부인, 조모 등으로 칭하는데 돌아가셨을 경우 선先을 접두어로 붙여 '선조모先祖母' 등으로 사용한다.



할머니 | 너비6 길이11 | 국립민속박물관

또한 가족관계에서의 호칭을 차용하여 노년 여성을 지칭하는 호칭이나 범칭으로도 종종 사용된다. 장년 여성을 '아줌마'로 칭하듯 노년 여성에게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아줌마'와 '할머니'의 경계는 다소 모호하다. 과거에는 회갑(60세)이나 경로우대(65세) 여부를 통념으로 삼았으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 나이가 더 이상 '노인' 기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노년 여성의 호칭으로 사용되는 빈도 역시 줄고 있다.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가족원 모두로부터 공경을 받는 지위이다. 주부의 역할을 며느리에게 물려주었더라도 가장의 배우자 혹은 어머니이므로 그 권위는 무시할 수 없다. 가사에 바쁜 며느리를 대신하여 손자녀의 양육을 돕기도 한다. 자녀를 많이 낳아 길렀던 전통적 가족에서는 어머니가 모든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때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젖을 뗀 손자녀를 할머니가 돌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손자녀에 대한 양육은 유아기라면 배변훈련과 같은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의복 착용이나 숟가락질·젓가락질 등 식사법, 대화를 통한 언어훈련도 포괄하였

다. 즉 할머니가 일종의 유아교육을 보조 내지 전담한 셈이다. 그리고 6~7세가량이 되면 손자는 사랑채로 옮겨 할아버지에게서 교육받으며, 손녀는 그대로 안채에서 생활하면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훈육된다.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인 만큼 성취가 더디면 질책하기 쉽다.

반면 조부모는 직접적인 훈육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데다 자녀 양육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손자녀를 가르칠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할머니는 글공부와 같은 학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보다 덜 엄격하다. 따라서 손자녀는 할머니와 정서적 유대관계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조—손 간에 이루어지는 양육·교육을 격대隔代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른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기인하는 특성이자 조부모의 경험에서 나온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자녀 훈육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전근대에서는 며느리가 먼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주부권主婦權을 대행하면서 손자녀의 훈육을 맡는다. 만일 가계家系를 계승할 아들과 손자가 없는 상태라면 양자 입양 여부나 양자를 직접 선택할 권한도 부여되었다. 조선시대 사료에서는 헌종憲宗 사후 그의 할머니인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가 철종哲宗을 후계로 지명하는 과정을 예로 들 수 있다.

근대 이후에도 제사상속 및 호주상속을 기반으로 한 부계父系 계승의 가족제도가 유지되었으므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 관념이 부자관계에서 부부 중심으로 변화된 현재까지도 할머니들은 대체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다. 이는 자신들이 결혼할 때 가계 계승을 위한 후계자, 즉 아들을 낳는 것이 책임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변화된 가족 관념 아래에서 성장한 오늘날의 며느리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손자와 손녀를 차별하는 등의 행위로 표출되기도 한다.

현재의 가족관습은 3대가 동거하는 형태로부터 부부가족이 일반화되었고, 할머니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므로 할머니와 손자녀의 정서적 유대관계도 많이 약화되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손자녀 양육을 보조하는 할머니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노후를 위해 손자녀의 양육을 도와달라는 며느리의 부탁을 마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일 3대가 동거하는 과거의 주거형태가 유지되었다면 양육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 도움을 둘러싼 사회현상 역시 도시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야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주로 반영되며, 할머니와 손자녀는 정서적 유대가 권력관계에 우선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근현대의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권력관계와 정서관계 모두 이전보다 약화되었다. 손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대응 양상 역시 주거생활 형태가 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조손관계의 전통과 격대교육(김미영, 실천민속학연구16, 실천민속학회, 2010), 한국 가족과 친족의 인류학(정향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한국가족연구(최재석, 민중서관, 1966), 한국인의 친족호칭과 친족조직(최재석, 아세아연구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필자 이대화(李大和)

할아버지

정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일컫는 호칭.

내용 '할아버지'는 가족 간에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으로, 주로 손자녀들이 사용한다. '할아버님'은 경칭으로, 손자녀 및 제3자들이 사용한다. '할애비'는 할아버지가 손자녀들에게 자신을 지칭할 때 애칭 내지 약칭으로 자주 사용한다. 과거 하인을 두던 집에서 주인집 가족들이 나이 든 하인을 부를 때 '할아범'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법적이나 제3자의 지칭으로는 주로 '조부'를 사용하며, 왕부장王府丈과 왕대인王大人은 타인의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경칭으로 사용하였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지칭할 때는 선先 자를 접두어로 붙여 사용한다.

부계출계집단이며, 은거隱居와 같이 생전에 가부장권家父長權을 물려 주는 관행이 없었던 한국의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할아버지는 가부장으로서 가족의 권력구



할아버지 | 너비7 길이10 | 국립민속박물관

조에서 정점에 위치하였다. 할아버지가 생존한 경우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복종하면서 가부장 역할을 보조하거나 가부장의 추정상속인으로서 후계수업을 받는 셈이었다. 아버지가 장남이 아니라면 결혼 후 분가하여 자기 가족의 가부장이 되지만 할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다면 중요한 결정은 할아버지의 의견에 따라야 하였다. 물론 이는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생전에 실질적으로 가부장권을 물려주는 것 역시 할아버지 본인의 의지에 좌우되었다. 만약 증조부까지 생존해 있다면 당연히 증조부가 가부장이 되지만 평균수명이 길지 않았던 전근대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부장 지위를 맡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할아버지는 가부장권 행사 외에 손자 훈육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손자가 6, 7세 정도가 되어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기본적인 몸가짐을 습득하고 나면 할아버지가 기거하는 사랑채로 옮겨 숙식을 같이하면서 기초적인 교육과 예의범절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정식으로 서당에 다니거나 스승의 문하로 들어가기 전에 기초를 배우는 것이었다. 또한 사랑채에 드나드는 손님들과 일가친척들의 몸가짐을 관찰하며, 후일 가부장이 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보고 배우라는 뜻도 담겨 있었다.

이러한 기초 교육을 할아버지가 맡는 것은 즉각적인 성과를 바라며 질책하기 쉬운 아버지 대신 너그러운 태도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녀를 여럿 양육한 경험이 풍부한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절제된 감정을 갖고 손자를 가르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을 여러 대에 걸쳐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초 교육을 할아버지가 맡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며 기초적인 교육을 하는 행위를 격대교육隔代教育이라고 일컫는다.

근대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은 한동안 유지되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가족관습이 부부 중심으로 바뀌며 변화가 초래되었다. 교육은 가족을 떠나 공적인 학교 교육의 비중이 커졌다. 가부장 역할이었던 훈육은 가사 운영을 전담하는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갔다.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보다 엄격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하였으며, 접촉빈도도 동거하던 시절보다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권력구조와 정서구조가 공존했던 할아버지와 손자녀 관계에서 정서구조가 약화되고 권력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면서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의탁依託하는 가정이 증가하였지만 이 세대의 할아버지들 가운데에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은퇴하여 자녀 양육의 경험이 할머니보다 일천日淺한 경우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현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양육은 여성의 역할로 간주하여 관심을 덜 기울이는 할아버지도 적지 않다.

특징 및 의의 할아버지는 가부장으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가진 존재로, 가족을 대표한다. 이러한 가부장의 지위는 종신토록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경제활동이 가부장으로서의 주요 요인이 된 현대 이후에는 경제활



할아버지 | 너비8 길이11 | 국립민속박물관

동에서 은퇴하면 가부장으로서의 지위는 축소되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할아버지가 손자녀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면서 가족 내에서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모색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서적 측면이 강화되는 변화가 일고 있다.

참고문헌 조손관계의 전통과 격대교육(김미영, 실천민속학연구16, 실천민속학회, 2010), 한국가족연구(최재석, 민중서관, 1966), 한국인의 친족호칭과 친족조직(최재석, 아세아연구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필자 이대화(李大和)

항렬
行列

정의 친족집단 내 선조로부터의 종적 세대 질서.

내용 항렬行列은 선조로부터 후손으로 이어지는 종적 세대世代 질서를 말한다. 부자 사이의 종적 관계를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의 집단적인 존비尊卑 관계로 서열화한 것이다. 부계 직계의 서열을 방계 자손을 포함하는 부계친족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동일 세대 자손들의 집단화가 요구된다. 동일 세대 자손들 내에서의 횡적 질서는 출생 순위, 즉 나이의 다소로 서열화하였다. 이러한 부계친족의 종적·횡적 질서에는 나이가 많으나 세대가 낮다고 하는, 세대의 존비와 연령의 다소 사이에 부정합不整合이 내재한다.

종족집단의 종법질서宗法秩序는 이러한 부계친족의 종적·횡적 질서를 체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일 세대 자손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자를 적장자로 삼아 선조 제사와 자손 집단의 운영을 맡기는 원리가 그것이다. 천자天子나 제후諸侯, 고관의 위상은 형제 가운데 장자가 계승하여 대대로 '대종大宗'의 권위를 유지한다. 차자次子들로부터 발생하는 가계家系는 대체로 고조高祖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 범위에서 '소종小宗'으로 집단화한다. 어느 범위의 친족집단이든 장자가 우선되는 질서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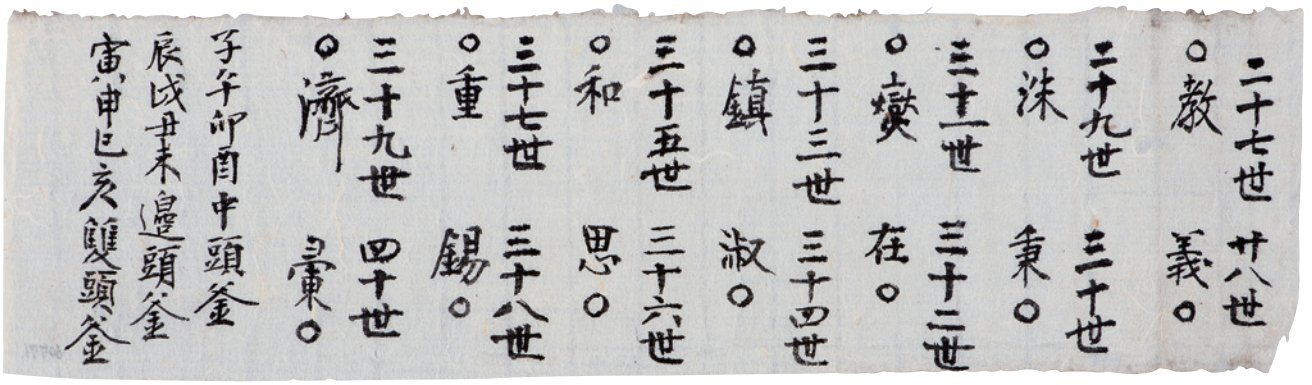
가문이나 친족집단의 결속을 계기로 동일한 세대의 자손에게 공유되는 이름자 하나를 항렬자 혹은 돌림자라 한다. 이름이 외자인 경우에는 한자의 부수를 동일하게 한다. 항렬자는 친족집단에서 여러 세대의 글자를 세대당 두 개씩 선정하여 족보에 표명한다. 이름이 두 자인 경우 항렬자는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소목昭穆 순서와 같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앞뒤로 위치를 바꾼다.

항렬자는 부수가 오행五行의 금金—수水—목木—화火—토土라는 상생相生 순서로 한자漢字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름이 외자인 경우에도 세대 순서대로 한자의 부수를 오행에 맞추었다. 이 외에도 일一—이二—삼三—사四—오五와 같이 숫자를 항렬자의 순서로 삼거나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申—임壬—계癸라는 10개의 천간天干을 항렬자의 순서로 삼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항렬자의 사용은 친족집단의 형성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문중門中이라는 친족집단은 18세기 이후에 발생하는데 집단의 질서를 중국 전통의 '종법질서'에서 찾았다. 선조제사의 범위는 소종의 법에 따라 고조에 이르는 '사대봉사四代奉祀'로 한정되었다. 본래 대종의 종가宗家는 국가에서 '불천위不遷位'를 인정한 저명한 인물에 한해, 즉 5대를 넘어도 신위를 옮겨 묻지 않고 대대로 제사를 지내도록 한 집이다.

친족집단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민간에서는 사적으로 종가를 주장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대종의 친족집단화가 유행함에 따라 항렬자 사용 범위도 넓어져 갔다. 그러나 항렬자 사용 범위 확대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좁은 친족 범위에서 항렬자를 달리 사용하는 현상도 지속되었다. 20세기 이후 문중이 전국에서 유일한 '종친宗親' 모임으로 극대화하여 친족집단이 관념화되면서 항렬자를 고집하는 현상도 약화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친족집단 형성이 중국 고대의 종법질서로 정당화되는 반면 한국 사회에서 그것과 괴리되는 현실이 존재하였다. 확대된 친족집단으로의 문중은 중국 종족집단과 달리 종가의 '종손宗孫'과 높은 항렬의 연장자에서 선출되는 '문장門長'에 의해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 종손의 대종은 관념화된 명분에 그치는 한편 세력 있는 지파의 소종이 문중 운영을 주도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자신의 적자로 가계를 계승할 확률이 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손 계승은 거듭되는 입



항렬표 | 가로31 세로9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후立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약화하는 대종의 명분을 혈연관계를 지속시키는 지차之次의 가계들이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18세기 양자율養子率이 점차 높아졌다. 친족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계 계승이 요구되는데, 가계의 단절을 막기 위한 계자系子 입후는 부계친족 가운데 동일 항렬에서 취해져야 하였다. 계자는 계부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단독으로 계승함으로써 계부가 친족집단에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지속하는 한편 생가生家 형제들의 상속분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친족집단의 연대 강화를 위해서나 개별 가족의 생계 증진을 위해서도 유효한 방법이었다. 계자의 친족 범위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 하나는 가까운 친족 내에서 계자를 찾는 비율이 증대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가까운 친족 내에서 사회경제적 유산을 분배하기 원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계자율系子率이 높아지면서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더 이상 계자를 얻을 수 없게 된 이유도 있어 먼 친척으로부터 계자를 입후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친족집단 구성원 간 연대가 확대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계자를 주고받는 두 가족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뿐 친족집단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부계친족집단의 항렬 질서는 혼인관계의 현실로부터 부정되고 있었다. 높은 신분일수록 통혼권通婚圈 내의 혼반婚班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었다. 좁은 범위에서 혼사가 거듭되면서 부계친족집단의 항렬과 처가의 항렬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였다. 부계친족집단의 항렬 질서를 흩뜨리지 않기 위해 여성 배우자들은 시가에서는 남편 쪽의 친족관계를 따르고, 친정에서는 친가의 친족관계를 따르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항렬은 친족의 종적 존비 관계를 기준으로 횡적 집단화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항렬자는 친족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동일 세대의 집단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족 범위는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의 소종에 한정되었다. 동족집단으로 형성된 문중 확대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관념화해 갔다.

참고문헌 조선가족제도연구(김두헌, 을유문화사, 1949),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한국의 성씨와 족보(이수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의 족보(정승모,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손병규(孫炳圭)

해동속소학
海東續小學

정의 조선 후기 학자 박재형이 선인들의 도덕적 생활과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저술한 아동 윤리서.

내용 『해동속소학海東續小學』은 경상북도 청도군 중동면 신지리(현재 금천면 신지리)에 거주하던 진계進溪 박재형朴在馨(1838~1900)이 1884년에 저술한 윤리서로,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은 아

동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선인들의 도덕적 생활과 윤리적 규범,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태도 등을 배우고 이해하여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체로 꾸며져 있다. 해동속소학판목은 소학도小學圖 1매, 서序 3매, 목차目次 5매, 본문(권1~6) 118매, 허전許傳의 발跋 1매로 총 128매이다. 편간된 『해동속소학』은 내內·외外편으로 되어 있다. 내편은 「입교立敎」「명륜明倫」「경신敬身」의 편목으로, 외편은 「계고稽古」「가언嘉言」「선행善行」의 편목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입교」는 도덕적 규범의 현실 적용과 관련된 편목으로서 입지立志·독지篤志·근학勤學하고 의식주 생활에서 검약儉約·절조節操하는 행동과 법도에 맞는 상례·세시의례, 경經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잠저潛邸하면서 진지眞知를 참구參究하는 면학 태도, 효·제·충·신을 실천한 선인들의 전범典範과 경계해야 할 일탈적 행동을 제시한다.

「명륜」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밝히기 위해 마련된 편목이다. 명륜편에서는 임금에 대한 신하의 직분과 충절, 부모 경친敬親과 봉양, 형제간의 우애, 친척 간의 화목 등의 덕목을 실천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군신관계와 부자관계, 조상과 후손관계, 친인척 관계, 형제와 자매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드러내 보인다.

「경신」에서는 수신하는 개인과 대인관계, 세상사와의 관계에서 개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개인은 장중·정숙하게 몸을 거두어야 하고, 진지眞知를 체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극기克己·존양存養하며, 타인의 장단점에 대해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옷을 입거나 음식을 먹을 때의 법도 등도 다루고 있다.

「계고」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왕과 신하·태자·장군·명현·악성·선비·서민의 덕행, 의리, 충효, 절개, 고절한 도리, 조행操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할 행동으로 뇌물수수, 불망교유不忘交遊, 여인에 대한 곁눈질, 원망, 혁명, 항거, 살인, 사친사군의 도리 망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언」은 널리 도리를 세운다는 광입교廣立敎, 널리 인륜을 밝힌다는 광명륜廣明倫, 널리 몸가짐을 삼간다는 광경신光敬身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편목의 광입교편에서는 겸손·위학·안분安分을, 광명륜편에서는 상·제례법과 부부간 및 적서嫡庶 간 도리를, 광경신편에서는 지조·궁리·위선·불망어不妄語·덕행과 재물·여색에 대한 경계 등을 들고 있다.

「선행」은 실제로 가르치는 도리로서 실입교實立敎, 인륜을 밝힌 실명륜實名倫, 몸가짐을 삼가는 실경신實敬身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의 실입교 부분에서는 주로 집·사당·마을·지역 등에서 행해야 할 예절과 윤리, 청렴淸廉·검약하는 태도 등에 대한 언설言說이 많다. 선행의 실명륜 부분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 임금에 대해 위국爲國하는 신하의 도리와 예절이 나타나 있다. 다른 편목에서보다 군신관계 사례가 많으며,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선인들의 착한 행실에 대한 언설로 엮어져 있다.



해동속소학 | 가로20 세로29 | 국립중앙박물관

특징 및 의의 박재형은 중국의 『소학小學』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걸맞은 소학 발간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한국의 윤리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선인들의 삼강오륜과 정직·용기·겸손·검박·절약·화목·청결 등의 덕목 사례를 모아 『해동속소학』을 발간하였다. 그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 중심에서 해석하던 학자들의 태도와 다르게 기존의 중국 『소학』이 구한말 사회·문화적 변동과 정치적 질서에 대한 대안적 수신서로 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의 실천윤리를 반영한 『해동속소학』을 편간하였다. 그가 이름한 '해동속소학'이란 서제書題가 이를 반영한다.

한국인의 우주관·인간관에 기반을 둔 실천적 윤리

에는 한문의 문자적 전통을 중시한 식자층과 구비전승의 주체인 서민들 사이에 서로 긴장과 대립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교류한다는 점에서 수용적 개방성이 존재한다. 『해동속소학』에서는 왕과 경대부, 민民이 공유한 인륜과 규범이 정치적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도덕적 공동체를 이루는 데 중요한 기제機制로 작동함을 보여 준다. 이 수신서修身書는 집, 마을, 지역, 국가, 왕실, 전장, 묘소, 산, 강, 도로, 적소, 주막, 여막旅幕, 외국 등과 같은 다양한 공간의 사회적 윤리 규범과 그 실천 방식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海東續小學, 박재형의 해동속소학 편찬과 의의(박홍갑, 청도 밀양 박씨 소고공파와 박시묵·박재형, 경인문화사, 2019), 전통과 사회적 실천윤리(박성용, 민족문화논총8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필자 박성용(朴晟慵)

해외입양
海外入養

정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와 법적인 친자관계를 맺는 것.

내용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海外入養이 시작된 것은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과 관련이 깊다. 전쟁으로 인해 고아·기아가 생기면서 국가에서는 요보호아동이 증가하였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은 역부족이었던 탓에 해외입양이 시작되었다. 1954년 국외입양전담기관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이 발효되면서 해외입양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1964년에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해외입양을 장려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해외입양을 지원하는 법이 세워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에 대한 태도를 짐작하게 한다.

1970~198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국민소득이 증가함은 물론 생활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해외입양은 줄지 않아 국제적으로 해외입양 최다국 중 하나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입양이 어렵고, 해외입양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때 무분별한 해외입양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입양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생겨났다. 1955년에 설립된 아동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인 홀트아동복지회가 대표적인 기관으로 꼽힌다.

해외입양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그에 대한 진단이 시작되었다. 해외입양의 시기 구분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세대 입양은 1950~1960년대 전쟁기의 기아와 고아를 대상으로 한 입양, 2세대 입양은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의 경제적인 이유와 혼외출산으로 인한 입양, 3세대 입양은 미혼부·모에 의한 해외입양으로 구분한다.

2013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외입양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6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보내졌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20만 명의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외국 관계기관의 주장도 있었다. 다만 부실한 관리와 기록으로 입양의 상세한 내력을 기술하는 것은 아직도 한계가 있다. 현재에도 해외입양 관련 연구는 진행 중이기에 추후 보다 정확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금지된 것은 2016년의 일이다. 전쟁기를 벗어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음에도 해외입양이 줄어들지 않았음은 물론 해외입양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많았기에 국가에서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혼모의 아기를 대상으로 한 입양이 증가하였다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해당 문제는 국내외에서 비판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해외입양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감독 문제가 제기되었다.

성인이 되어 귀국한 해외입양인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정책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외입양의 사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9년 중앙입양정보원을 건립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중앙입양정보원은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으로 개편된 후 〈입양특례법〉 개정에 착수하여 입양숙려제, 입양허가제, 입양정보공개

제도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국내외 입양현황통계에 따르면 2007년 국내입양이 처음으로 해외입양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통계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해외입양이 줄어든 것은 2007년부터 해마다 해외입양 수를 전년도의 90%로 제한하는 해외입양 쿼터quota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해외입양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입양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매년 1,000명을 넘던 숫자가 2011년부터 1,000명 아래로 감소하게 되었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국내외 입양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입양아 704명 중 317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헤이그 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협약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헤이그 협약〉에는 서명하였으나 비준하기 전에 추가적인 이행입법 마련과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1989년에 만들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입양 관련 조문에 따르면 "아동이 입양될 때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구호에 따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 해당 조문 입장이 자칫 입양을 쉽게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혼모가 정상적으로 아기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을 입양 보내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미혼모 입장에서 결정된 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아동 입장에서 입양이 최선은 아니라는 뜻이다. 아동이 국제적인 이동을 할 경우 아무리 어리다 해도 입양아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입양아들은 언어에서부터 사소한 일상생활 관습에 이르기까지 익숙해지는 데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다. 양부모가 잘 이끌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양부모가 잘 양육해 준다 해도 이웃이나 지역사회가 이들을 차별하여 상처받기도 한다. 또 자라면서 자기 외모가 부모 및 주변 사람들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6·25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해외입양아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입양을 터부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순혈주의를 내세우는 가족제도에 기인해 혈육이 아닌 양자의 입양을 꺼리는 문화 또는 관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자녀 양육 환경의 어려움 등이 더해져 우리나라는 해외입양 최다국 중 하나가 되었다.

대중매체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입양 성공 사례가 알려지기도 하고, 반대로 실패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성공 사례는 입양한 자녀를 잘 교육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길러낸 서양 양부모의 인도주의를 칭찬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비혈연 입양자를 꺼리는 풍조를 비판하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대중매체에서는 유명 인사로 성장한 입양인을 소개하면서 한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좁은 민족주의적 식견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해외입양인들 가운데에는 양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우도 적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 이들은 입양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국인 한국에서도 합당한 조치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 입양아들은 평생을 인권 사각지대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패 사례의 당사자인 입양인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국외로 입양을 권하던 국가가 해외입양에 대한 현황과 사후관리를 하는 데는 소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성인이 되어서 귀국한 입양인들로부터 시작된 문제 제기와 논란에 뒤늦게나마 국가가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일부 아동복지 단체를 대상으로 해외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입양인

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한국의 해외입양은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문화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외입양인 실태조사(김미숙 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해외입양인(김재민, 민주주의와 인권13-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애도할 권리(민은경, 여성문학연구53,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아기 살 돈으로 친엄마를 지원하라(한겨레21, 2009.5.13.), 똑똑한 한국 아이 2169만원이오(한겨레21, 2009.5.14.),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필자 함한희(咸翰姬)

핵가족
核家族

정의 가족의 세대 구성에 주목한 개념으로,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족.

개관 영어의 nuclear family를 번역한 핵가족核家族은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이 바로 부부와 그들의 자녀임을 함의하고 있다. 흔히 핵가족과 소가족을 동일시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소가족·대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숫자와 관련된 용어이고, 핵가족·확대가족擴大家族은 가족의 세대 구성과 관련된 용어이다. 2세대로 구성된 핵가족도 자녀 수가 많으면 대가족이 되고,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확대가족도 가족 구성원 수가 적으면 소가족이 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의 핵가족 범주에는 부부가족, 부부와 미혼자녀 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협의의 핵가족 비율은 1980년 56.5%에서 2000년 57.8%로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는 43.3%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부부가족은 1980년 6.4%, 2000년 14.8%, 2021년 26.6%로 1980년 이후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핵가족 형태 중 부부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자발적 무자녀 가족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과 중장년 세대 중심으로 성인 미혼 자녀의 독립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 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1980년 10%에서 2000년 9.4%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21년 14.6%로 증가세를 보였다.

내용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 형태는 규모 축소 및 세대별 구성의 단순화, 가족 유형의 다양화, 가족 주기의 변화로 인한 전업주부의 기회비용 증가, 빈 둥지 가족 시기의 출현, 가족의 정서적 유대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들로 비춰볼 때 핵가족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20세기 중반 이후 중산층 확대와 함께 근대 핵가족의 이상理想이 급격하고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갔다. 근대 핵가족의 이상 속에는 가족을 정상 대 비정상으로 이분화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가족과 일터의 분리에 따라 남성에게는 생계 부양자와 가장 역할을 할당하고 여성에게는 전업주부 및 돌봄 역할을 할당한 성역할 이데올로기, 가정중심성domesticity의 강조, 낭만적 사랑의 신성화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평균 초혼 나이의 상승, 결혼율 감소 및 이혼율 증가 등 인구 동태 변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가족의 정의와 성격에 대한 기존의 통념이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핵가족의 특징을 둘러싼 대표적 논쟁으로는 '핵가족 보편설'과 핵가족 및 산업화 간의 '선택적 친화성'을 들 수 있다.

서구의 가족학자들은 산업화 이전에도 핵가족이 지배적 형태였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전통사회=확대가족'의 등식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호적을 통해 가구와 가족 형태를 분석한 결과 조선시대에 이미 소규모 가족과 2세대 가족이 지배적이었음을 들어 산업화가 핵가족화를 추동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피지배계층은 핵가족일 수밖에 없었다는 '핵가족 보편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가족 원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효孝와 집의 원리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직계가족 원리 특성상 핵가족은 직계확대가족의 과도기

적 단계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분포상 다수를 점한다는 이유로 조선시대 핵가족설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 시기 한성부 호적을 토대로 당시 서울 지역의 가족구조를 분석한 결과 가족 유형별로는 핵가족 빈도가 가장 높지만 개인별로는 다수가 확대가족에 속한다는 사실, 노인층 대다수가 확대가족에 속한다는 사실 등이 밝혀져 가족의 조직원리가 핵가족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동시에 동거 친족 구성원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비혈연 가구원을 상당수 포함하는 실례를 들어 구한말 핵가족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부부 중심 핵가족과 산업화 사이에는 '선택적 친화성'이 존재한다는 윌리엄 구드William Josiah Goode의 논의는 한국 가족사회학계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부부 중심 핵가족conjugal family의 이념형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족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친족집단에 대한 강제 의무가 없다. 둘째, 결혼하는 부부는 부계나 모계를 떠나 새로운 거주지에서 독자적 생활공동체를 구성한다. 셋째, 배우자 선택은 부모의 권위나 신분 체계, 종교 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적 자립이 요구되기에 결혼연령은 자연히 높아진다. 넷째, 부부 중심 핵가족은 양계제兩系制 특성을 갖는다. 다섯째, 가족의 중심축이 부모—자녀로부터 부부관계로 이동함에 따라 부부간의 매력과 정서적 친밀성이 중시되며, 가족의 정서적 유대 기능이 강화된다. 그 대신 부부 중심 핵가족은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에서 나타나듯 안정성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구드의 관심은 부부 중심 핵가족이 특별히 산업사회의 경제적 요구와 친화성을 갖게 되는 구조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산업화를 가족 변화를 촉발한 요인으로 보는 구드는 시장경제가 팽창함에 따라 친족의 전통적 유대로부터 자유로운 부부 중심 핵가족을 선호하는 이데올로기가 확산하여 가족제도는 부부 중심 가족으로 '수렴'되어 간다고 보았다.

구드의 선택적 친화성 논의는 한국의 산업화가 불러온 가족 변화를 논의하는 데 공리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산업화가 3세대 확대가족을 파괴하였으며, 이농 영향으로 가족과 친족집단이 쇠락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과도한 노동 부담으로 인해 가족생활이 희생되고 있다는 논의는 가족사가들에 의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로 가족은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적응을 도와주는 촉진제facilitator 역할을 담당하였음에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함으로써 구드의 논의는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적 특성'이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전략과 친화성을 가지며 전개되었음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전통적 공동체가 분해되고 사회구조적 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안과 충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만한 문화적 자원이 없었다. 이 상황에서 강렬한 가족적 유대 및 결속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적 집합성 및 친밀성이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되어 재활성화·재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의 기업경영 전략 가운데 가족공동체 이미지를 연상시킴으로써 노사관계의 융합과 일체를 강조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기업주는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입각한 가장으로서 주목받고, 조직 운영도 서구식 합리주의 및 개인주의에 입각한 직무 중심 대신 전통적 가족주의에 입각한 유사 공동체로서의 직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징 및 의의 한국에서는 급격하고도 농축된 사회변화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개인적 불안이 확산됨으로써 집단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의 가족주의가 확대되었다고 여겨진다. 생존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는 소시민적 가족지상주의 혹은 단선적 출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가족주의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공리적 가족주의'의 주인공으로 여성이 부상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부부 중심 핵가족화가 확립된 서구의 경우 중산층 주부 중심의 해방운동으로 가족중심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이 폭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주부 자신들이 가족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에 활발히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음이 흥미롭다.

확실히 한국의 도시 중산층 문화는 서구식 '사적

영역'으로의 핵가족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여가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특징을 보임은 물론 가족이 사회와 경쟁적이며 대립적으로 분리된 관계에 놓여 있지도 않다. 오히려 '집안'이 잘되는 것과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이 성공하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기에 사회적 경쟁이 치열할수록 '집안'의 도구적 중요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에서의 산업화 과정이 서구식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 확산을 촉발하였는지, 가족 공리주의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는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참고문헌 일제하 향촌 반가의 가족생활의 변화(조은, 여성·가족·사회1,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1), 한국가족(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한국가족연구(최재석, 일지사, 1982), 한국도시가족연구(한남제, 일지사, 1984),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장현섭, 사회와 역사39, 한국사회사학회, 1993), 한국사회의 변동과 가족주의(박영신, 역사와 사회변동, 대영사, 1987).

필자 함인희(咸仁姬)

행실도
行實圖

정의 본받을 만한 충신, 효자, 열녀의 대표적 사례를 그린 그림과 이야기를 수록한 책.

역사 조선시대 성리학의 실천윤리로 삼강오륜三綱五倫이 중시되어 부모를 향한 자식의 효도, 군주에 대한 신하의 충성, 지아비에 대한 지어미의 절개가 강조됨으로써 효자, 충신, 열녀의 대표적인 사례를 그림으로 도해하고 글을 수록한 행실도를 지속적으로 간행하였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1434)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1514)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1518)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5)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1797)가 대표적인 국가 편찬 행실도이다.

1428년 진주 사람 김화金禾의 부친 살해 사건이 발생하자, 세종世宗은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 고금의 효자, 충신, 열녀 중 뛰어나게 본받을 만한 자를 가려서 편집하되 일에 따라 사실을 기록하고, 어리석은 남녀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그림을 곁들인 서적을 편찬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충신, 열녀 각각 110명의 고사와 이를 도해한 도圖, 해당 인물의 이야기인 전傳, 시찬詩贊을 수록한 『삼강행실도』가 간행되었다. 삼강행실도에는 중국인 275명 한국인 55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효자 편은 중국의 효순 사실과 고려의 효행록을 참고했으며, 열녀 편은 중국 한나라 유향의 『열녀전列女傳』과 명나라 『고금열녀전古今列女傳』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영조英祖 때까지 지속적으로 『삼강행실도』를 간행하여 유교 윤리 전파에 힘썼다.


鄭夢周迎日人爲高麗門下侍中初崔瑩勘辛禑興師攻遼我 太祖擧義回軍復立王氏趙浚鄭道傳南誾等知天命人心所在欲推戴 太祖洪武壬申三月 太祖墮馬夢周忌浚道傳誾等同心輔翼令臺諫劾流之遣金龜聯李蕃就貶所將殺之義安大君和與安君李濟等白 太祖曰勢已急矣將若之何 太祖曰死生有命但當順受而已和濟退謂麾下士趙英珪曰 李氏之有功王室人皆知之今爲人所陷後世誰知麾下士其無効力者乎英珪曰敢不從命英珪等要於路擊殺夢周 太祖大怒因病
夢周殞命

몽주운명 | 오륜행실도 중 부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1489년 박숭질朴崇質이 『삼강행실도』가 관아에도 책이 없으니, 민간에 있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산정본刪定本 제작을 건의하자 성종成宗은 이듬해 효자, 충신, 열녀 고사 중 35개씩 골라서 1책의 산정본 『삼강행실도』를 제작하여 반포를 용이하게 했으며, 후에 그림 위쪽에 고사를 한글로 풀어쓴 언해본이 간행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삼강행실도는 1책의 산정언해본이다. 사림파가 본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선 중종中宗 때 중국 사례를 축소하고 새로운 조선의 사례를 수록한 『속삼강행실도』를 간행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혼란해진 사회질서를 성리학적 윤리도덕으로 재건하려는 목적에서 정표를 받은 효자, 충신, 열녀 등을 수록하여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간행했다. '동국'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인물만을 수록했다.

정조正祖 때에는 『이륜행실도』와 『삼강행실도』를 합쳐서 효자 33인, 충신 35인, 열녀 35인 등 총 150인의 사례를 발췌하여 『오륜행실도』(1797)를 편찬하였다. 행실도를 중앙에서 제작하여 지방에 나누어 주면 지방



환영분상 | 오륜행실도 중 부분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에서 이를 번각하여 배포하는 체제였다. 초간 이후 여러 차례 복각을 하여 배포하여 효행 및 열녀 고사가 널리 알려지고 민간에서 행실도의 행적을 따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정도였다.

행실도 행적은 일정한 서술 구조를 지닌다. 행실도 수록 효자 고사를 살펴보면, 효자 행적은 효자의 출신 지역과 가계, 효성스러운 성품 소개를 시작으로 효자가 겪은 사건이 대개 시간적 순서로 전개된다. 효자의 부모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효자는 초월적인 효행으로 이를 해결하여 민관에 알려져 표창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효행은 평상시에 부모를 봉양하는 효행, 천재지변이나 도적을 만났을 때 부모를 구하는 효행, 부모를 간병하는 효행, 부모 사후 효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는 장례와 제례를 중시하며 '여묘살이'하는 사후 효행이 빈도수가 높다. 편찬 시기에 따라 수록된 효행 유형 비중의 차이를 보인다. 사림이 집권하는 중종 대 편찬한 『속삼강행실도』에는 주로 주자가례에 따라 제례를 행한 효행 고사가 두드러지게 많이 수록된 것이 특징이다. 사림파의 주자가례에 의거한 생활규범의 정립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임진왜란 후 민심을 수습하고 유교 이념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를 재정비하려는 시기에 편찬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왜적을 만나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음에 이르는 효자와 부모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거나, 뼈를 갈아 부모에게 봉양하는 단지斷指 효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전쟁 때 극단적인 자기희생을 행한 백성에 대한 포상이라는 제작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내용 행실도 수록 판화는 책 한쪽 면 전체를 차지하며 직사각형의 화면에 한 인물의 행적을 하나의 장면 또는 여러 장면으로 구성하여 보여 준다. 어떠한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전개하는 화면 구성은 이미 종교미술에서 많이 사용된 방식이다. 시간과 장소가 다른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배치하는 방식이 행실도마다 차이를 보인다. 『삼강행실도』 화면은 1~6개의 장면으로 구획된 것이 많고, 전란 후 수록 인물 수량이 많았던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한 장면으로 그린 것이 증가했으며 2~3개의 장면이 주를 이룬다. 여러 장면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이유는 해당 인물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달하려는 설명적인 기능이 높은 행실도의 성격을 반영한다.

한 인물의 여러 행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 구름, 가옥, 물을 그려 장면을 구분하거나, 동일한 장면에 별도의 구획물 없이 주인공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삼강행실도』의 〈왕상부빙王祥剖氷〉은 왕상이 계모에게도 효행을 다하는 고사를 그린 것인데, 화면 상단에 왕상이 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울면서 하늘에 호소하는 모습과 계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 사이에 어떠한 구획물이 없어서 마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보인

다. 『삼강행실도』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나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많이 나타난다. 〈인수단지麟壽斷指〉처럼 와병 중인 모친을 위해 약을 준비하는 효자 인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는 인수, 모친의 변을 맛보는 인수가 가옥 앞이라는 동일한 공간에 세 차례 등장한다.

그러나 『삼강행실도』나 『속삼강행실도』에서는 장면을 구획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지그재그식의 종적인 전개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삼강행실도』 〈동영대전董永貸錢〉처럼 이야기가 화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전개되는 상향 진행과 〈자로부미子路負米〉처럼 화면 상단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전개되는 하향 진행, 〈왕상부빙〉처럼 화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전개되었다가 다시 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조선 전기의 행실도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짜임새 있는 장면 전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장면을 횡적으로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신라의 효녀 지은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노비가 되었다는 〈지은매신知恩賣身〉고사를 그린 두 그림을 비교하면, 『삼강행실도』가 담장, 언덕을 사선으로 배치하여 공간을 치밀하게 구획하여 다섯 장면으로 표현한 것에 비해 『동국삼강행실도』는 하단에 2장면 상단에 1장면을 배치하고 구름으로 공간을 느슨하게 구획하였다. 행실도에서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지만, 시간적 순서에 상관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진 일은 같은 공간에 표현했다. 『오륜행실도』는 이전 행실도 판화와는 다른 화면 구성을 택했다. 하나의 장면으로 화면 전체를 구성하며 구성 요소 간의 합리적인 원근 표현으로 회화적 완성도를 높였다. 『오륜행실도』 그림 모두 고사의 제목을 가장 잘 보여 주는 한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대체로 『삼강행실도』의 여러 장면 중 한 장면을 선택하고 산수 배경을 첨가하여 구도에 변화를 준 것이다. 그러나 불해가 부친의 시신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그린 〈불해봉시不害捧屍〉처럼 『삼강행실도』에 없는 장면을 새롭게 만들어 수록하기도 했다.

행실도는 국가 편찬 사업이므로 화원 화가가 제작에 참여했다. 『삼강행실도』의 작자에 대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궤』에 "예로부터 전하기를 안견의 필이다."라고 하였고 "속삼강행실도는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삼강행실도』가 제작되고 183년 후 기록이므로 전적으로 믿을 수 없으나, 『삼강행실도』 판화의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산 배치법과 단선점준 등이 안견화풍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안견이 제작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제작에는 화원화가 김수운·김신호·이징·이신흠이 참가했다. 『오륜행실도』는 기록은 없으나 김홍도 화풍이 역력하다. 인물 표현이 다양하고 자세는 자연스러우며 얼굴 표정이 잘 묘사되었다. 필치와 그리는 방식이 모두 정조 대 최고의 화원 화가 김홍도를 연상시킨다. 또한 『오륜행실도』 편찬을 주도한 심상규, 이병모가 김홍도와 친분이 깊었던 상황으로 보아 김홍도가 행실도 그림 제작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아닌 문중에서도 선조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성시중효행록成侍中孝行錄』 『분성김씨세효도盆城金氏世孝道』와 같은 가전家傳 효행록을 제작하였다. 1880년에 제작된 『분성김씨세효도』는 『오륜행실도』의 화풍을 따르고 있으면서 당대 풍속을 반영한 그림으로 의의가 있다.

특징 및 의의 행실도는 왕실이 주도한 민간 교화서로의 윤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으므로, 동일한 소재의 시기에 따른 다양한 표현 양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삼강행실도 판화에 대한 고찰(정병모, 진단학보85, 진단학회, 1998), 삼강행실도류 판화(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삼강행실도에 대하여(김원룡, 삼강행실도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2), 삼강행실도의 열녀도 판화(이필기,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2005), 정리자판 오륜행실도-초간본과 중간본 단원의 삽화(김원룡, 도서1, 현대사, 1960), 조선시대 행실도 판본 및 판화에 관한 연구(송일기·이태호, 서지학연구21, 서지학회, 2001).

필자 이수경(李洙京)

허여문기
許與文記

정의 재주財主가 생전에 자녀를 비롯한 가까운 친족에게 전 재산을 나누어 주며 작성한 문서.

내용 전근대사회에서 재산상속을 위해 작성한 분재기分財記의 일종이다. 분재기는 크게 재주財主가 생전에 작성한 문서와 사후에 작성한 문서로 구분된다. 생전에 작성한 문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모든 상속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는 정식 상속 때 작성하는 문서와 이와는 관계없이 특정 대상자에게만 특정한 이유로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별급 때 작성하는 문서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허여문기許與文記는 재주가 생전에 작성한 문서에 속하고, 또 모든 상속 대상을 상대로 전 재산을 나누어 주는 문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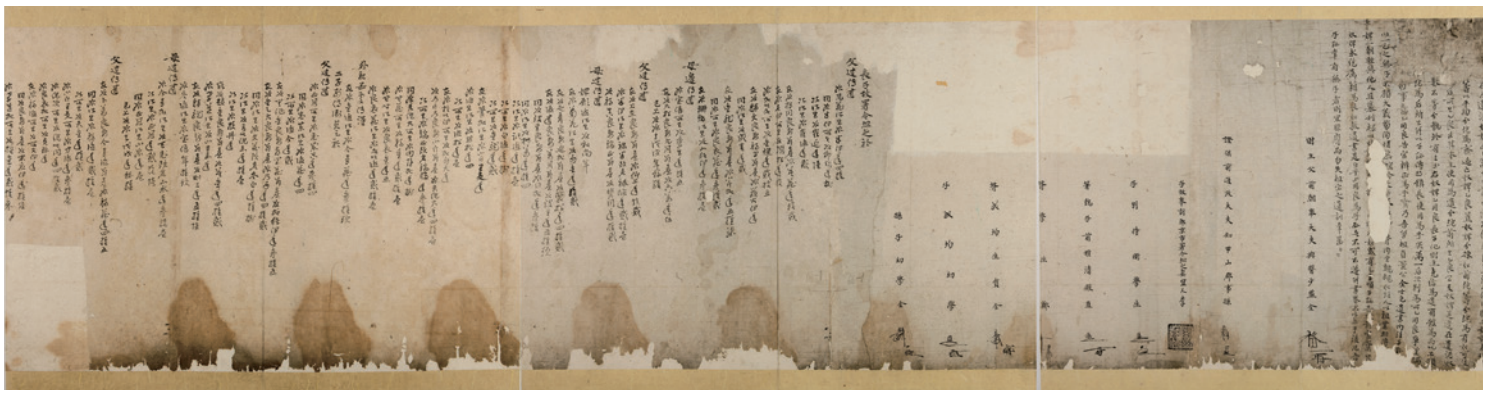
허여許與라는 용어에는 '준다'의 의미와 더불어 받는 사람의 지위가 주는 사람보다 아래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일반적으로 아래라는 말의 뜻은 나이에 의한 상하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분재기에서 가족 간 관계를 나타낼 때는 주로 자기보다 항렬行列이 낮은 친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에 반해 허상許上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친족 내에서 항렬이 높은 경우, 신분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재산을 바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허여는 허상의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계에서 통용되는 허여문기라는 학술용어는 이수건에 의해 처음 정의되었다. 그는 경북지방에 소재한 고문서를 조사·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나 부친 또는 모친이 재주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 전부를 대상으로 분재하여 급여해 준 문기'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조상으로부터 전래한 유산이나 재주 부부의 재산을 일시에 자신의 자녀 모두에게 일정한 수량으로 분급하는 행위를 허여라고 설명한 뒤 이때 작성된 문기를 허여문기라고 지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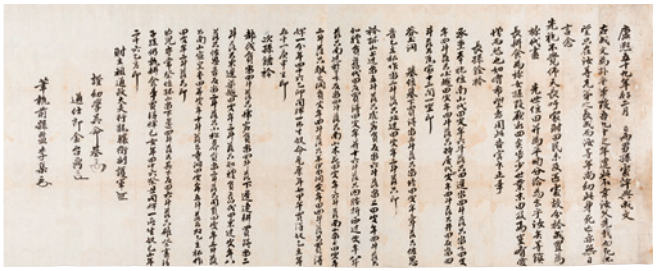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정구복에 의해 비판되었다. 그는 1429년에 작성된 김무金務의 분재기를 분석하여 허여라는 용어에는 '준다'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고, 별급을 위해 작성한 문기에도 허여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의미상으로 볼 때 허여문기보다는 분급문기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며, 이제까지 허여문기로 지칭된 문서를 분급문기分給文記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현재는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허여문기와 분급문기라는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의미로 허급문기許給文記·분깃문기[分衿文記]·분급문기分給文記·깃급문기[衿給文記] 등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허여문기는 사문서私文書에 속하기 때문에 관문서官文書와 달리 특별히 규정된 양식은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허여문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서문序文, 본문本文, 서명署名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서문 부분에는 분재하게 된 배경과 이유, 의도와 목적, 기준을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본문 부분에는 봉사 재산을 비롯하여 상속자별로 물려받게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였다. 서명 부분에는 재주의 성명 또는 친족 내의 지위를 기록하고 서압署押하였는데, 상속 대상자들이 모두 성명을 서압하는 것이 관례였던 화회문기和會文記



김무 분재기(광산김씨 후조당 종택 기탁) | 조선 | 한국국학진흥원
1429년 김무가 자녀와 손자 및 외손에게 노비를 허여하는 문기.



허여문기 | 가로120 세로49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할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여의고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기.

의 작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특징 및 의의 허여문기는 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사족士族 가문의 재산 소유 및 상속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조성되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더욱이 각 시기에 따른 상속 관행을 추적함으로써 변화의 양상 및 친족 관념의 변화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허여문기는 조선시대의 재산상속제 및 가족·친족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경북지방고문서집성(이수건,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김무의 분재기1429에 관한 연구(정구복, 고문서연구1, 한국고문서학회, 1991), 분재기를 통해 본 16세기 상속재산의 전승 양상(고민정, 국학연구39, 한국국학진흥원, 2019), 조선시대 분재문기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문숙자, 영남학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필자 고민정(高旻廷)

현구고례
見舅姑禮

정의 신부가 폐백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부모를 뵙는 예禮.

내용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가서 신랑의 부모, 즉 시부모를 만나서 배례拜禮하고 폐백을 올리는 의례로, 이때에 시가의 친족에 대한 상면相面의 예도 같이 한다. '폐백드린다'는 말은 여기서 기원한다.

그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부는 신랑집 대청에서 시아버지에게 절한다. 수모手母가 대추 폐백의 보자기를 풀어서 신부의 손을 거쳐 시아버지 앞의 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다음 시어머니에게 절하고 시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수모가 신부의 손을 거쳐 시어머니 앞의 상 위에 고기 폐백을 올린다. 이때 신랑은 함께 절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 서 있는다. 절은 신부만 하며, 폐백을 받은 시부모는 신부에게 덕담을 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현금이나 패물 등을 주는 일은 삼간다. 시조부모가 계셔도 먼저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시어머니의 인도를 받아 시조부모의 방으로 가서 시조부모에게 준비한 폐백을 드리고, 같은 방식으로 예를 올린다. 시조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으면 폐백을 두 벌 준비한다. 다른 친족들과는 폐백 없이 상견례만 한다. 상견례를 마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계례笄禮를 행한다. 낭자를 하고 시댁에서 지어준 관례벗김으로 갈아입고 패물을 단 뒤에 큰상을 받는다. 사흘 뒤 신부는 시댁의 조상을 뵙는 사당폐백의 예를 행한다. 시아버지가 없으면 대추 폐백, 시어머니가 없으면 고기(육포나 편포) 폐백을 사당에 올린다. 사당폐백을 올리는 장소에는 타인, 즉 직업적인 수모는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시댁 집안의 여인 중에 신부를 도와 수모의 역할을 하였다.

현구고례見舅姑禮를 마친 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신부에게 단술을 내리는 예부지례醴婦之禮의 예가 행해진다. 그리고 신부가 친정에서 보내온 음식으로 시부모님을 대접하는 관궤지례盥饋之禮의 예가 포함된다. 또한, 『가례작의嘉禮酌儀』와 『광례람廣禮覽』에서는 혼례식이 날이 저문 후에 행해지기 때문에 신붓집에서의 합례合禮가 신랑집에서의 현구고례보다 먼저 행해지지만,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서는 낮에 식이 거행되므로 혼례식이 끝난 후 신랑집으로 가서 현구고례를 행한 뒤에 다시 신붓집으로 되돌아와서 합례를 치르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현구고례를 행할 때 신부는 다홍치마나 분홍치마, 그리고 노란색의 회장저고리 위에 대례복인 활옷이나 원삼 또는 소례복인 당의를 입고 새앙머리(두 개의 쪽머리)를 하고 화관이나 족두리를 썼다. 소례복인 당의를 입었을 때는 여덟 자 길이의 명주 한폭으로 된 한삼으로 손을 가리고 절하고, 대례복인 활옷, 원삼을 입었을 때는 한삼을 따로 쓰지 않았다. 폐백상에는 대추와

표1. 현구고례 순서

	증보사례편람	사례편람	성재집	여유당전서(가례작의)	광례람
1	신부는 시부모를 뵙는다. (婦 見于舅姑)	부 현우구고	신알례	현구고례	신례(현구고례)
2	시부모가 신부에게 대접한다. (舅姑禮之)	구고예지	예부례(며느리에게 인사하는 예)	부 현우제존장	부 현우제존장
3	신부가 여러 어른께 인사한다. (婦 見于諸尊丈)	부 현우제존장	부 현우제존장	예부지례(색시에게 단수를 내리는 예)	해헌례풀보기(신부가 혼인한 후 며칠 뒤에 시부모를 뵈러 가는 예)
4	맏며느리인 경우 시부모께 음식을 대접한다. (饋于舅姑)	궤우구고	궤고례(시부모에게 대접하는 예)	관궤지례(음식을 보내는 예)	
5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음식을 내린다. (舅姑饗之)	예부례	향부례(색시를 대접하는 예)	향부지례(관궤지례의 보답, 색시를 대접하는 예)	
6	삼일째에 주인은 며느리를 사당에 뵙게 한다. (婦 見于祠堂)	부 현우사당		부 현우사당	

표2. 폐백 시 가족의 위치

현토주해사례편람	사례편람	성재집	여유당전서	광례람
시부모는 서로 나란히 앉는다.	시부모는 당상에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父東母西)	시부모는 대청에 동향해서 앉는다.	시부모는 동쪽 두 자리를 마련하여 서향하여 앉으며, 시모는 시부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는다.	대청에 동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시부모가 동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신부는 동쪽 계단 아래로 나아가 서서 북쪽을 향해 시부에게 절한다.	양쪽 계단 사이에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나란히 서서 북쪽을 향해 신랑은 이배, 신부는 사배한 후에 신랑은 물러난다. (『가례』에는 신랑이 절하는 예가 없다.)	서쪽 계단 아래로 내려와 앞마당에 서면 찬자가 번(대추, 밤)을 준다. 신부는 이를 들고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시아버지 앞에 앉아 폐백을 놓고 조금 물러나 사배한다.	신부는 북향하여 서서 사배(四拜)한 후에 대추를 담은 반을 드린다.
친족 남자들은 시아버지의 남쪽으로, 여자들은 시어머니의 남쪽으로 앉는다.				

표3. 시아버지에게 드리는 폐백의 내용

현토주해사례편람	사례편람	성재집	여유당전서	광례람
대추	지(대추, 밤을 번에 담은 것)와 폐(비단)	지례(폐백, 예물)와 폐를 신부가 탁자 위에 놓는다.	대추와 밤을 담은 번을 신부가 직접 드린다.	대추를 담은 번을 수모가 상에 놓는다. (반 위에는 붉은 보가 덮혀 있다.)
며느리에게 던져준다.	어루만지고 시자가 들고 나간다.	시부앞에 사배하면 시자에게 준다.	어루만진다.(기쁨의 표시)	북향해서 사배하고 번을 드리면 시아버지는 이를 어루만진다.
신부 재배	신부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다시 절한다.	신부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사배한다.	숙배 (현재는 사배)	

(* 번: 소쿠리 같은 것 / * 반: 쟁반 같은 것)

표4. 시어머니에게 올리는 폐백의 내용

현토주해사례편람	사례편람	성재집	여유당전서	광례람
포를 수모가 놓는다.	번에 담은 지(단수 육포)와 폐	지(폐백, 어물)와 폐	육포와 단수를 담은 번	포를 담은 번 (반 위에는 붉은 보가 덮혀 있다.)
	시모는 이를 시자에게 준다.	시모 앞에 사배하면 시모는 이를 시자에게 준다.	시모는 어루만진다.	신부는 북향해서 사배하고 시모는 포(꿩고기나 육포)를 어루만진다.
수모가 인도하여 재배한다.	신부는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서 절한다.	신부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사배한다.	신부는 조금 물러가서 숙배한다. (현재는 사배)	

표5. 폐백에 올리는 절의 횟수

현토주해사례편람	사례편람	성재집	여유당전서	광례람
수모가 인도하여 시부 탁자 앞에서 재배한다. 수모가 포를 시어머니 탁자에 놓고 신부를 인도하여 재배한다.	시부가 서있는 북쪽을 향해 신부는 절한다. 손을 씻고 다시 절한다. 시모를 향해 북향으로 절하고 지와 폐를 드린 후에 계단 아래에 내려와서 다시 절한다.	신랑 신부는 북쪽을 향해 함께 절한 후에 신랑은 물러난다.	시부에게 번(대추, 밤)을 드리고 물러나 숙배(현 사배)하고 시모에게 숙배(현 사배)하면 시모는 앉은 채로 답한다.	신부는 북쪽을 향해 사배하고 대추를 드리고 물러나 다시 사배하고 시모에게는 포를 드린다.
	어른 방에 가서 시부모를 뵙는 예가 동일하다. 시댁친족에게는 지는 없고 모두 일렬로 절을 받는다. 시누, 시동생과는 맞절한다.	시조부모에게도 동일하다. (지폐는 없다.) 색시는 왼쪽으로 사배하고, 어린친족(어린고모·어린시누이)과는 오른쪽에서 답배한다. 어른이 많아도 함께 일렬로 절하여 간편함을 따른다.	여러 시숙(모)에게 두루 단배한다.	여러 어른에게 두루 절한다.

표6. 폐백의 절차

	증보사례편람	현토주해사례편람
부 현우구고	신부는 시부모를 뵙는다.(婦 見于舅姑)	
	1. 시아버지는 동쪽, 시어머니는 서쪽으로 서로 마주 보고 앉는다. 2. 절한다. 3. 폐백(지, 폐)을 들고 서쪽 계단으로 오른다. 시아버지가 폐백을 어루만지고 나서 시자는 이를 들고 나간다. 4. 신부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다시 절한다. 5. 신부는 다시 북향하여 시어머니께 절하고 서쪽 계단을 올라 지와 폐를 드린다. 6. 시어머니는 이를 들어 시자에게 준다. 7. 신부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시어머니께 절한다.	(수모가) 대추상자를 시아버지 앞에 드리고 신부가 재배한다. 수모는 포를 시어머님 앞에 드리고 신부는 재배하게 한다. (수모가) 술을 따라 신부의 손을 거쳐서 시부모 앞에 드린다. 대추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있다. 대추씨는 아들 낳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구고예지	시부모가 신부에게 하는 예. (친정 부모가 딸에게 술을 내릴 때와 같이 함.)	
부 현우제존장	신부가 여러 어른께 인사한다. 시조부모가 계시면 시부모가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시부모를 뵙는 때와 같이 한다.	신랑집 가족이 동시에 세대 순서로 상견례를 행한 후 신부는 화관, 낭자에 원삼을 입는다.(가난하면 원삼을 안 쓴다.)

꿩고기나 쇠고기를 주재료로 한 포가 사용되었다. 포로는 육포와 편포가 사용되었지만, 한여름 복중伏中에는 육포를 사용하였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폐백음식을 준비할 때 "가난한 선비의 집에서 육포를 마련하지 못하면 밤과 수(건어)를 써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형편에 맞도록 준비할 것을 말했다. 예서에 나타난 현구고례의 순서는 표1과 같으며, 폐백 시 가족의 위치는 표2의 내용과 같다.

'구고예지'에서는 '부 현우구고'에서만 폐백을 준비하는데 요즘에는 구고예지를 폐백이라고 한다. 시부모를 처음 뵐 때 준비하는 폐백은 고례古禮에서는 지(대추, 밤)와 육포만 썼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지와 폐(비단)를 함께 썼다.

예서에 나타난 시아버지에게 드리는 폐백의 내용은 표3과 같으며, 시어머니에게 올리는 폐백의 내용과 절의 횟수 기록도 예서에 나타난 내용을 표 4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단腶(포)이란 '두드린다'는 의미로 두드려서 생강과 계피가루를 친 것이다. 수脩는 '길다'는 의미로 길게 쪼개어 말린 포로 만든 것으로 '산포'와 동일하다. 현재는 대추 한 그릇과 지(말린 꿩고기) 한 그릇만을 드리니 간략함을 따른 것이다. 대추와 밤은 '아침 일찍부터 스스로 조심하고 공경한다.'는 뜻이고, 단수는 '단단하게 스스로 닦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폐백에 올리는 절의 횟수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비교해 정리하면 표5의 내용과 같으며, 폐백의 절차에 대한 『증보사례편람』과 『현토주해사례편람懸吐註解四禮便覽』의 차이를 표6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폐백을 받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계례를 시킨다. 신부의 두 개의 쪽머리인 새앙낭자를 풀고 일반 부녀



혼인식 | 평생도 중 부분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자의 쪽과 같이 빗질하여 낭자한다. 관례벗김으로 만들어 놓은 녹의홍상을 입히고, 비녀나 가락지 패물, 옷, 비단 같은 예물을 내려준다. 신부는 새 옷에 패물을 단 후에 시부모를 뵙고 큰상을 받고, 여러 친척과 친한 집의 여자들을 청하여 같이 잔치한다. 신랑·신부의 첫날 저녁상으로 찹쌀밥과 미역국, 팥밥과 곰국을 먹여 본가로 보낸다.

지역사례 경상도 지방에서는 신행으로 시댁에 온 신부가 큰상을 받고 다시 밖으로 나와 현구고례를 한다. 시부모에게는 사배하고 조부모에게는 이배, 근친에게는 일배를 한다. 그리고 술을 올리고 찬을 올린다. 특히 시어머니에게는 입매엿을 올린다.

강원도 지방에서는 신행을 한 신부가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에 시부모를 비롯하여 시집의 여러 어른에게 인사를 드린다. 사흘째 되는 날에 시아버지가 새 며느리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인사를 한다. 시부모가 앉은 자리의 앞에 폐백상을 놓고 그 위에 예물을 놓고 술잔을 올린다. 그런 다음 시부모에게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조부모에게 절한다. 백숙모와 고모에게까지 절하고 나머지 근친과는 맞절한다. 올리는 안주로는 시부와 조부에게는 고기, 시모와 시조모에게는 밤과 엿을 올린다. 밤은 까느라고 정신없으라는 뜻이며, 엿은 입을 다물라는 뜻이다.

황해도 지방에서는 신행으로 온 신부는 큰상을 받고 곧 현구고례를 한다. 시부모께는 사배, 시조부모께는 이배, 근친(백숙부모, 삼촌지간)에게는 단배, 형제들과는 맞절한다. 이때의 폐백은 엿, 대추, 밤, 오과五果를 놓고 술과 찬을 올리는데, 시모는 엿을 쓰다듬으며 "모두 입 다물라."고 하고, 신부는 가져온 옷과 버선을 내어놓는다.

북부지방에서는 먼저 신랑집에 이른 신부가 방에 들어가면 요기할 수 있는 상을 받게 한 후에 다시 큰상을 받게 한다. 저녁이 되면 현구고례를 한다. 그 순서는 우선 부모에게 재배하고, 조부모에게 단배한다. 아제와 삼촌에게 단배한 후에 숙모뻘에게 단배하고, 형제들과는 맞절한다. 이때의 폐백은 황해도와 동일하다. 3일 후에 부엌에 들어가 찬을 만들어 뫼(진뫼=밥)와 같이 사당에 고한다. 옛날에는 석 달 안에 사당에 고했다.

전라북도 지방에서는 신랑집 대청에 자리를 마련하여 문 앞에 병풍을 치고, 시부는 동쪽, 시모는 서쪽에 앉는다. 그리고 그 앞에 폐백상을 놓는다. 폐백상 앞에는 주안상 두 개를 놓아 시부 앞 주안상에는 절육切肉이나 포를 올리고, 시모 앞 주안상에는 엿과 유과를 놓는다. 그리고 양쪽으로 친족들이 앉는다. 준비가 끝나면 신랑이 먼저 부모에게 재배한 다음 신부가 시부모[舅姑]께 사배하고, 주酒를 드린다. 신부가 먼저 동쪽 시부에

게 재배하고 올라가서 지폐를 드리면 시부는 이를 어루만진다. 신부는 다시 내려가서 재배한다. 시부모께 폐백이 끝나면 신랑 집안의 친족들에게 서열대로 절한다. 고하를 따라 답례한다. 그래서 상견례相見禮라고 한다. 사당이 있는 가정에서는 시부모의 인도를 따라 사당에 참배하고 시조부모가 있을 때에는 시부모의 인도를 따라 시조부모에게 예를 올린다.

특징 및 의의 부모와 조상을 섬기는 예의의 가치 기준은 바로 효孝와 경敬의 자세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현구고례를 행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폐백을 준비하지만 과하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현고구례는 시댁의 돌아가신 조상께 사당폐백을 올리므로 조상과 부모를 섬기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나타내는 혼례의 중요한 의식절차로 여겨졌다. 구고향지를 마치면 시어머니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고, 주인의 계단인 동쪽 계단으로 신부를 내려가게 함으로써 대代를 전하였음을 상징한다.

참고문헌 嘉禮酌儀, 廣禮覽, 省齋集, 與猶堂全書, 增補四禮便覽, 조선 후기 의례서에 나타난 혼례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길표·최배영, 가정관리학회지48-4, 한국가정관리학회, 2000), 조선조 혼인의례 중 현구고례에 관한 연구(이길표·주영애, 생활문화연구8,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994).

필자 이길표(李吉杓)

현모양처
賢母良妻

정의 어진 어머니이면서 착한 아내.

개관 한국 전통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조선 유교사회의 이상적 여성 자아인 효부孝婦, 즉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대체한 개념으로 근대 가족이 탄생하면서 발생한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유교 가부장 사회가 만들어 낸 처첩妻妾 질서 중에서 본처本妻인 정실부인正室夫人에게 부여한 조강지처糟糠之妻 정체성과도 구분되는 사상이다.

내용 현모양처賢母良妻는 서구 유럽 사회에서 18세기 무렵 자본주의화에 의한 근대 가족이 나타나면서 공사公私 영역의 분리와 함께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자아는 집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이때 이상적 자아는 '집안의 천사'로서 남편에게 헌신적으로 내조하고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반면 사회에서 남성과 다름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집 밖의 창녀'라는 부정적 자아로서 여겨졌다. 이러한 담론으로 인하여 서구 유럽 자본주의 국가의 여성들은 이상적 여성 자아인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게 되었다. 이 현모양처론은 20세기 초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과 함께 여성 교육이 중시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일본에서는 1878년 계몽주의자들이 여성 교육의 목표로 양처현모良妻賢母를 제시하면서 여성을 바라볼 때 자녀 교육의 주체라는 관점이 강조되었다. 남녀 간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양처란 집을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남편의 눈을 즐겁게 하고 취미를 이해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녀 양육의 주체인 어머니로서뿐만 아니라 가정의 중심으로서 여성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문명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여성 교육의 목적을 '현모양처의 자질을 양성완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1906년 양규의숙養閨義塾 설립취지문에 여실히 드러난다. 자식의 문명개화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개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받은 여성이 곧 현모양처였다. 양처현모가 현모양처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현모양처론은 그동안 조선사회가 여성의 주요 역할로 가문의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강조해 왔던 것에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즉 소가족을 기반으로 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시기 이전부터 양처현모주의를 우리 사회에 맞게 현모양처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의 유교 가부장사회는 일원적이고 안정화되어 있는 부계 중심 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와 처첩 질서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일부일처제와 처첩의 위계화는 성리학性理學을 사회 구성 원

리로 채택한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조강지처는 확고한 처첩 질서에서 발휘되는, 기혼 여성에게 부여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어 간 아내'라는 말로, 『후한서後漢書』「송홍전宋弘傳」에서 유래하였다. 곤궁할 때부터 갖은 고초를 함께 겪은 본처를 흔히 일컫는다. 이러한 개념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명된 현모양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현모양처론은 근대화를 위한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가정만이 아니라 국가와 관련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여성상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을 가정 내로 제한하는 이념이며, 남성은 가부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제라 할 만하다.

따라서 현모양처론은 식민지 조선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비판을 받으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첫째, 민족적 견지에서 현모양처 교육이 일본식 교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둘째, 여성을 구속하는 모든 사상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적인 신여성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셋째, 사회주의자들은 여성 역시 노동자, 즉 조선 민족과 더불어 억압받는 집단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므로 현모양처 교육을 노예 교육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현모양처론자들은 부부 각자의 직분이 다르다는 것과 철저한 정조관貞操觀을 내세워 반격을 가하였다. 이들은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극히 부정적이었다.

이 같은 현모양처론은 젠더 구별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고 부유해질수록 더욱 심화되어 갔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초반 중산층 가정주부들이 겪는 불행, 즉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공업 자본주의화 과정을 거치면서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확고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 여성은 일터에서 경제 생산에 참여하는 남성 가장을 위하여 가정에 남아 가사노동을 하고 정서적 위안을 주는 아내로, 그리고 '출세할'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현모양처론은 근대 여성 교육의 필요성으로부터 조선에 도입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조선사회에 서구 유럽에서 고안된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제 이식이 낳은 결과였다. 이에 따라 '현모양처' 여성들은 남성의 내조자, 가정의 주인으로 호명되었다.

참고문헌 근대국가 형성기 한·일의 현모양처론(윤소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여성성의 신화(Betty Friedan, 김현우 역, 갈라파고스, 2018), 집안의 천사 죽이기(Virginia Woolf, 태혜숙 역, 두레, 1996), 한국의 여성과 남성(조혜정, 문학과지성사, 1988), 현모양처론의 두 얼굴(주진오,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 푸른역사, 2013).

필자 하여주(河如株)

혈연
血緣

정의 생물학적·사회적·문화적으로 같은 핏줄로 인정된 부모와 자식, 조상과 후손 관계.

내용 혈연血緣이란 같은 핏줄로 연결된 관계이다.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이 누구의 핏줄이며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유전적 관계가 사회적 관계로 전환되는 데 관련된 문화적 구성 방식을 나타낸다. '피'는 생체화학적 차원에서 신체에 순환하는 붉은 액체이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처럼 문화적 맥락에서 사회 관계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표상이기도 하다. 물질적·생리적 실체로서의 붉은 액체가 인간의 삶과 관련한 사회체계와 관련할 때 사회조직의 구성원리에서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가장 가까운 혈연으로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나타내는 '자식은 부모의 뼈와 피를 물려받은 존재'라는 말이 있다. 이는 피를 도덕적 가치로서의 효 의식과 부자父子관계라는 사회적 질서, 깊은 사랑과 정감을 포괄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혈연은 유전학적 의미에서의 핏줄 관계에 대해 그 구성원이 문화적으로 재규정한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다.

혈연은 가족, 집, 종족, 씨족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집단과 사회적 범주로 구체화된다. 사회적 세계의 모든 남성과 여성은 수많은 혈연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생산된 존재이다. 이들이 갖는 혈연의 기원을 추적해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개인이 혈연을 형성하는 최초단계는 가족에서 시작한다. 물론 가족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에서 동거한 이들, 즉 화덕 자리를 공유하고 생산 활동을 함께하는 몇 명의 혈연자와 생산 및 소비 단위가 분리된 비혈연자 그리고 초자연적 존재를 포함한 사회적 단위이다. 이러한 집단에서 부모와 자식 간 혈연은 부부가 자식을 낳아 형성한 생식가족生殖家族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에 속한 그 자식이 다시 결혼함으로써 방위가족方位家族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부부의 생식生殖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형성하는 성적 재생산의 기본 행동이다. 성적 재생산에 대한 규범과 제도적 실천은 친족관계를 정의하는 데 중심을 이룬다. 하지만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보면 생물학적 실체를 강조하는 생식 역할 이상으로, 문화적으로 정의된 부모와 자식 관념이 제도적으로 사회적 재생산 질서를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인의 혈연관계는 생물학적 혈연에 기반하면서 의제적 혈연擬制的 血緣을 전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아버지genitor와 사회적 아버지pater에 대한 개념과도 관련된다. 항렬과 핏줄의 원근을 고려한 뒤 입양한 양자에 대한 그의 양부養父는 사회적 아버지이다.

양자는 양부로부터 혈통, 제사권, 재산권, 집의 감독권, 사회적 신분을 법적으로 친자와 마찬가지로 승계한다. 피를 주는 자와 받는 자로서 생물학적 아버지가 사회적 아버지로 인정되는 한국의 사회제도에서 양자로 맺어진 의제적擬制的 혈연으로서의 양부와 양자도 법적으로 실제 아버지, 실제 자식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이러한 양부—양자 관계 외에도 의제적 부모—자식 관계 및 형제관계가 있다. 예컨대 천주교 신자들이 맺는 영적 관계로서의 대부—대자 관계, 형제—자매 관계, 무당과 일반인이 맺는 수양관계 등이다. 이러한 의제적 혈연관계는 부모—자식 관계가 종교나 의례를 통해 상관적 지위가 새롭게 부여되어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인은 부모와 자식의 혈연관계에 대한 생물학적·사회적 인식이 복합된 혈연 의식을 통해 친족을 남계男系의 공동 조상에서 이어진 후손으로 확대한다. 친족은 성性과 성원권에 따른 사회적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한 핏줄 관계가 있는 개인들의 전체로, 이러한 관계를 공유한 이들은 자신의 일부로 간주한다.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같은 핏줄이 이어지는 혈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구성된 혈연은 공동의 남계친男系親 조상과 후손들로 가계 계승이 이루어지는 부계출계를 따르며, 같은 성姓을 가지는 사회적 단위를 형성한다.

혈연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에는 결혼한 형제와 입가入家한 여성들로 구성된 직계·방계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집안'이라는 사회적 범주가 있다. 이는 대개 4대조 조상으로부터 후손에 이르는 친자관계로 연결된 사회적 범주로서 각 개인은 고조高祖로부터 현손玄孫에 이르기까지 계열상 서열화된 위치를 차지하며, 남계친의 4대조까지 기제사를 지내는 단위이다. 이러한 집안의 범주에서는 장남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제사와 재산 상속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귀속 규칙에 따라 시집간 딸은 배제되었다. 가까운 친척에 속한 부계친과 그들의 배우자는 혈족으로 간주한다. 이는 8촌에서 12촌에 이르는 가까운 친척으로 불린다.

집안을 벗어난 혈연관계는 중시조中始祖까지 이르는 부계혈연집단으로서의 종족,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화적 존재인 시조까지의 동성동본同姓同本 구성원을 포함하는 씨족으로 확대된다. 동성동본 씨족 간에는 동일 조상에서 나왔다는 혈연의식을 가진 구성원 간 혼인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동성이본同姓異本의 경우 서로 혼인이 이루어진다.

특징 및 의의 친족원들은 혈연적 정체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순수성을 구별 짓는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름이나 상속제도, 구성원의 권리·의무 수행, 혼인금지 규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식한다. 그들은 이런 법적·정치적 역할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가깝고 먼 혈족들 간에 위치 지어진 상관적 정체성을 구성한다.

참고문헌 사회공간적 범주화와 양반다움의 문화정치적 구성(박성용, 한국문화인류학54-1, 한국문화인류학회, 2021).

필자 박성용(朴晟慵)

혈족
血族

정의 부모자식 관계, 형제자매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

개관 혈족血族, consanguine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을 말하며,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인 인척姻戚, affine과 구분된다. 혈족은 부모—자녀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같은 부父 또는 모母를 둔 형제자매도 혈족이 된다. 혈족은 친가와 외가 모두를 포함하며, 그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혈족은 혈연관계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금혼禁婚 대상이며, 근친상간近親相姦 금기禁忌가 적용된다. 그러나 금혼 및 근친상간 금기의 대상 범위는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다. 혈족은 생물학적 관계이지만 양자 등의 예에서 보듯이 혈연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상징체계이기도 하다.

내용 친족관계는 혈족과 인척으로 나뉜다. 인척은 혼인에 의해 관계된 사람인 반면 혈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의 형제자매, 어머니의 형제자매, 형제, 자매, 자녀, 형제 또는 자매의 자녀 등은 혈족이며 숙모, 형수, 아내, 고모부, 이모부 등은 인척이다.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친가만 혈족이며, 외가는 인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외가도 외조부·외삼촌·이모 등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은 혈족이다. 반면 외가 사람이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처가로서 혼인으로 이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인척에 해당한다.

혈족의 기본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이다. 부모와 자녀는 혈연으로 맺어져 있으며, 이는 보편적으로 불변 관계인 것으로 생각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와 부모—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혈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여겨지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어머니와 부모—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로 간주된다. 형제와 자매는 같은 부모와 혈족이므로 서로 간도 혈족이다.

혈족은 직계直系혈족과 방계傍系혈족으로 나뉜다. 직계혈족은 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존속尊屬으로는 부모·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등이 있으며, 비속卑屬으로는 자녀·손자녀·외손자녀 등 나를 기준으로 부모—자녀 관계로만 이어진 사람이다. 반면 방계혈족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자녀, 조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등 나와 부모—자녀 관계에 형제자매 관계가 추가된 사람들이다.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자매가 혈족인 것처럼 부모 중 한 명만 같은 형제자매도 혈족이다. 즉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르거나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는 혈족이다. 반면 부모의 재혼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다르게 된 형제자매는 가족이기는 하지만 혈족은 아니다. 혈족은 생물학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족은 친족관계의 기본이다. 혈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이므로 개인을 지지하고 돕고 연합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혈족은 모두 동일한 관계가 아니다. 어떤 혈족은 더 가깝고 다른 어떤 혈족은 관계가 상대적으로 멀다고 인식된다. 이것은 혈통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혈통체계는 혈통집단을 구성하는 원리로, 부계와 모계 어느 한쪽으로만 혈통관계를 인정한다. 즉 부계혈통체계에서는 아버지 쪽 혈족을 어머니 쪽 혈족보다 더 가깝게 여기며, 아버지 쪽 혈족만으로 친족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반면 모계혈통체계에서는 반대로 어머니 쪽 혈족과 친족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혈족은 생물학적 혈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단순한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핏줄로 이어져 있다고 믿는 상징체계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의 누에르Nuer 부족은 여성과 여성의 결혼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자 아버지가 있다. 나이가 많은 여성이 신부대新婦代를 지급하고 젊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낳은 자녀에 대해 늙은 여성은 아버지로 인정된다.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는 나이 든 여성은 자녀와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지만 아버지로 간주되어 혈족이 된다. 즉 혈족은 생물학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혈연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하나의 상징체계이다. 입양된 양자가 혈족으로 인정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자는 양부모와 생물학적 관

계는 없지만 생물학적 관계인 혈족으로 간주된다.

혈족은 금혼禁婚 대상이 된다. 혈족 사이의 결혼은 근친상간이므로 금기시된다. 그러나 금혼 대상이 되는 혈족의 범주는 사회마다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동성동본同姓同本 전체를 혈족이라고 생각하여 혼인을 금하다가 근래에는 8촌 범위의 혈족 사이 혼인만 금하고 있다. 같은 혈족이지만 교차사촌 간 결혼은 허용하고 평행사촌 간 혼인은 금하기도 한다. 평행사촌은 자기와 같은 친족집단, 교차사촌은 자기와 다른 친족집단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혈족과 혈족 간 금혼 규정은 생물학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지만 문화적 구성물이기도 하다.

특징 및 의의 혈족은 친족집단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이다. 생물학적으로 혈족은 부계와 모계 모두 포함하지만 친족집단은 문화적으로 구성된다. 즉 대부분의 사회는 단계혈통체계에 따라 친족집단을 구성하여 부계나 모계 중 어느 하나만 친족으로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친족집단에서 배제한다. 부계혈통체계를 가진 사회는 부계혈족만 친족집단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모계혈족은 친족집단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모계혈통체계에서는 모계혈족만 친족집단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혈족을 부계와 모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친족집단을 구성할 때에는 여전히 부계혈족만 친족집단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혈족은 생물학적 관계이지만 친족집단을 구성할 때는 혈족 관계가 선택적으로 인정된다.

참고문헌 문화인류학개론(한상복·이문웅·김광억,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현대문화인류학(Roger Martin Keesing, 전경수 역, 현음사, 1985).

필자 김창민(金昌民)

혈통
血統

정의 생물학적·사회문화적으로 인정된 부모와 자식, 선조와 후손 간의 성원권 부여와 제사권·재산권·가독권의 승계가 정당화된 같은 핏줄 계통.

내용 혈통血統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이다. 첫째, 부모와 자식 관계 또는 선조와 후손 관계에서 생물학적 핏줄 관계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규범이다. 둘째, 혈통 계승과 관련된 제사권·재산권·가독권家督權 등의 권리가 상속·계승되는 방식이다.

먼저 혈통은 한 개인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핏줄 계통이다. 이는 공동의 선조와 후손으로 이어지는 종족이나 씨족과 관련된다. 한국과 같은 부계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부계혈통집단의 지위를 획득한다. 혈통은 생물학적·사회문화적으로 공동의 선조로부터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출계出系 규칙과 권리를 규정한 같은 핏줄 계통이다.

부계집단에서 후사가 없어 입양할 경우 입양자를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하는 것이 혈통 계승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선왕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계家系 계승은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혈통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왔다. 이성異姓 양자처럼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이를 입양하여 가계를 계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생물학적 혈통을 승계하여 혈자血者로서의 적법성과 정통성을 인정하였다.

조선 중·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친족집단에서 적장자가 여러 대를 거치면서 계승한 경우는 드물다. 무후無後하거나 전쟁 혹은 이산, 대도시 거주 등으로 인해 가계 승계가 어려우면 가까운 친척 또는 먼 친척 가운데 장남이 종손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얼庶孼 출신이나 차자次子 혹은 친척 중에서 입후立後한 양자가 계승한 경우도 드물었다. 입후할 양자는 혈통을 계승할 인물과 같은 세대의 항렬行列에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이가 대상이 된다. 관작官爵을 획득한 선조 또는 국가나 유림에서 인정한 조상의 후손들은 그 선조 혹은 조상을 중심으로 파를 형성할 수 있고, 파종손派宗孫이 태어나면 지속해서 종통宗統을 승계할 수 있었다.

부계혈통집단에서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를 중시하면서 입양 관계로 맺어진 유사혈연관계를 혈족으로 간

주하여 제사권·재산권·가독권 승계를 통해 혈통집단을 영속한다. 신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혈통 계승에는 제사권·재산권·가독권 상속이 관련된다. 신라시대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혈통의 경우 성性에 따른 구분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고려 전기에는 상속에서 자녀 간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가옥과 토지는 장자에게만 전하여 장자우대상속제를 행하였고, 후기에는 가옥만이 장자에게 단독 상속되었으며 토지와 노비는 분할 상속되었다.

조선시대 왕가의 경우 종통과 가계 계승에 적용된 원리에는 혈통血統과 적통嫡統이 있었다. 조선조 내내 왕가의 종통은 혈통 계승 원리를 통해 왕위를 계승하였다. 반가班家의 경우에는 상이하였다. 1437년(세종 19) 의정부에서 올린 사대부가의 양자입사養子立嗣에 대한 상소문에서는 양자로서의 승계자는 동종同宗이어야 하고 지자支子이어야 하며, 형제 또는 존속尊屬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자 세대 항렬에 속한 혈손들과 이성異姓도 제외되었다. 반가의 종통은 조선 초기에는 혈통 원리에 입각해 승계되다가 중·후기에는 적통 원리에 입각해 승계되었다.

17세기 전반까지 친족집단에서 가산家産을 자녀에게 균등 분배하던 공계共係적 혈통집단에서 적장자불균등상속을 중시하는 법인체적 부계종족집단이 형성되는 것은 어려웠다. 유교적 이념을 구체화하는 사당과 족산族産·족규·족권族權·족보 등을 갖춘 부계혈통집단이 지역마다 두루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 개인의 혈통을 공계로 이어받고 이를 소급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8고조도八高祖圖 내지 16고조도十六高祖圖가 만들어지듯이 혈통의 유래와 재산의 전계傳係는 불가분 관계에 있었다. 그러한 8고조의 범위가 내외 조상의 혈통과 신분을 변별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한 집안의 재산 유래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현상은 당시의 혈통 계승이 공계적 혈통집단의 구성원리를 근간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공계체계는 혈통 계승, 재산상속, 이름 계승, 친족 성원권 실행에 성性이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한 한 개인의 후손들은 한 종족이 아니라 여러 종족에 속하는 성원권을 가지며, 이름이나 재산상속·제사상속도 친가·외가·처가 등에서 상속·계승할 수 있다. 또한 거주규정도 선택적인 혈통 계승 체계이다.

17세기 중반 이후 재경관료在京官僚나 재지사족在地士族은 자녀에 차등을 두고 봉사위奉祀位 증대에 따른 적장자우대불균등상속제嫡長子優待不均等相續制로 자녀균분제子女均分制를 해소하였다. 또한 자녀윤회봉사子女輪廻奉祀에서 제자윤회諸子輪廻 혹은 단독봉사제單獨奉祀制를 행하였다. 이에 따라 친가·외가·처가로 상속되었던 재산권·제사권·가독권 등이 점차 부계 중심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사회제도 변화는 혈통 계승이 공계혈통체계에서 부계혈통체계로 변화하였음을 보여 준다.

특징 및 의의 혈통은 생물학·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공동 선조로부터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출계 규칙과 권리를 규정한 같은 핏줄 계통이다. 부계사회에서 한 개인은 공동 조상으로부터 아래로 영속된 부계혈통집단의 지위와 성원권을 획득하고 이름·제사권·재산권 상속과 가독권을 실천함으로써 혈통을 계승한다. 혈통에는 생물학적 관계로서의 실제 핏줄과 입양으로 맺어진 양부—양자의 의제적擬制的 핏줄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명망의 문화정치(박성용, 민속학연구52, 국립민속박물관, 2023), 조선전기의 사회변동과 상속제도(이수건, 역사학보129, 역사학회, 1991), 한국의 명문 종가(이순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필자 박성용(朴晟慵)

형
兄

정의 같은 부모를 둔 남성 동기 사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남성을 이르거나 부를 때 사용하는 어휘.

내용 형兄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同氣 사이에서 나이 어린 남성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성에게 사용하는 한국어 친족어로, 동기간에 사용하는 다른 어휘소 '누나' '언니' '오빠' 등이 순우리말인 것과 달리 한자로 구성되었다. 또한 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등 친족관계에 있는 남성이나 부모의 재혼으로 형성된 관계에



삼형제 그림판화 | 윌리 세일러 | 가로38 세로32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서도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친족 남성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며, 지시 대상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와 가리켜 이를 때 사용하는 지칭어로 모두 사용되고 있다. 한 가정 내에서 형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여러 명 존재할 경우 지시 대상이 되는 남성의 연령 기준으로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또는 '큰형, 작은형'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거나 지시 대상의 이름을 사용한 '이름+형'과 같은 어휘로 지시 대상을 구분한다. 또한 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형'이 사용될 때는 사촌 형, 이종사촌 형, 고종사촌 형 등을 사용하며, 촌수가 먼 친척의 경우에는 촌수 구분 없이 '친척 형'을 사용하여 그 관계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 관계임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두사 친親을 사용한 친형親兄을 지칭어로 사용하여 다른 친족들과 구분한다.

이처럼 실제 언어생활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형태로 확장·사용되고 있는 형은 대부분 지시 대상과의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지칭어 기능만을 담당한다. 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를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이 제한되며, 형식 확장이 되지 않은 '형'만이 호칭어로 모든 대상에게 사용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다.

특징 및 의의 한국 전통사회에서 친족어 '형'은 태어난 날이 같은 쌍둥이 사이에서도 철저히 그 관계를 구분해 왔다. 이는 한 가정 내에서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온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형, 누나, 오빠, 언니와 같은 어휘소는 이를 선택할 때 지시 대상의 성별뿐만 아니라 어휘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의 성별을 모두 고려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는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저출산 사회로 불리는 현대에 와서 '형'이 친족어로 사용되는 빈도나 기초 어휘로서의 중요도가 예전과 비교하여 높다고 보기 어렵다. 가령 한 가정 내에 형이 존재하지 않아 가정 내에서 일생 동안 형을 친족어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모국어 화자가 존재하기 시작하였고, 전통사회처럼 친족 간 교류가 활발하지도 않기에 실제 언어생활에서 '형'을 친족어로 사용할 기회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친족어 '형'이 비친족에게 사용되는 의사친족어疑似親族語 기능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언어 사용자와 친밀을 공유하고 나이가 많은 남성이라면 '형'이 비친족어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형'은 비친족어로 사용되는 양상이 본래 기능인 친족어의 양상보다 더욱 활발한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형과 비교하여 더욱 높임을 전달하기 위해 확장된 어휘소인 '형님'은 현대 언어생활에서 나이 차가 한 세대 이상 나는 아버지 또래의 남성에게도 친밀이 공유된 관계라면 사용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 사용 범주가 매우 넓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 이뤄진 이후 친밀 정도가 더욱 강해지면 '형'으로 호칭이 바뀌기도 한다는 점에서 '형'은 사용 범주가 매우 넓은 특징을 가진 어휘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형'은 아버지 부재 시 가족 부양을 위한 경제활동 의무뿐만 아니라 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가장家長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지속된 전통사회에서 가장 역할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 부재 시 맏이가 되는 여성이 존재하더라도 남성에게 부여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이유로 형은 한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잠재적으로 담당해야 할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이뿐만 아니라 형이 가진 이런 의무와 역할은 김광순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 이후에도 유지되며, 혼인한 남동생의 부재 시 그의 자녀에 대한 부양까지 의무 범주가 확대되기도 한다. 이는 현대 언어생활에서 남동생의 자

녀가 그를 큰아버지로 부르는 친족어의 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김광순이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는 부양 의무를 가진 대상에게만 확장·사용되는 특징을 가진 어휘소이다.

참고문헌 유의어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제안(김광순, 한국어 의미학46, 한국어의미학회, 2014), 친족어의 호칭어로서 확장·사용 양상(김광순, 한국어 의미학48, 한국어의미학회, 2015), 한국어 친족어의 의미(김광순, 박문사, 2017).

필자 김광순(金光淳)

형님

정의 동기간이나 동항에서 나이가 많은 남녀 친족원을 높여 부르는 친족용어.

내용 '형兄'은 한 어버이에게서 태어난 동기간同氣間 중에 나이 많은 남녀를, 또는 같은 항렬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나이 적은 사람이 일컫는 친족용어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성'이라고 한다. '형님'은 '형'에 높임의 뜻을 더하는 '님'을 붙여 상대 친족원을 직접 호칭하거나 간접 호칭하는 데 모두 사용된다. 화자와 청자가 되는 친족원의 성별이 한쪽 성에 고정되지 않고 두루 사용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은 친족용어라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형님은 다음의 6가지 친족관계에서 사용된다.

①남형제간男兄弟間: 남동생[弟]이 동기간 중에 손위 남자, 즉 형을 높여 '형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릴 때는 '형'으로 부르나 결혼하면 '형님'으로 높여 부른다. 형은 남동생을 이름으로 부르거나 '동생/아우'로 대접해 부르기도 한다.

②여형제간女兄弟間, 즉 자매간姉妹間: 여동생[弟]이 동기간 중에 손위 여자, 즉 형을 높여 '형님'이라고 한다. '언니'는 형을 정답게 부르는 말이고, 결혼하면 '형님'으로 높여 부른다. 언니는 여동생을 이름으로 부르거나 '동생/아우'로 대접해 부르기도 한다.

③시누이올케간: 남동생의 아내, 즉 손아래 올케가 손위 시누이를 '형님'이라고 한다. 손위 시누이는 손아래 올케를 '올케/동생(의)댁' 등으로 부른다.

④여자 동서간同壻間: 형제의 아내들 사이를 동서간이라고 한다. 시동생媤同生의 아내인 손아래 동서同壻가 시아주버니의 아내인 손위 동서를 '형님'이라고 한다. 손위 동서는 손아래 동서를 '동서' 등으로 부른다.

⑤처남남매간妻男男妹間: 아내의 남형제인 '처남'과 처남에게 여형제의 남편인 '매부妹夫' 사이를 처남남매간이라고 한다. 남자에게 여형제의 남편은 누이들과의 연령 관계와 상관없이 모두 '매부'로 지시된다. 한편 손위 누이의 남편은 매형妹兄/자형姉兄, 손아래 누이의 남편은 매제妹弟로 구분하기도 한다. 매제는 자기 아내의 오빠, 즉 손위 처남에게 '형님'이라고 한다. 반대로 손위 처남은 여동생의 남편을 '매제/매부/성+서방' 등으로 부른다.

⑥남자 동서간同壻間: 자매의 남편들 사이를 동서간이라고 한다. 처제妻弟의 남편인 손아래 동서는 처형妻兄의 남편인 손위 동서를 '형님'이라 하고, 반대로 손위 동서는 손아래 동서를 '동서/성+서방' 등으로 부른다.

바꿔 말하면 ①남형제간 ②여형제간에 사용되는 '형님'은 부계父系 친족과 관련된 용어이다. ③시누이올케간 ④여자 동서간에 사용되는 '형님'은 부계夫系, 즉 남편의 친족과 관련된 용어이다. ⑤처남남매간 ⑥남자 동서간에 사용되는 '형님'은 처계妻系, 즉 아내의 친족과 관련된 용어이다.

지역사례 지역별로 사용되는 ①남형제간 ②여형제간(자매간) ③시누이올케간 ④여자 동서간에 ⑤처남남매간 ⑥남자 동서간에 대한 친척용어를 친척지칭과 친척호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친족원	친척지칭	친척호칭	비고
경기 양평	① 남형제간	성(님)	성님	혼인 전에는 '성'으로 부름
		동생/아우	이름	
	② 여형제간 [자매간]	언니	언니	혼인 전에도 '언니'로 부름
		(여)동생	아이 이름+엄마	혼인 전에는 이름을 부름
	③ 시누이올케간	시누님	성님	
		(손아래)올케	올케	
	④ 여자 동서간	(손윗)동세님	성님	
		(손아랫)동세	동세	

	⑤ 처남남매간	(손윗)처남	성님	
		매부	매부	
	⑥ 남자 동서간	(손윗)동서	성님	
		(손아랫)동서	동서	
강원 삼척	① 남형제간	형님	형님	어려서는 '형'을 쓰고 화자가 혼인하면 '형님'으로 바꿈
		동상	이름	
	② 여형제간 [자매간]	언니	언니	
		여동상	동상	혼인 전에는 이름을 부름
	③ 시누이올케간	시누님	형님	
		동상아댁/올게	동상아댁	
	④ 여자 동서간	웃동세	형님	
		아랫동세	동세	
	⑤ 처남남매간	큰처남	처남/형님	
		매부	매부	'성+서방'(호칭)은 쓰지 않음
	⑥ 남자 동서간	큰동서	형님	
		작은동서	동서	
충북 청주(청원)	① 남형제간	형님	형님	어려서는 '성'을 쓰고 상대방이 나이가 들면 '형님'으로 바꿈
		아우/동생	이름	
	② 여형제간 [자매간]	언니	언니	어려서는 '성'(또는 '언니')을 쓰고 상대방이 나이가 들면 '언니'로 바꿈
		(여)동생	출가지명+네/아이 이름+엄마	혼인 전에는 이름을 부름
	③ 시누이올케간	큰시누님	형님	
		올케	올케	
	④ 여자 동서간	큰동세	형님	
		동세	동세	
	⑤ 처남남매간	큰처남	형님	
		매제	매제	'성+서방'(호칭)은 안 씀
	⑥ 남자 동서간	큰동서	형님	
		동서	동서	'성+서방'(호칭)은 안 씀
전북 고창	① 남형제간	성(님)	성(님)	
		(남)동상	이름	
	② 여형제간 [자매간]	성(님)	성(님)	
		(여)동상	남편 성+실+이	
	③ 시누이올케간	큰시누우	성님	
		동상아덕	동상아덕	
	④ 여자 동서간	큰동서	(큰)성님	
		동서	동서	
	⑤ 처남남매간	처남	처남	
		매제	성+서방/매제	
	⑥ 남자 동서간	(큰)동서	동서/성+서방	
		(작은)동서	동서/성+서방	
경북 영덕 영해	① 남형제간	백씨/형님	형님	
		아우	이름	
	② 여형제간 [자매간]	백씨/형님	형님	
		(여)동생	남편 성+실	
	③ 시누이올케간	시누우	형님	
		동생으댁	새댁	
	④ 여자 동서간	동서	형님	
		동서	새댁	
	⑤ 처남남매간	처남	이름+(씨)/처남	
		매부	성+서방	
	⑥ 남자 동서간	동서	이름+(씨)/성+서방	
		동서	이름/성+서방	
경남 함양	① 남형제간	형님/백씨	형님	
		아우	이름	
	② 여형제간 [자매간]	백씨/형님	형님	
		(여)동생/아우	남편 성+집	
	③ 시누이올케간	(큰)시누우/시매	형님	
		동생의 댁	새댁	
	④ 여자 동서간	동서	형님	
		동서	새댁	
	⑤ 처남남매간	(손위)처남	처남	
		매부	성+서방	
	⑥ 남자 동서간	(손위)동서	성+서방/동서	
		(손아래)동서	성+서방/동서	
부산 동래	① 남형제간	성님/셍이	성님/셍이	어려서는 호칭으로 주로 '셍이'를 씀
		(남)동성	이름/동성	나이 들어서는 '동성'을 많이 씀
	② 여형제간 [자매간]	성님/셍이	성님/셍이	어려서는 호칭으로 주로 '셍이'를 씀
		(여)동성	이름/동성/큰아이 이름	
	③ 시누이올케간	큰시누부	성님	
		올끼	올끼	
	④ 여자 동서간	웃동시	성님	
		아랫동시	동시	
	⑤ 처남남매간	(큰)처남	(큰)처남/성님	
		제매/매부	성+서방/제매	
	⑥ 남자 동서간	(큰)동서	성님	
		(작은)동서	동서/성+서방	

출처: 한국의 언어 민속지(2009~2023)

특징 및 의의 친족용어 '형님'은 상술한 친척관계 외에도 동항의 나이 많은 다른 친척에게도 확대되어 사용되는데 한국의 친족용어체계에서 연령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형님'은 비친척관계의 사람에게 확대·적용하여 남녀 불문하고 연령 차이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두루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사친척용어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한국의 언어 민속지-강원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기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서편(왕한석, 교문사,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충청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조숙정(趙淑晶)

형망제급
兄亡弟及

정의 후사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하여 동생이 가계를 승계하는 방식.

내용 형망제급兄亡弟及은 적장자 중심의 일반적 가계家系 계승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대안 중 하나로, 고려시대 이래 조선 전기까지 시행되었던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에 정한 제사의 승계 순서를 살펴보면 적자嫡子가 유고有故하면 적손嫡孫이, 적손도 유고하면 동모제同母弟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적자와 적손이 유고할 때 동모제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한 조처가 형망제급에 해당한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면 적장자에게 후사가 없으면 중자衆子가, 중자도 후사가 없으면 첩자妾子가 봉사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중자에 의해 승계하도록 한 것이 형망제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형망제급에 의한 가계 계승은 16세기의 총부권冢婦權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총부冢婦는 적부嫡婦 또는 종부宗婦와 유사한 의미로, 한 집안의 맏며느리를 뜻한다. 남편이 종자宗子이기 때문에 종법상 다른 며느리보다 높은 대우를 받았으며, 선대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만약 종자인 남편이 총부보다 먼저 사망하면 총부가 그 지위를 잃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선사회에서는 남편이 사망하여도 총부가 그 지위를 유지하며 제사를 주재主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장자가 후사後嗣 없이 사망하면 중자에 의해 가계를 승계한다는 형망제급과 총부가 직접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권한이 서로 대립하며 분쟁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형망제급은 가계 계승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이었던 입후立後와도 대립하는 형세에 놓여 있었다. 입후 역시 『경국대전』에 의해 규정된 가계 계승의 방식으로, 아들이 없는 자가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후사로 세울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장자가 후사 없이 사망하였을 때 차자에 의한 계승을 이룰 것이냐와 입후를 통해 새로운 계후자繼後子를 세울 것이냐는 입장이 대립하게 되었다. 즉 『경국대전』의 봉사조奉祀條와 입후조立後條의 내용이 상충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성리학적 종법宗法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관념으로 자리하고 입후가 가계 계승을 위한 대안으로 널리 확산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리면서 형망제급은 더욱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부—자—손에 의한 순차적이고 수직적인 계승을 중요시하면서 형—동생과 같이 같은 항렬行列로 수평 이동하는 형망제급보다는 입후가 더 선호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만 입후를 선호하여 이를 통한 가계 계승을 이루고자 하여도 그에 적합한 계후자를 찾지 못할 때 대안으로 형망제급을 활용하거나 오랫동안 후사가 끊겼던 공신功臣·선현先賢·충신忠臣·재신宰臣 등의 제사를 다시 이으려고 할 때도 형망제급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입후를 가장 선호하였음에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입후 대안으로 형망제급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징 및 의의 후사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하여 가계를 잇는 형망제급은 명분을 중시하는 입후보다 혈연을 더 중요시하는 계승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혈연을 중요시하던 고려시대 이래로 조선 전기까지는 가계 계승의 대안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성

리학적 종법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17세기 이후로는 그전보다 드물게 나타났으나 입후 대안으로 기능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7~18세기 형망제급의 사례를 통해 본 가계계승의 실현과정(고민정, 사학연구140, 한국사학회, 2020), 공신회맹록과 충훈부등록으로 보는 17~18세기 공신가의 인적 계승 양상(고민정, 규장각5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조선중기 제사승계와 형망제급의 변화(김윤정, 조선시대사학보20, 조선시대사학회, 2002), 조선중기 총부권과 입후의 강화(이순구, 고문서연구9, 한국고문서학회, 1996), 조선후기 제사승계 방식의 선택과 의미(문숙자, 사학연구77, 한국사학회, 2005).

필자 고민정(高旻廷)

형사취수제
兄死娶嫂制

정의 형이 죽은 후 남동생이 형수를 맞이하여 함께 살아가는 방식.

역사 고구려의 혼례 민속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양서梁書』와 『남사南史』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삼는다."라는 기록이 있다. 부여에서도 행해졌다고 하는데 『삼국지三國志』와 『후한서後漢書』의 부여전에 기록되어 있다. 북방의 유목민족 흉노, 거란, 여진, 몽고 등이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에서도 행해졌다. 한반도에서는 그 이후에 행해졌다는 기록이 없지만 북아시아 유목민족에서는 19세기까지도 행해졌다.

내용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형제연혼兄弟緣婚이나 취수혼娶嫂婚이라고도 부르며, 영칭으로는 레비레이트levirate라고도 한다. 남편이 죽은 부인의 여동생과 혼인하는 자매연혼姉妹緣婚, 영칭으로 소로레이트sororate는 형사취수제에 대비된다.

형사취수제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 본기本紀 산상왕조山上王條에 나온다. 고구려 고국천왕故國川王 사후에 왕후 우씨于氏가 왕의 남동생 연우延優와 혼인하게 되는데, 이 혼인 방식이 형사취수혼에 해당한다. 형사취수혼에서는 형제가 연령순에 따라 형수와 혼인하는데, 연우가 셋째임에도 혼인하게 되자 둘째인 발기拔奇가 군사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 이 분쟁은 당시 민속 문화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형사취수제가 부인을 재산으로 간주하며 이를 남동생이 승계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고구려에서는 혼인할 때 폐백조차도 주고받지 않았고, 받았을 경우 여러 도덕적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형사취수제를 매매나 재산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친족 집단의 정치적 동맹을 유지하고 미망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인이 자녀나 재산을 가지고 다른 부족이나 씨족, 가족으로 거처를 옮기면 노동력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차원에서 형사취수제가 행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장남으로 출계가 내려가는 것을 가능케 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동생과 형수 간 첫아들이 형의 대를 잇게 하는 혼인 방식이 존재하였다. 고구려에서의 형사취수혼도 이와 기본적으로 유사한데, 시동생과 결혼하더라도 형수는 죽은 뒤 원래의 남편인 형에게로 돌아가야 하였다. 형사취수혼은 죽은 이의 아들이 어머니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형수를 동생이 승계하며 보호하는 혼인 방식으로, 형제상속제의 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형사취수제 사례를 달리 찾기 어렵지만, 중국 민간에서는 전혼轉婚과 형제전혼兄弟轉婚 등으로 불리며 행해졌다. 주로 하층민 사이에서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징 및 의의 형사취수혼은 형제가 한 여성과 결혼하는 일처다부제와도 연계될 수 있고 일부다처제와 연계될 수도 있다. 형이 죽은 뒤에 형수와 결혼하는 동생에게 이미 아내가 있으면 일부다처가 발생한다. 현대에서는 금지된 혼인이다.

참고문헌 고구려 산상왕의 취수혼 사건(엄광용, 사학지38, 단국사학회, 2006), 고구려 혼인 습속의 계층성과 그 배경(김지희, 동북아역사논총60, 동북아역사재단, 2018), 사회구조(George Peter Murdock, 조승연 역, 서경문화사, 2004), 조선민속지(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이광규, 일지사, 1975).

필자 강정원(姜正遠)

형제
兄弟

정의 형과 남동생 관계를 이르거나 자매, 남매를 모두 이를 때 사용하는 말.

내용 형제兄弟는 현대 언어생활에서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형과 남자 동생 관계',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간 관계'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사용되고 있다. 형제는 한자어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손윗사람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의 뜻을 가진 한자어 '형兄'과 '나이가 어린 사람 혹은 동생'의 의미를 가진 한자어 '제弟'가 결합한 어휘이다. 이때 형은 현대 언어생활에서 호칭어와 지칭어로 모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이와 결합한 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고 '아우' 혹은 '동생'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형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간 관계임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즉 특별한 형식의 변화 없이 형과 남자 동생 관계를 나타내는 형제兄弟, 언니와 여동생 관계를 나타내는 자매姉妹, 누나와 남동생 또는 오빠와 여동생 관계를 나타내는 남매男妹를 모두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한 어휘소이다. 이처럼 형제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진 까닭에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화에서 사용된 문장에서의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가령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혹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와 같은 표현에서 형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 관계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반면 "너희 형제는 참 닮았다." "형제가 같이 잘 놀아서 좋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형제는 형과 남동생 관계로 해석해야 한다.

특징 및 의의 형제는 다자녀 가정에서 동기 수가 셋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자어 수사 '삼, 사, 오, 육' 등과 결합하여 삼 형제, 사 형제, 오 형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현대에 와서 다자녀 가정 비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 한 자녀 가정 비율이 증가하면서 다른 동기와의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형제·남매·자매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모국어 화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 빈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다른 형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호칭어와 지칭어로 모두 사용되는 친족어인 형, 언니, 오빠, 누나 등과 비교하였을 때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친족어 '형제'를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례나 대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 '형제'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흔한 어휘소는 아닌 까닭에 현대에 와서 '형제'가 친족어로 사용되는 빈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조씨 삼형제 초상 | 가로67 세로42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하지만 현대 언어생활에서 비친족 남성들 사이에 서로가 친밀의 속성을 강하게 유지하여 다른 이들과 다른 특별한 관계임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을 때 한자어 의義와 형제가 결합한 '의형제義兄弟'를 지칭어로 사용하는 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더욱 친밀한 관계임을 알리게 된다. 비친족 남성에게 사용되는 이러한 용법은 형제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성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자매義姉妹', 남성과 여성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남매義男妹'와 같은 어휘도 존재한다. 하지만 의형제가 가장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으며, 의남매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별性別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자매 또한 어색하게 여겨진다. 이는 현대 언어생활에서 여성은 남편이나 자녀 중심으로 비친족 여성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개

인과 개인 관계에 초점을 둔 '의자매'나 '의남매'와 같은 관계를 자연스럽지 않게 여기는 한국인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친족어의 호칭어로서 확장·사용 양상(김광순, 한국어 의미학48, 한국어의미학회, 2015), 한국어 친족어의 의미(김광순, 박문사, 2017).

필자 김광순(金光淳)

호
號

정의 개인의 호칭 중 하나로, '명'이나 '자'보다 편하게 사용되는 이름.

개관 근대 이전의 한국인, 특히 남자는 출생 이후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살았다. 태어나면 항렬行列을 표시하는 집안의 돌림자를 넣어 지은 본래의 이름인 명名이 생겼고, 일상에서는 별도로 지은 아명兒名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남아의 경우에는 성장하여 성인식, 즉 관례冠禮를 하면 관명冠名이나 자字라는 호칭을 지어 주었다. 이 외에 명이나 자보다 편한 호칭으로 자호自號라 하여 자기 자신이 짓거나 스승, 선배, 부모, 친구 등 다른 사람이 붙여준 호號를 갖고 생활하였다.

호는 자신의 이름이나 타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문화에서 나온 별칭別稱으로, '아호雅號'와 '당호堂號'로 대별하기도 한다. 아호는 시문詩文이나 서화書畫 등에 주로 쓰는 호이며, 남의 호는 '아호'라 해도 자신의 호는 아호라 하지 않았다. 당호는 본디 당우堂宇에 붙인 이름이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주인을 지칭하는 호로 쓰이기도 하였다. 당호 외에도 실호室號, 재호齋號, 헌호軒號, 누호樓號, 정호亭號 등도 호가 되었다. 또한 아호와 당호 외에 별호別號도 구분 없이 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호에는 이상의 칭호가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는 죽은 이후 생전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에서 하사하는 시호諡號도 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호는 당사자가 죽은 뒤에 붙은 호칭이어서 사후에만 사용되지만 좁은 의미의 호는 해당 인물이 살아 있을 때나 죽은 뒤에나 관계없이 썼다.

역사 호의 사용은 중국 남북조시대의 학자 도홍경陶弘景(456~536)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중국 내 문필 생활에서 호가 쓰이게 된 것은 당나라 때부터라고 한다. 이후 송나라를 거쳐 남송 때는 거의 모든 지식인이 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호가 있는 인물이 일부 보인다. 일례로 신라의 원효元曉(본성명 설사薛思, 617~686)는 '소성거사小性居士'라 칭하였다. 이후 고려 중기부터 점차 호의 사용이 증가하다가 조선시대에는 거의 모든 지식인이 호를 지니게 되었다.

한자문화권에서 호의 사용은 사람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경명사상敬名思想에서 나온 문화이다. 특히 성인이 된 사람은 자신이든 남이든 본명으로 부르는 것을 삼갔고, 스스로를 낮춰 겸손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만 자신의 이름을 썼다. 또한 임금·스승·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을 모욕이나 멸시로 여겼기 때문에 본명 대신 쓸 수 있는 자와 호가 등장한 것이다. 특히 호는 자보다 편하게 부를 수 있으며, 호를 짓는 데도 제약이 거의 없어 일상에서 더 많이 이용되었다.

내용 호는 연령, 성별, 지위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지어 쓰던 칭호였다. 또한 한 개인이 일평생 하나의 호만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호를 바꿔 가며 여러 개 사용하는 일이 흔하였다. 호는 짓는 주체나 시기, 작명 계기, 작명 방식, 글자 수, 의미 등이 자유롭고 다양하였다.

호를 짓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규보李奎報(1168~1241)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서 "거처하는 곳,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얻은 것 또는 도달한 경지를 근거로 호로 삼는다."고 정리하였는데 대개의 작호 방식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일부 다른 작호 방식도 보인다. 먼저 자신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곳, 인연이 있는 지역의 건물명이나 지명·산천명 등으로 호를 정한 경우이다. 이때 흔히 쓰이는 글자는 촌村, 리里, 동洞, 주州, 교郊, 산山, 봉峰, 암巖, 강岡, 악嶽, 곡谷, 계溪, 해海, 강江,

호湖, 포浦, 주洲, 천川, 담潭, 당堂, 재齋, 헌軒, 암菴, 정亭, 와窩 등이다. 예를 들어 정도전鄭道傳(1342~1398)의 호 '삼봉三峰'은 충청북도 단양의 도담삼봉에서, 이황李滉(1501~1570)의 호 '퇴계退溪'는 경상북도 안동의 퇴계라는 지명에서, 이이李珥(1536~1584)의 호 '율곡栗谷'은 경기도 파주의 율곡에서 각각 따온 것이다.

또한 자신이 주로 머무르는 방이나 서재, 집 등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으로 호를 삼은 예로는 홍대용洪大容(1731~1783)의 호 '담헌湛軒'을 들 수 있다. 담헌은 그가 가르침을 받던 김원행金元行(1702~1772)으로부터 얻은 당호였다. 송순宋純(1493~1582)의 호 '면앙정俛仰亭'은 그가 퇴직한 후 지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정자의 이름이다. 한편 호의 주인이 처한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상황을 표현하여 지은 호도 있다. 대개 빈부, 귀천, 늙고 병듦, 외롭고 고독한 처지 등을 나타낸다. 글자로는 은隱, 옹翁, 수叟, 노老, 산인散人, 거사居士, 포의布衣, 야인野人 등이 사용되었다. 이순李淳(1530~1606)의 호 '야로野老', 김숙자金叔滋(1389~1456)의 호 '강호산인江湖散人'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특히 아끼고 좋아하는 것으로 호를 짓는 방식이 있다. 송松, 죽竹, 백栢, 연蓮, 과瓜, 지池 등의 글자가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집안에 연못이 셋 있었던 최운崔澐(1500~1520)은 호를 '삼지三池'라 하였다. 자신이 목표로 삼아 도달한 경지나 지향하는 바를 담아 호를 지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호 가운데 '여유당與猶堂'의 '여유'는 『노자老子』 15장 「현덕顯德」 가운데 "與兮若冬涉川 猶兮若畏四隣"에서 '與'자와 '猶' 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많은 수난을 겪은 그가 인생을 겨울날 살얼음 진 냇물을 건너듯 주위를 조심하며 살겠다는 뜻을 담은 호이다.

이 외에도 자신이 영향을 받거나 숭앙하는 인물과 관련지어 호를 짓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서화가이자 학자였던 김정희金正喜(1786~1856)는 호가 수백 개에 달하였는데 그중에는 김정희가 중국 연경燕京에 가서 만난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학문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학자 완원阮元(1764~1849), 옹방강翁方綱(1733~1818)과 관련된 호가 많다. 완원을 존경하였던 그는 자신의 호에 완원의 '완阮'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완당阮堂·노완老阮·완당노숙阮堂老叔·완우阮迂·완수阮叟·완파阮坡 등 10개가 넘고, 완원의 서재 이름인 '소랑환선관小琅嬛僊館'에서 글자를 따와 '낭환琅嬛' '동해낭환東海琅嬛' 등의 호를 쓰기도 하였다. 또한 옹방강의 호 '담계覃溪'에서 '담覃'을 따와 담재覃齋와 같은 호를 짓거나 옹방강의 당호인 '소재蘇齋'를 자신의 호로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은 호를 기재할 때는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같이 호를 성명 앞에 붙이거나 '연암燕巖 박미중朴美中'과 같이 호 다음에 성姓과 자字를 쓰거나 '정삼봉도전鄭三峰道傳'과 같이 성 다음에 호·명을 차례대로 적거나 '이율곡李栗谷'과 같이 성과 호만 쓰거나 아예 '여유당與猶堂'과 같이 호만 적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호는 해당 인물의 처소·처지·취향이나 뜻하는 바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한 개인이 적게는 수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는 호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호는 시기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궤적, 학문과 사상, 인생관 등의 변화, 사회적 교유관계, 예술 활동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된 호가 나타났다. 국어학자 주시경周時經(1876~1914)의 호는 '한힌샘', 최현배崔鉉培(1894~1970)의 호는 '외솔', 소설가인 전영택田榮澤(1894~1968)의 호는 '늘봄'이라 하였다. 현재는 성인의 경우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고 직함을 붙여 부르는 경향이 있으며, 호를 짓고 부르는 일은 예술가·교육자·기업가·정치인 등에서 일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전해지는 호와 관련한 자료에는 주로 '호보號譜'라는 서명이 들어 있다. 그중 조선시대에 나온 자료는 대부분 『호보號譜』라는 제목의 필사본이고 근대 이후에 간행된 『조선문헌당호보朝鮮文獻堂號譜』(1917) 『조선세가호보朝鮮世家號譜』(1924) 『대동명가호보大東名家號譜』(1926) 『호남호보湖南號譜』(1956) 등은 석판 또는 활자본이다.

참고문헌 이름과 호의 한자문화(심경호, 어문연구46-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추사 김정희의 호에 대한 연구(김은미,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인의 자·호 연구(강헌규·신용호, 계명문화사, 1990), 호보의 서지적

고찰(박희영, 국회도서관보24-6, 국회도서관, 19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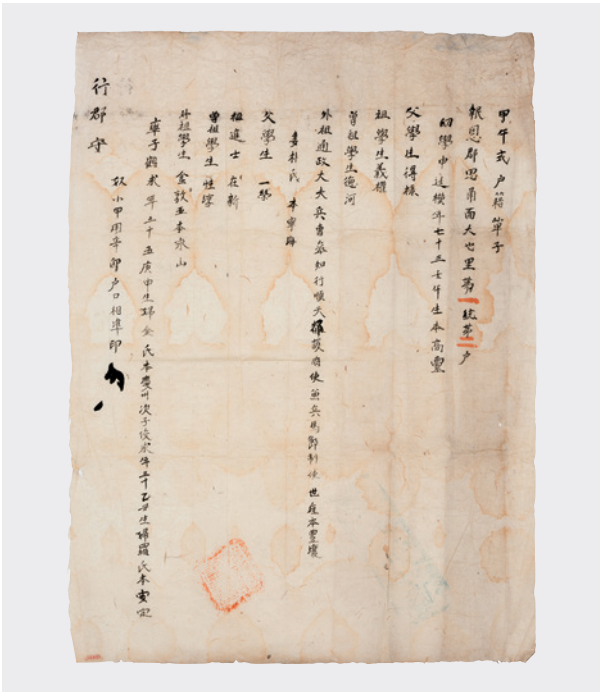
필자 이대화(李大和)

호구단자
戶口單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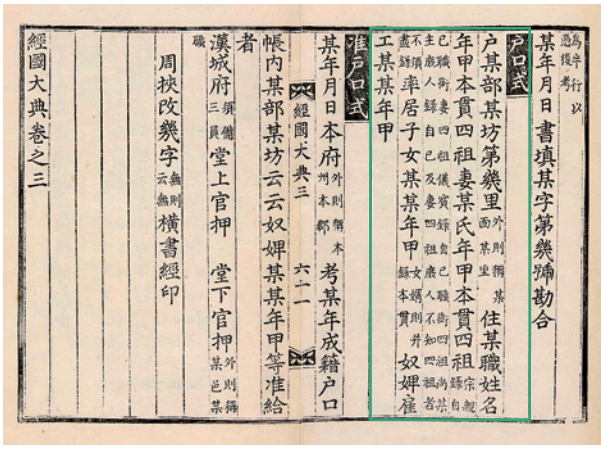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신고되는 개별 호의 호구 문서.

내용 호적 자료에는 지방 행정단위로 작성된 '호적대장戶籍大帳'이나 지역의 호구통계를 기록한 '호구부戶口簿' 이외에 민간에서 소장하는 호戶 단위의 호적이 '호구단자戶口單子'나 '준호구準戶口' 형태로 남아 있다. 호적은 '신고주의申告主義'를 원칙으로 작성된다. 호구조사를 시행할 때 주민이 자신의 호구를 적어서 신고하는 것이 '호구단자'이다.

호적은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호구조사를 통해 작성되었다. 호구조사는 주민이 호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적은 호구단자를 호구조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호구단자에 호 구성원을 기재하는 방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호구식戶口式'으로 제시되어 있다.



호구단자 | 가로12 세로29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호구식 | 경국대전 | 가로23 세로35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호 구성원으로 첫 번째 등재되는 인물은 호의 대표자로 간주된다. 성명 앞에 관직이나 군역軍役과 같이 국가 공공업무와 관련한 '직역職役'이 기재된다. 성명 뒤에는 나이와 출생년 간지干支, 본관本貫을 기재한다. 이어서 '사조四祖'가 기록된다. 사조는 당사자의 부·조·증조라는 부계 직계선조 3명과 모측의 외조 1명을 말한다. 호에 현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본인에게 닿기까지의 계보 기록이다. 이들 각각에는 직역과 성명이 기재되는데, 외조에게는 성姓과 본관이 더해진다. 서민으로 사조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만 써도 된다.

다음으로 '처妻'가 등재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역이 기재되지 않고 '김씨'와 같이 성씨 뒤에 이름 대신 신분을 드러내는 호칭이 기재된다. 사족士族 여성은 '씨氏'를 호칭으로 사용하고, 일반 양인良人 여성은 '조이召史, 助是'를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 나이와 출생년 간지, 본관, 사조 등의 기재 양식은 남편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음으로 솔거率居하는 자식을 '자子' '녀女'로 구분하여 등재하는데, 이름과 나이 그리고 출생년 간지가 쓰인다. 주註에 혼인한 딸의 사위가 있으면 본관을 더한다고 되어 있다. 혼인 직후 처가에 머무는 관례를 반영한 듯하다. 끝으로 솔거하는 노비奴婢와 고공雇工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 나이, 출생년 간지를 기록한다.

호 구성원에게 신분과 직역을 기재하는 것은 중국 고대국가의 호적에서 연유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호구단자 | 가로54 세로4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의 호적에는 중국 고대국가에 있던 양천 신분제와 군역제도가 존속되었다. 더구나 호의 대표자 부부에게 각각 사조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호적에 고유한 기재 양식이다. 현재의 신분 및 직역 기재에서 더 나아가 선조들의 역대 혼인관계로부터 본인의 신분적 연원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호의 구성은 혈연 가족만이 아니라 노비 및 고공과 같은 비혈연의 가족도 포함된다. 호적에 등재되는 호를 '주호主戶'라 하고, 호적에 등재되지 않지만 주호의 관리 대상으로 존재하는 호를 '협호夾戶'라 한다. 주호는 복수의 가족을 대표하여 호적의 원호原戶로 등재됨으로써 부세와 직역 부담의 책임을 진다. 국가는 호의 대표자를 통해 혈연 가족과 여러 비혈연 가족을 관리하도록 호를 편제한 것이다.

호구단자가 제출될 때는 거주지역을 명기하지만 통·호수를 쓰는 자리를 비워 둔 채로 제출된다. 호구조사를 할 때마다 통·호수를 재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面·리里 단위의 호구조사에서 호적에 새롭게 승호陞戶되거나 이전의 호적에서 낙호落戶로 탈락되는 과정을 거친다. 제출된 호구단자의 호가 호적의 원호로 등재된다 하더라도 호의 구성원이 가감되는 과정을 거친다. 호적에서 제외되는 자는 지우고 새롭게 등재되는 자는 호구단자 위에 첨가 기록된다. 호적에 기재될 자에게 점을 찍어 호 단위로 구성원을 집계하는데, 남성의 직역職役과 여성의 신분별 통계를 나이 구분에 따라 기록한다. 나이 구분은 60세 이상을 '노老', 16~59세를 '장壯', 15세 이하를 '약弱'으로 하였다.

가령 '유학幼學' 직역자職役者로 나이가 16~59세에 해당되는 자가 한 명이면 '유학幼學 장일壯一'이라 기록한다. 어머니가 사족 여성으로 60세 이상이고 처도 사족 여성으로 16세와 59세 사이에 있으면 '부녀婦女 노일老一 장일壯一'이라 기록한다. '유학'은 과거 준비를 빌미로 군역이 임시 연기된 자를 말한다. '부녀'는 혼인한 사족 여성을 가리키는데, 호적에는 사족 여성에게 이름을 쓰지 않고 김씨와 박씨처럼 '씨氏' 호칭을 기재한다. 평민 여성에게는 '조이召史'라는 호칭을 쓰고, '양녀'로 분류한다. 호 구성원으로 솔거하는 노비가 있는 경우에는 '노奴' 몇 명, '비婢' 몇 명이라 기록한다. 호 단위 통계는 면·리 단위의 호구 총수와 직역 및 신분별·연령별 총수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호구단자가 제출되면 면·리 단위로 호와 구성원을 가감한 다음 호적에 올라갈 호와 구성원들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적어 통·호수를 결정하는 '통기統記'를 작성한다. 구성원이 가감된 호구단자에 비로소 정해진 통·호수를 기입하여 면·리 단위로 모아 일률적으로 기재한 것을 '면중초面中草'라 한다. 모든 면의 중초를 모아 일률적으로 옮겨 적어 군·현 단위의 호적대장이 작성되는 것이다.

호적 작성 과정에서 호구단자에 구성원을 가감하고 정해진 통·호 번호를 적어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호적대장에 기재될 사항 그대로의 내용으로 수정된 것이므로 이것도 준호구라 할 수 있다. 호구단자이면서 동시에 준호구인 셈이다.

특징 및 의의 호구단자는 주소인 통·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채로 제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의 정해진 호구 총수에 맞추어 일부의 호구만을 선별적으로 호적 장부에 등재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호구 조정이 완료된 뒤에 통·호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군역 운영 및 재정과 관련하여 호적장부에 호구의 출입을 조정하는 일은 이해관계에 얽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호구조사를 통해 개별 호구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조선후기 평민가문의 준호구를 통해서 본 신분변동 양태(임학성, 한국

학연구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7),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권내현, 대동문화연구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호적(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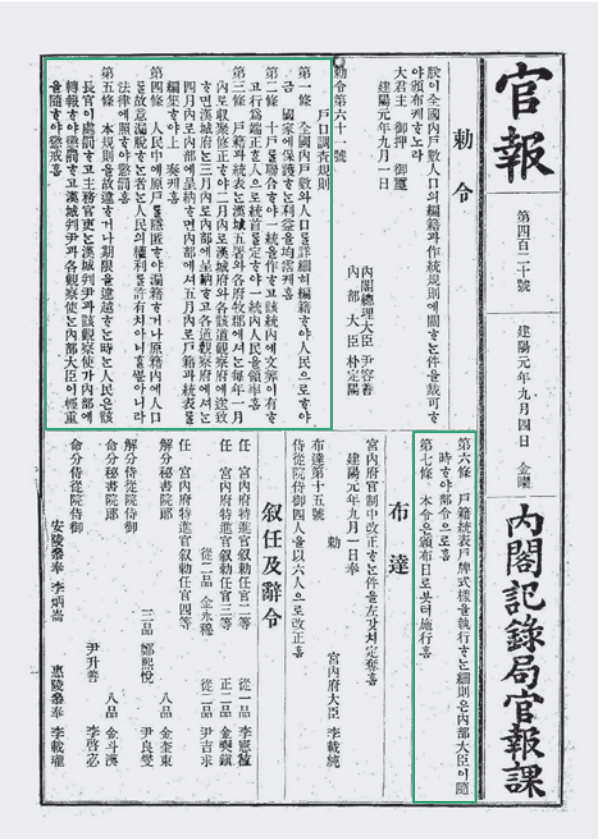
필자 손병규(孫炳圭)

호구조사규칙
戶口調査規則

정의 1896년부터 1908년까지 1년에 한 번 전국 호적을 편성하도록 한 '신식호적' 또는 '광무호적' 제도의 근거 법령.

역사 조선 후기에는 3년에 한 번, 자子·묘卯·오午·유酉 간지가 되는 '식년式年'마다 전국 호적대장을 새로 편성하였다. 집집마다 '호구단자戶口單子'에 주인 부부의 성명, 나이, 직역職役, 부·조부·증조부·외조부 4조四祖, 동거가족과 거느린 노비 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과거 기록과 대조하고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에 따른 통統·호戶를 새로 매겨 군·현별 호적대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호적의 인구 파악률은 50%도 되지 않았다. 예컨대 1925년 이래의 센서스Census(인구주택총조사) 인구로부터 역산하면 1890년대 초의 인구는 1,5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1891년 호적으로 파악된 인구는 약 663만 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조선 후기 호적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인구가 아니라 국가에 필요한 군역軍役과 요역徭役 등 부세賦稅를 담당할 '원호原戶'를 파악하는 장치였던 데다 18세기부터는 부세 공동납共同納이 관행처럼 되면서 호적은 명목상의 장부[虛簿]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령 국가가 군정軍丁 한 명 한 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정해서 역을 지는 부담과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군역을 운영할 수 없다면, 게다가 많은 양반 인구가 군역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차라리 군역을 군포軍布나 호포戶布 형태로 모두에게 부담시키는 편이 낫다. 이때 국가는 군·현별로 부세 총액인 호총戶摠만을 정해 주면 군·현에서 그것을 면·리별로 배분하고, 면·리에서는 각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 부담을 집집에 나누는


官報
第四百二十號 建陽元年九月四日 金曜
內閣記錄局官報課
勅令
勅令第六十一號
戶口調査規則
第一條 全國內戶數와人口를詳細히編籍호야人民으로호야금 國家에保護호는利益을均霑케홈
第二條 十戶를聯合호야一統을作호고該統內에文弊이有호고行爲가端正호人으로統首를定호야一統內人民을領率홈
第三條 戶籍과統表는漢城五署와各府牧郡에서는每年一月內로收聚修正호야二月內로漢城府와各該道觀察府에送致호고觀察府에서는二月內로漢城府와各道觀察府에서는四月內로內部에呈納호고各道觀察府에서는五月內로戶籍과統表를編集호야上奏判홈
第四條 人民中에原戶를隱匿호야漏籍호거나原籍內에人口를故意漏脫호者는人民의權利를許치아니홈이아니라法律에照호야懲罰홈
第五條 本規則을故違호거나期限을逾越호는時는人民은該長官이處罰호고主務官吏는漢城判尹과該觀察使가內部에稟報호야徵罰호고漢城判尹과各觀察使는內部大臣이修正或革職홈
內閣總理大臣 尹容善
內部大臣 朴定陽
建陽元年九月一日 勅
第六條 戶籍統表戶牌式樣을執行호는細則은內部大臣이隨時호야部令으로홈
第七條 本令은頒布日로브터施行홈
布達
布達第十五號
宮內府官制中改正호는件을左又처完案홈
建陽元年九月一日奉 勅
宮內府大臣 李載純
侍從院侍御四人을以六人으로改正홈
叙任及辭令
任 宮內府特進官叙勳任官二等 從一品 李寶鎔
任 宮內府特進官叙勳任官三等 正二品 金嬉鎭
從二品 金永韓
從二品 尹吉求
任 宮內府特進官叙勳任官四等
解分秘書院郎 三品 鄭鳳悅
八品 金奎東
解分秘書院郎 尹良燮
侍從院侍御
命分秘書院郎 八品 金斗漢
尹升善 李啓宏
命分侍從院侍御
安陵參奉 李炳嵩
惠陵參奉 李載權

호구조사규칙 | 1896.09.04 | 관보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것이 공동납이다. 호총을 맞추는 한에서 면·리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집은 빼 주거나 두 집 명목으로 세 집에 부담을 나눌 수도 있었다. 나름의 합리성과 정의正義에 근거한 제도였지만 갑오개혁 이후 더 정확한 인구와 세원 파악이 요구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호구조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내용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 〈호구조사규칙〉으로 새로운 호적제도가 시행되었다.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고종高宗과 왕세자가 러시아공사관에 피신[아관파천俄館播遷]해 있던 상황이었다. 고종이 경운궁(현 덕수궁)으로 환궁하여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光武' 연호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이듬해 8월부터지만, 보통 이 새로운 호적제도를 '신식호적' 또는 '광무호적'이라고 부른다.

조선시대 호적은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호조戶曹 소관이지만 조선 후기에는 한성부漢城府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비해 신식호적은 갑오개혁으로 새로 만들

어진 '내부'의 사무로 규정되었고, 부세 징수보다는 인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호적제도의 존재 이유로 내세웠다. 또 조선 후기에 호적은 3년마다 편성하였지만 신식호적은 매년 편성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호구단자는 집마다 종이를 마련하였으므로 조상이 높은 벼슬을 지내고 가족과 소유 노비가 많은 집은 큰 종이를, 빈한한 집은 작은 종이를 썼다. 이러던 것을 신식호적은 최초로 관官이 '표' 형태로 인쇄한 호적표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양식에다 신고 내용을 채워 넣게 하였다. 관직과 군역을 중심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개인의 직분을 쓰게 하였던 '직역'도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노비질奴婢秩'이라 해서 호구단자에 소유노비는 물론 오래전에 도망한 노비까지 수십 명을 적어 두기도 하였지만,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도와 신분차별이 철폐된 뒤의 신식호적에는 '기구寄口'와 '고용雇傭'이라 해서 더부살이하는 사람을 남녀별 숫자로만 기재하게 하였다. 가옥에 대해 소유[己有]·임대[借有], 초가·기와, 크기[間] 등을 적게 한 것도 새로운 제도였다. 전통적 오가작통 대신 열 집을 한 통으로 묶는 십가작통제十家作統制를 도입하고 몇 통 몇 호라는 통·호 번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집마다 '호패戶牌' 즉 문패를 달게 하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특징 및 의의 신식호적제도는 많은 혁신을 도입하였지만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이후 정치적 혼란과 지방 행정력의 부재, '단발령' 같이 성급하게 도입된 신식제도에 대한 인민의 이해 부족과 반발 속에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 공동납의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신식호적제도로 조사된 1897년 인구는 1891년보다 훨씬 줄어 5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1900년대 중엽까지도 호적 인구는 600만 명을 밑돌았다. 결국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매년 호적을 새로 편성하게 해서 오히려 인민에게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고종의 강제 양위로 일본 세력이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한 뒤 1909년 4월 1일부터 〈민적법〉이 시행됨으로써 신식호적제도는 일본의 근대 호적제도에 가까운 '민적民籍' 제도로 대체된다.

참고문헌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서호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9세기 말~20세기 초 신호적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고찰(이유진, 규장각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19세기 말 호적자료를 통해 본 안동 주민의 제모습(임학성, 진단학보98, 진단학회, 2004), 명치호적과 광무호적 비교연구(손병규, 태동고전연구2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8).

필자 서호철(徐浩哲)

호적
戶籍

정의 치안과 재정을 위해 인민을 가족 단위로 파악한 기본 대장.

내용 호적戶籍은 지배영역하에 있는 인민에 대해 가족을 호戶로, 가족구성원을 구口로 설정하여 실시하는 호구조사의 결과물이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秦에서 호적이 발견되었다. 정복된 모든 지역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위하여 호구조사가 시도된 것이다. 이어서 건국된 한漢나라를 비롯하여 이후 통일된 왕조들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호적 자료는 『낙랑군 호구부樂浪郡 戶口簿』이다. 한반도에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면서 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한국과 일본의 고대국가에서도 호적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호적에는 호를 단위로 호의 대표자와 개별 구성원들이 기재되는데, 각자 호주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직역職役 및 신분과 성명·나이·출생연도 등이 기록된다. 직역은 관직이나 군역軍役과 같은 국가 공공업무 관련 사항을 말한다. 호의 구성원에는 호주의 혈연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며, 노비奴婢·고공雇工·보인保人과 같은 비혈연 구성원도 포함된다. 호로 구성되는 가족이 혈연관계로 한정되지 않는 것도 호구 자체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편제되었음을 의미한다.

개별 인적 사항이 기록되는 호적과 함께 현존하는 호적 자료에는 '호구부'가 있다. 호구부는 호구조사를 실시한 지역마다 호구 총수를 기록한 장부이다. 고대

국가는 지방통치를 집권화하기 위한 지방행정체계로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였다. 호구부는 국가가 호구조사 당시의 행정구역별 호구 총수를 파악함으로써 부세와 징병을 지역별로 할당하고자 작성된 장부인 셈이다.

한국 고대사회에 호구조사가 실시된 사실은 역사서와 금석문金石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에는 지역별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의 총수가 기록되어 있다. 묘를 지키는 임무를 띤 호를 지역마다 할당한 수치이다. 중국 역사서인 『수서隋書』에도 고구려는 호를 상차하上次下 3등급으로 나누어 호세를 차등적으로 납부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고구려는 매년 상반기에 관곡官穀을 내어 백성 가구家口의 다소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대賑貸하되 추수 후 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호구조사는 징병이나 부세 징수만이 아니라 춘궁기에 종자와 식량을 대출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백제도 호구조사를 전담하는 '점구부點口部'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람에 따라 곡물의 대여와 회수 여부를 기록한 목간木簡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신라의 호적 자료로는 '신라장적新羅帳籍' 혹은 '신라촌락문서'라 명명된 일종의 호구부가 현존한다. 신라 서원경西原京 4개 촌村의 호구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촌 단위의 행정구획마다 소속 군·현과 촌명, 촌의 형세, 촌역의 둘레 등을 촌의 현세現勢로 기록한 뒤 호구와 토지 및 기타 재원財源을 집계한 수치를 기재하였다. '연인烟人'이라 하여 호를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호수를 제시하고, 해당하는 등급마다 구성인원 총수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촌의 토지 전답田畓과 마전麻田의 면적, 우마牛馬의 수,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 등 나무의 합계도 제시되어 있다. 호구수 합계와 더불어 수치 증감도 기록하였다. 이는 정기적으로 호구조사가 실시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왕조도 건국 후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곧바로 호구조사를 시행하였다. 『고려사高麗史』의 '호구조戶口條'에는 나이 16세가 되면 '국역國役'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60세에 면역되는데 지방 군·현에서 매해 호구조사를 하여 호부戶部에 바치게 하고, 모든 징병과 조역調役을 호적에서 정한다고 하였다. 호의 편제는 직역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는 원리에 따라 직역이 없는 자에게 주인 없는 토지를 나누어 주어 호를 세우게 하고 군역을 부과한다는 '입호충역立戶充役'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고려시대 호적에는 중국의 호적과 달리 호구기록 이외에 토지 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시점에서 호구와 토지에 대한 조사가 분리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 개별 인적 사항이 기재되는 호적은 13세기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비록 족보의 부록에 계보를 증빙하는 자료로 기재된 것이기는 하나 호적의 원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의 호적에는 토지에 관한 기록이 없어진 대신 송대 호적에서 사라진 노비奴婢 신분과 '직역職役'이 지속적으로 기재되었다. 송대에는 양천良賤 신분제도를 소멸시키고 전문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을 농민으로부터 거두는 '병농분리兵農分離' 제도를 확립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신분제에 기초한 '병농일치'의 군역제도가 관철되었다. 또한 중앙관리로서의 '양반兩班', 지방관리로서의 '향리鄕吏'와 같은 지배적 계층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법적 보장을 받고 있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호적에 가장 독특한 기재양식은 호의 대표자 부부에게 각각 '사조四祖'가 기재된다는 점이다. '사조'란 부·조·증조·외조라는 네 명의 선조를 말한다. 부모 양측의 선조 계보가 각자의 신분 및 직역과 함께 기록되는 것은 부부 각자의 신분적 계통을 증빙하기 위함이다. 부모의 어느 한쪽이라도 낮은 신분을 가지면 상층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신분제의 특징을 나타낸다. 신분적 계통에 관한 정보는 혼인과


志卷第三十三　高麗史七十九
食貨
戶口
國制民年十六爲丁始服國役六十爲老而免役州郡每歲計口籍民貢于戶部凡徵兵調役以戶籍抄定　仁宗十三年二月判京大小人貧子弟謀避徭役各於本貫親戚戶籍類付以致名實混淆自今京人付外籍者痛禁　忠烈王五年九月分遣計點使於諸道初都評議使司言大祖奠五道州郡經野賦民皆有恒制近來兵釐相仍倉儲懸磬橫斂重於常貢逋戶累其遺黎是宜計戶口更賦稅以革姑息之弊由是累發計點使而未見成効及東征之役發民爲兵故復有是命　十八年十月敎曰諸道之民自兵興以來流亡失業在元王巳巳年計點民戶更定

호구조 | 고려사 | 가로21 세로34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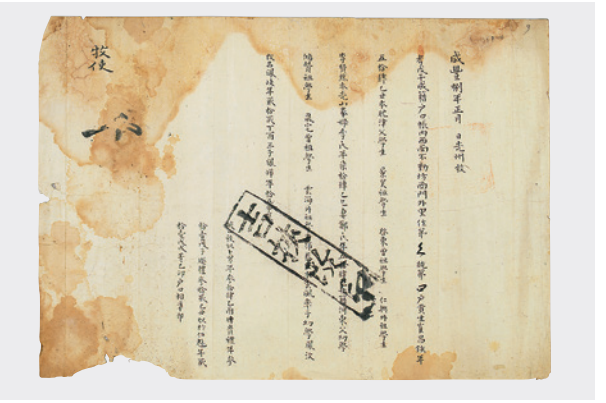
더불어 교환되어 호의 성립과 동시에 호적에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세기의 호적에는 이 사조 선조들 각자의 사조 기록이 번잡하게 기록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소위 '팔조호구八祖戶口'라 하는 이러한 기록은 관리 임용과 승진을 위한 신분 증빙 자료로 제출되었다. 선조들의 선조들을 번다하게 기재하여 계통적으로 신분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현상은 귀족적 신분제가 흔들리는 고려 말기 상황을 시사한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사조 기재를 4명만으로 제한한 15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번잡한 선조 기재는 지속되었다. 조선왕조는 고려왕조의 양반 및 향리와 군관 등에게 주어졌던 토지 징수권을 제한하여 귀족제를 소멸시켜 갔다.

한국은 15세기 중엽에 비로소 민간 족보族譜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중앙관직을 거친 자이거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여러 성씨의 인물들이 기재되었다. 호적이라는 공문서를 통해 귀족적 신분임을 국가로부터 보증받던 특권이 제한받자 이러한 신분제 변동에 대응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호구조사는 전국적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나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실록實錄』에 전국 규모의 호구 총수 기록을 몇 개 남기지 않았다.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볼 수 있는 호적 자료는 17세기 이후에 나타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전 수준으로 호구 파악 능력을 회복시켜 17세기 후반에 조선 전기의 파악 수준을 능가하는 호구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18~19세기를 통해 확보된 전국 규모의 호구 총수는 일정 수준에 머무르거나 낮게 고정되는 현상을 보인다. 전국 규모의 호구 총수는 대한제국 때 감소하였다가 191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조선 후기 호적 자료는 군·현 단위의 '호적대장戶籍大帳'으로 현존한다. 군·현의 호적장부는 한 면이 1*m*를 넘는 거질巨帙의 책자로 3~4부 작성되어 한성부漢城府와 감영에 보고되고 군·현에 보관되었다. 국가의 인민 파악이 갖는 권위를 '대장大帳'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호적대장은 17~19세기를 거쳐 대구부·울산부·단성현 지역에 대량으로 남아 있을 뿐



준호구 | 가로52 세로37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이며, 같은 영남지역의 산음현·상주목·언양현 지역에는 소량의 호적대장이 현존한다. 제주 대정현에도 다량의 호적장부가 현존하지만 19세기에 편중되어 있다. 기타 한성을 비롯한 타 지역에도 여러 시기에 걸쳐 작성된 호적장부가 산발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호적대장에 지방의 모든 주민이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호구조사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신고주의'에 의거하나 지방행정 말단에서 재편되는 과정을 거친다. 호구조사는 우선 주민이 통統과 호戶를 쓰는 자리를 비워 둔 채로 호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적어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제출한다. 호구조사 담당원은 관례적인 지역의 호구 총수를 고려하며 호와 구성원을 가감시키고, '통기統記'를 작성하면서 통·호 순번과 호적에 올라갈 호구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동리별 통·호 순으로 호적을 기록한 것을 '면중초面中草'라 한다. 다시 모든 면의 중초를 모아 일률적으로 옮겨 적어 군·현 단위의 호적대장이 작성된다.

면중초에 등재되는 호구수는 왕년의 호적에 준하여 면·리의 호구 총수에 큰 변화 없이 가감되는 것이 관례인데 호적에 등재되는 승호陞戶와 등재에서 빠져나오는 낙호落戶를 정하고 구수口數를 가감하는 일은 재정 및 군역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지역의 행정 말단에서는 이미 '가좌책家坐冊'이라는 자료로 가족 구성원과 경제 상황이 파악되고 있었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감당할 부세와 직역에 맞추는 복잡한 원리에 따라 호적에 등재될 호를 편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적에 등재되는 호를 '주호主戶'라 하고, 호적에 등재되지 않지만 주호의 관리 대상으로 존

재하는 호를 '협호夾戶'라 한다. 주호는 복수의 가족을 대표하여 호적의 원호原戶로 등재됨으로써 부세와 직역 부담의 책임을 진다. 호의 대표자를 '주호'라 부르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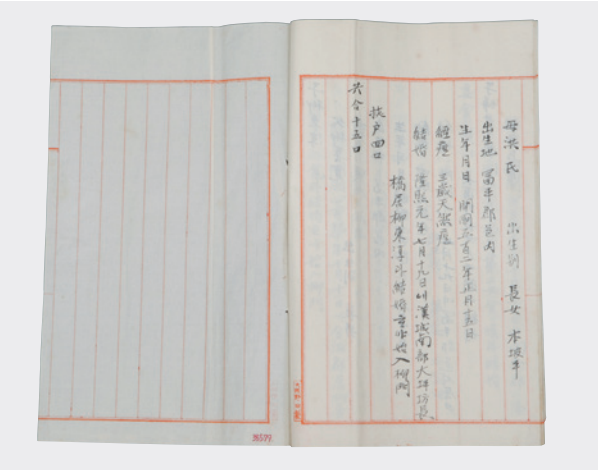
군·현의 호적대장에는 면·리별로 호구가 기재된 뒤 사찰 승려의 호적이 기재된다. 이어서 해당 군·현 내외로 이동한 '이래이거移來移去'의 호가 기재된다. 끝으로 '도이상都已上'이라 하여 군·현 전체의 통호 총수, 남녀 총수, 전식년 대비 호구수의 가감 등과 함께 신분 및 직역별 통계가 기재된다. 일종의 '호구부' 자료인 셈이다. 군·현의 호적대장이 상부에 보고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호적 본문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이 도이상의 통계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호구정책을 시행하였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군역 정액화 사업 과정에서 군·현별 양인 군역자 총수를 『양역실총良役實摠』으로 공표하였는데, 해당 지역의 군역자 수는 호적대장 말미의 '도이상'에 기록된 군역별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군역자 수가 군·현 단위의 '군총軍摠'으로 확정된 이후 호적 본문에서 집계되는 군역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지방관청은 군총에 맞추어 인적 재원財源을 상납하면 되었으며, 그 외의 호구 재원을 지방재정 수요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이후 호적상 신분 및 직역 기재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노비 감소와 더불어 '유학幼學'과 품직品職을 쓰는 자들이 증가한 일이다. 군역 부담의 반감 균일화 정책으로 속량贖良하는 노비가 늘어났다. 현실적으로 노비가 상전上典에게 바치는 신공身貢을 받기도 어려워졌다. 양반도 양인으로서 군역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자로 군역 부과를 연기하여 주는 '유학'을 획득할 필요가 있었다. 호적에 '유학'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군·현의 군역 운영이나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무언가의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하였다. 19세기 후반에 호적 도이상조의 '유학' 액수는 낮게 고정되었으나 호적 본문에는 계속 증가하였다. '유학'의 증가는 18세기 이후 양반의 사회경제적 하락과 평민의 양반지향 경향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대한제국은 새로운 방법으로 호구조사를 시행하였다. 주민이 호적표를 작성하면 지방행정기구의 호구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호구조사 강화에 따른 '호세' 징수의 증가를 꾀한 것이다. 그러나 '향회鄕會'에서는 파악된 호구의 일부만을 관례대로 보고하고, 그에 따라 지역에 할당되는 호세 총액은 모든 호에서 분담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제국기의 전국 규모 호구 총수는 예년에 비해 월등히 감소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정부는 부세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호구 파악을 강화해 갔다. 1909년에는 일본 '명치호적明治戶籍'에 준한 새로운 호적 작성이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이 '주민등록'처럼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현주지주의現住地主義' 호적임에 반해 일본 호적은 호 구성원이 이주해도 연장자 남성이 호주로 있는 본적지의 호에 계속 등재되는 '본적지주의本籍地主義' 호적이었다. 1925년에 근대적인 인구센서스가 시행되었지만 혈연관계로 개별인신을 파악할 수 있는 식민지 호적은 유지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호적에 근거하여 개별인신의 신원조회와 연좌제가 감행되었다. 호주 승계에 여성이 후순위로 밀려 있던 호주제가 2008년에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식민지적 호적은 사라지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호적은 중앙집권적 통치를 위한 전국적 호구조사의 결과물이다. 지방행정구역 단위로 집계된 호구 총수는 부세와 징병을 할당하는 기본 자료가 되었다. 일원적인 인민 파악은 군현제로 지방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집권적인 재정체계를 수립한 동아시아의 고대



호적초고 | 가로16 세로23 | 대한제국 | 국립민속박물관



호구총수 | 가로22 세로33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가에서부터 시도되었다. 중앙집권적 통치방법은 이후에 통일된 왕조국가에 수용되었고, 이는 동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다. 특히 조선왕조는 호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중앙집권적 통치체계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유난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호적의 특징은 토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대신 중국 호적에는 사라져 버린 신분 및 직역職役이 계속 기재되었다는 점이다. 전문군대를 편성하지 않고 양천良賤 신분제에 기초하여 병농일치의 군역제도를 지속시킨 것은 조공체제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재정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18~19세기 전국 규모의 호구 총수가 일정 수준으로 하향 고정화된 정치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18세기 후반에 군·현별 호구 총수가 고정되자 호구 재원에 대한 지방관청의 운영권이 높아졌다.

대한제국기에는 호구조사에 기초하여 중앙에서 호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중앙집권적 호구정책을 강행하였으나 호구조사의 자율성을 박탈당한 지방사회의 반발을 샀다. 호구조사를 지방사회에 위임하면서 중앙집권화를 실현하려는 이원적 호구정책을 방기한 결과였다. 개별인신에 대한 국가의 장악은 개인의 자율적인 사회활동을 구속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13~16세기 호적과 족보의 계보형태와 그 특성(손병규, 대동문화연구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단성 호적대장 연구(호적대장 연구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조선후기 호적 호의 편제와 성격(정진영, 대동문화연구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조선후기 호적대장 호구차정 원리(김건태, 대동문화연구11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호구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김건태, 대동문화연구4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호적(손병규, 휴머니스트, 2007).

필자 손병규(孫炳圭)

호적법
戶籍法

정의 1960년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시행된, 가家를 단위로 그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하나의 장부에 모아서 등록·공시하게 한 법률.

역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 일제의 사주에 의해 '민적民籍'제도라는 이름으로 일본식 호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고, 1923년 7월 〈조선호적령〉 시행으로 민적제도는 '호적'제도로 개편되었다. 친족과 상속에 대한 조선의 관습이 일본과 달랐으므로 조선의 호적제도도 일본의 것과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1940년 2월에 서양자壻養子(결혼과 함께 사위가 처가의 양자가 됨)·이성양자異姓養子 제도가 도입되고 '창씨개명創氏改名('일본식 성명 강요'의 전 용어)'이 강제되어 일본식 제도가 거의 관철되었다.

광복 이후로도 한참 동안 일제강점기의 민사법령을 대체할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였다. '창씨개명'은 1946년 10월 〈조선성명복구령〉으로 원천무효가 되었지만 그것을 제외한 일제강점기의 〈조선민사령〉과 〈조선호적령〉은 '조선'이라는 말만 뗀 채 광복 후에도 그대로 시행되었다. 한편 광복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었으므로 1948년 4월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북한에 본적을 두고 남한에 거주하는 자는 현재 거주지를 본적지로 한 '가호적家戶籍'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민법〉과 〈호적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1960년부터이다. 그러나 〈호적법〉의 내용이나 호적부 양식은 일제강점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후 〈호적법〉은 10여 차례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2007년까지 시행된다.

내용 근대 민사법은 법률적 행위의 주체인 사람의 존재와 자격 역시 법률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면(〈민법〉 제3조) 그 생존의 시작과 끝인 출생과 사망,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혼인·이혼과 입양 등은 의례나 친족·이웃의 인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적 효력을 갖는 서류에 등기됨으로써 증명되어야 한

다. 프랑스 혁명 이후 서구 국가들은 개인의 출생·결혼·사망을 사건별로 관청에 등기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건별·개인별 등록 대신 남성 호주의 직계가족인 '가家(호)' 구성원 모두에 대한 사항을 하나의 장부에 기입하는 호별 등록 방식을 택하였다. 그것이 '호적こせき(고세키)'이다.

이러한 근대 일본 호적제도의 큰 틀을 물려받은 대한민국의 제정 당시 〈호적법〉은 8개 장과 부칙까지 모두 143개 조로 되어 있다. 제4장 신고에서는 출생, (사생자)인지認知,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친권 및 후견, 사망과 실종, 호주상속, 입적과 복적, 일가창립, 분가·폐가와 무후가無後家, 분가·폐가와 무후가의 부흥,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개명改名, 전적轉籍과 취적取籍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조선호적령〉과의 큰 차이는 국적 관련 규정이다. 개인의 국적을 등기·증명하는 문서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호적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조선인의 국적 이탈을 우려하여 조선에는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호적령〉에는 국적 관련 조항은 없었다.

특징 및 의의 호적제도는 행정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장치였지만 그것이 '가족'의 유일한 규범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호적제도의 '가(호)'란 메이지유신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호주 중심 직계가족 모델이다. 가(호)는 항상 남성 호주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가족'은 호주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이런 호주제는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와 혼동되고, 성관姓貫과 관련된 친족의 상상과 결합하면서 한층 더 강고한 질곡이 되었다. 남성 호주제는 양성평등에 위배되고 남아선호를 부추겼으며, 결혼과 가족의 변화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았다.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였다. 국적 역시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국민 여부만을 문제 삼았다. 호주가 사망하면 태아라도 자녀가 아내보다 우선해서 호주를 상속하였다. 증가하는 이혼·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친부모 중 누구와 동거하는지와 무관하게 친부의 호적에 남겨지거나 성이 다른 양부의 호적에 '친족이 아닌 자'로 등록되어야 하였다. 본인의 신고에 따라 기재되어 실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호적상의 '동성동본同姓同本'을 모두 근친으로 보아 금혼禁婚 대상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정작 일본에서는 194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었는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호주제를 우리의 '전통'이라고 인식하였다.

1980년대 이래 〈호적법〉은 이런 모순점에 대한 임시처방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였으나 오랜 사회적 논란 끝에 결국 동성동본불혼은 1997년, 호주제는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2005년 3월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므로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법〉 역시 폐지되어야 하였지만 대안적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2005년에는 혼인신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재혼가정 등의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여성은 이혼 후 6개월의 재혼 금지기간을 두었던 것을 폐지하는 등의 〈민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서 우선 〈호적법〉을 개정하였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호적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참고문헌 제국의 유산(정지영, 내일을 여는 역사13, 재단법인 역사와 책임, 2003), 호적제도의 변천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고찰(정현수, 가족법연구20-2, 한국가족법학회, 2006),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양현아, 한국사회학36-5, 한국사회학회, 2002).

필자 서호철(徐浩哲)

호적부
戶籍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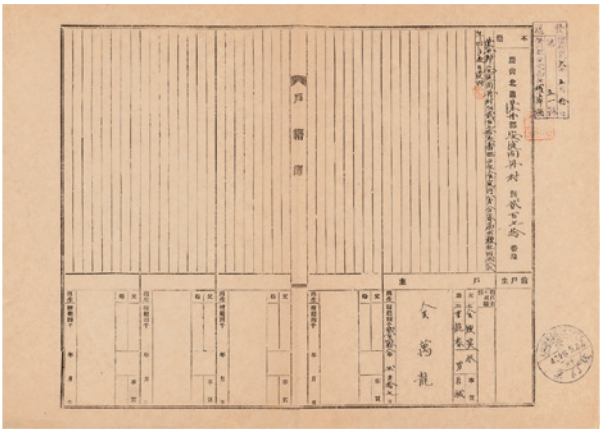
정의 1910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 호적제도 아래에서 호주의 직계가족으로 정의된 '가家' 구성원의 출생·사망·혼인·입양 등의 신분관계 변동을 하나의 영구문서에 모아 등록한 장부.

역사 1909년 일제의 사주로 〈민적법〉(1909. 3. 4. 대한제국 법률 제8호)이 제정되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전국 '민적부民籍簿'가 편성되었다. 이름

은 다르지만 이 민적부가 일본식 호적제도에 따른 한국 최초의 호적부戶籍簿이다. 민적부와 이후의 호적부는 양식과 기재사항이 거의 같다. 1923년 7월 〈조선호적령〉 시행으로 민적제도는 호적제도로 개편된다. 기존 민적부는 그대로 호적부로 사용되었다. 1940년 2월부터 조선의 전통과 전혀 다른 서양자壻養子(결혼과 함께 사위가 처가의 양자가 됨)·이성양자異姓養子 제도가 도입되고, '창씨개명創氏改名('일본식 성명 강요'의 전 용어)'이 강제되었다.

이 '창씨개명'은 1946년 10월 미군정법령 〈조선성명복구령〉으로 원천무효가 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일제강점기의 〈조선민사령〉과 〈조선호적령〉은 '조선'이라는 말만 뗀 채 광복 후에도 그대로 대한민국 법률처럼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민법〉과 〈호적법〉이 제정·시행된 것은 1960년부터이다. 그러나 "호적은 시·읍·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한다(제8조)."라는 〈호적법〉의 내용은 거의 일제강점기의 호적제도 그대로였다.

이후 가족의 의미 변화, 양성평등 의식 강화, 이혼·재혼 증가 같은 시대적 변화와 맞지 않는 호적제도의 남성 호주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오랜 논란 끝에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호적제도를 폐지하는 데는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결국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호적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호적부 | 가로39 세로28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호적부에는 먼저 가(호)의 가상 소재지인 '본적'과 '전前호주'를 적는다. 대개는 호적부를 처음 만들 때의 거주지를 본적으로 하지만 가(호) 자체가 실제 주택이나 구성원의 동거 여부와는 무관한 개념이므로 본적은 국토 안 어디에든 둘 수 있다. 한 예로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일도 가능하였다. 이어서 호주와 그 '가족'에 대해 호주와의 관계, 각자의 친부모, 성별, 본(관),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적고, 출생·사망·혼인·입양 등 각자의 신분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이 있을 때는 위쪽 '사유'란에 기록한다. 기존 가족은 호주,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순으로 기재하고, 호적부를 만든 뒤 혼인·출생 등으로 구성원이 추가되면 맨 뒤에 덧붙인다. 구성원 중 누가 사망하거나 혼인으로 차남 이하 아들이 분가하거나 딸이 다른 가(호)에 입적하게 되면 그 사유를 적고 이름 위에 삭제 표시를 한다.

호적부는 2부를 작성하여 정본은 시청·구청과 읍·면사무소에, 부본은 감독법원에 비치하였다. 호적부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를 복사한 등본謄本이나 필요한 부분만 복사한 초본抄本을 발급받거나 호적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 광복 이후로도 내내 일제강점기와 같은 형식의 호적부가 사용되다가 1970년부터 가로쓰기가 도입되고 1980년대 말부터 호적의 한글 기재, 타자 기록과 전산화가 추진되었다. 1991년부터는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와 그 독음讀音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통해 호적부의 특징을 짚어 볼 수 있다. 물질적으로는 종이로 된 원본 문서가 사라졌다. 개인의 신분관계 정보는 전산으로만 저장되어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러한 고정된 문서는 없다. 몇 가지 증명서 형태로 전산 정보가 조합되어 출력될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이지유신시대 일본에서 '가家', 일본어로는 '이에いえ'라고 불렀던 호주의 직계가족이라는 표준적 가족 모델이 사라진 점이다. 호적제도에서 호적은 늘 호주 아무개의 호적이었고 가(호)의 범위도 고정된 것이었다면 이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일정 범위의 혈연집단이다. 따라서 나와 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실린 가족의 범위는



호적부 | 가로20 세로27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같지 않다.

민적제도 이래 100년 가까이 일본식 호적제도가 시행되면서 호적상의 '가'가 가족의 유일한 규범적 형태이거나 호주제가 전통적 가부장제와 같은 것이라는 착각이 생겨났다. 그러나 '가족'은 혈연뿐만 아니라 동거와 가계家計의 공동, 애정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또 서양자제도나 창씨개명 실시의 정황에서 보듯 일본식 '가'가 한국 가족의 이상이나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기록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서구 사회들과 비교하면 가(호)별로 구성원의 신분등록을 집약한 호적부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였다. 또 신분등록 외에도 인구파악, 학령아동이나 징병대상자 관리 같은 주민등록과 대민행정의 기본장치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 변화로 호적제도와 호적부는 이제 역사의 유물이 되었다.

참고문헌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과제(정현수, 가족법연구22-3, 한국가족법학회, 2008), 제국의 유산(정지영, 내일을 여는 역사13, 재단법인 역사와 책임, 2003),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이승일, 역사비평사, 2008), 호적법 개설(정주수, 법률미디어, 2007).

필자 서호철(徐浩哲)

호적표
戶籍表

정의 1896~1909년 신식호적(광무호적) 제도의 시행에 따라 사용된 표 형식의 호적 양식, 또는 그 양식에 따라 작성된 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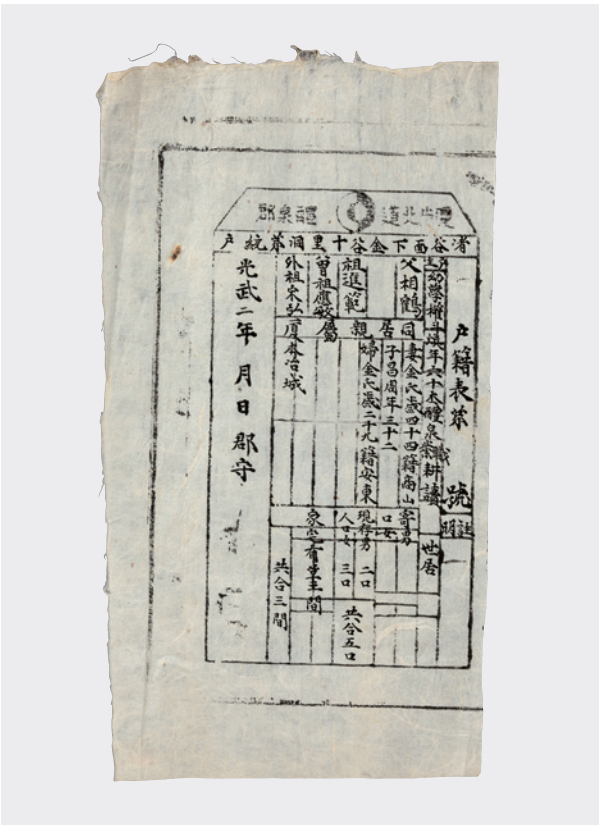
개관 조선 후기에는 3년마다 전국 호적대장을 새로 편성하였다. 집집이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에 근거해서 군·현별 호적대장을 만들고, 호적의 등본인 '준호구准戶口'를 발급하는 제도였다. 종래의 군역이 1971년 이래 호포戶布로 바뀌고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철폐된 뒤 1896년 9월부터는 칙령 〈호구조사규칙〉으로 1년에 한 번 인쇄된 호적표戶籍表 양식에 따라 호구를 조사하고 호적을 편성하는 새로운 호적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것을 '신식호적' 또는 '광무호적'이라 부르는데, 이때 처음 인쇄된 '호적표' 양식이 도입되었다. 또 전통적 5가작통五家作統을 10집을 한 통으로 묶는 10가작통제十家作統制로 개편해서 통표統表 한 장 뒤에 호적표 10장을 묶었고, 몇 통 몇 호라는 통·호 번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집마다 '호패戶牌' 즉 문패를 달게 하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1910년 이후 〈민적법〉에 따른 일본식 호적제도로 대체된다.

내용 조선시대 호적의 형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호구식戶口式에 정해져 있다. 서울은 부·방·리, 지방은 면·리까지 주소를 쓰고, 주인의 직역職役·성명·나이[年甲]·본관·4조四祖, 처의 성씨·나이·본관·4조를 적는다. '직역'은 관직과 군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수요에 충당할 개인의 직분이다. 과거를 준비 중인 양반이라는 뜻의 '유학幼學'도 군역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직역으로 활용되었다. '4조'는 부계·모계 양쪽으로 양천良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부·조부·증조·외조의 직역과 이름(외조는 성명과 본관)을 적게 한 것이다. 처의 경우 양인 여성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므로 양반은 '김씨', 평민은 '김조이金召史' 등으로 성과 호칭을 표시하였다. 노비·천민은 이름을 썼다. 이어서 함께 사는 자녀, 노비·고공雇工의 이름과 나이를 적었다. 특히 노비는 주인 입장에서 소유권 증명을 위해 적극 기재하였던 듯하다. 세력가에서는 호구단자에 데리고 사는 솔노비率奴婢는 물론 다른 군·현에 거주하는 외거노비, 한참 옛날에 도망간 노비의 이름까지 써 두곤 하였다.

1896년 9월 신식호적제도가 시행되면서 〈호구조사



호적표 | 가로21 세로33 | 대한제국 | 국립민속박물관



호적표 | 가로18 세로35 | 대한제국 | 국립민속박물관

세칙〉으로 호적표 양식이 정해졌다. 『경국대전』 호구식에서는 주인 부부가 동등한 형식으로 기재되었지만 호적표는 남성 가장을 처음으로 '호주戶主'라고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를 파악하였다. 호주의 처는 동거친속 중 한 명으로 격하되었다. 호주의 '직역' 대신 '직업'을 기재하게 하였는데 대개 '농農'이나 '상商'이라고 썼다. '4조'는 직역은 없이 이름만 겨우 쓸 정도의 난으로 두었고, '생부生父' 항목이 추가되었다. 호주의 동거친속은 호주와의 관계, 이름과 나이 정도를 적었다. 호주의 부모·형제·자손이라도 따로 사는 사람은 별도의 호적으로 편성해야 하였다. 다만 집과 의지할 곳이 없어서 친척·지인[知舊間]의 집에 얹혀사는 사람은 '기구寄口'란에, 또 머슴[雇工]이나 행랑살이·침모·식모 같은 고용인은 '고용'란에 남녀 인원수를 적게 하였다. 집마다 현존 인구수를 정확하게 조사하려는 의도였지만 기구·고용란에 이름과 나이도 없이 머릿수만 적게 하였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됐을지는 의문이다.

특징 및 의의 호적표는 가로 40㎝ 이상, 세로 30㎝ 이상, 대략 A3 용지 크기 종이에 좌우 두 벌을 인쇄하여 제작하였다. 호주가 양쪽 표에 똑같은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관에서 확인하여 한가운데에 '계인契印'을 하고, 반을 잘라 왼쪽은 호주에게 증명으로 발급하고 오른쪽은 묶어서 호적대장으로 사용하였다. 가운데 절취선 아래쪽 상자 안에 '지가 금4푼紙價 金四分'이라고 호적표 용지값을 표시하였다. '四'는 '肆'로 쓴 것이 많다. 조선시대 호구단자는 집집이 각자 준비하였던 반면 이제는 관에서 인쇄한 규격용지를 사서 쓰게 한 것이다. 표 양식은 군별로 검정·보라·파랑·빨강 등 다양한 색으로 인쇄되었고, 표의 세부가 조금씩 다른 것도 있다.

호적표의 또 다른 큰 특징은 '가택' 항목을 두어 소유[己有]·임대[借有], 초가·기와, 집의 크기[間] 등을 파악하고 또 이전 거주지[前居地]와 이사 온 날짜[移居月日]를 적게 한 것이다. 조선 후기 호적의 '호'가 혈연관계와 경제적 능력이 함께 고려된 단위이고 일제강점기 이래 일본식 호적의 '호'가 호주의 직계가족이라면 신식호적의 '호'는 주택과 그 주택에서 동거하는 사람들이다. 『인천항호적대장仁川港戶籍臺帳』(1898)에는 호적표는 없이 통표에 호주 이름과 '공가空家' '전방廛房'이라고 표시한 호가

있는데, 아마 살림집과 별도로 가게로 사용된 건물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서호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9세기 말~20세기 초 신호적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고찰(이유진, 규장각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명치호적과 광무호적 비교연구(손병규, 태동고전연구2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8), 한국근대상업도시연구(오성, 국학자료원, 1998).

필자 서호철(徐浩哲)

호주상속
戶主相續

정의 호주 지위를 부계혈통에 따라 승계하던 호주제하에서의 상속제도.

내용 1958년 제정 〈민법〉에 의하면 호주戶主의 지위는 사망한 전 호주의 아들—손자—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상속되었다. 부계혈통을 이어받은 남자 중에서도 적서嫡庶를 차별하여 혼인 중 출생자가 우선해서 호주가 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라 하더라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우선적으로 호주 지위를 승계하였다. 가령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혼인 외의 자로서 한 살 된 남자 유아가 있다면 그 아이는 호주의 딸이나 아내 혹은 어머니에 우선하여 호주 지위를 승계하였다.

유아라고 하더라도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호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조선시대 말까지도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조선시대 말까지는 '호주'라는 용어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호주라는 용어가 본격적인 법률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이며, 조선시대에는 호적대장에 기재된 각호의 대표를 '호수戶首'라고 칭하였다.

당시의 호수는 그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비교해 보건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호주제의 호주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였다. 조선시대의 호수는 단지 호구신고의 무를 부담하였을 뿐 어떠한 특권도 부여받지 않았다. 당시 호수인 남편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아내가 새로 호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



호주제 폐지 홍보 포스터 | 1984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아카이브

었으며, 유아가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호수 지위를 승계하는 상속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호주상속戶主相續'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전적으로 일제에 의해서이다. 일제는 일제식 가독상속제家督相續制를 강제로 이식하기 위하여 우리 고유의 상속제도인 제사상속과 재산상속 외에 난데없이 호주상속을 추가하여 조선에 3종의 상속제도가 있었다고 하면서 호주상속이 관습상 실재하였던 것으로 취급하였다.

가독상속家督相續은 본래 무사계급의 단독상속제에 기초한 것으로 장남이 호주권과 가산家産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함으로써 호주의 절대적 지배권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조선사회에서 관습상 존재하였다고 인정된 호주상속은 일본 메이지明治 민법상의 가독상속제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에 불과하였다.

일제는 1898년 메이지 민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호주의 권리·의무를 조선의 관습에 의해서 인정되는 호주의 권리·의무로 의제함으로써 호주권의 실체마저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장남은 호주상속에 의해

호주권과 함께 유산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었고, 호주상속에서는 남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었으므로 호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린 아들이나 손자가 호주권을 승계하여 호주가 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에게로의 상속은 균분상속이 원칙이었으며, 이러한 균분상속주의는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다소 변동을 겪게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제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나 호주제는 우리 〈민법〉에서 부활하였다. 즉 일제에 의해 도입된 호주상속제도의 기본구조는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전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우리 관습에 가장권의 상속을 의미하는 호주상속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 〈민법〉이 규정한 호주상속제도는 메이지 민법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호주상속제도는 부父로부터 장남과 장손으로 이어지는 부계 중심의 혈통계승의식을 제도화한 것으로,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 질서 확립이 그 목적이다. 부계혈통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는 호주상속제도는 필연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호주상속이 호주승계로 바뀌면서 몇 가지 개정이 수반되었으나 남자에 의한 부계혈통의 계승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호주승계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영구적으로 민법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가족법연구1(김상용, 법문사, 2002),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정구태, 법학논총24-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친족·상속법(김주수·김상용, 법문사, 2022),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구태, 동북아법연구8-3,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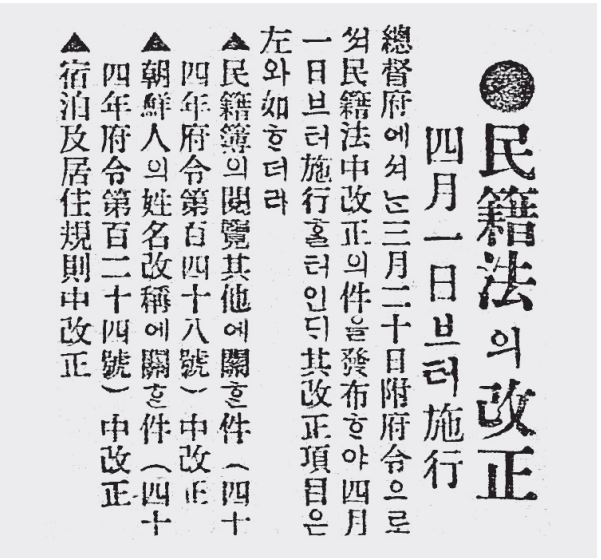
필자 정구태(鄭求兌)

호주제
戶主制

정의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유지하고, 이 '가'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하던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가' 제도.

역사 현실의 가족과 유리되고 관념화된 '가' 제도는 조선 말까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에 비로소 도입된 것이다. 고려시대의 호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세징수와 요역徭役 부과를 위한 기본자료였으므로 현실의 생활공동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신분을 밝히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하여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국가의 모든 제도가 근대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나 호적제도는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호구를 조사할 뿐 봉건적 신분 확인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1896년의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에 따라 변화된 호적제도도 현실생활공동체인 '호戶'가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었다.

호적제도는 일제강점기하에서 일제의 침탈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1909년에 〈민적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1915년 〈민적법〉을 개정하였는데, 이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인구조사 방식을 폐지하고 실제 거주 상태와 무관한 추상적인 '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호적은 더 이상 현실적인 공동생활관계를 반영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관념적인 '가'를 편제 단위로 하여 '가'에 속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의 성질을 띠게 되


民籍法의 改正
四月一日브터施行
總督府에서는三月二十日附府令으로
朝民民籍法中改正의件을發布하야四月
一日브터施行홀터인디其改正項目은
左와如하더라
▲民籍簿의閱覽其他에關한件(四十
四年府令第百四十八號)中改正
▲朝鮮人의姓名改稱에關한件(四十
四年府令第百二十四號)中改正
▲宿泊及居住規則中改正

민적법의 개정, 사월 일일부터 시행 | 1915. 03. 20 | 매일신문 |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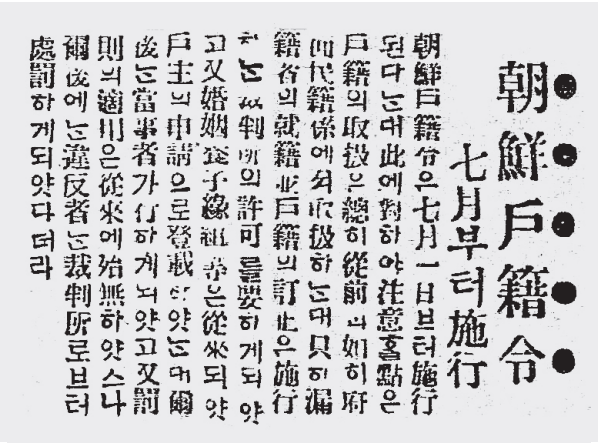
었다. '가' 제도는 봉건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1898년 메이지明治 민법이 채용한 것이다. 일제가 표방한 '가' 개념에 의하면 '가'는 호주戶主에 의하여 통일·대표되고 국가의 법률상 구성분자가 되며, 개인은 '가'를 통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가'에 속함으로써 권리를 향유하였다.

1923년에는 호적제도의 모체인 〈조선호적령〉이 시행되었고, 이로써 호적제도는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일제식 '가'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제도가 식민지 조선에 이식·강제됨과 동시에 호주가 가부장家父長으로서 사법私法상 '가'의 주재자로 전면에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식 호적제도의 강제이식을 통해 일제는 일본식 '가' 제도를 식민지 조선에 정착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일제에 의해 도입된 '가' 제도는 제정 〈민법〉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일본의 메이지 민법처럼 '가' 제도를 채택하였으므로 〈호적법〉 또한 일제강점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호적은 현실생활공동체와 유리된 추상적인 '가'를 호적편제의 단위로 설정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속한 개인의 친족적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이전의 〈조선호적령〉에 의한 호적과 다를 바 없었다.

내용 호주제戶主制란 실제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한 가족 집단에는 반드시 가장家長인 호주를 두고, 그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縱的으로 이어지며, 그 순위는 남자, 그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던 제도를 말한다. 호주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가의 구성'과 '호주승계'이다.

'가'란 원칙적으로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호주란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를 말하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말한다. 호주제하에서 장남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호주가 되었고, 장남이 아닌 남자는 혼인하면 일가를 따로 거느리고 호주가 되었다. 그러나 여자는 혼인하면 '친정의 가족'에서 '남편이 호주인 '가'의 가족' 또는 '시가媤家의 가족'으로 신분관계가 변동되었다.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하고,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호주 또는 가족으로서 반드시 어떤 '가'에 속하였다.


朝鮮戶籍令
七月부터施行
朝鮮戶籍令은七月一日부터施行
된다는데此에對하야注意할點은
戶籍의取扱은總히從前과如히햐
四民籍係에對取扱하는데只히漏
籍者의就籍과戶籍의訂正은施行
ᄒᆞᄂᆞᆫ法院의許可를要하게되야
고又婚姻養子緣組ᄯᅩᄒᆞᆫ從來되야
戶主의申請으로登載ᄒᆞ야ᄂᆞᆫ데ᄒᆡ
後ᄂᆞᆫ當事者가行하게되야고又罰
則의適用은從來에始無하야스나
ᄒᆡ後에ᄂᆞᆫ違反者ᄂᆞᆫ裁判所로브터
處罰하게되야다더라

조선호적령, 7월부터 시행 | 1923. 06. 21 | 매일신보 | 국립중앙도서관

'가'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 간에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 관계로 연결된 관념적인 가족단체로서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하였으며, 이러한 '가'의 구성은 법률상 강제되었다. 호주제는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가족원은 주변적 지위에 배치하였다. 호주를 정점으로 '가'가 구성됨으로써 가족원은 평등하고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호주와의 관계자로서만 파악되었다.

한편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는 호주가 되었다. 여기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곧 호주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이었다. 호주의 지위는 ①직계비속남자 ②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처 ④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순으로 승계되었다. 즉 호주승계 순위는 사망한 전 호주의 아들—손자—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이었다. 이와 같은 호주승계제도를 통하여 '가'는 그 구성원의 사망, 혼인, 분가 등에도 부단히 후세에 이어지게 되어 그 영속성이 보장되었다. 그 바탕에는 남계혈통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깔려 있었다.

특징 및 의의 호주제란 남계혈통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던 제도이다. 호주제는



호주제 바로알기 책자 | 2001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아카이브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 형태를 일방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였다. 또한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 호주승계 순위와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이나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던 제도이다.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 분화에 따라 가족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다. 여성의 경제력 향상이나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 역할을 맡는 비율도 점증하고 있다.

결국 호주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제11조)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을 유지하라(제36조 제1항)는 헌법에 반하는 제도로,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 2일의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가' 제도가 사라지고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정구태, 법학논총24-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전통과 여성의 만남(양현아, 법사학연구25, 한국법사학회, 2002), 전통적 가족제도와 헌법(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47-2, 서울대 법학연구소, 2006),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구태, 동북아법연구8-3,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호주제는 우리민족의 전통가족제도인가(김상용, 법조53-7, 법조협회, 2004),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양현아, 한국사회학36-5, 한국사회학회, 2002),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증(양현아, 경제와사회88, 비판사회학회, 2010).

필자 정구태(鄭求兌)

혼례
婚禮

정의 한 쌍의 남녀가 부부로 맺어지는 혼인에 수반되는 모든 의례와 절차.

역사 절차와 형식을 갖춘 혼례婚禮로 가장 오래된 것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드는 남귀여가男歸女家 또는 서류부가壻留婦家 혼속婚俗이다. 조선조까지 지속되었던 이 고유의 혼속을 조선왕조 위정자들이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친영례로 바꾸려고 시도하면서 혼례문화 전통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남귀여가와 친영을 절충한 반친영례 및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 조선 후기 시집살이 혼으로 전변轉變이 이루어졌다.

한국 혼례사를 흔든 두 번째 문화적 충격은 근대기에 유입된 서양식 혼례에 대한 경도傾倒이다. 1890년대 '예배당 결혼'을 시초로 해서 주로 도시에서 유행한 신식혼례는 혼례복, 혼례 공간, 혼례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1960년대 이후 전문 예식장들이 들어서면서 서양식 혼례가 대세가 되었지만 상업성과 상투적 규격화로 인해 바람직한 혼례문화의 창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오늘날은 스몰웨딩, 주례 없는 결혼식, 비혼 동거, 전통혼례로의 회귀 등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

이 나타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용 혼례는 각자 다른 가족 속에서 생장한 남녀 두 개인이 성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부부가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일종의 통과의례이다. 『예기禮記』에서는 혼례를 모든 예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남녀가 예禮로 사귀지 않으면 음淫이라고 한 공자의 말도 남녀의 혼인이 '혼례'로 맺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예로부터 혼례를 거치지 않은 혼인은 야합野合이라 하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혼례의 전통은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의 '서옥壻屋'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로 혼약이 이루어지면 사위가 저물녘에 여가로 와서 고한 뒤 서옥 옆에 전백錢帛을 쌓아두고 신부와 동숙하였으며, 자녀들이 태어나 장성하면 처자를 거느리고 본가로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사는 혼속이라 하여 남귀여가 또는 서류부가혼이라고 한다. 혼인한 부부의 거주 규정으로 말하면 부처거주婦處居住이자 처가살이가 우선된 혼속이다. 이 기사를 통해 혼례가 '저물녘'에 이루어진 것 외에도 혼약과 폐백, 신랑의 초행初行과 재행再行, 신부의 우귀于歸 절차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혼례에서 재폐財幣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주서周書』「고구려전」의 기록이나, '옛날에는 혼인날 저녁에 친척들이 모여 술을 석 잔 돌리는 것으로 행례를 끝냈다.'고 한 『용재총화慵齋叢話』 권1의 기록을 통해서는 과거 민간에서는 혼인의 예가 아주 검소하였음을 읽을 수 있다.

혼례문화가 예법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은 조선조에 이르러서다. 부계종법 사회를 위한 실천적 전범을 주희의 『주자가례』에서 찾았던 조선조 개혁가들은 혼례를 『가례家禮』의 친영례로 개혁하려고 하였다. 고례古禮의 육례六禮를 정비한 주자의 친영례는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의 사례四禮로 구성되어 있다. 혼사를 의논하는 의혼, 청혼과 허혼을 주고받는 납채, 폐백을 보내는 납폐는 혼례 준비 절차이다. 본격 혼례 과정인 친영은 초행을 떠나기 전에 부친의 명을 듣는 초례醮禮—신부 집으로 온 신랑이 기러기를 바치는 전안례奠鴈禮—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자기 집으로 가서 치르는 교배례交拜禮—합근례合巹禮—합방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혼례 이튿날부터는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부현구고婦見舅姑, 시부모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구고향부舅姑饗婦, 며느리가 사당 알현을 하는 묘현廟見, 사위가 처가에 인사하러 가는 서현부지부모壻見婦之父母 등의 후례後禮 절차들이 이어진다. 혼례부터 현구고례見舅姑禮와 묘현 등의 절차까지 모두 신랑 집에서 치르고 그대로 신랑 집에서 생활하는 부처거주夫處居住 형태이다.

조선왕조는 남귀여가의 혼속이 남자가 여자에게 끌려가는 형국이라고 하여 남자 집이 주도하는 친영례로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같은 국가전례서에 친영을 제도와 법으로 명시하고, 왕실의 혼인을 통해 솔선수범을 보이면서까지 시행을 촉구하였지만 널리 수용되지 않았다. 중종中宗 조에 재론이 이루어졌으나 역시 민간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16세기 명종明宗 조에 이르러 신부 집에서 전안례—교배례—합근례의 대례를 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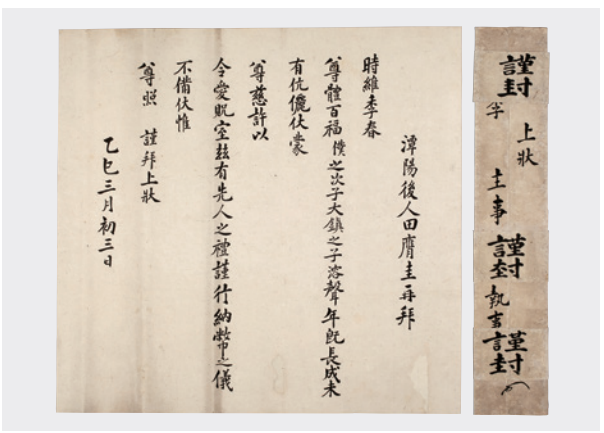


전통 혼례복을 입은 신랑 신부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리하되 신부가 이튿날 바로 신랑 집으로 우귀于歸하여 시부모 알현을 하는 형태의 반半친영례 절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오랜 시간 조정과 변통을 거치게 된다.

한편으로 조선 중기 이후부터 『주자가례』에 관한 주석과 편람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퇴계 이황의 문하를 비롯하여 여러 학파에서 의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일상화되었고, 이것이 수많은 의례서 간행으로 이어졌다. 특히 18세기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유교적 전통혼례의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이의조의 『가례증해家禮增解』(1792), 유장원의 『상변통고常變通考』(1830), 정약용의 『가례작의嘉禮酌儀』(1810) 등은 예서와는 다른 현실의 실제형들을 변통變通 또는 변례變禮로 수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례의 준용準用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공사를 불문하고 폭넓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도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리는 전통만은 쉬이 바뀌지 않았다. 결국 반친영례의 대안이 변화의 물꼬를 튼 셈이지만, 이것도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절대적인 빈곤층이 늘어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일제강점기에 혼례비용조차 없었던 극빈곤층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가례의 진眞친영례처럼 신랑 집으로 가서 혼례를 올린 경우도 보인다. 결국 17~19세기에 선택적 수용과 변용이 이루어진 결과 이상형인 예서의 진친영과는 다른 실제형으로서의 전통혼례 관행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근대 이후 예식장 혼례가 자리 잡기 전까지 이 땅에서 행해졌던 전통혼례 대부분은 이 실제형으로, 대체로 혼담—납채—연길涓吉—납폐—대례(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신방차림—동상례—우귀(현구고례, 묘현)—근친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謹封
上狀
主事
謹封
謹封
上狀
時維季春
尊體百福僕之次子大鎭之子容聲年已長成未有伉儷伏蒙
尊慈許以
今愛眄室玆有先人之禮謹行納幣之儀
不備伏惟
尊照 謹拜上狀
乙巳三月初三日
潭陽後人田膚主再拜

혼서 | 가로56 세로54 | 대한제국 | 국립민속박물관
혼인할 때 신랑 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 집에 보내는 편지.

중매인을 통해서 혼담이 오가다 혼약이 이루어지면 신랑 집에서는 혼인을 허락해 주어 기쁘다는 인사와 청혼 내용을 담은 납채서를 신랑의 사주단자四星와 함께 신부 집으로 보낸다. 신부 집에서는 택일하여 신랑 집으로 보내는 연길涓吉 문서로 답하는데, 이때 허혼서를 동봉하기도 한다. 다음에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납폐의 절차가 있다. 대례일大禮日이 되면 신랑이 상객上客 일행과 함께 신부 집으로 초행初行을 간다. 신랑 일행이 도착하면 신부 집에서는 인접人接 또는 대반對盤을 보내 이미 마련해 둔 정방定房으로 안내하고, 간단히 요기하게 한 후 사모관대 차림을 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신부 집의 전안청에서 신랑이 기러기를 올리는 전안례를 하는데, 기러기처럼 의리義理를 지키겠다는 서약의 의미이다. 장모가 기러기를 치마로 받아들고 신부가 있는 방에 던져서 그 앉는 모양을 보고 첫아들인가 첫딸인가를 점치는 습속이 있다.

다음으로 치르는 교배례는 준비된 대례상을 신랑과 신부가 동서로 마주 보고 절을 주고받는 절차로, 신부가 2배 하면 신랑이 1배로, 다시 신부가 2배 하면 신랑이 1배로 답한다. 이는 음양의 이치를 따른 것이다. 대례상에는 촛대, 송죽, 장닭, 쌀, 밤, 대추, 술잔 등을 놓는다.

다음의 합근례는 신랑과 신부가 술잔을 나누는 절차로, 술을 교환함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표주박에 따른 술을 세 차례 나누어 마시는 동안 신부 곁에서는 수모가, 신랑 곁에서는 대반이 각각 시중을 든다. 대례를 마친 신랑은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 집에서 준비한 도포로 갈아입은 후 상객과 함께 큰상을 받는다. 큰상의 음식들은 대부분 먼저 돌아가는 상객을 통해 신랑 집으로 보내진다.

저녁이 되어 신방으로 안내된 신랑은 신부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주안상의 술을 나눈 후 초야를 보낸다. 이때 가까운 친지들이 신방 창호지를 뚫고 '신방 엿보기'를 하는 풍습이 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방문이 부서지는 등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신랑은 처음으로 장인·장모에게 절

하고, 가까운 처가 친척들과도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신부 집이나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여 동상례東床禮를 한다. '신랑 다루기'라고도 하며, 신랑을 매달아 놓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며 방망이로 발바닥을 치기도 하는데, 과해지면 장모가 나와서 말리고 음식 대접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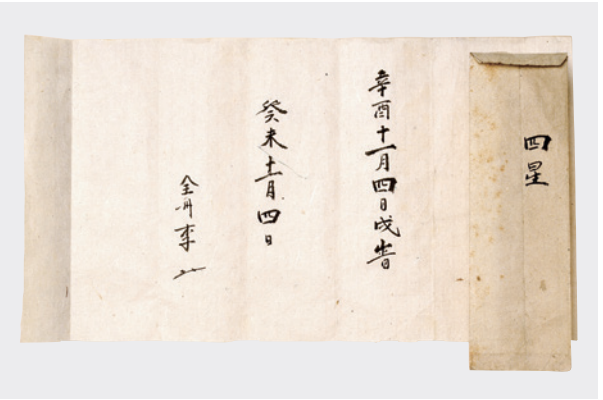
신부가 신행(우귀)한 이후의 후례로 현구고례와 묘현의 절차가 이어지고, 신랑·신부가 함께 근친覲親을 가는 절차를 마지막으로 전체 혼례가 마무리된다. 우귀와 근친의 시기는 가가례家家禮로 차이가 있다. 신부의 신행길에도 상객과 짐꾼의 행렬이 뒤따른다. 신부를 태운 가마가 시집의 대문을 넘을 때는 미리 피워 둔 잿불을 타넘고 들어간다. 잡귀를 쫓는 의미라고 한다. 18세기 사족층의 일기에서는 신부가 신행해 온 날의 행사에 대해 '신부례新婦禮'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가례의 현구고례 및 묘현의 절차를 포함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된 절차를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집안의 혼례를 기록한 17~18세기 사족층의 일기들을 보면 절차의 생략과 통합, 시행의 완급이 있을 뿐 위의 전통혼례 관행과 그리 다르지 않다. 민간에서도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당일우귀나 삼일우귀가 어려울 경우 6~7일 또는 몇 달과 몇 년 등으로 우귀 시기의 완급과 신축이 나타난다. 18세기의 사족층은 물론 20세기 초까지도 농촌의 부유한 집에서는 혼례 후 달포나 해를 넘겨서 신행한 사례가 적지 않다. 달포를 묵히면 '달묵이 신행', 해를 묵히면 '해묵이 신행'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농어촌 서민층을 중심으로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린 후 바로 당일우귀(도신행)나 삼일우귀를 하는 형태가 점차 확산되었다. '도신행'이란 말은 바로 '돌아서' 신행한다는 의미이다.

납채는 점차 생략되거나 납폐 절차에 통합되었다. 납폐와 대례를 같은 날에 선후로 행하는 변화도 나타난다. 예서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기보다 양측이 협의하여 조정하는 문화적 적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의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이 남긴 『역중일기曆中日記』에 의하면 1749년 12월 백불암의 둘째 아우의 사위는 교배례를 한 날 아침에 납폐례를 선행하였으며, 대례 후 5일을 처가에 머무르다 본가로 돌아갔다. 19~20



사주단자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사주단자 | 가로22 세로7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혼인할 남자의 사주를 적어 청혼할 여자의 집에 보내는 단자.

세기 이후로는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리고 우귀를 앞당기는 집들이 더욱 늘어난다.

한편으로 근대 이후에는 기독교나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구식 혼례의 영향으로 이른바 신식혼례가 등장한다. 전문 예식장이 확산하기 전까지 도시의 신식혼례는 주로 예배당, 공회당, 사찰, 천도교당 같은 공간에서 치러졌다. 신식혼례라고 해도 양복 입은 신랑과 나란히 선 한복 입은 신부 또는 한복을 입고 면사포를 쓴 신부 모습처럼 신식과 구식이 뒤섞인 형태가 많았다. 근대 사진의 도입과 더불어 생겨난 사진관이 신식혼례를 위한 예식장 기능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전통혼례를 올리는 신랑·신부도 사진관에서 만나 약혼사진을 찍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났다. '약혼기념'이라고 명기된 이 사진들은 거의 혼례문서에 준하는 기능이 있었으며, 이때 양가 가족이 동행하여 소박한 상견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니, 사진이 가져다준 변화의 일면이

라 하겠다. 혼담, 사주, 택일, 궁합, 납폐 등과 같은 혼례 이전 과정의 관행들은 변화 속에서나마 존속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전문 예식장이 들어선 1970년대 이후로는 예식장 혼례가 보편화되고, 혼례식 절차 및 혼인문화도 크게 변화한다. 개인이나 집안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날 결혼 준비는 과거와 달리 혼인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주도하는 편이다. 대체로 혼인은 만남(중매 또는 연애)—청혼과 허혼—양가 상견례—택일—함 보내기(납폐)—약혼식—결혼예식—폐백—피로연—신혼여행—양가 인사—신혼집으로 분가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결혼예식은 주로 전문 예식장에서 치러지며, 사회가 진행을 맡고 주례가 주관한다. 화촉 점화—개식 선언—주례 등단—신랑·신부 입장—신랑·신부 맞절—혼인 서약—성혼 선언—주례사—(축가 또는 축하 연주)—신랑·신부 부모님께 인사—신랑·신부 내빈께 인사—신랑·신부 행진—폐식 선언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호텔을 비롯한 전문 예식장에는 결혼예식 후에 이어지는 폐백과 피로연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예식장은 규격화된 예식을 통해 하루 수십 쌍의 부부를 배출하는 상업적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호화 혼수, 호화 결혼식, 뇌물에 가까운 부조 등의 폐단도 여전하다. 사회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성 있는 자기만의 혼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식장 결혼식의 상투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시도와 더불어 한옥에서 전통혼례를 올리려는 젊은이들, 스몰웨딩 또는 혼인신고만 하는 노웨딩으로 결혼 비용을 아끼거나 기부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목안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한국의 전통혼례 관행은 남귀여가 혼속과 유교적 혼례인 친영이 서로 절충되고 혼효混淆되는 흐름 속에서 다듬어진 것으로, 거의 500년 이상 소요된 문화적 접변接變 사례이다. 서양식 혼례를 하는 데다 분가가 대세가 된 오늘날에는 전통혼례 절차가 상당 부분 의미가 없어졌지만 예식장 혼례의 공소함이 여전히 문제시되는 현실에서 전통혼례에 깃들어 있는 정신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관행의 전통혼례에는 남가男家와 여가女家에 대한 배려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친영례로의 개혁을 버텨낸 이면에도 그러한 전통의 힘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전통혼례는 예식장 결혼식처럼 양가가 모인 자리에서 하루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례 수행에 여러 날이 소요되며, 나름의 의미가 담긴 작은 의례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의례 통합체라는 점이다. 또한 이런 작은 의례들이 양가에서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양가의 사당 알현, 신부의 현구고례와 신랑의 재행, 신부 집의 동상례와 신랑 집의 신부례 등은 신랑과 신부를 각각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 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양가에서 대등하게 행하는 작은 의례들이다. 이러한 작은 의례들의 병렬과 통합은 부부가 새로운 가족과 친족, 마을 공동체의 한 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장치이다. 미래의 혼례문화 창출을 위해 제고할 만한 상호존중, 정성, 배려의 정신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7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례 방식(김정운, 한국사상사학56, 한국사상사학회, 2017), 18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례방식(김정운, 지역과 역사44, 부경역사연구소, 2019), 고려시대 혼인과 혼례 제도 속의 효 문화 고찰(서정화, 동양철학연구106, 동양철학연구회, 2021), 전통혼례 제도사와 시집살이 문화의 탄생(김연수, 민속원, 2018), 한국 전통 사회의 관혼 상제(장철수, 고려원, 1984).

필자 천혜숙(千惠淑)

혼반
婚班

정의 조선조 양반사회에서 연緣줄에 의한 혼인관계를 대대로 이어 온 문중 집단.

내용 전근대 사회에서 혼인은 가문의 지체나 반격班格을 말해주는 징표와도 같은 것이었다. 조선조 양반들은 서로 지체가 걸맞은 가문끼리 통혼을 하였으며, 그러한 혼인관계를 대를 이어 지속하기도 하였다. 지체는 혈통血統·문명文名·관작官爵·경제력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모두가 필요충분조건인 것은 아니다. 지체나 반격이 대등한 가문 사이에 잦은 연줄혼인이 지속되면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를 혼반이라고 한다. 혼인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유대라는 점에서는 혼맥婚脈과도 유사하나, 단순히 혼인을 통해 맺어진 인척간 관계망을 의미하는 혼맥과 달리 혼반은 가문의 지체와 가풍을 따져 맺어진 혼인관계가 세대를 이어 지속된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혼반은 오히려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중매하여 혼사가 이루어지는 연줄혼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연줄혼인에는 두 문중이 당대에 통혼관계를 계속하거나, 두 문중이 세대 간에 인척관계를 계속하거나, 세 문중이 서로 중첩적인 인척관계를 맺는 등의 세 유형이 있다. 사족층 가운데는 가문 간 연줄혼인을 지속하다가도 특정 가문의 여자가 시집온 후로 가운家運이 위축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연줄을 다른 곳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특정 가문과 혼인하여 가운이 융성해지면 길반吉班 또는 길혼吉婚이라고 하여 그 가문과의 혼인관계를 대를 이어 지속하였다. 문중 간 잦은 길혼이나 연줄혼인의 계승이 혼반을 형성하는 바탕이다. 적어도 파조派祖 이후 특정 성씨와 4촌 이내에서 1회 이상의 연줄혼인이 적어도 3~4대 이상은 지속되어야 혼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누이바꿈'과 같은 거의 근친에 가까운 연줄혼인의 지속은 같은 문중끼리의 사돈관계가 겹치는 연비연사聯臂連査 관계를 누적시킴으로써, '따지고 보면 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친족관계가 겹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양반 사족층이 연줄혼인을 선호하고 혼반을 중시하게 된 것은 부계종법을 중심으로 한 향촌사회의 질서 재편과도 연관이 있다. 16세기까지만 해도 조선사회는 여전히 처가 중심의 남귀여가혼이 지배적이어서 사위와 외손이 한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가 흔하였고, 자녀균분 상속제로 인해 사위가 처가의 터전을 물려받거나 외손이 제사를 받드는 일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당시는 반촌이라고 하더라도 사위와 외손을 포함한 여러 성씨가 함께 거주하는 이성잡거촌異姓雜居村이 대부분이었다. 풍산류씨豐山柳氏 동성촌으로 알려진 하회마을만 하더라도 15~16세기에는 풍산류씨와 흥해배씨興海裵氏가 거주한 데 이어 두 가문의 사위가 재산상속을 매개로 거주하였고, 또 그들의 외손이 계속하여 거주했던 이성잡거촌이었다. 이는 하회마을뿐 아니라 당시 대부분 마을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다가 사위나 외손이 현달하게 되면 그의 성씨가 마을의 주성主姓이 되고 그의 가문이 마을의 중심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7세기 이후로는 서서히 족보나 재산상속에서 딸이나 외손이 차별화되고, 적장자 중심의 종법적 가족질서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해서 부계조상을 파조로 하는 부계문중이 형성되고, 그 문중을 중심으로 동성촌이 이루어져 세거하는 형태가 자리 잡게 된다.

이때 부계조상인 파조는 사회적으로 현달한 존재로서, 높은 관작官爵을 지냈거나 문명文名을 드러낸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는 문중의 위세가 곧 개인의 사회적 지위로 이어졌으므로 문중 구성원들은 이러한 지위를 지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중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로 혼반으로 결집하여 그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지체가 대등한 문중 간의 혼반을 통한 세교世交는 문중의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확인하고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결속을 가능하게 하였다.

영남지역 양반들의 혼인은 대개 30여 개 문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물론 지역이나 가문 별로 다르겠지만, 일단 이 문중들을 영남 양반의 혼반 범위로 잡을 수 있다. 안동지역에서는 진성이씨眞城李氏·의성김씨義城金氏·풍산류씨·안동권씨安東權氏·광산김씨光山金氏·안동김씨安東金氏 등이 서로 혼반을 형성한 대표 성씨들이다. 또 경남지역의 하동정씨河東鄭氏·광산김씨·은진송씨恩津宋氏·연안이씨延安李氏 등도 상호 지속적인 혼

인관계를 맺으면서 사회·경제적인 결속을 도모한 것을 볼 수 있다.

혼반은 근대적인 혼인제도가 정착한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졌다. 종가 등 가문 의식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집안에서는 아직도 혼반을 따지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그것도 부모세대의 관심사일 뿐이고, 혼인 당자사들에게는 더 이상 지배적인 문화가 아니다.

지역사례 전국에서 부계 불천위 종가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안동은 혼반을 통한 사회적 결속이 특히 두드러졌던 지역이다. 정치적으로 남인에 속했던 안동 사족층들은 인조반정 이후로 점차 중앙 정계로의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퇴계학을 중심으로 향교나 서원 활동을 통해 향촌사회 내에서 그들의 입지를 구축하였다. 그러한 추세에서 안동사림은 부계문중을 중심으로 동성촌락을 형성하였다. 이 지역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 부계문중의 파조 대부분이 퇴계의 제자이거나 그 학통을 계승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안동사림이 퇴계학을 매개로 재편되면서 결속을 시도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부계문중 간의 통혼을 매개로 한 혼반의 형성이 활발했던 것도 그러한 정치·사회적 결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소외되면서 통혼의 범위가 좁아진 상황에서 퇴계 학맥을 중심으로 한 혼반의 형성을 통해 가문 간 결속을 이루었다. 따라서 안동의 혼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 성씨 파조나 가문이 퇴계 학맥에 속하는가의 여부였다. 이는 안동의 혼반에서 생물학적 혈통 못지않게 학통이나 학연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말해주는 사실이다.

가문, 지역, 시대를 불문하고 안동의 혼반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문중은 퇴계의 문중인 진성이씨를 비롯하여, 의성김씨·풍산류씨·안동권씨이다. 의성김씨인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과 풍산류씨인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은 퇴계의 대표 문인으로 학문과 관작에서 일찍이 일가를 이룬 인물이고, 안동권씨는 안동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사족이다. 의성김씨 문중에서는 이미 학봉의 증조부 대부터 진성이씨와 통혼이 이루어졌다. 그 후로 학봉의 조카 김용金涌이 퇴계의 손서孫壻가 되고, 손자 김시구金是九가 퇴계의 증손녀를 배우자로 맞이하면서 진성이씨와 혼반을 형성하였다. 서애 류성룡을 파조로 한 서애 문중에서는 서애의 손자 류원지柳元之가 김성일의 손자인 김시구의 딸과 혼인하고, 운룡파의 겸암 류운룡柳雲龍의 아들이 김극일金克一의 딸과 혼인하였다.

16~17세기 하회파의 혼인은 안동권씨·진성이씨·전의이씨全義李氏 순으로 그 횟수가 높게 나타난다. 퇴계학파가 안동사회의 구심이 된 16세기 중반 이후로 하회파는 진성이씨를 비롯하여 퇴계 문인을 배출한 예안이씨禮安李氏·인동장씨仁同張氏·경주이씨慶州李氏·의성김씨와의 혼인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17세기 후반까지 3~4대를 이어 하회파가 중첩적인 혼인을 한 성씨들은 안동권씨·진성이씨·예안이씨 정도이다. 18세기 하회파에서는 특히 의성김씨와의 혼인이 많아진다. 서애 문중과 학봉 문중은 당시 정치적 대응 방식에서 일정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병호시비屛虎是非(1812년)가 있기 전까지는 서로 유력한 혼반을 유지하였다. 호계서원의 추향 문제로 두 문중이 병론屛論과 호론虎論으로 나뉘어 대립한 병호시비는 호계서원이 훼철되기까지 60년간 지속되었으므로 당연히 문중 간의 혼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8세기에 비해 혼인빈도가 낮아졌을 뿐 여전히 통혼이 지속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하회파에서는 의성김씨에 비해 진성이씨와의 혼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또 당시 병론에 속했던 풍산의 예안이씨·풍산김씨豊山金氏·안동권씨, 상주의 풍양조씨豐壤趙氏·진양정씨晉陽鄭氏, 대구의 경주최씨慶州崔氏 등과의 혼인이 늘어났다. 하지만 의성김씨 문중과 통혼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이것으로 보면, 안동지역의 혼반은 단순히 안동사림 내부의 갈등을 그대로 노정한다기보다는 대립과 조화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제어장치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종가끼리 혼반을 맺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퇴계파 문중의 종가를 중심으로 모두 12종가가 중첩적인 인척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종녀가 다른 가문의 종부로 들어간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미이다. 12종가의 파조는 퇴계 문하의 삼걸로 불리는 서애 류성룡·학봉 김성일·한강 정구를 비롯하여 성재 금란수·우복 정경세·간재 이덕홍 등 모두 퇴계

학파에 연원을 둔 영남지역의 유력한 명문들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원혼遠婚도 불사하는 '양반 혼인 700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척에 있는 가문들이 혼반관계를 맺어온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한 지연이라기보다 명문의 동성집단이 밀집해 있는 안동이라는 지역적 특징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안동지역의 혼반에는 혈통, 학연, 지연이 고루 작용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퇴계학맥이라는 학연이 구심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혼반은 조선시대 양반층의 신분 내혼제와 통혼권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혼인문화 가운데 하나이다. 혼반은 특히 지체나 반격을 혼인의 중요한 조건으로 한다는 점, 또한 혼반 간의 유대가 곧 향촌사회 내에서 정치·사회·경제적 유대로 확장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학문의 진작, 정치적 담론의 형성, 의병활동 등에서 혼반을 통한 인적 관계망이 작용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안동지역의 혼반에서 퇴계학맥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안동사림이 학연의 동질성을 매개로 일종의 정치적 결집을 이룬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혼반에 대한 관심은 가족과 친족 단위 또는 출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혼인 연구를 혼인 연대alliance가 지닌 정치사회사로 확장함으로써 지역사 연구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16~19세기 풍산류씨 하회파의 혼반(김명자, 국학연구1-12, 한국국학진흥원, 2008), 안동사림의 정치적 분화와 혼반형성(설석규, 안동학연구1, 한국국학진흥원, 2002), 영남지방의 혼반 연구(조강희, 민족문화논총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족적 결합(한기범, 호서사학 19·20, 호서사학회, 1992).

필자 천혜숙(千惠淑)

혼외자
婚外子

정의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역사 조선에서는 혼인 외의 남녀 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혼외자婚外子는 제도권 내에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 고려시대에 도덕성보다 혈통이 우선시되어 혼외자라도 가족 내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경종의 비妃 헌정왕후는 숙부뻘의 안종과 사통하여 대량원군을 낳았는데 대량원군은 훗날 고려 8대 왕 현종이 되었다. 말하자면 사생아가 왕위에 오른 것이다. 도덕성보다 혈통의 순수성이 중시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조선에서는 『대명률大明律』의 형률을 적용하였는데 간통한 남녀가 낳은 자식은 간통한 남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 기르도록 하였다. 혼외자에 대해 아버지의 역할을 중요하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인지認知에 의해 혼외자의 신분이 결정되었다.

내용 조선에서 유교윤리가 강화되고 혼인제도가 공고해지면서 혼인 밖에서 출생한 자녀는 그 위치가 이전 시기에 비해 더 불안정해졌다. 첩의 자식인 서자庶子는 제약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자식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혼외자는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 사실상 자녀의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다만 아버지에 의해 인지되면 서자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18세기 말 노상추는 삭주부사로 발령받아 가는 중에 평안도 박천博川을 들르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기생 신분의 고모를 대면하였다. 이 고모는 할아버지가 박천 지역의 수령으로 있을 때 수청기守廳妓에게서 태어난 딸로, 혼외 자식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딸을 자식으로 인지하지 않고 부임지를 떠났고, 딸은 어머니 신분을 따라 기생이 되었다. 혼외자가 아버지에 의해 인지되지 않으면 어머니 신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의 현실이었다.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버지에 의해 인지되지 않으면 어머니가 소속된 관의 노[官奴]로 살아가게 된다.

이에 반하여 노상추는 젊은 시절 갑산으로 파견을 나갔을 때 만난 수청기 석벽과 그 딸을 부임지에서 돌아올 때 대동하고 온다. 석벽이 관에 소속된 기생이기 때문에 속신贖身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벽은 이후 정식으로 첩이 되었다. 따라서 태어난 자식은 서얼庶孼로서 노상추 집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아버지에 의해 인지된 혼외 자식들은 신분적 차이는 있지만, 아버지 집안의 일원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왕실에서는 혼외자가 혼외자 신분으로 태어날 수 없었다. 이른바 승은承恩으로 왕과 궁녀 간에 혼외자가 생겼을 때 그 궁녀는 바로 후궁이 되기 때문이다. 왕의 자식을 제도권 밖에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승은을 받았다고 모든 궁녀가 후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이 생기면 반드시 후궁이 되었다. 대개 출산 전에 후궁으로 봉해서 혼외자가 아니라 군君이나 옹주翁主로 태어나게 하였다. 왕실의 위상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로 갈수록 혼외자의 출생은 흔치 않았다. 간통인 화간和姦의 경우 장 80대, 유부녀는 장 90대로 형벌이 엄격하기도 하였지만 유교윤리 강화로 간통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과 노비, 관직자와 기생 사이에서는 혼외자 출생이 종종 있었다. 이 경우 모두 아버지 쪽에서의 인지가 있으면 서얼이 될 수 있었지만 없으면 어머니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였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高麗史, 盧尙樞日記, 大明律直解, 禮記, 고려시대 간통과 그 성격(김창현, 여성과 역사28, 한국여성사학회, 2018), 조선 후기 성범죄 규제와 처벌(박소현, 인문과학89,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이순구, 너머북스, 2011), 혼외 부자관계에서 인지성립요건론의 재고(백승흠, 법학연구21-3,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필자 이순구(李舜九)

혼인
婚姻

정의 한 쌍의 남녀가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제도와 의식.

역사 혼인婚姻은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보다 긴 역사를 가졌다. 원시사회에서는 난혼이나 군혼이 있었다고 하나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백호통白虎通』에서는 '혼婚'이란원래 '혼昏'으로 '저물녘에 예를 치렀다[昏時成禮]'는 의미라고 하고, 『예기禮記』에서는 '혼婚'은 사위[壻], '인姻'은 처妻를 이르는 말로, '사위가 저물녘에 와서 여자가 그를 따라서 간다婿以昏時來 女因之而去.'는 의미라고 하였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는 고대 한반도에 있었던 형사처수혼兄死妻嫂婚· 서옥婿屋·족외혼族外婚·축첩蓄妾·솔서혼率婿婚·예부혼豫婦婚 등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 가운데 '서옥(사위의 집)'으로 표현된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은 가장 오랜 우리 고유의 혼속으로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들어 사는 형태이다. 그 밖에도 신라와 고려 왕실에서는 근친혼을 하였고, 몽골의 고려 침략에 따른 공녀貢女 정책으로 여자의 조혼 풍습이 생겨났다.



신부잔쌍받든모양 | 김준근 | 조선 후기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혼인제도 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진 때는 조선시대이다. 가부장제의 기틀을 잡기 위해 주자학과 『대명률大明律』을 도입한 조선왕조는 동성동본 불혼, 처첩의 분변分辨, 여성의 재가 금지, 신분내혼제를 법제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친영親迎을 강요하여 남귀여가혼의 오랜 전통을 뒤흔드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등장한 반친영半親迎의 절충안은 결국 '남귀여가 혼속'을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가서 사는 시집살이 혼속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대 이후에는 서구식 혼례와 혼인문화가 유입된 한편,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변동과 더불어 여성의 재가 허용, 연애혼의 선호, 분가 거주 등과 같은 탈유교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졌다.

내용 혼인은 남녀가 사회의 제도와 관행에 따라 성적·경제적 결합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혼인을 통해 결합한 신랑과 신부는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후사를 출산함으로써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을 구성한다. 그래서 혼인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하여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 그리고 혼인을 해야 비로소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았다. 옛날에는 나이가 많아도 혼인을 하지 않으면 아이 취급을 했으며, 어린 나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는 어른으로 대접하였다.

국가공동체에서 혼인을 제도화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형성의 기초가 되고 사회 질서의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은 혼인 당자가 속한 공동체가 만들어온 제도나 관행에 따라서 행해진다. 어떤 사회든 혼인의 적령·배우자의 수·배우자 선택의 방법·혼인 결정의 권리·예물이나 대금과 같은 혼인조건·혼례식·혼례복·혼인 후 거주규정 등에 관한 제도와 관행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혼인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혼인 연령만 하더라도 고대에는 남자 30세, 여자 20세까지였다가 조선조에는 남자는 15세, 여자는 12~14세로 조혼의 경향이 강해지고, 근대 이후에는 다시 20~30세로 높아지는 변화를 보인다. 배우자의 수는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다처多妻 또는 축첩이 허용되는 다처적 경향이 오래 지속되다가, 근대 이후 일부일처제가 법제화되면서 축첩의 관행도 사라졌다. 배우자 선택에서는 근친금혼의 원리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민간에서는 근친 간의 혼인을 '상피相避 붙는다.'고 하여 기휘忌諱시 해왔다. 다만 신라와 고려의 왕족들은 혈통의 보존이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근친혼 또는 인척혼을 행하였다.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취하는 형사처수혼을 하기도 했다. 유교의 영향이 강해진 고려 말기부터는 외사촌 및 이성 재종자매간 혼인이 금지되었으며, 조선조에는 근친금혼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동성동본 또는 모계 및 처족과의 혼인이 금지되기에 이른다.

혼례는 과거에는 저물녘에 치렀으나, 후대로 오면서 아침이나 낮에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삼국지』「위서 동이전」의 '서옥' 기사에도 고구려에서는 '사위가 저물녘에 처가로 와서 고한 뒤에 전백錢帛을 서옥(사위의 집) 옆에 두고 여자와 동숙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전백은 혼인 시에 제공된 폐백으로, 전통혼례의 납폐와 같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같은 기사에서 '아이를 낳아 장성할 때까지 처가에서 머무르다 처자와 함께 본가로 돌아갔다.'고 한 것은 혼인 후 부부가 장기간 처가에서 생활하는 처가살이, 곧 부처제婦處制의 거주 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전조(고려) 옛 습속의 혼인의 예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가서 자식과 손주를 낳아 외가에서 성장하게 했다.'고 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태종실록太宗實錄」 권29의 내용을 보면, 고려조까지도 이 처가살이 혼속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혼인의 예에서 재폐財幣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주서周書』「고구려전高句麗傳」의 기록, '옛날에는 혼인날 저녁에 친척들이 모여 술 석 잔을 돌리는 것으로 행례를 끝냈다.'라고 한 『용재총화慵齋叢話』 권1의 기록 등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민간에서는 혼례를 검소하게 행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혼례의 형식과 절차는 조선조 『주자가례』의 친영례親迎禮가 혼례의 새로운 전범典範으로 등장하면서 복잡해지게 된다.

조선왕조는 새 왕조의 이상인 부계종법 사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주자가례』의 친영례로의 개혁을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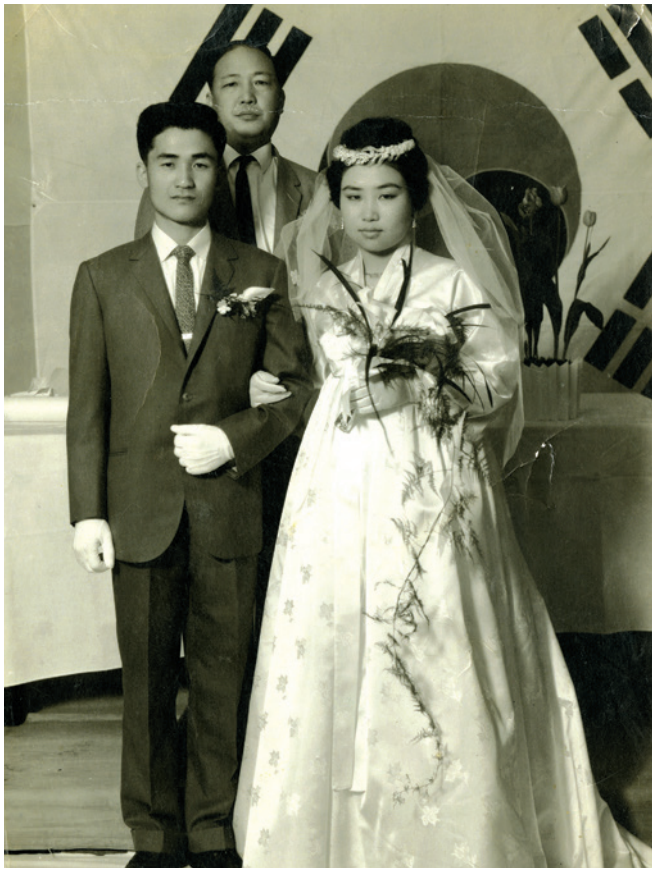
전안하는 모양(복제) | 김준근 | 국립민속박물관

진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이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같은 국가전례서에 친영을 제도와 법으로 명시하고 왕실의 혼인을 친영례로 치르면서 시행을 촉구하였지만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종조에 다시 친영에 관한 재론이 이루어졌으나 역시 민간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16세기 명종조에 친영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 반친영례의 절충안이 제시되기에 이른다. 혼례는 신부의 집에서 당일 상견례로 치르되 다음날 시가로 가서 현구고례의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가의 거리가 멀 경우 이동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등이 있어 당장은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이나 『상변찬요常變纂要』와 같은 예서들이 가례 실천의 지침서로 편찬되기도 했지만 우선 사대부층부터 혼인한 딸과 사위를 데리고 살던 오랜 전통의 관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부단한 노력에도 가례의 친영이나 반친영이 쉬이 정착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가족의 거주 형태를 정반대로 돌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부계와 모계의 원리, 또는 부처거주와 모처거주의 규정이 동시에 작동한 사회였다. 그리고 그 토양에서 조선조 중기까지 굳건하게 지속되어 온 처가살이, 외손봉사, 제사 및 재산의 균분상속의 전통들은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도 친영은 물론이고 반친영도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하였다. 18세기의 사족층은 물론이고, 20세기 초까지도 농촌의 부유한 집에서는 혼례를 신부집에서 그대로 치렀을 뿐 아니라, 혼례 후 달포 또는 해를 넘겨 신행한 사례가 적지 않다. 달을 묵히면 '달묵이 신행', 해를 묵히면 '해묵이 신행'이라고 불리었다. 혼례를 올린 후 신랑은 본가로 돌아가고 신부는 친정에 남아서 머물다가 신행날(우귀일)을 받아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동안 신랑은 몇 번이고 재행 걸음을 통해 신부집을 드나든다. 한편으로 가난한 서민들은 신행을 늦추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 신행이 늦어지는 만큼 혼수를 무겁게 장만해가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를 중심으로 또는 경제적 여유가 없



부모님의 혼인(1세대)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자녀의 혼인(2세대) | 1962 | 국립민속박물관

는 농어촌 서민층을 중심으로,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린 후 바로 당일우귀(도신행)나 삼일우귀를 하는 형태가 점차 확산되었다. '도신행'이란 말은 바로 '돌아서' 신행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일부 계층과 지역에 따라 신행 시기의 완급이 있었다고 하나, 19세기 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일신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10년 넘게, 짧아도 1년은 되었던 처가 체류가 2~3일로, 더 짧게는 당일로 단축된 것은 남귀여가 혼속에서 시집살이 혼속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반친영의 대안이 변화의 물꼬를 열어준 셈이지만, 이는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절대적인 빈곤층이 늘어난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 파조派祖를 내세운 부계 동성촌락들이 생겨나는 것과도 맞물리면서, 부계 종법 중심의 가족 질서를 더욱 확고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면, 혼인한 여성은 시가의 일원으로 종속되어 오로지 적장자 출산과 치가사治家事의 노역으로 시가 가문의 번영과 영속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가 된다. 출가외인出嫁外人이나 시집살이는 그러한 여성의 처지를 잘 대변해주는 말이다. 조선조는 부계 종법 사회의 확립을 위해 국가가 혼인을 관리하고 통제한 시대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시대에는 처첩妻妾 분변과 적서嫡庶 차별을 통해 일부일처제와 정처의 지위를 보장하였다고 하지만, 남성에게는 축첩과 재혼이 허용된 대신 여성에게는 계층을 막론하고 수절과 일부종사가 강요되었다. 남성들에게는 당연시된 재혼이 여성에게는 엄금되면서, 민간에서는 '과부보쌈'이라는 약탈혼 관행이 생겨나기도 했다.

근대기에 이르러서는 서양문화가 유입되고 근대적 여성교육이 보급되면서 혼인문화 전통에도 적지 않은 동요가 일어난다. 도시를 중심으로 서양식 혼례를 모방한 신식혼례가 유행하게 된 것과 더불어, 예식장과 같은 새로운 혼례공간의 출현, 연애혼에 대한 선호, 조혼의 감소와 만혼의 증가 등을 그 두드러진 변화로 들 수 있다. 혼인에 대한 관념도 집안 간의 결합을 우선으로 하던 것이 점차 개인과 개인의 결합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과거에는 부모의 권리이자 책임이었던 혼인 결정과 준비에서, 오늘날에는 혼인 당자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거나 나아가 그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가족법〉의 개정과 더불어 부계 가부장제 가족의 근간이 되어왔던 호주제, 동성동본불혼 조항이 폐지된 것도 유의미한 변화들을 추동하였다. 무엇보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분가 문화가 정착하면서 시집살이에 대한 의식과 문화가 크게 달라졌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부부는 마련해 둔 신혼집으로 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장남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의 혼인은 통상 만남·연애—청혼—상견례—함보내기(납폐)—약혼식—혼례식—폐백—피로연—신혼여행—분가로 완성된다. 그리고 신랑이 연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동갑은 물론이고 신부가 연상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오늘날은 혼인적령의 개념 자체가 사라진 시대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독신 가구, 혼인의 법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동거혼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 성비의 불균형이나 여성들의 농어촌 기피로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온 외국 여성과의 혼인이 늘어나는 현상, 세계화 및 국제교류의 확대로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현상, 경제적인 이유나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비혼 또는 무자녀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현상 등은 오늘날 혼인문화의 새로운 풍속도라고 할 만하다. 그런 한편으로 후사 출산, 숭조崇祖, 가문 창달 등에 의미를 두었던 전통적 혼인관이 인생의 동반자,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에 더 의미를 두는 쪽으로 바뀌면서 가족관계, 성 문화, 자녀출산 등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반포한 여러 차례의 〈가정의례준칙〉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이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부조문화, 호화 혼수, 호화 결혼식의 폐단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특징 및 의의 혼인을 통해 신랑과 신부는 각각 상대 가족의 일원이 되고, 두 가족은 인척관계로 맺어지면서 더 큰 가족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 혼반婚班이나 혼맥婚脈이 보태지면 혼인을 통한 인적 관계망은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조선조 사회에서 혼인한 남성의 삶은 이런 확대된 인적 관계망을 배경으로 공적 성취가 이어질 수 있었던 데 비해, 기혼 여성들의 삶은 오로지 시집 반경 내로 제한되었던, 젠더상의 심각한 차별이 나타

난다.

이는 부계종법 사회의 건립을 목표로 한 조선왕조가 아들과 딸 또는 시가와 처가를 대등하게 배려한 남귀여가혼의 오랜 전통을 버리고 여성을 시집의 문 안으로 가두어 부계 가문의 영속을 위한 조력적 존재로 도구화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혼인제도의 변화가 가족의 질서나 가족 내 권력 구조를 바꾼 것이며,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혼인문화는 근대 이후까지도 많은 여성들을 강제하고 구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성 종속의 구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한국의 근대기, 근대에서 비껴나 있었던 변방에서 오히려 시집살이 문화가 더욱 강고하게 자리 잡는 현상도 나타난다.

한편으로 근래에는 조선조 사족층이 남긴 일기나 출토 유물 한글편지 등을 통해서 가문의 혼인 사례들에 대한 미시적 독해가 이루어지면서, 며느리를 통한 두 가문의 공조형태, 느슨한 시집살이, 그리고 시집살이와 친정살이의 병존과 같은 흥미로운 삶이 보고되고 있다. 혼인문화의 이상형과 실제형이 계층과 지역에 따라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더 정치精緻하게 살펴봄으로써, 혼인을 코드로 한 문화연구의 장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구례 유씨가의 처가왕래와 부계화(박미혜, 학림48, 연세사학연구회, 2021), 서류부가 혼속의 변천과 그 성격(박혜인, 민족문화연구1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79), 조선민족혼인사연구(박경휘, 한남대학교출판부, 1992), 조선후기 양반여성의 친정살이와 새로운 생활환경의 모색(하여주, 여성과 역사37, 한국여성사학회, 2022),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필자 천혜숙(千惠淑)

혼인신고
婚姻申告

정의 혼인당사자인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관청에 보고하는 행위.

역사 법적·사회적으로 공인公認하는 부부관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부관계임을 공시公示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조선시대에는 공인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적자녀嫡子女, 그렇지 않은 자녀는 첩자녀妾子女 또는 서자녀庶子女로 구별하였고, 관직 진출과 부모 재산의 상속에서 첩자녀와 서자녀에게 차별을 두었다. 현재에는 적서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등에서의 차별은 사라졌지만, 사회적 차별은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국가기관 등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었다. 만 3년마다 시행하는 호적을 작성할 때에 부부로 신고하였고 남편의 족보에 처의 이름을 등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적조사는 꼭 3년마다 시행되지는 않았으며 족보 등재나 편찬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혼인신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혼인신고가 강제된 시기는 1909년 3월 〈민적법〉의 시행 이후이다. 호주가 본인이나 자녀 등의 혼인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하여 혼인신고를 강제하였다. 그리고 〈민적법집행심득〉에서는 호구기재양식을 규정하여 부부관계를 공식적으로 표시하였는데, 여전히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 등 주혼자主婚者의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혼인의 효력은 관습에 따라 혼례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발생하였고, 민적신고는 혼인을 공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민사령〉을 공포하였지만, 혼인신고 등에 대해서는 일본민법을 의용依用하지 않고 〈민적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1922년 〈조선민사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조선호적령〉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23년 7월 1일부터는 부윤府尹 또는 면장에게 혼인을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부터 신고하지 않은 혼인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호적법〉에 정한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호적법〉에서는 기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976년의 〈호적법시행규칙〉에서는 혼인신고양식을 제정하였다. 2005년 민법의 개정에 따라 〈호적법〉이 2007년 폐지되고, 2008년

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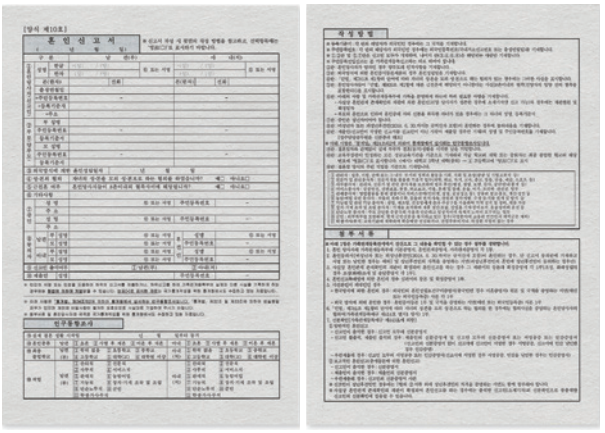
내용 혼인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하여 위의 법령에 규정한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신고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당사자의 성명과 본관 등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 ②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③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이 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까지는 가家 및 호주戶主 제도가 있었고, 또 혼인성립의 장애요소가 달랐기 때문에 〈호적법〉에서는 추가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④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과 관계 ⑤남편[夫]이 처가의 호적에 등재하는 입부혼入夫婚 또는 사위를 양자로 삼아 가를 계승하는 서양자壻養子인 사실 ⑥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일자 ⑦당사자가 혈족이 아닌 동성동본同姓同本인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하였다. 다만 ⑦의 동성동본금혼은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어 이후부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었다.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형식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내용의 진실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없다. 형식적인 결격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18세 미만자(단, 2007년 12월까지는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미만자) ②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단, 1978년까지는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 미만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8촌 이내의 혈족血族, 6촌 이내의 인척 등 근친자 ④다른 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중혼자重婚者 등이다.

신고 장소는 〈호적법〉이 시행된 2007년까지는 본적지本籍地, 현재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원칙이지만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여 해야 하지만, 타인에게 제출을 위임할 수도 있다. 혼인당사자 중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만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이는 한쪽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사자가 신고지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두[말]로 진술하면 담당 공무원은 이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들려주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특징 및 의의 혼인신고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부부로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 법률상 정당한 부부로 인정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당사자가 부부로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부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실혼주의事實婚主義'라고 한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혼인방식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라고 하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이행함으로써 부부로 인정받기도 하는데, 이를 '신고혼주의申告婚主義'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2007년까지는 〈호적법〉,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신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 등에 특별한 절차나 신고를 요구하지 않고, 사례四禮 등에 따른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가 동거함으로써 부부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사실혼주의' 내지 '의식혼주의儀式婚主義'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인 부부를 정당한 부부로 인정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23년 7월 1일부터 신고주의를 채택하였으며, 1960년 제정 〈민법〉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혼인신고서 양식

즉, 혼인은 사실혼주의에서 신고혼주의로 이행하였다. 그런데 전통적인 혼인풍속에 익숙하여 부부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피해가 컸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식을 거행하여 함께 살던 부인은 부인 아닌 첩이 되었다. 그래서 가정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혼인신고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 여권의 신장 등으로 인하여 혼인식 거행 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는 사라졌다.

그러나 사회가 변함에 따라 혼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혼인신고에 대한 의식도 변화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가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났다. 부부가 어느 정도 공동생활을 하여 서로를 확인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려는 것이다. 이는 혼인 직후에 파경을 맞이할 경우 당사자들의 신분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으려는 선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비율이 높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비율이 낮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또는 이혼한 부부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태도가 반영된 현상이다.

혼인신고는 부부가 된 것을 국가적으로 승인받고 사회에 공시하는 절차로 부부관계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를 명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가족관계등록법(신영호, 세창출판사, 2009), 가족법-친족법·상속법(이경희, 법원사, 2008),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 1992), 한국법제사(박병호, 민속원, 2012), 한국의 가계계승에서 여성의 지위(정긍식, 법사학연구47, 한국법사학회, 2013), 한국호적제도사연구(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호적실무요론(김갑동,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필자 정긍식(鄭肯植)

혼주
婚主

정의 '혼인과정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혼사를 주재하는 사람.

내용 예서禮書에 의하면 혼주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양가가 중매인을 통해 여자 쪽의 허락을 기다리는 동안, 처음으로 신랑 측 혼주가 『예기禮記』에 있는 서식에 따라 신부 집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것을 '납채서納采書'라고 한다.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부 측 혼주가 대문 밖에 나와서 안으로 맞아들여 납채서를 받고 북향하여 재배한다.

신식 결혼식에서 약혼식을 하는 경우, 사회자가 양가 친척을 소개하고 신랑·신부를 소개한다. 다음에는 신랑 측 혼주가 신부 측 혼주에게 사주를 전달하고 예물을 교환한다. 결혼식은 대개 예식장을 대여하여 진행하는데 요즈음의 혼주 역할은 우선 청첩장에다 이름을 적고, 결혼식장에서 식전에 입구에서 서서 인사하고, 식이 시작되면 식장 한쪽에 마련된 혼주석을 채우는 것일 뿐이다. 다만, 신랑·신부 측 혼주(이때는 주로 양가의 어머니)들이 등장하여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점촉點燭(화촉 점화)을 한다. 1961년 〈의례준칙〉이 생긴 이래 양가의 어머니가 앞에 놓인 등에 점촉하는 새로운 풍속도로 등장하였다. 예식이 끝나면 신랑 측 혼주가 모든 하객에게 감사의 답례를 한다.

지역사례 경기도 이천에서는 숯검정을 칠한 함진아비가 함을 메고 신부 집에 도착하면 돗자리 혹은 멍석을 깔거나 납채 시루 또는 소반을 준비해 놓는다. 함진아비가 그 위에 함을 올려놓고 절을 하면 혼주가 답례한다. 그런 다음 혼주가 함 속의 혼서지婚書紙를 꺼내어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주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과거에 '혼주'가 될 자격은 남자에게만 있었다. 대를 잇는 남자 측을 존중하는 남존여비 사상의 잔재라고 보면 된다. 즉,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형, 오빠 순으로 혼주를 맡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혼주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혼주는 혼례의 주인이란 뜻이지만, 실제 하는 역할은 별로 없다. 다만, 각자 역할과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일을 하므로 이들을 잘 돌보는 정도이다.

참고문헌 白虎通疏證, 白虎通義, 四禮便覽, 禮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북·충남·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최인학(崔仁鶴)

화회문기
和會文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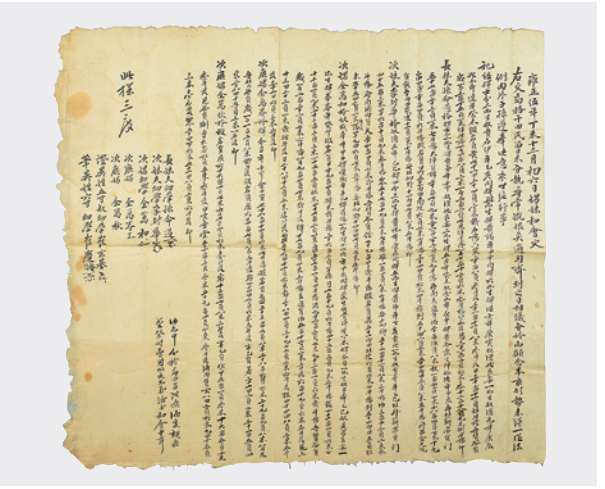
정의 재주가 사망한 후 상속 대상자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질 때 작성한 문서.

내용 전근대사회에서 재산 분배를 목적으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분재기는 재주財主의 생존 여부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의 종류가 달라진다. 첫째 재주가 생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어 주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재주가 사망한 후 자녀들이 남은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가운데 화회문기和會文記는 재주 사후에 작성되므로 후자에 속하는 문서로 분류된다.

부모가 생전에 미처 재산상속을 행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삼년상三年喪을 마친 후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재산의 분배 방식을 화회和會라 하였다. 삼 년은 예학적禮學的으로 자녀가 부모의 죽음을 애도하는 최소한의 기한으로 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삼년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국가는 이를 부모에 대한 불효로 간주하여 강상죄綱常罪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화회가 이루어질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이 전제되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이때 정해진 재산의 분배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문기의 끝부분에 서명하였다. 화회 당시 상중에 있거나 나이가 어려 서명하지 못한 경우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 대상자들의 참석과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회는 재주가 사망한 다음에 거행되므로 재주 생전에 그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허여許與같이 특별한 주재자主宰者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산분배는 자녀들의 임의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남긴 유언遺言을 따르거나 부모가 사전에 만들어 둔 초문기草文記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회문기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집안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전통이 정립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는 것도 하나의 관례였다. 따라서 부모 사후에 재산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뜻을 존중하여 따르고자 하였다.



화회문기 | 가로86 세로7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1727년 12월에 전만화(全萬和)등 5형제들이 모여 재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분재기.

그러나 부모가 특별히 남긴 유언이나 초문기가 없는 경우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을 따라 원리원칙대로 재산을 나누었다. 즉 『경국대전』에서는 봉사奉祀 재산을 제외하고 자녀가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였다. 그리고 차후 재산 문제로 인해 상속 대상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에서는 유언과 같이 '부모가 남긴 재산 분배의 기본 지침을 잘 준수하였는가'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잘 준수하였는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화회문기는 사문서私文書인 분재기의 한 종류이므로 작성 방식에서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화회문기를 통해 대체로 '서문序文' '본문本文' '서명署名'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문에는 재산을 분배하는 연월일과 재산을 분배하게 된 이유와 목적 등이, 본문에는 상속 대상별로 분배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봉사 재산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명에는 상속 대상자 모두가 서압署押하였으며, 만약 서압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특징 및 의의 화회문기는 재산상속을 위해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을 통해 사족士族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과정도 아

울러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속 관행이 변화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전근대사회의 상속제 및 친족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북지방고문서집성(이수건,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분재기를 통해 본 16세기 상속재산의 전승 양상(고민정, 국학연구39, 한국국학진흥원, 2019), 조선시대 분재문기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문숙자, 영남학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 2004),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필자 고민정(高旻廷)

확대가족
擴大家族

정의 가족의 세대 구성에 주목한 개념으로,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

개관 영어의 extended family를 번역한 확대가족擴大家族은 핵가족核家族과 대구對句를 이루는 표현으로, 조부모—부모—자녀 세대로 구성된 가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 세대로 구성된 4세대 가족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확대가족에 속한다. 부부의 공동생활체에 양친과 형제자매가 같이 기거하는 대가족을 확대가족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이는 확대가족의 일반적 모습을 보여 주는 데 무리는 없다. 하지만 더욱 엄밀한 의미에서 대가족·소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 주목한 것이고, 핵가족·확대가족은 가족의 세대별 구성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

또 일각에서는 부부와 미혼 자녀 이외에 직계존속直系尊屬 및 비속卑屬과 방계친족 등을 포함한 가족을 확대가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직계가족直系家族 및 방계가족傍系家族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확대가족을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세대 이상 확대가족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 3세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은 1960년 28%에서 1990년 12.5%로 감소한 이후 2000년 8.4%, 2010년 6.1%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 4세대 확대가족은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오늘날에도 4세대가 동일 공간에 거주하는 확대가족은 2010년 기준 약 7,000가구로, 전체(약 1,423만 2,000가구) 가구의 0.049%에 불과한 극히 낮은 비율을 보인다.

내용 한국의 확대가족은 기본적으로 부계혈연을 중심으로 한다. 아버지—아들—손자로 이어지는 부계를 따라 재산 및 제사상속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아버지와 아들은 확대가족 안에서 대를 이어 가며 관계를 영속화한다. 동시에 조상과 후손을 이어 주는 수직 포괄성과 직계 및 방계 친인척에 대해 적절한 예의와 의무를 다하는 수평 포괄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세대와 세대 간에는 의무와 책임을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된다.

단 전통사회 가족 다수가 확대가족을 이루며 안정된 삶을 누렸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표적인 '가족 신화' 중 하나라 여겨진다. 여기서 신화는 객관적 자료나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에도 굳건한 믿음이 유지되는 사회 통념을 뜻한다. 전통사회 가족의 경우 소수의 지배층 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근과 질병 그리고 전쟁의 위협 아래 가족 구성원의 죽음이 일상화된 생존공동체 성격이 강하였다.

시대를 불문하고 피지배계층은 핵가족일 수밖에 없다는 '핵가족 보편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도 차남 이하 아들은 형태상 핵가구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부계혈연 중심의 직계가족 이념을 고수해 온 만큼 한국 가족의 핵가구화를 핵가족화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3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확대가족의 감소는 부모 부양 의식 약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자'가 가족이라는 인식은 1998년 8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2014년에는 31.7%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사회 혹은 기타(스승, 선후배 등)가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1998년 2.0%에 불과하였지만 2014년에는 51.7%로 절반을 넘어섰다.

가족 중에 누가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큰 폭으로 변화하여 장남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1998년 22.4%였지만 2014년에는 2.0%로 대폭 낮아졌으며, '아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 역시 같은 기간 중 7.0%에서 1.1%로 줄었다. 그 대신 '자녀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5.0%에서 24.1%로 증가하였다. 가족의 주요 기능이라 할 부모 부양 의식이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확대가족 비율 또한 감소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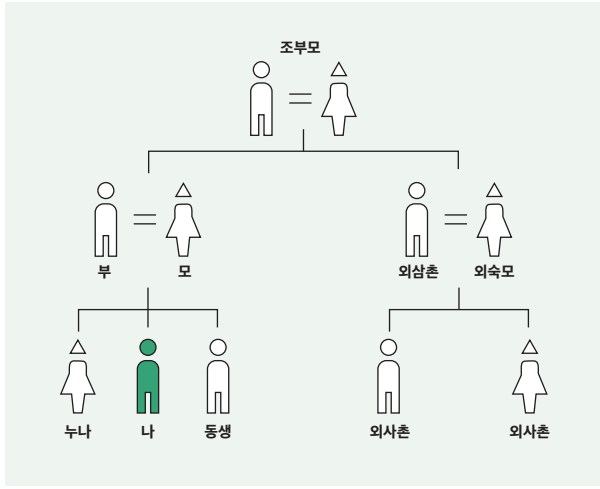
과거에는 장남 가족도 결혼 후 일시적 분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장남 가족의 가족 주기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해 보면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다시 확대가족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일컬어 최재석崔在錫 교수는 "장남 가족의 분가는 핵가족화의 징후로 보기보다는 일시적 분거分居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확대가족의 감소 추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또 하나의 현상으로는 친족관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왕래하는 친족의 범위가 '사돈의 팔촌'이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광범위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사촌과의 왕래도 뜸한 편이다. 그 대신 친족 간 유대가 약화된 자리를 국가 및 공공영역이 대체하고 있다.

친족관계 약화는 핵가족의 자율성 확대 및 개인 프라이버시 강화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공공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에서도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율성이 국가에 의해 보장받게 된 이면에는 친족의 기능 및 위상의 약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친족관계의 방향에도 변화가 나타나 부계제가 약화되는 대신 양계제적兩系制的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양계제 대신 양축제兩軸制라는 표현을 제안하기도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계와 모계 양쪽으로 성姓을 부여받을 수 있고, 제사와 상속 또한 부계냐 모계냐를 가리지 않을 때 양계제라 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친족관계는 친가와 처가 혹은 본가와 시가를 가리지 않고 편의에 따라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양축제라는 표현이 더욱 정확하다는 것이다.

2000년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



확대가족

조사에 따르면 부계인 시댁과는 명목적이고 의례적인 관계가 주를 이루지만 모계인 친정과는 일상의 소소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정서적으로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부관계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서 과거 '맏며느리는 하늘이 낸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남편이 장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성으로서도 며느리라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

아파트 주거 양식 확산과 확대가족 감소 사이에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리라 추측된다. 이를 주제로 한 경험적 연구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아파트 도입 초기에 3세대 확대가족을 위한 아파트가 건립되었으나 곧 자취를 감추게 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고향에 남은 부모 세대가 자녀의 결혼 이후 고향을 떠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에는 도시의 아파트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한몫하였다는 추론 또한 가능하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확대가족은 다른 가족 형태와 비교해 볼 때 짧은 기간 내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구조적 변동과 가족의 변화 사이에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현상임에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은 아쉽다. 정부 주도하에 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부부 중심의 서구식 핵가족이 근대화를 상징하는 이상적 형태로 부상하게 되었음을 입증한 연구는 확대가족

의 상대적 쇠퇴를 설명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향후 전통사회 친족제도와 현대사회 친족관계 사이에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이 존재하는지, 더불어 한국적 친족관계의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 및 이론틀을 구축한다면 한국 가족의 고유한 특성을 밝혀내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중국·일본 가족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가족의 특수성 및 가족 구성 원리의 보편성을 동시에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김유경, 보건복지포럼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장남과 그의 아내(김현주, 새물결, 2001), 한국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한국가족의 현주소(이동원 외, 학지사, 2002), 한국가족제도사연구(최재석, 일지사, 1983).

필자 함인희(咸仁姬)

회갑
回甲

정의 육십갑자의 갑이 돌아왔다는 뜻으로,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예순 한 살을 이르는 말.

역사 61세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우리나라 역사 문헌에 기록된 것으로는 환갑換甲·화갑花甲·환갑還甲·회갑回甲·주갑周甲·화갑華甲·환력還曆 등이 있다.

환갑에 대한 첫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의 1296년(충렬왕 22) 정월 조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충렬왕 병신 22년 조의 기사에서 "그때 왕의 나이 61세, 무꾸리[術者]가 환갑이 액년厄年이라는 말을 하기에, 은혜를 베풀고 죄인을 풀어주어 용서하였다時 王年六十一 術者 有換甲厄年之說 故推恩肆宥."라고 한 대목에서 발견된다. 환갑에 관한 첫 기록은 청천당聽天堂 심수경沈守慶(1516~1599)의 『청천당시집聽天堂詩集』 7언 절구에서 "나는 여든, 아들은 환갑還甲을 넘었네, 부자가 모두 장수하네吾踰八耆兒還甲 父子俱爲壽域人."라고 한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회갑에 관한 첫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682년(숙종 8) 10월 9일 조 기사에 "내년은 자의대비慈懿大妃의 회갑이 되는 해입니다. 민간의 미천한 백성도 부모의 회갑이 되면 술을 거르고 음식을 장만하여 친족을 모아 경하하니, 이는 곧 인정상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明年適當慈懿大妃回甲之年 閭巷小民 當父母回甲之歲 猶且釀酒設饌 聚族而慶之 此乃人情之所不能已者."라고 한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의 지식인과 중산층의 시민은 '회갑回甲'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며, 한반도 전역의 보통사람과 농어촌 지역의 서민은 '환갑還甲'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환갑' '회갑' '화갑'이라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만갑挽甲, 輓甲'이라 한다. 환갑을 맞이한 사람을 '환갑주' 또는 '갑주甲主'라 하고, 나이 예순한 살이 되는 해를 '환갑년' 또는 '갑년甲年'이라 한다. 그해의 생일을 '환갑날' 또는 '갑날甲日'이라 하고, 죽은 사람의 갑날을 '만갑날[挽甲日, 輓甲日]'이라 한다. 갑주가 살아있는 경우, 환갑날 아침 자녀들이 갑주 부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헌수를 하고 환갑잔치를 베푼다. 환갑잔치는 환갑날 아침에 큰상을 차려 놓고 갑주 부부가 수연석壽宴席에 앉으면 먼저 장남 부부가 술잔을 올리며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배례, 폐백, 축원 순으로 헌수례獻壽禮를 행한다. 갑주가 죽은 경우, 고인의 갑날 아침에 자녀들이 집이나 묘지에서 제상을 차려 놓고 삼헌고축三獻告祝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갑사甲祀를 지낸다. 만갑잔치는 갑사의 음복절차가 확대된 것으로 자녀들이 가족과 친지, 고인의 동년배들을 초청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축제이다.

'산 제사'라고도 하는 환갑잔치의 상차림은 부모를 위한 큰상[望床]과 하객을 위한 주안상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환갑상차림은 가풍과 지역, 경제적 여건,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제상차림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환갑상에는 밥과 갱을 놓지 않는 것이 다를 뿐이고, 고임음식 뒤에 장국상(입맷상)을 곁들여 놓기도 한다. 환갑주의 부모가 살아있으면 큰상 앞에 돌상을 차려 놓고 환갑주가 부모님께 헌수례를 하고, 재롱잔치를 열어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큰상의 고임음식 그릇은 홀수로 배치하고, 고임음식은 제사상차림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음식의 높이는 다섯 치, 일곱 치, 아홉 치 등으로 높게 쌓는다. 고임음식으로 가득 진설한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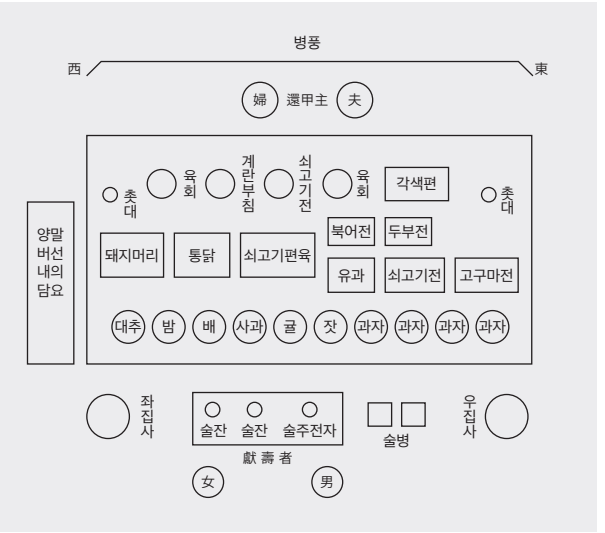
상의 좌우에 폐백 선물과 상화床花를 배치한다. 큰상의 고임음식 전면에 축祝, 수壽, 복福 등의 글자를 색상으로 맞춰 부모님의 만수무강, 생기복덕을 축원한다. 고임음식 높이가 부모님에 대한 효성의 척도라고 여겨 숙수熟手라 불리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임음식을 높이 화려하게 장식한다.

환갑잔치에서 헌수례는 환갑주가 자녀로부터 받는 효행 가운데 으뜸이다. 헌수절차는 환갑주의 부모가 살아계시면 오색반란지경五色斑爛之慶이라 하여 환갑주가 큰상 앞에 돌상을 차리고 붉은 띠를 매고 어린애처럼 꾸며 재롱을 부리고 헌수를 한다. 그런 후 환갑주 부부가 수연석으로 인도되어 보료에 앉으면, 환갑주의 직계비속의 자녀들이 서열대로 북향으로 도열하여 남자는 우집사, 여자는 좌집사 도움을 받아서 술잔을 올리며 만수무강과 생기복덕을 축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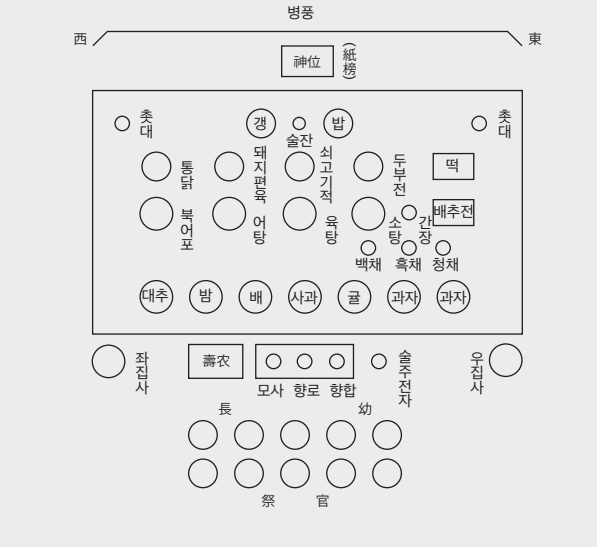
1980년대 중반이후로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직계비속 자녀들과 친척들을 제외하고 동년배 친지들과 하객들은 큰절을 하지 않고 목례와 악수, 축하로 헌수례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헌수를 할 때, 자녀들이나 친지들, 동년배 친구들, 하객들 중에 축하, 축시, 축사, 수의, 장신구, 기념품, 기념논총, 축가, 축무 등을 헌정하면, 환갑주 부부는 자녀들이 장만한 폐백 선물인 수건, 양말, 버선, 내의, 담요, 이불 등을 가까운 친척과 동년배, 하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특히 1997~1998년 IMF경제위기를 겪은 이후로 도회지의 많은 가정에서는 환갑잔치를 하지 않고 환갑날 또는 주말에 인근 예식장이나 뷔페식당에 모여 직계비속 자녀들을 중심으로 부모님께 헌수례를 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 것으로 환갑잔치가 바뀌었다. 더구나 2007년 제2의 IMF경제위기설이 퍼지면서 도시와 농촌의 많은 가정에서 환갑잔치를 하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부모만 기념여행을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헌수례 풍속이 점차 바뀌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나라마다 모임과 여행을 통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갑잔치, 만갑잔치 등을 집단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잔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환갑기념 여행 등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2023년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단계적



환갑잔치 수연석과 수연상



만갑잔치 제상차림

으로 해제되고, 해외 각국의 관광여행 비자 발급이 정상화 되면서 환갑기념 여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갑년이 되기 전에 고인이 된 부모님의 갑일에 갑사를 지내고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 후, 부모님의 영생을 축원하는 만갑잔치를 베푼다. 이때 만갑잔치의 준비와 청첩·갑사·만갑잔치 등의 과정은 환갑잔치와 별반 차이가 없다. 죽은 사람의 만갑날 아침에 갑사를 지내는데, 집에서 지내는 경우와 묘지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다. 갑사는 기제사에 준해서 제상을 진설하되 만갑옷 등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고 부유한 가정에서는 음복을 확대하여 만갑잔치를 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가족들이 음



회갑 사진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복을 나누는 것으로 갑사를 마무리한다.

특징 및 의의 환갑의례는 재생再生을 기원하는 통과의례의 절차와 구조, 특성을 함축하고 있고, 혈연과 지연, 학연, 직연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있다. 환갑의례를 통과한 환갑주는 혈연과 지연, 학연, 직연 공동체 성원으로부터 '갑 지낸 노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또한 만갑주는 '갑 지낸 조상신'으로서 가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조상신으로서 예우를 받게 된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茶山詩文集,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聽天堂詩集, 한·중 연령의 별칭 비교(유현아, 중국언어연구34, 한국중국언어학회, 2011), 한국인의 삶에서 수연례가 갖는 의미 분석(김만태, 실천민속학연구12, 실천민속학회, 2008), 한국인의 환갑의례(최종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회갑의례와 그 의식에 관한 인지도 연구(박명숙,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필자 최종호(崔鍾浩)

효녀
孝女

정의 어버이를 극진히 봉양하는 딸.

내용 신라시대의 효녀孝女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하는 효녀지은孝女知恩,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하는 빈녀양모貧女養母 이야기가 있다. 지은知恩은 신라의 한기부韓祇部 사람 연권連權의 딸로,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며 나이 32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았다. 집이 가난하여 봉양이 어려워지자 다른 집에서 밥을 구걸해 집에 갖다 주거나 남의 집 살림도 대신 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가난함은 계속되었고, 끝내 한 부호 집의 종이 되기로 하고 쌀 30석을 얻었다. 그 뒤 지은은 부호의 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였고,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종살이를 시작한 지 3, 4일이 지나자 어머니가 딸에게 말하기를 "지난날에는 비록 밥이 거칠어도 먹는 것이 맛나더니 오늘에는 밥은 좋으나 밥맛은 좋은 것 같지 않고 간장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이에 지은이 사실을 말하자 어머니는 "나 때문에 네가 남의 종이 되는 것은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것만 못하다."라며 통곡하니 그것을 본 지은도 함께 울고 길 가는 사람도 그들과 함께 슬퍼하였다. 이때 효종랑孝宗郎이 이를 보고 자신의 부모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집에 있는 조 100석과 의복을 보내주고, 또 효녀 지은을 산 주인에게 곡물을 변상해 양민이 되게 하였다. 이를 본 낭도郎徒 수천 명도 각자 조 1석씩 거두어 보냈다. 당시 진성여왕은 이 말을 듣고 벼 500석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정역定役의 의무를 면제시켰다. 또 곡물이 많아서 도적들이 뺏을까 하여 군사를 보내어 지키게 하고, 그 마을에 표방하기를 '효양방孝養坊'이라 하였다.

고려시대 효녀로는 경상도 남해현의 낭산도민狼山島民 능선能宣의 딸 함부咸富, 경상도 영산현靈山縣의 낭장郎將 신사천辛斯蕆의 딸 신씨辛氏, 평안도 가산假山의 중랑장中郎將 김개물金介勿의 딸 충개虫介가 있다. 990년(성종 9)에 남해현의 함부는 자신의 아버지가 독사에게 물려 죽자 침실에다 빈소를 마련하여 무려 5개월이나 공선供膳하기를 평상과 다름이 없이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게 하고, 면역免役하였다. 경상도 영산현의 신씨는 1382년(우왕 8) 왜구가 침입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를 데리고 가려 하자 아버지를 죽인 것은 천죄天罪를 받을 것이라고 하며 저항하였다. 그러자 왜적이 신씨를 죽였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 16세였다. 체복사體覆使 조준趙浚이 이 일을 상서하여 조정에서는 입석立石하고 정려旌閭하였다. 평안도 가산의 충



지은효양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중 부분 | 가로25 세로38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개는 나이 16세에 어머니가 나쁜 병에 걸려 오래도록 낫지 않자 오른손 무명지를 잘라 국에 타서 드리니 어머니의 병이 곧 나았다. 이에 정려하였다.

조선시대에 효녀로 포상된 사례 내용을 정리하면 부모의 병에 단지斷指하거나 할고割股한 경우, 아버지의 원수에 대해 딸이 복수한 경우, 임진왜란 때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장사지낸 경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절개를 지키려다 부모와 함께 죽은 경우, 물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려다 함께 익사하거나 어머니를 구하고 자신은 익사한 경우, 화재 시 어머니를 구하려다 함께 타 죽은 경우, 결혼은 했으나 친정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남편과 헤어지고 친정으로 돌아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봉양한 경우, 부친상을 당하자 어린 나이에 삼년상을 마친 경우, 호랑이에게 물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호랑이에게 맞섰으나 어머니의 시신만을 거둔 경우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사회에서 남성은 효孝 윤리만의 실천을 요구받았지만 여성은 효와 열烈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았다. 여성에게 남편에 대한 열이라는 윤리는 친부모와 시부모에 대한 효보다 선행하였다. 즉 열은 여성의 윤리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차지한 것임에 반하여 효는 이차적인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정표된 열녀의 수가 효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삼강윤리 가운데 효보다 열을 더 권장하고 포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慶尙道邑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16),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08), 조선시대의 정표정책(박주, 일조각, 1990),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박주, 국학자료원,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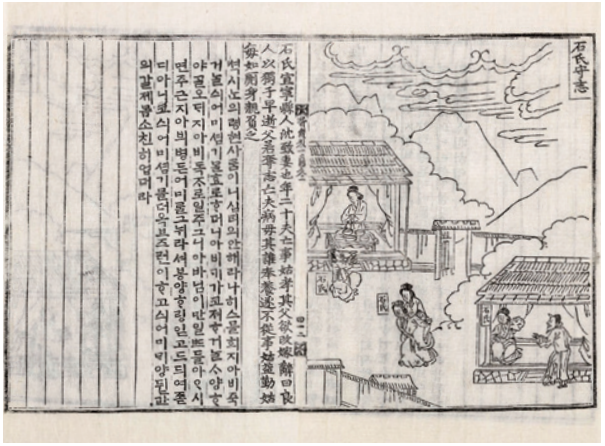
필자 박주(朴珠)

효부
孝婦

정의 지극정성으로 시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며느리.

내용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인물조에 의하면 경상도 지역의 전체 열녀 수는 효녀와 효부孝婦를 합한 수의 10배 가까이 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에게는 삼강윤리 가운데 부모에 대한 효孝보다 남편에 대한 열烈을 훨씬 더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읍지』에 있는 조선시대 효부 사례를 살펴보면 평소 시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거나 병시중을 정성껏 한 효부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호환虎患 사례로 호랑이에게 물려간 시아버지를 구한 경우, 물에 빠진 시어머니를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경우, 시어머니 간병看病에 단지斷指하거나 상분嘗糞한 경우, 도적 침입 때 시아버지를 구한 경우, 불이 난 사당에 뛰어 들어가 신주神主를 구하고 불 속에서 여종과 함께 타 죽은 경우, 시어머니 간병에 상분할 뿐만 아니라 꿩과 잉어를 구해 드린 경우, 시어머니 간병에 단지와 연종吮腫 효행을 하고 국상國喪에 심상心喪 3년을 한 경우 등이 있다.

효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대구의 강씨康氏는 효자 참봉 서시립徐時立의 어머니이다. 임진왜란 때 시부모를 모시고 팔공산으로 피란하였다. 시어머니가 병이 나자 상분하여 병의 상태를 자세히 살폈다. 시어머니가 고기를 먹고 싶어 하자 강씨가 하늘을 부르며 말없이 빌었다. 그때 매가 나타나 암꿩을 잡아서 강씨 앞에 떨어뜨려 줘 그것을 가져가 시어머니에게 드시게 하자 시어머니의 병이 나았다. 경상남도 의령의 심치沈致의 처 석씨石氏는 나이 20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효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석씨수지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중 부분 | 가로25 세로38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섬기는데 친정아버지가 그녀를 다시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석씨가 거절하며 말하기를 "독자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절개를 지키려는 제 뜻을 빼앗으신다면 돌아가신 남편의 병든 어머니는 누가 봉양하겠습니까." 하였다. 그러고는 친정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더욱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시어머니를 섬겼다. 시어머니가 측간에 갈 때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업었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정려旌閭되었다.

경상북도 진보의 양가녀良家女 강돌녀姜乭女는 겨우 20세 때 시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김을 매다가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가게 되자 앞장서서 호랑이에게 맞서 시아버지를 업고 돌아왔다. 이에 효부로 정려되었다.

경상북도 인동仁同의 유씨柳氏는 사인士人 장천경張天經의 처이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집에 불이 나 가묘家廟에까지 번졌다. 유씨는 불길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 신주를 안고 나오다 타인에게 전해 주었다. 하지만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불 속에서 타 죽었다. 그의 여종 매향梅香도 유씨를 안고 함께 죽었다. 그리하여 효부와 충비忠婢가 함께 정려되었다.

전라북도 함양의 사노私奴 우립友立의 처 천녀天女는 시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려 냇가의 움막에서 지냈는데 밤중에 비가 내려 물이 불었다. 이웃 움막에 있던 자가 둘 다 살리기는 어렵다며 시어머니를 두고 움막을 떠나자고 하였다. 하지만 천녀는 "내 어찌 차마 시어머니를 버리고서 목숨을 구하겠는가." 하였고, 결국 물에 빠져 시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정려되었다.

경상북도 경주의 사인 조영曺英의 처 이씨李氏는 극악한 도적들 수십 명이 횃불을 치켜들고 갑자기 쳐들어와 시아버지를 칼로 찌르려고 하자 자신의 몸으로 시아버지를 감싸 안으며 말하기를 "나를 죽이고 시아버지는 해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도적들이 의롭게 생각하고 두 사람을 풀어 준 뒤 집 밖으로 나가며 서로에게 알리기를 "효부의 집이니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였다. 이에 이씨를 정려하였다.

특징 및 의의 전통사회에서 효부는 시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고, 몸을 편안하게 돌봐 주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보존하고, 남편을 내조하여 입신출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문을 빛내야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아들을 낳아 대를 잇고, 시가를 번창하게 하는 것이었다. 효부는 평소에 시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였으며, 시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는 시부모의 병시중을 정성껏 하는 등 친정보다 시가를 먼저 생각하였다.

참고문헌 慶尙道邑誌,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16),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08), 조선시대의 정표정책(박주, 일조각, 1990),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박주, 국학자료원, 2000).

필자 박주(朴珠)

효자
孝子

정의 부모를 공경하며 잘 섬기는 아들.

내용 『삼국유사三國遺事』 효선 편에 신라시대의 효자孝子 사례로 신라 경덕왕 대 향득向得의 효행이 나와 있다. 웅천주熊川州의 향득은 어느 해 흉년이 들어 거의 굶어 죽게 되자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이것은 할고割股 효행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고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세하게 상주하자 경덕왕은

곡식 500석을 상으로 하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성종 때부터 통치자가 효치주의孝治主義를 표방하였으며, 성종 때 실시한 효자에 대한 포상은 이후 하나의 전형을 이루게 되어 마지막 왕인 공양왕 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사회에서 효행은 군주로부터 사서士庶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덕목이었다. 조선왕조는 관료들이 효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특전을 베풀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한 제도는 부모 생시의 효행을 위한 관리 휴가제도이다. 그리고 노부모를 둔 관리에게는 노친 시양侍養을 위한 국가적 배려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부모의 연세가 70세 이상인 자는 그의 거주지로부터 300리 이상 원격지의 수령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사회는 행정제도 측면에서 효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자에게 여러 가지 포상을 하였다. 포상 대상은 문무유직자文武有職者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사회 신분 고하, 귀천 구별 없이 효를 행한 자를 정표旌表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지배계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포상으로 정문旌門, 정려旌閭, 복호復戶, 상직賞職, 상물賞物, 정문복호旌門復戶, 가자加資, 면역免役, 급복給復, 녹용자손錄用子孫, 면천免賤 등 여러 가지 특전이 국가로부터 베풀어졌다. 이때 베푼 포상의 기준은 당사자의 신분과 효행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달랐다. 그리고 효자를 관리로 채용하는 것은 중국 한漢나라 이래의 효렴과孝廉科 유제遺制였다. 정문과 정려 포상이 가장 높은 단계의 포상이었다.

조선시대의 효자 사례 유형은 다양하였다. 부모 생시에는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고 즐겁게 하였다. 부모가 병이 들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리는 단지斷指,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약으로 쓰는 할고, 대변을 맛보아 병의 경중을 살피는 상분嘗糞, 환자의 종기를 빨아 독을 빼내는 연종吮腫, 그리고 시약施藥·득어得魚·득육得肉 등으로 정성껏 치료하였다. 부모가 호환虎患이나 수화재水火災를 겪거나 강도·도적·왜적을 만나 위기에 처하였을 때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모를 구하거나 함께 해를 당하였다.

임진왜란 때 왜적으로부터 부모의 살해나 피로被虜



허권 효자비 | 서울 종로구 | 2009 | 국립민속박물관·서헌강

를 막고자 목숨을 걸고 맞서거나 함께 해를 당한 경우,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감응한 경우, 부모 사후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상제를 행하거나 가묘家廟를 설치한 경우, 단상법短喪法을 거부한 경우, 부모상에 추복追服한 경우, 국상을 당하여 심상心喪 3년을 한 경우, 스승을 위하여 분묘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탈상할 때까지 분묘를 돌보는 여묘廬墓 3년 또는 심상 3년을 한 경우도 있다. 부모 사후에 여묘를 3년 내지 6년이나 9년 동안 지키고, 여묘를 끝내고 제사를 정성껏 받들기도 하였다.

이들 사례 유형 가운데 부모 생시에는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단지 효행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부모 사후에는 여묘를 3년 내지 6년을 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도적과 왜적이 효자의 효성에 감동하여 해치지 않고 도리어 풀어준 경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그만두거나 관직을 그만둔 경우, 상을 치르는 동안 너무 슬퍼한 나머지 병에 걸려 목숨을 잃은 경

우, 여묘할 때 호랑이가 나타나지만 효자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여묘를 같이 지키거나 산길을 인도한 경우, 효자로 인해 동네 이름이 지어진 경우, 매일 성묘하러 다닌 길이 하나의 새로운 길 이른바 효자로孝子路가 된 경우, 부모의 원수에 대해 복수·살인한 경우, 여묘 곁에서 샘물이 솟아났다가 삼년상을 마치고 여막을 걷자 곧바로 멈춘 경우 등도 있었다.

여기서 효자의 효행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면 할고는 단지보다 행하기가 어려웠으며, 매우 드문 사례였다. 그리고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대개 물고기나 꿩고기 등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경우 효자가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뜨려 물고기를 구하거나 우연히 집 안으로 꿩이 날아들어 요리해 드림으로써 병을 고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효자의 지극한 효성으로 하늘이 감동한 경우로 물고기, 잉어, 꿩, 사슴, 비둘기, 노루, 오리, 복숭아, 오이, 수박, 송이 등을 얻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그 가운데 물고기와 꿩을 얻는 사례가 가장 많다. 일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효행 사례들도 적지 않다. 일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현상들이 효심 깊은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효감동천孝感動天 사례들은 교화적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생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불 속에서 신주神主를 안고 나오다 타 죽은 효자 사례는 숭조崇祖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선 후기의 가문 중시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신주는 조상을 대신하는 상징물로, 그야말로 소중하게 간주하였다.

호랑이가 효행 사례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많이 서식한 때문으로, 당시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랑이는 효행 사례뿐만 아니라 전설이나 민담, 민화의 산신도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만큼 호랑이는 우리 민족에게 친숙한 동물이다.

여묘살이는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나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위하여 최소한 삼년상은 지켜야 한다.'는 관념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와 단절하고 분묘 곁에서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묘살이는 고려 말기 유교식 의례의 하나로 거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주자가례』에는 보이지 않는 예법이었다. 그러나 예법은 후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여묘살이는 조선시대에 사대부 계층 중심으로 보급·확산되었고, 조선시대 상제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효자 가문에서 효자가 계속 배출되었다.

특징 및 의의 동양문화에서 실천적 덕목의 핵심 윤리인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백행지원百行之源이다. 현재까지 우리의 정신문화와 일상을 주도하고 있는 규범은 효 사상으로, 효 사상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사회에 정표된 효행의 다양한 사례들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교화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유교적 인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어떤 면에서는 포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 효행도 있었다. 그리하여 효행이 점점 형식적인 면으로 흘러 폐단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음을 후대 식자들의 비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앞으로도 효를 우리나라 전통의 미풍양속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과거처럼 형식적인 면이나 비자연적인 면은 지양하고 현대 생활에 맞게 변형·수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高麗史, 經國大典, 慶尙道邑誌, 東國新續三綱行實圖,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朝鮮王朝實錄,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16),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08), 조선시대의 정표정책(박주, 일조각, 1990),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박주, 국학자료원, 2000).

필자 박주(朴珠)

효자도
孝子圖

정의 중국 또는 한국 효자孝子의 효행孝行을 그린 교훈적인 고사인물화古事人物畫.

역사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효자도 중 가장 이른 것은 1434년 제작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효자도孝子圖」이지만, 중국에서는 2세기경 한대漢代 무량사武梁祠 화상석畫像石에서부터 효자도 도상圖像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양향액호


자로부미


맹종읍죽

효자도 중 부분 | 국립민속박물관

로 역사가 깊다.

일반 회화 형식의 효자도 제작 관련 중 가장 이른 기록은 장언원張彦遠의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에 남조南朝 송의 화가 사치謝稚가 효자도를 그렸다는 내용이다. 효자 이름을 드러낸 효자도 기록으로는 오대십국五代十國 중 10세기에 활동한 남당南唐의 화가 위현衛賢이 〈검루선생도黔婁先生圖〉와 〈노래자도老萊子圖〉를 제작했다는 내용이 있다. 유검루庾黔婁는 편찮으신 부친의 변을 맛보아서 병의 차도를 가늠하고 북두칠성에게 자신이 아버지 병을 대신하기를 빌었던 효자이고, 노래자는 90세 양친을 위해 70세 때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린 효자이다. 북송 때 효경孝經을 도해한 〈효경도〉를 그린 이공린李公麟(1049~1106)은 효자 고사와 함께 본받을 만한 부모 고사를 그린 〈자효고실도慈孝故實圖〉를 제작했다. 중국에서 효자도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여계등余繼登의 『전고기문典故紀聞』에 수록된, 명나라 태조太祖가 옛 효행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안을 일으킨 사람을 그리게 하여 자손에게 보이도록 명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수많은 효자 고사가 있으나 효행이 탁월한 24명을 선정하는 '24효' 전통이 당나라 때부터 성립되었고 석각화, 회화, 판화, 공예 장식문양으로 표현되었다. 송나라부터 '24효도' 형태로 효자도가 제작되었다. 24효에는 여러 가지 이본이 있으나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가장 일반적인 24명의 효자는 순제舜帝, 문제文帝, 양향楊香, 맹종孟宗, 왕상王祥, 곽거郭巨, 왕부王裒, 동영董永, 정란丁蘭, 주수창朱壽昌, 염자剡子, 자로子路, 노래자老萊子, 설포薛包, 강혁江革, 육적陸績, 민손閔損, 오맹吳猛, 채순蔡順, 검루黔婁, 증삼曾參, 황향黃香, 당씨唐氏, 강시姜詩, 황정견黃庭堅이다. 24효 전통은 당 말기에 성립되었으나 현재 통용되는 24효에는 북송 시기 인물인 주창수와 황정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북송 이후에 형성된 24효가 일반적이다. 일반 회화로 제작되었던 24효도는 점차 대중적인 민간 년화民間年畫로 더 많이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 효행 사적은 『삼국유사』에서부터 독립적인 편목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고려 말 우리나라 최초의 유교 교화서인 『효행록孝行錄』이 편찬되었다. 1346년 권준權準이 화공에게 24효를 그리게 했다는 기록이 가장 이른 시기 효자도 제작 기록이다. 조선시대에는 판화 형식의 효자도를 비롯하여 일반 회화

도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제작되었다. 『삼강행실도』(1434)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1514)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5)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1797)가 대표적인 국가 편찬 행실도이다. 일반 회화 형식의 효자도는 대체로 19세기에 병풍용으로 제작된 것이 남아 있으며, 작가를 알 수 없고 채색장식화로 제작되어 '민화民畫'라고 인식되고 있다.

내용 조선시대 효자도는 행실도 및 효행록에 수록된 판화 형식과 일반 회화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화 형식의 효자도는 국가에서 편찬한 행실도와 조상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문중에서 제작한 가전家傳 효행록에 수록되었다. 『삼강행실도』『속삼강행실도』『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된 판화 효자도는 한 화면을 다수의 공간으로 나누어 효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달하고자 했으나, 『오륜행실도』에서는 하나의 화면에 하나의 장면을 그리는 구성 방식으로 바뀌었다.

일반 회화 효자도는 조선 초부터 병풍으로 제작되어 왕실에서 세자 교육용으로 사용하거나 효자로 이름난 사람들에게 상으로 내리는 데에 활용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1413년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서연관書筵官에서 병풍을 제작할 때, 『효행록孝行錄』에서 발췌하여 효자도 병풍으로 만든 기록과 1433년 세종과 왕세자 이하 종친 등이 온수현溫水縣 온천으로 행차할 때 경기감사 등이 세자에게 효자도 병풍 1좌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명종明宗과 인종仁宗은 세자 시절에 침전에 효자도를 항시 진설해 두고 보았으며 정조正祖는 세손 시절에 효성이 지극하고 효자도를 좋아했다고 하면서 세자의 효성을 보여 주기 위해 효자도 병풍을 언급하기도 했다. 왕실에서 하사품으로 명종 때 효자 나응삼羅應參에게 중국과 우리나라 효자 6명씩 그린 효자도 병풍을 제작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19세기 차비대령화원 녹취재 인물문 화제에 효행 고사가 출제되었다. 1809년 '노래무채老來舞彩'와 1824년 '문왕삼조文王三朝'는 『삼강행실도』에는 수록되었다가 성종 대 산정본부터 제외된 고사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실도 효자도와 왕실을 위해 제작되는 효자도의 내용이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대부 계층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감상이나 장식용으로 효자도 병풍을 제작하고 사용했다. 이와 달리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효자도를 제작한 예를 윤제홍尹濟弘의 〈자로부미도子路負米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지들에게 쌀을 꾸러 다니며 부모님을 모시는 자신의 효행을 공자의 제자 자로가 양친을 위해 백여 리 멀리서 쌀을 구해서 지고 온 '자로부미' 고사에 빗대어 효행 의지를 굳건히 하고 후손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효자도를 제작했다.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 일반 회화 효자도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만고기관첩萬古奇觀帖〉에 수록된 한후량韓後良이 그린 〈맹종읍죽孟宗泣竹〉과 한후방韓後邦이 그린 〈자로부미子路負米〉와 〈왕상고빙王祥叩氷〉이 있다. 이 세 점의 효자도의 효행고사가 고려 말부터 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이야기로 『삼강행실도』 효자편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고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한 장면만을 세필과 채색으로 그린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효자도는 6~8폭의 병풍이며 채색장식화풍이다. 우리나라 효자가 아닌 중국 24효도에 포함되는 효자를 그린 병풍류와 『오륜행실도』 효자도 도상을 따른 병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곽분양행락도나 백동자도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전각을 배경으로 인물을 배치하는 구성을 따르고 있으며, 후자는 산수를 배경으로 하는 효자도이다. 기록과 현전하는 효자도 병풍에 그려진 효행 고사를 조사하면, 황향선침黃香扇枕, 노래반의老萊斑衣, 육적회귤陸績懷橘, 민손단의閔損單衣 자로부미子路負米, 왕상부빙王祥剖氷, 당씨유고唐氏乳姑가 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 정홍래 효자도 2폭은 한 폭에 각기 다른 세 개의 효자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우리나라 효자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성방식을 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유교를 숭상하는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삼강오륜三綱五倫으로 대표되는 위계질서의 확립이다. 효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예'라는 개인의 윤리이며, 더 나아가 '충효쌍전忠孝雙全' '충효일맥忠孝一脈'이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사회를 유지하는 사상적 기둥이고, 국가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조선시대에 감

계적인 목적에서 제작되고 소비된 고사인물화 중 하나가 효자가 효행을 행하는 이야기를 그린 효자도이다. 효자도는 유교윤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된 실용적인 그림이자, 조선시대의 사상과 가치를 표출하며, 사회적 규범, 정치적 권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정치·사회·윤리 등 문화 전반의 배경 속에서 제작 용도에 따른 효행 고사의 선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채색 효자도는 본연의 감계적 목적은 퇴색하고 장식적인 성향이 짙어졌다.

참고문헌 유교이념의 생활 속 실천(이수경,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1, 사회평론, 2006), 조선시대 사회 통합 이념의 상징 효자도(이수경, 한국민화6, 한국민화학회, 2015), 조선시대 효자도(이수경, 미술사학연구242·243, 한국미술사학회, 2004), Twenty Four Paragons of Filial Piety(Virginia Lee Mead, Arts of Asia27, Arts of Asia, 1997).

필자 이수경(李洙京)

효제
孝悌

정의 형제 관계를 규정하는 가족 윤리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

내용 고려시대의 형제에 대한 우애 사례를 『고려사高麗史』 효우열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효자조,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효자 편 등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종 때 강릉부사 김천金遷은 몽고 병사가 내침하여 어머니와 아우 덕린德麟을 잡아가자 어머니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받들었다. 그런데 14년 만에 백호百戶 습성習成이라는 자가 원元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편지를 전하여 어머니가 북주北州 천로한天老寒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백금 55냥을 주고 어머니를 모셔왔다. 그로부터 6년 후에는 아우도 돌아왔다. 이후 형제는 종신토록 효성을 다하였으므로 향인이 비석을 세우고 마을을 효자리孝子里라 하였다고 한다.

고려 말기 왜구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부모를 구하거나 그 과정에서 죽은 효자 가운데 형제가 있었다. 1372년(공민왕 21)에 진주의 정유鄭愈·정손鄭遜 형제는 아버지를 따라 하동고을로 수자리를 갔다가 밤에 갑자기 왜적이 나타나서 형제는 왜적을 죽이고 아버지를 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우 손은 죽임을 당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유는 종부승宗簿丞 벼슬을 제수除授받았다.

다음으로 조선시대의 형제 간 우애 사례를 『여지도서輿地圖書』와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에 의거하여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형제가 상분嘗糞과 단지斷指 효행을 하였으며, 부친상을 당하자 장례를 치른 후 분묘 옆에 여막을 짓고 탈상할 때까지 3년 동안 분묘를 돌보는 여묘살이를 한 경우가 있다.

대구의 전창항全昌恒은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아우 전창익全昌益과 함께 자신이 대신 아프게 해 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대변을 맛보고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였다. 부친상을 당하자 여묘廬墓하며 소리 내어 슬피 울면서 상복을 벗지 않은 채 지냈다. 관찰사 이기진李箕鎭이 나라에 보고하여 형에게는 호조좌랑 벼슬을 하사하고 동생에게는 복호復戶하였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형제간의 우애로 서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형을 구하거나 동생의 시신을 수습해 온 경우도 있다.

성주星州의 사노私奴 개돌介乭과 아우 개복介卜이 산에 올라가 땔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큰 호랑이가 나타나 형 개돌을 물었다. 아우는 낫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호랑이와 싸웠다. 이에 호랑이가 형을 놓고 개복을 물어 죽이니 형 개돌이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도 호랑이를 쳐서 동생의 시신을 수습해 왔다. 사람들은 그 우애를 칭찬하였고, 1736년(영조 12)에 복호되었다.

또 왜적으로부터 부모를 구하고 형제가 같은 날 해를 당한 송이회宋以誨·송이필宋以弼 형제 이야기도 있다. 상주의 송이회와 송이필 형제는 주부主簿 송량宋亮의 아들이다. 송이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혼자 말을 달려 향교에 나가 다섯 성인의 위패를 묻어 두었다. 부모를 모시고 난을 피하다가 왜적이 갑자기 이르러 부모를 핍박하자 아우 이필과 함께 부모를 막아 보호하였다. 부모는 화를 면하였으나 형제는 끝내 해를 당하였



유손촬부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중 부분 | 가로25 세로38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자부촬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중 부분 | 가로25 세로38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다. 영조 때 이를 정려旌閭하였다.

형제간에 우애가 극진한 경우도 적지 않다. 경주의 이의윤李宜潤은 문원공 이언적李彦迪의 손자이다. 어린 나이에 학문에 뜻을 두고 문목공 정구鄭逑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스스로 호를 무첨당無添堂이라고 지었다. 그는 부친이 병에 걸렸을 때는 상분은 물론 목욕재계하고 자신이 아버지 대신 아프게 해 달라고 하늘에 빌기도 하였다. 1593년(선조 26) 왜란 때 부친상을 당하자 전쟁 중임에도 상제에 예를 다하였으며, 여러 아우와의 우애도 돈독히 하였다. 아울러 부친이 임종 직전에 석류를 맛보고 싶다고 하였으나 당시 여름이라 구해 드리지 못한 것이 죄스러워 평생 석류를 먹지 않았으며, 석류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이에 호역戶役을 감면받았다.

이의징李宜澄과 이의윤李宜潤은 형제이다. 어려서부터 힘껏 학문을 닦았으며,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겼다. 둘은 한결같이 예를 다하여 삼년상을 치렀으며, 그러는 동안 너무 슬픔에 겨워하다 몸이 상하여 삼년상을 마치고 얼마 뒤 형제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소식이 조정에 알려져 호역을 감면받았다.

영천의 향리 우저적禹底績은 어머니의 병에 단지하여 소생하게 하였다. 아버지의 숙질에 약과 감지로 공양하여 후회가 없었다. 상을 마친 후에는 예로써 제사를 지냈고, 아우 유적惟績이 일찍 죽자 아우의 많은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였다. 향리에서 효우孝友를 칭찬하여 복호하였다.

청하의 이원량李元良은 겨우 4세 때 부모를 모두 여의었다. 어른이 되어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기 위해 늦게나마 6년 동안 추복追服하였다. 형이 부스럼을 앓아 거의 죽게 되자 뱀회를 만들어 자신이 먼저 한 그릇을 먹어 보고 형에게 먹도록 권하였는데, 형의 병이 곧 나았다. 중종 때 정문旌門하고 추증追贈하였다.

경주의 김응벽金應璧과 아우 응규應奎·응정應井 3형제는 부친상을 당하여 여묘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별안간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여막 밖으로 나왔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또 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여기고 신주를 안고 다 함께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조금 있다가 여막 북쪽 산이 무너져 내려 여막과 무덤을 덮쳤다. 힘들게 삼년상을 마친 후에도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사당에 가서 참배 드리는 일을 종신토록 그만두지 않았다. 또 이들 형제는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개 이름을 '신춘'이라 하였고, 신춘의 목에 편지통을 매달아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우애를 다졌다. 이에 조정에서 정려하였다.

함안의 사노 세걸世乞의 형제는 어려서부터 우애가 있었다. 3형제가 전답의 문권文券을 사용하지 않은 채 말로 서로 약속하고 말뚝을 세워 놓고 경작하였다. 형제 사이뿐만 아니라 평생 다른 사람들과도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형제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부모를 풀어 준 경우도 있다. 현풍의 곽결郭潔, 곽청郭淸, 곽호郭浩, 곽형郭泂 4형제는 곽안방의 6세손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아버지를 칼로 해치려고 하자 4형제가 아버지를 감싸 안아 가리며 앞다투어 죽었다. 왜적들도 감동하고 불쌍하게 여겨 그 아버지를 풀어 주었

고,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정려하였다.

안동의 배경裵經은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우 배찬裵纘·배면裵緬과 함께 어머니를 업고 난을 피하였으나 왜적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왜적의 칼날이 가까이 이르자 형제는 어머니를 껴안고 슬피 울었고, 그 모습에 왜적이 감동하여 풀어 주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상분하였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여묘 3년을 하였다. 1617년(광해 9)에 좌랑佐郞으로 추증되었다.

함양의 조광립趙光立, 조광헌趙光獻, 조광덕趙光德, 조광건趙光建, 조광성趙光成 5형제는 조승숙의 5대 손자들이다. 정유재란 때 이들 형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피란하였는데, 왜적이 다가오자 형제가 어머니 곁에 나란히 앉아서 모두 해를 당하였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정려되었다.

특징 및 의의 효제孝悌는 기본적으로 형제관계를 규정하는 가족윤리이다. 가부장적 가족 내부에서 형에 대한 아우의 태도를 규정하는 실천윤리는 제悌이다. 제는 효孝와 더불어 효제라 하여 가부장제적인 윤리도덕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다.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의 〈형제도兄弟圖〉를 보면 형제간의 우애란 천성에서 나온 것이며, 아우는 공손하고 형은 우애해야 한다. 형과 아우의 섬김은 부자지간과 같은 것이며, 형제는 사상死喪의 일이 있거나 환란을 당하였을 때 상부상조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재산분배에서도 형제간의 우애로 양보가 강조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慶尙道邑誌, 東國新續三綱行實圖,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五倫行實圖,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16), 조선시대의 여성과 유교문화(박주, 국학자료원, 2008), 조선시대의 정표정책(박주, 일조각, 1990),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박주, 국학자료원, 2000).

필자 박주(朴珠)

효행담
孝行談

정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불효)하는 이야기.

역사 효孝는 유교적인 도덕으로 오륜의 으뜸이지만 유학儒學이 국가의 근간이 되기 이전부터 부모·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깊었음을 역사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고려사高麗史』『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에 효행을 담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삼국사기』 효행담孝行談의 대표적인 사례는 성각聖覺의 효행담으로, 성각이 모친 사후에 지성껏 불공을 드려 복을 빌었다는 기사記事는 불성이 최고선이었던 당대 현실의 숨김없는 반영이고, 절에서 집으로 돌아와 늙고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였다는 선행은 편찬자의 지향의식이다. 그러나 자식이 허벅지살을 베어 병든 부모에게 먹이는 희생을 비판한 데에서는 김부식의 합리적 현실주의 사관史觀이 잘 드러난다.

『삼국유사』의 대표 효행담은 진정眞定의 사례로, 진정은 늙은 어미를 남겨 두고 출가를 결심하였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득도에 이르면 효는 저절로 따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식의 목숨을 바쳐 부모를 봉양하기로 결심하는 손순孫順의 효행은 『삼국사기』에서는 걸러지고 『삼국유사』에만 유일하게 실려 있다. 이는 『삼국사기』 편찬자가 가지는 극단적 해결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삼국유사』가 가진 자유로운 서술의 문화사적 성격의 차이를 보여 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효행을 유발하는 장애 요소로 가난과 질병이 제시되면서 현실 그대로의 효행 사례를 보여 주는 데 반해 『고려사』「열전列傳」에 오게 되면 민간 이야기보다 전대의 기록과 표창 사례를 모으고 지배층 중심으로 기술되면서 가난과 병고보다는 외적外賊의 침입이 중요한 장애 요소로 등장한다. 그러면서 비로소 시묘侍墓로 효행을 실천한 효자의 사례가 보이기 시작한다.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결말은 가난이 제시되지 않는 조건과 맞물리면서 조선 초기의 『고려사』 편찬자들이 가진 꼿꼿한 선비의식의 소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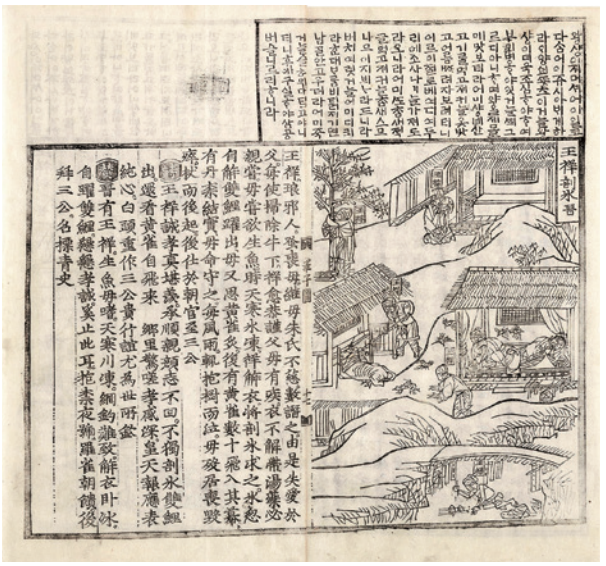
『고려사』「열전」을 대표하는 효행자孝行者는 호란 때 원나라로 끌려간 모친을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모셔온 김천金遷이다. 김천은 모친을 속량贖良하기 위해 큰 빚을 졌고, 고향으로 돌아와 몇 년에 걸쳐 고생 끝에 그 빚을 갚았다는 사정이 상세하게 기술되면서도 물질적

보상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위에 지적한 『고려사』「열전」이라는 역사서가 가지는 새로운 가치, 즉 명분주의적 사고를 보여 준다. 승려인 석주釋珠가 부모를 위해 거상居喪을 입은 효행은 「열전」이 이데올로기가 변화된 조건에서 기록된 사서이기 때문에 실상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한 예이다.

이렇게 『고려사』「열전」은 전대의 사실이 다음 왕조의 사관들에 의해 기록되면서 변질된 측면도 있으나 역사서가 가지는 엄격성이 있고, 또 그 예화가 늘면서 구비민담 유형과 통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삼강행실도』 역시 민간의 효행담을 모으기보다는 이전의 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불교적 색채는 완전히 사라지고 유교적 도덕률道德律에 입각한 효행 사례만이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시기는 거슬러 올라가서 삼국시대부터 정리되지만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조선시대의 효행담이다. 『삼강행실도』에서 가장 강조하는 효행은 여묘廬墓와 병구완, 특히 묘살이다. 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한 조상숭배 사조가 터를 잡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면서 이제 효는 충과 연결되어 충효사상이 최고선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효행자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실천한 은보殷保이다. 『삼강행실도』는 그 책의 성격이 훈민서訓民書라는 점에서 상층에서 강요된 지나친 기대로 인해 효자들이 병든 부모를 위해 손가락을 잘라 먹이는 극단적인 희생의 모습을 누누이 칭송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삼국사기』의 편자 김부식과 대조되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성격이다. 그러나 이 책은 민간 보급용인 훈민서라는 점에서 효행의 장애 요소가 가난과 병고로 제시되고, 결말에는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며, 딸과 효부가 중요한 역할로 부각된다는 점 등의 민담 유형과 통하는 현실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왕상부빙 | 삼강행실도 중 부분 | 가로23 세로38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용 효행에는 부모 생전의 섬김과 부모 사후에 행하는 의례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조선조의 효행을 "일반적으로 생시에는 부모를 열심히 봉양하고, 부모가 병이 들면 단지斷指·할복割腹·상분嘗糞 등으로 정성껏 치유하고, 호환虎患·수화재水火災·왜구倭寇 등의 위기에서 구하거나 원수를 갚으며, 사후에는 『주자가례』에 의하여 상례를 치르고 여묘廬墓하는 것이다."라고 전한다. 즉 효행담은 부모가 특별한 조건에 놓이고 그 난관을 자식이 어렵게 통과하는 것이다.

역사적 기록에서는 주인공 중심의 전설이지만 민간에 전래된 효행담은 민담이 압도적이다. 효행담은 환경의 제시—장애(난관)—효행(불효)—효과(부양, 치유, 제사, 부모의 재혼, 부모의 죽음)—결과(보상, 재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와 보상이 핵심이다. 효행담은 가정을 배경으로 가족관계 내에서 진행되는데, 부모와 자식은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보인다. 효행의 주체는 자식이고 대상은 부모이다. 정확히 세분하면 부모로는 아버지·어머니·시아버지·시어머니·계모가 등장하고, 자식으로는 아들(큰아들, 작은아들)과 딸(큰딸, 작은딸, 막내딸)을 비롯해 며느리·양자·사위가 등장한다.

효의 대상은 부친보다 모친이 훨씬 많다. 남자보다 여자가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효행자는 딸보다 아들이 많지만, 특히 비중이 높은 인물은 며느리이다. 또한 장자 중심 사회에서 작은아들이 효행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형제간 서열이나 개인 능력보다 부모를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인 효심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비설화 효행담에서는 자식 중에서 며느리가 가장 중요하다. 〈딸의 불효, 며느리의 효도〉 〈늙은 시부모 양기 돋운 며느리〉 〈지렁이 반찬〉 〈개가하지 않은 며



정란각목 | 삼강행실도 중 부분 | 가로23 세로38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느리를 도운 호랑이〉 등의 민담이 며느리를 주인공으로 하여 전개된다. 전통사회에서 가족 문제의 모든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었으나 가정 안의 일상사는 여성, 그 안에서도 며느리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였다. 효성孝誠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불효를 이용해 효도하게 하기〉에서 혼자가 된 시부媤父를 살찌워 팔아먹자는 제안에 혹한 며느리가 시부를 살찌우려고 효도해 결과적으로 시부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내용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나아가 〈홀아버지 모신 불효〉 유형에서는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악처만 못하다는 말로 효성의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

효행담의 구성에서 보상의 단락은 중요하다. 보상은 생금, 노다지, 산삼, 황금, 논문서, 엽전 등 물질적 보상이다. 효행담에서는 가난한 환경에서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구비설화에서는 먹고살 방도가 중요하지 정문旌門에는 관심이 없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무조건적인 애정을 쏟으며 모든 것을 베푼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늙어서 더 이상 자립할 수 없고, 자식의 봉양만이 살길이다. 그러나 내리사랑은 쉬워도 치사랑은 어려워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대신 자기 자식에게 사랑을 베푼다. 효성이 가진 이러한 '인간적 속성' 때문에 효를 주제로 하는 설화에서는 유난히 보상이 강조된다. 그래서 불효하는 자식에게는 재앙이 돌아온다.

효성이 어렵다는 점은 '희생효설화'라고 지칭되는 '자식 죽여서 부모 받들기' 유형이 말해 준다. 〈손순매아孫順埋兒〉 설화는 일찍이 『삼국유사』에 나타난다. 민담에서는 자식을 죽여 시부를 구하고자 한 지극한 마음이 산삼과 나락 등으로 보상받는다. 여기서도 며느리가 결단의 중심이 되는데, 이는 효성의 주체로서 며느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식들에게 효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교육하려는 전승자들의 외침이다.

부모 또한 인간이기에 교조적인 효성은 논쟁적이다. 〈효불효교孝不孝橋〉 설화는 밤이면 강 건너 남자를 만나기 위해 언 발로 냇물을 건너는 홀로 된 어미를 위해 돌로 징검다리를 놓아 준 아들들이 북두칠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아들들의 행동이 어미에게는 효성인 반면 먼저 죽은 아비에게는 불효이지만 일곱 아들들이 죽어서 북두칠성이 되었다는 결말은 결코 징벌이 아님을 보여 준다. 효행은 자식의 입장과 경우에 따라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효자론孝子論'에서 맹목적인 효행을 비판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효행담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전승하는 설화이고, 구술자 중에는 노령층인 60대 이상의 사람이 많다.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에 수록된 효행담에는 효자들의 이야기가 80%를 넘고, 나머지가 불효자 이야기다.

참고문헌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김대숙,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회, 1996), 문헌소재 효행설화의 역사적 전개(김대숙, 구비문학연구6, 한국구비문학회, 1998), 조선시대의 정표정책(박주, 일조각, 199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성제보자 구연설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김대숙, 한국고전연구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대숙(金大珝)

희생효설화
犧牲孝說話

정의 자기 자신이나 자식의 희생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서사를 담은 설화 유형.

개관 희생효설화犧牲孝說話는 희생이 동반된 효의 실천을 다룬 설화 유형이다. 효는 직계존속直系尊屬을 위하는 직계비속直系卑屬의 행위나 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효를 위하여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희생효설화는 기본적으로 이효상효以孝傷孝의 도덕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효를 위한 희생이 오히려 효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희생효설화에서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모가 굶주리거나 병에 걸리는 상황을 제시한다. 이는 가족공동체에 심각한 결핍이 발생하였음을 보여 주는 서사적 장치이다. 희생을 통해 효행을 다한 결과 그런 결핍이 해소되면서 가족공동체의 위기가 해결된다는 것이 희생효설화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희생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하는지가 희생효설화의 서사적 화두라 할 수 있다.

내용 우리나라의 설화 중 가장 많이 전승되는 유형의 설화는 효행설화이다. 그리고 효행설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희생효설화라고 할 수 있다. 효행의 한 방식으로 희생이라는 극단적 행위를 제시하는 것을 '효 지상주의'가 설화에 반영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희생효설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의 성격과 근원을 더 따져 봐야 한다.

희생효설화에서의 희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내는 할고割股, 스스로 몸을 파는 매신賣身, 자신의 아이를 땅에 묻는 매아埋兒, 아이를 죽이는 살아殺兒 등이 대표적이다. 부모를 위해 신체의 일부나 전체를 희생한다는 희생효 화소는 구비설화뿐만 아니라 『삼국유사三國遺事』「효선孝善」, 불경佛經, 야담 등 출처가 다양한 이야기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할고'와 관련된 대표적인 효행설화는 『삼국유사』「효선」에 수록된 '향득사지할고공친向得舍知割股供親'이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열전列傳」 '향덕向德'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향득이 자신의 아버지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봉양하였다는 내용이다.

'매신'을 다룬 효행설화도 『삼국유사』「효선」에 실린 '빈녀양모貧女養母'가 대표적이다. '빈녀양모'는 신라 진성왕眞聖王 시기에 분황사芬皇寺 동리에 사는 가난한 여인과 눈먼 모친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동일한 사건을 『삼국사기』「열전」에 수록된 '효녀지은孝女知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난한 여인이 눈먼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모친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한탄하며 모녀가 함께 울었다는 이야기이다. 모친 봉양을 위한 매신행위는 이후 소문이 퍼져서 국가에서 정문旌門을 세워 주고 모녀가 살던 곳을 '효양마을'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매아' 또한 『삼국유사』「효선」에 수록된 '손순매아遜順埋兒'에서 발견된다. 구비설화로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손순의 이야기에서는 부부가 품을 팔아 겨우 봉양하는 노모老母와 그 노모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하나뿐인 아이가 등장한다. 어머니 봉양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땅에 묻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그 이후 아이를 묻은 곳에서 얻은 석종石鐘을 홍효사弘孝寺에 안치하는 것으로까지 간다.

마지막으로 '살아'는 〈동자삼童子蔘〉 설화에서 발견된다. 〈동자삼〉 설화는 병에 걸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약으로 쓰는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다. 팔팔 끓는 물이 든 솥에 아들을 넣고 죽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솥에 넣은 것이 아들이 아니라 아들 형상을 한 동자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결국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의 병도 낫게 되면서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다는 내용으로, 동일한 내용을 함경도 망묵굿 '앉인굿' 제차祭次에서 불리는 서사무가敍事巫歌 〈안택굿〉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희생효설화에 나타난 희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생제의犧牲祭儀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 희생제의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졌던 신神을 향한 종교적 행위가 부모를 향한 윤리적 행위로 치환되면서 희생효라는 독특한 화소가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희생제의는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신과 인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사는 세속적 세계와 신이 위치한 신성한 세계를 매개하는 것이 희생제물이며, 그런 제물을 희생하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원할 수 있게 된다. 제물은 보통 동물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인간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물로 선택된 인간은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존재들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임금이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아이, 여성, 노인, 노예 등이었다.

그런데 고대의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세의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부모'로 대체되었고, 고대적 신성성이 약화되면서 그 빈 곳에 '효'라는 중세적 가치체계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면서 본래 신을 향해 제물을 희생하던 행위가 영향을 미치면서 효의 성취를 위한 희생이라는 관념이 등장할 수 있었다. 희생효설화에 나타난 다양한 희생 양상은 이런 희생제의 전통에서부터 그 근원을 따져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자삼〉과 같은 설화에서 살해되는 아이는 희생제의에서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기능하며, 이로써 부모의 득병得病으로 표상되는 가족 내의 위기 상황이 해결된다. 이는 〈동자삼〉 설화와 내용이 동일한 함경도 망묵굿의 서사무가 〈안택굿〉과 비교해 보면 명료하게 드러난다. 〈안택굿〉에서는 병에 걸린 존재가 지신地神 할아버지로 등장하며, 감천感天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지신의 병이 낫게 된다. '안택굿'은 지신을 위무하고 정성껏 모셔서 인간의 명복命福을 기원하는 제의적 목적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조부—부부—감천'이라는 3대에 걸친 가족관계가 사실은 '신—인간—희생물'이라는 희생제의 요소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효를 위한 희생은 신을 위한 행위와 연결되면서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희생효설화에서는 신이 부모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어긋남' 또한 발견된다. 고대적인 신성을 효가 대신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형태의 자리 바꾸기가 되지 않는 모습도 보여 주는 것이다. 〈죽은 아들을 묻은 효부〉와 같은 기괴한 형태의 효행설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죽은 아들을 묻은 효부〉 설화에서는 노망난 늙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손자가 닭인 줄 알고 잡아먹기 위해 끓는 솥에 손자를 집어넣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가 실제 닭을 잡아서 시어머니에게 바치고 죽은 아들은 몰래 땅에 묻는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효부孝婦라고 칭찬하고 국가에서는 포상을 내리기도 한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않지만 〈죽은 아들을 묻은 효부〉 설화는 효행설화의 하나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희생효설화는 자식의 희생을 통해 부모의 결핍을 해소하면서 온전한 가족공동체를 복원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설화에서는 할고·매신·매아·살아 외에도 다른 방식의 희생효 화소가 많이 발견되며, 희생을 통한 효의 성취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희생효설화에서는 부모를 위한 자식의 희생을 무조건 긍정하지 않는다. 희생제의 전통에서 희생효 화소가 나올 수 있었지만 신이 부모로 대체되면서 나타난 신성과 효 사이의 어긋남이 효를 둘러싼 도덕적 딜레마를 낳게 된 것이다. 희생효설화는 왜 효행설화에 '희생'이라는 화소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보여 주며, 동시에 그런 희생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당위 또한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빈녀양모조에 나타난 매신의 불교적 수용맥락과 의미(신호림, 우리문학연구50, 우리문학회, 2016), 손순매아조에 나타난 희생효 화소의 불교적 포섭과 그 의미(신호림, 우리문학연구45, 우리문학회, 2015),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심우장, 실천민속학연구10, 실천민속학회, 2007), 희생대체의 원리와 동자삼의 제의적 성격(신호림, 우리문학연구43, 우리문학회, 2014), 희생제의 전통의 와해와 기괴한 효행담의 탄생(신호림, 고전과 해석21,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6).

필자 신호림(申虎林)

부록

Ⅰ. 가족의 호칭과 관계　Ⅱ. 가족을 그리다　Ⅲ. 가족과 친족의 안부를 묻다　Ⅳ. 색인　Ⅴ. 필자

가족의 호칭과 관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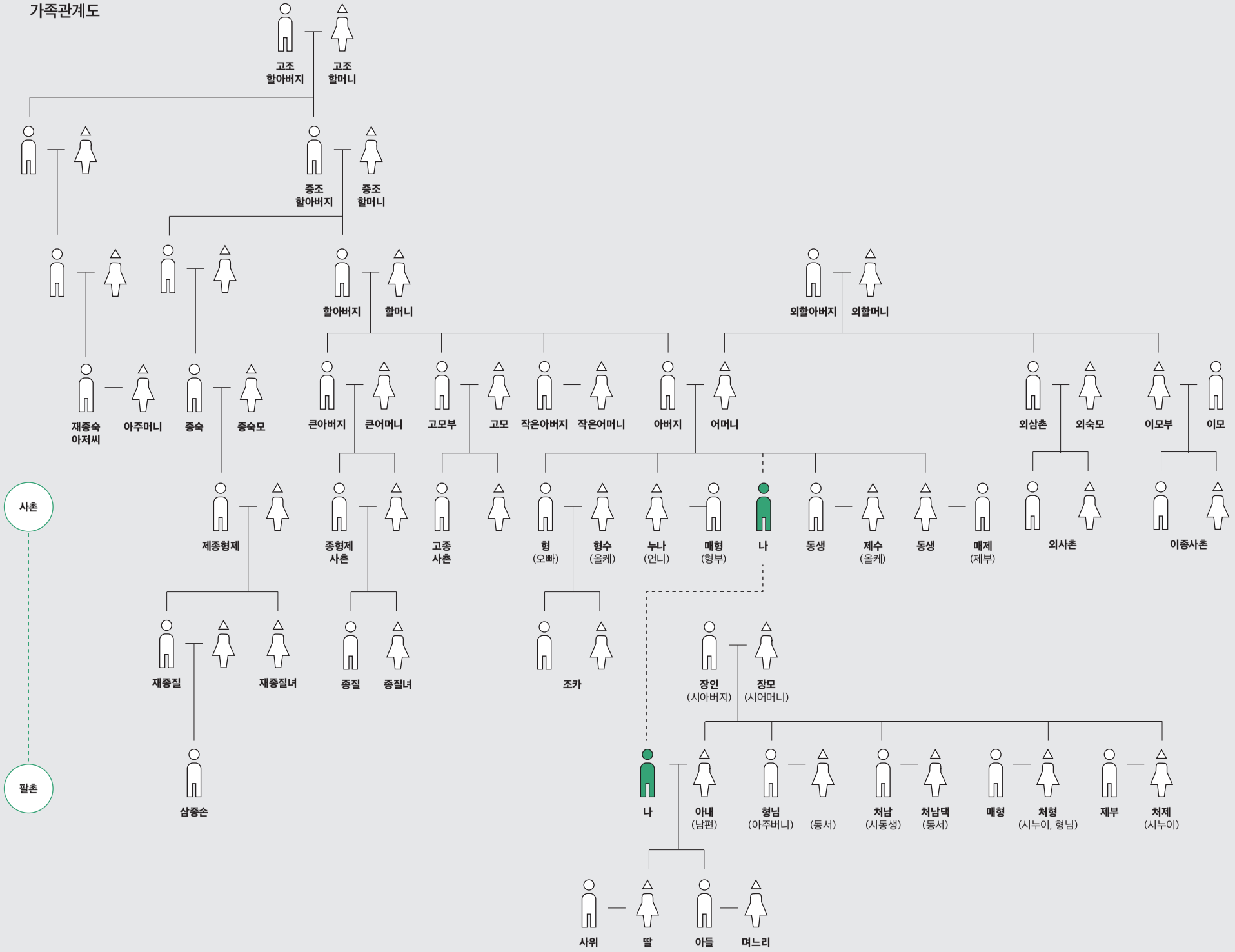
연번	친족어	내용	이칭(호칭+지칭+지역어)
1	**고조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이르는 말.	고조부(高祖父)
2	**고조할머니**	할아버지의 할머니를 이르는 말.	고조모(高祖母)
3	**증조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증조부(曾祖父)
4	**증조할머니**	아버지의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증조모(曾祖母)
5	**할아버지**	부모의 아버지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조부(祖父), 할아버님, 할배탕구, 하르방, 할배, 할버이, 할아버니, 할아버이, 할바시, 할버지, 할방이, 할부이, 할바이, 할부레, 한아부지, 한아버지, 하네, 할압시, 한나부니, 하나씨, 한압씨
6	**할머니**	부모의 어머니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조모(祖母), 할머님, 할머이, 할무니, 할매, 할마시, 할망, 할무이, 할마이, 큰어매, 함무니, 함씨
7	**외할아버지**	어머니의 친정아버지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외옹(外翁), 외왕부(外王父), 외조부(外祖父), 외할아버님, 외할아비, 외하네, 외한아씨, 외한압씨, 외할부지, 외할아버이, 위할부지, 외한아부지, 웨하르방, 웨하르버지
8	**외할머니**	어머니의 친정어머니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외왕모(外王母), 외조모(外祖母), 외할머님, 외할미, 외함마니, 웨할망, 웨할머니
9	**어머니**	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엄마, 아미(阿嚲), 성선(聖善), 모친(母親), 어머님, 어미, 어멈, 엄머이, 어머이, 어마이, 엄니, 어무니, 엄매, 엄메, 우매, 오매, 어망이, 어매, 어무이, 오마씨, 오마이, 어먼, 오만, 오모니, 어마씨, 어멍
10	**아버지**	자기를 낳아 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부친(父親), 부공(父公), 아버님, 아비, 아바니, 아바시, 아버니, 아부지, 아버이, 아바이, 아방이, 아배, 아바, 아바시, 아부이, 아베, 아뱀, 아부니, 아방
11	**아내**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	안소실, 밑바탕, 집사람, 안사람, 규실(閨室), 내권(內眷), 처(妻), 처실(妻室), 가속(家屬), 밑짝, 여편네, 처속(妻屬), 권속(眷屬), 계집, 마누라
12	**남편(男便)**	혼인하여 여자의 짝이 된 남자.	남핀, 남펜, 냄핀, 스나, 이정내, 양반(兩班), 바깥양반, 영감(令監), 부서(夫壻), 장부(丈夫), 부자(夫子), 서방님, 서방(書房)
13	**아저씨**	부모와 같은 항렬에 있는, 아버지의 친형제를 제외한 남자를 이르는 말.	아이씨, 아주방, 아잼, 아재, 아재비, 아주비, 아자씨
14	**아주머니**	남자가 같은 항렬의 형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부모와 같은 항렬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아주머님, 아주미, 아지매, 아재, 아주마씨, 아주머이, 아주마이, 아지미, 아지마시, 아저매, 아짐, 아짐씨, 아주망, 아지망, 아주매, 아점마, 아지맴, 아줌니
15	**큰아버지**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백부(伯父), 큰아버님, 큰아비, 세부(世父), 큰아부지, 큰아배, 큰아바지, 큰아방, 맏아버지
16	**큰어머니**	아버지 맏형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백모(伯母), 큰어머님, 큰어미, 큰어멍, 큰엄매, 맏삼촌어머니, 클매, 큰옴마, 맏어머니
17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숙부(叔父), 숙숙(叔叔), 제숙(弟叔), 작은아비, 잔아버지, 족은아방, 족은아바지, 아재, 아재비
18	**작은어머니**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숙모(叔母), 작은어미, 아재, 족은어머니, 족은어멍, 잘매, 작을매, 자을매, 작엄마, 작은마, 작은매
19	**고모(姑母)**	아버지의 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고무, 고낭(姑娘), 고자매(姑姊妹)
20	**고모부(姑母夫)**	고모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고숙(姑叔), 고부(姑夫), 인숙(姻叔), 고모부님, 아저씨

연번	친족어	내용	이칭(호칭+지칭+지역어)
21	**이모(姨母)**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새아주머니, 아지매, 이모님
22	**이모부(姨母夫)**	이모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새아재, 이모부님, 이숙, 아저씨
23	**외삼촌(外三寸)**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외삼춘, 외아재, 오삼촌, 오삼춘, 외숙(外叔), 웨삼촌, 웨삼춘
24	**외숙모(外叔母)**	외삼촌의 아내.	외숙모님, 외아지매, 외아주머니, 구모
25	**딸**	여자로 태어난 자식.	똘, 딸내미, 딸년, 딸자식, 여식
26	**아들**	남자로 태어난 자식.	아덜, 아돌, 아들내미, 아들놈, 아들자식
27	**누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남자가 손위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누우, 눙우, 누부, 누야, 누비
28	**형(兄)**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남자가 손위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성, 헹, 세이, 헤이, 힝, 히아, 행이, 성가, 셍이, 시이, 힝이, 히, 시야, 싱아, 싱
29	**언니**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여자가 손위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언가, 성님, 성, 언니
30	**오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여자가 손위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오라버니, 오라비, 오라바니, 오라바님, 오라방, 오라방이, 오래비
31	**동생**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동숭, 동셍, 동승, 동싱, 동싱, 동성, 동숭에
32	**사촌(四寸)**	아버지의 친형제자매의 아들이나 딸과의 촌수.	
33	**고종사촌(姑從四寸)**	고모의 자녀를 이르는 말.	내종사촌(內從四寸)
34	**이종사촌(姨從四寸)**	이모의 자녀를 이르는 말.	이종(姨從)
35	**외사촌(外四寸)**	외종사촌으로 외삼촌의 자녀.	표종(表從), 외종(外從), 외종사촌(外從四寸)
36	**종형제(從兄弟)**	사촌 관계인 형과 아우.	당형제(堂兄弟), 동당형제(同堂兄弟)
37	**조카**	형제자매의 자식을 이르는 말. 주로 친조카를 이른다.	유자(猶子), 유녀(猶女), 여질(女姪), 조카딸, 종자(從子), 질녀(姪女), 질아(姪兒), 질자(姪子), 현질(賢姪)
38	**종숙(從叔)**	아버지의 사촌 형제.	당숙(堂叔)
39	**종숙모(從叔母)**	종숙의 아내.	당숙모(堂叔母)
40	**종질(從姪)**	사촌 형제의 아들.	당질(堂姪)
41	**종질녀(從姪女)**	사촌 형제의 딸.	당질녀(堂姪女)
42	**재종형제(再從兄弟)**	육촌 형제.	
43	**재종숙(再從叔)**	아버지의 육촌 형제.	재당숙(再堂叔)
44	**재종질(再從姪)**	육촌 형제의 아들.	재당질(再堂姪)
45	**재종질녀(再從姪女)**	육촌 형제의 딸.	재당질녀(再堂姪女)
46	**팔촌(八寸)**	아버지 육촌의 자녀와의 촌수.	삼종(三從)

연번	친족어	내용	이칭(호칭+지칭+지역어)
47	**삼종손(三從孫)**	칠촌 조카의 아들.	
48	**장인(丈人)**	아내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장인어른, 자인, 재인, 자언, 가시아방, 쟁인
49	**장모(丈母)**	아내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장모님, 쟁모, 갓어미, 가시어멍
50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시모, 시어머님, 존고, 시어미, 시어마시, 시어무이, 어머님
51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시부, 엄구, 시아버님, 존구, 시아비, 시아바시, 시하르방, 시하르바님
52	**며느리**	아들의 아내를 이르는 말.	식부(息婦/媳婦), 자부(子婦), 미늘, 절무이, 절문이, 새아기, 며늘아기
53	**사위**	딸의 남편을 이르는 말.	여서(女婿), 사우, 사외, 백년손님, 반자식(半子息), 백년지객(百年之客), 반자(半子), 교객(嬌客), 一서방
54	**아주버니**	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아재, 아재비, 아주비, 아주버님, 아즈바시, 아지뱀, 아지부이, 아지방, 아지바님
55	**형님**	아내의 오빠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손위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헤임, 힝이
56	**형수(兄嫂)**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에 항렬이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형의 아내를 이르는 말.	형수님, 성수
57	**제수(弟嫂)**	남자 형제 사이에서 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	제수씨, 계수씨
58	**동서(同壻)**	시아주버니의 아내를 이르는 말. 시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퍼형이나 처제의 남편을 이르는 말.	동세
59	**처남(妻男)**	아내의 손아래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의제(義弟)
60	**처남댁(妻男宅)**	처남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주로 손아래 처남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른다.	
61	**처형(妻兄)**	아내의 언니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처아지마님, 처아지망, 외자매
62	**처제(妻弟)**	아내의 여자 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처아지망, 외자매
63	**매제(妹弟)**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계매, 一서방, 매부, 동싱
64	**매형(妹兄)**	손위 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미향, 매행, 매향, 매헹, 매양, 인형, 자부, 자서, 자형
65	**형부(兄夫)**	언니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형랑, 매부(妹夫)
66	**제부(弟夫)**	언니가 여동생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제랑, 매부(妹夫)
67	**시동생**	남편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도련님, 서방님, 시아주비
68	**시누이**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	아가씨, 형님, 숙매, 소고, 시누, 시뉘, 시누부, 씨누
69	**올케**	오빠의 아내를 이르는 말. 남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새언니, 성님, 성, 언니, 올케언니, 오라부덕, 올키, 올게, 올께, 월키, 오라버니댁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각, 2018)
안동지역의 친족어 연구(서보월, 안동학2, 한국국학진흥원, 2003)
전남 지역의 친족어(오청진, 방언학7, 한국방언학회, 2008)
한국어의 호칭용어 어휘 연구(최규일, 국어교육55, 한국어교육학회, 1986)
제주도방언의 친족어 연구(김미진, 영주어문22, 영주어문학회, 2010)

가족관계도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재종숙 아저씨
아주머니
종숙
종숙모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부
고모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삼촌
외숙모
이모부
이모
사촌
제종형제
종형제 사촌
고종 사촌
형 (오빠)
형수 (올케)
누나 (언니)
매형 (형부)
나
동생
제수 (올케)
동생
매제 (제부)
외사촌
이종사촌
재종질
재종질녀
종질
종질녀
조카
장인 (시아버지)
장모 (시어머니)
팔촌
삼종손
나
아내 (남편)
형님 (아주버니)
(동서)
처남 (시동생)
처남댁 (동서)
매형
처형 (시누이, 형님)
제부
처제 (시누이)
사위
딸
아들
며느리



가족을 그리다

II


회갑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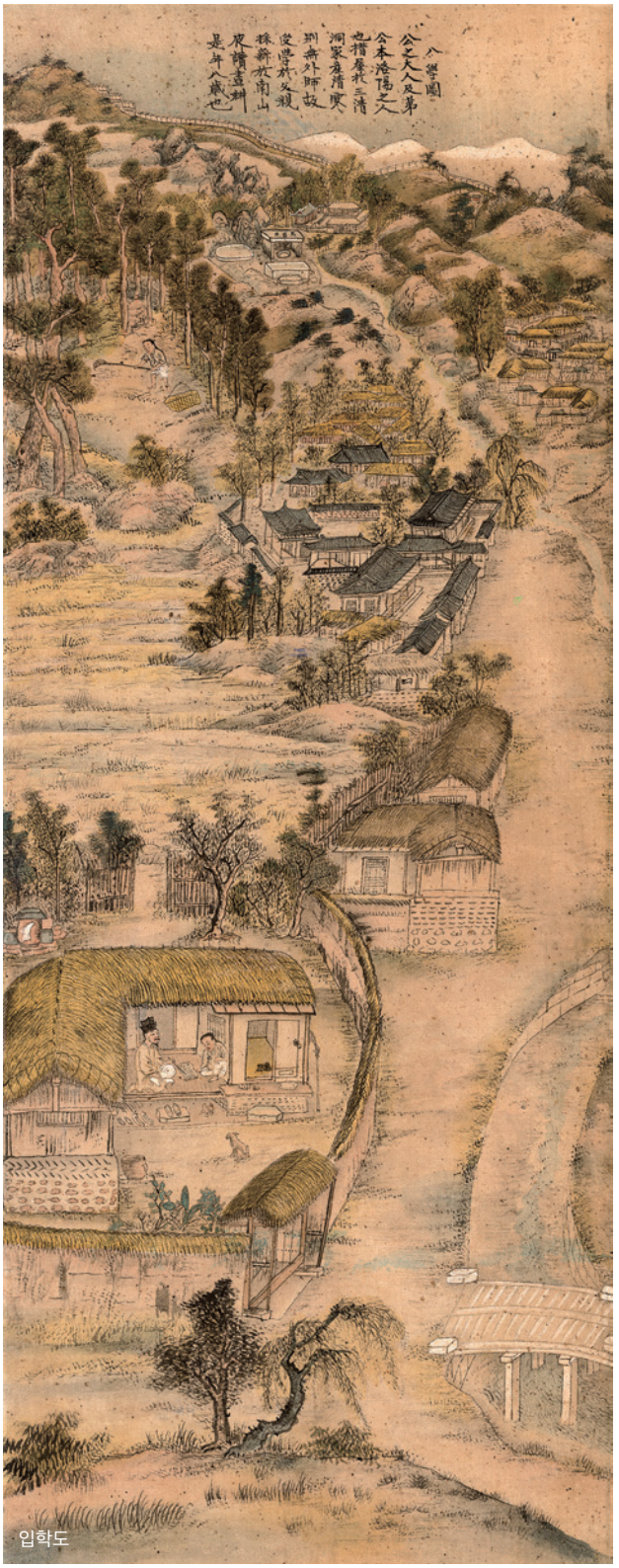

도문도

평생도 10폭 병풍 중 부분

채용신 | 가로32 세로83 | 국립중앙박물관



혼례도



입학도



쌍수회근



단계추정

평생도 8폭 병풍 중 부분

가로37 세로72 | 조선 후기



육예영상



초도관희





평생도 10폭 병풍 중 부분

가로50 세로211 | 광복 이후


親迎嘉儀
신랑이 백마라고 신부집으로
장가들러 가는데 뒤에는 유모
와 후행이 따르고 있다


試周抓盤
첫돌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돌상에서 무엇을 잡는가 보고
있고 뜰에는 동네사람들이 구
경하고 있다





풍속도 10폭 병풍 중 부분

김윤보 | 가로564 세로201 | 일제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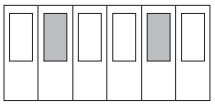
황향선침도



자로부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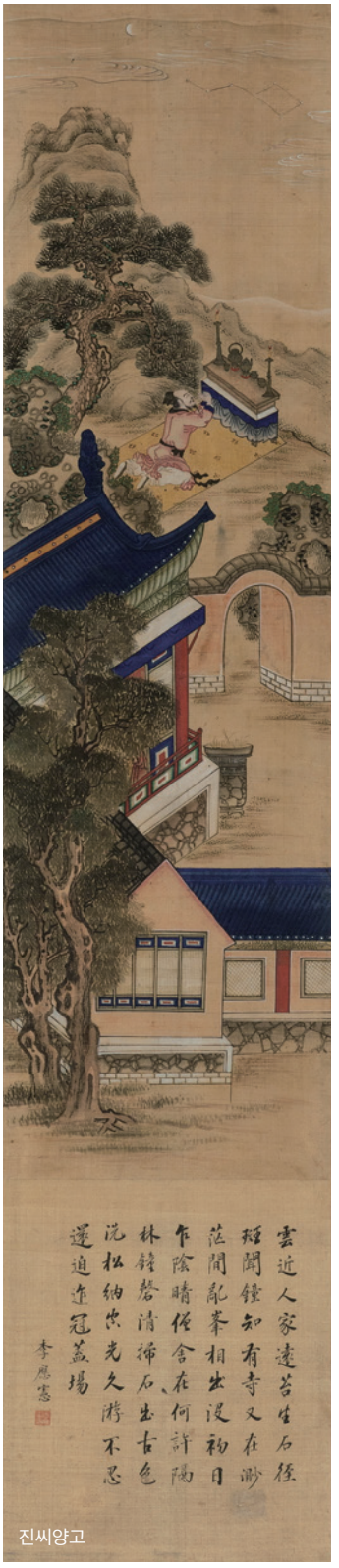
효자도 6폭 병풍 중 부분

가로286 세로197 | 조선 후기





양향액호



진씨양고

오륜행실도 4폭 중 부분

안중식 | 가로55 세로195 | 대한제국



평생도 8곡병 병풍 중 부분

가로32 세로57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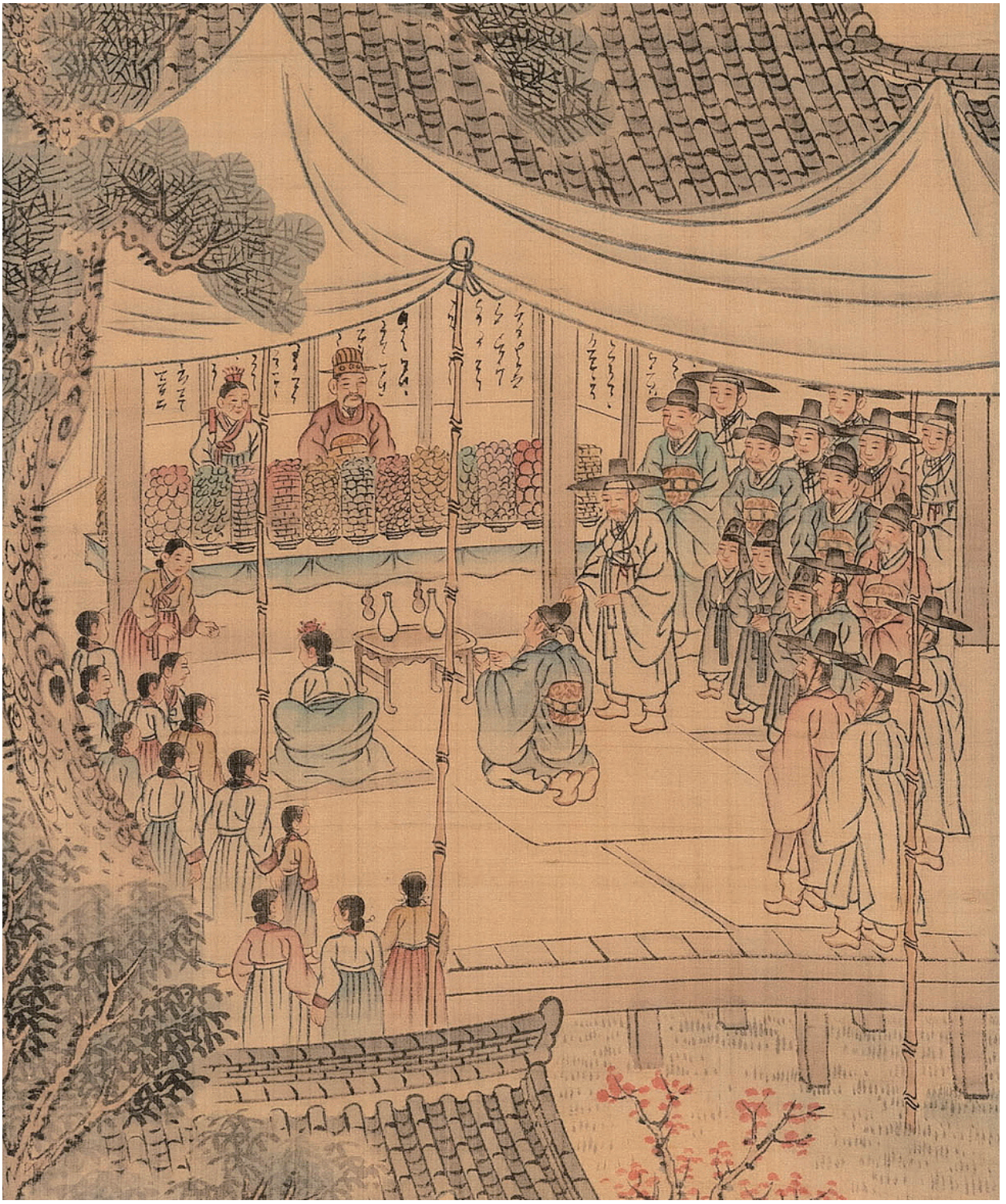






평생도 8폭 병풍 중 부분

가로50 세로130 | 광복 이후



문관평생도 10폭 병풍 중 부분

가로34 세로101 | 광복 이후





경직도

김우범 | 가로38 세로63 | 대한제국



풍속도

가로149 세로98 | 조선 후기



문자도 8폭 병풍

가로31 세로45 | 일제강점



문자도 10폭 병풍

가로35 세로89











天人心性
合一之圖 太極
天
東
西
念誠
敬
誠聖人性之
聖人與天同大



문자도 6폭 병풍

가로34 세로64 | 조선 후기



문자도 8폭 병풍

가로33 세로94 | 조선 후기



문자도 6폭 병풍

가로28 세로60





보건 포스터

엘리자베스 키스 | 가로39 세로45 | 일제강점



두 명의 한국 아이들

엘리자베스 키스 | 가로18 세로27 | 일제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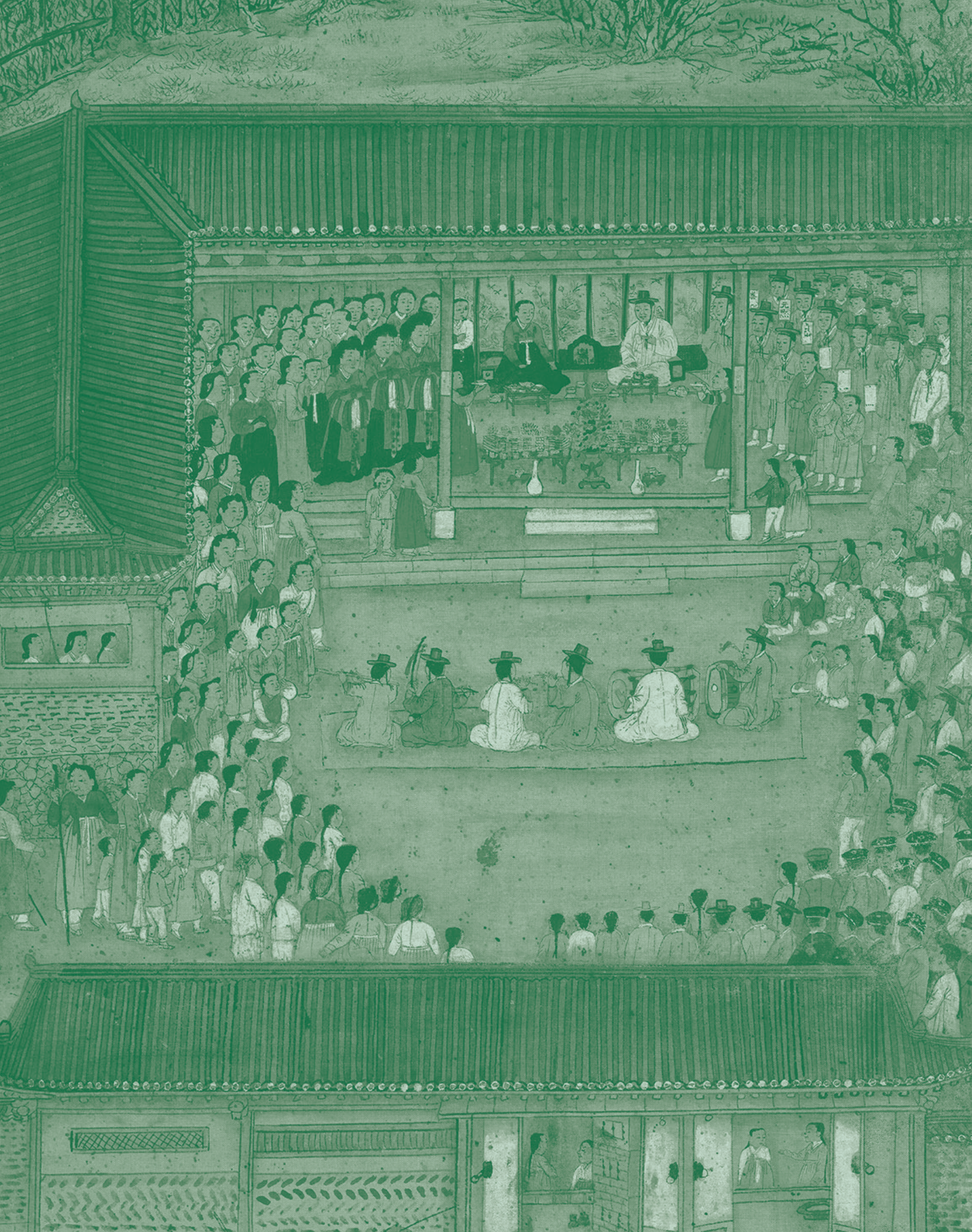
정월 초하루 나들이

엘리자베스 키스 | 가로45 세로58 | 일제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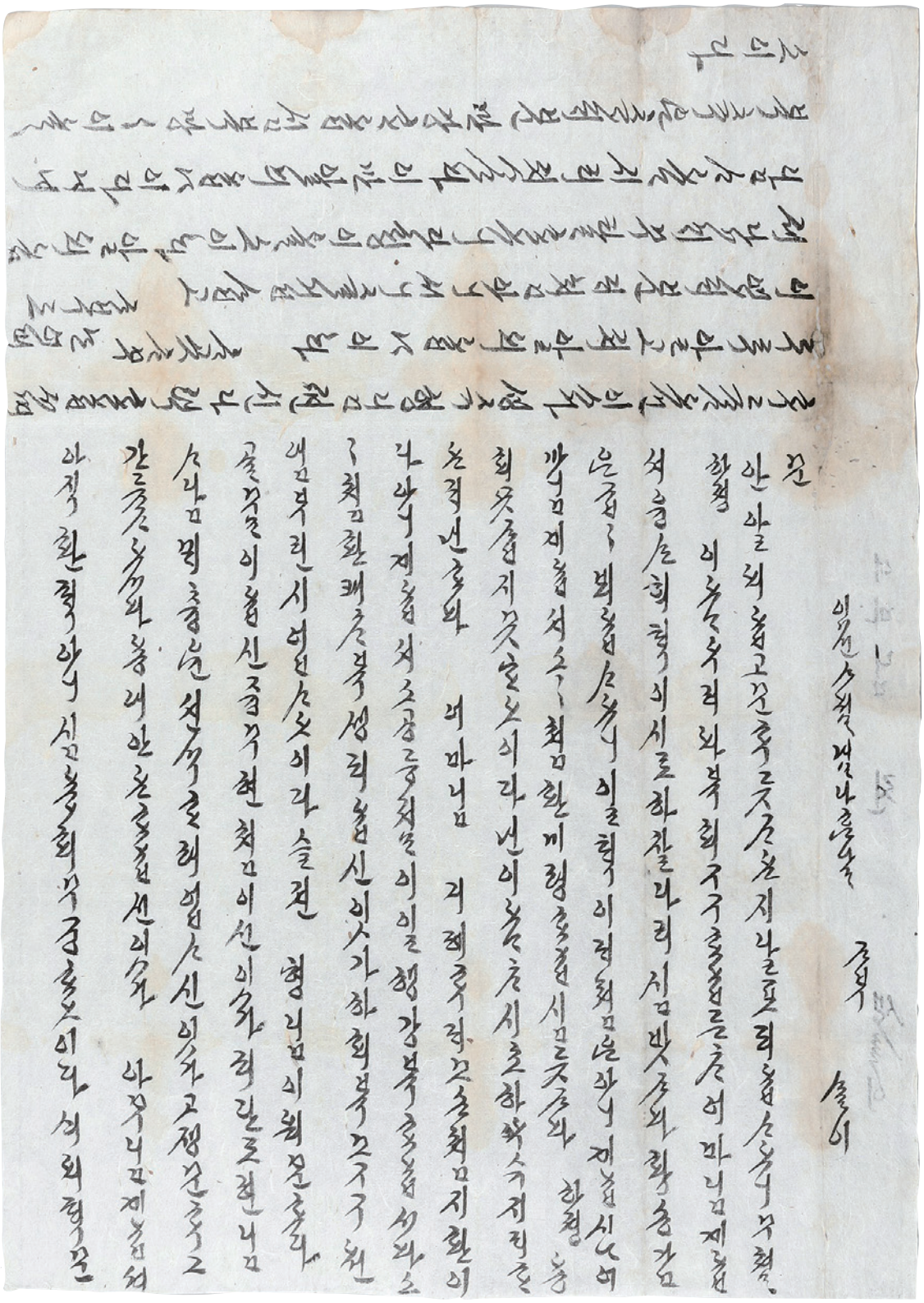
석가탄신일

엘리자베스 키스 | 가로19 세로25 | 일제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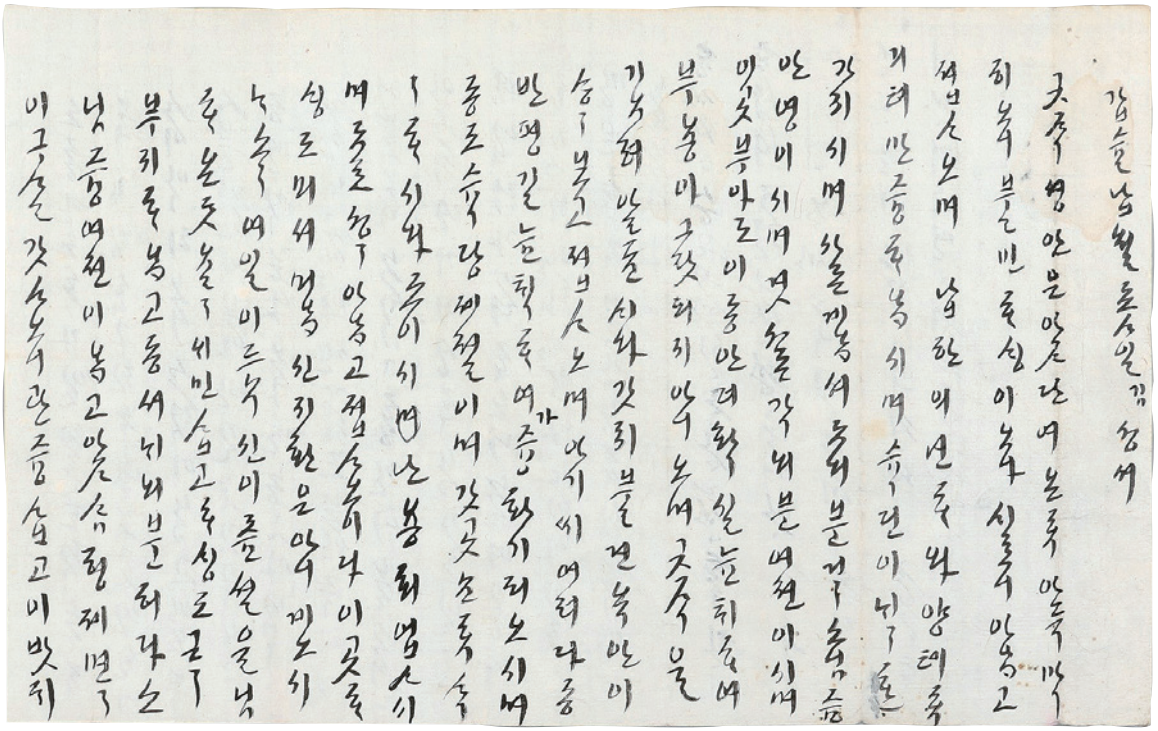
가족과 친족의 안부를 묻다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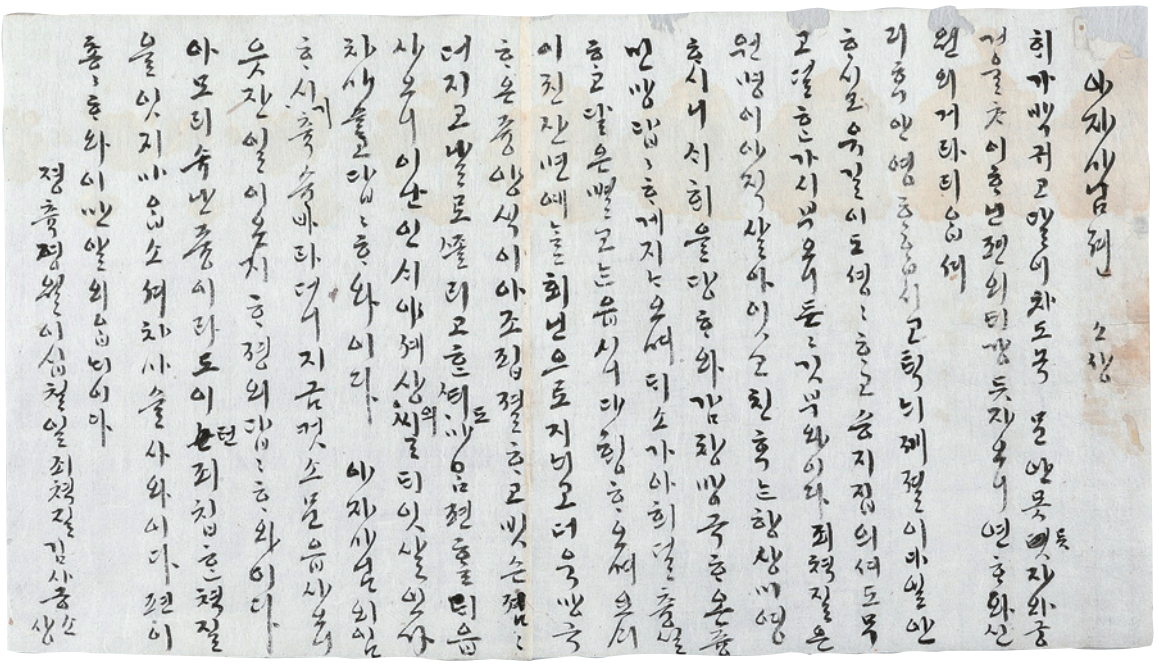
1872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58 세로41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남편 형제들의 안부를 두루 묻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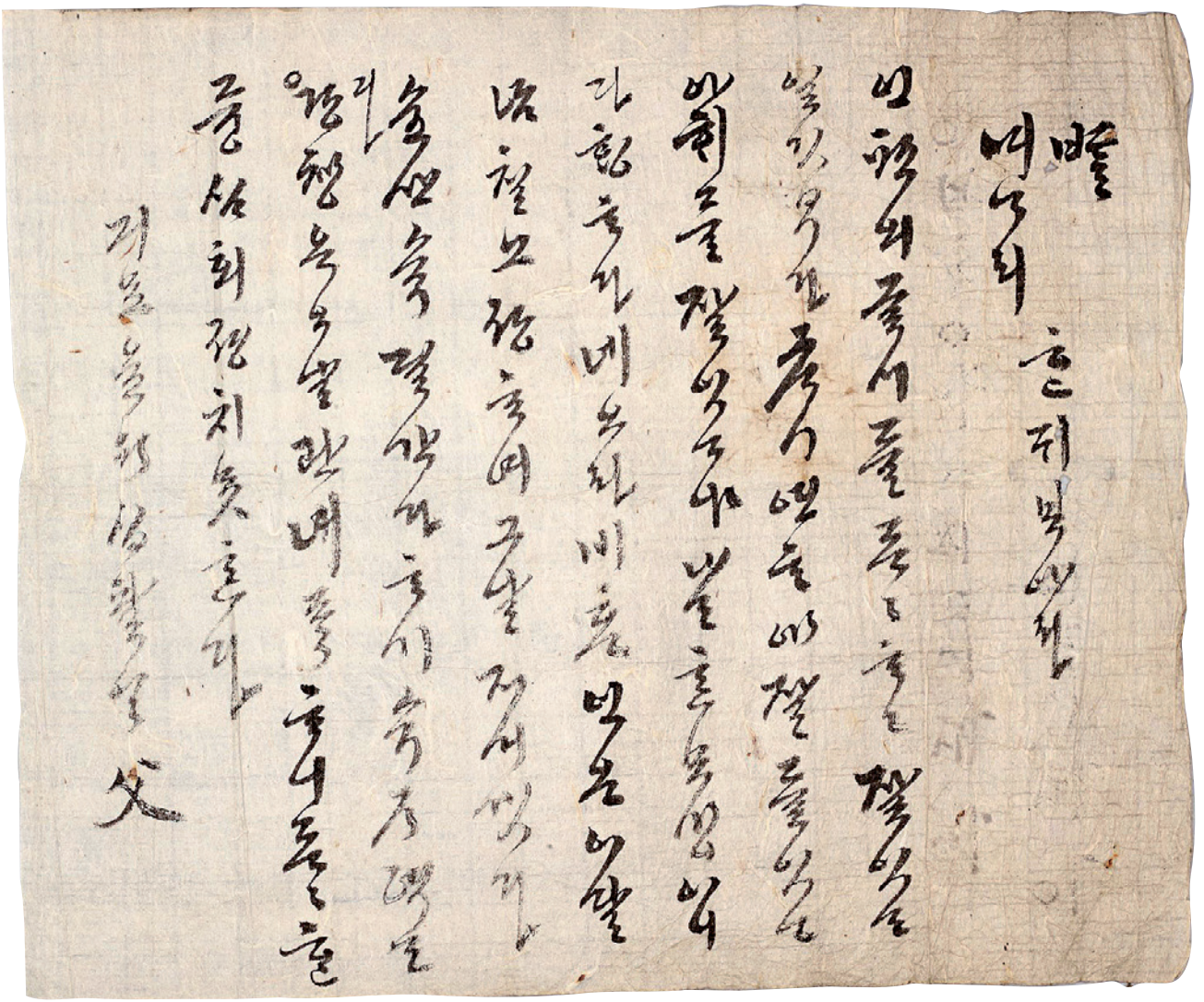
1874년 사돈 김씨가 사돈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0 세로25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사돈 김씨가 사돈의 안부를 묻는 말, 곁사돈의 안부를 묻는 말 등을 적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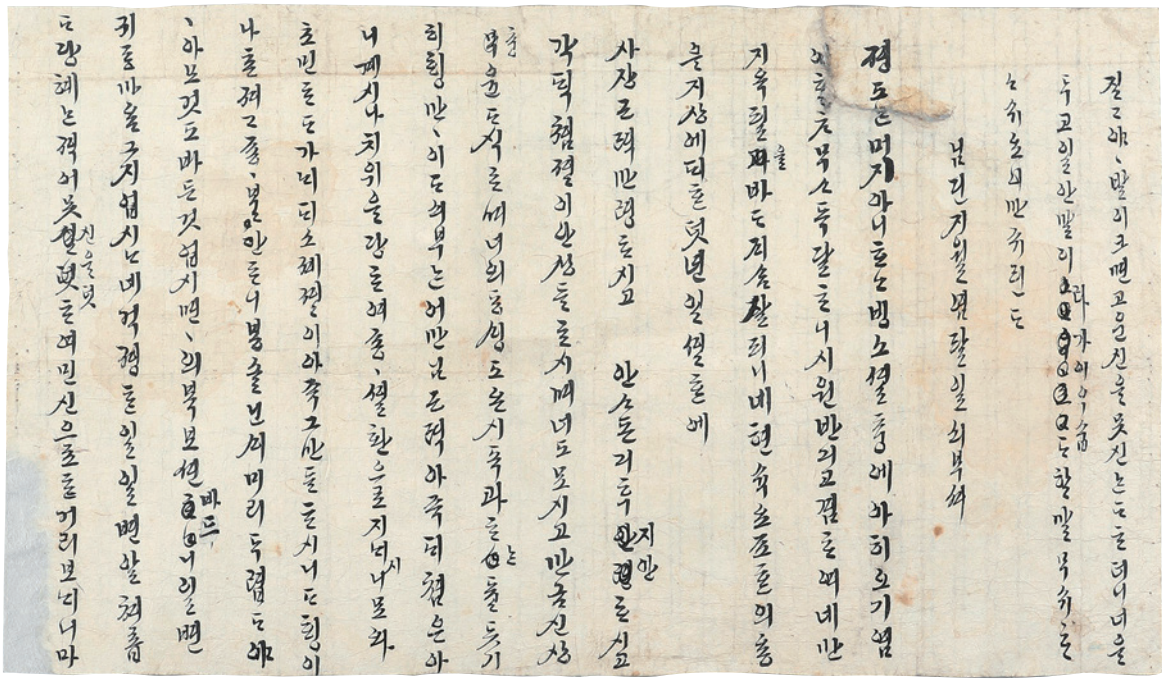
1877년 김사긍이 아주버님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3 세로24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가족들의 안부를 두루 전하며, 아주버님께서 외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 등을 전한 내용.



1879년 아버지가 딸과 며느리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28 세로24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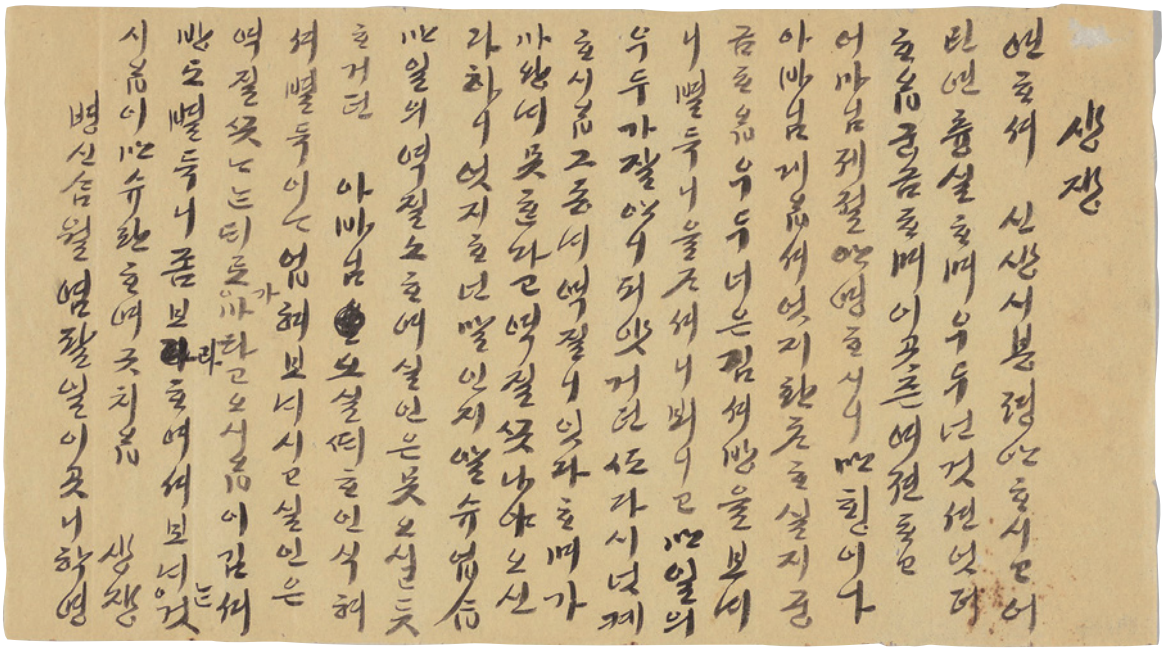
아버지가 아들 '경창'의 결혼을 딸과 며느리에게 알리는 내용.



1892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4 세로25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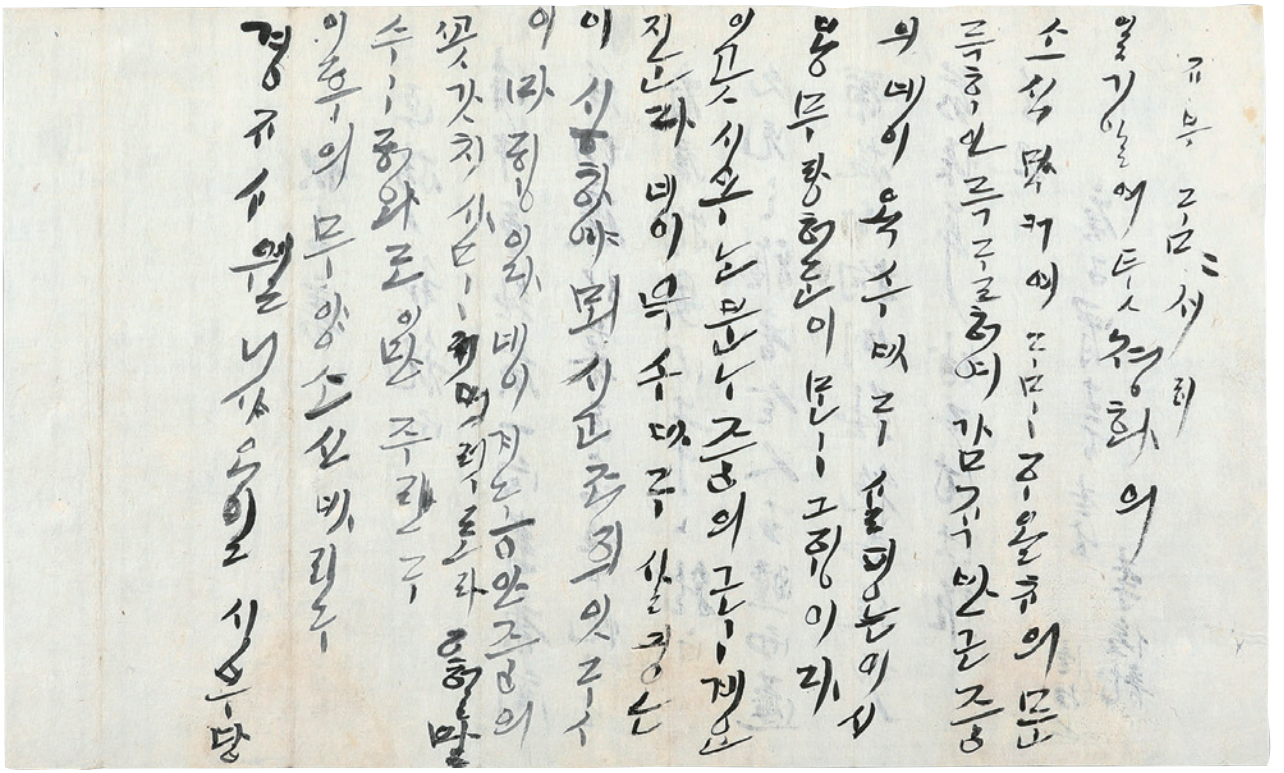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편지를 반기며 사돈댁의 안부를 묻는 내용.



1896년 이학영이 아내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0 세로16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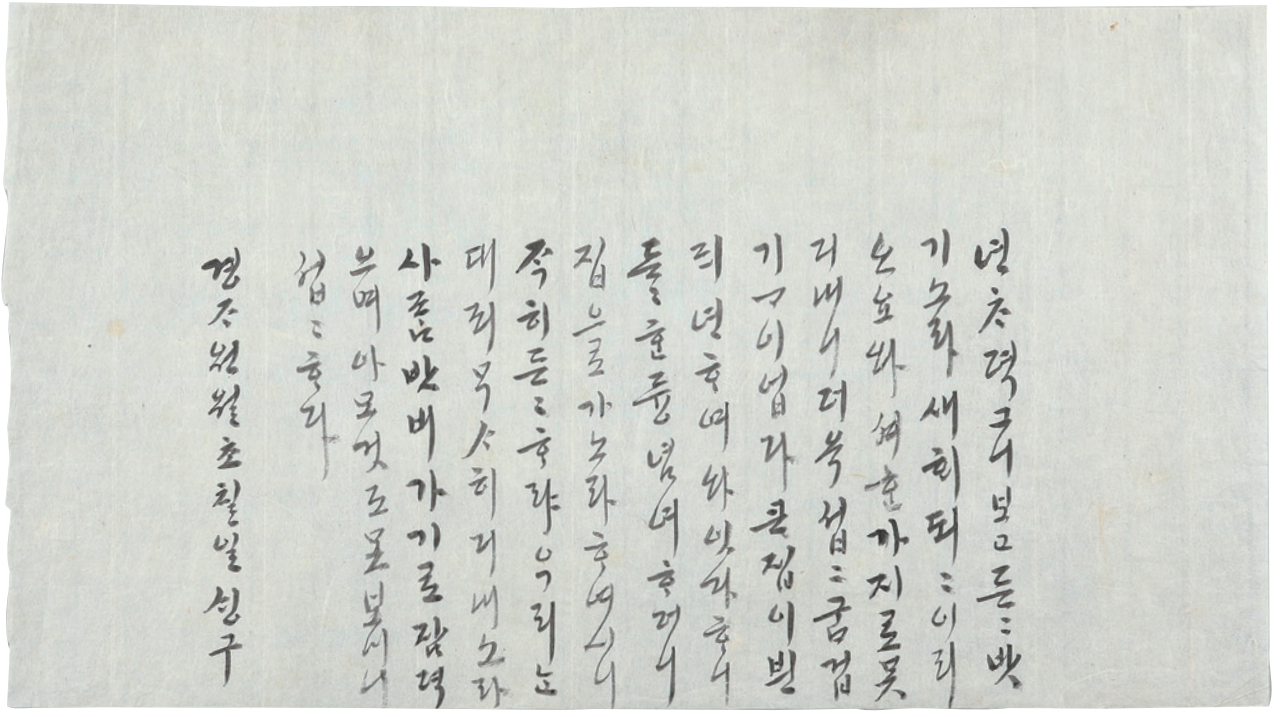
우두를 넣는 김서방을 보냈다고 전하며 그 동네에 역질이 있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



1900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2 세로25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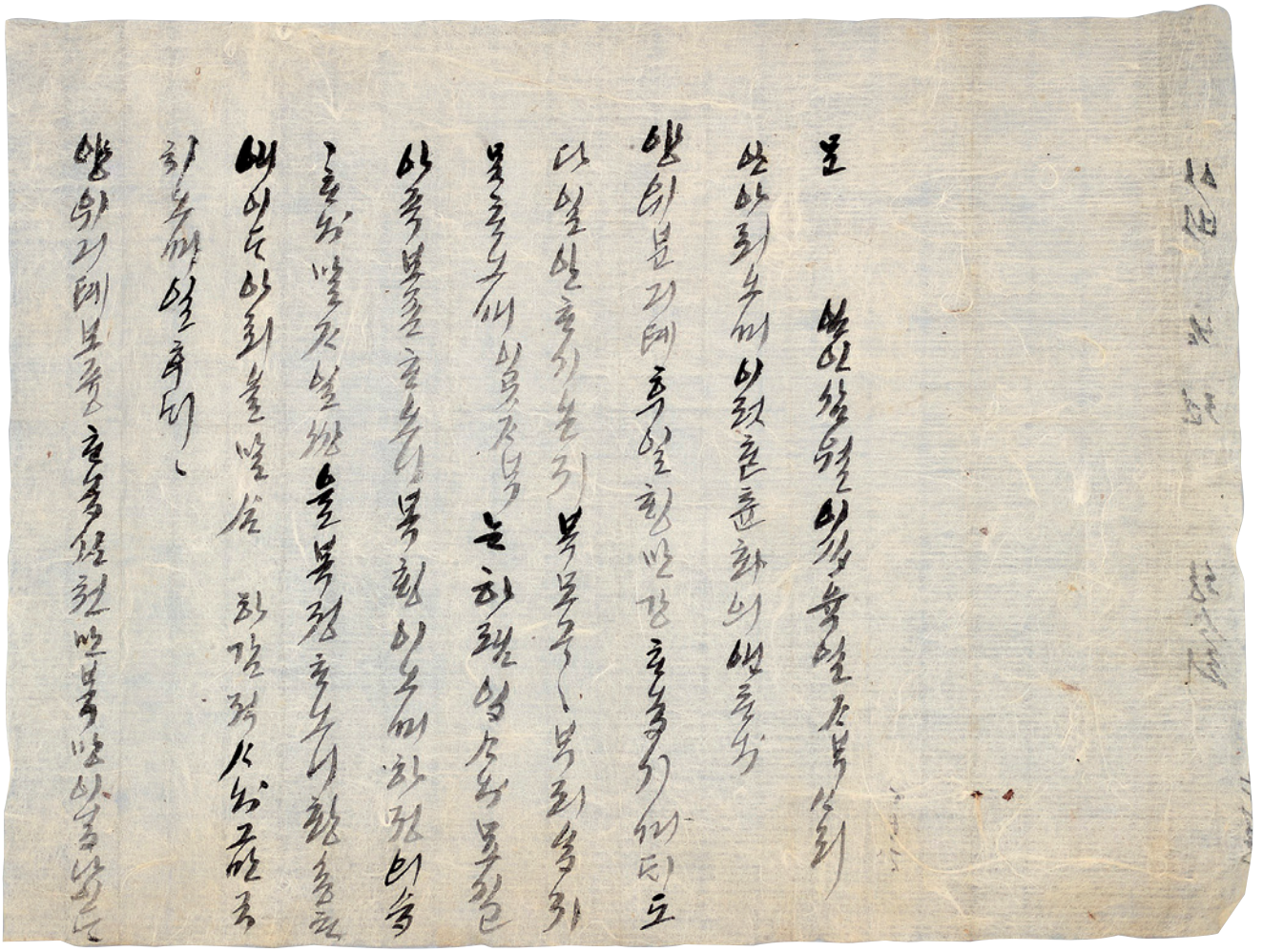
며느리가 보내 온 편지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담은 내용.



1900년 장인이 사위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7 세로26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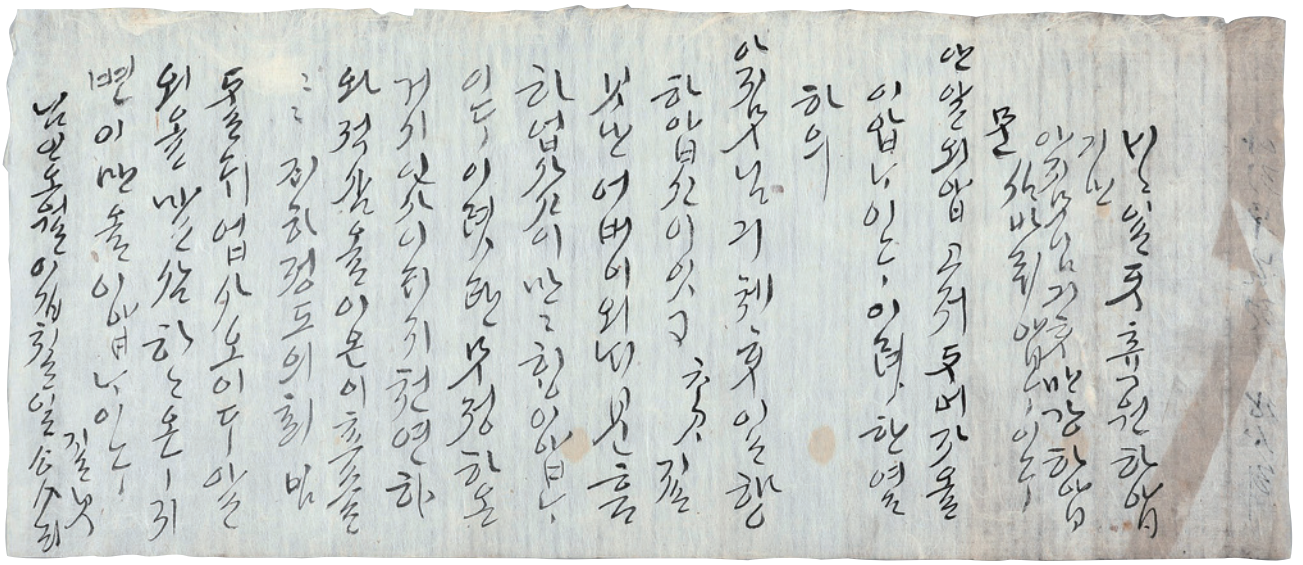
멀리 떨어져 있는 사위에 대한 아쉬운 마음과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내용.



1902년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0 세로21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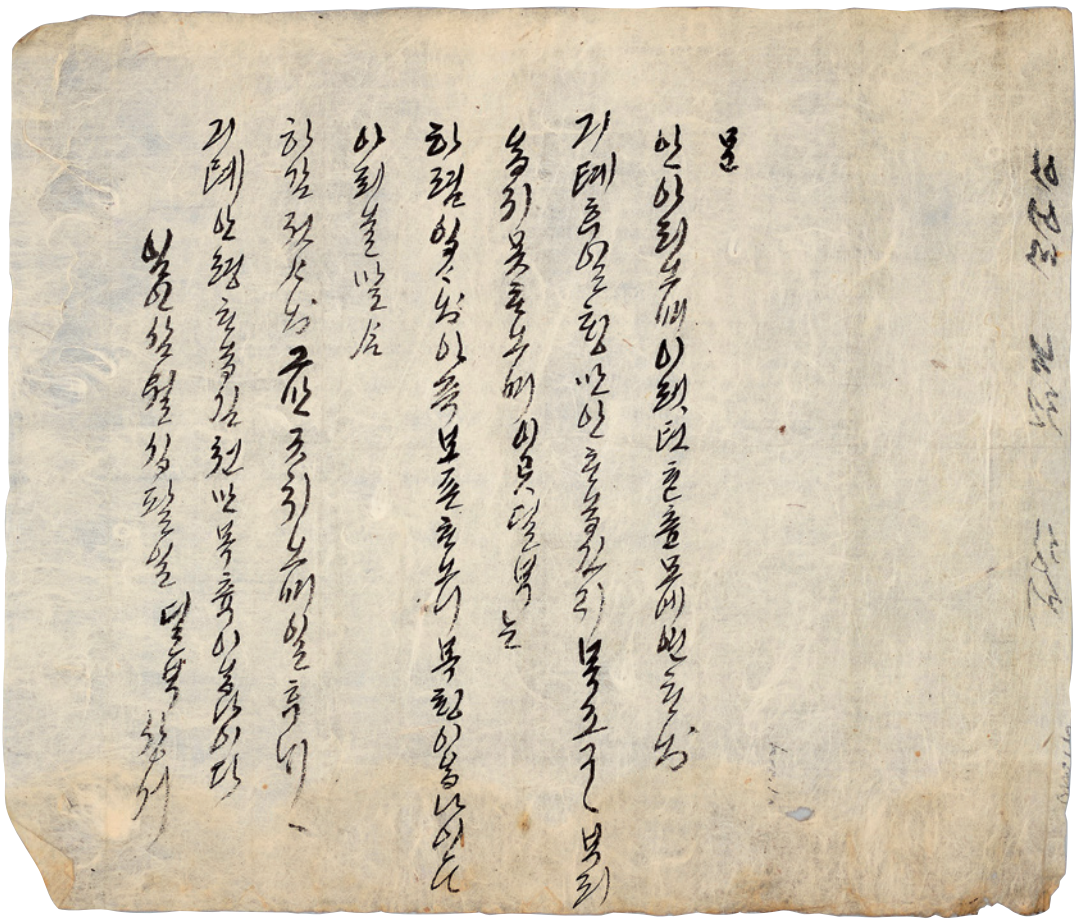
문안을 묻고 안부를 전한 뒤 만복을 비는 내용.



1902년 조카며느리가 시숙모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55 세로24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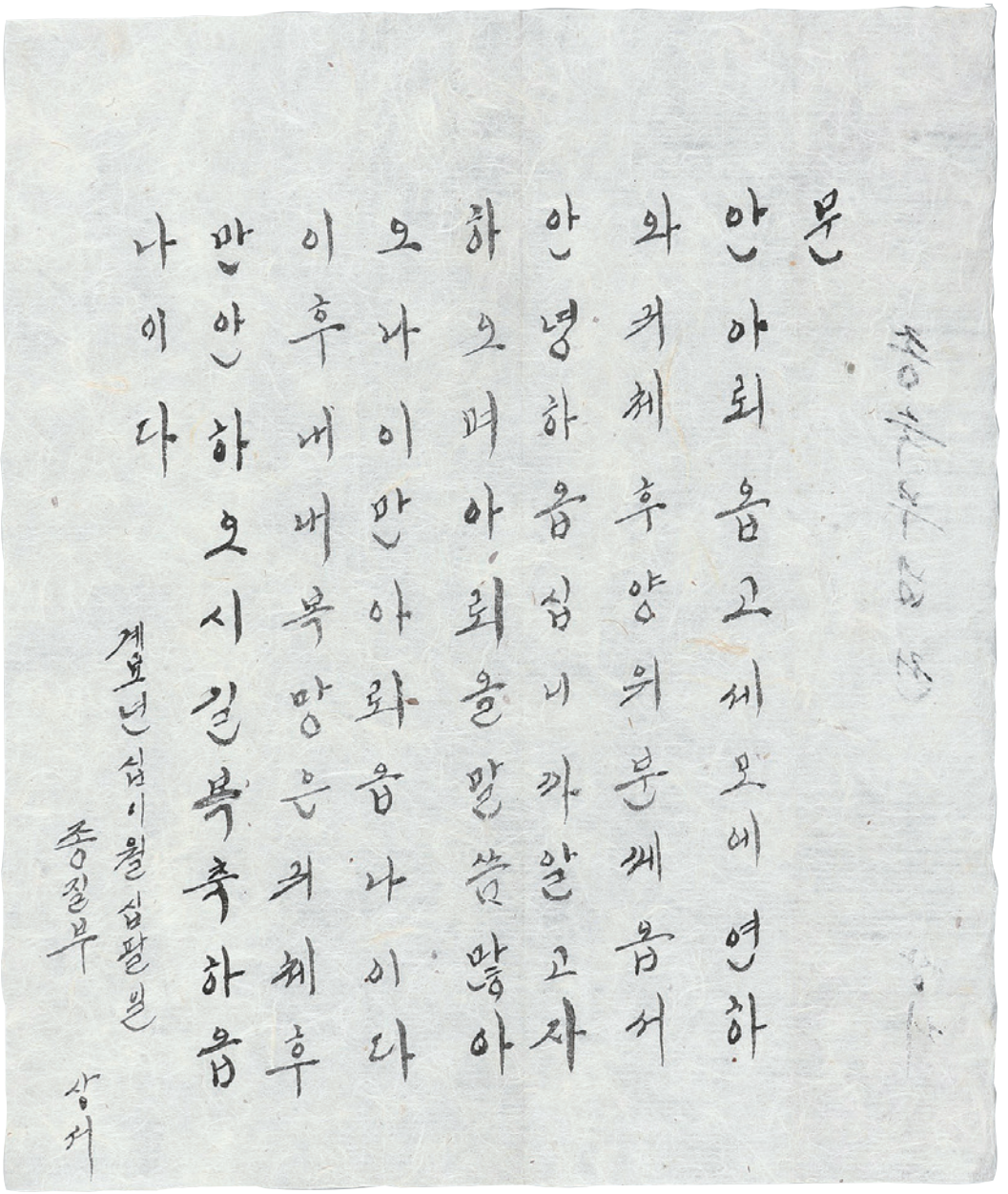
조카며느리가 시숙모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내용.



1902년 질부가 시숙모에게 보낸 한글편지

가로31 세로26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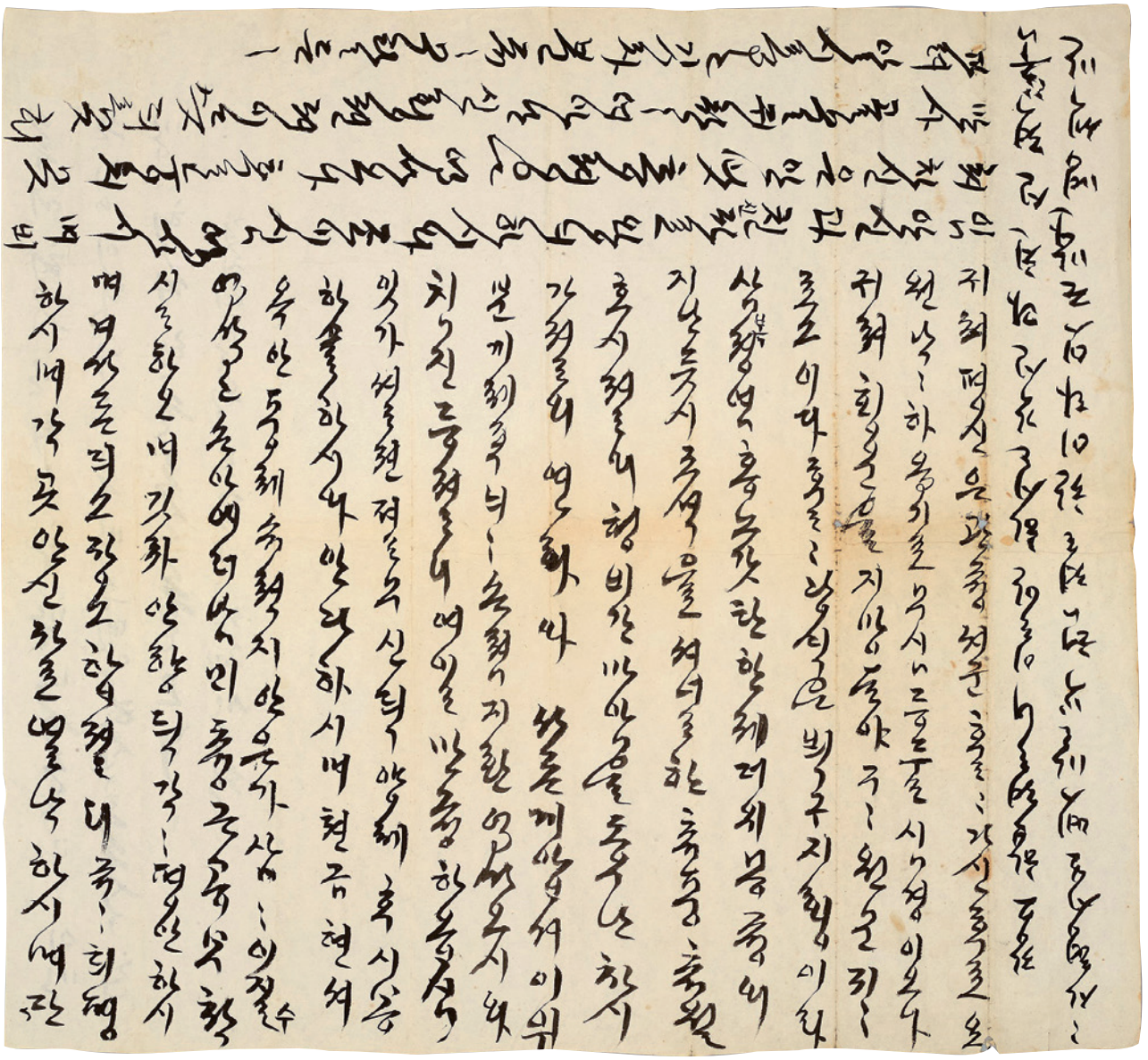
문안을 묻고 안부를 전한 뒤 안녕과 만복을 비는 내용.



1903년 종질부가 종숙부와 종숙모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4 세로29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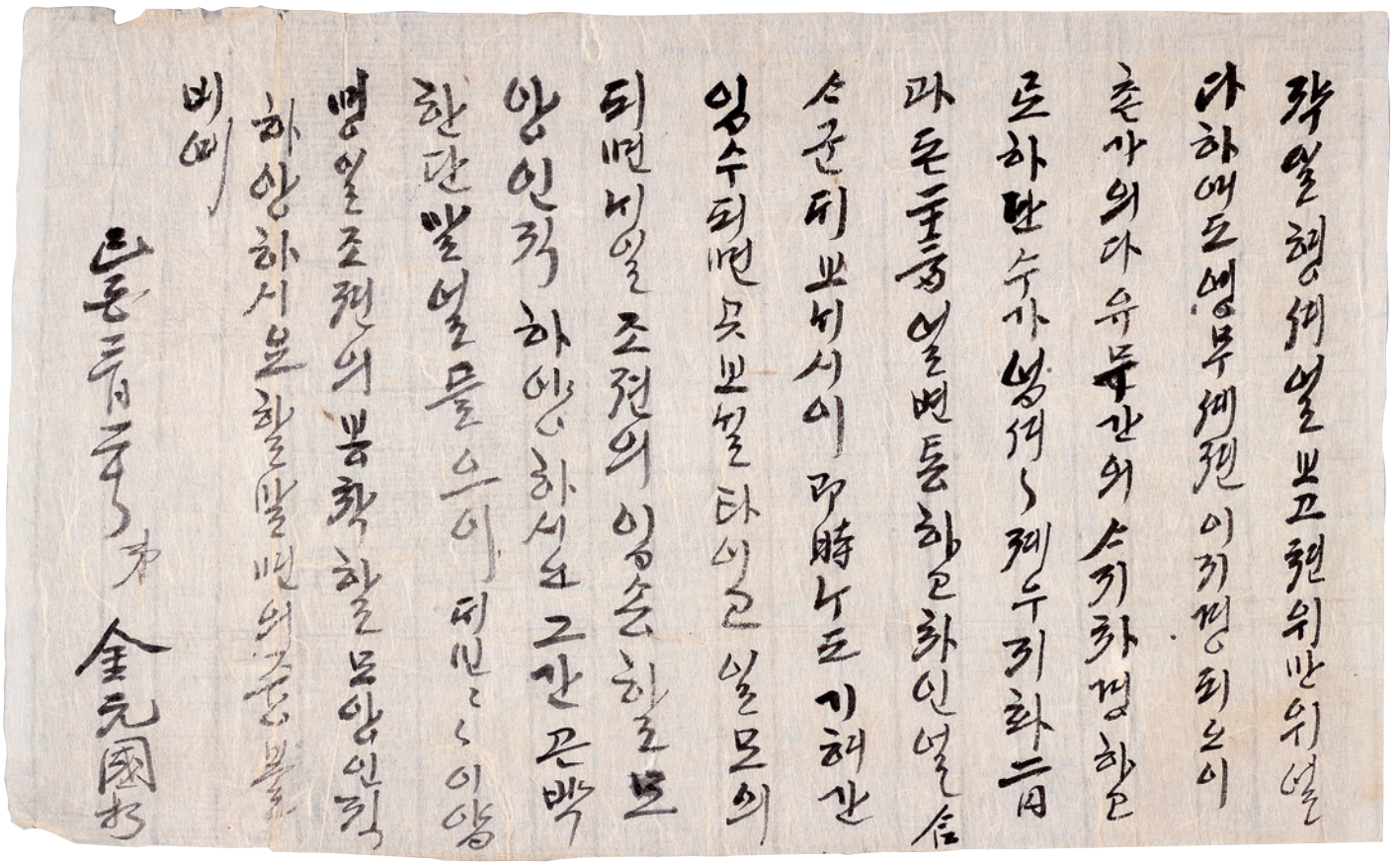
종질부가 종숙부와 종숙모의 안부를 묻고자 하는 내용.



1904년 암사돈이 수사돈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3 세로40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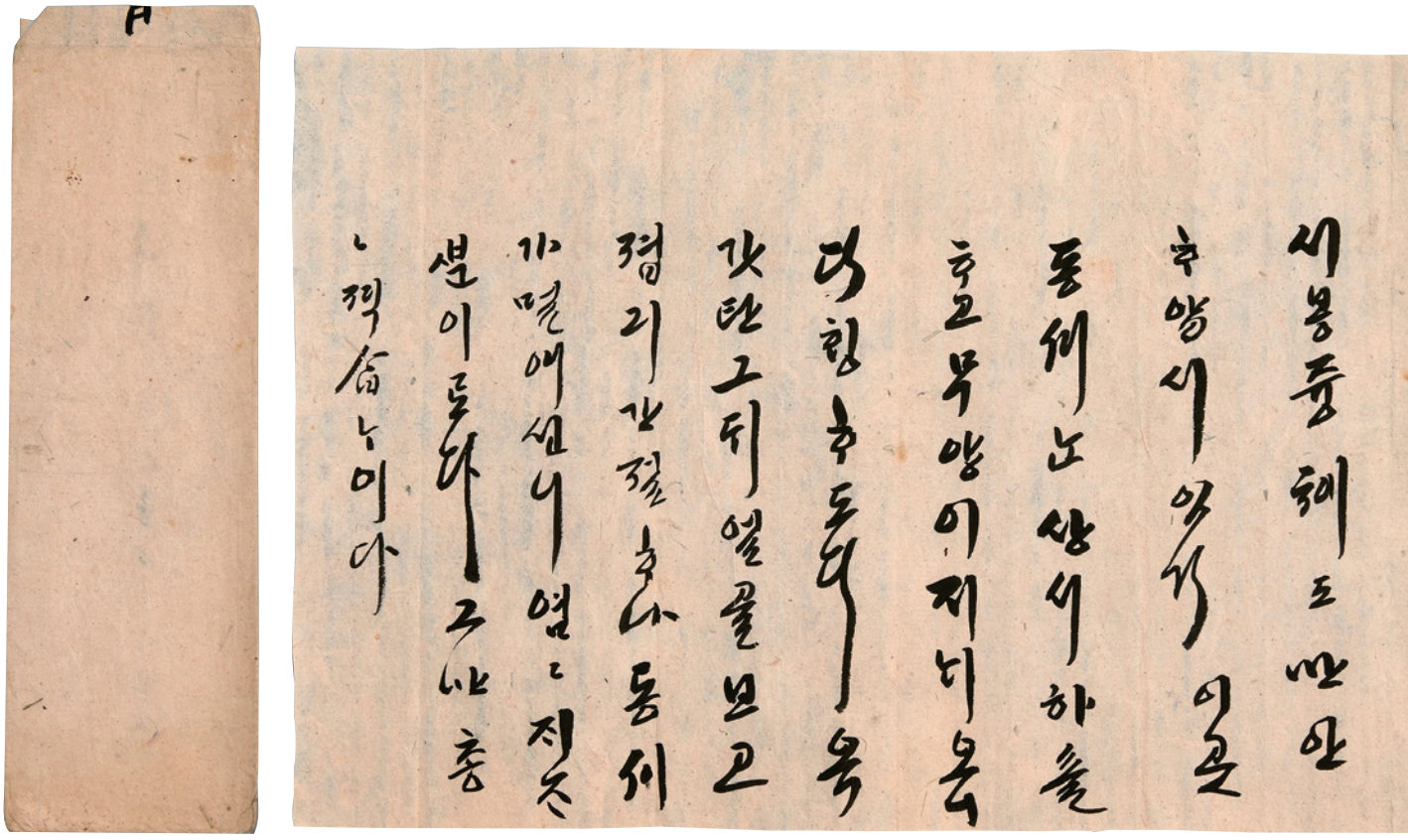
암사돈(안사돈)이 수사돈(안사돈)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1909년 아우가 형님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6 세로22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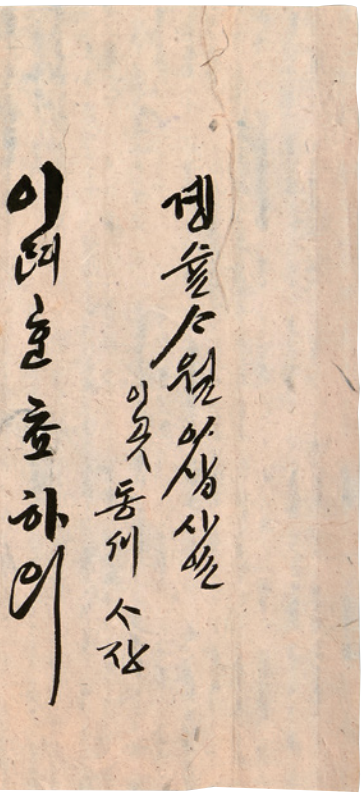
아우가 형님에게 보낸 답장으로, 돈을 변통하고 일손을 보내니 쓰라는 내용.



1910년 손아랫동서가 손윗동서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0 세로21 | 대한제국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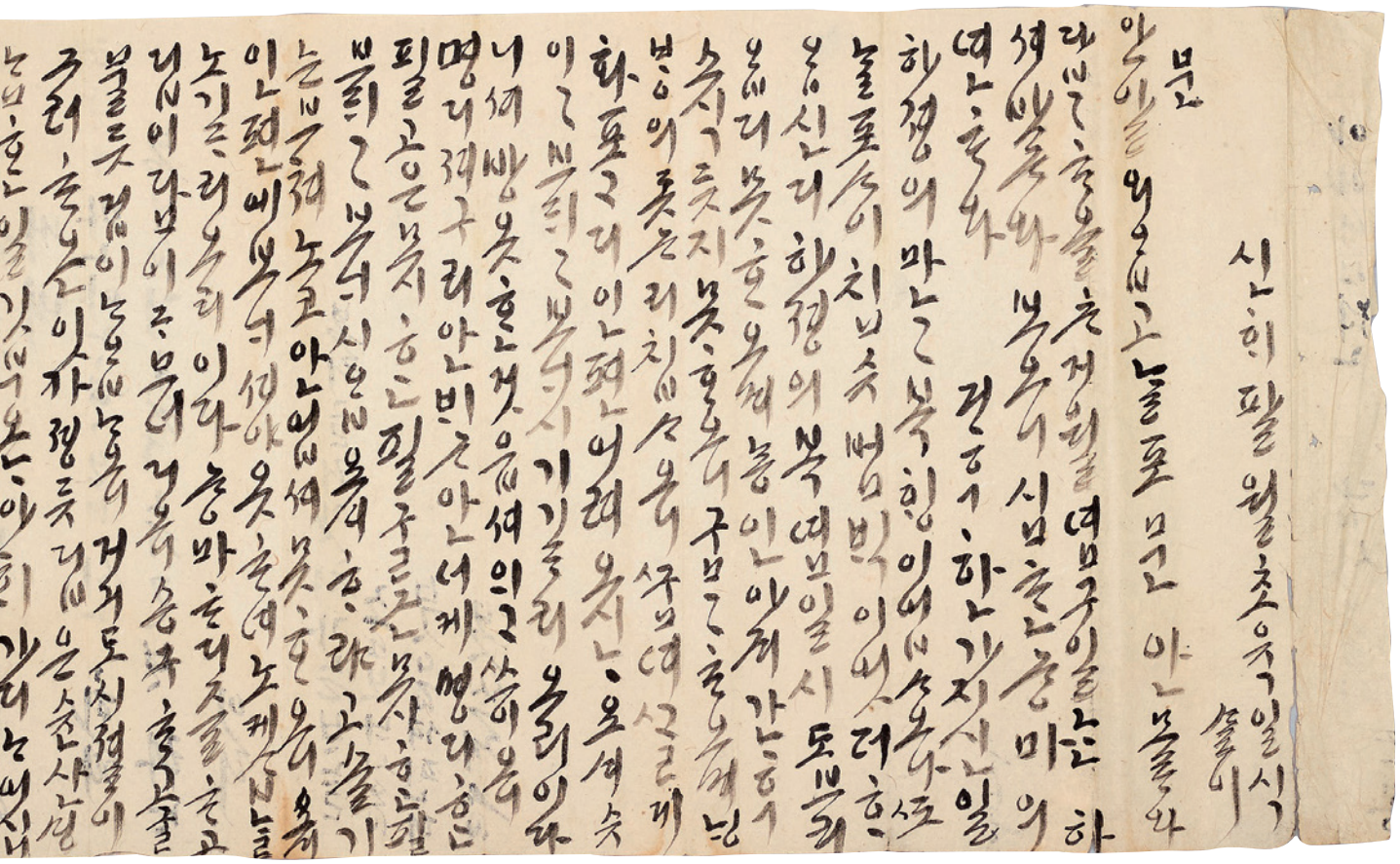
자신의 안부와 손윗동서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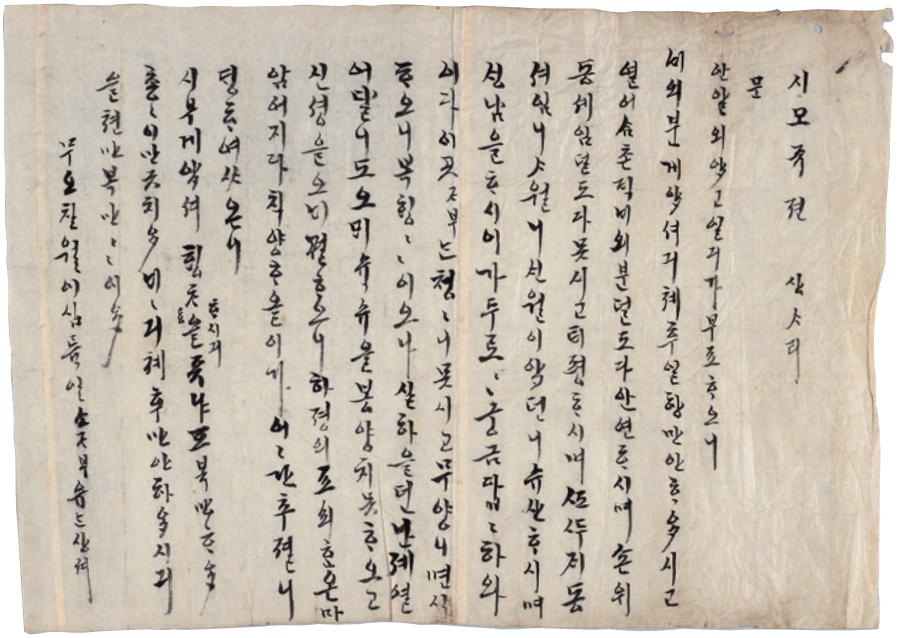


1911년 시집간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1 세로22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시집 간 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안부를 물으며 '명주 한필, 고운모시 한필, 굵은모시 한필, 가는 바늘, 붓' 등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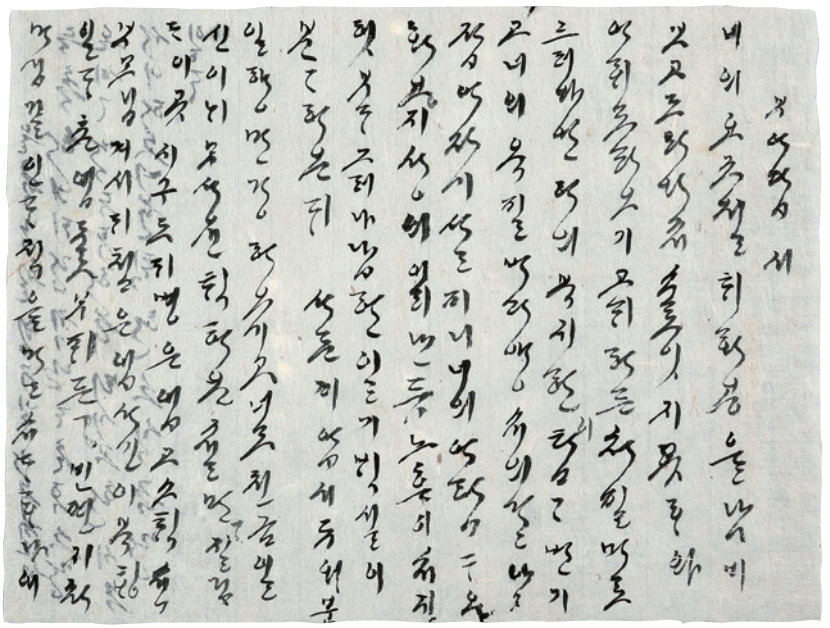




1918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4 세로24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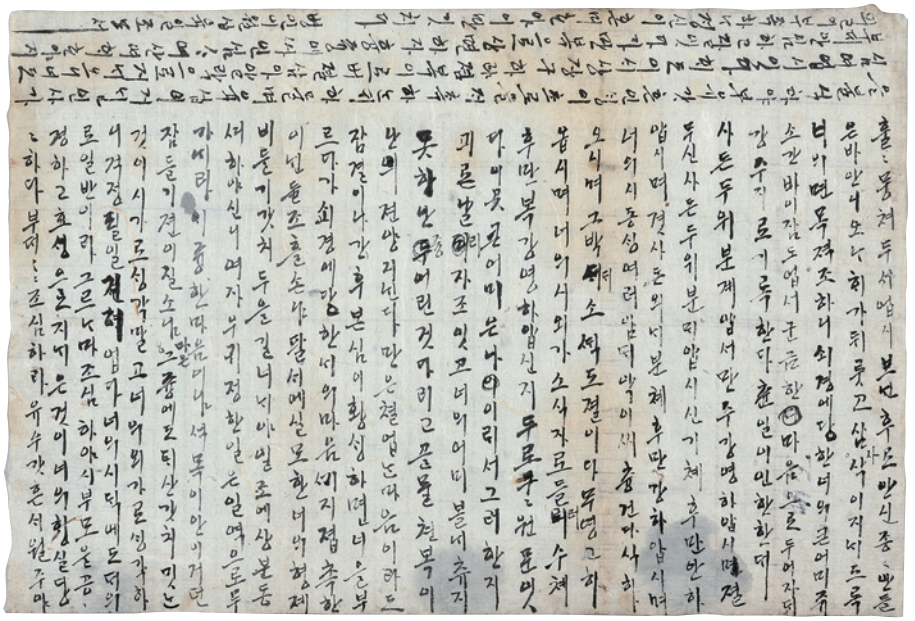
시부모님, 여러 삼촌 내외, 손윗 동서들에 대한 안부 인사를 차례로 적으며 이어 자신의 소식을 적은 내용.



1925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6 세로27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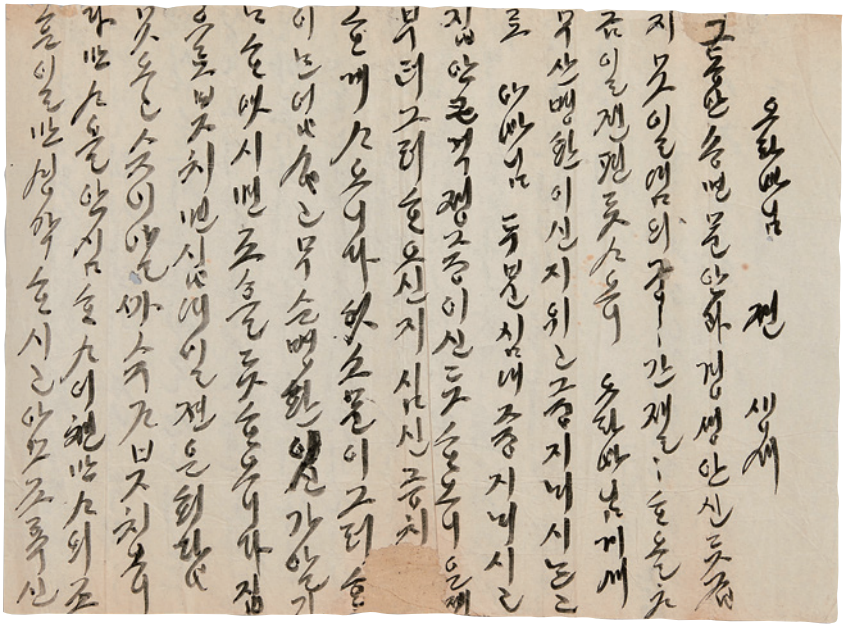
시아버지가 혼례를 치른 후 친정에 머무르고 있는 며느리에게 보낸 답장으로 사돈댁의 안부를 두루 묻는 내용.



1926년 할머니가 시집간 손녀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0 세로27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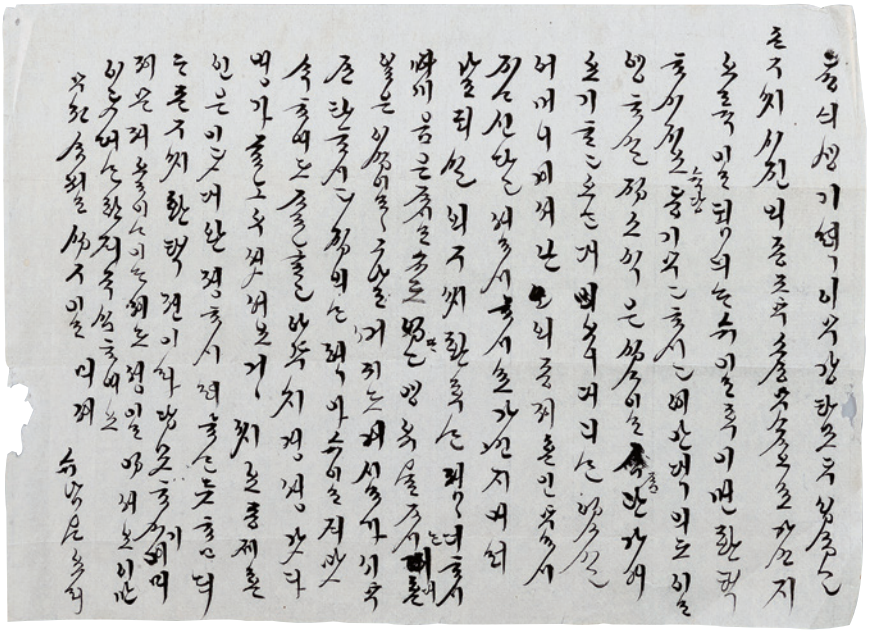
할머니가 8살에 어머니를 잃은 손녀를 키워 시집을 보낸 후, 손녀를 그리워하며 안부를 전하고 만나 보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



1929년 여동생이 오빠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3 세로24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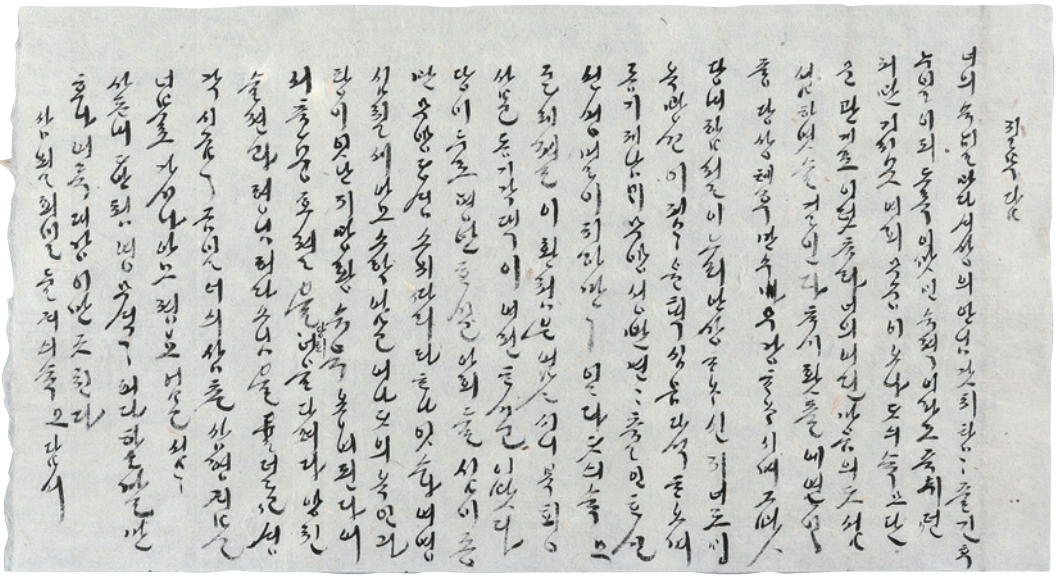
오빠가 병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좋은 것만 생각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라는 말 등을 적은 내용.



누이동생이 오빠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3 세로24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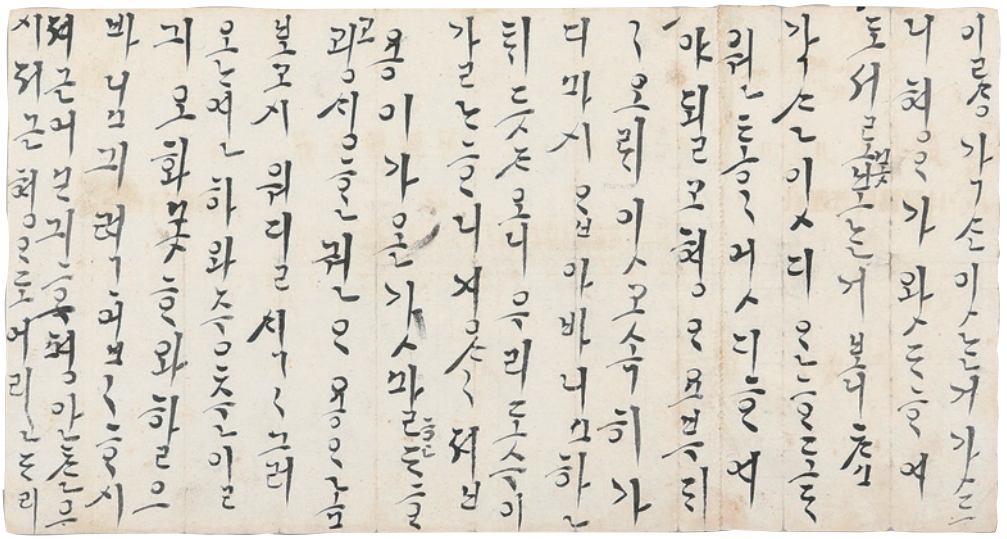
친정가족들의 안부와 본인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



둘째 시숙모가 조카며느리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6 세로25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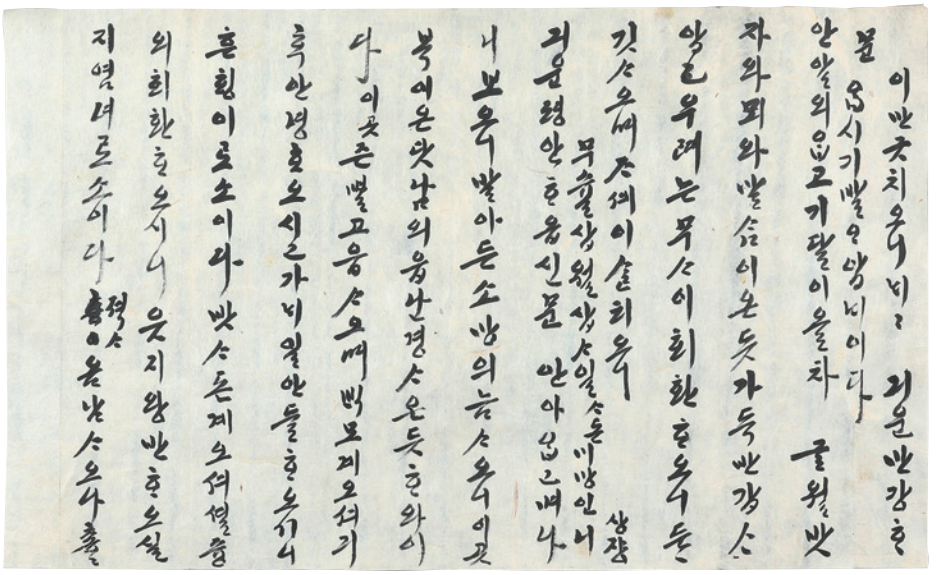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하며 시삼촌 삼형제가 수신자를 보러 갔으나 아무 말이 없어 서운하다는 말 등을 적은 내용.



동생이 언니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15 세로28 | 일제강점 | 국립한글박물관

어느 해 동생이 언니에게 보낸 편지로 언니가 친정에 왔다고 하여도 보지 못하니 원통하다며 빨리 가지 말라고 전하는 내용.



무술년 수사돈 이씨가 암사돈에게 보낸 한글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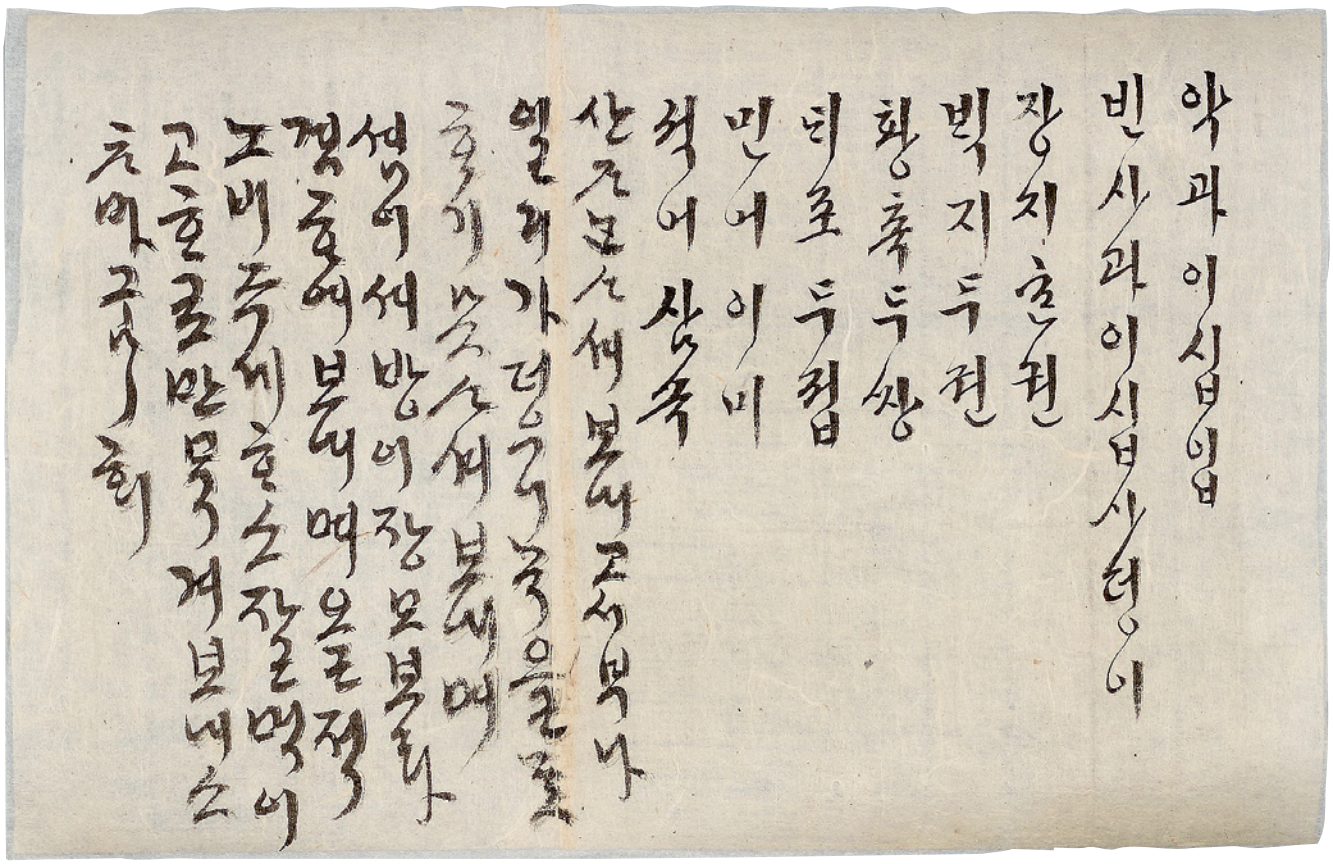
가로39 세로24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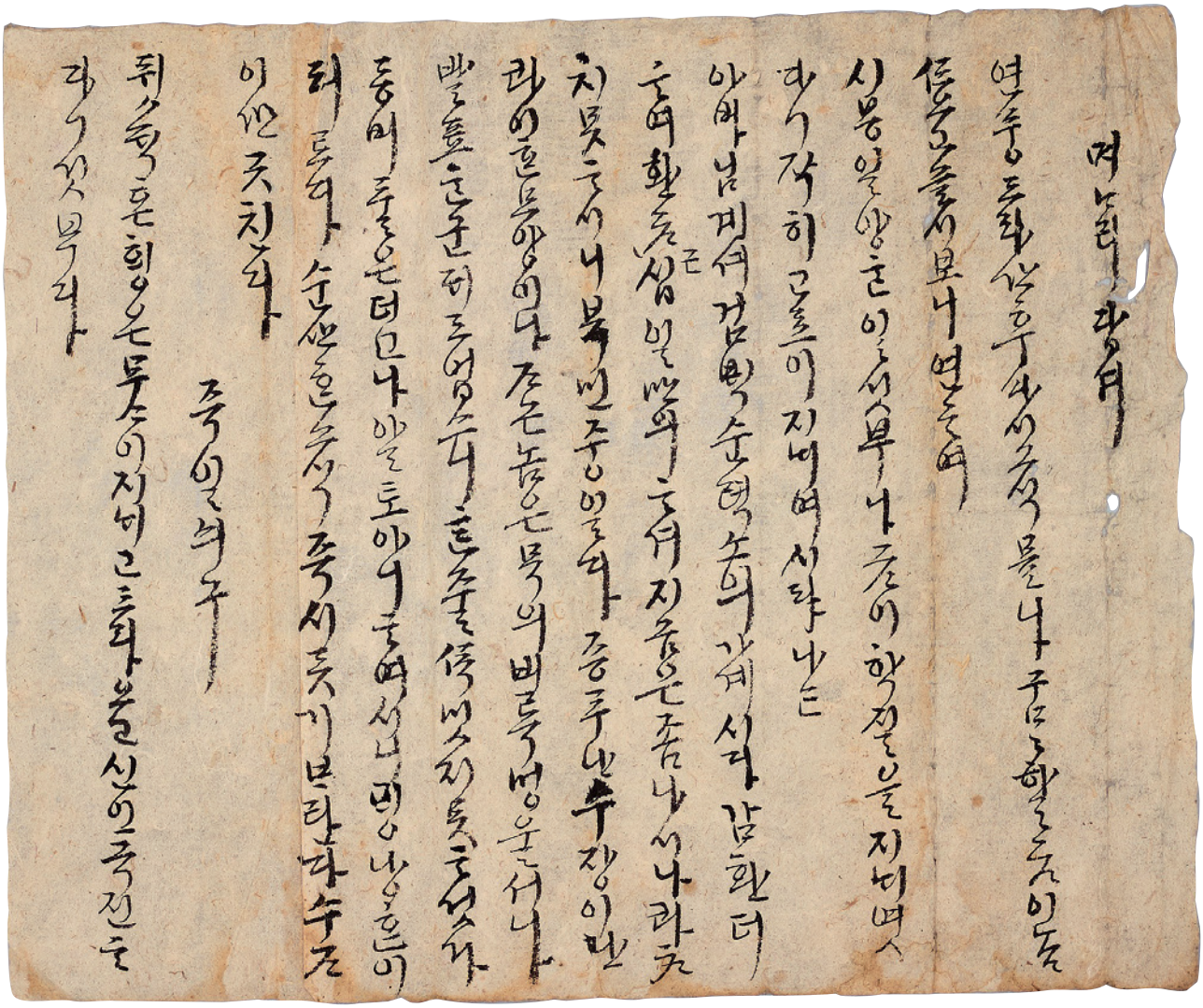
이씨가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사돈댁의 안부를 물으면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깥사돈의 회환을 걱정하는 내용.

사위가 장모댁에 보낸 한글 편지

가로30 세로29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서방을 장모 뵐 겸하여 보내니 잘 먹이고 하루만 묵게 하여 보내라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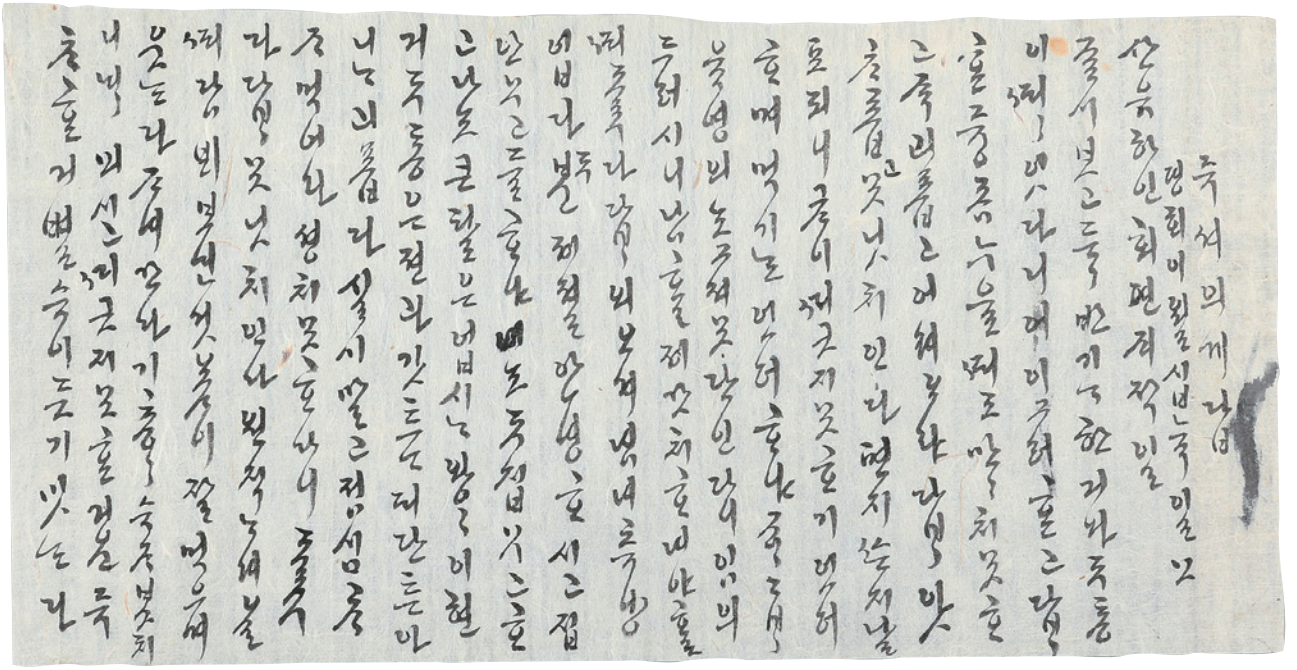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

가로31 세로26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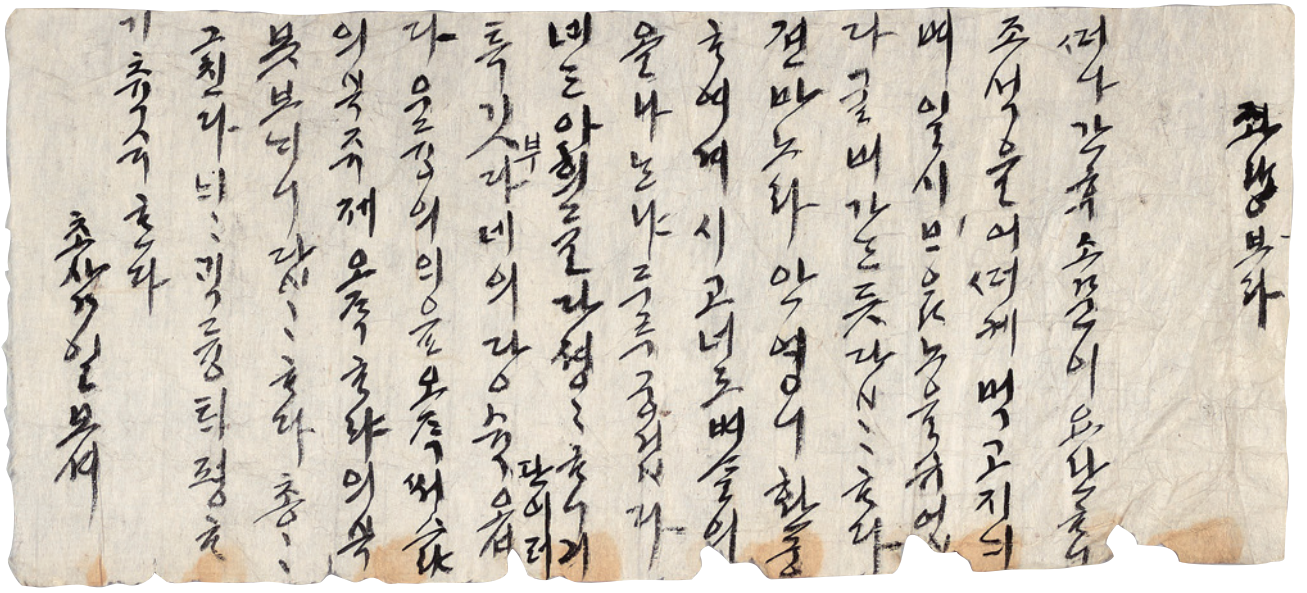
시아버지가 출산을 앞둔 며느리에게 보낸 답장으로, 며느리가 순산하기를 바라는 내용.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4 세로22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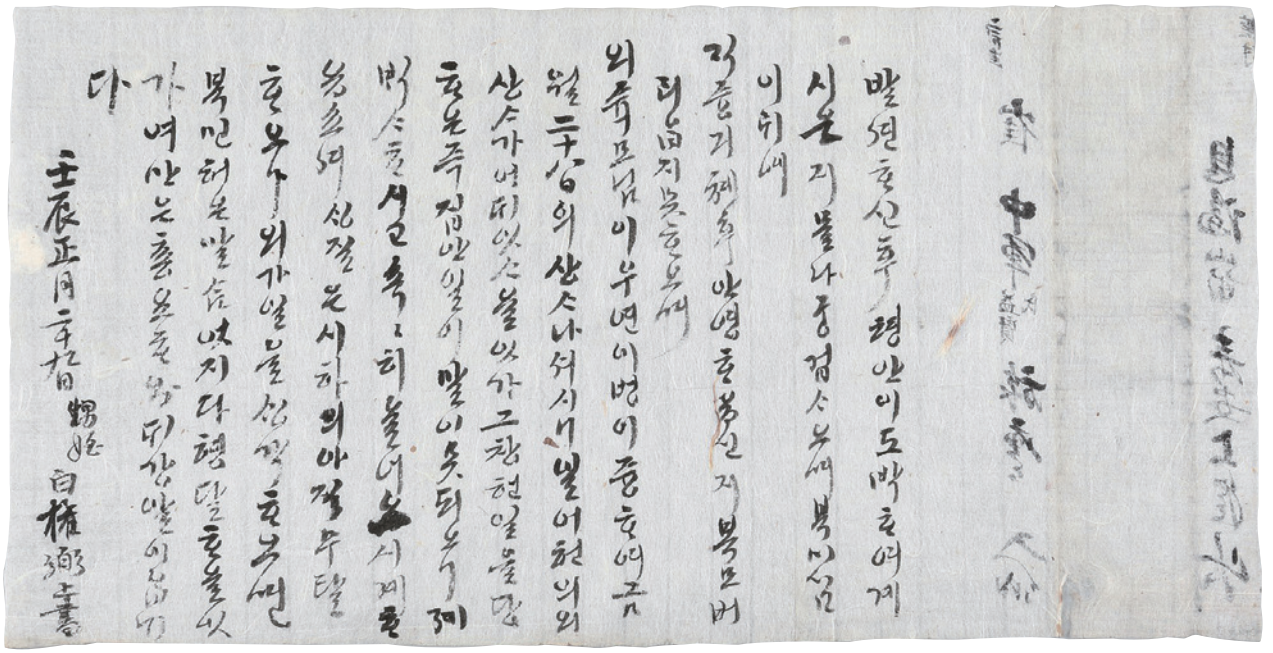
아들에 대한 건강과 안부를 묻고 전하는 내용.



어머니가 좌랑 벼슬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6 세로16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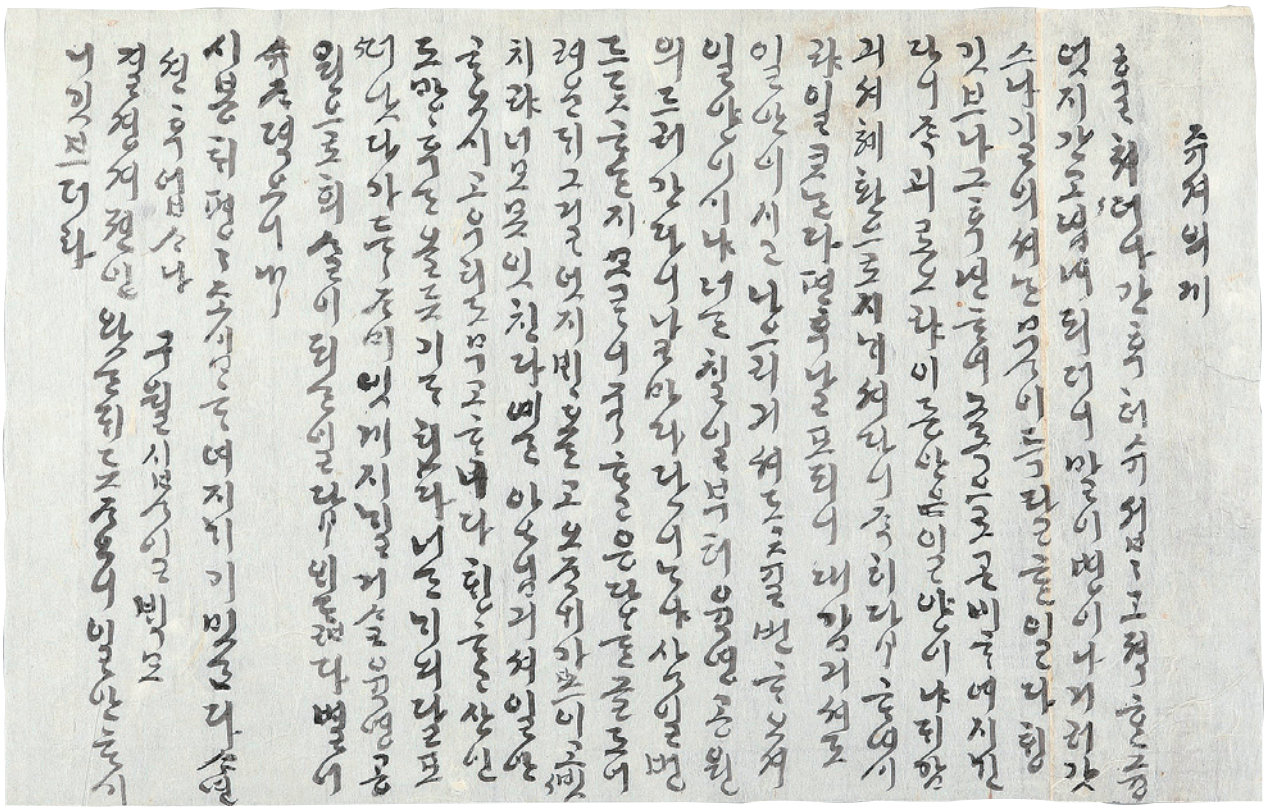
아들이 서울로 간 후 요란한 소문으로 인해 걱정이 많다는 어머니의 심경을 적은 내용.



임진년 백권필이 외숙부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41 세로21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갑작스런 외숙모님의 상사와 외숙부님의 안부를 전하는 내용.



큰어머니가 조카에게 보낸 한글 편지

가로38 세로24 | 조선 후기 | 국립한글박물관

조카가 학교에 들어간다 하니 염려하면서 안부를 챙기는 내용.







가족과 친족의













안부를 묻다































색인

IV

기역 ㄱ

가계	021, 022, 033, 035, 050, 079, 116, 118, 137, 143, 154, 165, 177, 201, 202, 234, 247, 255, 256, 280, 283, 284, 285, 403, 415, 421, 435, 442, 449, 468, 471, 510, 517, 525, 529, 534, 543, 546, 547, 549, 556, 589, 598, 601, 608, 617, 619, 624, 639
가구	020, 026, 027, 051, 122, 137, 138, 157, 158, 180, 183, 209, 296, 411, 476, 513, 655, 660
가문	028, 029, 042, 064, 067, 068, 070, 081, 084, 117, 143, 215, 223, 224, 271, 272, 289, 293, 294, 410, 413, 422, 438, 440, 477, 492, 495, 524, 525, 526, 528, 530, 543, 544, 545, 556, 587, 589, 590, 600, 611, 649, 650, 666
가부장제	030, 031, 032, 038, 043, 084, 167, 289, 399, 432, 549, 616, 637, 652
가사	031, 032, 044, 065, 497, 597
가신	045, 046, 047, 506, 510, 511
가장	037, 038, 042, 053, 119, 126, 159, 403, 405, 410, 419, 420, 432, 505, 571, 582, 597, 640, 644
가정	025, 034, 039, 040, 041, 046, 050, 056, 070, 072, 077, 078, 149, 159, 272, 292, 296, 419, 421, 422, 431, 484, 496, 499, 566
가족	020, 026, 027, 030, 031, 032, 033, 034, 035, 037, 038, 039, 040, 041, 045, 047, 051, 052, 056, 059, 062, 064, 065, 069, 070, 072, 073, 074, 075, 092, 102, 109, 118, 119, 126, 138, 152, 153, 154, 155, 157, 167, 168, 183, 185, 186, 193, 194, 200, 202, 204, 207, 208, 209, 210, 218, 230, 243, 271, 277, 279, 280, 281, 283, 284, 285, 286, 288, 293, 296, 297, 399, 403, 404, 410, 411, 417, 418, 419, 421, 424, 427, 428, 433, 434, 435, 453, 459, 473, 474, 475, 481, 496, 497, 499, 504, 505, 506, 507, 512, 513, 514, 521, 523, 543, 548, 549, 551, 558, 559, 561, 562, 579, 581, 582, 584, 585, 587, 589, 595, 597, 598, 601, 605, 606, 615, 616, 625, 632, 637, 638, 639, 642, 643, 644, 648, 651, 655, 660, 661, 671, 675
결혼	020, 074, 075, 091, 092, 101, 127, 138, 139, 157, 165, 193, 194, 230, 396, 406, 422, 427, 458, 462, 511, 512, 520, 524, 543, 550, 552, 553
계자	021, 079, 080, 522, 601
고모	083, 084, 200, 231, 240, 243, 249, 406, 407, 419, 441, 451, 452, 460, 476, 514
고부	084, 085, 086, 290, 504
관례	204, 224, 263, 264, 402, 463, 472, 585, 627
국조오례의	216, 222, 246, 281, 283, 479, 527
권당	029, 076, 094, 095, 243, 461, 501
근친	100, 146, 300, 524, 575, 614, 637
근친혼	060, 101, 143, 460
기제사	106, 108, 295, 296, 446, 467, 498, 500, 501, 505, 525, 534, 536

니은 ㄴ

남매	114, 115, 116, 140, 141, 198, 446, 476, 502, 626
남아선호	401, 403, 475, 637
남편	027, 031, 038, 039, 040, 050, 065, 074, 080, 084, 085, 087, 088, 096, 118, 126, 141, 159, 160, 164, 203, 204, 207, 229, 230, 238, 239, 240, 248, 256, 283, 285, 286, 288, 290, 293, 294, 299, 398, 399, 400, 414, 415, 419, 425, 426, 427, 441, 451, 452, 457, 458, 461, 462, 465, 467, 468, 469, 478, 490, 511, 514, 517, 526, 527, 529, 530, 547, 550, 553, 555, 556, 563, 567, 579, 582, 597, 601, 615, 622, 624, 625, 641, 656, 657, 665, 666
누나	124, 125, 153, 419, 432, 475, 620, 621, 626

디귿 ㄷ

동생	140, 396, 437, 438, 592, 624, 626, 671

동성동본 132, 137, 143, 144, 145, 146, 195, 268, 269, 300, 460, 524, 619, 637

딸 030, 077, 078, 096, 097, 124, 137, 151, 152, 156, 158, 164, 178, 185, 199, 227, 228, 229, 240, 248, 251, 252, 255, 260, 275, 278, 284, 290, 300, 399, 415, 422, 426, 429, 434, 435, 438, 441, 445, 446, 461, 470, 473, 474, 475, 482, 485, 486, 487, 490, 491, 514, 517, 529, 538, 550, 554, 563, 565, 567, 597, 664

미음

며느리 075, 076, 084, 085, 086, 151, 156, 160, 162, 179, 182, 202, 203, 214, 223, 229, 283, 284, 285, 286, 289, 290, 292, 293, 294, 299, 396, 399, 400, 410, 411, 429, 430, 442, 460, 503, 526, 529, 531, 549, 554, 563, 567, 575, 579, 597, 611, 614, 615, 624, 665, 675, 677

모계 023, 024, 028, 067, 094, 186, 197, 259, 260, 405, 415, 418, 432, 433, 436, 469, 527, 547, 556, 563, 564, 565, 585, 619, 654

묘제 169, 170, 171, 172, 176, 177, 178, 222, 261, 265, 266, 446, 448, 463, 466, 467, 498, 499, 505, 525, 534

문중 028, 042, 090, 122, 128, 134, 147, 149, 174, 175, 176, 177, 178, 190, 198, 216, 217, 226, 260, 261, 266, 274, 401, 415, 416, 436, 465, 466, 470, 471, 476, 477, 492, 502, 508,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3, 534, 538, 539, 557, 576, 577, 589, 590, 592, 600, 601, 649, 650

비읍

방계 053, 066, 183, 184, 193, 477, 521

배우자 037, 091, 092, 118, 127, 203, 209, 210, 218, 226, 398, 453, 459, 492, 519, 558, 643

봉제사접빈객 190, 197, 198, 526, 535, 537

부거제 031, 083, 207, 284, 286, 301, 481, 482, 553, 554, 586

부계 022, 023, 024, 032, 053, 054, 067, 083, 086, 094, 117, 128, 155, 186, 197, 199, 241, 259, 260, 262, 268, 274, 284, 398, 415, 418, 433, 436, 438, 469, 482, 502, 512, 520, 523, 527, 545, 549, 556, 559, 560, 563, 564, 565, 595, 600, 615, 619, 622, 629, 642, 650, 654, 655

부모 027, 038, 040, 041, 048, 049, 051, 052, 054, 059, 060, 065, 072, 074, 077, 081, 082, 097, 098, 114, 122, 124, 131, 140, 151, 152, 153, 155, 158, 184, 188, 189, 193, 200, 201, 202, 204, 208, 209, 221, 223, 224, 235, 236, 237, 238, 245, 248, 249, 250, 253, 262, 265, 272, 277, 279, 281, 282, 283, 284, 286, 290, 296, 301, 400, 401, 405, 406, 408, 412, 413, 414, 415, 418, 422, 423, 424, 425, 426, 431, 434, 435, 436, 438, 442, 444, 457, 466, 468, 470, 472, 473, 474, 475, 478, 480, 484, 485, 486, 487, 491, 492, 498, 501, 502, 503, 506, 512, 513, 517, 521, 526, 527, 528, 543, 544, 546, 547, 548, 554, 555, 556, 558, 559, 561, 563, 564, 571, 572, 579, 581, 591, 595, 602, 604, 606, 608, 611, 615, 616, 617, 619, 620, 626, 627, 640, 642, 659, 666, 668, 670, 671, 672, 673, 674

부부 032, 039, 040, 051, 052, 056, 063, 105, 118, 120, 150, 151, 158, 202, 203, 204, 205, 206, 218, 226, 239, 262, 278, 286, 296, 399, 400, 411, 425, 433, 436, 439, 444, 457, 458, 459, 464, 467, 469, 473, 475, 496, 497, 504, 517, 520, 527, 548, 549, 553, 560, 579, 594, 595, 596, 598, 599, 605, 617, 637, 640, 644, 645, 656, 658, 660

부인 033, 051, 079, 110, 118, 124, 151, 159, 164, 182, 204, 240, 253, 257, 297, 398, 435, 461, 529, 550, 579, 625, 658

부처제 206, 207, 224

분재기 187, 204, 210, 211, 212, 249, 433, 444, 445,

	485, 486, 487, 500, 502, 610, 659
불천위	089, 090, 177, 200, 212, 213, 214, 215, 221, 225, 226, 499, 502, 522, 524, 525, 532, 536, 539, 560, 590, 593, 600, 650
불효	121, 187, 457, 507, 547, 673, 675

시옷 ㅅ

사당	089, 214, 219, 221, 222, 401, 499, 505, 536
사돈	030, 075, 076, 094, 460, 576
사위	066, 076, 132, 136, 142, 156, 185, 186, 284, 300, 399, 460, 481, 482, 483, 487, 499, 511, 518, 520, 547, 550, 552, 553, 597, 657
사촌	101, 124, 223, 228, 231, 241, 418, 559, 560, 620
삼강행실도	235, 281, 425, 474, 494
삼촌	083, 240, 241, 242, 243, 245, 297, 432, 476, 514, 559
삼춘	242, 243, 244
상례	224, 237, 245, 246, 247, 248, 252, 253, 281, 441, 448, 464, 465, 466, 467, 477, 479, 498, 504, 505, 510, 518, 559, 577, 586
상속	054, 061, 098, 148, 157, 187, 207, 208, 239, 240, 248, 249, 250, 251, 252, 260, 270, 271, 284, 285, 297, 300, 415, 440, 469, 470, 486, 490, 491, 511, 512, 547, 552, 553, 560, 561, 610, 611, 620, 636, 642, 659
서얼	256, 257, 262, 489, 522, 619, 651
서자	022, 079, 117, 222, 251, 256, 257, 258, 401, 430, 518, 522, 555, 556
선계	259, 260, 546, 564, 565
선조	022, 024, 035, 036, 066, 067, 122, 133, 175, 185, 212, 262, 433, 444, 467, 471, 509, 518, 521, 522, 523, 600, 619, 620
손녀	141, 275, 276, 277, 469, 598
손자	079, 080, 191, 192, 241, 243, 273, 275, 276, 277, 280, 281, 412, 413, 423, 424, 429, 430, 441, 476, 503, 504, 533, 576, 642, 677
손주	160, 275, 277
시가	075, 083, 202, 399, 452, 578, 601
시댁	100, 164, 182, 207, 283, 284, 285, 288, 293, 400, 481, 482, 483, 611, 615
시아버지	086, 164, 229, 283, 284, 285, 289, 293, 294, 399, 429, 611, 613, 614, 665, 666, 674
시어머니	084, 161, 162, 285, 286, 290, 293, 294, 396, 399, 410, 411, 430, 531, 611, 613, 615, 665, 666, 674, 677
시조	022, 065, 068, 132, 190, 196, 214, 266, 269, 273, 286, 471, 502, 505, 521, 524, 528, 534, 544, 545, 589, 617
시집	288, 290, 429, 575, 611
시집살이	085, 086, 162, 288, 289, 291, 292, 294, 396, 554
신랑	029, 030, 088, 110, 136, 197, 258, 259, 288, 290, 301, 427, 433, 465, 477, 487, 488, 489, 553, 572, 573, 586, 611, 615, 645, 646, 647, 648, 655
신부	029, 030, 087, 100, 110, 112, 197, 229, 258, 288, 301, 427, 465, 487, 488, 489, 553, 572, 573, 586, 611, 613, 645, 646, 647, 648, 655, 658
신붓집	030, 088, 112, 151, 185, 258, 259, 433, 574, 611
신주	089, 214, 215, 219, 280, 281, 536
씨족	286, 287, 300, 301, 507, 524, 578, 616, 617, 625

이응 ㅇ

아내	027, 030, 031, 040, 050, 065, 074, 077, 084, 118, 160, 207, 223, 227, 237, 238, 248, 259, 289, 290, 293, 297, 398, 399, 400, 406, 407, 419, 426, 427, 432, 433, 441, 461, 462, 463, 465, 467, 481, 482, 483, 529, 552, 553, 597, 618, 641
아들	030, 066, 078, 079, 080, 081, 082, 084, 085,

097, 105, 116, 117, 129, 132, 136, 151, 152, 157, 158, 160, 161, 162, 178, 184, 199, 207, 214, 224, 229, 239, 241, 255, 258, 260, 272, 273, 275, 277, 278, 284, 285, 293, 299, 399, 400, 401, 402, 404, 415, 420, 421, 423, 425, 429, 430, 434, 435, 436, 441, 445, 446, 457, 460, 468, 469, 470, 473, 474, 475, 486, 501, 514, 527, 538, 546, 547, 554, 555, 564, 576, 579, 591, 593, 597, 666, 675

아버지 038, 039, 077, 079, 083, 125, 129, 140, 165, 191, 192, 199, 200, 202, 205, 206, 211, 220, 227, 228, 231, 234,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53, 255, 257, 259, 260, 268, 272, 273, 277, 283, 285, 401, 402, 403, 404, 405, 406, 409, 411, 412, 417, 418, 420, 429, 430, 431, 432, 437, 441, 451, 452, 470, 472, 473, 477, 482, 483, 502, 508, 519, 527, 538, 554, 557, 559, 560, 564, 565, 566, 567, 569, 573, 592, 594, 597, 598, 599, 617, 618, 619, 622, 627, 652, 658, 664, 665, 666, 671, 672, 674

양계 036, 259, 411, 412, 566

양육 031, 032, 044, 048, 049, 051, 065, 092, 150, 184, 203, 209, 234, 278, 279, 284, 285, 286, 418, 419, 420, 431, 469, 474, 475, 497, 508, 512, 513, 514, 554, 615

양자 079, 080, 137, 149, 184, 185, 201, 234, 235, 240, 255, 256, 273, 277, 278, 285, 300, 414, 415, 416, 424, 426, 427, 469, 473, 510, 516, 530, 549, 550, 556, 579, 590, 591, 592, 598, 617, 618, 620, 657

어머니 056, 057, 077, 078, 079, 083, 092, 124, 126, 140, 151, 165, 167, 168, 202, 203, 211, 227, 231, 234, 240, 241, 242, 243, 253, 257, 259, 268, 276, 282, 285, 289, 290, 293, 400, 402, 404, 411, 412, 417, 418, 420, 429, 430, 431, 432, 441, 451, 452, 470, 473, 477, 481, 509, 519, 531, 565, 566, 568, 575, 585, 594, 597, 598, 615, 618, 619, 637, 638, 641, 652, 658, 664, 674

언니 125, 153, 418, 419, 432, 475, 620, 621, 626

열녀 087, 240, 400, 425, 426, 494, 495, 607

오빠 125, 153, 419, 431, 432, 475, 578, 620, 621, 626, 658

외가 028, 029, 185, 227, 243, 254, 255, 432, 433, 434, 472, 553, 560, 568, 569, 570, 573, 595, 618, 620

육아 536

이모 200, 231, 249, 297, 406, 407, 419, 451, 452, 460, 476, 514, 573

이혼 044, 048, 049, 050, 074, 076, 118, 193, 194, 238, 297, 398, 400, 439, 457, 458, 459, 460, 463, 489, 512, 513, 550, 579, 580, 595, 596, 638, 658

인척 094, 160, 229, 459, 501, 518, 569, 576, 577, 618

입양 021, 026, 040, 044, 048, 051, 073, 079, 150, 201, 208, 234, 235, 256, 278, 400, 414, 429, 438, 467, 468, 469, 471, 473, 511, 512, 516, 550, 590, 591, 598, 604, 617, 619

입후 022, 079, 080, 081, 082, 083, 234, 240, 415, 416, 468, 469, 470, 546, 547, 557, 579, 590, 601, 624

지읒 ㅈ

자녀 027, 030, 034, 037, 039, 040, 041, 042, 044, 049, 051, 052, 053, 056, 059, 060, 065, 072, 074, 078, 098, 102, 136, 137, 150, 151, 152, 153, 155, 188, 193, 199, 200, 204, 205, 209, 210, 217, 218, 227, 248, 256, 259, 262, 275, 277, 278, 279, 285, 286, 296, 400, 403, 404, 413, 414, 415, 417, 418, 420, 424, 432, 433, 434, 435, 446, 458, 461, 467, 473, 474, 475, 485, 486, 487, 490, 491, 500, 501, 502, 512, 514, 516, 517, 519, 521, 526, 527, 531, 547, 548, 558, 570, 571, 572, 590, 595, 596, 597, 615, 618, 625, 637, 641, 645, 656, 659

자매 083, 141, 223, 224, 396, 423, 435, 451, 475,

	476, 559, 560, 618, 622, 626
자손	040, 089, 176, 177, 198, 245, 248, 299, 417, 421, 444, 472, 476, 477, 501, 508, 520, 522, 534, 546, 555, 640
자식	077, 131, 153, 155, 211, 219, 281, 293, 294, 296, 408, 473, 476, 554, 555, 559, 560, 564, 600, 602, 616, 617, 668, 673, 674, 675
장례	186, 212, 237, 253, 281, 463, 464, 466, 477, 478, 479, 480, 481, 549, 608
장모	227, 228, 229, 435, 438, 457, 460, 481, 482, 552
장인	185, 227, 228, 229, 433, 435, 438, 460, 482, 483, 550, 552
장자	031, 097, 148, 157, 250, 251, 252, 253, 271, 401, 414, 435, 440, 469, 474, 484, 485, 491, 514, 528, 529, 546, 547
적자	222, 249, 256, 401, 500, 522, 531, 556, 557
제례	175, 220, 222, 224, 253, 448, 463, 464, 466, 467, 497, 498, 499, 500, 509, 510, 511, 532, 546, 577, 591, 608
제사	021, 050, 073, 074, 077, 079, 080, 089, 096, 106, 108, 122, 129, 148, 158, 169, 170, 171, 190, 197, 198, 199, 203, 213, 214, 216, 253, 256, 265, 275, 284, 288, 295, 296, 297, 300, 301, 399, 409, 410, 415, 416, 427, 433, 434, 435, 440, 441, 442, 444, 445, 452, 466, 467, 468, 469, 470, 471, 474, 483, 484, 485, 487, 490, 491, 497, 499, 500, 502, 503, 504, 506, 507, 508, 509, 510, 514, 518, 522, 525, 527, 528, 529, 532, 543, 546, 549, 557, 559, 560, 561, 570, 575, 590, 591, 592, 600, 617, 624
조상	022, 024, 028, 039, 040, 042, 046, 068, 069, 089, 090, 102, 106, 108, 129, 131, 134, 144, 148, 169, 175, 176, 177, 178, 186, 187, 188, 190, 197, 203, 215, 216, 221, 222, 225, 231, 246, 248, 260, 261, 265, 266, 268, 269, 273, 274, 275, 283, 287, 295, 296, 300, 399, 401, 410, 440, 444, 445, 465, 466, 467, 471, 472, 476, 477, 483, 485, 487, 490, 497, 498, 499, 500, 502, 503, 504, 505, 506, 507, 509, 510, 518, 525, 526, 528, 532, 534, 536, 537, 539, 543, 544, 545, 546, 547, 551, 556, 557, 560, 562, 564, 565, 578, 585, 589, 590, 593, 594, 615, 617, 619, 620, 660, 670
조카	082, 083, 297, 514, 516
족내혼	101, 144, 146, 519
족보	022, 023, 031, 066, 067, 068, 116, 117, 131, 132, 133, 143, 154, 155, 195, 287, 433, 471, 520, 521, 522, 523, 525, 527, 534, 539, 544, 545, 546, 589, 590, 591, 595, 600, 633, 634, 656
족외혼	089, 101, 144, 165, 179, 301, 519, 520, 523, 524, 564, 652
종가	084, 106, 135, 136, 147, 177, 190, 199, 212, 213, 214, 401, 518, 524, 525, 526, 528, 529, 530, 531, 532, 533, 535, 560, 592, 593, 594, 600, 650
종법	037, 116, 129, 135, 151, 152, 190, 219, 221, 400, 401, 402, 431, 434, 436, 468, 469, 471, 472, 473, 475, 477, 484, 502, 510, 524, 527, 528, 529, 530, 533, 535, 538, 539, 545, 546, 552, 553, 554, 557, 589, 592, 594, 624, 655
종부	237, 525, 526, 530, 531, 533, 624
종손	178, 237, 240, 260, 441, 477, 522, 525, 526, 528, 529, 530, 532, 533, 600
종족	074, 115, 131, 134, 174, 175, 177, 274, 301, 424, 518, 527, 532, 553, 576, 577, 616, 620
종택	526, 535, 536, 537
주부	046, 050, 205, 285, 286, 597
주자가례	068, 069, 089, 174, 198, 221, 222, 224, 225, 249, 250, 260, 263, 264, 265, 280, 440, 448, 463, 464, 477, 479, 482, 484, 490, 502, 517, 527, 531, 544, 644, 646, 653, 668
중자	500, 556, 557
지칭	084, 094, 118, 120, 204, 227, 243, 400, 404, 417, 451, 473, 514, 516, 559, 582, 626
직계	053, 067, 260, 262, 477, 529, 533, 546, 548, 549, 600

치읓 ㅊ

차남	053, 119, 201, 208, 214, 251, 290, 589, 660
차자	031, 256, 500, 528, 529, 546, 619
처가	028, 031, 097, 136, 185, 186, 202, 227, 228, 254, 255, 256, 258, 284, 288, 290, 398, 415, 433, 436, 438, 445, 446, 469, 472, 481, 483, 487, 488, 489, 511, 552, 553, 554, 563, 570, 601, 620, 629, 655
첩	079, 087, 256, 257, 258, 461, 462, 463, 469, 470, 487, 522, 547, 555, 556
촌수	083, 122, 144, 146, 231, 419, 431, 451, 459, 460, 514, 518, 559, 560, 561, 591, 621
출계	040, 185, 424, 564, 565, 619
친가	029, 083, 185, 243, 432, 433, 434, 452, 554, 560, 569, 570, 574, 575, 578, 590, 591, 601, 618, 620
친정	043, 075, 076, 083, 084, 100, 182, 284, 285, 286, 399, 452, 485
친족	026, 027, 029, 031, 038, 040, 060, 061, 063, 064, 065, 082, 083, 089, 093, 094, 122, 124, 127, 128, 132, 143, 144, 155, 175, 183, 185, 193, 200, 228, 231, 241, 243, 248, 254, 255, 269, 278, 283, 285, 297, 301, 405, 410, 411, 412, 414, 415, 416, 418, 419, 422, 423, 424, 429, 431, 432, 438, 441, 451, 452, 459, 461, 468, 469, 478, 481, 502, 511, 512, 514, 516, 519, 522, 530, 531, 547, 549, 552, 559, 560, 561, 564, 569, 571, 575, 576, 577, 578, 585, 591, 592, 595, 601, 610, 611, 615, 622, 625, 636, 648, 651
친척	048, 077, 080, 094, 096, 101, 231, 234, 241, 242, 243, 254, 283, 405, 406, 419, 427, 431, 451, 453, 461, 472, 516, 518, 520, 523, 559, 576, 617, 619

티읕 ㅌ

통혼권	094, 521, 523, 573, 587, 589, 651

히읗 ㅎ

할머니	275, 276, 458, 508, 597, 598, 599, 618
할아버지	192, 228, 241, 243, 245, 275, 276, 409, 423, 424, 429, 441, 500, 508, 554, 559, 597, 598, 618, 658
항렬	021, 080, 131, 132, 149, 174, 191, 243, 273, 405, 406, 408, 414, 469, 516, 518, 591, 600, 601, 619, 620, 622, 624, 627
핵가족	040, 052, 054, 063, 071, 074, 166, 183, 279, 284, 286, 496, 497, 548, 549, 595, 605, 606, 660, 661
현구고례	111, 488, 573, 611, 614, 615, 647, 654
혈연	022, 026, 040, 051, 073, 076, 093, 094, 095, 256, 269, 270, 271, 272, 284, 297, 406, 416, 441, 460, 471, 509, 510, 511, 513, 514, 547, 549, 576, 590, 616, 617, 618, 624, 639
혈족	060, 094, 184, 274, 300, 412, 459, 460, 461, 518, 519, 524, 526, 575, 577, 617, 618, 619, 643, 657
혈통	022, 024, 068, 199, 200, 259, 266, 273, 301, 411, 457, 459, 501, 502, 512, 520, 525, 564, 565, 566, 578, 620
형	125, 140, 153, 240, 406, 419, 432, 436, 437, 438, 460, 475, 546, 620, 621, 622, 624, 625, 626, 658
형제	077, 079, 080, 141, 223, 224, 239, 240, 243, 251, 255, 273, 396, 408, 423, 424, 430, 434, 435, 436, 437, 438, 451, 475, 476, 518, 522, 559, 560, 565, 576, 601, 618, 626, 640, 671, 672
호구	542, 543, 629, 630, 631, 633, 635, 639

호적 066, 196, 248, 262, 268, 433, 512, 520, 521, 540, 543, 550, 551, 594, 595, 606,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2, 657

호주 058, 196, 250, 251, 285, 511, 512, 550, 638, 641, 642, 643, 656, 657

호칭 118, 155, 160, 200, 223, 228, 243, 244, 398, 400, 403, 404, 417, 448, 451, 472, 473, 481, 482, 511, 516, 551, 569, 597, 598, 622, 627

혼례 030, 112, 224, 244, 245, 263, 288, 301, 402, 448, 464, 465, 487, 488, 543, 549, 555, 572, 573, 574, 625, 644, 645, 646, 647, 652, 653

혼반 076, 095, 519

혼인 022, 026, 028, 031, 040, 051, 053, 054, 058, 060, 073, 075, 076, 084, 085, 089, 091, 094, 111, 115, 136, 137, 138, 139, 145, 150, 160, 178, 179, 180, 182, 185, 189, 196, 197, 202, 217, 218, 223, 289, 290, 291, 297, 300, 398, 399, 401, 419, 422, 425, 426, 429, 432, 433, 438, 445, 446, 448, 452, 457, 459, 460, 462, 463, 465, 467, 473, 474, 475, 477, 487, 489, 492, 493, 494, 511, 512, 517, 518, 519, 520, 521, 523, 524, 526, 529, 531, 538, 543, 544, 547, 553, 555, 561, 563,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2, 585, 586, 587, 594, 617, 618, 619, 621, 625, 629, 638, 641, 645, 646, 649, 650, 651, 652, 653, 655, 656, 657

확대가족 040, 053, 131, 404, 537, 548, 605, 606, 660, 661

효 064, 065, 222, 228, 281, 404, 418, 420, 466, 474, 477, 500, 505, 508, 561, 575, 615, 616, 665, 670, 673, 674, 675, 677

효녀 494, 609, 664, 665

효부 575, 615, 665, 666, 677

효자 235, 236, 402, 494, 495, 607, 608, 667, 668, 671

효제 042, 134, 671, 673

후손 023, 024, 036, 069, 090, 122, 128, 131, 134, 162, 190, 212, 215, 260, 262, 269, 270, 272, 287, 296, 301, 412, 427, 433, 435, 441, 444, 466, 471, 472, 476, 477, 497, 499, 502, 503, 504, 505, 506, 508, 510, 518, 521, 522, 525, 532, 534, 539, 547, 548, 564, 565, 570, 575, 578, 589, 590, 592, 600, 617, 619, 660

훈육 043, 165, 166, 200, 285, 286, 290, 418, 483, 508, 598, 599

필자

V

강정원(姜正遠) 서울대학교

교환혼 088
근친혼 101
민며느리제 179
봉사혼 197
서옥제 258
형사취수제 625

강혜경(姜惠卿)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종부 529
종손 531

고민정(高旻廷) 강원대학교

계후등록 080
계후입안 082
백골양자 184
별급문기 187
사후양자 234
서양자 255
승중 280
양아록 412
양자문기 416
파양 590
허여문기 610
형망제급 624
화회문기 659

권순형(權純馨)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혼 457
재혼 489
조혼 517

권익기(權益棋) 대한성명학연구원

아명 402
이름 448
태명 581

김경섭(金鏡燮) 을지대학교

계모담 077
시집살이담 292

김광순(金光淳)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남매 114
누나 124
언니 418
오빠 431
자매 475
형 620
형제 626

김귀옥(金貴玉) 한성대학교

이산가족 453
초국적가족 558

김대숙(金大琡)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열녀담 424
효행담 673

김명자(金明子) 전 안동대학교

가정신앙 045
기자의례 102
조상신 509

김문택(金文澤) 전 서울역사박물관

삼년상 236
시묘살이 281

김미영(金美榮) 한국국학진흥원

가문 028
가장 037
가족 051
가통 067
가풍 068
납골당 120
당내친 128
둥지양자 149
문벌 173
보종 190
불천위제사 214
사당 219
소목 272
안방물림 410
유복친 441
제사분할 500
제사상속 501
택호 582

김성희(金聖姬) 순천대학교

가사노동 032
가정주부 050
맞벌이 158

김시덕(金時德) 을지대학교

묘제 169
반보기 181
상례 245
오복제도 429
제례 497
조상 504

김영수(金榮洙)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추도식 561

김영순(金永順) 용인민속촌

불천위 212

김지영(金志榮)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동생 140
딸 150
막내 153
맏이 155
아들 400
외동 434
자녀 473

김창민(金昌民) 전주대학교

겹사돈 075
내롱 122
데릴사위제 136
말자상속 157
모계 165
부계 199
선계 259
양계 411
인척 459
일부다처제 461
일부일처제 462
족내혼 519
족외혼 523
처가 552
처가살이 553
출계 564
친영 572
혈족 618

김현미(金賢美) 연세대학교

국제결혼 091
사진신부 229

나영훈(羅榮勳) 한국국학진흥원

상피제 254
연좌제 423

도민재(都民宰) 청주대학교

가정의례준칙 049
건전가정의례준칙 073
의례 447
의례경전통해 447
의례준칙 448

박경(朴景) 건양대학교

수양자 277
양자 414
움딸 438
입양 467
중자봉사 546
첩자봉사 556

박동철(朴東喆) 한국국학진흥원

연애혼 422
절충혼 492
중매혼 543

박성용(朴晟慵) 전 영남대학교

가계부 025
대 130
대문중 133
부처제 206
소문중 274
씨족 300
유훈 443
족계 518
친족 575
해동속소학 601
혈연 616
혈통 619

박종오(朴宗吾) 전남대학교

명당설화 162
우애담 436

박주(朴珠)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과부 087
정려 494
효녀 664
효부 665
효자 666
효제 671

박홍갑(朴洪甲) 전 국사편찬위원회

성년식 262

배도식(裵桃植) 부산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상객 244

배영동(裵永東) 안동대학교

기제사 105
대종가 134
벌초 186
봉제사접빈객 197
사대봉사 221
성묘 265
종가 524
종택 535
종회 538
파종가 592

배은경(裵恩慶) 서울대학교

가족계획사업 054

서해숙(徐海淑) ㈜남도학연구소

시조신화 286

서호철(徐浩哲)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적법 180
조선호적령 511
호구조사규칙 631
호적법 636
호적부 637
호적표 639

성정현(成晶鉉) 협성대학교

가정위탁제도 048
양육비 413

손병규(孫炳圭) 성균관대학교

가첩 065
대동보 132
만성보 154
선원보첩 262
족보 520
준호구 542
촌수 559
팔고조도 594
항렬 600
호구단자 629
호적 632

송재용(宋宰鏞) 전 단국대학교

근친 100

신옥주(申玉珠) 전북대학교

위자료 438
주민등록법 540
친권 571

신호림(申虎林) 안동대학교

제사설화 502
희생효설화 675

오세길(吳世吉) 동아대학교

가훈 070
쌍둥이 298
업둥이 421

오세정(吳世晶) 충북대학교

남매혼설화 115

이길표(李吉杓) 전 성신여자대학교

현구고례 611

이대화(李大和) 한국학중앙연구원

남편 118
부모 200
부부 202
분가 207
성씨 266
시아버지 283
시어머니 285
아내 398
아버지 403
어머니 417
장모 481
장인 482
종안 534
창씨개명 549
할머니 597
할아버지 598
호 627

이상균(李相均)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국불천위 089
문장 174
문회 177
사불천위 225
입향시조 471
자손 476
중시조 544
파시조 589

이수경(李洙京) 국립중앙박물관

삼강행실효자도 235
행실도 607
효자도 668

이순구(李舜九) 전 국사편찬위원회

계자 079
남아선호사상 116
내외 123
삼불거 238
삼종지도 239
서얼 256
첩 555
칠거지악 579
혼외자 651

이여봉(李麗峰) 강남대학교

가부장제 030
가족주의 064
결손가정 074
분거가족 208
정상가족 496
조손가족 512
한부모가족 595

이용범(李龍範) 안동대학교

영혼결혼식 427

이정아(李靜娥) 가천대학교

시집살이노래 291

이창기(李昌基) 전 영남대학교

균분상속 097
문중 175
사돈 223
윤회봉사 445
장자봉사 483
재산상속 485
적장자우대상속 490
통혼권 587

이창식(李昌植) 전 세명대학교

물레혼 178
보쌈 189
씨받이 299

이필영(李弼泳) 전 한남대학교

일생의례 463
출생의례 566
태교신기 580

이해준(李海濬) 전 공주대학교

기일비망기 102
당호 129
동성동본 143
동성촌 146
본관 194
본적 196
선산 260
세습 270
자 472
종법 527
천인천자문 554

장동우(張東宇) 대진대학교

무복친 172
복인 191
상주 252

장병인(張炳仁) 전 충남대학교

남귀여가혼 110

전경근(田慶根) 아주대학교

가정법원 044
가족관계등록법 058
가족법 059
모자보건법 168

전경목(全炅穆)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계녀서 076
국조오례의 093
당내 127
분재기 210
사례편람 224

정구태(鄭求兌) 조선대학교

가족법개정운동 061
호주상속 641
호주제 642

정긍식(鄭肯植) 서울대학교

동성동본불혼 144
상속 248
위토 440
유언 442
증여 547
혼인신고 656

정종수(鄭鍾秀) 전 국립고궁박물관

장례 477

조성실(趙聖實) 전북대학교

가족사진 062

조숙정(趙淑晶) 서울대학교

고모 083
동서 141
며느리 160
사위 227
사촌 231
삼촌 240
손주 275
아가씨 396
아저씨 405
아주머니 406
이모 451
조카 514
형님 622

조은희(趙恩嬉) 제주대학교

독거 137
독신 138
동거 139
비혼 217
사실혼 226

진미정(陳美靜) 서울대학교

1인가구 020
가구 026
건강가정기본법 072
다문화가족 126

천혜숙(千惠淑) 전 안동대학교

가정교육 041
고부 084
시집 288
시집살이 289
재행 487
정략결혼 493
혼례 644
혼반 649
혼인 652

최길성(崔吉城) 전 히로시마대학교

조상숭배 507

최은숙(崔恩淑) 경북대학교

규방가사 095

최인학(崔仁鶴) 전 인하대학교

세배 269
혼주 658

최종호(崔鍾浩) 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회갑 662

하도겸(河度慊) 국립민속박물관

기휘 109

하여주(河如株) 부산대학교

남녀칠세부동석 112
백년손님 185
엄부자모 420
출가외인 563
친정 574
현모양처 615

한기범(韓基範) 전 한남대학교

예기 428

한상우(韓相祐) 아주대학교

가계 021
가계도 022
외가 432
친가 569

한양명(韓陽明) 안동대학교

외손봉사 435

함인희(咸仁姬) 이화여자대학교

모성애 166
방계가족 183
복합가족 193
부성애 204
수정가족 279
직계가족 548
핵가족 605
확대가족 660

함한희(咸翰姬) 무형문화연구원

가업 035
가정 039
딩크족 150
빈둥지가족 218
식구 296
통과의례 582
해외입양 603

허남춘(許南春) 전 제주대학교

가문잔치 029
권당 093
삼춘 242
식게 295
안거리·밖거리 408

자문위원 김미영(한국국학진흥원)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김창민(전주대학교)
박성용(전 영남대학교)
손병규(성균관대학교)
오세길(동아대학교)
이대화(한국학중앙연구원)
이창식(전 세명대학교)
이해준(전 공주대학교)
함인희(이화여자대학교)
합한희(무형문화연구원)
허남춘(전 제주대학교)

감수위원 김명자(전 안동대학교)
이창기(전 영남대학교)
이해준(전 공주대학교)
합한희(무형문화연구원)